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1-01

---

##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7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7)

---

2012. 9.



- 목 차 -

1. 성종실록 <4> 기사자료집 : 성종 21년 3월 ~ 성종 24년 4월 ..... 1



# 1. 성종실록 <4> 기사자료집



# 성종실록 <4> 기사자료집 : 성종 21년 3월 ~ 성종 24년 4월

날 짜	내 용	원 문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3월 1일 (계축)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종호(李宗顥)가 경차관(敬差官) 정석견(鄭錫堅)이 전 밀양 부사(密陽府使) 허혼(許混)을 추국(推鞠)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었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허혼(許混)이 이졸(吏卒)로 하여금 배에 곡식을 신고서 올벼[早稻]의 종자와 바꾸게 한 것은 관청의 일을 중하게 여겨 미리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뿐인데, 간사한 백성들이 이를 구실로 말을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초(供招)한 말을 보면 허혼에게는 관여되지 않으니, 내가 내버려두고자 한다. 승지(承旨) 등의 의견에는 어떠한가?” 하니, 이종호가 아뢰기를, “신의 의견에, 허혼은 창고(倉庫)를 수선(修繕)하는 일로 인하여 백성을 역사(役使)시켜서 원망이 생겨 그러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배로 기와를 실어서 곤양(昆陽)에 해상(海上)으로 운반했다는 것은 진실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굴포(掘浦)의 선군(船軍)들이 처음에는 ‘기와를 실은 배’라고 공초(供招)하였다가 누차 형문(刑問)하자 모두 말하기를, ‘일찍이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오직 김운산(金閔山)만이 말하기를, ‘기와를 실은 배를 붙잡았는데 뱃사람들이 쌀을 주면서 애걸하기 때문에 놓아 보냈습니다.’라고 하니, 이는 진실로 허위의 말입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신종호(申從濩)도 사실이 아니라고 두세 번 아뢰었다.</p>	<p>○御晝講。講訖，左副承旨李宗顥，將敬差官鄭錫堅推鞠前密陽府使許混啓本以啓。上曰：“許混令吏卒船載穀，換早稻種者，重官事而預爲之備耳，無奈奸民，籍此造語歟？今見事干人招辭，於許混不干，予欲棄之。承旨等意如何？”宗顥啓曰：“臣意許混，因修繕倉庫，役民生怨而然也。其曰：‘以船載瓦海運于昆陽者，眞不實也。’且(掘) [掘] 浦船軍等，始以載瓦船供招，累次刑問則皆曰：‘不曾見知。’惟閔山云：‘捉載瓦船，而船人贈米哀乞，故放送。’此誠虛語也。”右承旨申從濩，亦以不實，再三啓之。上曰：“事干人不繫者，久囚可憫。許混及不繫人，皆棄之，惟閔山，更推以啓。”</p>

	<p>임금이 말하기를,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긴요하지 않은 자를 오랫동안 가두는 것은 불쌍하니, 허혼(許混)과 긴요하지 않은 자는 모두 내버려두도록 하고, 오직 김윤산(金潤山)만은 다시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3월 2일  (갑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집의(執義)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임중(林重)은 탐오한 사람이므로 비록 별좌(別坐)라고 하더라도 제수(除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별좌(別坐)가 개만(箇滿)22002) 하게 되면 장차 수령(守令) 등의 관직이 되니,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改差)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밀양(密陽) 수산현(守山縣)의 국둔전(國屯田)22003) 을 수군(水軍) 5백 명으로 하여금 경작하여 농사짓게 하였는데, 남방(南方)의 방비가 매우 긴급하니, 청컨대 수군(水軍)을 역사(役使)시키지 말고 이웃 고을에 번상(番上)하고 있는 보정병(步正兵)으로써 경작하여 농사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번상(番上)한 보병(步兵)은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허침(許琛)이 아뢰기를,  “신이 이전에 경상도(慶尙道)에 가서 들어보니, 밀양의 둔전(屯田)은 마음을 써서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곡식이 실(實)하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백성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고 관아에서 그 반을 거둔다면 백성도 힘써 농사지을</p>	<p>○御經筵。講訖，大司諫李枰、執義成世明啓曰：“林重貪汚人也，雖別坐，不可授。”上顧問左右。領事洪應對曰：“別坐箇滿，則將爲守令等職，臺諫之言是也。”上曰：“改差可也。”李枰又啓曰：“密陽守山縣國屯田，使水軍五百名耕治，南方備禦甚緊，請勿役水軍，以旁邑番上步正兵耕治。”上顧問左右。洪應對曰：“番上步兵，不可減也。”侍講官許琛啓曰：“臣曾往慶尙道聞之，密陽屯田，不用心耕治，故其穀不實。若給民耕之，官收其半，民亦用力治之，穀必多出，入官之數，不減前日矣。”洪應曰：“給民并耕爲便。”上曰：“其令該司，考便否以啓。”特進官柳輕啓：“南方防禦，不可不嚴，全羅道兵馬節度使朴星孫，年老不合邊將。”李枰啓曰：“尹孟枝今爲富寧府使，爲人怯懦。前守碧潼，野人作耗，孟枝杜門不出，使賊奪掠人</p>



	<p>것이니, 곡식은 반드시 소출이 많아져서 관아에 들이는 수가 전날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p> <p>하자, 홍응이 말하기를, “백성에게 주어서 아울러 경작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적당한지의 여부를 상고하여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유지(柳淸)가 아뢰기를, “남방(南方)의 방어(防禦)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박성손(朴星孫)은 연로하여 변장(邊將)에 적합하지 않습니다.”</p> <p>하고,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윤맹지(尹孟枝)가 이번에 부령 부사(富寧府使)가 되었는데, 사람됨이 겁이 많습니다. 전에 벽동(碧潼)의 수령(守令)이 되었을 때 야인(野人)들이 도둑질하는데도 윤맹지는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므로 적(賊)으로 하여금 사람과 물건들을 약탈하게 하였습니다. 부령은 실로 요해지(要害地)이니, 청컨대 개차(改差)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어찌 종신토록 폐(廢)함이 마땅하겠는가?”</p> <p>하였다.</p>	<p>物。富寧實要害之地，請改差。”上曰：“人有一失，豈宜終廢？”</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3월 2일 (갑인) 6번째기사</p>	<p>의성 현령(義城縣令) 유희인(兪好仁)이 지은 시고(詩藁)를 바치니, 승정원(承政院)에 보이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조위(曹偉)·유희인(兪好仁)의 부모(父母)에게 음식물(飮食物)을 갖추어 준 것은 이미 전례(前例)가 있으니, 그 예를 상고하여 전처럼 갖추어서 주도록 하라.”</p> <p>하고, 이어서 유희인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義城縣令兪好仁，獻所製詩藁，命示承政院曰：“曹偉、兪好仁父母食物備給，已有例矣，其考例如前備給。”仍下書于好仁曰：“今見汝詩，有壽母生辰之作，如捧檄今辰稱壽觴，人生反哺情悲傷，得至今日皆恩光，更勵忠義金</p>

	<p>“이번에 그대의 시(詩)를 보니, 장수(長壽)하시는 어머니의 생신(生辰)에 지은 것이 있는데, ‘봉격(捧檄)22005) 한 오늘 아침 축수(祝壽)의 술잔을 올리네.’, ‘사람의 반포(反哺)하는 정(情)22006) 이 슬프고 마음아프도다.’, ‘오늘에야 모두 임금의 은덕(恩德)을 얻었도다.’, ‘충의(忠義)를 다시 다져 금석(金石)처럼 굳세게 하겠노라.’ 등의 글귀는 글의 뜻이 천박하지 않다. 사람의 큰 인륜(人倫)이 어찌 충(忠)·효(孝) 두 가지 일에서 벗어나겠는가? 참으로 가상하다. 본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대의 어머니에게 약간의 음식을 보내도록 하여, 그대에게 포상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인다.”</p> <p>하였다.</p>	<p>石剛等句，辭意不淺。人之大倫，豈過忠、孝二事？良用嘉尚。令本道監司，略致餼于爾母，以示予褒獎之意。”</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3월 2일 (갑인) 7번째기사</p>	<p>경상도(慶尙道)의 관찰사(觀察使)·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등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도내(道內) 바다 연안의 백성은 어염(魚鹽)의 조채(釣採)를 생업(生業)으로 삼고 있으면서 바다에다 막(幕)을 엮어 놓고 도적이 이를 것은 염려도 하지 않으며, 경(卿) 등도 예삿일처럼 여겨 금지하지 아니하는데, 갑자기 약탈당하는 변란이 있게 되면 어떻게 제때에 구원할 수 있겠는가? 법(法)에 의해 금단(禁斷)할 것이니, 후환(後患)이 없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下書慶尙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等曰： 道內沿海民，以魚鹽釣採爲業，竝海編幕，不虞寇至。卿等狃於尋常，不能禁止，卒有刼掠之變，何以及救？其依法禁斷，俾無後患。</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3월 3일 (을묘) 2번째기사</p>	<p>부사맹(副司猛) 신은윤(辛殷尹)이 조맹부(趙孟頫)22008) 의 진필(眞筆) 족자(簇子) 1쌍을 바치고, 인하여 상소하기를,</p> <p>“상고(上古)에는 문자(文字)가 없었는데, 복희씨(伏羲氏)가 비로소 팔괘(八卦)의 획(畫)을 그었으니, 이것이 자획(字畫)의 시초입니다. 요(堯)·순(舜)·우(禹) 임금은 이 획(畫)을 마음에 얻어 그 쓰임을 미루어서 천하가 화락하기에 이르렀고, 왕희지(王羲之)22009) 와 장욱(張旭)22010) 은 이 획(畫)을 붓[筆]에 얻어 교묘함이 고금(古今)에 뛰어났고, 유공권(柳公權)22011) 은 이 획(畫)을 마음에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르다.’는 말이 있었으며, 정자(程子)22012) 는 이 획(畫)을 마음에 얻어 서자(書字)가 매우 공경스러웠고,</p>	<p>○副司猛辛殷尹，獻趙孟頫眞筆簇一雙，因上疏曰： 上古無文字，伏羲始畫八卦，此字畫之始也。堯、舜、禹，得此畫於心，推其用，至於天下雍熙，王羲之張旭，得此畫於筆，妙絕今古，柳公權得此畫於心，故有心正筆正之言。程子得此畫於心，書字甚敬；朱子得此畫於心，一在其中。楊子雲亦曰：“書，心也，心</p>

	<p>주자(朱子)22013) 는 이 획(畫)을 마음에 얻어 한결같이 그 중정(中正)함에 있었으며, 양자운(楊子雲)22014) 도 말하기를, ‘글은 마음이니, 심획(心畫)이 나타나므로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공권의 말을 체득하고 정씨(程氏)의 공경스러움을 스승으로 삼으며 주자(朱子)의 중정함을 가지고 양자운의 심획(心畫)을 생각하시어, 심신(心神)에 모으고 정사(政事)에 편다면 그 다스리는 도리가 삼황 오제(三皇五帝)에 짝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표피(豹皮) 2장(張), 후추[胡椒] 5두(斗), 소목(蘇木) 20근(斤)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전교(傳敎)하기를,</p> <p>“서족(書簇)을 바쳤다고 해서 이러한 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상소에 유공권(柳公權)의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상하게 여겨서 하사하는 것이다.”</p> <p>하였다.</p>	<p>畫形，君子小人見矣。願殿下，體公權之說，師程氏之敬，執朱子之中，思子雲之心，畫會之心神，敷爲政事，其治道，可以配三皇五帝矣。</p> <p>命賜豹皮二張、胡椒五斗、蘇木二十斤。仍傳曰：“非以獻書簇而有是賜也，爾疏有柳公權心正筆正之語，故特嘉而賜之。”</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3월 4일 (병진) 1번째기사</p>	<p>정조사(正朝使)22015) 윤효손(尹孝孫)이 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윤효손이 아뢰기를,</p> <p>“동팔참(東八站)22016) 의 노상(路上)에서 신의 의룡(衣籠)이 물에 떨어졌는데, 농(籠)에 작은 틈이 있어서 의복(衣服)이 모두 젖었습니다. 이로써 증험해보면, 표문(表文)·전문(箋文)을 싸고 납보[蠟袱]로 묶을 경우 만약 큰물을 지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스며들어 젖을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청컨대 납후지(蠟厚紙)로 전대를 만들어서 넣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그렇게 하라.”</p> <p>하였다. 윤효손이 또 아뢰기를,</p> <p>“평안도(平安道)의 진(鎭)은 군인(軍人)이 부방(赴防)하는 괴로움이 중하고 또 중국 서울로 가는 각 행차의 짐바리를 호송(護送)하는 등의 일에 사람과 가축</p>	<p>○丙辰/正朝使尹孝孫來復命，上御宣政殿，賜引見。孝孫啓：“東八站路上，臣之衣籠墜水，籠有小隙，衣服皆漏濕。以是驗之，表箋結裹，襲以蠟袱，若過水潦，恐或漏濕。今後請以蠟厚紙，作俗入盛。”上曰：“可。”</p> <p>孝孫又啓曰：“平安道鎭軍人，赴防苦重，且於赴京，各行馱載護送等事，人畜俱困，故潛徙遼東者，不知其幾。臣意以爲，本道軍民，特加撫恤，寬其力役，弛其賦斂，則庶無逃散之弊矣。”上曰：“果如是言，撫恤條件，</p>

이 모두 피곤하기 때문에 몰래 요동(遼東)으로 옮겨 가는 자가 그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본도(本道)의 군사와 백성에게 특별히 무휼(撫恤)을 더하여 그 역역(力役)을 험겁게 하고 그 부렴(賦斂)을 느슨하게 한다면 도망하여 흩어지는 폐단이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의 말이,

“과연 이 말과 같다면 무휼(撫恤)할 조건(條件)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윤효손이 또 아뢰기를,

“신이 중국 황제(皇帝)의 도성에 있을 때 도성 안의 여염(閭閻)에 모두 화포(火砲)를 설치하였는데, 소리는 비록 크나 심하게 진동(震動)하지는 않았습니 다. 아자(牙子)22017) 왕능(王凌)이 신(臣)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에 우연히 그대 나라의 후지(厚紙)를 얻어 포(砲)를 만들어서 화포를 쏘았는데 소리가 매우 굉장하였다. 황제가 놀라서 묻고, 도성 안에 명령을 내려 화포를 쏜 자를 크게 찾았으므로, 내가 도망하여 숨어서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 습니다. 이 말로 보면, 후지(厚紙)를 경솔하게 중국 사람들에게 줄 수 없겠습 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청하는 자가 있어도 후지가 아닌 것으로써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말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효손이 또 아뢰기를,

“신이 국자감(國子監)에 가서 보니 십철(十哲)22018) 은 2위(位)에 한 개의 찬탁(饌卓)을 공유(公有)하고 있었으며, 동무(東廡)·서무(西廡)에도 2위가 한 개의 찬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종사(從祀)는 하나 조탁(俎卓)이 없는데, 더구나 동무·서무이겠습니까? 청컨대 중국 조정의 제도에 의하도록 하소서.”

其令該司議啓。” 孝孫又啓曰：“臣在帝都，都中閭閻，皆設火砲，聲雖大而不甚震動。牙子王凌語臣曰：‘予曩者偶得汝國厚紙，作砲放火，聲甚壯。皇帝驚問，令都中大索放火者，予逃竄得免。’以此言觀之，厚紙不可輕與上國之人。今後雖有請者，以不厚紙與之何如？” 上曰：“然。” 孝孫又啓曰：“臣到國子監見之，十哲二位，共一饌卓，東、西廡亦二位，共一饌卓。我國雖從祀無俎卓，況東、西廡乎？請依中朝制。”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3월 9일 (신유) 2번째기사</p>	<p>하였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地平) 서팽소(徐彭召)가 아뢰기를  “밀양 부사(密陽府使) 허혼(許混)의 일은 내버려두록 명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수령(守令)의 불법(不法)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듯하니, 청컨대 끝까지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신이 들건대, 정석견(鄭錫堅)의 계본(啓本)이 이미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신은 현재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종호(李宗顥)에게 이르기를,  “상세히 말해보도록 하라.”  하니, 이종호가 말하기를,  “이 일은 한림(翰林) 권오복(權五福)이 김일손(金駟孫)에게서 듣고, 김일손은 박용치(朴用致)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경차관(敬差官) 정석견(鄭錫堅)이 그 말이 나온 근본을 찾아서 선군(船軍) 김윤산(金潤山) 등에게 힐문하기를,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마땅히 형신(刑訊)을 더하겠습니다.’하니, 김윤산 등이 그 장(杖)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을 꾸며서 무복(誣服)하기를, ‘어떤 배 2척이 밤에 굴포(掘浦)의 다리를 지나가기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으니 밀양(密陽) 관아라 하였고, 실고 있는 물건을 물으니 기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석견(鄭錫堅)이 다시 국문하니, 김윤산이 또 말하기를, ‘이는 실로 우리들이 보지 못한 바로서 위엄이 두려워 무복(誣服)하였을 따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밀양(密陽)의 관리를 추국(推鞠)하니, 말하기를, ‘본관(本官)은 감사(監司)에게서 명령을 받기를, 장차 겔보리[皮麥]를 실은 배 두 척이 양산(梁山) 등지에 가서 수산 둔전(守山屯田)의 울며 종자와 바꾸려고 할 것이라 하였는데, 절기(節期)가 늦어서 바꾸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한 되</p>	<p>○御經筵。 講訖， 持平徐彭召啓曰：“密陽府使許混事， 命棄之， 臣意以爲， 守令不法， 莫過於此， 請窮治。” 上顧問左右。 領事洪應對曰：“臣聞鄭錫堅啓本已到， 臣時未見之。” 上謂左副承旨李宗顥曰：“詳說之。” 宗顥曰：“此事翰林權五福， 聞之於金駟孫， 而駟孫則聞之於朴用致。 敬差官鄭錫堅， 尋其言根， 詰船軍金潤山等曰：‘若不直言， 當加刑訊。’ 潤山等， 畏其受杖， 飾辭誣服曰：‘有船二艘， 夜過〔掘〕梁， 問其所從來， 則密陽官也， 問其所載之物， 則曰瓦也。’ 錫堅更鞠之， 則潤山又云：‘此實我等所未見， 畏威誣服耳。’ 又鞠密陽吏則曰：‘本官稟於監司， 將皮麥二船， 往梁山等處， 要換守山屯田早稻種， 因節晚未換而還， 以升斗， 散於民間換之耳。’ 錫堅加刑三次， 訊之不服。” 洪應曰：“以人情言之， 許混如欲盜官物， 由陸路潛輸布物甚便， 何必船載瓦爲？ 且一隻之船， 格軍少不下七八人， 見者必衆， 其事必覺， 雖愚者， 亦不爲是也。” 上曰：“此許混爲屯田而爲之。 密陽人，</p>
---	---	---

	<p>[升]씩 한 말[斗]씩 민간에 흩어서 바꾸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정석견이 형문(刑問)을 세 차례나 가하여 신문하여도 불복(不服)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홍응(洪應)이 말하기를,</p> <p>“인정(人情)으로 말하면, 허혼(許混)이 만약 관청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자 하였다면 육로(陸路)를 경유하여 포물(布物)을 몰래 실어나르는 것이 훨씬 편한데, 어찌 반드시 배에 기와를 실었겠습니까? 또 1척의 배에는 격군(格軍)22026)이 적어도 7, 8명을 밀돌지 않아서 보는 자가 반드시 많아 그 일이 필시 발각될 터인데,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허혼(許混)이 둔전(屯田)을 위해서 한 것이다. 밀양(密陽) 사람들이 허혼을 미워하여 헛된 말을 꾸민 것인데, 국가에서 또 그대로 따라 허혼을 죄준다면 옳지 않음이 없겠는가? 그래서 내버려둔 것이다.”</p> <p>하였다.</p>	<p>憎許混，飾虛言，國家又從而罪混，則無乃不可乎？是以棄之。”</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3월 9일 (신유) 4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p> <p>“전 사직(司直) 신찬(辛瓚)은 기첩(妓妾) 석금(石今)을 가까이 사랑하고 정처(正妻) 유씨(柳氏)를 소박(疎薄)하여 탄고(炭庫)에 물리쳐 두고 아침밥이나 저녁밥을 빠뜨리기도 하였고, 그 자신이 직접 땀나물을 하고 물을 길어 밥을 지어 먹는 수고까지 하게 하였으며, 대개 신찬의 한 집안 일은 석금(石今)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자(長子) 신승종(辛承宗)은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일부러 병을 고쳐 치료해 주지 않아서 그 자신이 죽기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신천순(辛天順)은 거짓으로 화자(火者)22028) 라고 일컬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세째 아들 신지순(辛地順)도 참소를 믿고 물리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의 죄는, 율(律)이 장(杖) 90대에다가 고신(告身)을 모두 거두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찬의 죄범(罪犯)은 풍속(風俗)에 관계되니, 청컨대 율(律)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고 먼 지방에 부처(付妻)22029) 하</p>	<p>○司憲府啓：“前司直辛瓚，昵愛妓妾石今，疎薄正妻柳氏，擯置炭庫，饗饗或闕，至令身親薪水之勞，凡瓚一家事，石今專之。長子承宗病臥，故不醫療，致令身死。次子天順，詐稱火者，祝髮爲僧。三子地順，亦信讒屏黜。罪律該杖九十，盡收告身。但瓚罪犯，係關風俗，請依律治罪，遠方付處，以懲後人。”命議于領敦寧以上。沈滄、尹壕議：“依啓目施行何如？”尹弼商、洪應、盧思愼議：“依本律施行何如？”傳于政院曰：“疎薄正妻，有正</p>

	<p>여 훗날의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회(沈澮)·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본율(本律)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정처(正妻)를 소박한 것은 정률(正律)이 있는데, 율외(律外)로 논청(論請)하는 것은 전례(前例)가 있는가? 사헌부(司憲府)에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持平) 서팽소(徐彭召)가 서계(書啓)하기를,  “전 군수(郡守) 유완(柳緩)이 그 첩(妾)을 가까이 사랑하고 정처(正妻)를 소박하여 내쳐서 굶주리고 추위에 얼게 하였으며, 적자식(嫡子息)들도 옷과 음식을 주지 않고 모두 배척하여 버리고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첩으로 하여금 적처(嫡妻)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으므로, 장(杖) 90대에다가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는 것으로 조율(照律)하였었습니다. 이것이 전례(前例)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목(啓目)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律，而律外論請，有前列〔例〕乎？其問憲府以啓。”持平徐彭召書啓曰：前郡守柳緩，昵愛其妾，踈斥正妻，使飢餓寒凍，嫡子息等，亦不給衣食，皆斥去不子，令妾毆傷嫡妻，照律杖九十，遠方付處。此前例也。傳曰：“依啓目施行。”</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3월 9일 (신유) 6번째기사</p>	<p>종묘 난장 수축 도감(宗廟欄墻修築都監)의 제조(提調)와 낭청(郎廳)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여러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맞대해서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이날 경연(經筵)에서 시강(侍講)한 재상(宰相)들도 참여하였다. 도제조(都提調) 노사신(盧思愼)에게 표피(豹皮) 1장(張), 삼합 수철 과자(三合水鐵鍋子) 1부(部), 유석(油席) 1장(張), 각궁(角弓) 1장(張)을, 제조(提調) 정문형(鄭文炯)·이염의(李念義)에게 각기 녹비(鹿皮) 1장, 유석(油席) 1장, 각궁(角弓) 1장을, 낭청(郎廳) 안우삼(安友參) 등에게 각기 유석(油席) 1장, 대전(大</p>	<p>○命饋宗廟欄墻修築都監提調及郎廳，命諸承旨對饋。是日經筵侍講宰相，亦與焉。賜都提調盧思愼豹皮一張、三合水鐵鍋子一部、油席一張、角弓一張，提調鄭文炯、李念義，各鹿皮一張、油席一張、角弓一張，郎廳安友參等，各油席一張、大箭一部。</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3월 11일 (계해) 3번째기사</p>	<p>箭) 1부(部)를 내려 주었다.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문묘(文廟)의 문선왕(文宣王)22030) ·사성(四聖)22031) ·십철(十哲)의 자리 앞에는 중국 조정의 국자감(國子監) 제도에 의하여 찬탁(饌卓)을 아울러 설치 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御書下承政院曰： 文廟文宣王、四聖、十哲座前，依中朝 國子監制，並設饌卓。</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3월 14일 (병인) 1번째기사</p>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익정(趙益貞)이 평해 군수(平海郡守) 이잠(李 箴)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본군(本郡)에 와서 사는 향화(向化)22036) 한 김단다무(金丹多茂)의 고장(告 狀)에 이르기를, ‘국가에서 가사(家舍)·전지(田地)·농우(農牛)·농기(農器) 및 곡 식 종자를 주어서 농사지어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2년 기한으로 구량(口 糧)22037) 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직접 농사지을 줄 몰라서 장차 굶어죽게 되었으니, 청컨대 매부(妹夫) 태호시내(太好時乃)와 조카 동청 례(童淸禮)의 집에 가서 거주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 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기한을 1, 2년을 물려서 삭료(朔料)22038) 를 더 주어 안접(安接)하여 살도 록 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김단다무(金丹多茂)는 연로(年老)하여 농사지을 수 없어서 궁색함이 이미 극 심합니다. 만약 삭료(朔料)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으니, 경중(京中)으 로 옮겨 두고 한 가족이 완취(完聚)22039) 하여 의지해서 살도록 함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적당한지의 여부를 의의(擬議)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 니까?”</p>	<p>○丙寅/江原道觀察使趙益貞，據平海 郡守李箴牒報馳啓：“本郡來居向化金 丹多茂告狀云：‘國家給家舍、田地、 男牛、農器及穀種，使得耕食，且限二 年給口糧。然我等不知自手農業，將 飢死。請往妹夫太好時乃、姪子童淸 禮家住活。’”命議于領敦寧以上。沈 澮、尹弼商、尹壕議：“退限一二年， 加給朔料，令安接居生。”洪應議： “丹多茂年老不能耕作，窮困已極。若 不給料，生理無門，移置京中，完聚一 族，資生何如？”盧思愼議：“令該曹擬 議便否何如？”從應議。</p>



<p>성종 23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3월 20일 (임신) 1번째기사</p>	<p>하니,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이에 앞서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근래에 듣건대, 문신(文臣)으로서 무예(武藝)가 있는 자가 오진(五鎭)의 판관(判官)이 되는 것을 꺼려서 전혀 익히지 않는다고 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문신(文臣)으로서 활을 잘 쏘는 자를 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병조(兵曹)에서 직제학(直提學) 허침(許琛) 등 40인을 아뢰고, 승정원(承政院)에서 또 정랑(正郎) 홍식(洪湜) 등 4인을 택하여 아뢰어서, 합하여 44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후원(後苑)에 모이도록 명하여 과녁을 세 곳에 설치하고 원근(遠近)을 헤아려 사품(射品)을 나누어서 활을 쏘게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 등 14인과 이날 경연(經筵)에 들어와 참여한 재상(宰相), 대간(臺諫), 입직(入直)한 도총관(都總管)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다. 또 승지(承旨)·홍문관원(弘文館員)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고, 술과 풍악을 내려 주었다. 이긴 쪽의 정자(正字) 정자당(鄭子堂) 등 18인에게 각기 활[弓] 1장(張), 황모(黃毛) 10조(條), 먹[墨] 1홀(笏), 베투[硯] 1면(面)을 내려 주었다. 어서(御書)로 ‘상화(賞花)’를 글의 제목으로 하여 율시(律詩)를 짓게 하였다. 임금이 좌랑(佐郎) 이자건(李自健)의 시를 보고 전교하기를, “끝 글귀의 뜻이 조금 좋으니, 마땅히 옥배(玉盃)의 술로써 상주도록 하라.” 하였다. 술이 반 정도 돌았을 때 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기생과 어울려 춤을 추며 희롱하였다.</p>	<p>○壬申/先是, 傳于承政院曰: “近聞文臣有武藝者, 憚於五鎭判官, 專不肄習, 甚不可。 其擇文臣能射者, 以啓。” 兵曹以直提學許琛等四十人啓, 承政院又擇正郎洪湜等四人以啓, 摠四十四人。 至是, 命會後苑, 設貫革三處, 量遠近分射品以射。 令領敦寧以上、廣川君李克增等十四及是日經筵入參宰相、臺諫、入直都總管監之。 又命承旨、弘文館往參, 賜酒樂。 賜勝耦正字鄭子堂等十八人, 各弓一張, 黃毛十條、墨一笏、硯一面。 御書以賞花爲題, 令製律詩。 上覽佐郎自健詩傳曰: “末句意差好, 當以玉盃酒賞之。” 酒半, 右贊成孫舜孝, 與妓雜舞戲謔。</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1일 (계미) 1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겨울과 봄에 비와 눈이 시기에 맞지 않게 내려 양맥(兩麥)22062) 이 모두 말랐으므로 농민(農民)들이 의지할 양식이 부족하여 장차 힘써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도내(道內)의 양맥(兩麥)이 익고 익지 않은 것을 경(卿)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또 농사지을 양식을 나누어 줄 절목(節目)을 마감(磨勘)하여 치계(馳啓)하도록 하라.”</p>	<p>○朔癸未/下書諸道觀察使曰: 冬春雨雪愆期, 兩麥盡枯, 農乏資糧, 將無以力田。 道內兩麥實不實, 卿其更審, 且農糧題給節目, 磨勘馳啓。</p>

	하였다.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6일 (무자) 4번째기사</p>	<p>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부인(夫人) 송씨(宋氏)에게 쌀 30석(碩), 정포(正布) 1백 필(匹), 청밀(淸蜜) 2석(碩), 진유(眞油) 1석(碩)을 내려 주었다.</p>	<p>○賜永膺大君夫人宋氏, 米三十碩、正布一百匹、淸蜜二碩、眞油一碩。</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10일 (임진)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조효동(趙孝全)이 아뢰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사대부(士大夫) 집에서 소주(燒酒)를 드물게 썼는데 지금은 보통 연회(宴會)에서도 모두 쓰므로 낭비가 막심하니, 청컨대 모두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사헌부(司憲府)에서 마땅히 금지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떻겠는가?”  하니, 특진관(特進官) 손순효(孫舜孝)가 대답하기를,  “일일이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어세겸(魚世謙)이 말하기를,  “소주(燒酒)는 비록 낭비한다고 하나 가난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없고, 또 국가에서 어찌 사삿집의 비축을 억눌러서 절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효동이 또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선상 노자(選上奴子)22073) 들이 직접 입역(立役)하지 않고 댓가를 갖추어서 보내며 사대부(士大夫)도 뻔뻔스럽게 받으니, 선비의 풍조가 탐욕스럽고 더러움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손순효·어세겸이 대답하기를,  “외방(外方)의 선상노(選上奴)가 농사철에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 그 관</p>	<p>○御經筵。 講訖, 司諫趙孝全啓曰: “世宗朝士大夫家, 罕用燒酒, 今則尋常宴集, 皆用之, 糜費莫甚, 請禁之。 且官吏在司中, 崇飲者頗多, 請皆禁之。” 上曰: “如此事, 憲府當禁之矣。” 仍問左右曰: “何如?” 特進官孫舜孝對曰: “難以一一禁之也。” 知事魚世謙曰: “燒酒雖曰糜費, 貧者則自不爲也, 國家豈可(樽) [擲] 節私家之儲備乎?” 孝全又啓曰: “諸道選上奴子, 不親立役而備價以送, 士大夫覩然受之, 士風貧黷, 莫甚於此。 竝禁之何如?” 上顧問左右。 舜孝、世謙對曰: “外方選上奴, 如農時不欲上來, 則備送價物于其司, 使閑遊人代役者有矣。 若令一一身親來役, 則不無逃避之弊。” 上曰: “農時不欲上來者, 果多有之, 此事不可禁也。” 世謙啓曰: “今年兩麥盡枯, 雖間有可食處, 百姓恐見奪於公私債, 必不待熟而刈, 明年種子, 何以爲之? 以陳穀貿易事, 預先</p>

	<p>사(官司)에 댓가가 되는 물건을 갖추어 보내고서 한가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역(役)을 대신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일이 자신이 직접 와서 역사(役事)하게 한다면 도피(逃避)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철에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 자가 과연 많이 있으니, 이 일은 금할 수 없다.”</p> <p>하였다. 어세겸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양맥(兩麥)이 모두 말라서 비록 간혹 먹을 만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공사채(公私債)로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반드시 익기를 기다리지 않고 벨 것이니, 내년의 종자(種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묵은 곡식을 사고 파는 일을 미리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措置何如?” 上曰: “可。”</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4월 12일 (갑오)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내관(內官)22076)의 무리가 밤낮으로 대궐 안에 있어서 갑자기 친상(親喪)을 당해도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이것이 불쌍하다. 이제부터 부모(父母)·양부모(養父母)의 상(喪)이면 장번 당상 내관(長番堂上內官)에게는 쌀과 콩을 아울러 8석(碩), 종이 70권(卷), 곱(槩) 하나를, 당하관(堂下官)에게는 쌀과 콩을 아울러 7석, 종이 60권을 내려 주고, 출입번 당상관(出入番堂上官)에게는 쌀과 콩을 아울러 2석, 종이 40권을, 당하관(堂下官)에게는 종이 50권을 내려 주고, 세자궁(世子宮)의 장번 당상관(長番堂上官)에게는 쌀과 콩을 아울러 5석, 종이 60권을, 당하관(堂下官)에게는 쌀 1석, 종이 50권을 내려 주고, 출입번(出入番)에게는 종이 40권을 내려 주도록 하라.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양대비전(兩大妃殿)의 중궁 내관 당상(中宮內官堂上)은 세자궁(世子宮)</p>	<p>○甲午/傳于承政院曰: “內官輩夙夜在內, 卒遇親喪, 未能辦事, 此爲可矜。今後父母、養父母喪, 則長番堂上內官, 給米豆并八碩、紙七十卷、槩一, 堂下官, 米豆并七碩、紙六十卷, 出入番堂上官, 米豆并二碩、紙四十卷, 堂下官, 紙五十卷, 世子宮長番堂上官, 米豆并五碩、紙六十卷, 堂下官, 米一碩、紙五十卷, 出入番, 紙四十卷。文昭、延恩殿、兩大妃殿中宮內官堂上, 依世子宮長番例, 堂下官及昭敬</p>

	<p>장번(長番)의 예(例)에 의하고, 당하관(堂下官)과 소경전(昭敬殿)·자수궁(慈壽宮)·창수궁(昌壽宮)의 내관(內官)은 대전(大殿) 출입번 당하관(出入番堂下官)의 예에 의거하여 주도록 하되, 특은(特恩)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라. 내관(內官)으로서 자신이 죽은 자에게는 부지(賻紙)를 주는데, 만약 그 자신이 2품(品)이 되었으면서 양자(養子)가 없는 자에게는 쌀과 콩을 아울러 4석(碩)을 더 주고, 통정 대부(通政大夫)에게는 쌀과 콩을 아울러 2석을 더 주되, 특은(特恩)으로 내려 주는 것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p>	<p>殿、慈壽宮、昌壽宮內官，依大殿出入番堂下官例題給，若特恩，不在此限。內官身死者，給賻紙，若身爲二品而無養子者，加給米豆并四碩，通政，加給米豆并二碩，特恩之賜，不在此限。”</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13일 (을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윤효손(尹孝孫)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성절사(聖節使)22077) 로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나라의 국경에 들어와서 물줄기가 모두 마르고 양맥(兩麥)이 다 마른 것을 보았는데, 비단 올해의 농사 양식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내년의 종자(種子)도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급하지 않은 비용을 일체 줄이고 오로지 진휼(賑恤)에만 마음을 써서 힘써 농사짓도록 하고, 또 새 곡식으로 바꾸어 주어서 내년의 종자(種子)를 비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경비(經費)를 줄이고 농사 양식을 비축하게 하는 일은 이미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고, 또한 여러 도(道)에 알리도록 하였다.” 하였다. 윤효손이 또 아뢰기를, “신이 중국 사람들을 보니, 풀을 태워 벽돌을 구워서 성(城)을 쌓는 데에 쓰는데, 석회(石灰)로 그 틈을 바릅니다. 장성(長城)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벽돌을 써서 쌓았습니다. 신의 의견에, 의주(義州)는 요동(遼東)에 잇닿아 있어 그다지 멀지 않으며, 토성(土性)이 또한 어찌 별다르겠습니까? 만일 중국 사람들처럼 벽돌을 구워서 쌓는다면 공(功)은 줄어들고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p>	<p>○御經筵。講訖，特進官尹孝孫啓曰：“臣頃以聖節使赴京，還路入本國境，見泉脈皆渴，兩麥盡枯，非徒今年農糧可虞，來年種子亦難。臣意不急之費，一切省減，專意賑恤，使之力田，又換新穀，以備來年種子何如？”上曰：“省經費備農糧事，已令該曹議之，且諭于諸道矣。”孝孫(又)啓：“臣見中原人，燒草燔磚，用以築城，以石灰塗其隙。所謂長城，皆用磚築之。臣意義州抵遼東，不甚遠，土性亦豈頓殊？若如中原人，(礮)[燔]磚築之，則功用省而事易成矣。況石灰產於本州，亦易辦也。”上曰：“其以此意，問於築城使以啓。”</p>

	<p>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석회(石灰)는 본주(本州)에서 나므로 또한 쉽게 갖출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의견을 축성사(築城使)에게 물어 보고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16일 (무술)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경원(慶源)의 죄수인 정병(正兵) 김용산(金龍山) 등 네 사람이 소금을 가지고 야인(野人)의 집에 몰래 따라가서 호마(胡麻)와 서로 바꾼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22082) 에 해당합니다.”</p> <p>하니, 사형(死刑)은 감(減)하도록 하였다.</p>	<p>○戊戌/受常參視事。 刑曹三覆啓” “慶源囚正兵金龍山等四人， 齎鹽潛從野人家， 和買胡麻罪， 律該絞待時。” 命減死。</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16일 (무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전최(殿最)는 6월 15일과 12월 15일마다 입계(入啓)22083) 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그러나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만약 5월 사이에 체임(遞任)된다면 새 감사(監司)가 춘등(春等)·하등(夏等)의 전최에서 날짜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 9, 10월 사이에 이르러서야 하게 되는데, 순찰(巡察)한 지가 오래 되지 않으니 어찌 수령(守令)이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를 다 알고 출척(黜陟)하겠습니까?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동등(冬等)의 전최가 있게 되어 2고(考)가 이미 끝나게 되면 수령이 감사를 오히려 나그네처럼 보고서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감사가 만약 2고(考)를 마치면 비록 개만(箇滿)되지 않았더라도 따라서 즉시 체임시키도록 하고, 그 후 6개월은 새 감사로 하여금 순행(巡行)하여 전최(殿最)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만약 고만(考滿)되지 않고 체임된다면 《대전(大典)》의 법이 허물어집니다. 이제부터 감사(監司)의 포핍(褒貶)에서 그 때에 임하여 체임당한 자는 그 등</p>	<p>○御經筵。 講訖， 特進官鄭文炯啓曰： “殿最每於六月十五日、十二月十五日入啓， 例也。 然諸道觀察使， 若遞於五月之間， 則新監司於春夏等殿最， 夫及日限， 逮九十日間爲之， 巡察不久， 焉能盡知守令之賢否而爲黜哉？ 且不數月， 爲冬等殿最， 二考已畢， 則守令視監司， 猶過客， 專不畏憚， 甚未便。 請今後監司若畢二考， 則雖未箇滿， 隨即遞差， 其後六朔， 使新監司， 巡行殿最爲便。” 上顧問左右。 領事洪應對曰：“若未考滿而遞， 則《大典》之法毀矣。 今後監司褒貶， 臨時見遞者， 待其等褒貶後， 遞之爲便。” 掌令鄭光世啓曰：“監司不計考滿而遞， 果違於法。 然常遞者雖考滿， 殿最後遞差可</p>

(等)의 포품을 기다린 후에 체임시키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장령(掌令) 정광세(鄭光世)가 아뢰기를,  
 “감사(監司)를 고만(考滿)을 헤아리지 않고 체임시킨다면 과연 법에 어긋납니  
 다.  
 그러나 체임하게 된 자가 비록 고만(考滿)되었더라도 전최(殿最)한 후에 체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고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대전(大典)》에 어긋난다. 감사(監司)로서 그  
 때에 임하여 체임된 자는 비록 3고(考)라도 그 등(等)의 전최(殿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광세가 또 아뢰기를,  
 “대개 수령(守令)들이 감사(監司)가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는 돌아보지 않  
 고 오직 지위(地位)가 중한 자면 모두 두려워서 따릅니다. 지금 더러 통정 대  
 부(通政大夫)를 감사(監司)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지위가 중  
 한 자를 감사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정문형(鄭文炯)이 대답하기를,  
 “설혹 2품(品)의 관원이 수령(守令)이 되고 통정 대부인 자가 감사(監司)가  
 된다면 어찌 진압하여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못 일의 대체(大體)에 어긋  
 납니다.  
 또 지위가 낮은 자는 일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으니, 모름지기 지위가 중하고  
 일에 익숙한 자를 택하여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정2품 이상으로서  
 감사(監司)가 된 자는 향렬(行列)에 맞추어 제수한 것이지만, 더러 관직이 3,  
 4품에 이르는 재상(宰相)이나 판서(判書)인 자가 하게 되면 이는 관직을 낮추  
 는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정2품 이상이 본직(本職)을 겸대(兼帶)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也。” 上曰：“不計考滿，違於《大典》。監司臨時遞任者，雖三考，其  
 等殿最，爲之可也。” 光世又啓曰：“大抵守令，不顧監司賢否，唯位重者  
 皆畏服。今或以通政爲監司未便，今後以位重者爲監司何如？” 上顧問左  
 右。文炯對曰：“設有二品員爲守令，通政者爲監司，則何以能鎮服乎？頗有  
 乖於事體。且位卑者，更事不多，須擇位重諳練者，差遣可也。且正二品  
 以上爲監司者，稱行而授之，或有官至三四宰判書者爲之，則是降職也。請  
 今後正二品以上，本職兼帶何如？” 上曰：“可。” 文炯又啓曰：“前者進上，  
 他道則每朔望前、望後封進，江原道每朔一度封進。自曹幹爲監司時，牒問  
 禮曹，禮曹取稟，依他道望前、望後竝進。江原一道，人民鮮少，民甚苦  
 之。” 上曰：“豈以自奉之故，如此勞民乎？依舊例一度封進。” 大司諫李  
 枰啓曰：“今者早暵太甚，兩麥盡枯，穀種又未播，民將饑饉，何以救之？且  
 去冬雷電，(人) [今] 春早乾，天災屢臻，省浮費行祈禱，修省至矣。然而  
 旱氣不減，頓無雨徵，臣甚憂之。” 上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정문형이 또 아뢰기를,  “전자(前者)의 진상(進上)은, 다른 도(道)는 매달 망전(望前)·망후(望後)에 봉진(封進)하고 강원도(江原道)는 매달 1번 봉진하였습니다. 조간(曹幹)이 감사(監司)가 되자 예조(禮曹)에 첩문(牒問)하고 예조에서 취품(取稟)22084) 한 때부터 다른 도에 의하여서 망전·망후에 아울러 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한 도는 백성들이 적어서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어찌 나 자신을 봉양하는 이유로 이와 같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예전 예(例)에 의하여 한 번 봉진(封進)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매우 심하고 양맥(兩麥)이 모두 말랐으며 곡식의 종자도 뿌리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장차 굶주리게 될 터인데, 어떻게 구제해야 하겠습니까? 또 지난 겨울에는 천둥과 번개가 쳤고 올봄에는 가물어서 천재(天災)가 누차 이르렀으므로, 낭비를 줄이고 기도(祈禱)를 행하여 삼가고 조심함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뭄의 기운이 줄어들지 않고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으니, 신은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하늘의 견책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나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영선(營繕)이 너무 과중한 소치는 아닌가?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무릇 무너져서 파손된 곳은 수보(修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병(正兵)의 역사(役事)가 고통스러움을 내가 매우 염려한다.”  하였다.</p>	<p>曰：“天譴至此，予亦罔知其由。無乃營繕太重之致歟？然國家非好爲此，凡頽毀處，不得已修補耳。正兵役苦，予深慮之。”</p>
<p>성종 239권, 21년</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p>	<p>○傳旨議政府曰：“天人一理，有格天</p>

<p>(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17일 (기해) 2번째기사</p>	<p>“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이니, 하늘에 이르는 정성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한다. 예전에 성탕(成湯)이 가뭄을 만나 상림(桑林)에서 기도(祈禱)하며 자신을 매우 절실하게 책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백리숭(百里崇)22097) ·정홍(鄭洪)22098) ·속석(束皙)22099) ·단문창(段文昌)22100) 의 무리는 미약(微弱)한 읍재(邑宰)로서 그 한결같은 정성이 또한 신명(神明)에 합하여 잠깐 사이에 하늘의 하사가 곧 응(應)하였다. 진실로 내가 정의와 공경이 지극하면 어찌 하늘에 이를 이치가 없겠는가? 요즈음 가뭄이 재앙이 되었으므로 마음에 절실하게 두렵게 여겨 낭비를 줄이고 억울한 옥사(獄事)를 풀어 주어 재앙과 견책을 없애 주기를 바랐는데, 신(神)의 감응(感應)이 막연하니, 어찌 나의 정성과 공경이 지극하지 않아서인가? 이달 16일부터 감선(減膳)하고 피전(避殿)하여 스스로를 엄하고 호되게 책할 것이니, 그대들 경사(卿士)는 나의 뜻을 깊이 체득하여 나의 허물을 도와서 하늘의 견책에 답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之誠，則天必應之。昔者成湯遇旱，桑林之禱，責己甚切，天乃下雨，至如百里嵩、鄭洪、束皙、段文昌之輩，以邑宰之微，其一念之誠，亦契神明，指顧之間，玄貺立應。苟我誠敬之至，豈無格天之理？近者乾陽爲災，心切危懼，省浮費伸冤獄，冀消災譴，而神應漠然，豈予誠敬之未至歟？自今月十六日，減膳避殿，痛自刻責，咨爾卿士，深體予意，補予之愆，以答天譴。”</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21일 (계묘) 2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지(柳攄)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성숙(成俶)이 사조(辭朝)22107) 하였다. 전교하기를,</p> <p>“금년에 양맥(兩麥)이 말라서 손상되었으니 농사 양식은 진실로 나누어 주어야 마땅하나, 추성(秋成)22108) 의 손실(損實) 또한 알 수 없다. 만약 국고(國庫)의 미곡(米穀)을 농사 양식으로 모두 흩어 주었다가 가을에 또 실농(失農)하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을 진휼(賑恤)하겠는가? 비록 집에 저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관아(官衙)에게 곡식을 받고자 할 것이니, 모름지기 그 허실(虛實)을 살펴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平安道觀察使柳攄、黃海道觀察使成俶辭。傳曰：“今年兩麥枯損，農糧固當分給，然秋成損實，亦未可知。若國庫米穀，盡散於農糧，而秋又失農，則何以賑恤愚民？雖家有所貯，又欲受穀於官，須察其虛實分給。”</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4월 21일</p>	<p>생원(生員) 이세정(李世靖)이 상소(上疏)하기를,</p> <p>“지난 을사년(22109) 봄에 신의 형 이맹정(李孟靖)이 신을 세 가지 일로 고(告)하여 신을 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사사로이 제사지냈</p>	<p>○生員李世靖上疏曰：去乙巳春，臣之兄孟靖，告臣三事，致臣於罪。一曰，私祭父母，二曰，時</p>



(계묘) 4번째기사

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제(時祭)22110)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째는 어미의 소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신을 가리켜 차마 하였다고 합니다. 무릇 일에는 명분이 같아도 실상은 다른 것이 있으니, 명분만 따라서 실상을 책하게 되면 신의 죄는 진실로 주벌(誅罰)을 면할 수 없을 것이나, 정상을 헤아려서 실상을 살피게 되면 신의 정상은 거의 밝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재야(在野)의 천(賤)한 무리로서 가운(家運)이 쇠퇴하여 나이 9세가 되자, 신의 아버지는 죽고 신의 동생(同生)은 4남 2녀인데, 이맹정(李孟靖)이 장자(長子)가 되고 신은 그 다음에 있으며, 이수정(李受靖)이 또 그 다음이고 이익정(李益靖)이 가장 끝이며, 누이 두 명이 있는데 또한 모두 시집가지 않았으며, 어려서 홀어미를 따라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신은 어려서부터 학업(學業)에 뜻을 두었는데, 신의 어미는 신에게 학업에 힘써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일렀으며 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루 저녁은 울면서 신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과부(寡婦)의 아들이라서 배운 바가 없어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너는 힘쓰도록 해라.’ 하였습니다. 신은 어머니의 교훈을 받들어 학업에 힘써 게으르지 않아 정유년(22111)에 요행히 사마시(司馬試)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의 어미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아들 네 명이 있지만 네가 홀로 나를 위안해 주는구나.’하면서, 마침내 사는 집을 신에게 별도로 주고, 사당(祠堂)을 세운 집을 형 이맹정에게 주면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또 신의 아우 이수정이 장가들지 않았다고 하여 신에게 부탁하고서 혼사(婚事)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아우와 누이에게도 각기 집을 주었는데, 다만 신의 얻은 집이 다른 것에 비해 조금 나았습니다. 이에 여러 누이와 형제들이 혐의를 품고 한성부(漢城府)에 소장(訴狀)을 올렸으나 풀지 못하자 이로부터 혐의를 더욱 굳게 맺었습니다. 또 사헌부(司憲府)에 고하여 세 가지 일을 잘못했다고 굳이 논하였습니다. 신이 변명을 하자니 아우로서 형과

祭不參，三曰，母願不從。此三罪者，皆人之所不忍爲，而指臣爲忍爲也。凡事有名同而實異者，循名而責實，則臣之罪，固不容誅，究情而察實，則臣之情，庶可暴白。臣草莽賤類，門衰祚薄，行年九歲，臣父見背。臣之同生四男二女，孟靖爲長，而臣居其次，受靖又其次，而益靖最末，有妹二人，亦皆未嫁，幼隨寡母，辛勤長養。臣少志學業，臣母謂臣可以力學揚名，鍾愛臣身。一夕，泣謂臣曰：“人謂寡婦之子，不學無行，汝其勉哉。”臣奉承母教，力學不懈，歲在丁酉，幸參司馬試。臣母喜曰：“有子四人，而爾獨慰我。”遂以所居之舍，別給于臣，以立祠之家，給兄孟靖，主祭焉。又以臣之弟受靖，爲未娶，屬之於臣，使主婚焉。諸弟與妹，各給家舍，但臣所得之家，比他差優。於是諸妹昆弟，懷嫌狀訴于漢城府，不得自伸，自後(搆) [搆]嫌益固。又告司憲，執論三事之失。臣欲辨則以弟而爭兄，欲默則恐陷於非辜，臣之進退，實爲狼狽。然與其自白而爭辨於兄，寧自隱忍而反咎於己，故臣不敢求正而俛首就辜。

다투는 것이 되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무고(無辜)한 데에 빠질까 두려워서, 신의 진퇴(進退)가 실로 낭패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밝혀서 형과 다투어 분별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참고서 자신에게 도리어 허물이 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신이 감히 바른 것을 구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서 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가문(家門)을 손상시키고 선조(先祖) 여러 세대의 가풍(家風)을 욕되게 하였으며, 미약한 신(臣) 일신(一身)의 앞길을 막고 오랫동안 죄에 묶여 있게 되어 개과 천선할 기약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성조(盛朝)에서는 너그럽게 정사(政事)를 행하시어 대개 죄없는 사람들이 모두 용서를 받았으니, 감히 세 가지 일을 열거하여 그 연유를 갖추어 진술하겠습니다.

신이 어미의 소원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신의 어미가 죽기에 이르러, 신의 아우 이수정이 미처 장가들지 못하였다고 하여 한스러워하며 흐느껴 울면서 신에게 부탁하여 신으로 하여금 혼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유명(遺命)을 받들어 마음과 힘을 다하려고 기하였으나, 모상(母喪)을 마치도록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집안 식구들이 전염병에 걸려 사람들이 많이 죽고 처자(妻子)가 영락하여 살 곳을 잃고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형과 아우·누이가 혼인을 독촉하였던 것입니다. 대개 혼인은 인륜(人倫)의 시초를 바르게 하는 예(禮)이니, 사람의 도리로서 중한 바입니다. 그런데 신으로 하여금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고 급히 성취시키도록 독촉하고는, 도리어 어미의 소원을 저버렸다고 하여 신에게 죄를 돌리니, 신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신은 항상 생각하건대, 죽은 어미가 신에 대해 사랑이 유독 특별하여 죽은 후의 일을 신에게 부탁한 것은, 대개 신이 평상시에 뜻을 받들고 어짐이 없었으므로 살았을 때나 죽은 후에나 혹시라도 다툼이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얻었다는 이유로 뜻밖의 죄에 무함(誣陷)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애매한 첫번째입니다.

以此敗門喪家，忝祖先累世之家風，錮微臣一身之前程，長在罪辜，自新無期。恭惟盛朝，寬以爲政，凡在非辜，皆蒙矜宥，敢列三事，備陳厥由。謂臣爲母願不從者有由焉。臣母臨死，以臣弟受靖，未及有室，茹恨飲泣，托之於臣，俾臣主醮。臣奉遺命，期盡心力，及闋母喪，未及施措。全家遭癘，人物多喪，妻子瑣尾，播遷失所。于此之時，兄及弟、妹，促成婚娶。夫婚姻，正始之禮，人道所重也。督令臣不擇善惡，急以成之，反以遺棄母願，歸罪於臣，臣尤痛之。臣常念之，亡母於臣，恩愛獨優，而身後之事，托之於臣者，蓋以臣在平日奉志無違，知於存沒，罔或有異也。乃因得家之故，誣陷不測之罪，此臣之曖昧一也，謂臣爲私祭父母者，有由焉。父母神主，不以安於有(杞)〔祠〕堂家，而置之於臣家，臣常奉侍所得節物，不敢先食，必奠主前。夫人子於親，死生如一，凡有飲食，不敢先食者，有所不忍耳。反以私祭，(構)〔構〕成臣罪，此臣之曖昧二也。謂臣爲時祭不參者，有由焉。臣兄孟靖，甲辰仲夏，仲冬時祭

신이 부모에게 사사로이 제사지낸다고 말하는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주(神主)를 사당(祠堂)이 있는 집에 봉안(奉安)하지 않고 신의 집에 두었으므로 신이 항상 받들어 모셨고, 얻는 절물(節物)22112) 은 감히 먼저 먹지 않고 반드시 신주 앞에 제물로 올렸습니다. 대개 사람의 자식된 자는 아버지 에 대하여 죽었거나 살았거나 간에 한결같이 하며, 대개 음식이 있으면 감히 먼저 먹지 못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사로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신의 죄를 얹어 만들었으니, 이것이 신의 애매한 두번째입니다.

신이 시제(時祭)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신의 형 이맹정은 갑진년22113) 중하(仲夏)22114) ·중동(仲冬)22115) 에 시제(時祭)를 지내던 날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갖추어 가지고 뜻밖에 와서 제물을 올렸습니다. 신은 그때 더러 공관(公館)에 있기도 하고 혹은 외방(外方)에 있기도 하여 참석해서 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개 시제라는 것은 기일(忌日)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중(四仲)의 달에 모름지기 길일(吉日)을 점쳐서 친족(親族)들에게 고하고 재계(齋戒)하여 행하는 것인데, 신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밤을 틔타서 제물을 올리고는 도리어 시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에게 허물을 돌리니, 이것이 신의 애매한 세번째입니다.

신이 듣건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더하게 되면 예로부터 구실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어찌 한 마디 말이라도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신의 죄같은 것은 법(法)에 의거하면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울 것이나 정상을 구해보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세 가지 죄를 뒤집어 쓰고 폐(廢)하여 서인(庶人)이 되었으며, 또 과거(科擧)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되어, 원한을 품고 근심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을사년22116) 여름에 정유(精油)를 갖추어 진술하여 정상께 상달(上達)하자, 일을 예조(禮曹)에 회부하였고, 예조에서는 신의 정상을 불쌍하게

之日, 自家備物, 不意來奠。 臣于時或居于館, 或在于外, 而未得參行。 夫時祭者, 非如忌日之有定, 一年四仲之朔, 須卜吉日, 告于族人, 齋戒以行。 而不使臣知, 陵夜以奠, 反以時祭不參, 歸咎於臣, 此臣之曖昧三也。 臣聞加人以罪, 自古不患無辭。 況歲月之久, 豈無一言之可執乎? 如臣之罪, 據法則萬死猶輕, 求情則一毫無疑, 而冒受三罪, 廢在庶人, 且未赴舉, 抱冤憂憫, 無有紀極。 肆於乙巳夏, 具述情由, 上達宸極, 事下禮曹, 禮曹愍臣之情, 啓以許赴, 卽賜允可。 其時政院忽卒之間, 徒執罪名, 不究深情, 復啓不許。 臣知命途多舛, 自分永棄, 終老山野。 臣嘗觀匡章, 中士而通國稱爲不孝, 於陵仲子, 狂士而通國稱爲廉士, 苟非孟子究情而察實, 則匡章未免爲不孝, 仲子終稱爲廉士。 而況兄弟之間, 人情易失, 其於名實之間, 一毫不察, 則孰知是非哉? 臣非以匡章、仲子自喻, 求辨其名實者然也。 且臣所以悉陳無隱者, 非欲其害同氣, 而自出于正也, 不然則不能白臣之情也。

	<p>여겨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아뢰었으므로 즉시 윤허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승정원(承政院)에서 창졸간에 한갓 죄명(罪名)만을 가지고 깊은 정상은 살피지도 않고서 허락하지 말도록 다시 아뢰었습니다. 신은 운명(運命)이 많이 어그러지고 자신의 분수가 영구히 버려져 산야(山野)에서 늙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보건대, 광장(匡章)은 중사(中士)인데도 온나라에서 불효(不孝)하다고 일컬었고(22117), 오릉(於陵)의 진중자(陳仲子)는 광사(狂士)인데도 온나라에서 염사(廉士)라고 일컬었으니(22118), 진실로 맹자(孟子)가 정상을 헤아려서 실상을 살피지 않았으면 광장(匡章)은 불효를 면치 못했을 것이고 진중자(陳仲子)는 끝내 염사(廉士)로 일컬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형제(兄弟) 사이는 인정(人情)을 잃기 쉬우므로 그 명분과 실상의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으면 누가 옳고 그름을 알겠습니까? 신은 광장이나 진중자에 스스로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분과 실상을 분별하고자 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는 까닭은 동생(同生)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올바른 데에서 나온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신의 정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p> <p>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이는 실로 애매하니, 과거(科擧)에 나아가도록 허락하라.”  하였다.</p>	<p>御書曰：“此實曖昧，其許赴試。”</p>
<p>성종 239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4월 21일  (계묘) 5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집(李諱)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삼가 보건대, 입동(入冬) 이래 비와 눈이 없었고 봄부터 여름까지 대단한 가뭄이 재앙이 되어 보리의 싹이 자라지 못해서 농가에 그 소용되는 바가 부족하여 못사람들이 근심하니, 큰 재이(災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경연(經筵)에서 신 등에게 특별히 명하여 그 잘못을 다 말하여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신 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몸으로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이처럼 허저(虛宁)22119) 하는 날을 맞아</p>	<p>○弘文館副提學李諱等上疏曰：  臣等伏見自入冬以來，竝無雨雪，自春迄夏，亢陽爲沴，麥苗不長，農乏其資，群情嗷嗷，可謂大異。近者於經筵，特命臣等，盡言厥失，以補不逮。竊念臣等，俱以無狀，待罪經幄，當茲虛宁之日，敢自緘默。夫爵祿，人主之</p>

	<p>서도 감히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p> <p>대개 작록(爵祿)은 임금의 공기(公器)이니, 명분 없는 은혜로 갑자기 용렬한 자에게 미쳐, 지극히 공정한 데에 누(累)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귀한 왕족(王族)들이 민간(民間)에 흩어져 우거(寓居)하게 되면 묵고 있는 곳의 사람이 더러 작상(爵賞)을 받았습니다. 관작(官爵)은 그 재주에 따르는 것이니, 비록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이 사사로울 데에 관계되면 누가 지극히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임금은 천지(天地)나 일월(日月)처럼 사사로움이 없는 덕(德)으로 조정(朝廷)에서 통치하고 만민(萬民)에게 올바른을 나타내면서도 오히려 실책(失策)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사로움을 보인다면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줌에 있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알(女謁)22120) 이 성한 것도 성탕(成湯)은 오히려 병통으로 여기어 끊고 행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유독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봉보 부인(奉保夫人)22121) 은 일찍이 임금의 몸을 받들어 양육(養育)한 수고가 있어 후에 융성한 은혜를 입었고 마침내 부귀(富貴)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노고에 보답하기에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문호(門戶)를 크게 열어 놓고 접(接)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염치없는 무리로서 붙좃는 자가 여럿이니, 어찌 이익되는 바가 없고서야 그러하겠습니까? 부인(夫人)이 궁궐에 출입하면서 천청(天聽)에 상달(上達)하기 때문인데, 만약 그 말이 한 가지라도 행해짐이 있으면 성덕(聖德)에 흠이 될 것이니, 어찌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임금이 유모(乳母)를 총애하여 사사로울 일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세(當世)에서 비난하였고 후세(後世)에서 기롱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평소에 환하게 알고 계시는 바이니, 조금 더 살피시기를 원합니다.</p> <p>국가에서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방납(防納)22122) 을 엄하게 세워 중한 법에 실어 놓은 것은, 그 권세가 중하여 해(害)가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재물을 탐하는 무리가 권세에 기대어 부정한 이익을 늘리고 있어,</p>	<p>公器，不可以無名之恩，驟及庸瑣，以累至公。自頃以來，金枝之貴，散寓閭巷，所館之人，或得爵賞。爵隨其材，雖若無嫌，事涉於私，誰謂至公？人君以天地日月無私之德，照臨朝廷，表正萬民，猶懼有失，而示之以私，殆非爵人於朝，與衆共之之義也。女謁之盛，成湯猶病，絕而不行，厥惟艱哉？奉保夫人，早奉聖躬，有推燥居濕之勤，後蒙隆恩，卒至富貴，此足酬其勞矣。近者大開門第，多所接引，無恥之徒，趨附者衆，豈無所利而然哉？以其夫人，出入掖庭，上達天聽耳，脫有一售其說，玷污聖德，豈不大哉？古之人主，有寵幸乳媪，干預外事，當世非之，後世譏之。殿下素所洞照，願少加察焉。國家自祖宗朝，嚴立防納，載之重典者，以其權重而害及斯民故也。近者貪饕之徒，依憑權勢，競興浮利，郡邑貢物，家出而官納，指揮守令，侵奪民財者，容或有之。雖不得的知其人，而物論悠悠，漸不可長矣。濟用監麻布之納，多出承傳，而皆在戚里，一家所納，幾至五六百匹，此豈盡是一家所辦哉？不過以富商所有，代納</p>
--	--	---

군읍(郡邑)의 공물(貢物)을 집집마다 내어 관아에서 받아들이는데 수령(守令)을 지휘하여서 백성의 재물을 침해하여 빼앗는 자가 더러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많으니, 조짐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제용감(濟用監)의 마포(麻布)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 승전(承傳)22123)에서 나오는데 모두 척리(戚里)에게 달려 있어, 한 집에서 바쳐야 할 바가 거의 5, 6백 필(匹)에 이르니, 이것이 어찌 모두 한 집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유한 상인이 가진 바를 관아에 대신 바치고 그대로 그 값을 나누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 비록 자질구레하기는 하나 일이 대체(大體)에 관계되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방납(防納)의 폐단을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거핵(擧劾)하게 하여 염치(廉恥)를 힘써 행하게 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알고서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내강(內降)22124)의 명령은 진실로 성상(聖上)의 밝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신하는 예(禮)로써 부리고 형(刑)은 대부(大夫) 이상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임금[元首]과 고굉(股肱)22125)이 서로 일체(一體)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무릇 사대부(士大夫)에게 죄가 있더라도 진실로 큰 일만 아니라면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였으니, 정성껏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염치(廉恥)를 기르는 소이(所以)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범한 바가 비록 작더라도 바로 고신(拷訊)을 쓰니, 만약 죄가 사형(死刑)에 이르지 않는다면 누가 즐겨 포승줄에 묶여서 방략(榜掠)22126) 당하는 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옥사(獄事)를 잘못 써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초래된다면, 이것이 어찌 성실하고 믿음있게 하는 도리겠습니까? 또한 대간(臺諫)은 조정(朝廷)에서 예(禮)로써 공경하는 자들인데, 하루아침에 죄가 있게 되면 곧 본부(本府)에 나아가 법정 아래에서 국문(鞫問)을 당하게 되어 중들의 손에 곤욕(困辱)을 치르게 되니, 이것은 대간(臺諫)을 대우하는 체모(體貌)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조종(祖宗)의 고사

於官，從而分其直耳。此雖猥瑣，事關大體，不可不察也。其防納之弊，令憲府劾舉，以勵廉恥，則爲之者，知懼而白戢矣。若內降之命，固在聖上之睿斷耳。古者使臣以禮，而刑不上大夫者，以元首股肱，相爲一體耳。國家自祖宗朝，凡士大夫有罪，苟非大故，據證定罪，非徒待之以誠，抑所以養其廉恥也。今則不然，所犯雖小，輒用拷訊，若罪不至死，誰肯縈以微纏，以待榜掠者乎？用失獄情，或致冤枉，是豈克允之道乎？且臺諫，朝廷所禮貌者，而一朝有罪，便詣本府，被鞫庭下，困於徒隸人之手，此非待臺諫之體也。伏願循祖宗故事，士大夫有罪，勿輕用拷訊，臺臣有罪，移鞫他司，則下知自重，足以勵士風矣。殿下重傷民力，營繕不贏，一遇旱乾，輒令減省。而月山大君之墓，創開巨剝，役徒數百，功緒難就，至貸國廩，以爲供費。僧學祖，大修海印寺，聚徒作功極其侈麗，經營逾歲，役不斷手。是雖諉以私繕，而財出於民，實蠹于國。況圓覺、內佛、福世、演窟等寺，貯僧不少，而國皆俸養。殿下雖減膳省費，

(故事)에 따르시어 사대부(士大夫)에게 죄가 있으면 가볍게 고신(拷訊)을 행하지 말고, 대신(臺臣)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관사로 옮겨 국문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자중(自重)할 줄 알아서 선비의 풍조를 권장하기에 족할 것이다.

전하께서는 민력(民力)을 손상시키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어 영선(營繕)이 지나치지 않았으며, 한 번 가뭄을 만나자 곧바로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묘(墓)에 큰 절을 창건(創建)하여 역도(役徒)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공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국가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빌려서 비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학조(學祖)는 해인사(海印寺)를 크게 수리하면서 역도(役徒)를 모아 일을 하는데, 사치와 화려함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經營)이 해를 넘기고 역사(役事)가 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비록 사사로운 영선(營繕)을 맡긴 것이지만 재물(財物)이 백성에게서 나오니, 실로 나라를 좀먹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각사(圓覺寺)·내불당(內佛堂)·복세암(福世菴)·연굴(演窟) 등의 절은 모여 있는 중이 적지 않은데 나라에서 모두 봉양(奉養)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감선(減膳)하고 비용을 줄이더라도 밥먹이는 중은 예전과 같으니, 이는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백성들의 근심을 힘써 구휼(救恤)하시어, 이러한 하늘의 경계로 인하여 낭비를 영구히 끊으신다면, 어찌 다스리는 방도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재앙은 망령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축됨이 있어 응(應)한다고 여겨집니다. 《홍범(洪範)》 22127) 에서 서징(庶徵) 22128) 은 각기 종류대로 잇따른다고 하였으니, 비록 예전의 명철한 임금이라도 더러 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자신을 닦는 정성은 예전에도 더 할바가 없었으며, 자신을 책하고 과실을 생각하는 물음이 아래로 신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신 등은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과실을 생각하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마땅히 고치고, 빠뜨린 정사를

而飯僧猶舊，此在不已乎？伏願殿下，勤恤民隱，因茲天戒，永絕浮費，豈不有益於治道哉？臣等伏惟災不妄作，有感而應。 《洪範》庶徵，各以類隨，雖古明王，亦或不免。殿下憂旱修己之誠，古無以加，責己思過之間，下及臣等。臣等伏願殿下，思過未得，得則當改，闕政未聞，聞則當修，一念毋怠，以享天心，則咎徵可轉爲休，災變庶不爲害，而天命申休，五者來備矣。伏惟殿下留神焉。”

御書曰：

予以不德，獲戾于天，謹告滋深，麥已失秋，民方仰賑。念惟以予之咎，民枉罹殃，夜不安寢，食不甘味。欲聞昌言，庶改過愆，而爾等俱以近官，昵侍經幄，不以內事爲嫌，極言無諱。雖有一二過實之事，予安敢有怒哉？當所言而行之，改過不吝。聖人之事，予雖不敏，其敢舍諸？但因孩而得爵，聽謁而行私，其或忘之，未能思得也。麻布之事，頃因金棕之啓，而明諭之矣。臺諫、朝官下鞠之事，是豈予之所樂？勢所不得已也。大君之墓創剝之事，前日已諭之詳，今不復之，然非

듣지 못해서 그렇지 들으면 마땅히 가다듬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을리하지 않아 천심(天心)을 누리게 된다면 재앙의 징조가 좋은 징조로 전환되고 재변(災變)은 거의 해(害)가 되지 않아서, 천명(天命)이 좋은 징조로 펴지고 다섯 가지(五者)22129) 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 하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하늘에 어긋남을 입어 견책이 더욱 심하여져, 보리가 이미 때를 잃어 백성들이 바야흐로 진휼(賑恤)만 우러러 보고 있다. 생각건대, 나의 허물로써 백성들이 억울하게 재앙을 만났으니, 밤에도 편안히 자지 못하고 먹어도 단 맛을 모르겠으므로 좋은 말을 듣고서 과실이나 허물을 거의 고치고자 하였는데, 그대들은 모두 가까이 있는 관원으로 경약(經幄)에서 가까이 모시며 궁중의 일이라도 혐의하지 않고 숨김없이 충분히 말하였다. 비록 한두 가지 사실보다 지나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노하겠는가? 마땅히 말한 바대로 행하여, 주저하지 않고 과실을 고치도록 하겠다. 성인(聖人)의 일을 내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기는 하나, 감히 버리겠는가? 다만 어린아이로 인하여 관작(官爵)을 얻었다고 하고 여알(女謁)을 들어주어 사사로움을 행했다는 것은 더러 잊어버려서 생각해 낼 수가 없다. 마포(麻布)의 일은 지난번에 김중(金棕)이 아뢰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알렸다. 대간(臺諫)과 조관(朝官)을 하국(下鞠)하는 일은, 어찌 내가 즐겨 하는 바이겠는가? 형세가 부득이해서이다. 대군(大君)의 묘(墓)에 절을 창건하는 일은 전날 이미 상세하게 알렸으니 지금 반복하지 않겠으나, 나의 뜻은 아니다. 원각사(圓覺寺) 등의 여러 절을 감소시키는 일은 호조(戶曹)에서 이미 수교(受敎)하였다. 그대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고자 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였다.

我志也。 圓覺等諸寺減省事，戶曹已受敎矣。 爾等竭盡心力，欲補予不逮，予甚喜之。



<p>성종 240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5월 11일 (임술)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제도(諸道)의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물품 중에는 간혹 그 지방의 토산이 아닌데도 백성들로부터 장만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먼 지방에서 구해 오거나 시장에서 매입하여 요구에 응하느라 그 고통이 막심하다. 천신(薦新)22157) 및 양대비전(兩大妃殿)22158) 에 진상하는 물품은 그 수량이 많지 않을 것이니 감할 것이 없고, 대전(大殿)·중궁(中宮)·세자궁(世子宮)에 진상하는 물품으로서 토산물이 아니면서 사다가 진상하는 것은 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傳于戶曹曰：“諸道諸邑進上物膳，或有非其土產而取辦於民，民乃求於遠方，買於市肆，以應副，其苦莫甚。如薦新及兩大妃殿進上物膳，則其數不多，不可減也，大殿、中宮、世子宮所進物膳內，非土產貿易而進者，減之，使民受實惠可也。”</p>
<p>성종 240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5월 14일 (을축) 2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지(柳攄)가 고산리진 첨절제사(高山里鎭僉節制使) 양관(梁瓘)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 4월 25일 야인(野人) 9명이 정세를 살피러 간 우리 나라 사람 이중실(李仲實) 등 3명을 잡아가 동약사(童約沙)가 머물러 주둔한 곳에다 머물게 하고 있었는데,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 이영희(李永禧)가 변(變)을 듣고 즉시 갑사(甲士) 안중문(安仲文) 등 40여 인을 뽑아 발자취를 따라 추격케 하였더니 야인들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이중실 등을 탈취하여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에 보이게 하였다. 심회는 의논하기를, “강변의 여러 진(鎭)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비하여 변에 대비하게 하고, 동약사가 그대로 머물면서 떠나지 않으면 변장들이 군사의 위엄을 보여 강제로라도 본토로 돌려보낼 것을 유시(諭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중실 등이 잡혀 갔던 일은 마땅히 관찰사로 하여금 심문하도록 하고, 또 절도사에게 하유하여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을 더욱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平安道觀察使柳攄，據高山里鎭僉節制使梁瓘牒呈啓：“今四月二十五日，野人九名，搶擄體探人李仲實等三名而去，住於童約沙留屯處。滿浦僉節制使李永禧聞變，卽抄發甲士安仲文等四十人，尋蹤追及之，野人等散走，奪得仲實等而還。” 命示領敦寧以上及議政府、兵曹。 沈澮議：“令江邊諸鎭，整飭軍士待變，童約沙若因留不去，則邊將盛陳兵威，勒還本土事，下諭何如?” 尹弼商議：“李仲實等被虜事，宜令觀察使鞫之。 又下諭節度使，禦防諸事，益加措置何如?” 共應議：“彼人等不得利而去，必更來作賊。 令更加隄備何如?” 李克培議：“彼賊擄李仲實等，屯于童約沙，家前，滿浦僉節制使</p>

	<p>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피인(彼人)22163) 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반드시 다시 와서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더욱 방비를 튼튼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저들 도적들이 이중실 등을 잡아가 동약사의 집 앞에 머물러 두었으니 만포 첨절제사 이영희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추격하여 잡았어야 할 것인데도 변에 대응함이 늦었고, 단지 갑사(甲士) 수십 인만 파견하였으므로 적을 잡지 못하여 군기(軍機)를 잃었습니다. 고산리 절제사 양관(梁瓘)은 이중실 등이 잡혀 갔다는 사실을 급히 만포에 고하여 서로 협공했어야 할 것인데도 늦어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군법으로 논한다면 모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동약사는 도둑들이 자기의 집앞에 와서 주둔하였는데도 즉시 우리에게 달려와 알리지 않았으니, 어찌 성심을 다하여 귀부(歸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근접을 허락할 수 없는 큰 단서입니다.”</p> <p>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관찰사로 하여금 추국(推鞠)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철건은 의논하기를,  “도적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중실 등이 실제로 정세를 살피러 갔다면, 어찌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정세를 살피러 갔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만포 첨절제사 이영희는 직접 추격하여 잡지 않고 군졸만 보내었다가 도적들을 잡지 못하였으니, 또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조정 관원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여 밝힌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적정(敵情)을 살피던 군사가 도적들에게 잡혀 갔으니 변장(邊將)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잡았어야 할 것인데,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머뭇거</p>	<p>李永禧，可卽領兵而進，急行追捕，而緩於應變，只遣甲士數十人，不及掩獲，以失軍機。高山里節制使梁瓘，當李仲實等被擄，急告滿浦，互相掎角可也，而緩不及事，若以軍法論之，俱有罪矣。童約沙，當賊人等來屯家前，不卽馳告於我，豈誠心歸附者乎？此不可許接之大端也。”盧思慎議：“令觀察使，推鞠啓聞後，更議何如？”李鐵堅議：“賊數不多，李仲實等，若實爲體探而去，則豈爲所擄？其言體探，難可信也。且滿浦僉節制使李永禧，不親往追捕，只遣軍卒，不得擒賊，亦有罪矣。別遣朝官，推覈後更議何如？”孫舜孝議：“候望軍，被擄於賊，邊將當卽領兵追捕，而逡巡畏縮，只遣殘卒，其還奪被擄之人，特幸耳。彼人等作耗後，投宿童約沙家前，其勢當與之同謀。然不可一一推劾，伏惟上裁。”李克均議：“臣久戍邊塞，知體探人捉魚逐獸，因此見擄者頗多，鎮將恬不驚怪，習以爲常。仲實等見擄，亦必以此也。李永禧不親往，而只遣軍卒四十人，纔奪被擄三人，不能擒獲賊徒，宜加譴責。童約沙，若誠心歸</p>
--	---	--

	<p>리다가 잔약한 병졸을 보내어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도로 빼앗아 왔으니, 단지 요행일 뿐입니다. 피인(彼人)들이 못된 짓을 하고 난 뒤 동약사의 집 앞에서 투숙했으니 형세로 보아 그들과 동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추핵(推劾)할 수는 없으니,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렸습니다.”</p> <p>하고, 이극균은 의논하기를,  “신이 오랫동안 변방을 지켰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정세를 살피러 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쫓다가 이 때문에 포로되는 자들이 자못 많은데도 진장(鎭將)들은 태연스레 놀라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예삿일로 여깁니다. 이중실 등이 붙잡힌 것 역시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영희는 직접 가지도 않고 단지 군졸 40인만 파견하여 겨우 포로되었던 세 사람만 빼앗아 오고 적도들을 사로잡지 못했으니, 견책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약사가 만약 성심으로 귀순했다면 이중실 등이 잡힌 것을 직접 보았으니 마땅히 와서 변을 고해야 했을 것인데도 지금 계본(啓本)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 강계부사(江界府使)가 추핵(推劾)한 서장을 기다려서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약사가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면, 강을 건너와 머무는 것은 단지 저의 생계를 피하기 위함이며 성심으로 귀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물리치는 것이 가합니다.”</p> <p>하고, 이극돈(李克墩)·권건(權健)·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진장(鎭將)들이 삼가서 조치하지 아니하여 나졸(邏卒)22164) 들이 잡혀가도록 하고, 또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도 3인뿐이 아닐런지도 모르니, 속히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자세하게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다.</p>	<p>順，則目覩李仲實等被擄，當來報變，而今啓本，乃不錄焉，當待江界府使推狀可知矣。若童約沙，知而不告，則留住越邊，只爲謀其生，非誠心歸順明矣，斥之可也。”李克墩、權健、安瑚議：“鎭將不謹措置，致令邏卒被擄，且擄去之數，恐非但三人而已，速遣朝官，詳悉推鞫何如？”</p>
<p>성종 240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5월 15일</p>	<p>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이조양(李調陽)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경의 계본(啓本)에 따라 모든 것을 갖추어 알았다. 동약사(童約沙)가 강 건너에 와서 살지만 어찌 성심으로 효순(效順)하며 국가를 위하는 신민이겠는</p>	<p>○下書平安道節度使李調陽曰：  今具悉卿啓。童約沙，來居江外，豈眞誠心效順，爲國純臣哉？不過失其穡</p>

<p>(병인) 3번째기사</p>	<p>가? 농사가 실패되자 우리의 변경에 의탁하여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니, 몰아내어 장래의 환란을 근절시킴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집을 불태우고 곡식을 짓밟는 것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아 다 같이 사랑하는 의리가 아니다. 이영희(李永禧)는 이러한 기회에 군사를 정제하여 국가의 위엄을 보이고, 또 동약사를 꾸짖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잔악한 병졸로 겨우 잡혀갔던 사람들만 빼앗아 오고 적을 잡아 오지는 못했으니, 어찌 책임이 없겠는가? 이에 이영희를 체직(遞職)시키고 대신 다른 장수에게 사목(事目)을 주어 보낸다. 동약사가 만약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경(卿)은 마땅히 정예한 군사를 뽑아 보내어 그 처자까지 아울러 잡아 와서 가두고는, 온화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엄한 말로 꾸짖기도 하다가, 그래도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라. 또 이것을 관찰사(觀察使) 유지(柳攄)에게도 알리라.” 하였다.</p>	<p>事, 依我邊境, 以冀苟活耳, 固當驅逐, 以絕將來之患。 然而焚蕩廬舍, 蹂踐禾稼, 固非一視同仁之義。 李永禧當此機會, 整率軍卒, 以示國威, 又諛讓約沙, 使知畏懼可也。 而數十殘卒, 僅能奪還所擄, 不能有所捕獲, 烏得無責? 茲遞永禧, 代以他將, 授事目遣之。 約沙如不聽命, 卿宜抄送精兵, 并其妻孥, 拿來囚之, 或溫言以諭之, 或嚴辭以責之, 尙不聽命, 具由馳啓。 又以是諭觀察使柳攄。</p>
<p>성종 240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5월 26일 (정축) 4번째기사</p>	<p>만포 첨사(滿浦僉使) 허혼(許混)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부임한 뒤에 만약 동약사(童約沙)가 즉시 와서 본다면 마땅히 강(江)을 경계로 하여 사목(事目)과 같이 말할 것이지만, 만일 즉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동약사가 즉시 와서 보지 않거든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너희들이 국경에 와서 거주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중국과 국경이 잇대어 있으니 너희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너희들이 이미 성밀에 와서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새로 도입(到任)했다면 예의상 와서 뵈어야 하는데, 어찌 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그 속마음을 떠보는 것이 가하다.” 하니, 허혼이 아뢰기를, “동약사가 만약 명을 듣지 않는다면 신이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p>	<p>○滿浦僉使許混來啓曰: “臣赴任後, 若童約沙卽來謁, 則當使隔江語之, 如事目, 如不卽來, 何以處之?” 傳曰: “約沙不卽來謁, 則當使人語之曰: ‘我聞汝等, 來住境上, 我國, 境連上國, 汝不可留也。 況汝既來寓城底, 則我今新到任, 禮當來謁, 何不爾乎?’ 以是語之, 以觀其志可也。” 混曰: “約沙若不聽命, 臣當率軍渡江, 但麻尙船, 雖連結, 僅容馬二三匹, 如此則軍未易渡, 必至喧擾, 彼必聞風畏懼, 棄妻子挺身登山矣。 如此則何以處之?”</p>

	<p>야 하겠는데, 마상선(麻尙船)을 연결한다고 해도 겨우 말 2, 3필을 용납할 뿐이니, 이래 가지고는 군사들이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하여 반드시 소란스럽게 될 것이고, 저들은 필시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처자를 버리고 자신만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 처자를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가하다.”</p> <p>하니, 허혼이 아뢰기를,</p> <p>“저들이 만약 처자를 거느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 군사는 헛되이 되돌아오게 된다면 국가의 위엄에 손상이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여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렇게 되거든 진을 치고 2,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로 기다리다가 만약 오래 되어도 돌아오지 않거든 군사를 돌리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소문을 듣더라도 무엇이 국가의 위엄을 손상함이 되겠는가?”</p> <p>하였다. 허혼이 아뢰기를,</p> <p>“만약 처자를 거느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면, 그들의 재산·양식·가옥·농작물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가옥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짓밟아버리는 것은 잔혹한 일이니 해서는 안된다. 그대로 두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허혼이 아뢰기를,</p> <p>“신이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주장(主將)에게 보여야겠습니까, 알아야겠습니까?”</p> <p>하고, 전교하기를,</p> <p>“절도사(節度使) 등에게 이미 군사를 선발한다는 뜻을 알렸으니, 지금 그대가 사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첩해서 보고하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p>	<p>傳曰：“其妻子拿來囚之可也。” 混曰：“彼若率妻子登山，我軍空還，則恐損國威，何以處之？” 傳曰：“如此則當結陣，留住二三日，以待其還，若久不來，則還師可也。然則彼雖聞之，何損國威乎？” 混曰：“若率妻子登山，則其財產、糧餉、廬舍、禾稼，何以處之？” 傳曰：“焚蕩廬舍，蹴踏田苗，殘酷不可爲也。置之可也。” 混曰：“臣齋去事目，示主將否乎？” 傳曰：“節度使等，已諭以抄兵之意，今汝事目，不必報之。然移報何妨？” 混曰：“約沙囚繫後，乞還本土，何以處之？” 傳曰：“放之可也。放之猶不卽還，可具辭馳啓。” 混曰：“約沙若不聽命，當依事目，報主將抄兵。然道路阻隔，往來之際，動經旬日，慮或稽緩，何以處之？” 傳曰：“雖如此，當如事目。” 混曰：“約沙若言：‘業已墾田播種，今若入歸，彼此不及，將迫於餓死。’則何以處之？過秋入送何如？” 傳曰：“若過秋入送，則是從其願也，安知復有彼人相踵而來，如此耕種者乎？將來之弊，亦不貲也。” 仍命領敦寧以上及兵曹議之。 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p>
--	--	--

	<p>있겠느냐?”</p> <p>하였다. 허훈이 아뢰기를,  “동약사(童約沙)가 갇힌 뒤에 본토(本土)로 돌아가겠다고 애걸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농아주는 것이 가하다. 농아주는데도 즉시 돌아가지 않거든 내용을 갖추어 치계(馳啓)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허훈이 아뢰기를,  “동약사가 만약 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사목에 따라 주장(主將)에게 보고하고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멀어서 왕래하는 사이에 자칫 10여 일 이상 경과하여 늦추어질까 염려되니, 어떻게 처리하여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그렇기는 하다 하더라도 사목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p> <p>하니, 허훈이 아뢰기를,  “동약사(童約沙)가 만일 ‘이미 농토를 개간하고 파종을 끝냈는데 지금 만약 돌아 간다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여 장차 굶어 죽을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겠습니까? 가을이 지난 뒤에 입송(入送)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가을이 지난 뒤에 들여보낸다면 이는 그들의 원을 따르는 것이니, 다시 저들이 잇달아 와서 이같이 농사를 짓는 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되면 장래의 폐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p> <p>하고, 이어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병조(兵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議: “措置之策備盡, 更無可議。” 盧思慎議: “如此處置, 則威惠竝著, 誠合機宜。 但秋成入送, 臣意以謂似然。 當初來居時, 使不得立屋耕田, 則今雖驅逐, 有何不可? 既不能爾, 而生業已成, 一朝強逐之, 彼棄其垂穫之穀, 得食無處, 則非猶怨我之深, 有乖帝王撫綏之仁。 且彼地無水田, 唯黍粟生焉, 其收穫不過七月。 今許混赴鎮, 在六月之間, 則其還本, 較遲數十日間耳。 不必急迫驅逐, 以失遠人之心。 伏惟上裁。” 李克墩、權健、尹愨、安瑚議: “措置皆當。 但二三日結陣留住事, 揆之事勢, 恐或不可。 虜情難測, 安知不以約沙爲致我之餌也? 今方靈熱, 弓力盡解, 儻有緩急, 欲還則不得渡, 欲禦則不能支, 實非萬全之舉。 臣等妄謂, 約沙若逃走, 移時不還, 則我當還渡江結陣以待之, 約沙若還, 當示更渡之勢。 如此則彼必自困, 斷無安接之理。 姑以此試之何如?” 命召武臣宰相議之。 李鐵堅、卞宗仁、李亨孫、具謙、金伯謙、金彥庚、邊靖、李承祚、韓叔厚議: “事日與許混取粟之辭已盡, 今無可議。” 李</p>
--	---	--

“조치할 방책이 다 갖추어졌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이와 같이 조치한다면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드러나서 진실로 시기와 형편에 합당합니다. 다만 가을 추수 뒤에 들여보내는 것은 신도 그럴 듯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와서 살 때에 집을 짓거나 농사짓는 것을 금하였더라면 지금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생업(生業)을 이미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강제로 쫓아버린다면, 저들은 거의 수확기가 된 곡식을 잃어버리고 식량을 구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우리에 대한 원한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무휼(撫恤)하는 제왕(帝王)의 어짊에도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또 저들 지역에는 논이 없어 기장이나 조가 자랄 뿐이니, 그것들은 7월이면 수확합니다. 지금 허혼(許混)이 진(鎭)에 부임하면 6월 중이 될 것이니,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시기도 겨우 수십일이 늦을 뿐입니다. 급박하게 몰아내어 먼 지역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裁量)하소서.”  
 하고, 이극돈(李克墩)·권건(權健)·윤민(尹愨)·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조치는 모두 합당합니다. 다만 2, 3일 동안 진을 치고 머문다는 것은 사세를 헤아려 보건대,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오랑캐의 정세는 측량하기 어려워 동약사(童約沙)가 우리를 유인하는 미끼인지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매우 [霾]와 더위 때문에 활시위의 탄력이 모두 풀어져서, 만일 급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돌아오려고 해도 강을 건널 수 없고 방어하려고 해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실로 아주 안전한 조치가 아닙니다. 신 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동약사가 만약 도망가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거든 우리는 도로 강을 건너와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약사가 되돌아오거든 다시 도강할 기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스스로 피곤하여 편안히 안주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것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 어

季全議：“西北兩道，境連靺鞨，而永安北道，則本靺鞨之地。國家初設六鎭時，餘種願居城底，捍衛藩屏，故至今給魚鹽、布藿以撫之。然猶奸譎之徒，潛引他種，以擄邊氓，而反言刷還，以爲己功者，比比有之。惟平安一道，靺鞨部落，本與我邊邑懸遠，國家亦閉關不納，故我無一臺之費，彼無寇掠之計。丁亥、己亥兩年之役，師渡于江，雖住江邊二三日，虜未嘗潛師掩襲，舉皆有功。臣愚以爲，虜雖仁義不足，其譎計則有餘。今此童約沙，雖言利其耕墾而來居，其實三衛酋長之謀，陽欲效順，而陰欲探我虛實也。初來立屋耕田時，邊將乘時却逐可也，而陷彼詭謀，遷延至今。況今高山里邏卒，亦必童約沙，謀使族親，潛令擄去。使過己家而奪之，以爲己功，欲免今秋驅逐之計也明矣。不然，擄於水下者，何不直還所居，而更踐近鎭沿江之路，留宿於我國效順者之家乎？今宜數以近居城底，招引儻類，擄我人民之罪，一依上教，譬曉之。然猶不撤其居，而無永返之計，則當率兵往逐之。若逃遁山谷，往來不絕，則宜因此時，節

	<p>땡졌습니까?</p> <p>하니, 무신(武臣)인 재상(宰相)들을 명소(命召)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이철건(李鐵堅)·변종인(卞宗仁)·이형손(李亨孫)·구겸(具謙)·김백겸(金伯謙)·김언경(金彦庚)·변정(邊靖)·이승조(李承祚)·한숙후(韓叔厚)는 의논하기를, “사목(事目)과 허혼(許混)이 품(稟)한 말에 이미 다 구비되었으니, 지금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p> <p>하고, 이계동(李季全)은 의논하기를, “서북 양도(西北兩道)22186) 는 경계가 말갈(靺鞨)22187) 과 접하고 있는데 영안북도(永安北道)는 본디 말갈의 땅입니다. 국가에서 처음 육진(六鎭)22188) 을 설치할 때에 나머지 종족 중에서 성밀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번병(蕃屏)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염(魚鹽)이나 베·미역 등을 주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간혹한 무리들은 몰래 다른 종족들을 끌어들이고, 변방 백성들을 잡아 와서는 도리어 쇄환(刷還)해 왔다고 말하고 그것을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직 평안도는 말갈 부락들이 본디부터 우리 변방 고을과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고 국가에서도 국경을 막고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았어도 저들이 노략질할 계략을 꾸미지 못했습니다. 정해년(22189) ·기해년(22190) 양년의 전역(戰役)22191) 때에는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강변에서 2, 3일 간씩 머물렀는데 오랑캐들은 일찍이 군사를 숨겨서 엄습하지도 못했고 대부분 공이 있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랑캐들은 아무리 인의(仁義)를 베풀어도 부족하고 그들의 간특한 계략만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동약사(童約沙)도 비록 말로는 농사의 이익을 말하며 와서 살지만 사실은 삼위(三衛)22192) 추장(酋長)의 음모로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와서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할 때에 변방 장수가 시기를 보아 물리쳤으면 되었을 것을 저들의 책략에 빠</p>	<p>度使，駐兵滿浦，使滿浦鎭將，日往尋逐，永絕根本，以塞敵人窺覷之謀何如？”傳曰：“說約沙以所種禾稼，待秋來穫可也，又官收其穀，置之本鎭，待彼出來給之亦可也。且使節度使，駐兵滿浦，固不可，但在臨機決策耳。”</p> <p>許混啓曰：“使江界府使金繼宗，率邑兵屯江上，以爲聲援何如？”傳曰：“可。”</p>
--	---	---



	<p>저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하물며 이번의 고산리(高山里) 나졸(邏卒) 또한 동약사가 몰래 저희 친족들을 시켜 잡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을 지나게 하고서 빼앗고는 저들의 공이라고 하여 이번 가을에 몰아내려는 것을 면해 보려는 계략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 아래쪽에서 포로한 자들이 어찌하여 곧바로 그들의 거처로 가지 않고 다시 진(鎭)이 가까운 강변 길을 따라 우리 나라에 효순(効順)한 자의 집에서 유숙(留宿)한단 말입니까? 지금 속히 성 아래에 가까이 사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우리 인마를 사로잡아 간 죄를 한결같이 성상의 하교(下敎)대로 깨우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이 거처를 철거하지 않고 영영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쫓아낼 것입니다. 만약 산골짜기로 도망가서 왕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를 타서 절도사(節度使)는 만포(滿浦)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만포 진장(滿浦鎭將)으로 하여금 날마다 찾아다니며 쫓아내어 근본을 끊어버려 적들이 넘보는 계략을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동약사(童約沙)를 설득하여 가을에 와서 그들이 경작한 곡식을 수확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고, 관에서 그 곡식을 수확해서 본진(本鎭)에 두었다가 저들이 나오거든 주는 것도 가하다. 또 절도사로 하여금 만포에 군사를 주둔케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한 일이고, 다만 상황에 따라 계책을 결정할 뿐이다.”</p> <p>하였다. 허혼(許混)이 아뢰기를,</p> <p>“강계 부사(江界府使) 김계종(金繼宗)으로 하여금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강가에 주둔하면서 성원(聲援)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가하다.”</p> <p>하였다.</p>	
성종 240권, 21년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	○御經筵。講訖，特進官李克墩啓曰：

<p>(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5월 27일 (무인) 2번째기사</p>	<p>이 아뢰기를,  “지금 활 만드는 장인(匠人)을 양계(兩界)22193) 에 보내고 또 활과 창을 만들 나무와 힘줄도 보내라 명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양계에는 활 만드는 장인이 본디 모자라지 않은데 보내는 것은 한갓 국고[國廩]만 허비할 뿐이니,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활과 창 만드는 나무도 양계에 본디 많이 있습니다. 소와 말의 힘줄도 없는 곳이 없으니, 내려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계에 활 만드는 장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사(領事) 심회(沈滄)가 아뢰기를,  “금년에 거둬 세곡(稅穀)은 수량이 매우 많은데, 쌀과 콩을 모두 노천(露天)에 쌓아 놓게 되면 해를 넘길 경우 필경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군자감(軍資監)의 본감(本監) 서쪽 봉상시(奉常寺)의 담 안에 빈 터가 있는데, 여기에다 창고 30여 간을 지어 세곡을 저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자감의 분감(分監)에도 빈 터가 있어 20여 간을 세울 만하니, 이곳에도 창고를 짓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전세(田稅)의 수량이 조종조(祖宗朝)와 비교하여 어떤지 모르겠다. 다만 너무 과다할까 걱정이 된다.”  하였다. 심회(沈滄)가 대답하기를,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승원(李崇元)은 말하기를,  “아무리 많더라도 좋습니다.”  하고, 이극돈(李克墩)은 아뢰기를,  “해마다 풍년이 들었으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조석문(曹錫文)이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되어 건의(建議)하기를, ‘전세(田稅) 중에서 2분</p>	<p>“今命遣弓匠于兩界， 又送弓槩木及筋。 臣意兩界弓匠， 本不乏， 遣之徒費國廩， 請勿遣。 弓槩木， 兩界本多有之。 牛馬筋， 則無處無之， 請勿下送。” 上曰：“兩界弓匠有無， 可問于監司， 節度使而處之。” 領事沈滄啓曰：“今年收稅數甚多， 米豆皆露積， 若經年必至腐敗矣。 軍資本監之西， 奉常寺牆內， 有隙地， 於此構庫屋三十餘間， 貯之何如？ 軍資分監， 亦有隙地， 可造二十餘間， 請於此， 亦構庫屋。” 上曰：“今年田稅數， 未知與祖宗朝何如。 但恐過多也。” 滄對曰：“多多益善。” 知事李崇元曰：“雖多亦好。” 克墩曰：“連歲豐稔， 則必至於此。 世祖朝， 曹錫文爲戶曹判書建議：‘田稅二分納京倉， 一分納州倉。’ 京倉多積最好。” 上曰：“可依所啓。”</p>
---	--	---

	<p>은 경창(京倉)에 납부하게 하고 1분은 주창(州倉)에 납부토록 하자'고 했었는데, 경창에 많이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41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6월 4일 (을유)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주금(酒禁)을 세운 것은 특별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헛된 비용(費用)을 줄이고자 함인데, 어리석은 백성이 우연히 한 병의 술을 마시고서 이로 인해 죄를 입는 자가 많으니, 매우 가금(可矜)하다. 이제 우택(雨澤)이 두루 흠족하고 밭곡식도 이미 익었으니, 주금(酒禁)을 파(罷)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乙酉/傳于承政院曰：“立酒禁，特欲謹天戒省虛費也，而愚民偶飲一壺酒，因此被罪者多，甚可矜也。今雨澤周洽，田穀已實，其罷禁。”</p>
<p>성종 241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6월 12일 (계사) 1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윤은로(尹殷老)의 일에 관계된 김의산(金義山)이 공초(供招)하기를, ‘처음에는 면포(綿布) 60필을 윤은로의 집에 바쳤으며, 후에 오리알[鴨卵]을 바쳤다는 일 등은 전일(前日)에 형장(刑杖)을 두려워하며 무복(誣服)하였을 뿐입니다. 신말동(申末同)의 처소(處所)에는 먼저 면포(綿布) 25필과 가죽[皮] 4장을 바쳤는데, 후에 면포 25필을 바친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고, 한만령(韓萬齡)·한치량(韓致良)은 공초(供招)하기를, ‘윤은로가 돌린 서간(書簡)에 「후추[胡椒]를 정송(呈送)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후추를 싸서 봉(封)하고 윤은로가 서명(署名)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간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윤은로가 비록 스스로 방납(防納)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守令)에게 서간(書簡)을 통하였고, 또 뇌물을 바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수령(守令)과 방납(防納)한 사람들이 이미 복초(服招)하였으니, 모두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도록 하라.”</p>	<p>○癸巳/義禁府啓：“尹殷老事干金義山供云：‘初納綿布六十匹于殷老家。後納鴨卵等事，前日畏刑杖誣服耳。申末同處，先給綿布二十五匹、皮四張，後給綿布二十五匹，則實有之。’韓萬齡、韓致良供云：‘殷老通簡有胡椒送呈之語，胡椒裹封，有殷老署名。其簡則失之。’”傳曰：“殷老雖不自防納，通簡守令，且有贈物，烏得無罪？守令及防納各人已服招，并以時推照律。”</p> <p>【史臣曰：“殷老位至二品，祿厚財豐，猶爲未足，與市井人，防納諸邑貢物，特以威里得免防納之罪，只坐以通書守令，人皆不快。”】</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윤은로(尹殷老)는 지위(地位)가 2품(二品)에 이르러 녹봉(祿俸)이 후하고 재산(財産)도 넉넉했으나, 오히려 만족(滿足)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시정(市井)의 사람들과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했는데, 특별히 척리(戚里)로서 방납(防納)한 죄를 면하고, 단지 수령(守令)과 서간(書簡)을 통한 것으로만 연좌(連坐)되니, 사람들이 모두 불쾌(不快)하게 여겼다.” 하였다.</p>	
<p>성종 241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6월 16일 (정유)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p> <p>“지난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고, 올봄에도 크게 가물어 가을 보리[秋麩]가 모두 상했는데, 또 오랫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봄 보리[麥] 또한 거둘 것이 없으니, 생각해 보건대, 이 허물이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상을 주는 일과 경사스러운 일은 양(陽)에 속하고, 형벌(刑罰)과 위세(威勢)는 음(陰)에 속하는데, 혹 형벌이 마땅함을 잃어서 원기(怨氣)가 한없이 올라갔는지, 혹은 죄수[獄囚]가 오랫동안 엄체(淹滯)되어 여러 사람의 원망(怨望)이 날로 쌓여 한껏 음(陰)을 업어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모든 옥사(獄事)와 모든 삼가할 일이 나의 흠휰(欽恤)22238) 하는 뜻을 본받지 않을까 두려우니, 여러 가지 다른 옥사(獄事)를 자세히 가려서 힘써 귀일(歸一)시키도록 하고, 체포하여 추국(推鞠)할 때 외람되게 미치는 바가 없도록 하라. 오로지 그대 유사(有司)는 하늘의 경계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나의 뜻을 이어받아 삼가 옥사를 살펴서 인정(人情)을 구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힘써 지체되는 것을 처결(處決)하여 재앙(災殃)이 변해 상서(祥瑞)가 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旨議政府曰： 去冬無雪，今春大旱，秋麩盡傷，又因久雨，麥亦無成。惟茲之咎，未知所由。予竊自念，賞慶屬陽，刑威屬陰，或刑罰失中，怨氣旁騰，或獄囚久滯，衆怨日積，結爲窮陰，未可知也。今之庶獄庶愼，恐未能體予欽恤之意，參差獄辭，強欲歸一，逮鞫之際，能無濫及。惟爾有司，敬畏天戒，奉承予意，明愼察獄。哀矜求情，務要決滯，轉災爲祥。</p>
<p>성종 241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6월 20일</p>	<p>이보다 앞서 전지(傳旨)를 내리기를,</p> <p>“효자(孝子)와 열부(烈婦)는 간혹 우부(愚婦)로서 지극히 미천한 자에게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대개 상도(常道)를 지키려는 천성(天性)이 일찍</p>	<p>○先是，下旨曰： 孝子烈婦，或出於愚夫愚婦之至微者，蓋秉彝之天，未嘗泯焉。故一有所激，</p>

(신축) 2번째기사

이 소멸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번 격발(激發)시키는 바가 있으면, 착한 마음이 곧 싹트는 것이니, 더욱이 윗사람이 가상(嘉尙)하게 여겨 장려(獎勵)하는 것이겠는가? 그래서 보고 느껴서 흥기(興起)하는 기쁨이 저절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근래에 도성(都城) 아래에 계산(戒山)이라고 하는 우민(愚民)이 있었는데, 어진 마음[良心]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잠시의 고통을 참고 어미의 목숨을 잇게 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겨 곧 포상(褒賞)하여 장려(獎勵)하였으니, 백성을 교화(教化)하여 풍속(風俗)을 이루는 데에는 이보다 절실한 바가 없다. 그러니 여러 도(道)에 효자와 열부를 널리 물어서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조이(曹伊)라고 하는 밀양(密陽)의 여인이 딸 금지(今之)를 데리고 과부(寡婦)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조이가> 금지를 데리고 집 북쪽 산의 밭에 가서 김을 매고 있는데, 뜻밖에 호랑이가 나타나 <조이를> 잡아 끌고 가니, 금지가 죽을 마음을 먹고 내달아 한 손으로 어미의 다리를 잡고 거의 1백 보에 이르러 주먹에 쥔 돌로 호랑이를 때리자, 호랑이가 내버리고 갔다. 그 어미를 보니, 물린 상처에서 피가 흘러 나오므로, 입고 있던 베로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屍身)을 안고 지키다가, 옷을 팔아 관곽(棺槨)을 사고 예(禮)를 갖추어 장사지냈다 한다. 박기(朴琦)는 영산(靈山) 사람인데, 그 어미 공씨(孔氏)가 광질(狂疾)22262)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지가 9년이 되었는데 온갖 약(藥)을 써도 효험(効驗)이 없으므로, 스스로 왼쪽 무릎 위의 살을 베어 화갱(和羹)22263)을 만들어 바쳐 어미의 목숨을 잇게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도록 보양(保養)하고 있다 한다. 하영정(河永澄)은 초계군(草溪郡) 사람인데, 가계(家計)가 빈궁[貧窶]하여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 아버지가 유행병[時病]으로 죽자, 그 아우 하영청(河永淸)과 함께 몸소 흙과 돌을 저 날라 무덤을 만든 후 3년 동안 여묘살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奠饌]을 마련하기 위해 몸

善念卽萌，況上之人嘉獎之乎？其觀感興起之機，自不能已。近者都下有戒山者，愚民也，良心未泯，能忍須臾之痛，以延母命，予甚嘉之，卽加褒獎，化民成俗，莫切於此。諸道孝子烈婦等，廣聞馳啓之。

是時，曹伊密陽女也，率女子今之寡居焉。一日率今之，往家北山田耕耘，不意虎攬曳去。今之出死心，以一手執母足，幾至百步，以拳石打虎，虎棄之而去。視其母有咬傷血流，以所着衫布淨掃，抱屍而宿，賣衣買槨，以禮葬之。朴琦，靈山人，其母孔氏，得狂疾幾至殞命九年矣，百藥無效，自割左膝上肉，和羹以進，以延母命，至今保養。河永澄，草溪郡人，家計貧窶，無以爲生。其父死於時病，與其弟永淸，親負土石營墳，廬墓三年，朝夕奠饌親自炊爨，至誠哭奠。喪畢後白衣心喪，仍居墓下，朔望致奠，出告反面，無異生時。金允孫，慶州人，一日虎攬其父而去，空手追逐以左手執虎胸，右手衝虎口，擊殺捕虎，其父遂不死，至今存焉。慶尙監司，具由四人之行以聞，命有司，旌門復戶。

	<p>소 불을 지피 밥을 지어 지성껏 슬피 울며 전(奠)드렸으며, 상(喪)을 마친 후에도 흰 옷을 입은 채 상중(喪中)이던 때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묘(墓) 아래에 살면서 삭망(朔望)에 지성껏 전드리며 나가거나 돌아 와서 고(告)하는 것이 살아 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한다. 김윤손(金允孫)은 경주(慶州) 사람인데, 하루는 호랑이가 그 아버지를 물어 가자, 빈손으로 뒤쫓아가서 왼손으로 호랑이의 가슴을 잡고 오른손으로 호랑이의 입을 찢러 때려 죽이니, 그 아버지가 마침내 죽지 아니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보존(保存)하고 있다 한다. 경상감사(慶尙監司)가 4인의 행적(行蹟)을 사유(事由)를 갖추어 계문(啓聞) 하였으므로, 유사(有司)에 명하여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도록 하였다.</p>	
<p>성종 242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7월 8일 (무오)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받은 전교에,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소경전(昭敬殿)에 전물(奠物)이 남는 것이 없으면, 찬(饌)을 받드는 사람이 혹시 넘어져서 엎지를 경우 다시 올리기가 어려우니, 남은 수량을 준비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해 아뢰라.’고 하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세 전(殿)에 각각 한 위(位)의 물선(物膳)을 더 준비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은 위수(位數)가 많으므로 비록 혹시 엎지른다 하더라도 스스로 남은 것이 있으니 올릴 수 있으며, 연은전(延恩殿)과 소경전(昭敬殿)은 단지 한 위(位)뿐이기 때문에 본래 수량을 더한 것이 있으므로, 이제 또 더 준비하면 한갓 허비가 될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돈녕(寧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p>	<p>○禮曹啓: “前承傳教: ‘文昭、延恩、昭敬殿, 奠物無餘, 奉饌人若或顛躓傾瀉, 難以改進, 其備餘數節目, 擬議以啓。’ 臣等以爲, 三殿各加備一位物膳爲便。” 問于承政院曰: “何如?” 承旨等僉啓曰: “文昭殿位數多, 雖或傾瀉, 自有餘剩可進。 延恩、昭敬殿只一位, 故本有加數, 若又加備, 徒爲虛費。” 傳曰: “議于領敦寧以上。”</p>
<p>성종 242권, 21년</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教) 이승건(李承健)에</p>	<p>○傳旨戶曹, 賜弘文館副應教李承健眞</p>

<p>(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7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p>	<p>계 진유(眞油)·청밀(淸蜜) 각 5두(斗), 진말(眞末) 1석(石), 쌀·콩 각 5석, 정포(正布) 10필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油·淸蜜各五斗、眞末一碩、米·豆各五碩、正布十匹。</p>
<p>성종 242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7월 11일 (신유) 2번째기사</p>	<p>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있을 적에 이승조(李承祚)가 쇠못[鐵釘]으로 인하여 죄를 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바로 홍귀달(洪貴達)에게 준 것입니다. 신이 갈려서 돌아올 때에 이승조를 보고 자세히 물어 보았더니 과연 홍귀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이승조를 불러서 묻게 하니, 이승조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나간 을사년(22317) 5월에 양양(襄陽) 본가에 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신을 경상도 수군 절도사(慶尙道水軍節度使)로 제수하였기에 신이 장차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여 본도 관찰사(本道觀察使) 홍귀달을 찾아 보았는데 술을 마시며 옛 일을 이야기하다 홍귀달이 신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가 함창(咸昌)에 있으면서 집을 짓는데 철물(鐵物)을 도와 주기를 바란다.’고 하기에, 신이 허락하고 부임함에 이르러 쇠못 백여 개를 준 것이진실로 신이 스스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경상도 감사에게 글을 내려서, 홍귀달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홍귀달이 아버지 상(喪)을 당하여 함창(咸昌)에 있었다.</p>	<p>○鄭文炯來啓曰：“臣頃爲江原監司，聞李承祚因鐵釘受罪。然非自用也，乃贈洪貴達也。臣遞還見承祚細問之，果贈貴達也。命召問承祚，承祚來啓曰：“臣去乙巳年五月，往在襄陽本家，朝廷授臣慶尙道水軍節度使。臣將上京，見本道觀察使洪貴達，飲酒敘舊，貴達謂臣曰：‘父在咸昌構屋，幸遺鐵物見助。’臣許諾，及赴任，遺以鐵釘百餘介，實非臣自用也。”傳于承政院曰：“其下書慶尙道監司，問貴達以啓。”貴達時居父喪，在咸昌。</p>
<p>성종 242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7월 19일 (기사) 2번째기사</p>	<p>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 이극증(李克增)과 성현(成俔)이 와서 아뢰기를,  “일찍이 석전 제향 관청(釋典祭享官廳)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신 등이 선공 제조(繕工提調)와 더불어 집터를 함께 살펴보니, 정록청(正錄廳) 북쪽에 빈터가 있어서 지을 만합니다. 청컨대 본관(本館)22404)의 노비 공포(奴婢貢布)를 가지고 재목을 준비하게 하소서. 또 문묘(文廟)의 찬탁(饌卓)이 협소(狹少)하여 삭망제(朔望祭)에는 찬(饌)을 드릴 수 있으나 석전제(釋奠祭)에는 찬이 많으므로 할 수 없이 땅에서 드리니 몹시 체모가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만들</p>	<p>○成均館同知事李克增、成俔來啓曰：“釋奠祭享官廳，曾命營構，臣等與繕工提調，共審基址，正錄廳北，有隙地可構。請用本館奴婢貢布，以備材木。且文廟饌卓狹小，朔望祭則可以奠饌，釋奠祭則饌物多，不得已奠於地，甚無體貌。請改造。”傳曰：</p>

	<p>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可。”</p>
<p>성종 242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7월 26일 (병자) 2번째기사</p>	<p>사섬시 정(司贍寺正) 조효동(趙孝叄)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은 외람되게 쇠약한 자질(資質)로 지나친 은혜를 받아 발탁(拔擢)되어 사예(司藝)·사간(司諫)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니, 성은(聖恩)에 감격하나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지난번에 대궐 안에서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진 변고(變故) 때문에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시었으며, 또 하교(下教)하여 바른 말을 구해 빠뜨려진 것과 잘못된 것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어진 사람이 초야(草野)에 묻혀 있다면 시정(時政)의 빠뜨려진 것이 이보다 더함이 없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충신(忠臣)’은 반드시 효자의 집에서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같은 함양(咸陽)에 한 사람의 진사(進士)가 있어 정여창(鄭汝昌)이라고 하는데, 고(故) 함길도 병마 우후(咸吉道兵馬虞候) 정육을(鄭六乙)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 성품이 매우 착해 뜻을 독실히 하여 힘써 배웠습니다. 나이 17세 때에 아버 정육을이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에게 살해[遇害]당하자, 정여창이 부르짖으며 애통해 하다가 거의 생명이 끊어질 뻔하였으며, 난(亂)이 평정되자 그 아버의 유체(遺體)를 쌓인 시신(屍身) 가운데에서 찾아 고향에 돌아와서 장사지내며 집상(執喪)22430) 하기를 더욱 슬퍼하였습니다. 복(服)을 마치자, 조정에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여 예(例)에 따라 군직(軍職)에 서용(敍用)하니, 정여창이 말하기를, ‘아버가 패(敗)함을 받았는데, 아들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은 나라의 은혜가 비록 중할지라도 마음에 진실로 차마 하지 못할 바입니다.’ 하고, 드디어 사양하면서 애모(哀慕)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벼슬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p>	<p>○司贍寺正趙孝叄上言曰：“臣猥以衰朽孱質，過蒙拔擢，歷司藝、司諫，以至今日，感激聖恩，圖報末由。伏念殿下，頃緣闕內震人之變，警懼修省，下教求言，欲聞闕失。臣竊謂遺賢在野，則時政之闕，無踰於此。傳曰：‘求忠臣，必於孝子之門。’臣之同鄉咸陽，有一進士，曰鄭汝昌，故咸吉道兵馬虞候六乙之子也。幼有至性，篤志力學。年十七時，父六乙遇害於逆賊李施愛，汝昌號痛幾絕，亂平求遺體，於積屍之中，還葬於鄉，執喪愈戚。服闋，朝廷以爲，國亡身之子，例敍軍職，汝昌曰：‘父受其敗，而子受其榮，國家之恩雖重，而心實不忍。’遂辭之，哀慕不已，不樂仕進。養其母崔氏，躬親甘旨，未嘗小解。歲癸卯，爲其母舉進士有成，母又欲見登科之榮，遂游太學，儕輩咸尊敬之。歲丙午夏，南歸省母，既到家，則家內疫癘方熾，隣里不通。人皆勸汝昌，次</p>



미 최씨(崔氏)를 봉양(奉養)하되 몸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조금도 헤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묘년(22431)에 그 어미를 위해 진사(進士)에 응시하여 성공하였는데, 어미가 또 과거(科擧)에 오르는 영광을 보고자 하므로, 마침내 태학(太學)(22432)에 유학(游學)하자, 제배(儕輩)가 모두 존경하였습니다. 병오년(22433)에 어미를 보려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이르자, 이미 집안에 여역(癘疫)이 바야흐로 성하여 이웃과 왕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정여창에게 권하여 밖에 머물게 하였으나, 정여창이 듣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가서 그 어미를 보았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어미가 병을 얻어 매우 위중해져서 먹지 못하니, 정여창도 먹지 않고 좌우로 붙든 채 밤에도 옷 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여 일 만에 그 어미가 죽자, 울면서 피를 토하고, 음식을 입에 넣지 아니하여 거의 멸성(滅性)(22434)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사람의 집에 온역(癘疫)이 있으면 반드시 근신(謹愼)을 더하여 모든 일을 폐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온 집안이 화(禍)를 얻게 되는데, 정여창은 뜻대로 행하며 뒷일을 염려하여 꺼리는 바 없이 아침저녁으로 신위(神位)를 모시고 염습(斂襲)과 빈전(殯奠)을 한결같이 예문(禮文)대로 하니, 향리[鄉閭]에서 모두 그가 병에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여창이 일찍이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였는데, 한달이 지나 장례를 치르고 집도 다시 평안해지니 비록 심하게 마르기는 했으나 몸에 병이 없으니, 향리에서 비로소 전염병도 효자는 헤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을 받아 장차 장례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비가 열흘 동안 계속 내려서 개울물이 불어 넘치니,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는데, 하늘이 갑자기 개니 고을 사람이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감사(監司)가 그 행실을 듣고는 고을로 하여금 객판(槲板)(22435)을 준비해 주게 하니, 정여창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백성을 번거롭게 하여 준비해 주는 것을 받으면 원망이 반드시 선모(先母)에게 미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곧 집의 재물을 내어 바꾸어서 썼습

於外，汝昌不聽，徑入見其母。未幾，母得疾甚劇不食，汝昌亦不食，扶持左右，夜不解帶。居十餘日而母沒，哭歐血，勺飲不入口，幾至滅性。凡人家有瘟疫，必加謹慎，百事停廢。不爾則闔門得禍，汝昌徑情而行，不復顧忌，朝夕爲位，斂襲殯奠，一依禮文，鄉閭皆懼其爲疫所染。汝昌曾不小撓，踰月乃葬，家亦復平，雖枯悴之甚，而身亦亡恙，鄉閭始知疫癘之不能害孝子也。卜日將葬，積雨連旬，溪壑漲溢，人懼不克葬，天忽開霽，鄉人尤異之。監司聞其行，令郡辦給槲板，汝昌辭而不受曰：‘煩民取辦，怨必及於先母。’乃出家貨，貿易而用之。人欲營墳，亦不受其助，與其弟汝裕、汝寬，率家隸而襄事，移父墳於同兆。三年苴杖，不出於瑩域，終日危坐，不脫經帶，朝夕哭奠，見者出涕。母生時，畜積有餘，咸陽四隣之民，皆來貸穀，及母沒，汝昌謂其弟曰：‘斂散之際，怨必及民。’盡取斂散文券，投於火，鄉人以爲難也。既大祥，乃投墓前一寺，有更築室之志，遑遑乎如有求而不得，哭泣哀痛，一如初終，鄉老哀之，咸就勸

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만드는 일을 도와 주려고 하였으나, 역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그 동생 정여유(鄭汝裕)·정여관(鄭汝寬)과 더불어 그 집 중을 거느리고 일을 마치고 아버지의 무덤을 옮겨서 무덤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장(苴杖)22436) 이 묘역(墓域)을 떠나지 아니한 채 종일 꿇어앉아서 질대(經帶)22437) 를 벗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곡(哭)하며 전(奠)을 드리니, 보는 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미가 살았을 때에 저축이 넉넉하여 함양(咸陽)의 사방 이웃 백성이 모두 와서 곡식을 꾸어 갔는데, 어미가 죽자 정여창이 그 동생에게 이르기를, ‘곡식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즈음에 백성들에게 반드시 원망이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두고 나누어 준 문권(文券)을 모두 가져다가 불 속에 던지니, 고을 사람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대상(大祥)을 마치고도 계속해서 묘(墓) 앞의 한 절에 머물면서 다시 집을 지을 뜻을 가지고, 허둥지둥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하며 슬피 울며 애통해 하는 것이 한결같이 초종(初終)22438) 과 같이 하니, 고을 늙은이가 민망하게 여겨서 모두 나아가 술과 고기를 권하였으나, 다만 흐느껴 울 뿐이었습니다. 본고을 군수(郡守) 조위(曹偉)가 친히 가서 선왕(先王)의 제도에 맞게 해야 하지 지나치게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힘써 권하자 이를 따랐습니다. 그 어미가 있을 때에 항상 정여창이 살림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서 별도로 곡식과 베[布]를 한 창고에 쌓아두고는 정여창이 쓰도록 하였는데, 어미가 죽자 집안 사람이 가리켜 고하니, 정여창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머니가 계실 때에 내가 어찌 사사로이 재물을 가졌었는가? 내 죄를 중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드디어 상비(喪費)에 다 쓰고 남김이 없었습니다. 평일(平日)에도 《육아(蓼莪)》 22439) 에 말이 미치면 문득 슬피 울면서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집에 본래 노비(奴婢)가 많아서 한 가문(家門)에 거의 1백구(口)가 되었으나, 항상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웃이 감화되어 선량(善良)하게 된 자가 또한 많았습니다. 정여창은 자사(子史)22440) 에 날

酒肉，但涕泣耳。本郡守曹偉親往，語以先王中制，不敢過之義，勉而從之。母在時，常悶汝昌不治生產，別儲穀布於一庫，以擬汝昌之用，母沒，家人指以告，汝昌嘆曰：‘母在時，余豈有私財耶？無重吾罪。’遂供喪費無餘焉。平日言及《蓼莪》，則輒悲泣不能息。其家素多臧獲，一門幾百口，常和好無爭競，隣里之化而爲善良者亦多。汝昌傳通子史，精於禮經，而尤深於性理之學，讀書必以力行實踐爲主，而不規規爲舉業，年幾四十，獨爲聖世之逸民。世有匹夫，或能救其親於水火虎狼之患，以至斷脂療疾，出於一時之倉卒，而比比蒙國家之旌賞，如汝昌，豈持爲一鄉善士乎？求之古人，亦不多得。當今上有堯、舜之君，下有稷、契之臣，相與都兪世底雍熙，無一事之可言。但臣灼知汝昌之高行，故敢薦之，伏望試可乃已。”傳曰：“汝昌制行如此，予今不覺出涕。其速擢用，以示國家旌善之意。”都承旨申從濩啓曰：“更問于其道，知其的實然後，用之何如？”左承旨金悌臣啓曰：“臣知汝昌之爲人，此非溢美也。臣與

리 통하고, 예경(禮經)22441) 에 정통(精通)하고, 더욱 성리학(性理學)에 조예(造詣)가 깊었는데, 글을 읽으면 반드시 힘써 행하며 실천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구구하게 거업(擧業)22442) 을 다스리지 아니하니, 나이가 거의 40인데도 홀로 성세(聖世)의 일민(逸民)22443) 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필부(匹夫)로서 간혹 그 아버이를 수화(水火)와 호랑이의 환란(患難)에서 구(救)하였거나 손가락을 잘라서 병을 치료하였을 경우와 같이 한때의 창졸간에 나온 것까지도 자주 국가의 포상(褒賞)을 받았는데, 정여창과 같은 이는 어찌 다만 한 고을의 착한 선비가 될 뿐이겠습니까? 옛사람에게서 구하더라도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위로는 요(堯)·순(舜) 같은 착한 임금이 있었고, 아래로는 직(稷)·설(契)22444) 같은 어진 신하가 있어서 서로 의논하여 세상이 화하고 밝은 데 이르렀으므로, 한 가지 일도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은 정여창의 높은 행실을 알게 알기 때문에 감히 추천하니, 옳드려 바라건대, 시험해 본 뒤에 그만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여창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내가 이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빨리 뽑아 써서 국가에서 착함을 표창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니, 도승지(都承旨) 신종호(申從濩)가 아뢰기를,  
 “다시 그 도(道)에 물어서 그 적실한 것을 안 뒤에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좌승지(左承旨)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신이 정여창의 사람됨을 아는 바, 이는 지나친 칭찬이 아닙니다. 신이 정여창과 같은 고향인데, 군수(郡守)가 효자로 추천하려고 하자, 정여창이 말하기를, ‘나는 효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울면서 사양하므로 그만두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그를 뽑아 쓰라.”

汝昌同鄉也， 君守欲以孝子薦， 汝昌曰：‘我非孝子也。’ 涕泣辭之乃止。”  
 傳曰：“此豈虛語哉？ 其用之。”

<p>성종 242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7월 26일 (병자) 4번째기사</p>	<p>하였다. 정문형(鄭文炯)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노공필(盧公弼)을 자헌 대부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권건(權健)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김여석(金礪石)을 가선 대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한언(韓堰)을 가선 대부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한건(韓健)을 가선 대부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계남(李季男)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윤궁(尹兢)을 통정 대부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민상안(閔祥安)을 봉훈랑(奉訓郎) 수 사헌부 지평(守司憲府持平)으로, 정여창(鄭汝昌)을 장사랑(將仕郎) 소격서 참봉(昭格署參奉)으로, 유순(柳洵)을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여창이 거상(居喪)22446 을 잘하자 향리[鄉閭]가 감화되었는데, 어떤 갑사(甲士)가 정여창을 본받아 상중에 있으면서 죽을 먹으니, 백정(白丁)이 기롱(譏弄)하기를, ‘정여창을 본받고자 하여 죽을 먹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라고 하였다. 정여창이 일찍이 태학(太學)에 유학할 적에 장관(長官)이 유생(儒生)을 모아 《중용(中庸)》·《대학(大學)》을 강론(講論)하였는데, 정여창이 의심스럽고 어려운 것을 강문(講問)하니, 장관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학궁(學宮)22447 의 노비(奴婢)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아서 유생을 먹이자, 정여창이 의리에 어긋난다 하여 홀로 먹지 아니하니, 여러 동류가 공경하고 어려워하였다.” 하였다.</p>	<p>○以鄭文炯爲資憲戶曹判書，盧公弼資憲吏曹判書，權健嘉善戶曹參判，金礪石嘉善兵曹參判，韓堰嘉善吏曹參判，李季男通政戶曹參議，尹兢通政吏曹參議，閔祥安奉訓守司憲府持平，鄭汝昌將仕郎昭格署參奉，柳洵嘉善同知中樞府事。 【史臣曰：“鄭汝昌善居喪，鄉閭化之，有甲士效汝昌而居喪食粥，白丁譏之曰：‘欲效汝昌食粥，何其艱苦也?’汝昌嘗游大學，長官會儒生講論庸、學，汝昌講問疑難，長官不能對。學宮婢僕，常於朝夕，殺牛餉儒生，汝昌以爲不義，獨不食，諸輩敬憚。”】</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8월 10일 (경인) 2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정괄(鄭恬)이 치계(馳啓)하기를, “함창(咸昌)의 거상인(居喪人) 홍귀달(洪貴達)의 처소에서 이승조(李承祚)에게 못[釘]을 구한 뜻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생존시(生存時)에 사시던 옛집이 퇴락(頽落)하여 보수(補修)하려고 쇠못을 구하였는데 이 해에 강원감사(江原監司)가 되어 양양(襄陽)에 이르렀더니, 우연히 경상좌도 수사(慶尙左道水使) 이승조(李承祚)를 만나게 되어 상대(相對)하여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못을 구하는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아버</p>	<p>○慶尙道觀察使鄭恬馳啓曰：“咸昌居喪人洪貴達處，問求釘於李承祚之意，答云：‘父生存時，所居舊家頽落，欲修補，求得鐵釘，是年爲江原監司，到襄陽，偶見慶尙左道水使李承祚，相對談話間，仍說父求釘意。隔數朔父通書曰：「水使送三寸釘一百二十箇，及海</p>

	<p>지가 통서(通書)하기를, 「수사(水使)가 3촌 못[三寸釘] 1백 20개(箇)와 해물(海物) 한 상자를 보냈으니, 너는 마땅히 치사(致謝)하라。」고 하였습니다.’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이승조의 일은 진실로 애매(曖昧)하니, 이 뜻으로써 대간(臺諫)을 효유하라.”</p> <p>하였다.</p>	<p>物一箱，汝宜致謝。」” 傳曰：“然則承祚之事，誠爲曖昧，其以此意諭臺諫。”</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8월 13일 (계사) 1번째기사</p>	<p>종묘 제조(宗廟提調) 노사진(盧思愼)·이엄의(李念義), 예조 판서(禮曹判書) 신승선(愼承善), 참판(參判) 이육(李陸), 참의(參議) 박미(朴楣) 등이 와서 아뢰기를, “우정(牛鼎)·양정(羊鼎)·시정(豕鼎)은 종묘(宗廟)의 각실(各室)마다 모두 있는데, 유독 영녕전(永寧殿) 1실(室)에만 빠졌습니다. 정(鼎)을 설치함은 대저 각각 제사지내는 고기를 삶으려 함이어늘, 이제 우(牛)·양(羊)·시(豕)의 고기를 각각 포대(布帛)에 담아서 같이 한솥에 삶으니, 제작(制作)한 근본 뜻에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청컨대 예문(禮文)에 의하여 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癸巳/宗廟提調盧思愼·李念義、禮曹判書愼承善、參判李陸、參議朴楣等來啓曰：“牛、羊、豕鼎，宗廟各室皆有，而獨於永寧殿一室闕焉。鼎之設也，蓋欲各烹所祭之肉也，今也牛、羊、豕之肉，各盛布帛，同烹於一鼎，似乖制作本意。請依禮文爲之。”從之。</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8월 13일 (계사) 3번째기사</p>	<p>통진 현감(通津縣監) 최급(崔伋)은 판서(判書) 노공필(盧公弼)과 일가붙이었는데 항상 비위를 맞추어 아첨하고 추부(趨附)하여 관직을 얻었으니, 그가 통진(通津)에 보임됨도 또한 노공필의 힘이였다. 최급이 이를 깊이 은혜롭게 여기어 말할 때마다 반드시 희량(希亮)22507) 을 일컬었는데, 하나의 선미(鮮味)를 얻으면 말하기를, “이것은 희량(希亮)이 즐기는 것이다.”</p> <p>하고, 하나의 새로운 나물[新藪]을 얻으면 또한 말하기를, “희량(希亮)이 즐기는 것이다.”</p> <p>하였다. 평소 사람을 대하고 손님을 접대할 때에 늘 희량(希亮)을 일컬으니, 관리가 처음에는 희량(希亮)이 무슨 물건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가 해가 오래</p>	<p>○通津縣監崔伋，與判書盧公弼，爲族屬，常依阿趨附得官，其補通津，亦公弼之力也。伋深德之，言言必稱希亮，得一鮮味則曰：“此希亮之所嗜也。”得一新藪亦曰：“希亮之所嗜也。”常對人接客，每稱希亮，吏初不知希亮爲何物也，年久乃審其情，一道傳笑。一日郵卒，爲控監司馬者曰：“通津縣有別味。”監司曰：“何物也?”郵卒曰：“有別味曰希亮，太守酷好，常不</p>

	<p>되자 이에 실정을 살피었고, 일도(一道)22508) 에 전파되어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루는 우졸(郵卒)이 감사(監司)의 말고삐를 당기는 자가 되어 이르기를, “통진현(通津縣)에는 별미(別味)가 있습니다.”</p> <p>하니, 감사(監司)가 말하기를, “어떤 물건이냐?”</p> <p>하였다. 우졸(郵卒)이 이르기를, “별미(別味)가 있으면 희량(希亮)이라고 하여, 태수(太守)가 너무 좋아하여 항상 입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p> <p>하니, 그 말이 드디어 전파되어 진신(摺紳)이 기롱하는 바가 되었다. 희량(希亮)은 노공필의 자(字)이다.</p>	<p>出諸口。” 其言遂傳， 爲摺紳所譏。希亮， 公弼字也。</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8월 14일 (갑오) 3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p> <p>“추석 완월연(秋夕翫月宴)을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아뢰라.”</p> <p>하니, 정원(政院)에서 기유년(22510) 에 정부 당상(政府堂上)·경연 당상(經筵堂上)·육조 판서(六曹判書)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승지(承旨)·주서(注書) 등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였을 때 주악(酒樂) 1등(一等)을 내려 준 예(例)를 상고하여서 아뢰니 전교하기를,</p> <p>“한결같이 전례(前例)에 의하라.”</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장악원은 땅이 협소하니, 훈련원(訓練院)에 옮겨 설치함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당상(堂上)·당하(堂下)가 한 곳에 모이면 비단 땅이 협소하여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자는 반드시 마음대로 놀 수가 없을 것이니, 두 곳에 나누어 설치함이 편하겠다.”</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처소(處所)를 나누어서 아뢰기를, “당상(堂上)은 훈련원(訓練院)에, 낭청(郎廳)은 장악원에서 하게 하소서.”</p>	<p>○傳曰：“秋夕翫月宴， 前例考啓。” 政院， 考己酉年政府堂上·經筵堂上·六曹判書、弘文·藝文館、承旨·注書等， 會于掌樂院， 賜酒樂一等例以啓。” 傳曰：“一依前例。” 承政院啓曰：“掌樂院地狹， 移設訓練院何如?” 傳曰：“堂上、堂下會一處， 則非徒地狹難容， 位卑者必不得肆意遊衍， 分設兩處爲便。” 承政院， 分處所以啓曰：“堂上訓練院， 郎廳掌樂院。” 從之。 仍命堂上官會處， 賜酒五十瓶、樂一等， 弘文、藝文館會處， 賜酒三十瓶、樂二等。</p>

	<p>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당상관(堂上官)이 모인 곳에는 술 50병(瓶), 악(樂) 1등(等)을 내려주고,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이 모인 곳은 술 30병(瓶), 악(樂) 2등(二等)을 내려 주었다.</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8월 15일 (을미) 2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들건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홍문관(弘文館)에 완월연(翫月宴)을 내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뇌진(雷震)이 변고를 보이고 바야흐로 또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신 지가 달을 지나지 않았거늘, 온 조정이 연락(宴樂)하여 희롱하여 노는 일을 하면, 그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는 데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나, 다만 중추 절일(中秋節日)을 만난 것뿐이다. 옛사람도 달을 구경한 일이 있었고, 또 진찬(進饌)22512) 을 대비전(大妃殿)에 갖추어야 하는 까닭으로 겸하여 재상(宰相)을 먹이려고 함이니, 내 어찌 이르지 않고서 하겠느냐? 또 한 번 재변(災變)이 있다 하여 끝내 연음(宴飲)하지 않게 되면 어느 때에 즐기겠느냐?”  하니, 유빈(柳濱)이 말하기를,  “뇌진(雷震)·산붕(山崩)·수한(水旱)의 재이(災異)는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습속(習俗)이 본래 유연(遊宴)을 숭상하는데, 이제 재상(宰相)과 시신(侍臣)에게 사악(賜樂)22513) 하여 연락(宴樂)하게 하시면 제신(諸臣)이 이를 본받아 모두 황음(荒淫)하여 법도가 없을까 저어합니다. 절일(節日)이라고 하여서 먹이려 하면 궐내(闕內)에서 먹인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완월(翫月)은 반드시 밤에 하니, 야연(夜宴)을 궐내(闕內)에서 할 수는 없다.”</p>	<p>○司諫院正言柳濱來啓曰：“今聞議政府、六曹、弘文館賜宴翫月。頃者雷震示變，方且恐懼修省，曾未闕月，舉朝宴樂，爲戲玩之事，其於謹天戒何？”傳曰：“爾言是也，但值中秋節日耳。古人有翫月之事，且進饌具于大妃殿，故兼欲饋宰相，予豈無謂而爲也？且一有災變，終不宴飲，則何時而樂歟？”柳濱曰：“雷震、山崩、水旱之災，所當恐懼修省。我國習俗，素尚遊宴，今乃宰相侍臣，賜樂宴樂，恐諸臣效此，舉皆荒淫無度矣。以謂節日而欲饋之，則於闕內饋之何妨？”傳曰：“爾言是矣。然翫月必于夜，不可夜宴于闕內也。”柳濱曰：“古人不得志者或於良辰美景，翫月遣懷，則有之，豈可舉朝爲翫月之戲乎？”傳曰：“爾前言於闕內饋之無妨，翫月則闕內、闕外何異焉？今適國家無事，故欲使宰相一歡耳。昔宋仁宗賞花釣魚，當時不以爲非，今此一日之樂，恐亦無妨。”</p>

	<p>하였다. 유빈이 말하기를,  “옛사람으로 뜻을 얻지 못한 자가 혹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달을 구경하며 회포를 풀 적은 있었지만, 어찌 온 조정이 완월(翫月)하며 희롱하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앞에서 궐내(闕內)에서 먹여도 해로움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완월(翫月)이 궐내(闕內)·궐외(闕外)가 어찌 다르겠느냐? 이제 마침 국가가 무사(無事)한 까닭으로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한 번 즐기도록 하려는 것뿐이다. 옛날에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꽃을 구경하며 고기를 낚았으되 당시의 사람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제 이 하루의 즐거움 또한 무방(無妨)하지 않을까 한다.”  하였다.</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8월 19일  (기해)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송영(宋瑛)·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이약동(李約東)·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홍흥(洪興)·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변수(邊脩)·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성숙(成俶)·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익정(趙益貞)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옛적의 제왕(帝王)은 모두 농사의 여가에 강무(講武)를 일삼았으니, 이는 수선(蒐獮)22515)의 예(禮)에서 말미암아 베풀던 것이었다. 가서 군려(軍旅)를 다스리고 가서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니, 그 일을 돌아보건대, 중하지 아니하냐? 요즈음 연곡(年穀)이 풍등하고 국가(國家)가 한가하니, 그 용병(戎兵)을 다스려 무위(武威)를 펴는 부득이한 것이다. 더구나 이제 영릉(英陵)을 왕배(往拜)하고 그 돌아오는 길에 연도(沿途)에서 강무(講武)하여 구전(舊典)을 거행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느냐? 이제 병부(兵符)를 보내니, 합험(合驗)하여 한번 제색 군사(下番諸色軍士)를 모두 다 조발(調發)하되 내왕하는 노비(路費)를 제외하고 각각 15일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윤9월 초5일에 정금원</p>	<p>○下書京畿觀察使宋瑛、開城府留守李約東、忠淸道觀察使洪興、兵馬節度使邊脩、黃海道觀察使成俶、江原道觀察使趙益貞曰：  古之帝王，皆於農隙，以講武事，此蒐獮之禮所由設也。于以治軍旅，于以薦宗廟，其事顧不重歟？茲者年穀稍登，國家閑暇，其詰戎兵以張武威，在所不得已也。況今往拜英陵，其還也沿途講武，以舉舊典，不亦可乎？今送兵符，合驗下番諸色軍士，悉皆調發，除來往路費，各齎十五日糧來，閏九月初五日，陣于鄭今院之野。待令留防軍</p>



	<p>(鄭今院)의 들에서 진(陣)치게 하라. 대령(待令)한 유방 군사(留防軍士)와 9월 초1일에 미치어서 하번(下番)을 당한 군사(軍士)는 아울러 징발(徵發)한 수(數)에 들지 않는다.”</p> <p>하였다.</p>	<p>士及九月初一日，當下番軍士，並不在徵發之數。</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8월 22일 (임인) 2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진연(進宴)을 받았다. 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술에 취해 나와 어탑(御榻) 아래에 엎드리니, 임금이 내관(內官)을 시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손순효가 말하기를,</p> <p>“신(臣)은 광명(光明)하고 정대(正大)한 말을 아뢰고자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말하라.”</p> <p>하였다. 손순효가 즉시 어탑(御榻)에 올라 한참 동안 계사(啓事)하고는 얼굴을 들고 손을 저으니, 임금이 구부리고서 대답하였으나, 좌우(左右)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또 이미 물러내려와서도 자못 정신이 헛갈려 몸가짐을 잃었으므로, 임금이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부축해 나가게 하였으나, 정승(政丞)·승지(承旨) 등이 또한 계사(啓事)한 것이 무슨 일인가를 알지 못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손순효는 젊어서 거업(擧業)22522) 을 닦고 등제(登第)하였는데 말씨와 용모가 탈속(脫俗)하였으나, 관사(官事)에 임서(臨署)하여서는 무문(舞文)22523) 하고 실상이 적었다. 임금이 일찍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율시(律詩)를 제출하게 하자, 손순효는 단지 충서(忠恕)22524) 두 자(字)만을 써서 올리었다. 임금이 가상(嘉賞)히 여기어, 손순효와 접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경(卿)은 일찍이 충서(忠恕)로써 나를 권려하였다.’고 칭선하였다. 무릇 공사 연집(公私宴集)에서 취(醉)하면 기공(妓工)이 금슬(琴瑟)을 타는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 호무(胡舞)하는 형상을 지었으며, 비록 시연(侍宴)하는</p>	<p>○上御仁政殿，受議政府、六曹進宴。右(參贊) [贊成] 孫舜孝醉酒，出伏御榻下，上使內官，問欲言何事。舜孝曰：“臣欲啓光明正大之言。” 上曰：“言之。” 舜孝卽陞御榻，良久啓事，仰面揮手，上俯而答之，左右未知爲某事。既又退降，頗迷亂失儀，上命內官扶出，政丞、承旨等，亦啓事未知爲何事也。</p> <p>【史臣曰：“舜孝少攻學業登第，言貌脫俗，然臨署官事，舞文少實。上嘗命儒臣，製律詩，舜孝只寫忠恕二字以進。上嘉賞，有與舜孝接則必稱：‘卿嘗以忠恕勸我。’凡公私宴集，醉則妓工琴瑟間必起作胡舞之狀，雖至侍宴，或醉呼曰：‘吾君堯、舜也。’仁粹王妃，嘗以錦囊赤芾，出頒宰樞，舜孝之行酒也，分佩犀帶下，垂於膝，時人未保其純正自然。”】</p>

	<p>데 이른다 할지라도 혹 취하여 부르기를, ‘우리 인군은 요(堯)·순(舜)이다.’고 하였다. 인수 왕비(仁粹王妃)가 일찍이 금낭(錦囊)과 적불(赤芾)을 재추(宰樞)에게 내려 주었는데, 손순효가 술을 돌리며, 서대(犀帶) 아래에다 나누어 차고 무릎에 늘어뜨리니, 당시 사람들이 그 순정(純正)하고 자연(自然)스러움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였다.</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8월 23일 (계묘) 1번째기사</p>	<p>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래 쇠병(衰病)한데다 또 술을 마시고 혼취(昏醉)하여, 어제 아뢰던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승(政丞)이 신(臣)의 실례(失禮)한 일을 논한 것만은 압니다. 신의 죄(罪)는 만 번 죽어야 하오니,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시고, 신(臣)이 본직(本職)을 받은 지 이제 이미 4년이 되었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취중(醉中)의 말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그러니 대죄(待罪)하지 말라. 또 관직(官職)이 어찌 반드시 한 사람이 오래 있어야 할 것인가마는, 이제 만약 사면(辭免)을 수리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대죄(待罪)하여서 체임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p>	<p>○癸卯/右贊成孫舜孝來啓曰: “臣本衰病, 且飲酒, 不覺昏醉, 昨日所啓, 未能記憶。 但知政丞, 論臣失禮之事。 臣罪萬死, 請待罪, 臣受本職, 今已四年, 請辭。” 傳曰: “醉中之言, 何過之有? 其勿待罪。 且官職, 何必一人長居乎, 但今若受辭免, 則人必以爲待罪而遞, 故不聽。”</p>
<p>성종 243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8월 27일 (정미) 6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전번에 강원 감사(江原監司)가 평해(平海)·울진(蔚珍)의 두 고을은 수손(水損)으로 인하여 곡식이 여물지 않으니 자등제(字等第)로써 하기를 청하여, 그 일을 본조(本曹)에 내리셨는데, 요즈음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양도(兩道)가 또 자등제(字等第)로써 하기를 청하여, 그 고을의 많기가 수십(數十)에 이르릅니다. 아뢰는 것대로 따르면 법(法)에 해로우까 저어하니, 청컨대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면등제(面等第)는 바로 이미 이루어진 법이다. 그러나 1면(面) 안에서도 풍</p>	<p>○戶曹判書鄭文炯來啓曰: “前者江原監司, 以平海、蔚珍兩邑, 因水損, 禾穀不實, 請以字等第, 下其事于本曹。 今者全羅、慶尙兩道, 又請以字等第, 其邑多至數十, 從所啓則恐妨於法。 請勿許。” 傳曰: “面等第, 乃已成之法也。 然一面之內, 豐歉不齊, 從其豐者則妨於失業之民, 從其歉者則損於軍國之用, 字等第, 似可行也。 然於</p>

흥이 고르지 않아, 그 풍년든 것을 따르면 실업(失業)한 백성에 해롭고, 그 흉년든 것을 따르면 군국(軍國)의 소용에 손해가 되니, 자등제(字等第)를 행함이 옳을 것 같다. 그러나 법에 해로움이 있으면 경이(輕易)하게 거행(舉行)할 수 없으니, 오늘 재상(宰相)들이 모두 예궐(詣闕)하거던 그것을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희(沈澮)·윤필상(尹弼商)·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연분(年分)22547)은 비록 면등제(面等第)라 하더라도 재상(災傷)을 답험(踏驗)하여 면세(免稅)하는 법(法)이 스스로 있으니, 어찌 민원(民怨)이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하여 분경(紛更)이 없도록 함이 거의 대체(大體)에 합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자등제(字等第)가 불가(不可)한 것은 전의(前議)에 이미 다하였습니다.”

하고, 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경솔히 공법(貢法)을 개정함은 미편(未便)합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연분(年分)이 고르지 않아, 일률적으로 심정(審定)함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법(貢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고 만세(萬世)토록 준행(遵行)하여야 하니, 한때의 소견(所見)으로써 경솔히 개정함은 불가(不可)합니다.”

하고, 이계동(李季叟)·오순(吳純)은 의논하기를

“면등제(面等第)의 법(法)은 이미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한두 고을의 폐해로써 경솔히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자등제(字等第)는 한 번 그 단서를 열면 뒤에 따라서 계청(啓請)하는 자를 다 따르기가 어렵다. 또 답험(踏驗)하는 사람이 어찌 모두 공정(公正)하겠느냐? 혹 손(損)을 실(實)이라 하고 혹은 실(實)을 손(損)이라 하여 그 폐단이

法有妨，不可輕易舉行，今日宰相等皆詣闕，其議之。”沈澮、尹弼商、安瑚議：“年分雖面等第，踏驗災傷免稅，自有其法，有何民怨？一依《大典》，毋使紛更，庶合大體。”盧思愼議：“字等第不可事，前議已盡。”李鐵堅議：“輕改貢法未便。”孫舜孝議：“年分不齊，一概審定未穩。然貢法載在《大典》，萬世遵行，不可以一時所見輕改。”李季全、吳純議：“面等第之法，已載《大典》，未可以一二邑之弊而輕改也。”傳于戶曹曰：“字等第一開其端，後之蹤而啓請者，難以悉從。且踏驗之人，豈皆公正？或以損爲實，或以實爲損，不無其弊，其依《大典》面等第。”

	<p>없지 않으니, 그 《대전(大典)》의 면등제(面等第)에 의거하라.” 하였다.</p>	
<p>성종 244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9월 9일 (무오) 1번째기사</p>	<p>훈련원(訓練院)에 기영연(耆英宴)을 내려주고, 경연관(經筵官)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조궁(別造弓) 3장(張), 표피(豹皮)·백녹피(白鹿皮) 각각 2장(張), 흑칠룡(黑漆籠) 1사(事), 노구(爐口) 1부(部), 호초(胡椒) 10두(斗)를 내려주고, 명하여 투호(投壺)22586) 로써 내기하게 하였다. 이어서 북소(北所)에 입직 제장(入直諸將)과 승정원(承政院)을 사연(賜宴)하고, 또 호피(虎皮) 2장(張), 별조궁(別造弓) 2장(張), 마장(馬粧) 2부(部), 사의(蓑衣) 1부(部), 호초(胡椒) 10두(斗)를 내려 주고, 또한 투호(投壺)로써 내기하게 하였다.</p>	<p>○(戊子) [戊午] /賜耆英宴于訓練院, 命經筵官往參。 賜別造弓三張、豹皮·白鹿皮各二張、黑漆籠一事、爐口一部、胡椒十斗, 命以投壺賭之。 仍賜宴入直諸將承政院于北所, 又賜虎皮二張、別造弓二張、馬粧二部、蓑衣一部、胡椒十斗, 亦令以投壺賭之。</p>
<p>성종 244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9월 19일 (무진) 2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사노(私奴) 오망(吾亡) 등의 장고(狀告)에 이르기를, ‘덕산 현감(德山縣監) 지준(池浚)이 홍주 여기(洪州女妓) 오비(烏非)를 사통(私通)하여 무릇 의복(衣服)과 수식(首飾) 등의 물건을 다 관물(官物)로써 갖추어 주었고, 또 관물(官物)을 가지고 아내(衙內)에서 사용(私用)한 것이 많았다.’ 하며, 이제 본현리(本縣吏) 이문옥(李文郁)이란 자가 본고을의 쌀 1백 50석(碩)을 배에 실어 경강(京江)에 이르러 정박(碇泊)하였음은 일이 장오(贓汚)에 관계되니, 청컨대 모든 사물에 정통한 조관(朝官)을 뽑아, 어사(御史)의 직함(職銜)을 띠어 보내어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준(池浚)이 범(犯)한 바가 심히 불법(不法)하니, 개차(改差)하고 잡아와서 국문(鞫問)함이 어떠하냐? 조관(朝官)을 보내면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헌부(憲府)에 물어보라.”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계동(李季叟)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뜻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다만 일에 간여된 자가 많아서 나치(拿致)하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조관(朝官)을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이제 상교(上</p>	<p>○司憲府啓: “私奴吾亡等狀告云: ‘德山縣監池浚, 私洪州女妓烏非, 凡衣服首飾等物, 率用官物備給, 又將官物, 私用衙內者多。’ 今有本縣吏李文郁者, 將本邑米一百五十碩, 載船到泊京江, 事干贓汚, 請擇諳鍊朝官御史帶銜, 發遣鞫之。” 傳于承政院曰: “池浚所犯, 甚不法, 改差, 拿來鞫之何如? 遣朝官無乃有弊乎? 其問于憲府。” 大司憲李季全等啓曰: “臣等之意亦如此。 但事干者多, 拿致爲難, 故請遣朝官, 今聞上教甚當。” 傳曰: “其速改差, 拿來鞫之。”</p>

	<p>教)를 들으니, 심히 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를 빨리 개차(改差)하고 잡아다가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44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9월 21일  (경오)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부연(赴宴)한 사족 부녀(士族婦女)는 각각 한 작위를 더하고, 그 나머지의 부녀(婦女)는 각각 면포(綿布) 1필(匹)을 주며, 병으로 잔치에 나오지 못한 자는 주식(酒食)과 면포(綿布)를 주라.”  하였다.</p>	<p>○傳曰：“赴宴士族婦女各加一爵，其餘婦女各給綿布一匹，病未赴宴者，賜酒食及綿布。”</p>
<p>성종 244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9월 25일  (갑술) 2번째기사</p>	<p>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이념의(李念義)가 와서 아뢰기를,  “묘중(廟中)에서 일찍이 찬탁(饌卓) 9좌(坐)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들으니 고(故) 사약(司鑰) 강승통(姜承統)의 집에 1좌(坐)가 있다고 하여 물어보니, 수복(守僕)22606 이 판 것이라고 합니다. 청킨대 사람을 보내어 수탐(搜探)하소서.”  하니, 명하여 선전관(宣傳官) 이승언(李承彦)을 보내었다. 강승통의 집에 이르러 탁(卓) 2좌(坐), 변(籩) 1사(事), 백자완(白磁碗) 50개(箇)를 수득(搜得)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게 하였다.</p>	<p>○宗廟署提調李念義來啓曰：“廟中曾失饌卓九坐，今聞故司鑰姜承統家有一坐，問之則守僕所賣。請遣人搜探。”命遣宣傳官李承彦。至承統家，搜得卓二坐、籩一事、白磁碗五十箇，下義禁府鞫之。</p>
<p>성종 244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9월 28일  (정축) 2번째기사</p>	<p>도순찰사(都巡察使) 성건(成健)이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하기를,  “남포(南浦) 땅의 마량(馬梁)에 정박(碇泊)한 병선(兵船)은 조수(潮水)가 차면 뜨고, 조수(潮水)가 물러 가면 물에 있어 위급(危急)한 때에 쓰기는 어려우나, 적선(賊船)도 또한 반드시 조수를 타고서 오게 되니, 이 때에 우리도 또한 응변(應變)할 만합니다. 또 그 지역은 산(山)이 둘러 있고 물이 넓어서 배를 감추어 둘 만합니다. 도둔곳[都菴串]은 비록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라 하더라도 배를 정박하는 곳이 알개 드러나 조수가 물러 가면 배는 마땅히 물에 있게 되니, 마량(馬梁)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오나 마량(馬梁)은 본시 긴요한 곳이니, 진실로 이를 버리고 다른데로 옮길 수 없으므로, 그전대로 둬서 편하</p>	<p>○都巡察使成健復命書啓曰：  藍浦地馬梁所泊兵船，潮滿則浮，潮退在陸，緩急難用，然賊船亦必乘潮而來，則此時吾亦可以應變。且其地山回水廣，可以藏船。都菴串雖曰賊路要衝，泊船處淺露，潮退則船當在陸，無異馬梁。馬梁本是繁處，固不可舍此移彼，仍舊爲便。都菴串亦不可無備，故前此稱助戰所，馬梁軍官一人，</p>

했습니다. 도둔곶[都菴串]도 또한 방비(防備)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이전에 조전소(助戰所)라고 일컫고, 마량 군관(馬梁軍官) 1인이 병선(兵船) 1척(隻)과 수군(水軍) 30명을 거느리고 나누어 방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병선(兵船) 1척(隻)만으로 요해지(要害地)를 수비(守備)하기란 심히 고단(孤單)하니, 모름지기 마량진(馬梁鎭)의 소맹선(小猛船) 2척(隻)과 수군(水軍) 60명을 더 보내어 방어(防禦)하도록 하소서.

옥구(沃溝)·군산포(群山浦)와 서천(舒川)은 단지 1포(浦)만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의 바닷길은 겨우 수리(數里) 남짓합니다. 서천포(舒川浦)는 해구(海口)에 당(當)하고, 군산포(群山浦)는 약간 내지(內地)에 있어 형세로 보면, 서천포(舒川浦)가 첫길[初路]에 있으므로 군산포(群山浦)는 험과할 만합니다. 그러나 부안(扶安) 검모포(黔毛浦)로부터 다음이 군산(群山), 다음이 서천(舒川)이니, 3진(鎭)이 열치(列置)하여 검모포(黔毛浦)로부터 군산포(群山浦)까지는 수로(水路)가 몇 백여리나 됩니다. 만약 군산포(群山浦)가 없어서 그 사이에 적(賊)이 일어나면 서천포(舒川浦)는 구원(救援)하는 데 미치기에 어려울 것 같으며, 비록 옥구(沃溝)의 진영(鎭營)이 있더라도 배가 없으면 또한 응변(應變)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산포(群山浦)는 옥구(沃溝)·임피(臨陂)의 요충에 당(當)하며, 서천진(舒川鎭)은 서천(舒川)·한산(韓山)의 요충에 당(當)하니, 관계된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직 군산포(群山浦)는 서천(舒川)·검모(黔毛) 양포(兩浦)의 중앙(中央)이 아니어서 적로(賊路)의 요해(要害)한 땅이 아닌 것 같으나, 진(鎭)을 옮겨서 당해낼 만한 곳이 없으니, 이제 경이하게 험과할 수는 없습니다. 용안(龍安) 덕성창(德城倉)은 포구와 가까워 쌀을 운반하여 배에 싣기가 편이(便易)한데다 또 조선(漕船)이 정박하는 곳은 산(山)이 둘러 있고 물결이 잔잔[水停]하므로, 표탕(漂蕩)하고 패몰(敗沒)하는 근심이 없으니, 지극히 적당하기는 하나 다만 해구(海口)와의 거리가 요원(遙遠)하고 그 사이에 많은 섬과 풀[嶼草]이 있어, 행선(行船)하기가 어려워 이 때문에 배가 떠난

領兵船一隻，水軍三十名分防。然只以兵船一隻，守要害之地，甚爲孤單，須加撥馬梁鎭小猛船二隻，水軍六十名，使之防禦。沃溝、羣山浦與舒川只隔一浦，其間海路僅數里許。舒川浦當海口，羣山浦稍在內地，以形勢觀之，舒川浦在初路，羣山浦可革。但自扶安黔毛浦，次羣山次舒川，列置三鎭，自黔毛浦，至羣山浦，水路幾百餘里。若無羣山浦，而其間賊若竊發，則舒川浦似難及救，雖有沃溝之鎭，無船亦難應變。羣山浦當沃溝、臨陂之衝，舒川鎭當舒川、韓山之衝，所關非輕。惟羣山浦，非舒川、黔毛兩浦中央，似非賊路要害之地，然無移鎭可當處，今不可輕罷。龍安、德城倉，近於浦，運米載船便易，且漕船所泊處，山回水停，無漂蕩敗沒之患，至爲可當。但距海口遙遠，其間多有嶼草，行船甚艱，以此發船後七八日，或十餘日，或至十五餘日，乃到老人城前浦，仍到箕食島，待風達于京江。沃溝老人城倉，則諸邑田稅，隨所納，旋即載船，則出海直到箕食島，待風上京，至爲便利。然運米出浦，比得城倉稍遠，

뒤에 7, 8일 혹은 10여 일 혹은 15여 일 만에야 바로 노인성(老人城) 앞 포구(浦口)에 이르고, 이어서 오식도(奠食島)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려 경강(京江)에 도달합니다.

옥구(沃溝) 노인성창(老人城倉)은 제읍(諸邑)의 전세(田稅)를 수납하는 대로 즉시 배에 실으면, 출해(出海)하여 곧바로 오식도(奠食島)에 이르렀다가 바람을 기다려 상경(上京)하니 지극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쌀을 운반하여 포구(浦口)를 나오는데는 득성창(得城倉)에 비(比)하여 약간 멀고, 조선(漕船)의 출입(出入)이 불편하여 부득이 쌀을 메고 포구를 나오므로 조수(潮水)가 가들 때에는 점점 물이 스며들어 수렁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서로 이해(利害)가 있어 경이(輕易)하게 정탈(定奪)할 수 없으니, 아직은 노인성(老人城) 부근(附近)의 제읍(諸邑)의 금년 전세(田稅) 1만여 석(碩)을 여기에서 수입(收入)하여, 조전(漕轉)의 편부(便否)를 시험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충주(忠州) 달천(達川)은 지금 수심(水深)이 3척(尺)이고 너비가 1백 50척(尺)이니, 만약 제방(堤防)을 쌓아 물을 끌어 들인다면, 뚝의 높이는 모름지기 10척(尺) 8촌(寸)이어야 하고, 뚝의 길이는 모름지기 4백 척(尺)이 된 뒤에야 흐르는 물을 끌어 댈 만합니다. 하지만 도랑을 칠 곳은 암석(巖石)이 험조(險阻)하여, 물이 통하도록 뚫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령 제방을 쌓고 도랑을 친다 하더라도 달천(達川)은 발원(發源)이 깊고 길며 수세(水勢)가 사납고 급하니, 만약 우수(雨水)가 창일(漲溢)하게 되면 방죽과 도랑이 다 허물어져서 남음이 없을 터이니, 장구(長久)한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 관개(灌溉)한 곳은 공한(空閑)한 목정의 땅이 아니고, 이것이 다 기름진 땅[膏腴田]이겠습니까? 갑자기 대우(大雨)라도 있어 범람하여 복사(覆沙)하게 되면 도리어 그 해(害)를 받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所見)으로는 천방(川防)은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며, 아울러 도형(圖形)을 올립니다.”

하니,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었다. 심회(沈澮) 등이 의논하기

漕船出入不便，不得已擔米出浦，潮滿時則侵潤泥陷可慮。此兩處互有利害，不可輕易定奪，姑將老人城附近諸邑今年田稅一萬餘碩，收入於此，漕轉便否試驗何如？忠州達川，今水深三尺，廣百五十尺，若欲堤防引水，則堤高須十尺八寸，堤長須四百尺然後，可以引流。但開渠處巖石險阻，疏鑿最難。假使築堤開渠，達川發源深長，水勢悍急，若雨水漲溢，則川防與渠毀盡無餘，似非長久之利。況其灌溉處，非空閑陳荒之地，盡是膏腴之田？脫有大雨汎溢覆沙，則反受其害。以臣所見，川防不便，并圖形以進。命示領敦寧以上。沈澮等議：“依成健所啓施行。”從之。

	<p>를, “성건(成健)이 아된 대로 시행(施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2 일(신사) 1번째기사</p>	<p>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이조양(李朝陽)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우리 국가에서 내국의 백성과 다름없는 은혜를 보였고, 수산(綏山)의 오랑캐 를 무마함에 있어서도 또한 후(厚)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우리의 변경을 떼지어 노략함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 또 우리 땅에 잠입하여 장차 습격해 도둑질하려는 것을 경(卿)이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허혼(許混)과 더불어 사전에 도모하여 많은 적을 잡아 죽여서 국가의 위엄을 선양하였으니,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겨 권장하는 바이다. 이에 황사효(黃事 孝)를 과견하여 장졸(將卒)들을 위로하니, 경은 나의 이 지극한 생각을 체득 하여 한 번 승리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마땅히 선후지책(善後之策) 을 생각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황사효(黃事孝)가 선위연(宣慰宴)을 베풀던 날 군 사 가운데서 술에 취해 서로 싸우며 말하기를, ‘너는 도적을 잡은 것이 아니 라 곧 짐승을 사냥하는 자를 잡은 것인데,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사(下賜)한 술을 마시느냐?’고 하였다. 황사효가 그 일을 가만히 듣고도 그 사실을 구명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실이 저절로 탄로 되자, 사림(士林)들이 이를 기롱 하여 이르기를, ‘황선위사(荒宣慰使)’라 하였으니, 거칠 황(荒)자와 누를 황 (黃)자는 음(音)이 같기 때문이었다.” 하였다.</p>	<p>○辛巳/諭平安道節度使李朝陽曰： 我國家推無外之化，撫綏山戎，亦爲厚 矣。然狼心未革，寇鈔邊鄙，非一再 矣。今又潛入我地，將欲擄竊，卿與 滿浦節制使許混，能先事而謀，多所捕 斬，以暢國威，深用嘉獎。茲遣黃事 孝，宣慰將卒，卿其體我至懷，勿以一 勝而自滿，當思善後之策。 【史臣曰：“事孝宣慰宴之日，軍中醉 酒相鬪曰：‘汝非擒賊，乃擒獵獸者，有 何功而飲賜酒乎?’事孝微聞其事，而 不覈其實，事自彰露，士林譏之曰：‘荒 宣慰使。’荒與黃，音同也。”】</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3 일(임오)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예문관(藝文館)은 시종(侍從)들이 부지런히 수고하는 곳이니, 홍문관(弘文館) 의 예(例)에 의하여 채전(菜田)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예문관(藝文館)에 노비(奴婢)가 부족하니, 15구(口)를 더 지급하라.”</p>	<p>○壬午/傳于承政院曰：“藝文館，侍從 勤勞之地，其依弘文館例，給菜田。” 傳曰：“藝文館奴婢不足，其加給十五 口。”</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3 일(임오) 2번째기사</p>	<p>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평(李枰)이 집을 지은 사실을 추문(推問)하니, 그 큰 집을 계사년(22620) 아버지의 복상(服喪) 때 옛집을 수리한 것뿐이요, 작은 집은 경자년(22621) 어머니의 복상 때 역시 수리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갑진년(22622)에 이르러 이평이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되었을 때 비로소 수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인 인부(人夫)나 공궤(供饋)한 물자는 모두 자기의 물건을 썼고, 관부(官府)에는 요구한 바가 없었다고 하며, 그 그릇[鉢]을 사들이고 면포(綿布)를 옛 아문(衙門)으로 옮겨 두었다는 일 등은 지금 바야흐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평(李枰)의 가옥이 비록 칸수(間數)가 많으나, 이는 그 조부(祖父) 때에 지은 것이고, 또 웅장하고 큰 것이 아니니 말을 낸 자가 잘못이다. 그 집의 칸수와 웅장하고 큰 것인지의 여부를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義禁府啓曰：“李枰造家事推問，則其大家，癸巳年居父喪時，修葺舊屋而已，小家庚子年居母喪時，亦修葺未畢，至甲辰年，枰爲淸州牧使時，乃畢修葺。然人喫供饋皆用己物，不干官府，其貿鉢及綿布移置古衙等事，時方覈實。”傳曰：“李枰家舍，間數雖多，乃其祖父時所構，又不宏大，則言之者非矣。其家間架數宏大與否，令其道觀察使審啓。”</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15 일(갑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영릉(英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고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뇌성과 비가 대단하여 제사를 행하지 못할까 저어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활짝 개여 제사를 행하였으니, 내 마음의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대저 경사가 있을 때 자급(資級)을 주는 것은 으레 있는 법이다. 제사의 집사관(執事官)들에게 1자급을 더하여 내 마음을 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또 내가 이천(利川)을 지나다가 그 고을의 교생(校生)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보았으니 시취(試取)를 행하여 향리(鄉里)로 하여금 영광됨을 알게 하려고 하며, 또 향교에는 물품을 내려 학비(學費)에 보태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경기(京畿)의 백성들에게는 전지의 조세(租稅)를 감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제사의 집사관(執事官)에게 자급을 더하신다 함은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p>	<p>○甲午/上詣英陵親祭，傳于政丞等曰：“昨日雷雨大作，恐不克行祭，幸今開霽，得行祀事，予心之喜，不可勝言。大抵有慶事賜級，例也。祭執事官，欲加一階，以表予心何如？且予經利川，見其邑校生，今於此又見之，欲行試取，使鄉里知榮，又賜物于鄉校，以資學費。又欲減甸民田租何如？”領議政尹弼商等啓曰：“祭執事加階，上教允當。此邑儒生不多，不可行科舉，請只取二三人，賞以米布，又復其戶，</p>

	<p>다. 그러나 이 고을의 유생(儒生)이 많지 아니하여 과거(科擧)는 행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다만 2, 3인만을 뽑아서 쌀과 포묵으로 포상하고, 또 복호(復戶)하여 권려(權勵)하고 또 향교에 곡식을 주어 학생들의 양식으로 하게 한다면, 거의 사체(事體)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의 백성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니, 다만 경유하시는 고을의 전조(田租)만을 덜어 주시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옳다.”</p> <p>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신종호(申從濩) 등이 아뢰기를, “미포(米布)로써 포상함은 유생(儒生)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되도록 명하신다면 이 또한 유생의 영광이며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이 옳다. 미포(米布)를 주게 되면 뜻있는 선비들이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이다.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유가(遊街)22651 하는 일을 준비토록 하라.”</p> <p>하였다.</p>	<p>使之勸勵，又給穀鄉校，使爲學糧，庶合事體。京畿人民，不可盡恤，只減所經邑田租爲便。”傳曰：“可。”都承旨申從濩等啓曰：“賞以米布，非待儒生之道。臣等意，試才入格者，命爲生員、進士，則是亦儒生之榮幸也。”傳曰：“此言是也。給米布，則有志之士必愧之。其命監司，預備遊街事。”</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윤9월 15일(갑오)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릉(英陵)을 배알하고 여러 고을을 순수(巡狩)해 살피니, 경기의 백성이 모두 그 폐단을 받았다. 그러나 어가가 머문 땅에는 노고와 소비가 더욱 많았으니, 사리로 보아 마땅히 넉넉하게 돌보아야 할 것이다. 여주(驪州)·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龍仁)·광주(廣州)의 인민들에게는 금년의 전조(田租)를 절반으로 감할 것이며, 여주·이천 향교에 각각 쌀 30석을, 용인 향교에는 20석을 내려 주어서 유생들의 학과를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 殿謁英陵，巡省諸邑，畿甸之民竝受其弊。然駐蹕之地，勞費尤多，理宜優恤。驪州、利川、陽智、龍仁、廣州人民，減今年田租之半，驪州、利川鄉校各賜米三十碩，龍仁鄉校二十碩，以爲勸課之資。</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p>	<p>임금이 어가를 돌려 여주 대교천(大橋川) 위에 이르자, 전교하기를, “내가 올 때에 어느 사람이 말을 끌고 길가에 섰다가 바치겠다고 청하였으므로</p>	<p>○乙未/上回駕至驪州大橋川，上傳曰：“予來時有人，牽馬立道傍，請獻之，</p>

<p>(弘治) 3년 윤9월 16일(을미) 1번째기사</p>	<p>로, 내가 끌어오라고 하였었다. 무릇 내가 탈 만한 좋은 말이면 비록 사리를 아는 자라도 오히려 숨기는데, 이제 이 초야(草野)의 사람이 받들어 올리려는 마음이 있어 스스로 바치니, 내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그에게 옷 1령(領)을 내려 주어 포상하게 하라.” 하고, 또 명하여 술도 먹이게 하였다.</p>	<p>予令牽來。 凡御乘良馬， 雖識理者， 尙且匿之， 今此草野之人， 有奉上之心而自獻， 予甚嘉之。 其賜衣一領以賞之。” 又命饋酒。</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16일(을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이제 파오달(波吾達)에서 바치는 물선(物膳)이 너무 많은 것을 보니, 어찌 민폐(民弊)가 없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진상하는 물선을 감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觀波吾達進上物膳過多， 豈無民弊？ 今後減進可也。”</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17일(병신) 1번째기사</p>	<p>큰 비가 내렸다. 어가가 양지현(陽智縣) 앞 대주정(大晝停)에 이르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다니면서 길가에 많은 동상자(凍傷者)가 있는 것을 보았다.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술을 가지고 가서 구하게 하라.” 하였다.</p>	<p>○丙申/大雨。 駕至陽智縣前大晝停， 傳于承政院曰：“予行見道傍， 多有凍傷者。 其令宣傳官， 持酒往救之。”</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17일(병신) 4번째기사</p>	<p>도총관(都總管) 임광재(任光載)·부총관(副總管) 이형손(李亨孫)·행대호군(行大護軍) 조간(曹幹)·병조 참지(兵曹參知) 안호(安瑚)를 좌·우상(左右廂)에 나누어 보내어 군사들의 비에 젖은 상황과 동상(凍傷)에 걸린 자를 살펴보게 하고, 술을 먹여 구하게 하였다.</p>	<p>○分遣都總管任光載、副總管李亨孫、行大護軍曹幹、兵曹參知安瑚于左右廂審視軍士雨濕之狀， 遇凍傷者， 饋酒救之。</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19일(무술) 1번째기사</p>	<p>청계산(淸溪山)에 거둥하여, 사냥하여 노루·사슴·멧돼지·토끼등 모두 25마리를 잡았는데, 주서(注書) 최세걸(崔世傑)을 보내어 잡은 짐승을 종묘(宗廟)에 바쳤다.</p>	<p>○戊戌/幸淸溪山， 打圍獲獐、鹿、豬、兔并二十五口， 遣注書崔世傑， 薦禽于宗廟。</p>
<p>성종 245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윤9월 20</p>	<p>어가가 정금원평(定今院平)에 이르자,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삼전도(三田渡)에 물이 분고 물살이 급하므로 누선(樓船)의 닻줄이 끊어져서 건널 수 없으니, 청컨대 한강(漢江)을 거쳐 건너게 하소서.”</p>	<p>○己亥/駕至定今院平， 承政院啓曰：“三田渡水漲流急， 樓船絕纜不可渡， 請由漢江而渡。” 上從之。 卽回駕，</p>

일(기해) 1번째기사

하여,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곧 어가를 돌리매, 형명(形名)의 고각(鼓角)이 어가 앞으로 바싹 돌아가니, 임금이 탄 말이 놀라서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빠져 임금이 채찍질을 하여도 일어나지 못하였다. 승지들이 임금의 하마(下馬)를 청하고 좌우에서 부액(扶掖)하여 임금이 이에 말에서 내려 길 가운데 서니, 어의(御衣)가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모시던 신하가 문안을 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놀란 바가 없었다.”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어마(御馬)가 놀랐으니 내승(內乘)22655) 이 조련을 삼가지 못한 연유를 국문(鞫問)케 하시고, 또 선전관(宣傳官)이 형명을 가지고 어전(御前)으로 갑자기 달려들어 어마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말이 우연히 놀란 것이니, 허물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어가가 제천정(濟川亭)에 이르니, 도성(都城)에 남아 있던 재상(宰相)들이 와서 문안하였으며, 어가를 따라갔던 종친(宗親)과 재상(宰相)들이 어마가 놀랐다는 사실을 듣고 문안을 드리니, 명하여 모두 음식을 먹이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신 등은 어마(御馬)가 놀랐었다는 말을 듣고 경악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승(內乘)이 길들은 말을 바치지 않은 것과 선전관(宣傳官)이 회전(回轉)할 때 삼가지 못하여 <어마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것은 모두 죄가 있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내승(內乘) 등의 죄가 아니다. 내가 명하여 이 말을 시험삼아 탔던 것인데 말이 우연히 깃발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이니, 죄를 남에게 돌리는 것은

形名鼓角回薄駕前，御乘馬，驚駭陷泥淖中，上鞭之不能起。承旨等，請上下馬，左右扶掖，上乃下馬，立路中，泥汚御衣。從臣問安，上曰：“予無所驚。”承旨等啓曰：“御馬驚駭，請鞫內乘，不謹調習之由，又宣傳官，將形名，馳突御前，致令御馬驚駭，請竝鞫之。”傳曰：“馬乃偶驚耳，咎不在人。”駕至濟川亭，留都宰相來問安，隨駕宗宰，聞御馬驚駭問安，命皆饋之。尹弼商、洪應、盧思愼啓曰：“臣等聞御馬驚駭，不勝驚愕。內乘不進馴馬，宣傳官回轉不謹，以致驚駭，俱有罪。請竝治之。”傳曰：“此非內乘等之罪。予命試騎此馬，馬偶見旗影，驚駭耳。不可歸罪於人也。”

	<p>불가하다.” 하였다.</p>	
<p>성종 24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0월 3일 (신해)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민사건(閔師鶯)·정언(正言)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지금 선전관(宣傳官)으로 임용(任用)된 자들이 모두 연소(年少)하여 사리(事理)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물었는데, 특진관(特進官) 유자광(柳子光)이 대답하기를, “신이 보건대, 세조(世祖)께서는 혹은 유생(儒生)을 불러 강(講)하게 하거나, 혹은 성균관에 거동하여 강문(講問)하거나 하여, 만약 쓸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발탁(拔擢)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삼고, 일을 아뢰게 하여 그 재품(才品)을 살펴보셨습니다. 또 열무(閱武)22660) 때에는 일찍이 선전관을 지낸 자에게 명하여 모두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게 하고, 선전(宣傳)의 일을 맡겼으며, 신숙주(申叔舟)·구치량(具致亮) 등도 그렇게 하였으니, 선전(宣傳)의 직임을 중임(重任)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자로 하여금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게 하고, 새로 선전관에 제수(除授)된 자로 하여금 전습(傳習)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겠다.” 하였다.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오랑캐[夷虜]의 무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왜인(倭人)을 접견(接見)할 때 어탑(御榻)에 오르게 하여 술잔을 바치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여 내리더라도 저들이 또한 감지(感知)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辛亥/御經筵。講訖，掌令閔師鶯、正言張順孫啓曰：“今任宣傳官者，皆年少不曉事。”上問左右，特進官柳子光對曰：“臣見世祖，或召講儒生，或幸學講問，如有可用人，擢爲宣傳官，令啓事，以觀才品。又於閱武時，命曾經宣傳官者，皆隨駕以任宣傳之事。如申叔舟、具致亮等亦爲之，其重任宣傳如是。”上曰：“令曾經者隨駕，使新授者傳習果可矣。”順孫啓曰：“夷虜不可近，今倭人接見時，使升御榻，進爵甚不可。使內官酌酒賜之，彼亦知感。”上曰：“此言是矣。但倭人升榻進爵，乃前例也，今不許進爵，彼必失望矣。”</p>

	<p>“이 말이 옳다. 단지 왜인(倭人)이 어탑(御榻)에 올라 술을 바치는 것은 전례(前例)인데, 지금 &lt;어탑에 올라&gt; 술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失望)할 것이다.”</p> <p>하였다.</p>	
<p>성종 24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0월 4일 (임자) 2번째기사</p>	<p>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이 술잔을 바치는 것의 편부(便否)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신승선(愼承善)·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야인(野人)의 추장(酋長)과 왜인(倭人)의 특송(特送)이 술잔을 올리던 것은 &lt;유래(由來)가&gt;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이제 갑자기 중지하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니, 전례(前例)에 의거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니다.”</p> <p>하고, 이철건(李鐵堅)·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객인(客人)이 술잔을 바치게 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므로, 갑자기 폐지(廢止)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인(野人)은 그 성품이 간사[詐黠]하므로, 제왕(帝王)의 대도(大度)로써 대접할 수가 없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고례(古例)를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라.”</p> <p>하였다.</p>	<p>○議倭、野人進爵便否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禮曹。沈滄、尹弼商、盧思愼、李克培、愼承善、成俊議：“野人酋長、倭人特送進爵已久，今遽止之，彼必疑貳，依前例爲便。”李鐵堅、李克均議：“客人進爵，有前例，不可遽廢。然野人其性詐黠，不可以帝王大度待之，令禮曹參詳古例以啓何如？”傳曰：“姑依舊進爵。”</p>
<p>성종 24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0월 24일(임신) 4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치계(馳啓)하기를, “제주 사람으로 진상(進上)할 방물(方物)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倭賊)에게 빼앗겼으니, 적변(賊變)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護衛)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p> <p>하니, 명하여 의논한 재상(宰相)들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윤호(尹壕)·이철건(李鐵堅)·한치례(韓致禮)·이극돈(李克墩)·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계본(啓本)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先是，全羅道觀察使馳啓：“濟州人，齎奉進上方物出來者，爲倭賊所奪，賊變寢息間，請抄軍護涉。”命示議得宰相。尹弼商、洪應、尹壕、李鐵堅、韓致禮、李克墩、愼承善議：“依啓本施行何如？”任元濬議：“濟州四面環海，地不連陸，又無島嶼，倭船無可依泊處。故前此倭船，罕有到者，今此</p>

하고, 임원준(任元濬)은 의논하기를,  
 “제주(濟州)는 사면(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지면(地面)이 육지(陸地)와 잇달아 있지 않으며, 또 섬[島嶼]이 없어서 왜선(倭船)이 의지하여 정박(停泊)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왜선(倭船)이 드물게 왔는데, 지금 이 적(賊)들은 혹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왜복(倭服)을 입고 대적(大賊)의 소행[所爲]으로 꾸민 것으로 생각되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따로 보내어 연해(沿海)의 의심할 만한 곳을 찾아 종적(蹤跡)을 끝까지 탐문(探問)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적변(賊變)은 알기 어려우니, 본고을의 군인을 뽑아 호위하면서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 일에 있어서 폐해(弊害)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지금 계본(啓本)을 살펴보건대, 이것은 왜인(倭人)의 소행으로는 의심스럽고, 단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왜인(倭人)의 형상(形狀)을 거짓 꾸며 도둑질한 것 같습니다.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하여금 따로 나졸(邏卒)을 정하여 적선(賊船)이 정박(停泊)할 만한 의심스러운 곳을 끝까지 탐문(探問)하도록 하고, 진상물(進上物)을 실은 배를 호송(護送)할 군인의 수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 또 근일에 적변(賊變)이 그치지 않으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하게 방비[隄備]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준(成俊)·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계본(啓本)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단지 계본의 내용을 보건대, 왜적(倭賊)은 아닌 듯합니다. 제주(濟州)의 포작인(鮑作人)22725) 으로 전라(全羅)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산 자들이 자못 많은데, 이 무리들은 왕래(往來)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전에 해적(海賊)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본도(本道)의 사람들이 모두 이 무리들을 의심하였습니다. 근일의 일 또한 이 무리들의 소행일 듯하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연변 여러 고을의 포작인(鮑作人)을 한결같이 모두 녹안(錄案)하게 하였

賊, 意或我國人, 着倭服, 作大賊者所爲, 請別遣朝官, 沿海可疑處, 窮探蹤跡何如? 且賊變難知, 抄本邑軍人, 護送涉海, 於事無弊.” 鄭文炯、李克均議: “今觀啓本, 疑是倭人所爲, 但或我國人, 假倭形作賊也。 令水軍節度使, 別定邏卒, 窮探賊船依泊可疑處, 其進上載船護送軍數, 令該司議定。 且近日賊變不息, 令本道, 更嚴隄備何如?” 成俊、成健議: “依啓本施行爲便。 但觀啓本之辭, 似非倭賊。 濟州鮑作人, 散接全羅沿邊諸邑者頗多, 此輩彼此往來無定, 前此遇有海賊, 本道人, 皆疑此輩。 近日之事, 恐亦此輩所爲, 臣等意以謂, 令邊將及沿邊諸邑鮑作人, 一皆錄案, 凡有出入, 須憑行狀, 如或不得已移居, 則元居官新接官, 互相移文改案, 毋得任意橫行爲便。” 李克墩議: “捕賊方略, 曾已移文知會, 更無措置之策。 進上載船護涉事, 依啓本施行何如?” 李季全議: “進上載持, 商賈往來, 如此遇害, 而不聞於朝廷者, 想必多矣。 今宜宣諭島主及三浦酋長, 以明其罪, 令兵馬節度使及左右道水軍節度使, 多擇驍兵,

	<p>다가, 무릇 출입(出入)할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행장(行狀)을 빙거(憑據)하게 하고, 만약 부득이 옮겨 살게 되면 본래 살던 고을과 새로 살게 된 고을에서 서로 이문(移文)하여 개안(改案)하도록 해서 임의(任意)로 횡행(橫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니다.”</p> <p>하고, 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도둑[賊]을 사로잡는 방책[方略]은 일찍이 이문(移文)하여 통보[知會]하였으니, 거둬 조치할 방책이 없습니다. 진상물(進上物)을 실은 배를 호위하여 건너게 하는 일은 계본(啓本)대로 시행(施行)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계동(李季叟)은 의논하기를,  “진상물(進上物)을 싣거나 상인[商賈]들이 왕래(往來)하다가 이와 같이 해(害)를 입어도 조정(朝廷)에 계문(啓聞)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제 마땅히 도주(島主)22726) 와 삼포(三浦)22727) 의 추장(酋長)에게 선유(宣諭)하여 그 죄(罪)를 밝히게 하고,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좌·우도(左右道)의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하여금 날썬 군사를 많이 가려 재략(才略)이 있는 만호(萬戶)에게 그들을 거느리고 추자도(楸子島) 등에 깊이 들어가서 기회를 틈타 모조리 사로잡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한한(韓僴)·권건(權健)·오순(吳純)·권정(權旼)·한언(韓堰)·한건(韓健)·여자신(呂自新)·안처량(安處良)은 의논하기를,  “근래에 남방(南方)에서 사변(事變)이 그치지 아니하니, 작은 연고(緣故)가 아닙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선유(宣諭)하여 금지시키게 하고, 또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적인(賊人)의 간 곳을 끝까지 수색하도록 하고, 거둬 방비를 더하여 변란(變亂)에 대응하게 하소서. 진상물(進上物)을 실은 배를 호송(護送)하는 일은 또한 계본(啓本)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따로 조관(朝官)을 보내어 절도사(節度使)와 함께 의논해서 여</p>	<p>以有才略萬戶將之， 深入楸子島等處， 乘機勦獲何如?” 韓僴、權健、吳純、權旼、韓堰、韓健、呂自新、安處良議：“近來南方事變不息， 非細故也。 宣諭對馬島主， 使之禁戢， 且令邊將窮搜賊人去處， 更加隄備。 應變進上船隻護送事， 亦依啓本何如?” 傳曰：“予意欲別遣朝官， 與節度使同議， 諸島可疑處， 窮搜捕獲， 且諭對馬島主， 使之禁戢何如?” 弼商等僉議以啓曰：“作耗雖或我國人所爲， 然自知其罪， 藏匿深處， 難以捕獲， 徐當措置， 出其不意圖之可也。” 傳曰：“此事豈可遲留? 速遣朝官， 與本道兵使水使同議， 約束捕獲何如? 邊事雖不可從中遙制， 然予聞楸子島， 爲諸島窮處， 今若出其不意， 自初島， 次次窮搜， 以及楸子島， 則彼無所隱矣。” 弼商等僉啓曰：“上教允當。”</p>
--	---	---



	<p>러 섬의 의심할 만한 곳을 끝까지 수색하여 사로잡게 하고, 또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유시(諭示)하여 금지시키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p> <p>하니, 윤필상(尹弼商) 등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작란[作耗]은 비록 우리 나라 사람의 소행이라 하나, 스스로 그 죄를 알고 깊숙한 곳에 숨었을 것이므로, 사로잡기가 어려울 것이니, 서서히 조치(措置)해서 뜻하지 않을 때 공격하여 도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  “이 일을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겠는가? 속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본도(本道)의 병사(兵使)·수사(水使)와 함께 의논하여 사로잡을 것을 약속(約束)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변방(邊方)의 일은 비록 중도(中道)를 따라 멀리서 제어(制御)할 수는 없다 하나, 내가 듣건대 추자도(楸子島)는 여러 섬의 궁처(窮處)가 된다고 하니, 지금 뜻하지 아니한 때에 출동하여 가까운 섬으로부터 차츰 끝까지 수색하여 추자도에 이른다면 저들이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p> <p>하니, 윤필상 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聖上)의 하교가 윤당(允當)합니다.”</p> <p>하였다.</p>	
<p>성종 24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0월 29일(정축) 1번째기사</p>	<p>전라도 수적 추포 경차관(全羅道水賊追捕敬差官) 유순정(柳順汀)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위세(威勢)로 한낱 좀도둑의 무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 비록 사목(事目)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대강(大綱)이니,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와 조치(措置)할 것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남방(南方)의 백성들이 그대가 도둑을 잡으러 온 것을 듣는다면 반드시 뜯소문[訛言]을 퍼뜨려 온 도(道)가 시끄러워질 것이니, 그대는 그것을 잘 처리하도록 하라.”</p> <p>하니, 유순정이 대답하기를,</p>	<p>○丁丑/全羅道水賊追捕敬差官柳順汀辭，上御宣政殿引見曰：“以我國之勢，而不能捕一鼠竊之徒可乎？今雖齋去事目，此特大綱，可與觀察使、兵·水使，同議措置。南方之民，聞爾捕賊而來，則必胥動訛言，一道騷然，爾其善處之。”順汀對曰：“臣聞非但水賊興行，倭賊亦且竊發，臣當觀其形勢，盡心措置。”其事目曰：“一，今自楸</p>

	<p>“신이 듣건대 수적(水賊)이 흥행(興行)할 뿐만 아니라, 왜적(倭賊) 또한 몰래 발동한다고 하니, 신이 마땅히 그 형세(形勢)를 살펴보고 마음을 다해 조치(措置)하겠습니다.”</p> <p>하였다. 그 사목(事目)에 이르기를,</p> <p>“1. 지금 추자도(楸子島)로부터 제주(濟州)의 진상물(進上物)을 약탈(掠奪)한 자는 바로 왜인(倭人)이 아니고, 반드시 수적(水賊)들이 여러 섬에 숨어 있다가 출몰(出沒)하여 환난(患難)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엄하게 징벌(懲罰)하지 아니하면 장차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니, 본도(本道)의 병사(兵使)·수사(水使)·관찰사(觀察使)와 함께 의논하여 여러 진(鎭)에서 씩씩하고 용맹스런 군졸(軍卒)을 뽑아 같은 날 거사(舉事)하여 여러 섬을 샅샅이 수색하여 사로잡을 것을 기약할 것.</p> <p>1. 군사에 관한 일을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마땅히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그 마땅함을 얻도록 할 것.</p> <p>1. 만약 일의 기미를 누설하면 반드시 사로잡지 못할 것이니, 힘써 비밀(秘密)에 붙이도록 할 것.</p> <p>1. 병사(兵使)·수사(水使)·관찰사(觀察使)와 함께 의논한 후 각각 다른 곳에 있다가, 도둑이 몰래 발동하는 것을 듣고 또 다시 의논하여 거사(舉事)한다면 사기(事機)를 잃게 될 듯하니, 비록 다시 의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는 곳의 수령(守令)과 근처의 만호(萬戶)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군사를 내어 사로잡도록 할 것.</p> <p>1. 삼포 왜인(三浦倭人)으로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주(島主)가 노인(路引)22736)을 발급(發給)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활을 잘 쏘는 선군(船軍)을 가려서 이름을 ‘사관(射官)’이라 하여 함께 왜선(倭船)에 있게 하니, 그들이 도둑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끔 단약(單弱)한 자를 만나면 때를 틈타 도둑질을 하고 사관(射官)과 함께 그 이익(利益)을 나누니, 명</p>	<p>子島，奪掠濟州進上者，不是倭人，必是水賊，隱伏諸島，出沒爲患。今不痛懲，後將難圖，與本道兵水使及觀察使同議，抄諸鎭壯勇軍卒，同日舉事，窮搜諸島，期於必獲。一，兵事不可遙度，宜臨機務得其宜。一，若洩事機，必無所獲，務令秘密。一，與兵·水使、觀察使同議後，各在他處，聞賊竊發，又必更議舉事，則恐失事機，雖不更議，宜令所在守令及近處守令、萬戶，臨時發軍捕獲。一，三浦倭人，有欲釣採者，島主給路引，我國亦擇船軍能射人，名曰射官，同在倭船，明其非賊也。往往遇單弱者則乘時作賊，與射官，分其利，名雖釣採，實是賊倭，脫有形跡可疑者，并宜追捕。一，船隻朽敗，且不擇差格軍，致令生事守令、萬戶，推考重論。一，守令、萬戶、虞候等，如或忽於軍機，不謹措置，勿論功臣、議親、堂上官，囚禁推考啓聞，兵·水使、觀察使，亦不用意措置，竝推考啓聞。一，水賊中，有自首者，依捕強盜論賞例，驛子則免役賞布，自願鄉吏，公私賤則永免其役，良人及有職人，賞職。”</p>
--	--	---

	<p>목으로는 비록 고기를 낚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적왜(賊倭)이니, 만약 형적(形跡)이 의심스러운 자는 아울러 마땅히 추포(追捕)할 것.</p> <p>1. 배[船隻]가 썩었거나, 또 격군(格軍)22737) 을 가려 뽑지 아니하여 일이 발생(發生)되게 한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는 추고(推考)하여 중론(重論)할 것.</p> <p>1. 수령(守令)·만호(萬戶)·우후(虞候) 등이 만약 군기(軍機)에 소홀하여 삼가해서 조치(措置)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신(功臣)·의친(議親)·당상관(堂上官)을 논하지 말고 가두어 놓고 추고(推考)하여 계문(啓聞)할 것이며, 병사(兵使)·수사(水使)·관찰사(觀察使) 또한 마음을 써서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울러 추고하여 계문할 것.</p> <p>1. 수적(水賊) 가운데 자수(自首)하는 자가 있으면 강도(強盜)를 잡아 논상(論賞)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역자(驛子)는 역(役)을 면제하여 베[布]로 상주고, 자원(自願)한 향리(鄉吏)나 공사천(公私賤)은 영구히 그 역(役)을 면제하며, 양인(良人) 및 벼슬이 있는 사람은 벼슬로 상주도록 할 것이다.”</p> <p>하였다.</p>	
<p>성종 246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0월 30 일(무인) 1번째기사</p>	<p>종묘 제조(宗廟提調) 노사신(盧思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옛날에 쓰던 제기(祭器)인 변두(邊豆)·보궤(籩簋)는 붙어 있는 것이 길고 짧거나 크고 작은 것이 모두 예문(禮文)과 맞지 아니합니다. 또 희준(犧尊)은 마땅히 귀[耳]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조(鑄造)한 것은 귀가 없으니, 또한 예문에 어긋납니다. 찬반(瓚盤)은 실(室)마다 마땅히 각각 배설(排設)해야 하는데, 섭행(攝行)할 때 쓰는 은찬반(銀瓚盤)은 단지 두 개만 있으니, 또한 미편(未便)합니다. 모든 제기(祭器)를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따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p>	<p>○戊寅/宗廟提調盧思愼等來啓曰：“舊用祭器邊豆、籩簋之屬，長短大小，皆不中禮文。又犧尊，當有耳，而今所鑄無耳，亦違禮文。瓚盤，每室當各設，而攝行時所用銀瓚盤，只有二，亦未便。凡祭器，一從禮文做造何如？”傳曰：“可。”</p>

	하였다.	
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1일 (기묘) 4번째기사	두 대비전에 진연(進宴)하고,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육조 당상(六曹堂上)·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과 입직한 제장(諸將)을 명정전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음악을 내려 주었다.	○進宴于兩大妃殿，命饋領敦寧以上，議政府、儀賓府、六曹堂上、承政院、弘文館、藝文館，入直諸將于明政殿庭，賜樂。
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3일 (신사) 3번째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신주(辛鑄)가 치계(馳啓)하기를, “제주(濟州) 사람 임천동(林千仝) 등 8명이 10월 초 2일에 해도(海島)에서 왜적(倭賊)을 만나 의복과 식량을 빼앗겼고, 또 그달 18일에 왜적의 배 14척이 군산(群山) 등의 지역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신이 그 곳의 만호(萬戶)로 하여금 더욱 후망(候望)을 신중히 하여 변고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근래에 왜변(倭變)이 자주 보고되는데, 아마도 크게 확대될까 걱정입니다. 청컨대 변장(邊將)에게 유시(諭示)하여 방략(方略)을 베풀어서 기회를 타고 방제(防制)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적선(賊船)이 이미 충청도(忠淸道) 지경으로 향한다고 하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속히 변장에게 유시하여 병기(兵器)를 정돈해서 변고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은 이미 호송(護送)하게 하였고, 또 유순정(柳順汀)을 보내어 도적을 수색하여 잡게 하였으니, 조정(朝廷)에서 조치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형편을 볼 적에 아마 왜변(倭變)이 있을 듯합니다. 또 왜적의 배 14척이 군산(群山)의 섬 쪽으로 향한다고 하니, 방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전 군관(助戰軍官)은 수를 계산하여 선발해서 보내고 제도(諸道)의 연해(沿海) 제진(諸鎭)으로 하여금 다방	○全羅道兵馬節度使辛鑄馳啓：“濟州人林千仝等八人，十月初二日，於海島，遇倭賊，被奪衣糧。又本月十八日，賊船十四隻，向羣山等處，臣令所在萬戶，益謹候望待變。”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尹弼商議：“近來倭變屢報，終恐鴟張。請諭邊將，設方略，乘機防制何如？”洪應議：“賊船已向忠淸道之界，深可慮也。其急諭邊將，令整利兵器，以待變何如？”李克培議：“濟州進上物膳，已令護送，又遣柳順汀搜捕，朝廷非不措置，然今觀形勢，將有倭變。且倭船十四隻，向羣山島，則備禦之策，不可不慮。助戰軍官，量數抄遣，令諸道沿海諸鎭，多般設策，搜捕何如？”盧思慎議：“已遣柳順汀經略，措置已盡。然賊變相繼，豈可容易處之？令兵曹，議方略何如？”李鐵堅、成俊議：“己亥年東征以後，倭變頓息，近來南方，狃於昇平，防禦疎虞。煙臺候望，有名無實，倭人習

	<p>면으로 계책을 세워 수색해서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이미 유순정을 보내어 경략(經略)하게 하였으니, 조치는 이미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왜적의 변은 서로 계속되고 있으니, 어찌 용이(容易)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兵曹)로 하여금 방략(方略)을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철건(李鐵堅)·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p> <p>“기해년(22741)에 동정(東征)한 이후로는 왜변(倭變)이 완전히 종식되었으므로, 요즈음 남쪽 지역에서는 태평한 생활에 젖어 방어(防禦)가 소홀했습시다. 그래서 연대(煙臺)22742)와 후망(候望)이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게 되었으므로, 왜인(倭人)들이 그러한 것을 자세히 알고 마음대로 출몰(出沒)하면서 빈번하게 노략질을 하였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횡행(橫行)하고 있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총통(銃筒)과 병선(兵船) 등에 관한 일을 더욱 엄격하게 주의시키고, 연대는 양계(兩界)의 예(例)에 의하여 높이 쌓고, 봉수군(烽燧軍)은 밤낮으로 후망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p> <p>“적세(賊勢)가 이미 치열하게 되었는데도,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서 잡을 계책을 세웠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더구나 왜적이 경기(京畿) 지역으로 가까이 향하고 있으니, 엄하게 방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변장(邊將)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수륙(水陸)의 병사(兵士)를 선발하여 왜적이 간 곳을 찾아가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 즉시에 잡도록 하여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내일 다시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와 병조에 의논토록 하라.”</p>	<p>見如此，恣意出沒，頻頻作耗，今又橫行至此，非細故也。凡銃筒、兵船等事，益加戒嚴，煙臺依兩界例，高築，烽燧軍晝夜不離候望何如？”李克均議：“賊勢已熾，水軍節度使及兵馬節度使，未聞有措置捕獲之策，深可慮也。況賊向近甸，不可不嚴爲之備。請勅諭邊將，略抄(水) [水] 陸兵，尋賊人去處，多方出奇，登時捕獲，毋使滋蔓何如？”傳于承政院曰：“明日更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兵曹。”</p>
--	--	---

<p>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5일 (계미) 5번째기사</p>	<p>하였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검토관(檢討官) 김물(金勿)이 아뢰기를, “신이 곽심(郭諶)과 점마(點馬)22754) 로 인하여 제주도(濟州島)에 갔었는데, 하루는 함께 대정현(大靜縣)으로 가다가 길에서 정의(旌義)에 사는 부로(父老)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현감(縣監)이 진상(進上)하는 명주와 고치라고 핑계하면서 무제한으로 거두어들이고, 또 둔전(屯田)이라고 핑계하면서 한 말[斗], 혹은 두세 말의 종자를 나누어 주고 백성에게 독촉하여 농사짓게 하여 거두어들임이 매우 가혹합니다. 또 백성에게 숫말이 있으면 주현(州縣)에서 즉시 빼앗으며, 수령(守令)의 자제(子弟)나 군관(軍官)들이 사냥을 나갈 적에는 모두 백성의 말을 빼앗아 타고서 온 종일 몰고 다니니, 지쳐서 죽는 말이 많으므로, 숫말을 낳는 집이 있으면 아예 죽여 버리고 기르지를 않습니다. 또 백성 중에서 나라에 말을 바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그것을 가로막고 가져와 바치지 못하게 하고서는, 진상(進上)한다고 핑계대고 사실은 자기가 점유(占有)하여 사물(私物)을 만듭니다. 세 고을이 본래 토지가 메말라서 백성이 먹고 살 식량이 모자라므로, 완전히 장사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데, 수령들의 횡포가 그렇게까지 된 것은 오로지 왕화(王化)가 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보기로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수령의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여 위임한다면 그 폐단은 자연 제거될 것입니다. 목사(牧使)는 이미 선택하여 보냈으나 그밖에 수령도 선발해서 임용(任用)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p>	<p>○御夜對。 講訖， 檢討官金勿啓曰：“臣與郭諶， 因點馬， 往在濟州， 一日同向大靜縣， 路遇旌義父老。 泣涕言曰：‘縣監托於進上綿紬及繭， 徵納無藝， 又托以屯田， 分授種子一斗， 或兩三斗， 督民耕治， 收納甚酷。 又民間有雄馬， 則州縣輒奪之， 守令子弟軍官出獵時， 皆奪騎民馬， 終日馳逐， 多致困斃， 故家有產雄馬者， 殺之不畜。 又民欲貢馬者， 守令沮之， 使不得來進， 托言進上， 實占爲己物。 三縣本土瘠， 民不能粒食， 生利專賴興販， 守令侵虐， 乃至於此， 專以王化之遠而然也。’ 臣等見民生困苦， 守令之罪也。 若擇人委任， 則弊當自祛矣。 牧使則已擇遣， 其餘守令， 亦可選用。”</p>
<p>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14일(임진)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의 대소 사신 노차 상회례(大小使臣路次相會禮) 조(條)에, ‘왕지(王旨)·교서(敎書)·내향(內香)·선운(宣醞)을 받든 여러 사신(使臣)이 서로 만나면 수명(受命)의 신구(新舊)와 질직(秩職)의 고하(高下)를 막론하</p>	<p>○壬辰/禮曹啓：“《經濟六典》， 大小使臣路次相會禮條：‘奉王旨、敎書、內香、宣醞諸使臣相遇， 則勿論受命新舊， 職秩高下， 交相下馬， 躬身祇送後，</p>

고 서로 말에서 내려 몸을 굽혀 공경히 전송한 다음에 관직(官職)의 등급을 밝혀서 서로 읍(揖)을 하고, 왕지·교서·내향·선운이 없는 사신이 왕지·교서·내향·선운을 받든 사신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국궁(鞠躬)하여 공경히 전송한다. 만약 양부(兩府)22769) 에서 말에서 내렸을 경우 왕지·교서·내향·선운이 지나간 다음에 모시고 온 사신이 말에서 내려 읍(揖)을 하는 예(禮)에 대해서는,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하는 평신(平身)하고 물러서고, 모시고 온 사신은 그대로 지나가며, 일반적으로 왕지·교서·내향·선운이 없는 여러 사신이 서로 만나면 관직이 낮은 사람은 먼저 말에서 내려 읍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제육전》이 비록 당시에 시행된 것은 아니나 곧 조종조(祖宗祖)에서 만든 법입니다. 왕지·교서·내향·선운이 지나간 다음에 모시고 온 사신이 말에서 내려 읍을 한다고 하였으니,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향사(香使)는 말에서 내려 서로 읍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항(上項)의 절차는 마땅히 《경제육전》에 의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전(大典)》의 경외관 상견(京外官相見) 조(條)에, ‘길에서 만나면 하관(下官)은 말에서 내리고 상관(上官)은 채찍을 놓고 지나가며, 동등(同等)한 자는 말 위에서 서로 읍을 하고, 당상(堂上)은 비록 등급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말에서 내려 서로 읍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평시에 서로 만나는 예이기는 하나 의(義)로써 미루어 보건대, 무릇 조정(朝廷)에서 모이는 예는 가선 대부 이상은 모두 채상(宰相)의 예로 대우하는데, 가선 대부 이하가 평신(平身)하고 물러서고 모시고 온 사신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은 예에 있어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통정 대부(通政大夫)도 당상관인데, 통정 대부 이상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에 또 이르기를, ‘당상관은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관원(官員)에 대해서는 우례(優禮)로 답한다.’고 하였으니, 대간(臺諫)은 비록 당상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찍을 놓고 지나가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듯합니다. 역시 《대전》에 의하여 우대하는 예를

驗職次相揖，無王旨、教書、內香、宣醞使臣，遇有王旨、教書、內香、宣醞使臣，則下馬鞠躬祇送。若下馬兩府，則王旨、教書、內香、宣醞過後，陪來使臣下馬行揖禮，嘉善以下平身退立，陪來使仍過行，一般無王旨、教書、內香、宣醞諸使臣相遇，則官卑者先下馬相揖。’ 《經濟六典》，雖非當時所行，乃祖宗朝成憲也。王旨、教書、內香、宣醞過後，陪來使臣下馬行揖云爾，則齋奉人不下馬，香使下馬相揖宜矣。上項節次，當依《經濟六典》行之。但《大典》京外官相見條：‘道遇則下官下馬，上官放鞭過行，同等者馬上相揖，堂上則雖隔等，竝下馬相揖。’此雖平時相遇之禮，以義推之，凡朝廷禮會，嘉善以上，皆待以宰相禮，嘉善以下，平身退立，陪來使臣仍過行，於禮未穩。通政亦是堂上官，通政以上，依《大典》施行可也。《大典》又云：‘堂上官於司憲府、司諫院官員，從優答禮。’則臺諫雖非堂上官，放鞭過行似難。亦依《大典》，從優下馬相揖何如?’傳曰：“其以此更議。”沈澮議：“依前議施行何如?”尹

	<p>따라 말에서 내려 서로 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문제를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심회(沈澹)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철건(李鐵堅)·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의해서 시행(施行)하소서.”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 안에 무릇 왕지(王旨)·교서(敎書)·내향(內香)·선은(宣醜)을 받은 모든 사신(使臣)이 길에서 서로 만나는 예에 대하여 수미(首尾)의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지금 《대전》에서는 다만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고만 하였고 나머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의논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으로 상고하건대, 아마도 궐전(闕典)은 아닌 듯합니다. 대소(大小)의 인원(人員)이 이미 국궁(鞠躬)하여 향축(香祝)을 공경히 진송하고, 그 다음에는 마땅히 경외관 상견(京外官相見)의 조(條)에 의하여 예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예는 왕명(王命)을 높이 받드는 것이 귀한 것이니, 일체 《경제육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의 모든 일은 반드시 중국 제도에 따르는데, 오직 왕명을 높이는 한 가지 일만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다만 왕명만 높였고 왕명을 받드는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인(王人)22770)은 비록 미천하더라도 그 차례가 제후(諸侯)의 위에 해당하는 것</p>	<p>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李鐵堅、李克均議：“依啓日施行。” 魚世謙議：“《經濟六典》內，凡王旨、敎書、內香、宣醜諸使臣，道次相遇之禮，首尾備錄，今《大典》，只稱齋奉人不下馬，餘不詳錄，其時必有定議，今不可考。然以《大典》考之，恐非闕典。大小人員，既鞠躬祇送香祝，其後當依京外官相見條行禮。雖然禮貴尊王命，一遵《經濟六典》施行何如？” 成俊議：“本朝每事，必遵華制，唯尊王命一事有異。中朝只尊王命，而不論奉命人高下。故王人雖微，序於諸侯之上。本朝則待諸使臣，因人異禮。《經濟六典》，有兩府則下馬，嘉善以下過行之文，恐非所以尊王命也。且《大典》內，只稱齋奉人不下馬者，凡齋奉人，必書吏等無知之輩，恐於使臣祇迎時，或忘香祝之尊，徒見使臣鞠躬而下馬，故別稱耳，非謂其香使以下，必下馬也。臣意以謂，香使以下，既陪香祝，則香祝壓尊矣，使臣祇送香祝後，自可避之，香使以下，安有下馬之理？” 傳于承政院曰：“若兩宰相，道遇一宰相，但受命而無</p>
--	---	--



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제후의 사신을 대우함에 있어 사람에 따라 예우함이 다릅니다. 《경제육전》에, 양부(兩府)에서는 말에서 내리고 가선 대부이하는 지나간다는 글은 아마도 왕명을 높이는 것이 못되는 듯합니다. 또 《대전》 안에 다만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고만 하였는데, 무릇 받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리(書吏) 등 무지(無知)한 무리이니, 아마도 사신을 전송할 적에 혹시라도 향축(香祝)의 높음을 잊고 단순하게 사신이 국궁하는 것만 보고서 말에서 내릴까 염려하였으므로, 따로 일컬은 것이지, 그 향사(香使) 이하가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향사 이하가 이미 향축(香祝)을 모셨으니, 향축은 압존(壓尊)이 되는 것이므로, 사신이 향축을 전송한 다음에는 자연 피하게 되는데, 향사 이하가 어떻게 말에서 내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만약 두 재상이 길에서 한 재상을 만났는데, 다만 왕명(王命)만 받고 왕지(王旨)를 받들고 가는 것이 없으면 말 위에서 서로 읊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왕지를 받들고 가면 비록 재상이라고 하더라도 말에서 내려 국궁하고 서 있어야 하며, 왕지를 받든 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길에서 노마(路馬)22771)를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린다.’고 하였으니, 지금 성준(成俊)의 의논이 비록 온당하지는 못하더라도 대개는 옳은 듯하다. 다만, ‘스스로 피해야 합니다.’라고 한 말은 상당히 옳바르지 못한 것이다. 승지(承旨)들의 의견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신종호(申從濩) 등이 아뢰기를,  
“성상(聖上)의 하교(下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향축(香祝)·왕지(王旨)를 받고 가는 자는 비록 삼공(三公)이 말에서 내

齋奉王旨者，則馬上相揖而過宜矣。若奉王旨而去，則雖宰相，下馬鞠躬而立，奉王旨者，當不下馬過去。《禮》云：‘見路馬於道，必下馬。’今成俊之議，雖未穩當，大概似是。但自可避之語頗曲。巧於承旨等意何如？”都承旨申從濩等啓曰：“上敎允當。”傳曰：“若受香祝、王旨而行者，雖三公下馬，而直過行，不下馬可也。宜以此，下傳旨于禮曹。前者李粹彦云：‘受香祝而去者，道遇儲君，則何以處之？’予意以爲，儲君，非三公之例。且儲君，安有不時出入之理乎？”

	<p>리더라도 곧바로 지나가고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도록 하라. 앞서 이수언(李粹彦)이 말하기를, ‘향축(香祝)을 받들고 가는 자가 길에서 저군(儲君)22772) 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處身)해야 합니까?’ 하였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저군은 삼공의 경우와 다르다고 여긴다. 또 저군이 어떻게 불시(不時)에 출입(出入)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p>	
<p>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16 일(갑오)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국속(國續)을 특사(特使)로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의 예조(禮曹) 대신 족하(大人足下)에게 글을 올립니다. 조국차(助國次)가 돌아올 적에 특별히 보내주신 존서(尊書)는 금년 3월에 오는 편에 받아 백배나 받들어 읽었습니다. 보내신 글 중에서, ‘적선(賊船)이 계속하여 침입(侵入)하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명(下命)을 듣는 즉시 두렵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손발을 놀릴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도중(島中)에 명하여 집집마다 수색하게 하고, 심지어는 의심이 갈 만한 것은 모조리 조사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책망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명(報命)하는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의논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더욱 태만(怠慢)한 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평조신(平朝臣) 종치부 대부(宗治府大夫) 국속(國續)을 차정(差定)하여 전사(專使)를 삼아 삼가 보명(報命)을 받들어 아뢰입니다. 적도(賊徒)가 사실로 있으면 가까운 시일(時日) 안에 생포(生捕)를 하거나 함수(函首)22773) 하거나 하여 존명(尊命)에 따른 것이 이미 여러 차례였습니다. 신(臣)이 털끝만큼도 귀국(貴國)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은 그 점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번번이 간악(奸惡)한 행위를 할 때마다 신은 비록 알지 못하였더라도 귀국(貴國)이 만약 듣고 알기만 하면 서중(書中)에다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삼포(三浦)의</p>	<p>○甲午/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國續，來獻土宜。其書曰：奉書朝鮮國禮曹大人足下。助國次回時，所特賜之尊書，今年三月到來便，百倍擎讀。賊船相繼而侵入者，聞命而悸慄恐懼，手足無措。因命島中戶搜家索，至糺訊其所怪，而未得其實於此。誰咎誰責乎，不知所爲。以此報命，于今擬議猶豫，雖然終無所報者，彌怠慢之罪難逃，差平朝臣宗治府大夫國續爲專使，謹奉馳報命。賊徒有實，則不移時日，或生捕，或函首以應于尊命者，已數回。臣之絲毫不背貴國者，以此可察。每每致奸惡者，臣雖未知，貴國若聞知者，書中載以賜之。三浦之民，雖爲貴國之民，恐被不法者，可有之，來書示賜者，應命耳。今書中所諭，當使邊將，臨機勦絕，毋或暫饒，實所庶幾也。其有所犯，而蒙其責，</p>

	<p>백성은 비록 귀국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법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듯합니다만 온 글에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명대로 따랐었습니다. 이번 글 중에서 말씀하신 것은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기회를 보아 잡아 죽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사실 소원입니다. 실재로 범한 것이 있어서 견책(譴責)을 당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이 되는 것이므로, 원망할 수가 없으며, 우선 이렇게 대략 아뢰입니다.</p> <p>우리의 백성들이 고기잡이를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해상(海上)에 내왕(來往)하던 자가 뜻밖에 풍파를 만나 고생을 하다가 귀국에 몰래 들어간 자도 더러 있을 것인데, 귀국의 변방 관리 중에 이익만 탐하는 무지(無知)한 자가 죄를 덮어 씌워 함부로 보고하여 스스로 명예를 구하려는 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 죄가 있어서 해를 당하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곳 도중(島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까마득한 바다인데, 동변(東邊)에는 출운주(出雲州)·석견주(石見州)이고, 남해(南海)에는 일기(一岐)·송포(松浦)·오도(五島)·평호(平戶)이고, 그 밖에 작은 섬들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적도(賊徒)가 매우 많습니다. 폐읍(弊邑)은 그 요진(要津)에 처(處)하여 방어(防禦)를 하고 있으므로, 아무 때고 와서 침범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기회를 노리다가 틈을 파고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폐읍은 사자(使者)에게 죄줄 수 없는 형편일 뿐입니다. 동래(東萊)의 온천(溫泉)은 바라보기만 하여도 병이 벌써 낫는 듯합니다. 3, 50일이 아니면 낫기가 어려운 증세인데, 조명(詔命)을 내려 승락해 주셨으니, 더할 수 없는 다행입니다. 대도(大刀) 2파(把), 연(練) 2필(匹), 청모마(靑毛馬) 1필을 진상(進上)합니다.”</p> <p>하였다.</p>	<p>自爲殃也，無所恨，略于先啓。我小民，或釣魚，或商買，來往海上者，非意爲風波被戰，而仰陰于貴國者，往往在之，貴國邊吏，無知而貪小利者，橫罪濫訴，以自求名，恐有之耳，有罪而被害者，理固然也。島中以之論之，大凡滄海渺漫，東邊出雲州、石見州，南海一岐、松浦、五島、平戶，自餘小島，無知數賊徒大多。弊邑處此要津，以致防禦，因此不能時時來侵，猶伺便乘間突入，以剽掠者，難期之。獨以敝邑，不可罪使者。東萊溫湯，望之疾已痼枯。不得三五十旬者，難愈，詔許及之者萬幸。進上大刀二把、練二匹、靑毛馬一匹。</p>
<p>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환자[還上]를 갚지 못한 자가 매우 많은데, 만약 갑진년(22784) 이상 것은</p>	<p>○戶曹啓曰：“還上不償者甚多，若甲辰年以上皆減，則恐國儲太損。”傳</p>

<p>(弘治) 3년 11월 21일(기해) 5번째기사</p>	<p>모두 감해 준다면 아마도 나라 저축이 너무 줄어들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무자년(22785) 이상 것을 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曰：“然則戊子年以上蠲減可也。”</p>
<p>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22일(경자) 3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갑신년(22786) 이후 무자년(戊子年) 이상 경기(京畿)의 환자(還子)를 바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감해 주도록 하셨으니, 성상(聖上)의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백성들이 의지하여 먹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비록 가난하지 아니한 자도 특별히 감해 주기를 희망하여 미루면서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신(臣)의 생각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卿)의 말과 같이 미루면서 바치지 않는다면 이는 백성들의 죄가 아니고 수령(守令)이 서둘지 아니해서 그러한 것이다. 갑신년(甲申年)부터 여러 해를 바치지 못한 것을 바치라고 독촉하면 가난한 백성이 혹 도망해 흩어진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감해 주게 한 것이다.” 하였다. 장령(掌令) 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옛말에 ‘백성이 풍족한데 임금이 어떻게 부족하겠는가?’ 하였고, 또 이르기를, ‘위에 것을 감하여 아래 것에 보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해 주게 한 것은 곧 아름다운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해 주다 보면 아마도 국용(國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감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때에 환납(還納)하지 아니한 자가 대개 잘 사는 사람이니, 지금 비록 감해 주더라도 가난한 백성의</p>	<p>○御經筵。講訖，戶曹判書鄭文炯啓曰：“甲申年以後，戊子年以上，京畿還上未納者特減，上恩至重。然還上，民所仰食，不可如此多減也。貧窮人則猶可矣，雖不貧窮者，希望特減，淹然不納，臣意以爲不便。”上曰：“果如卿言，但淹延不納，非民之罪，守令凌夷所致耳。自甲申年，累年不納者督納，則貧窮之民，或有逃散之弊。故特減耳。”掌令閔師騫啓曰：“古云：‘百姓足，君誰與不足？’又云：‘損上益下。’今特減之，斯爲美意。然如此蠲減，國用恐大損。”知事李克增啓曰：“蠲減美矣。然其不趁時還納者，率皆豪右之徒，今雖蠲減，非窮民之利也。文炯之啓，不爲非矣。”師騫曰：“若不得已蠲減，則辨其貧富而減之何如？”上曰：“若分貧富，詐僞必多，如此則莫如勿減。”侍講官金應箕啓曰：“王者之富，藏於民，今蠲減之令已下，臣意以謂，蠲減無妨。”克增啓曰：</p>

	<p>이익은 못됩니다. 그러니, 정문형의 계청(啓請)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민사건은 말하기를,  “만약 부득이(不得已)해서 감해 준다면 빈부(貧富)를 가려서 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上)이 말하기를,  “만약 빈부(貧富)를 나눈다면 허위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감해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임금의 부(富)는 백성에게 간직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금 감해 주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으니, 신의 생각으로도 감해 주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이극중은 아뢰기를,  “만약 전토(田土)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면 그 빈부(貧富)를 밝히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만약 가난하여 도망하고 없는 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나머지는 분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신의 외방(外方)에서 목은 밭을 보고 그 까닭을 물어 보았더니, ‘가난한 자가 밭을 갖지 못하여 도망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도망한 자들은 감해 주어도 되겠습니다만 잘사는 사람들이 환납(還納)하지 않고 미루면서 감해 주기를 희망하는 자는 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빈부(貧富)를 밝혀서 감해 주게 하라.”  하였다.</p>	<p>“若考土田多寡， 則其貧富， 不難辨矣。” 上曰：“若貧寒逃散者則已矣， 其餘分辨爲便。” 左承旨金悌臣啓曰：“臣於外方， 見陳田問之曰：‘貧寒者未能償債而逃。’ 臣意逃散者可減， 其豪右之徒， 淹延不納， 希望特減者減之不便。” 上曰：“令戶曹， 辨貧富減之。”</p>
<p>성종 247권, 21년</p>	<p>제기 도감(祭器都監)에서 아뢰기를,</p>	<p>○祭器都監啓曰：“禮文：‘匕用棘木爲</p>

<p>(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22 일(경자) 5번째기사</p>	<p>예문(禮文)에, ‘숭가락[匕]은 극목(棘木)22787) 으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 극목은 곧 작은 극목입니다. 꼭 극목을 쓰는 뜻은 알지 못하겠습디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다만 단단한 점을 취한 듯합니다. 그러니 2년생(二年生) 나무를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예문에 이르기를, ‘우정(牛鼎)22788) 에 있어서 천자(天子)는 황금(黃金)으로 그림을 그리고, 제후(諸侯)는 백금(白金)으로 그린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천자와 제후는 우정(牛鼎)을 썼고, 대부(大夫)는 양정(羊鼎)을 썼고, 사(士)는 시정(豕鼎)을 썼었는데, 그 뒤에 임금은 세정(鼎)을 다 썼습니다. 지금 옛날에 썼던 우정을 보건대, 은(銀)으로 그렸고, 양정·시정은 그림이 없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옛날에 만든 번간로(燔肝爐)는 높낮이가 같지 아니하니, 청컨대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 한 가지 모양으로 개조(改造)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세 정(鼎)은 모두 백금(白金)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p>	<p>之.’ 棘木卽小棘木也。 未知取義, 臣等意謂, 但取堅韌耳。 用二年木何如? 又禮文云: ‘牛鼎天子用黃金畫之, 諸侯用白金畫之.’ 古者天子、諸侯用牛鼎, 大夫用羊鼎, 士用豕鼎, 厥後人君, 皆用三鼎。 今觀舊用, 牛鼎以銀畫之, 羊、豕鼎無畫, 未知何所據也。 又舊件燔肝爐, 高低不齊, 請從高, 一樣改造。” 傳曰: “三鼎皆用白金畫之, 餘依所啓。”</p>
<p>성종 247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1월 25 일(계묘) 2번째기사</p>	<p>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박안성(朴安性)·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신주(辛鑄)·우도 수군 절도사(右道水軍節度使) 전임(田霖)·좌도 수군 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 박암(朴巖)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본도(本道)의 연해(沿海)에 사는 백성이 요역(徭役)을 피하기 위하여 제도(諸島)에 잠입(潛入)하여 어염(魚鹽)으로 생활을 하고 배로 집을 삼아 해상(海上)에 출몰(出沒)하면서 기회를 타고 도적질을 하므로,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모두 쇠환(刷還)시켜 거주(居住)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그 곳의 수령(守令)들이 그것을 조사하여 검거하지 아니하므로, 차츰차츰 도망하여 돌아가고 있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수적(水賊)을 모조리 잡은 뒤에 끝까지 수색하여 쇠환시키도록 하고, 만약 그전처럼 함부로 거주하는 자는 죄를 주도록 하라.”</p>	<p>○下書全羅道觀察使朴安性、兵馬節度使辛鑄、右道水軍節度使田霖、左道水軍節度使朴巖曰: 本道沿海居民, 規避徭役, 潛入諸島, 資魚鹽爲生, 以船爲家, 出沒海上, 乘便作賊, 自先王朝, 悉令刷還, 毋得居住。 然所在守令, 不之檢察, 稍稍逃還, 甚不可。 水賊畢捕後, 窮搜刷還, 如有仍前冒居者, 抵罪。</p>

<p>성종 24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2월 1일 (무신) 2번째기사</p>	<p>하였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강겸(姜謙)이 아뢰기를, “지금 성변(星變)이 있는데, 전하(殿下)께서 진실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시면 비록 그러한 현상(現象)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응징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권경유(權景裕)는 아뢰기를, “혜성(彗星)과 태백성(太白星)의 재이(災異)가 연거푸 나타났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덕정(德政)을 아울러 닦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아뢴 것이 매우 옳다. 성변(星變)은 나의 부덕(不德)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사실은 신(臣) 등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 성상(聖上)의 덕에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덕(德)을 닦아서 변이(變異)가 사라지도록 하소서.” 하고, 사간(司諫) 권경우(權景祐)가 아뢰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경제(景帝) 때에 혜성(彗星)·장성(長星)·패성(孛星)이 있어 재이가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경제가 덕을 닦아 하늘의 경계를 삼갔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거의 40년이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몸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늘의 견책(譴責)에 응답하도록 하소서.” 하고, 강겸은 아뢰기를, “요즈음 관리(官吏)들이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백관(百官)을 경계시켜서 각자가 힘쓰도록 하소서.”</p>	<p>○御經筵。 講訖， 侍讀官姜謙啓曰：“今有星變， 殿下誠能謹天戒， 則雖有其象， 無其應矣。” 檢討官權景裕啓曰：“彗星太白災異疊見， 不可不戒。 願殿下， 竝修德政。” 上曰：“爾等所啓甚是。 星變由予不德。” 領事盧思愼啓曰：“實由臣等無狀， 聖德何有失耶？ 然更念修德， 以消變異。” 司諫權景祐啓曰：“漢文、景時， 有彗星、長星、孛星， 災異疊見。 然文景修德， 克謹天戒， 故黎民乂安， 幾四十年。 願殿下修省， 以答天譴。” 姜謙啓曰：“當今官吏多不勤職事， 請戒諭百官， 使各飭勵。” 上曰：“所啓果是。” 謙又啓曰：“如避殿減膳等事， 亦當舉行。 且今諸君、翁主第舍， 比古甚侈。 大臣之外祖誼城君居第， 本孝寧大君家也， 堂屋卑狹。 今諸君家所構木石極長大， 轉輸亦難， 其弊不貲。” 上曰：“爾所啓大概則是， 其實不然。 以所不見之事， 臆料言之， 固不可。” 同知事李世佐啓曰：“今聞南方有倭變， 遣敬差官， 使同日舉事， 期於捕獲。 但賊倭， 必不留住一處， 若聞搜捕， 則</p>
--	--	--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것이 진실로 옳다.”  하였다. 강겸이 또 아뢰기를,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22795) 하는 등의 일도 마땅히 거행(舉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군(君)이나 옹주(翁主)의 집들이 옛날에 비하여 매우 사치스럽습니다. 대신(大臣)의 외조(外祖)인 의성군(誼城君)의 제택(第宅)은 본래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집이었는데, 집이 낮고 협소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군(君)의 집을 짓는 목재(木材)와 석재(石材)가 매우 길고 커서 운반하기도 어려우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아뢴 것이 대개는 옳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억측을 말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남방(南方)에 왜변(倭變)이 있다고 하는데,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같은 날 거사(擧事)하여 기어이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왜적(倭賊)은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만약 조사하여 잡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바다에 배를 띄워 도망할 것이므로, 추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상우도(慶尙右道)와 전라 좌도(全羅左道)는 왜적이 오간 길목이오니, 청컨대 무신(武臣)으로서 사리(事理)를 아는 자를 선발해 보내서 그 곳을 지키게 하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잡은 다음에 도주(島主)에게 선유(宣諭)하여 금지시키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장수를 보내어 한 곳을 지키며 기어이 잡도록 하게 하면 혹 공(功)을 바라서 일을 만들어내는 자도 있을 것이니, 진실로 옳지가 못하다.”  하였다.</p>	<p>放舟大洋而去， 追之難矣。 慶尙右道、全羅左道，是賊倭來往之路，請擇遣武臣識事理者，守此地，則必能擒獲矣。 擒獲之後，宣諭島主，使之禁戢則可矣。” 上曰：“若遣將留住一處，期必捕獲，則或有邀功生事者，固不可也。”</p>
--	--	---



<p>성종 24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2월 1일 (무신) 4번째기사</p>	<p>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p>	<p>○命減膳。</p>
<p>성종 24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2월 6일 (계축) 4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종호(李宗顥)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은 듣건대, 천지 만물(天地萬物)은 나의 한 몸에 근본하였으므로,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나의 기(氣)가 순조로우면 천지의 기도 순조롭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인주(人主)의 한 마음은 천지와 서로 유통(流 通)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 착하게 먹느냐 악하게 먹느냐에 따라 길하고 흉한 징조가 각각 유(類)로써 응하는 것입니다. 전하(殿下)께서 정신을 가다듬 고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신 것이 지금 20년이나 되었으며, 모든 것을 예법 (禮法)에 맞게 하여 잘못된 일이 없었는데, 금년 여름에 대궐의 뜰에서 사람 에게 벼락이 떨어졌으니, 하늘의 견책(譴責)이 극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혜성(彗星)이 나타나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으니, 신(臣) 등은 성 상(聖上)께 어떠한 실덕(失德)이 있어서 이러한 이변(異變)이 생기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일이 잘못되어 어떤 흉한 징조가 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유통성이 없는 해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재이 (災異)가 나타나는 것이 어찌 원인이 없이 그렇겠습니까? 전하께서 요즈음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감선(減膳)을 행하시고 자신을 인책(引 責)하셨는데도 하늘의 견책은 아직도 이러하니, 신 등은 아마도 전하께서는 아무리 허물을 줄이고자 하여도 도저히 다 없앨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근래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많이 채용하여 공기(公器)를 더럽혔으니, 한두 사람을 잘못 채용한 것이 비록 하늘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전하의 생각에 한 번 이라도 착하지 못함이 있었다면 하늘의 마음이 바르겠습니까? 하늘의 녹(祿) 으로 녹을 주고 하늘의 직위(職位)로 벼슬을 주는 것이니, 임금이 사사롭게</p>	<p>○司諫院大司諫李宗顥等上疏曰： 臣等聞天地萬物，本吾一體，吾之心 正，則天地之心亦正，吾之氣順，則天 地之氣亦順。況人主一心，與天地相 爲流通，一念之善惡，而休咎之徵，各 以類應。殿下勵精圖治，于茲二十年 矣，動以禮法，未有過舉，今夏震人闕 庭，天之譴告極矣。今又彗星出，而 太白晝見，臣等未知聖上，有何失德而 致此異耶？若云某事失而某咎徵應，則 近於膠固矣。然天之見異，豈無自而 然耶？殿下近日戒愼恐懼，減膳責躬， 而天譴猶是，臣等竊恐殿下，雖欲寡 過，而猶未盡也。近來多用匪人，以 累公器，一二用人之失，雖若不關於 天，而殿下之念，一有不善，則天心其 正乎？祿天祿，位天位，非人主所當私 也。崔興孫，一無識庸流也，驟陞堂 上，以長一邑。臺諫駁之，殿下固拒 不納，臣等未知何所取耶，恐未出於正 也。李繼命，市井無賴之徒也，臺諫</p>

	<p>할 수 없는 것입니다.</p> <p>최흥손(崔興孫)은 하나의 무식(無識)하고 용렬한 무리인데, 갑자기 당상(堂上)으로 승진시켜 한 고을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대간(臺諫)들이 그를 논박(論駁)하였으나 전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 등은 어떤 점을 취하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올바른 데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이계명(李繼命)은 시정(市井)의 무뢰(無賴)한 무리였으므로, 대간들이 낭관(郎官)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박하였으나 전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 등은 어떤 점을 취하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올바른 데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심지어 민영건(閔永肩)에 있어서는 간사스럽고 아첨하는 것을 온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도 전하께서 특별히 참판(參判)을 제수하셨으므로, 여론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종(侍從)들도 불가(不可)하다고 하고 대신(大臣)들도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대간들은 간쟁(諫爭)하느라고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복합(伏閣)22813) 하였었습니다만, 전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 등은 어떤 점을 취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p> <p>옛날 명제(明帝)는 한(漢)나라의 중주(中主)였습니다. 그런데 관도 공주(館陶公主)가 아들을 위해 낭관(郎官)을 요구하자 명제가 허락하지 않고 돈 10만냥을 주면서 말하기를, ‘낭관은 위로는 열수(列宿)에 응하는 것이고 외방에 나아가면 백리(百里) 지역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그 책임자가 되지 못하면 백성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낭관이나 수재(守宰)도 책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육경(六卿)에 다음가는 자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처음 그 세 사람을 채용하였을 적에 생각이 이미 한 번 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게다가 또 대간과 시종과 대신의 공의(公議)를 완강히 거부하셨으니, 이는 전하의 생각이 두번 착하지 못</p>	<p>駁以爲不合郎官，殿下固拒不納，臣等未知何所取耶，恐未出於正也。至於閔永肩，邪佞譎詐，國人皆知之，殿下特受參判，物論悠悠，侍從以爲不可，大臣以爲不可，臺諫爭之，伏閣幾閱月，而殿下固拒不納，臣等未知何所取耶，恐或出於私也。明帝，漢之中主也，館陶公主爲子求郎，帝不許賜錢十萬曰：“郎官上應列宿，出宰百里，苟非其人，民受其殃。是以難之。”郎官守宰，猶不可非其人，況六卿之亞乎？殿下初用此三人，一念已不善矣，又固拒臺諫、侍從、大臣之公議，殿下之念，再不善矣。安知今日之異，非以此耶？古人云：“烹弘羊，天乃雨。”李德裕拜相，即日大雨。臣等竊謂，去此三人，以答天譴，則人心快矣，人心快，則天心其有不正乎？古語云：“應天以實，不以文。”伏願殿下潛心焉。</p> <p>命示領敦寧以上與政府。沈滄議：“星變，臣未知其故。然豈應用人之非？”尹弼商議：“天之示警，專是仁愛人君，固當恐懼修省，以答天譴。今之星變，安敢必曰爲此三人耶？然諫院進戒，則</p>
--	---	---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변(異變)이 그로 인한 것이 아닐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홍양(弘羊)을 삶아 죽여야 하늘에서 비가 올 것입니다.’(22814) 하였고, 이덕유(李德裕)가 승상(丞相)에 제수되자 그날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신 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그 세 사람을 제거시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해 주면 인심(人心)이 통쾌해질 것이고 인심이 통쾌해지면 하늘의 마음인들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야지 형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옳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희(沈澹)는 의논하기를,

“성변(星變)에 대해서는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을 잘못 등용한 데 감응(感應)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하늘이 경계(警戒)를 보이는 것은 오직 인군(人君)을 인애(仁愛)함이니, 진실로 마땅히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늘의 견책(譴責)에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성변이 어찌 반드시 이 세 사람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원(諫院)에서 경계를 드린 것은 그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는 뜻입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사람을 쓰거나 행정(行政)의 잘못은 모두 성상(聲上)의 책임이고 재앙을 부른 까닭은 사실 보상(輔相)이 책임자가 못되는 데에 달린 것이므로, 신(臣)은 지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을 애태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공론(公論)을 널리 받아들여시고 깊이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두려워하여 재구(災咎)를 사라지게 하소서. 송(宋)나라 경공(景公)이 자신을 견책(譴責)하는 말

無所不用其極之意也。” 洪應議：“用人行政之非，皆上之責，而致災之由，實在輔相之非人，臣方痛心，疾懷之不暇。只願廣納公論，深自抑畏，以消災咎。宋景公出罪己之言，熒惑退舍，應感之速如是。豈曰誣哉？” 盧思慎議：“臣不知天文，然古書星辰之變，或爲人君，或爲宰相。臣以無狀，竊位三公，今此星變，恐由臣身。亟罷臣職，庶答天譴。天豈爲永肩等二三細瑣小臣，以譴告之哉？然人君一念善惡，天心隨以應，故宋公一言之善，熒惑退舍。今當天變，上下恐懼之時，諫院之疏，雖有過中，出於公議，納諫之美，奚啻一言之善？” 尹壕：“天之譴告，豈因此三人而然耶？” 李克均議：“閔永肩，臣之戚屬，故前日亦不與議。崔興孫、李繼命，皆武才人也。其心術則臣未敢知，天道悠遠難知，未必以用此數人，致此星變。然天之示變，必有所自。請益加勵精，刑獄之冤，民間疾苦，更飭申理。” 傳曰：“崔興孫、李繼命，別無痕咎。且興孫，今任守令，又無過失。永肩事，頃已議之，其以此意諭諫院。”

을 하자 형혹(熒惑)이 삼사(三舍)를 물러갔다 하니, 감응(感應)의 빠름이 이와 같습니다. 어찌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신이 천문(天文)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옛글에 성신(星辰)에 대한 재변(災變)에 있어서는, 임금 때문이라고도 하고 재상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외람되게 삼공(三公)의 위(位)에 있으니, 이번의 성변(星變)은 아마도 신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의 직임(職任)을 빨리 파직하시면 아마 하늘의 견책에 보답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이 어찌 민영견(閔永肩) 등의 하찮은 두세 소신(小臣) 때문에 견고(謹告)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생각이 한번 선(善)하고 악(惡)해짐에 따라 하늘의 마음도 따라서 응하므로, 송나라 경공의 한마디 착한 말에 형혹이 삼사나 물러갔습니다. 지금 천변(天變)을 당하여 위아래에서 모두 두려워하는 때에 간원(諫院)의 상소가 비록 과중(過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이니, 간언(諫言)을 바아들이는 미덕(美德)이 어찌 한마디의 착한 말 정도가 될 뿐이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하늘의 견고(謹告)가 어찌 그 세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민영견은 신(臣)의 척속(戚屬)이므로, 전일(前日)에도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 습니다. 최흥손(崔興孫)·이계명(李繼命)은 모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가짐은 신이 알 수 없습니다만, 천도(天道)는 까마득하여 알기가 어려운 것인데, 반드시 그 몇 사람을 등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성변(星變)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성변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형옥(刑獄)의 억울함과 민간(民間)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써서 다스리게 하소서.”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최홍손·이계명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그리고 최홍손은 지금 수령(守令)으로 있으며 게다가 과실(過失)도 없다. 민영건의 일은 지난번에 이미 의논하였으니, 이 뜻을 가지고 간원(諫院)에 유시(諭示)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4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2월 8일  (을묘) 4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계동(李季斗)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 등이 삼가 보건대, 근래에 성변(星變)으로 인하여 전지(傳旨)를 내려 몸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였습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하고 학문이 천박하여 시사(時事)에도 능통하지 못하였는데, 천인(天人)이 감응(感應)하는 묘리(妙理)에 대해 어찌 감히 비슷한 것인들 가리켜 말씀드리려서 망렬되게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재앙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불러들인 것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감히 정리(正理)를 가지고 옛일을 참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일(近日)에 혜성(彗星) 같은 요성(妖星)이 나타났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는데, 전사(前史)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역란(逆亂)과 흉패(凶悖)로 여겨 비상(非常)한 악기(惡氣)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혼란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난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삼가하고 조심하면 재앙이 사라지고 복(福)이 내리지만 소홀히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구벌(咎罰)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제(齊)나라에 혜성이 나타나자 제후(齊侯)가 빌려고 하니,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빌어서는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송(宋)나라에 형혹성(螢惑星)이 나타났을 적에 경공(景公)이 &lt;착한 말을&gt; 한마디 하자 삼사(三舍)나 물러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천변(天變)을 두려워하시어 허물을 스스로 인책(引責)하셨으니, 반드시 재앙이 상서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마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게 하소서.</p>	<p>○司憲府大司憲李季斗等上書曰：  臣等伏觀，近因星變，下旨修省。臣等俱以庸劣淺學，不通時事，其於天人感應之妙，安敢指陳比類，妄瀆天聰乎？雖然災不妄作，由人所召。敢將正理，參商古事。近日妖星似彗，太白晝見，前史以爲，逆亂凶悖非常惡氣之所生也。不有大亂，必有大兵。人主敬畏謹慎，則禍消福降，忽然簡易，則咎罰不除。昔齊有彗星，齊(侯)〔侯〕欲禳之，晏子曰：“無益也。宋有熒惑，景公一言，退徒三舍。”今我殿下，寅畏天變，引過責躬，必將災變爲祥，禍轉爲福。願殿下，益敦此心，以答天譴。臣等謹以淺見，條陳數事，伏惟殿下垂察焉。臣等伏以，《書》曰：“知人則哲，惟帝其難之。”堯之時，四凶、元、凱，竝立於朝，終乃辨之，以臻雍熙之治。季世之君，偏信邪佞，以致禍敗者，不可勝數，竊觀殿</p>

신 등은 삼가 천박한 식견(識見)으로 몇가지 일을 조별로 아뢰겠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신 등은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명철(明哲)하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요제(堯帝)도 어렵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요(堯)임금 때에는 사홍(四凶)22820) 과 팔원(八元)·팔개(八愷)22821) 가 조정(朝廷)에 섞여 있었으나, 마침내 그것을 밝혀내어 태평스러운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후세(後世)의 임금들은 간사하고 아첨함을 지나치게 믿어서 화란(禍亂)과 패망(敗亡)을 불러 들인 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즉위(即位)하신 이후로,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밤늦게 잠자리에 드시며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면서, 어진 사람 구하기를 목마를 적에 물 찾듯 하였고, 간사한 사람 제거하기를 미련없이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받아들이기를 못미치는 듯이 하시고 간언(諫言) 따르시기를 고리를 돌리듯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을 채용하심에 있어 적당함을 잃으시어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자못 의심스럽다고 의논하고 있으니, 이는 아마도 전하께서 많은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시고 발탁한 자가, 간사하고 아첨하여 인망(人望)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직임(職任)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고(自古)로 제왕(帝王)이 간사한 신하와 나라 일을 꺾으면 나라가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충성스러운 신하와 정치를 도모하면 나라가 반드시 편안해졌습니다. 대체로 충성스러운 신하는 강직하므로 곧은 말을 하고 간사한 신하는 유순하므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는 진출하기 쉽고 친근해지며, 곧은 말을 하는 자는 진출하기 어렵고 소원해지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진출하고 물러남은 사실 치도(治道)의 성쇠(盛衰)에 관계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선니(宣尼)22822) 의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경계를 참고하시고 우순(虞舜)의 참설(讒說)을 막으라는 교훈을 본받으시어 그 무리들을 빨리 제거하시고 날마다 어진 준재(俊

下, 自即位以來, 宵衣旰食, 勵精圖治, 求賢如渴, 去邪勿疑, 納善如不及, 從諫若轉環。 近者用人失當, 中外之人, 頗有疑議, 此豈非殿下排沮群議而擢拔者, 或有奸回諂佞, 而不合人望, 不稱其職者乎? 自古帝王, 與佞臣謀國, 國必亂, 與忠臣圖治, 國必安。 蓋忠臣骨鯁而言直, 佞臣柔順而言美, 言美者易進而親, 言直者難進而疎, 二者進退, 實關治道之盛衰。 伏願殿下, 稽宣尼遠佞之戒, 法虞舜聖讒之訓, 亟去此輩, 日與賢俊共治天職, 以應天變。 臣等聞堯之協和萬邦, 以親睦九族爲本, 此帝王之盛德也。 然於朝廷之禮, 不可以不肅也。 殿下於宗親進宴之時, 不於正殿, 備侍衛、史官, 而乃於禁禦, 繼晷而罷, 臣等固知殿下萬機之假, 引接宗親, 篤友愛之義, 申家人之禮矣。 然淮南王, 文帝之弟也, 梁孝王, 景帝之弟也, 皆以至親, 待以優恩, 而怙寵驕塞, 未畢其歡。 文、景之於漢, 號稱賢君。 然猶過於親親之禮, 反失友于之歡。 況今宗室子孫, 於聖上, 既無淮南、梁孝之親, 則其待之之禮, 尤不可以去朝儀, 而行家人之禮

才)들과 함께 천직(天職)을 다스려서 천변(天變)에 응하게 하소서. 신 등이 듣기로는, 요(堯)임금이 만방(萬邦)을 화협(和協)하게 한 것은 구족(九族)을 친목(親睦)하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았다고 하는데, 이는 제왕(帝王)의 성덕(盛德)입니다. 그러나 조정(朝廷)의 예(禮)는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종친(宗親)들이 진연(進宴)할 적에 정전(正殿)에서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위(侍衛)·사관(史官)을 대비(對備)시켜 놓고 금어(禁籟)22823) 에서 행하시며 새벽까지 계속하시니, 신 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만기(萬機)를 다스린 여가에 종친을 만나보고 우애의 의(義)를 돈독히 하고 가인(家人)의 예(禮)를 펴고자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남왕(淮南王)은 문제(文帝)의 아우이고, 양효왕(梁孝王)은 경제(景帝)의 아우였는데, 모두 지친(至親)으로서 특별한 은총으로 대우를 받자 그 은총을 믿고 교만을 부리다가 그 기쁨을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漢)나라 문제·경제는 현군(賢君)으로 일컬어진 분입니다. 그러나 친친(親親)의 예에 지나쳐서 도리어 우애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종실(宗室) 자손(子孫)은 성상(聖上)에게 회남왕이나 양효왕처럼 가깝지도 않으니, 그들을 대우하는 예는 더욱 조의(朝儀)를 버리고 가인(家人)의 예로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종친들은 공경하고 조심하여 예법(禮法)을 지키는 선비와 같으니, 그 누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함이 있겠습니까만, 신 등이 그래도 염려하는 것은 시사(侍射)할 적에 술에 취한 나머지 활쏘기하는 편의 우열(優劣)을 논하고 점수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며 시끄럽게 떠들어 공경하는 도리를 잃은 것과 같으니, 곧 사체(事體)에 손상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활쏘기하는 것은 옛 정례(正禮)인데, 어찌 좌우(左右)의 시신(侍臣)을 피하여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부터 제왕(帝王)은 몸소 예의(禮義)를 실천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후세(後世)에 본보기가 될만하였어도 자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의와 법도를 무너뜨려서 위란(危亂)을 이룬 자가 많았습니다.

也。今之宗親，恪勤敬慎，有同禮法之士，孰有小失於進退禮義之間乎，臣等尙慮，侍射之時，醉飽之餘，論射偶之優劣，較畫數之多少，紛紜戲謔，若失恭敬，則無乃有損於事體乎？射乃古之正禮也，何必避左右侍臣而爲之乎？自古帝王，躬行禮義，一言一動，皆爲可法於後世，而子孫尙或不率，敗度敗禮，以致危亂者多矣。況以不可法之事而垂示乎？在今聖明之朝，雖若無害，而流及後嗣，安知其無弊乎？伏願殿下，一依《五禮儀》，而無以一時之私廢萬世不易之禮也。臣等伏聞，《春秋》錄戎：“來者不拒，往者不追。”誠以夷狄，不可以中國之治治之也。三苗之來格，四夷之來王，皆由威德之所及，固非損威和親之致然也。今者倭、野人接見之時，必令上殿進爵，夫夷狄，非我族類，人面獸心，不知禮義，乍臣乍叛，常以復讎報怨爲事，忘生輕死，笑談之間，小有不協，輒相加害，是豈可近者乎？況荊軻、聶政之變，古亦有之，是尤可戒也。殿下，一身，係宗社臣民之重，而敢行危道，如是何也？臣等竊爲寒心。但可待之

그런데 더구나 본받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성명(聖明)하신 조정에서는 비록 해로움이 없을 것 같습디만, 후세의 자손에게 미치게 되면 폐단이 있을 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일체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하여 한때의 사정(私情)으로 만세(萬世)에 바꿀 수 없는 예(禮)가 폐지되지 않게 하소서.

신 등이 삼가 듣기로는, 《춘추(春秋)》에서, 오랑캐에 대한 일을 기록함에 있어,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는 붙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오랑캐들은 중국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삼묘(三苗)가 감복하여 온 것(22824) 과 사방 오랑캐가 조공(朝貢)을 바친 것은 다 위덕(威德)이 그들에게 미쳤기 때문이었지 위덕을 손상시켜가면서 화친(和親)을 하여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 왜(倭)나 야인(野人)을 접견할 적에 반드시 전(殿)에 올라 술잔을 바치게 하시는데, 그 오랑캐들은 우리의 족류(族類)도 아니며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서 예의를 알지 못하며, 신하도 되었다가 배반도 하다가 하면서 복수를 하거나 분풀이를 하겠다는 일만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생(生)에 대한 미련이 없고 죽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이에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곧바로 가해(加害)를 하니, 이들이 어찌 가까이 할 자들이겠습니까? 더구나 형가(荊軻)22825) 와 섭정(聶政)22826) 과 같은 변은 옛날에도 있었으니,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의 한 몸은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이 달려 있는 귀중한 몸이신데, 위태로운 길을 그렇게 밟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 등은 매우 한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예로써 대우해 주고 성의껏 감싸주면 되는 것이지 어찌 노린내 나는 무리를 보좌(黼座)에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지금부터는 그들을 접견하실 적에 술잔을 올리게 하시지 마시고 오랑캐를 대하는 예를 보존하도록 하소서.

신 등이 듣기로는, 《서경(書經)》에 ‘제후(諸侯)들에게 안일(安逸)과 기욕(嗜

以禮，撫之以誠，何必以腥膻之醜，而昵近黼座乎？伏願殿下，自今接見之時，勿令進爵，以存待夷之禮。臣等聞：“無教逸，欲有邦，兢兢業業。一日二日，萬機無曠庶官。天工人其代之。”然則人主，雖一念一事之微，固不可暇逸而不慎也。大抵亂不生於亂，每生於治；危不生於危，每生於安，治亂安危相爲倚伏。我朝昇平日久，朝廷無事，君臣上下，當以逸豫爲戒。近來交年、除夜、庚申之夕，尚循弊習，內而禁中，外而侍臣，皆用女樂，終宵宴樂。又於三春踏青，仲秋翫月，賜以酒樂，極意爲樂，又時時或聚後苑，或會公處，亦賜酒樂，使之極權而罷，其供頓糜費之弊則已矣，於殿下無疆惟恤不敢違寧之盛德何如？百姓從行，不從言。雖有會飲之禁，罔或知警，宴飲無度，耽樂無節，何圖聖明之時，尚蹈末世浮靡之習乎？臣等伏願殿下，一革弊風，慎勿遊逸，使國家永疎也。臣等聞風俗之厚薄，關於世道之污隆。方今人心澆漓，風俗日薄，挾詐之徒，飾非固爭，聽訟之吏，擿其奸僞，則反極口詆毀，申達上聰，以殿下



欲)을 본받지 않게 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루이틀에 만(萬)가지 일의 기틀이 생기는 것이니, 서관(庶官)의 직무가 폐지되지 않게 하소서. 천공(天工)22827) 을 사람이 대신 해야 하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금의 비록 하찮은 생각 하나와 일 한 가지라도 진실로 한가롭고 안일하게 여기고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혼란은 어지러울 적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번 잘 다스렸을 적에 생기는 것이며 위태로움은 위태로울 적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번 편안할 적에 생기는 것이니, 치란(治亂)과 안위(安危)는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태평한 지가 오래 되었고 조정도 무사하였으니, 군신(君臣)이나 상하(上下)가 안일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교년(交年)22828) ·제야(除夜)22829) ·경신(庚申)22830) 날 밤에 아직도 폐습(弊習)을 따라, 안으로는 금중(禁中)과 밖으로는 시신(侍臣)들이 모여 여악(女樂)을 사용하며 밤새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춘(三春)의 답청(踏青)과 중추(仲秋)의 완월(翫月) 때에도 주악(酒樂)을 내려 주어 마음껏 즐기게 하며, 또 때때로 후원(後苑)에 모이기도 하고 공처(公處)에 모이기도 하는데 역시 주악(酒樂)을 내려 주어 마냥 즐거움을 극도로 다하게 하고서 과하니, 거기에 제공되는 비용의 폐단은 그만두고라도 전하께서 끊임없이 백성을 염려를 하시며 감히 편안한 생활을 하시지 않으시는 성덕(盛德)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웃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지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여 마시지 못하게 금한다고 하더라도 경계할 줄을 모르는데, 잔치를 여는 것이 법도가 없고, 탐락(耽樂)함에 절제함이 없으니, 어찌 성명(聖明)한 시대에 아직도 말세(末世)에서 풍미하던 폐단을 답습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신 등은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퇴폐한 풍속을 일체 개혁하시고 안일을 경계하시어 국가로 하여금 영구히 믿고 의뢰할 수 있게 하소서.

신 등이 듣기로는, 풍속의 후박(厚薄)은 세도(世道)의 성쇠(盛衰)에 관계된다

視民如傷之心，寧忍愒然乎？以是而移于他司，又不如意，輒復更訴，終數十年而不決者，蓋多有之矣。非徒斷訟無際，抑亦虧損大體。若官吏之不得盡法於權勢賂賄者，則自有《大典》治之之法也，何必盡信其言，而有疑委任之人也？夫帝王之用人，疑則勿任，任則勿疑。故雖有奸諛巧佞，知其信篤而不可間，勢重而不可搖，先儒堂高〔廉〕陸之言，實善喻也。伏願殿下，責付有司，勿輕移易，俾速斷決。如有以是爲非，挾私背公者，罪之不饒，庶乎奸僞自戢，風俗自厚，民亦無冤矣。臣等聞自古邊城之患，未必盡由夷狄，亦由邊吏擾以致之。我國東南接倭，西北連戎，眞腹背受敵之國也。置鎮列堡屯兵要害，備禦之策，可謂至矣。近聞倭奴，犯微剽竊官舶，此必三浦倭人，因鈞採海上，乘其不備鼠竊狗偷爾。如此之輩，鎮將亦足勦捕，何必遣使，以擾邊氓？況時方風高，不宜行船。李永禧、柳順汀等〔六〕〔去〕，姑罷還可也。平安一道沿江列鎮，上自楸坡，下至麟山，凡十五堡也。其間山路險峻，溪壑幽深，

고 합니다. 현재 인심(人心)이 야박해지고 따라서 풍속도 날로 각박해져서 간사한 무리들이 잘못을 꾸며대며 고집스럽게 다투다가, 송사를 다스리는 관리가 그 거짓임을 지적해 내면 도리어 온갖 말을 다하여 헐뜯으며, 성상(聖上)에게 아뢰기까지 하니, 백성들이 상처나 입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전하의 마음으로서야 어찌 차마 내몰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타사(他司)로 이첩(移牒)시키시는데, 거기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訴訟)하곤 하여 수십 년이 되어도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이 대체로 많습니니다. 이는 송사가 끝날 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체(大體)가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官吏)로서, 권세가(權勢家)들이 뇌물받은 것을 법대로 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大典)》에 그것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어찌 그들의 말을 믿고서 위임(委任)한 사람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무릇 제왕(帝王)이 사람을 쓰는 데는, 의심이 나면 임용(任用)하지 않고 임용하면 의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간사하고 아첨한 자가 있어도 임금이 철저히 믿는 줄로 알고 이간할 수가 없으며 위세(威勢)가 중(重)하여서 감히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니, 선유(先儒)22831)가 임금은 전당(殿堂)처럼 높고 신하는 뜰처럼 낮다고 한 것은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가볍게 다른 데로 이첩시키지 말고 속히 판결하게 하소서. 만약 옳은 것을 잘못이라고 하여 사심을 품고 공의(公議)를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 없이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마 간사함이 저절로 없어지고 풍속이 스스로 후하게 되어서 백성들 또한 원망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 등이 듣기로는 옛부터 변성(邊城)의 근심은 반드시 오랑캐 때문만이 아니고 변방 관리들의 잘못으로 불러들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동남(東南)으로는 왜(倭)와 인접(隣接)하였고 서북(西北)으로는 용적(戎狄)과 연(連)하였으므로, 사실 배와 등으로 적(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鎭)을 설치하고 보루(堡壘)를 배치하여 요해지(要害地)에 군사를 주둔시켰으

騎不再馳，人不聯行，堡之相距，遠或百里。是故一鎭受敵，諸鎭罕能相救。誠宜各自固守，清野以待，寧我致人，毋爲人所致也。況楸坡以上，道里遼遠，地瘠民貧，守之無益。祖宗朝，割閭延、慈城數郡之地而棄之。今聞滿浦節制使許混，襲殺虜人於絕遠之地，此非閭延之故墟，必是慈城之棄地。何必殺獲以啓爭桑之隙乎？臣等聞其地久曠，草木茂而禽獸多。虜或潛來射獵。近日所獲，安知非獵獸之輩耶？若爾則虜必忿恨，以圖報復，今宜速遣驍將二三，各領軍官，分屯要害，聽節度使方略爲之備。臣等備位言官，未有補報，適因天變，敢陳如右。願殿下少垂覽焉。

命示領敦寧以上與政府。沈澹、洪應、李克培、盧思慎、魚世謙、李克均議：“第一條，忠佞之論，必有所指。若果有其人，憲府職當論列，不當引而不發也。第二條，宗親侍射，待以家人禮，祖宗朝故事，未爲過舉。第三條，客人進爵事，累次收議，宜臨時斟酌施行。第四條，除夜、庚申等事，自祖宗朝亦行之。如踏青、翫月

니, 방어에 대비한 계획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으니, 왜노(倭奴)가 침범하여 관선(官船)을 노략질했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 허술한 틈을 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는 진장(鎭將)으로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변방 백성이 동요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풍파(風波)가 높을 때이니, 행선(行船)하기에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영희(李永禧)·유순정(柳順汀) 등이 간 것은 우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평안(平安) 일도(一道)의 강 연안의 열진(列鎭)은, 위로 추과(楸坡)에서부터 아래로 인산(麟山)에 이르기까지 보루가 무릇 열 다섯입니다. 그 사이에 산 길이 험하고 계곡이 깊어서 기마(騎馬)가 함께 달릴 수가 없고 사람도 나란히 갈 수가 없으며, 보루와의 거리가 1백 리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진(鎭)에서 적(敵)을 만나도 다른 여러 진에 서로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각자가 굳게 지키며 청야(淸野)하고 대비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상대를 오게 만들어야지 상대에게 끌려가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더구나 추과 이상은 거리가 멀고 땅이 메마르며 백성도 가난하니, 지켜봐야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조(祖宗朝)에서 여연(閔延)·자성(慈城) 등 몇 군(郡)의 지역을 떼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으니,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허혼(許混)이 후미지고 먼 지역에서 오랑캐를 잡아죽였다고 하는데, 이는 여연의 옛터가 아니고 반드시 버려둔 자성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죽여서 다투게 하는 실마리를 만들 필요가 무엇입니까? 신 등이 듣기로는 그 땅은 오래 비워 두었으므로,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禽獸)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랑캐들이 몰래 와서 사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즈음 잡았다는 오랑캐도 짐승을 잡으려고 왔던 무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랑캐가 반드시 한(恨)을 품고 보복하려고 할 것이니, 지금 마땅히 용감한 장수 2, 3명을 빨리 보내서, 각각 군관(軍官)을 거느리고

等事，停之無妨。 第五條，訟者誣訴聽訟官吏轉移他司事，依疏舉行何如？ 第六條，柳順汀、李永禧等，業已下去，不可更議。 第七條，遣將防禦事，與軍官下送事已定，不必別遣將士。” 尹弼商議：“今觀憲府疏語，其第一條，引而不發，臣未知指某爲倭臣也。 其第末條滿浦事，恐不當如是也，其他條，在上裁何如？” 尹壕議：“宗親侍射，自古如是，不必議。 客人進爵，果如所啓。 然自先王朝，行之已久，令該曹，更議施行何如？ 庚申、除夜，其來已久，猶之可也，踏青、翫月，停之無妨。 訟者移訴他司，痛禁爲便。 李永禧、柳順汀，曾已下去，恐未及停之。 滿浦別遣驍將有弊，加送軍官，益嚴防禦何如？” 成俊議：“憲府疏內，用人失當事，觀其語勢，其曰：‘倭臣謀國必亂，忠臣圖治必安。’ 其曰：‘亟去此輩，日與賢俊，共治天職。’ 必指重臣。 然不的指某人爲忠，某人爲倭，某人爲可亟去，所言當否，議之無據。 宗親侍射，祖宗朝例行之事，似非過舉。 倭野人進爵，前此下議，臣以爲祖宗朝例事，不可遽止，今更思之，人

	<p>요해지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절도사(節度使)의 방략(方略)에 따라 이에 대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 등은 언관(言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나라에 보필하고, 성은(聖恩)에 보답한 것도 없었는데, 마침 천변(天變)으로 인하여 감히 이상과 같이 아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조금이라도 살펴주소서.”</p> <p>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澹)·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어세겸(魚世謙)·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p> <p>“제 1조의, 충신과 간사한 자에 대한 의논은 반드시 가리킨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다면, 사헌부(司憲府)의 직임(職任)으로서 마땅히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논했어야지 말을 끌어내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p> <p>제 2조의, 종친(宗親)이 시사(侍射)할 적에 가인(家人)의 예(禮)로 대우한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이므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p> <p>제3조의, 객인(客人)이 술잔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수의(收議)하였던 것이니, 마땅히 때에 따라 참작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p> <p>제4조의, 제야(除夜)·경신(庚申) 등에 대한 일은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행하던 것입니다. 답청(踏靑)·완월(翫月) 같은 일은 중지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p> <p>제5조의, 소송하는 자가 무소(誣訴)하는 것과 청송(聽訟)하는 관리가 다른 관사(官司)에 이첩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소(上疏)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제 6조의, 유순정(柳順汀)·이영희(李永禧) 등은 벌써 내려갔으니, 다시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p> <p>제7조의, 장수를 보내어 방어하는 일과 군관(軍官)을 내려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굳이 장사(將士)를 따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面獸心，不宜親近。 且聞祖宗朝，無夷人進爵之事。 憲府所言， 宜可施行。 踏靑、翫月， 似無兢業之意， 停之實當。 若庚申、除夜， 則自祖宗朝有之。 然因之縱酒宴會， 此甚不可。 憲府所言， 亦可施行。 訟者小不如意， 欲移他司， 輒自誣訴， 此甚不可。 憲府所言， 亦可施行。 柳順汀等事， 已發去， 不宜更議。 平安道防禦事， 前後別遣軍官已多， 今若又遣二三驍將， 則臣恐彼賊未形， 本道先擾， 似不可施行。” 傳于承政院曰：“疏內條件， 有自祖宗朝行之者， 有自予時行之者， 予當酌斟爲之也。 柳順汀下去事， 大司憲前於經筵言：‘獨遣未便。’ 故乃遣李永禧， 今大司憲爲同僚掣肘， 請停順汀之行， 何前後之有異耶？ 其以此意， 諭憲府。”</p>
--	--	--

“지금 사헌부의 상소 내용을 보건대, 그 제 1조에서 말을 끌어내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누구를 가리켜 간사한 신하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지막 조의 만포(滿浦)의 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며,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성상께서 재량(裁量)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종친(宗親)이 시사(侍射)하는 것은 옛부터 그렇게 했으니, 굳이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인(客人)이 술잔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과연 아뢴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행한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경신(庚申)·제야(除夜)의 풍습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므로, 오히려 괜찮지만, 답청(踏靑)·완월(翫月)은 중지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송하는 자를 다른 관사(官司)로 옮기는 것은 엄하게 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영희(李永禧)·유수정(柳順汀)은 벌써 내려갔으니, 아마 미처 중지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포(滿浦)에 용맹한 장수를 따로 보내는 것은 폐단이 있을 것이니, 군관(軍官)을 더 보내서 더욱 엄하게 방어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상소 중에, 사람을 채용함에 마땅함을 잃었다는 일에 있어서 그 어세(語勢)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간사한 신하가 나라 일을 피하면 반드시 어지럽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라를 다스려야 반드시 편합니다.’고 한 것과 ‘그러한 무리를 빨리 제거시키고 날마다 현준(賢俊)들과 함께 천직(天職)을 다스려야 합니다.’고 한 것은 반드시 중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간사하며, 누구를 빨리 제거시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한가에 대한 여부는 의논할 근거가 없습니다. 종친(宗親)이 시사(侍射)한 것은 조종조(祖宗朝) 때에 예사로 행한 것이었으

	<p>니, 아마도 잘못된 일은 아닌 듯합니다.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이 술잔을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의논하였었을 적에 신의 생각으로서는 조종조의 예사로 행한 일이었으므로,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만, 지금 다시 생각하니, 인면수심(人面獸心)은 친근(親近)하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조종조에서는 오랑캐가 술잔을 올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헌부에서 한 말은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답청(踏靑)·완월(翫月)은 조심하는 뜻이 없는 듯하니, 중지시키는 것이 사실 합당합니다. 경신(庚申)·제야(除夜) 같은 경우는 조종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술을 먹고 잔치를 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헌부의 말도 시행해 볼직 합니다. 소송하는 자가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관사(官司)로 옮기고자 하여 문득 무소(誣訴)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사헌부의 말은 시행할 만합니다. 유순정(柳順汀) 등의 일은 이미 떠나갔으니, 다시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도(平安道) 방어에 대한 일은 전후(前後)하여 따로 보낸 군관이 이미 많은데, 지금 또다시 용감한 장수 2, 3명을 더 보낸다면, 신의 생각으로서는 아마도 도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본도(本道)의 민심이 동요될 것이니,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p> <p>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상소의 조항 중에는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시행한 것도 있고, 나의 시대부터 시행한 것도 있으니,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행하겠다. 유순정이 내려간 일에 대해서는 대사헌이 앞서 경연(經筵)에서, ‘혼자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고 하였으므로, 이영희도 보낸 것인데, 이제 와서 대사헌이 동료(同僚)들의 제지를 받고서 유순정 등의 행차를 중지시키자고 청하였으니, 어찌 앞뒤가 같지 아니한가? 이 뜻을 가지고 사헌부에 유시(諭示)하라.”</p> <p>하였다.</p>	
성종 248권, 21년	보길도(甫吉島)에 만호(萬戶)를 설치하여 추자도(楸子島)를 겸하여 관장하게	○議甫吉島萬戶設立, 兼掌楸子島便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2월 9일  
(병진) 3번째기사

하는 것에 대한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이봉(李封)·노공필(盧公弼)·한간(韓僴)·권건(權健)·한건(韓健)·윤탄(尹坦)·윤공(尹兢)은 의논하기를,  
 “보길도(甫吉島)는 제주(濟州)에 왕래(往來)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이며, 또한 왜적(倭賊)의 소굴이기도 하니, 진(鎭)을 설치하면 도적을 방어할 수도 있고 제주에 왕래하는 사람이 노략질을 당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이 큰 바다 북판에 있으므로, 고단(孤單)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으니, 수졸(戍卒)이 천여 명은 되어야만 지킬 수가 있을 것인데, 수졸을 초정(抄定)할 길이 없는 것이 첫번째의 어려움이고, 만약 각포(各浦)의 수졸을 뽑아낸다면 피차간에 모두 약화될 것이니, 이것이 두번째의 어려움이며, 수졸들이 번을 서거나 휴식할 때는 항상 큰 바다로 다녀야 하니, 빠져죽을 염려가 있는 것이 세번째의 어려움이고, 보길도와 추자는 거리가 멀어서 겸하여 관할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번째의 어려움입니다. 신 등은 그곳을 가본 적이 없으므로,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본도(本道)의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살펴보고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송철산(宋鐵山)은 의논하기를,  
 “보길도와 추자도 등의 지형(地形)은 신 등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바로 헤아리면 해남(海南) 관두(館頭)에서 보길도까지와 보길도에서 추자도까지는 바닷길이 요원(遙遠)하여 서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 비록 보길도에 진(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추자도의 도적 피해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방수(防戍)하는 군졸(軍卒)이 왕래할 적에 노략질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만일 적변(賊變)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상대할 수가 없을 것이니, 진을 설치함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승원(李崇元)·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보길도는 바닷길이 아주 멀리서 방수(防戍)하는 군졸(軍卒)이 왕래하기 어려

否。沈滄、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李封、盧公弼、韓僴、權健、韓健、尹坦、尹兢議：“甫吉島，濟州往來人，待風之地，亦是賊倭窟穴，置鎭則可以禦賊，而濟州往來者，無被掠之患。然此島在大洋中，孤單無援，計戍卒可千餘人然後守之，戍卒無由抄定一難也，若抽出各浦之卒戍之，則彼此俱弱二難也，戍卒番休，常由大洋，漂沒可畏三難也，甫吉與楸子隔遠，難以兼摠四難也。臣等未嘗踐履其地，遙度爲難。令本道節度使，看審啓達何如？”李克均、宋鐵山議：“甫吉、楸子等地形勢，臣等未詳。然以所聞度之，自海南館頭至甫吉，自甫吉至楸子，海路遙遠，不能相望，雖置鎭於甫吉，楸子之賊，未能救也。況防戍軍卒來往之際，或被搶擄，如有賊變，不能相敵，置鎭不便。”李崇元、成俊議：“甫吉海路隔遠，非但防戍軍卒來往，軍糧運輸爲難。且或有賊變，傍無救援，恐終爲賊之漁餌也。祖宗朝不曹置鎭，以此也。”權景祐、郭諶、金勿、嚴貴孫議：“甫吉與海南、康津相距，雖曰未遠，然水路皆不下數息，

	<p>을 뿐만 아니라, 군량(軍糧)을 수송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적변(賊變)이 있게 되더라도 곁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마침내 도적의 미끼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조종조에서 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때문이었습니다.”</p> <p>하고, 권경우(權景祐)·곽심(郭諶)·김물(金勿)·엄귀손(嚴貴孫)은 의논하기를,  “보길도는 해남(海南) 강진(康津)과의 거리가 비록 멀지 않다고 하나 물길이 모두 몇십 리가 넘으며 출입(出入)할 적에는 반드시 바람을 기다려야 하는데, 바람이 만약 순조롭지 못하면 10여 일씩 지체하여도 끝내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육지(陸地)의 제도(諸島)와는 아주 멀어서 비록 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구제할 형편이 못됩니다. 지금 만약 진(鎭)을 설치한다면 수졸(戍卒)이 반드시 수백 명은 되어야 하는데, 수백 명의 수졸은 진실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졸(軍卒)이 출입하는 것을 제때에 할 수 없다면 지키는 자는 식량이 떨어지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교대하는 자는 풍파(風波)를 무릅써야 하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진을 설치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추자도는 보길도와 제주도의 중간 극서(極西)쪽에 있으므로 물길이 험악하여 순풍(順風)을 만나야 하루에 도달할 수 있고, 봉수(烽燧)도 통할 수가 없으니, 비록 적변(賊變)이 있더라도 어떻게 서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서 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선(公船)이나 사선(私船)을 단행(單行)하게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승(政丞) 등의 의논을 가지고 절도사(節度使)에게 치서(馳書)하라.”</p> <p>하였다.</p>	<p>出入必候風，風若不利，淹留旬日，終莫能至。且與陸地諸島隔絕，雖有緩急，勢不相救。今若置鎭則戍卒必須數百數百之卒固難充額軍卒出入亦不能以時，則戍者有絕糧之苦，代者有冒風之禍，其不可置鎭無疑。況楸子，在甫吉、濟州兩間極西，水路險惡，得風方一日可到，烽燧尚不能通，雖知有變，豈得相救？祖宗朝不置鎭，有深意。但公、私船，毋得單行，是或可爲也。”傳曰：“以政丞等議，馳書于節度使。”</p>
<p>성종 24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민사건(閔師鶯)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감선(減膳)을 하고 경계하고 있는 시기이니, 역귀(役鬼)를 쫓아내는 일</p>	<p>○司憲府掌令閔師鶯來啓曰：“今者減膳戒懼，逐疫外，儺禮及會禮宴，請皆</p>



<p>(弘治) 3년 12월 12일(기미) 3번째기사</p>	<p>을 제외하고서는, 나례(儺禮)22837) 와 회례연(會禮宴)22838) 등을 청컨대 모두 중지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아뢴 것이 과연 옳다. 다만 나례(儺禮)는 세속(世俗)에서 하는 것으로서, 그 유래가 이미 오래였으니, 세시(歲時)22839) 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회례연(會禮宴)도 폐지할 수가 없으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 심회(沈滄)는 의논하기를,</p> <p>“나례가 비록 유희(遊戱)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옛 전례를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례연을 중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지금 천체의 형상에 대한 변고가 있으니, 이는 바로 위아래에서 몸을 닦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화(禍)를 변화시켜 복(福)이 되게 할 시기이므로, 전례를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헌부에서 아뢴 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나례와 회례연을 할 시기는 아직 멀었으니, 그 때에 가서 일이 없으면 행할 것이고 만약 연고가 있으면 중지시키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사헌부에서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모두 부득이한 일들이니, 중지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p> <p>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p> <p>“한창 감선(減膳)하고 경계하는 때에 나례와 회례연은 모두 거행할 수 없습니다.”</p>	<p>停之。”傳曰：“所啓果是。但儺禮，世俗所爲，其來已久，歲時不可虛度。會禮宴亦不可廢也，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沈滄議：“儺雖近於戲，然古例不可停。但停會禮宴何如？”尹弼商議：“今有乾象之變，此正上下修省，轉禍爲福之時也，不可因循前例。依憲府所啓何如？”洪應議：“儺禮及會禮宴，日期尙遠，臨時無事則行之，如或有故，則停之未晚。”李克培、盧思愼議：“依憲府所啓何如？”尹壕議：“皆不得已之事，停之未便。”魚世謙議：“正當減膳戒懼之時，觀儺會禮宴，皆不可行。”成俊議：“儺禮雖近於戲，自祖宗朝有之，會禮宴，一年一度，上下相和之禮，非他宴飲之例。星變未消，則猶當儆懼，固不可舉，若星變已消，則自有前例，似不可廢。”李克均議：“近日天變示異，所宜恐懼修省，觀儺會禮宴等事，雖是祖宗朝故事，似近於歡戲，憲府所啓似當。若天變已消，行之何妨？”傳于承政院曰：“承旨等亦議啓。”都承旨申從濩等議：“儺禮會禮宴，停之何妨？但儺禮，非今而始，《周禮》月令及《漢志》備載之，</p>
----------------------------------	--	--

<p>성종 248권, 21년</p>	<p>하고, 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나례가 비록 유희에 가까우나 조종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회례연은 1년에 한 차례씩 행하는 것이니, 아랫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한 예(禮)이지, 다른 잔치에서 술마시는 예와는 다릅니다. 성변(星變)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마땅히 경계해야 하므로 거행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성변이 없어진 다음에는 옛 전례가 있으니, 폐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요즈음 하늘에서 이변(異變)이 나타나고 있으니, 마땅히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므로, 나례(儺禮)나 회례연(會禮宴) 등을 보는 일은 비록 조종조의 고사(故事)라고 하더라도 유희에 가까운 것이니, 사헌부에서 아뢰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만약 천변(天變)이 없어진 다음이라면 행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승지(承旨) 등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신종호(申從濩) 등이 의논하기를,  “나례(儺禮)나 회례연(會禮宴)을 중지시킨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나례가 지금 비릇된 것이 아니고, 《주례(周禮)》 월령(月令)과 《한지(漢志)》에 모두 실려 있고, 또 원회(元會)는 역대(歷代)에서 시행하였고 또 조정(朝廷)의 대례(大禮)이지 술이나 마시며 즐기는 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니, 행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성변(星變)이 차츰 사라지고 있으니, 마땅히 그 때에 가서 참작하여 행해야 하겠다.”  하였다.</p>	<p>且元會歷代之行，乃朝廷大禮，非酬飲耽樂之比，行之似亦無妨。” 傳曰：“星變漸消矣，且當臨時酌量爲之。”</p> <p>○全羅道敬差官李永禧、柳順汀馳啓</p>
---------------------	--	--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2월 13  
일(경신) 3번째기사

기를,  
“제도(諸島)에서 수적(水賊)과 몰래 접촉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신(臣) 등이 즉시 체포하게 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교부(交付)해서 국문(鞫問)하게 하였습니다. 신 등이 듣건대, 수적들이 을사년(2284) 경에 흉년으로 인하여 봉기(蠱起)하였으나, 나라에서 여러 번 수색하여 체포하자 그 뒤로 잠잠해졌는데, 수적은 왜인(倭人)과는 도둑질하는 형태가 같지 아니하여, 수적은 반드시 사람을 결박하여 물에 던져서 소문이 나지 않게 하지만, 왜적(倭賊)은 물건만을 빼앗고 굳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추자도(楸子島)의 도적은 아마도 왜인인 듯합니다. 신 등이 물가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서는 왜인인 심하게 날뛰지 아니하였었는데, 7, 8년 사이에 와서는 고기잡이와 해물을 채취하는 왜인이 우리나라의 고기잡이 배를 만나면 양식을 빌어가거나 겁탈하기도 하는데, 만약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사람이 왜인을 만나게 되면 비록 상대는 적고 우리는 많더라도 적과 대항할 뜻이 없고 오히려 의복과 식량을 주면서 상해(傷害)를 면하기만을 바라며, 또 우민(愚民)들은 나라에서 도둑맞은 까닭을 국문하는 것이 싫어서 비록 노략질을 당하여도 숨기고 말하지 않습니다.’고 합니다. 신 등이 또 들으니, 연해(沿海) 부근의 제도(諸島)에는 고기와 해채(海菜)가 풍부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추자도·청산도(靑山島)에 들어가서 고기잡이와 해물 채취를 하며, 왜인들도 거기에서 고기잡이와 해물 채취를 하는데, 부근 제도(諸島)에 정박하고 있는 배는 고기잡이 배가 아니고 왜적이며, 영암(靈巖)의 경계는 보길도(甫吉島)·노아도(露兒島)·달목도(達牧島) 등까지이고, 순천(順天)의 경계는 돌산도(突山島)·방답도(防踏島)·금오도(金鰲島) 등까지인데, 그 곳을 자주 왕래하면서 틈을 타 도적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좁도독일 뿐이니, 만약 몇달만 기한을 둔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왜적이 올 적에는 반드시 동풍(東風)을 기다리므로, 8, 9

日：“諸島隱接水賊可疑人，臣等卽令捕捉，交付觀察使鞫之。臣等聞，水賊於乙巳年間，因凶歉蠱起，國家屢舉搜捕，自後寢息，水賊與倭人，作賊形迹不同，水賊必縛人，投水以滅口，倭賊只奪其物，不必害人。臣等之意，楸子島之賊，恐是倭人也。臣等問諸水濱則皆云：‘前此倭人，不甚恣行，退計七八年間，釣採倭人，遇我國釣魚船，乞得糧物，或劫奪，如有拒之者，必害之。以是我國之人遇倭人，雖彼寡我衆，亦無抗敵之志，猶給衣糧，冀免傷害，且愚民厭國家鞫訊被賊之由，雖見劫掠，諱而不言。’臣等又聞，沿海附近諸島，則魚菜不富，必入楸子、靑山等島，釣採倭人，亦於此採矣，附近諸島所泊者，非釣船，乃倭賊也，靈巖境在甫吉、露兒、達牧等島，順天境在突山、防踏、金鰲等島，頻頻往來，乘便作賊。此特鼠竊，若期以數月，可以捕獲。但賊倭之來，須待東風，故於八九月二三月間肆行，冬則絕不來往，捕獲爲難。然於賊路要害處，設機待變。”又全羅道觀察使朴安性、兵馬節度使辛鑄與左右水軍節度使等

	<p>월이나 2, 3월 사이에 날뛰고 겨울에는 절대로 왕래하지 않으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로(賊路)의 요해지(要害地)에 대책을 세워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박안성(朴安性)과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신주(辛鑄)와 좌우(左右)의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등이 치계(馳啓)하기를,</p> <p>“수적(水賊)으로 의심이 가는 자 1백 7명을 각 고을에 나누어 가두어 놓고 현재 국문(鞫問)하고 있습니다.”</p> <p>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왜적은 동풍을 기다려서 오는데, 요즈음은 날씨가 추우니, 바다에 출입(出入)하면서 수색해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차관(敬差官)은 올라오고, 감사(監司)와 수사(水使)에게 다시 유시(諭示)하여 방어를 더 엄하게 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馳啓曰：“水賊可疑者一百七名，分囚各官，方鞫之。”傳于承政院曰：“倭賊候東風而來，今日寒，出入海中，搜捕爲難。令敬差官上來，且諭監司、水使，嚴加備禦。”</p>
<p>성종 24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弘治) 3년) 12월 24일(신미) 4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집(李諱)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p> <p>“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요즈음 성문(星文)의 변이(變異)로 인하여 허물을 반성하고 몸을 닦으며, 감선(減膳)하고 구언(求言)하셨으니,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심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화산대(火山臺)를 설치함은 유희(遊戱)에서 나온 것이고, 나례(儼禮)는 비록 옛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유희에 가까운 것이므로, 옛날에는 방상씨(方相氏)22846)가 담당하여 역귀(役鬼)를 쫓는 것 뿐이었고, 임금이 나례로 인하여 잡희(雜戱)를 구경하였다는 것을 예전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유사(有司)들은 전례(前例)를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는데, 전하께서는 이를 따르시니,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할 때에 즐기기 위한 놀이 준비를 하는 것이 어찌 하늘을 경계하는 성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듣자니, 이달 17일에 충청도(忠淸道) 직산(稷山)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진 이변(異變)이 있었다 하니, 천둥도 칠 때가 아닌데도 사</p>	<p>○弘文館副提學李諱等上筭子曰： 伏見殿下，近以星文之變，省躬罪己，減膳求言，其祇畏天戒至矣。然而火山臺之設，出於戲玩，儼雖古禮，亦近於戲，古者方相氏掌之逐疫而止，若人主因儼而觀雜戱，則古未聞也。有司欲踵前例，殿下從之，其在謹天戒之時，有此玩細娛之具，是豈敬天之誠乎？況聞今月十七日，忠淸道稷山，有雷電震人之異，雷既不時，震人亦甚矣。災不虛應，必有所召。伏望殿下，更加兢惕。觀儼觀火會禮等事，</p>

람에게 벼락을 친 것은 심한 것입니다. 재앙은 헛되이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불러들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 바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더 삼가도록 하소서. 나례와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것과 회례연(會禮宴) 등의 일은 모두 중지하시고 재앙을 만나 하늘의 경계에 대응하는 실재의 뜻을 다해 주시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화산대를 설치한 것은 비록 유희에 가깝다. 그러나 역시 군대와 나라의 중대한 일이며, 나례를 구경하고 역귀를 쫓는 것이 비록 유희의 일이라고 하나 모두 재앙을 없애고 사귀(邪鬼)를 물리치기 위한 것들인데, 비록 성변(星變)이나 천둥 번개가 있었다고 한들 어찌 그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회례연(會禮宴)은 나 한 몸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로 두 대비(大妃)가 계시기 때문에 축수(祝壽)하는 술잔을 올리고자 함이다.”

하므로, 이집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말한 것은 재변(災變)이 그로 말미암아서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야흐로 감선(減膳)하고 구언(求言)하며 몸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어 두려워하고 있는 때이므로, 그러한 일은 마땅히 일체 중지시켜서 엄숙하게 더 공격하여 하늘의 건책(譴責)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회례연은 전하께서 두 대비에게 축수를 드리고자 함이니, 신은 감히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것은 매우 의리(義理)가 있다. 그러나 나례와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것은 즐거운 놀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양전(兩殿)22847)을 위해서 사귀(邪鬼)를 쫓기 위함이다. 회례연은 원일(元日)에 양궁(兩宮)에 축수를 드리고 이어 군신(群臣)과 경사스럽게 모이는 것이므로, 두 가지 뜻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竝令停罷，克盡遇災應天之實，不勝幸甚。

傳曰：“火山臺之設，雖近於戲，亦是軍國重事。觀儺逐疫，雖戲事，皆消災闢邪之具。縱有星變雷電，奚由於此？會禮宴，非爲一己之樂。上有兩大妃，欲獻壽盃耳。”諛等啓曰：“臣等所言，災變非由此事而作，時方減膳求言，修省恐懼之日，如此等事，所宜一切停罷，嚴加敬畏，以答天譴云耳。會禮宴，則殿下欲獻壽於兩大妃，臣不敢更言矣。”傳曰：“爾等所言，深有義理。然觀儺觀火，非以玩戲而爲之，只爲兩殿逐邪耳。會禮宴，則當元日獻壽兩宮，仍與群臣慶會，可謂兩全，何過之有？”

<p>성종 248권, 21년 (1490 경술 / 명 홍치 (弘治) 3년) 12월 28 일(을해) 4번째기사</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양전(兩殿)께서 내가 정조(正朝)의 하례(賀禮)를 받지 않으려고 함을 들으시고 하교(下敎)하시기를, ‘주상(主上)이 성문(星文)의 재변(災變)으로 인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천재(天災)를 없애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풍정(豐呈) 올리는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울러 중지시키려.’고 하시므로, 내가 아뢰기를, ‘하늘이 경계를 보여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내가 마땅히 몸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어야지 양전(兩殿)에게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원일(元日)은 한 해의 시작인데 한 번이라도 축수(祝壽)의 술잔을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니, 또 하교하시기를,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어서 위아래가 모두 경계하고 반성하는데, 나만 태연하게 경계할 줄을 모르고 풍정 올리는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하시므로, 내가 강청(強請)하지 못하였다. 만약 풍정 올리는 것을 중지한다면 회례연은 형편상 행할 수가 없을 것이니, 아울러 정지시키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兩殿聞予不受正朝賀儀，敎曰：‘主上以星文之變，戒謹恐懼，欲弭天災，我等其可受進豐呈乎？并停之。’予啓曰：‘天之示戒，是丁我躬，予當修飭爾，其於兩殿，何與焉？況元日，一歲之首，其不欲一獻壽觴乎？’兩殿又敎之曰：‘國有災變，上下警省，予獨慢不知戒，以進豐呈爲樂乎？’故予不强請。若停進豐呈，則會禮宴，勢不可行矣，其並停之。”</p>
<p>성종 24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월 5일 (임오) 3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내 온 국속(國續)이 하직하니,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기를, “족하(足下)가 우리의 동변(東藩)이 되어 각근(恪謹)히 세호(世好)22862)를 다져 더하고 폐하는 일이 없으므로, 우리 전하(殿下)께서 한집안같이 보시어 무릇 족하를 대우하심에 있어 그 은혜와 신의를 극진히 하심도 또한 족하가 아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누차 도둑질을 하기에 일찍이 이러한 뜻으로 족하에게 효유(曉諭)하였던 바 족하도 깊이 금즙(禁戢)22863)을 가하였으므로 해변이 안온하게 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금년 10월 초 1일에 적선(賊船)이 전라도(全羅道)의 제주(濟州) 땅에 잠입(潛入)하였고, 2일에는 같은 도(道)의 돌산도(突山島)를 침범하여 혹은 사람을 인상(刃傷)22864)시키고, 혹은 의복·양식 등을 약탈해 가지</p>	<p>○宗貞國特送國續辭，禮曹答書曰： 足下作我東藩，恪謹世好，有加無替，我殿下視同一家，凡所以待遇足下，極其恩信，亦足下之所知也。無賴之徒，屢嘗竊發，曾將此意，曉諭足下，足下深加禁戢，海隅帖然者有年矣。不意今年十月初一日，賊船潛入全羅道濟州地面，初二日，犯同道突山島，或刃傷人物，或劫掠衣糧，飄忽大洋，不知去向。此特鼠竊，在殿下包荒之量，何足與較？但諸島，以釣魚爲生者，自有</p>

	<p>고 대양(大洋)으로 질풍(疾風)같이 사라져, 가는 방향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좀도둑에 불과한지라, 우리 전하의 포황(包荒)22865)의 도량으로 어찌 족히 더불어 계교하시겠습니까? 다만 모든 섬에는 고기를 낚아 생계로 삼는 자라도 스스로 일정한 처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좀도둑의 무리들이 감히 족하와의 약속(約束)을 어기고 양탈(攘奪)을 자행(恣行)한다면, 족하와 수호(修好)한 본의가 땅을 쓸어내듯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족하는 널리 모든 섬을 수색하여 망루(網漏)22866) 한 간적(姦賊)을 잡아 그 죄를 분명히 다스리고, 그 머리를 함(函)에 넣어 와서 바치면 족하(足下)가 정성을 바치고 두 마음이 없는 것을 더욱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념(留念)하시기 바랍니다.”</p> <p>하였다.</p>	<p>定處。而草竊之輩，敢違足下約束，恣行攘奪，則足下修好之意，掃地也。惟足下廣搜諸島，捕此網漏之姦，明致其罪，函首來獻，則足下輸誠不貳之心，益可見矣。幸留裨神焉。</p>
<p>성종 24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5일 (임오) 5번째기사</p>	<p>명하여 생원(生員) 조유형(趙有亨)을 불러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조유형이 아뢰기를, “신(臣)이 일개(一介) 서생(書生)으로 국가(國家)의 정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히 논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겨울에 삼가 구언(求言)의 하교를 보니, 말씀하시기를, ‘상위(象緯)22867)가 이번(異變)을 보였는데, 견고(謹告)22868)함이 매우 엄(嚴)하므로 그 허물을 깊이 생각해 보니 나 한 사람에게 있다. 어찌 내가 하늘에 감통(感通)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전하(殿下)의 경천(敬天)하시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신이 일찍이 《홍범(洪範)》22869)의 《팔서징(八庶徵)》22870)을 읽으니, 거기에 이르기를, ‘왕(王)은 오직 해[歲]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는데, 경술년(22871)의 한 해를 가지고 보건대, 봄부터 여름까지 한기(旱氣)가 몹시 심하였고 대궐뜰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았으며, 겨울철에는 지나치게 따뜻하였고, 지금은 성변(星變)이 있으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이는 정사에 군신(君臣)</p>	<p>○命召生員趙有亨引見曰：“爾欲言者何事歟?” 有亨啓曰：“臣以一介書生，其於國家政治，何敢議爲? 然去冬，伏觀求言之教曰：‘象緯示變，謹告甚嚴，深思厥咎，在予一人。豈予格天之誠，有未至歟?’ 於此見殿下敬天之心也。臣嘗讀《洪範》《八庶》徵曰：‘王省惟歲。’以庚戌一歲觀之，自春徂夏，旱氣太甚，以至震人于闕庭，冬月愆陽，今有星變，非細故也。此政君臣上下，同寅協恭，應天以實之秋也。《詩》曰：‘維天之命，於穆不已。’四時皆有無息之誠。十月純陰，而無陽天之運行，似若間斷，然自小雪之後，</p>

상하(上下)가 일치하여 직무에 힘쓰며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하늘에 순응하기를 성실히 할 때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의 도(道)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하였으니 사시(四時)가 모든 섭이 없는 성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은 순음(純陰)22872) 이어서 양(陽)이 없으므로 하늘의 운행(運行)이 끊어지는 것 같으나 소설(小雪)이 지난 뒤부터 여러 날이 지나면, 위에 있는 음(陰)이 일분쯤 소멸하고 아래에 있는 양(陽)이 일분쯤 신장(伸長)하여 곤괘(坤卦) 시초에 이미 일분의 양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천도(天道)에는 간단(間斷)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경》에 이르기를, ‘10월22873) 에 <일월(日月)이> 교회(交會)하는 삭일(朔日)인 신묘(辛卯)에 일식(日食)이 일어났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황보(皇父)는 경사(卿士)요, 번유(番維)는 사도(司徒)이다.’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소인(小人)이 안에서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變)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거듭 오는 우레가 진괘(震卦)이다. 군자(君子)는 이를 보고 공구(恐懼)하며, 덕을 닦고 반성한다.’ 하였고, ‘경공(景公)이 자신에 돌이켜 살피고 덕을 닦으매, 형혹성(熒惑星)이 3사(舍)를 물러났다.’22874) 고 하였으니, 인주(人主)가 한 번 천재(天災)를 만나 경계하여 살피고 근신하면, 재앙이 변하여 상서(祥瑞)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역대(歷代)의 임금이 하늘의 견책(譴責)을 만나게 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군주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경계하며, 스스로 근신할 줄을 알지 못하였겠는가?”

하였다. 조유형(趙有亨)이 또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성상(聖上)께서는 학문이 고명(高明)하시어 문(文)을 숭상하고 교화를 진흥하시니, 사방(四方)의 선비들이 와서 <은택(恩澤)에> 젖어 교

累日而進，則陰之在上者，有一分之消，而陽之在下者，有一分之長，坤卦之初，已有一分之陽，此天道無間斷也。 《詩》曰：‘十月之交朔日辛卯，日有食之。’ 次言：‘皇甫卿士，番維司徒。’ 釋之者曰：‘小人用事於內，故有此變也。’ 《易》曰：‘荐雷震。君子以恐懼修省。景公反身修德，熒惑退舍。’ 人主一遇天災，警省戒慎，則可以變災爲祥矣。” 上曰：“爾言是矣。歷代人君，若遇天譴，則雖至愚之主，誰不知戒而自飭乎？” 有亨又啓曰：“方今聖學高明，右文興化，四方之士，來游來歌，濟濟洋洋，臣以布衣，雖無知識，於師友間，豈無所聞乎？以平日所學，欲陳久矣，今獲引見，是臣得言之日也。然以一介書生，伏於雷霆之下，心氣摧折，恐未盡卑懷也。” 上曰：“爾有所言，不諱盡言可也。不以人廢言。” 有亨曰：“臣所言之事，左右近臣，廟堂大臣，皆已講畫，臣何容贅？然誠之一字，古今帝王，傳授心法，而聖學之成始成終者也。以《中庸》一書觀之，則誠乃一篇之樞紐，貫天道人心而一者也。始言一理，中散爲萬事，



유하며 태평을 구가(謳歌)하여 많은 선비가 충만해 있는데, 신이 포의(布衣)로서 비록 지식(知識)은 없다 하더라도 사우(師友)의 사이에서 어찌 들은 바가 없겠습니까? 평일에 배운 바를 진달코자 함이 오래 되었는데, 이제 인견(引見)하심을 얻었으니, 이는 신이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일개 서생으로 뇌정(雷霆)22875) 아래에 엎드리니, 심기(心氣)가 꺾이어 생각한 바를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대가 말할 것이 있으면, 거리낌없이 다 말함이 옳다. 사람의 자위가 낮다 하여 말까지 폐하지는 않겠다.”

하였다. 조유형이 말하기를,  
 “신이 말할 바의 일들은 좌우(左右)의 근신(近臣)과 묘당(廟堂)의 대신(大臣)들이 모두 다 이미 익히 강획(講劃)한 것인데 신이 어찌 굳더더기 말을 더하겠습니까? 성(誠)이란 한 글자는 고금(古今)의 제왕(帝王)들이 전해 받은 심법(心法)으로서, 성학(聖學)의 시초와 종말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용(中庸)》의 한 책을 보건대, 성은 곧 그 한편의 추뉴(樞紐)로서 천도(天道)와 인심(人心)을 꿰뚫어 하나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이치를 말하고 중간에 가서는 만가지 일로 흩어졌다가 종말에는 다시 한 가지 이치로 합한 것이 모두가 성(誠)아닌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한 한 가지 이치란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이른다.’는 것이 이것이며, 중간에 이르러 만가지 일로 흩어졌다가는 것은 존양(存養)22876) 과 성찰(省察)로 중(中)과 화(和)를 이루면, 천지(天地)가 자리에 있게 되고 만물(萬物)이 성장하며, 비은(費隱)22877) 과 달도(達道)22878) 와 달덕(達德)22879) 과 구경(九經)22880) 에 이르는 것이 곧 이것입니다. 종말에 가서는 다시 합하여 하나의 이치로 된다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만들어 내는 데 그 소리를 듣는 자도 없고 냄새를 아는 자도 없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末復合爲一理者，無非誠也。始言一理者，天命之謂性是也，中散爲萬事者，存養省察致中和，天地位萬物育，至於費隱、達道、達德、九經是也。末復合爲一理者，上天之載，無聲無臭是也。蓋唐虞三代之時，吾道如日中天，中庸不必作也，降及周末，異端之說，日新月盛，故子思憂道學之失其傳而作矣。子思象天道人心而作是書，故其書之體如是。以天道言，則兩儀未判，爲一大塊，是一理也，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洪纖高下，各正性命，是中散爲萬事也。肅殺萬物，收斂歸藏，是末復合爲一理也。以人心觀之，則未感物時，寂然不動者，是一理也，感而遂通天下之故，放之則彌六合者，散爲萬事也，卷之則退藏於密者，合爲一理也。願殿下，敬天之誠，益加不息。以《周易》一書言之，則復卦乃一陽之卦，於歲十一月也。其大象曰：‘雷在地中復，先王以至日閉關，商旅不行，后不省方。’陽之始生甚微，當安靜以養之，使之長盛也。象傳曰：‘復其見天地之心乎。’願殿下，體復之義，益加扶陽抑陰，進君子退小人，

대개 당(唐)·우(虞)22881) 와 삼대(三代)22882) 의 시대에는 우리 도(道)22883) 가 해가 중천(中天)에 있음과 같아서 중용(中庸)을 지을 필요가 없었지만, 주말(周末)로 내려와서는 이단(異端)의 학설[說]이 날마다 새로 일어나고 달마다 성(盛)하여졌기 때문에 자사(子思)가 도학(道學)의 전수(傳授)를 잃지나 앎을까 근심하여 지은 것입니다. 자사가 천도와 인심을 본떠서 이 글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글의 격식이 이와 같습니다. 천도로 말한다면, 양의(兩儀)22884) 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큰 덩이로 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한 이치인 것이요, 태극(太極)이 움직이면, 양(陽)을 낳고 고요해지면서 음(陰)을 낳아 홍섬(洪纖)22885) 과 고하(高下)가 각각 그 성명(性命)을 바르게 하니, 이것이 중간에 만가지 사물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萬物)을 숙살(肅殺)하고 수렴(收斂)하여, 돌아가 갈무리하는 것이 곧 종말에 다시 합하여 한 이치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심으로 본다면 사물(事物)을 아직 느끼지 못할 때에 적연(寂然)히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한 이치요, 느끼면서 드디어 천하의 일에 두루 미쳐 놓으면 육합(六合)22886) 에 가득히 차는 것이 곧 흩어지면 만사가 되는 것이며 거두어서 은밀한 데로 퇴장(退藏)하는 것이 다시 합하여 한 이치로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을 쉬지 말고 더욱 더하소서. 《주역(周易)》의 한 글로써 말씀드리면, 복괘(復卦)는 곧 일양(一陽)의 괘이나 한해로 따지면 11월입니다. 그 대상(大象)에 이르기를, ‘우레[雷]가 땅 밑에 있음이 복(復)이니, 선왕(先王)이 이를 본받아 지일(至日)22887) 에 관문[關]을 닫고 상려(商旅)22888) 로 하여금 다니지 못하게 하며 임금도 나라의 사방을 나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양(陽)이 처음 생겨나 심히 미약하므로, 마땅히 안정(安靜)시켜 길러서 자라 성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전(象傳)에 이르기를, ‘복(復)에서 그 천지(天地)의 마음을 볼진저.’라고 하였습니다.

以謹天戒。 臨卦乃二陽之卦，於歲十二月也。 其大象曰：‘澤上有地臨，君子以教思無窮，容保民無疆。’ 人君當體此之義，容保其民，使不失所矣。 去辛丑、乙巳年，飢寒無比，而賑貸之穀，使即還懲，催令甚迫，至於踏驗損實，委諸委官，高下失中，傷和召災，靡不由此，願特減兩年還上，以謹天戒。 泰卦乃三陽之卦，於歲為正月。 其大象曰：‘天地交泰，后以財成天地之道，輔相天地之宜，以左右民。’ 今之位寵宰居廟堂之上者，務於殖貨，露積如山，視民之肥瘠，如越人視秦人之肥瘠，非大臣之道也。” 上問曰：“如此人，汝能知之乎？” 有亨不對。 有亨又啓曰：“大壯乃四陽之卦，而於歲為二月。 其大象曰：‘雷在天上大壯，君子以非禮不履。’ 君子之大壯，莫若克己復禮也。 願殿下，體此之義，克去己私，以謹天戒。 夬卦乃五陽之卦，而於歲為三月。 其大象曰：‘澤上於天夫，君子以施祿及下，居德則忌。’ 國家凡立朝之臣，皆有祿俸，又有職田，則是施祿及下之意也。 臣以為職田，非國初之法，而守信、恤養田廢而為職

	<p>원컨대 전하께서는 복(復)의 의(義)를 본받으시어 더욱 양(陽)을 붙들어주고, 음(陰)을 억제하시어 군자(君子)를 받아들이고 소인(小人)을 물리치셔서,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소서. 임괘(臨卦)는 곧 이양(二陽)의 괘니, 한 해로 보면 12월에 해당됩니다. 그 대상에 이르기를, ‘못 위에 언덕이 있음이 임(臨)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백성에게 임하게 되면 교도하려는 생각이 무궁(無窮)하며 백성을 잘 보전하려는 마음이 끝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백성을 잘 보전하여 각기 편히 살 곳을 잃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신축년(22889) 과 을사년(22890) 은 백성들의 기한(飢寒)이 비할 바가 없었는데 진휼(賑恤)에 대여한 곡식을 즉시 상환토록 하여 재촉하는 명령이 매우 급박했으며, 손실(損實)을 답험(踏驗)(22891) 함에 이르러서는 위관(委官)에게 일임하여, 고하(高下)의 등급이 적정(適正)하지 못하여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부른 것이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었으니, 원컨대 특별히 두해의 환상곡(還上穀)을 감하시어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소서. 태괘(泰卦)는 곧 삼양(三陽)의 괘이니, 한 해로 따지면 바로 1월[正月]에 해당됩니다. 대상에 이르기를, ‘천지(天地)가 서로 통하여 &lt;음양이 화합함&gt; 태(泰)이니, 임금이 천지의 도(道)를 본받아 모든 시위(施爲)하는 방법을 제작해 이루며,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輔相)하여 백성을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총애를 받는 재상(宰相)으로 묘당(廟堂)에 있는 자가 식화(殖貨)에 힘써 노적(露積)가리를 산더미 같이 해놓고 백성들의 비척(肥瘠)(22892) 을 보기를, 마치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의 비척을 보는 것같이 하니, 이는 대신(大臣)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묻기를,</p> <p>“이와 같이 사람을 네가 능히 알고 있느냐?”</p> <p>하였으나, 조유형(趙有亨)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조유형(趙有亨)이 또 아뢰기를,</p>	<p>田, 使欲守其信者, 失所無依, 欲孝其親者, 顛連無告, 使先王良法美意, 一朝廢而至此。昔文王, 發政施仁, 必先鰥、寡、孤、獨。願殿下, 罷職田, 復守信、恤養之田。乾純陽之卦, 而於歲則四月也。其大象曰: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願殿下, 法天之健, 以謹天戒。姤一陰之卦, 而於歲則五月也。其初六曰: ‘繫于金柅貞吉, 有攸往見凶, 羸豕孚蹢躅。’ 蓋一陰始生, 乃一小人進也, 一小人進, 則衆小人各以類進, 降其國於暗昧。九五曰: ‘以杞包瓜含章, 有隕自天。’ 言人君用賢, 如以杞葉包美實也。臣聞舊老之言曰: ‘世宗朝, 番番老士, 布列庶位。’ 而今時則不然。老成之臣, 自古人主之所不遺也。昔召公戒成王曰: ‘今沖子嗣, 卽無遺壽。’ 考今者文武兩科之外, 立朝之士, 自居髻稚, 已蒙顯授者, 比比有之, 其故何歟? 注擬之時, 多有內旨, 銓衡之官, 未盡得其人也, 此殿下用人之道, 有未至矣。遯卦二陰之卦, 而於歲爲六月也。其大象曰: ‘天下有山遯, 君子以遠小人, 不惡而嚴。’ 人君當遠避小人, 俾不得</p>
--	---	---

“대장(大壯)은 곧 사양(四陽)의 괘인데, 한 해로 따지면 2월에 해당됩니다. 그 대상(大象)에 이르기를, ‘우레가 하늘 위에서 진동함이 곧 대장이니, 군자는 <군자의 대장의 상(象)을 본받아> 예(禮)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자의 대장(大壯)함이란 극기복례(克己復禮)22893) 만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 의(義)를 본받으시어, 과감하게 사심을 버리시고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소서. 쾌괘(夬卦)는 곧 오양(五陽)의 괘이니, 한 해로 따지면 3월입니다. 그 대상에 이르기를, ‘못물이 극히 높은 데로 올라가면 <결(決)하여 아래로 내려옴이> 쾌(夬)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녹(祿)을 베풀어 아랫사람에게 미치게 하며, 덕(德)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미리 금방(禁防)하는 법을 본받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한 국가(國家)의 모든 조정에서 신하에게는 다 녹봉(祿俸)이 있고, 또 직전(職田)22894) 이 있었은 즉, 이는 녹의 은택을 베풀어 아랫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뜻입니다. 신이 생각하기로는, 직전은 국초(國初)의 법이 아니고, 수신전(守信田)22895) ·홀양전(恤養田)22896) 을 폐지하고 직전을 만들어서, 그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의지할 바를 잃게 하였으며,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려는 자에게는 곤궁하여 함께 거꾸러져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되어 선왕(先王)의 어진 법과 아름다운 뜻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폐하여 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옛날 문왕(文王)은 어진 정치를 펼 때 반드시,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우선하였다고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직전을 과(罷)하시고 수신전과 홀양전을 회복토록 하소서. 건괘(乾卦)는 순양(純陽)의 괘이니, 한 해로 따지면 4월이 됩니다. 그 대상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運行)은 강건(剛健)한 것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쓰며[強]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도 천도(天道)의 강건함을 본받으시어 하늘의 경계에 근신토록 하소서. 구(姤)는 일음(一陰)이 처음 생기는 괘이니, 한 해로 따지면 5월이 됩니다. 그 초륙(初六)에 ‘쇠로 만든 고동목[金柅]을 채우고 또 매달아 놓으면, 정(貞)한 도(道)가 길

在位也。九五曰：‘嘉遯貞吉。’今遇災避殿，乃人君之遯也，此正順天道，恐懼修省之時也。否者三陰之卦，而於歲則七月也。其九五曰” ‘大人休否，其亡其亡，繫于苞桑。’蓋九五君位，故戒之如是也。臣觀國家邊鄙事，慶尙道沿海之邑，倭奴雜處，全羅道沿邊之地，備禦疎虞，至於黃海道，是要害之衝，而尙無節度使，如有不虞之變，何以當之？願殿下，益加苞桑之戒。觀者四陰之卦，而於歲八月也。九五曰：‘觀我生，君子無咎。’我生者，風俗政治之謂也，政治皆善，而君子矣，則爲無咎矣。剝卦乃五陰之卦，而於歲則九月也。其大象曰：‘上以厚下安宅。’蓋厚固其下，安養其居之謂矣。推此則辛丑、乙巳兩年舊債，亦當減也。坤純陰之卦，而於歲則十月也。陰之在上者，有一分之消，則陽之在下者，亦有一分之長，故於此，復卦又生焉。此天道之至誠無息也。臣以至誠無息，反覆開陳，極爲迂矣，然稽之於古，則子曰：‘詩三百，一言蔽之曰，思無邪。’無邪，是誠也。《禮記》曰：‘禮儀三百，威儀三千，一

(吉)하고, 가는 바[攸往]가 있으면 흉(凶)함을 볼 것이니, 여윈 돼지가 항상 깡충 깡충 댄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일음(一陰)이 처음 생겨난다는 것은 곧 한 소인(小人)이 진출함을 이르는 것이니, 한 소인이 나오게 되면, 많은 소인이 각각 유(類)를 따라 나와서 <필경> 그 나라를 암매(暗昧)한 곳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오(九五)에 이르기를, ‘기(杞) 나무로 그 아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싸서, <아름다운 덕을 속에 간직하고 지성껏 구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리라.’고 하였으니, 임금이 어진이를 쓰기를 마치 기나무 잎새로 아름다운 열매를 싸듯이 함을 말한 것입니다.

신이 구로(舊老)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파파(番番)22897) 한 노사(老士)들이 서위(庶位)22898) 에 포열(布列)되었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성(老成)한 신하는 옛부터 임금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옛날 소공(召公)22899) 이 성왕(成王)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지금 어린 나이로 왕위(王位)를 계승하였으니, 수고(壽考)22900) 한 이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문무(文武) 양과(兩科) 출신 이외에도 조정에 벼슬한 선비들이, 어린 나이로 이미 현달(顯達)한 벼슬을 제수받은 자가 비비(比比)22901) 하게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주의(注擬)할 때 성상(聖上)의 내지(內旨)가 많이 있었고, 전형(銓衡)하는 관원으로 그 <적절한> 사람을 다 얻지 못함이니, 이는 전하께서 사람을 쓰는 길이 지극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둔괘(遯卦)는 이음(二陰)의 괘이니, 한 해로 말하자면 6월이 됩니다. 그 대상에 이르기를, ‘하늘 아래에 산이 있고 산이 솟다가 그친 것이 둔(遯)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소인을 멀리하되, 악한 말이나 엄한 빛을 짓지 아니하고서도 엄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임금이 마땅히 소인을 멀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位)에 있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구오(九五)에 이르기를, ‘<中正한> 아름다운 둔(遯)이니, 정정(真正)하면 길(吉)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재앙을 만나 정전(正殿)을 피하심은 곧 임금의 둔(遯)이니, 이는 바로 천

言蔽之曰， 毋不敬。’ 敬是誠也。《書》曰：‘欽明文思安安。’ 注云：‘欽之一字， 開卷第一義也。’ 欽是誠也。《孟子》曰：‘思誠者， 人之道也。’ 是誠也。《論語》曰：‘言忠信， 行篤敬。’ 是誠也。《大學》第六章：‘誠身之本。’ 則是誠也。《中庸》則誠者， 一篇之樞紐， 自天命， 至無聲、無臭， 一以貫之矣。 大抵始勤終怠者， 人情之常也。《詩》曰：‘靡不有初， 鮮克有終。’ 故堯、舜蕩蕩巍巍， 難名之君， 而虞朝君臣， 更相戒飭， 或曰：‘儆戒無虞， 罔遊罔淫。’ 或曰：‘一日萬幾， 兢兢業業。’ 周公作《無逸》， 戒成王， 至於漢、唐， 申公戒以力行， 魏徵疏以十漸， 此皆欲令人主， 慎終如始， 有無疆之休也。 殿下法此數語， 益加至誠無息之功， 應天以實， 則天災可弭矣。” 上曰：“爾所言， 大有理， 精熟經學。” 因謂承旨曰：“雖有欲言之事， 殿陛之間， 盡言無隱， 其志可取。 年今幾何？” 右承旨許琛啓曰：“有亨， 臣之四寸姝夫也。 稍解文字， 年三十餘矣。” 上曰：“所言時弊， 似不可行。” 琛啓曰：“其言不可行也。”

	<p>도(天道)를 순응하여 공구(恐懼)하며, 수성(修省)할 때입니다.</p> <p>비(否)란 삼음(三陰)의 괘이니, 한 해로 말하자면, 7월이 됩니다. 그 구오(九五)에 이르기를, ‘대인(大人)이 위(位)에 있으면 비색함을 휴식케 하는지라 그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하며 포상(苞桑)22902) 에 잡아 매는 듯하리라.’ 하였으니, 대개 구오(九五)란 군위(君位)이기 때문에 경계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신이 국가의 변비(邊鄙)22903) 의 일을 보건대, 경상도(慶尙道) 연해(沿海)의 고을에는 왜노(倭奴)들이 섞이어 살고 있으며 전라도(全羅道) 연변(沿邊)의 땅에는 방어 태세가 소홀하며, 황해도(黃海道)에 이르러서는 요해(要害)의 땅인데도, 아직 절도사(節度使)가 없으니, 만일 불우(不虞)22904) 의 변이 있게 되면 무엇으로 당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포상(苞桑)에 잡아매는 경계를 더하게 하소서.</p> <p>관(觀)이란 사음(四陰)의 괘(卦)이니, 한 해로 말씀하면 8월입니다. 구오(九五)에 이르기를, ‘나의 삶을 보되, 군자면 허물[咎]이 없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삶을 본다는 것은 풍속(風俗)과 정치(政治)를 이룸이니, 정치가 모두 다 착하게 이루어지고, 군자의 도(道) 같으면 허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괘(剝卦)는 곧 오음(五陰)의 괘이니, 한해로 보면 9월입니다. 그 대상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이를 본받아 아랫사람에게 후(厚)하게 하여 집안이 편안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아랫사람을 후고(厚固)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삶을 편안하게 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신축년(辛丑年)과 을사년(乙巳年) 두 해의 구채(舊債)도 또한 감하여야 마땅합니다. 곤(坤)은 순음(純陰)의 괘이니, 한해로 보면 10월입니다. 위에 있는 음(陰)이 일분(一分)쯤 소멸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양(陽)이 또한 일분쯤 성장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복괘(復卦)가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천도가 지극히 성실하게 쉽기 때문입니다.</p> <p>신이 지극히 성실히 쉽기 없는 것으로써 반복(反覆)하여 개진(開陳)하는 것은</p>	<p>賜有亨胡椒三斗。</p>
--	--	-----------------

극히 오활(迂闊)하나, 옛글에서 상고해 보면,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詩) 3백 편(篇)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 곧 성(誠)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예의(禮儀)가 3백이요, 위외(威儀)가 3천이지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경이 바로 성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공경하시며 통명(通明)하시며 문장(文章)하시며 생각이 심원(深遠)하시되 면강함이 아니다.’라고 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공경할 흠[欽]의 한 글자가 개권(開卷)22905 함에 제일의(第一義)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흠이 바로 성입니다.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성실함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도(道)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성입니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그 말이 충성되고 미더우며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성입니다. 《대학(大學)》의 제 6장에 ‘성(誠)은 한 몸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입니다. 《중용(中庸)》에서는 성이란 것이 한 편(篇)의 추뉴(樞紐)가 되어 천명(天命)으로부터 무성(無聲)·무취(無臭)에 이르기까지 이 성으로 일관(一貫)하였습니다.

대저(大抵)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다가 끝에 가서 게을러지는 것이 인정(人情)의 상례(常例)인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시초가 있지 않음이 아니로되, 끝마침을 잘하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堯)·순(舜)은 탕탕(蕩蕩)22906 하고, 외외(巍巍)22907 하여, 무어라고 이름짓기 어려운 임금인데도 우(虞)나라의 군신(君臣)이 경계하고 당부하기를 혹은, ‘한도없이 경계(儆戒)하여 안일하게 놀지 말며 과도하게 즐기지 마소서.’라고 말하였고, 혹은 ‘하루 동안 만기(萬機)22908 를 살피시며 궁궁(兢兢)22909 하고 업업(業業)22910 하소서.’라고 말하였고,周公(周公)22911 은 《무일(無逸)》 22912 을 지어 성왕(成王)을 경계하였으며, 한(漢)과 당(唐)에 이르러서는 신공(申公)은 힘써 행하도록 경계하였으며, 위징(魏徵)은 십점(十漸)의 소

	<p>(疏)22913) 를 올렸으니, 이는 모두 인주(人主)로 하여금 종말을 근신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하여 무강(無疆)한 아름다움을 향유케 하려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두어 가지 말을 본받으시어, 지극히 성실하고 섬이 없는 공(功)을 더욱 더하시고, 하늘에 성실하게 순응하시면 천재(天災)를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한 바가 크게 이치에 맞는 것이 있고, 경학(經學)에도 정숙(精熟)하다.”</p> <p>하고, 이어 승지(承旨)에게 일러 말하기를,  “비록 말하고자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폐(殿陛)의 사이에서 다 말하고 숨김이 없으니, 그 뜻을 취할 만하다. 나이 지금 몇이냐?”</p> <p>하니, 우승지(右承旨) 허침(許琛)이 아뢰기를,  “조유형은 신의 4촌 매부(妹夫)입니다. 문자(文字)를 조금은 해독하오며, 나이는 30 남짓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말한 바의 시폐(時弊)는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p> <p>하니, 허침이 아뢰기를,  “그의 말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조유형에게 후추(胡椒) 3말[斗]을 하사하였다.</p>	
<p>성종 24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8일 (을유) 2번째기사</p>	<p>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와서 아뢰기를,  “작일(昨日)에 신(臣)의 종[奴]이 녹봉(祿俸)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금란 서리(禁亂書吏)들이 녹석(祿碩)22920) 가운데 금육(禁肉)이 들어 있다고 하여, 잡아서 본부(本府)에 고(告)하였는데, 대장(臺長)22921) 이 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사람을 시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신이 비록 직접 그 욕(辱)을 당하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노자(奴子)가 욕을 당한 것은 역시 신의 무상(無狀)한</p>	<p>○廣川君李克增來啓曰：“昨臣奴，受祿俸而來，有禁亂書吏等，以爲祿碩中，有禁肉，執之告于本府，臺長知其無犯，使人護送。臣雖不親受其辱，奴子見辱，亦臣無狀之致也。且當相詰時，奴子曰：‘我乃某家奴也。’臺吏</p>



	<p>소치입니다. 또 당시 서로 힐난할 때에, 노자가 말하기를, ‘나는 아무의 가노(家奴)다.’라고 하였더니, 대리(臺吏)가 말하기를, ‘네가 비록 정승(政丞)의 종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고 하였다 합니다. 심지어는 군사(君賜)22922) 의 물건을 부문(府門)22923) 까지 억지로 끌고 가서 날이 저문 뒤에야 보냈으니, 대체(大體)가 매몰(埋沒)된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 사람이 지극히 외람(猥濫)되다. 만약 범한 바가 있다면 법사(法司)에 있어서는 비록 정승의 종이라 하더라도 회피(回避)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지금 경(卿)의 아뢰므로 인하여 이런 외람한 무리들이 법을 범한 자를 규찰하는 것을 인하여 도리어 스스로 법을 범하고 있음을 알았다. 금부(禁府)로 하여금 추국(推鞠)하게 하여 엄하게 징계하여 후인(後人)을 경계토록 하라.”</p> <p>하고, 이어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p> <p>“법사(法司)의 관원(官員)으로서 아전의 불법(不法)한 일을 알았으면, 마땅히 죄(罪)를 주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놓아주고 보호(保護)하여 보냈다 하니, 이 어찌 옳다 하겠느냐? 이는 오로지 아리(衙吏)22924) 만을 비호(庇護)한 것이다.”</p> <p>하였다.</p>	<p>曰：‘爾雖政丞之奴，吾何畏哉？’至以君賜之物，勒致府門，竟日而送，大體埋沒。”傳曰：“其人至爲猥濫矣。若有所犯，則在法司，雖政丞之奴，固不可回避。然此則不然。今因卿啓，乃知猥濫之徒，因察犯法者，而反自犯法也。令禁府，推鞠痛懲，以戒後人。”仍傳于政院曰：“法司官員，知吏不法之事，當罪之可也。而不爾，但放之，而保護送之，是豈可乎？專以衙吏而庇之也。”</p>
<p>성종 24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8일 (을유) 4번째기사</p>	<p>제기 주성 도감(祭器鑄成都監) 제조(提調) 노사신(盧思愼) 등이 아뢰기를,</p> <p>“제기(祭器) 가운데 유작(鍤爵)22926) 은 예문(禮文)을 따르면 중심에 돌려 구부린 모양이 있고, 그 밖에는 흐름이 있다 하니, 개조(改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은작(銀爵)22927) 은 비록 예문과 촌분(寸分)이 다르나 지극히 정교(精巧)하니, 만일 개조케 한다면 공역(功役)이 배나 더할 것이므로 옛것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준(壺尊)22928) 에 있어서는 칠사(七祀)22929) ·배향 공신(配享功臣) 각위(各位)에 모두 호준을 각각 하나씩 두어</p>	<p>○祭器鑄成都監提調盧思愼等啓曰：“祭器內鍤爵，從禮文，中心有回曲之形，其外有流，改造何如？銀爵則與禮文，寸分雖有小異，至爲精巧，若令改造，功役倍多，仍舊何如？壺尊則於七祀、配享功臣各位，都設壺樽各一，其一盛玄酒，其一盛清酒。其一尊所受，</p>

	<p>야 하는데, 하나는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준(尊)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만 8잔인데 공신의 수효는 23위(位)이니, 이 한 준(尊)의 술을 가지고, 23위에 나누어 따르면 술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준을 사용하여 술을 담아 그 곁에 두고는 부족한 것을 돕게 하는데, 온당하지 못합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이르기를, ‘다만 매위(每位)에 호준 각 한 개씩을 설치한다.’고 하였고, 《오례의(五禮儀)》의 주(注)에는 ‘다만 호준이 각각 하나다.’라고만 일컫고 매위를 나누어 말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오착(誤錯)된 곳입니다. 금번에는 《통전(通典)》에 의하여 매위마다 각각 호준 하나씩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까? 혹은 2, 3위를 합하여 하나의 호준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까? 산뢰(山罍)22930)에 있어서는 고문(古文) 및 《오례의》 주에 모두 이르기를, ‘종묘(宗廟)에는 산뢰를 쓴다.’고 하였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산준(山尊)입니다. 예문에 의거하여 산뢰로 개조해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은작으로 개조하는 것이 비록 공(功)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두 새로 제작하는 때를 당하여 그것이 예문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겠는가? 나머지 술잔을 개조하는 것은 과연 아뢴 바와 같다. 호준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수효가 적고 공신의 수효는 많으니, 《통전》에 실린 것이 옳다. 그리고 《오례의》의 주에 실린 것이 그릇되었으니, 지금 《통전》에 의하여, 매위마다 각각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산준도 또한 예문에 의하여 산뢰로 개조토록 하라.”</p> <p>하였다.</p>	<p>只八爵，而功臣則其數二十有三，以此一尊之酒，分酌于二十三位，酒常不足。故用他尊盛酒，置于其側，以助不足未便。《杜氏通典》則云：‘每位設壺尊各一。’而《五禮儀》注，只稱壺尊各一，而不分言每位，此是誤錯處也。今依《通典》，每位各設壺尊乎，或合二三位而設一壺尊乎？山罍則古文及《五禮儀》注皆云：‘宗廟用山罍。’而今所用者，乃山尊也。依禮文改造山罍乎？”傳曰：“改造銀爵，雖曰功重，然今當一新制作之時，知其不合禮文而仍舊可乎？改造餘爵，果如所啓。壺尊，今所用者數少，而功臣則數多，《通典》所載是，而《儀》註所記非也，今依《通典》，每位各設可也。山尊亦依禮文，以山罍改造。”</p>
<p>성종 24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13일</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이의 성변(星變)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내가 양전(兩殿)22942) 을 위하여 선수(膳羞)를 그전대로 회복하겠다.”</p>	<p>○傳于承政院曰：“今者星變已消，故予爲兩殿復膳。”</p>

(경인) 4번째기사	하였다.	
성종 24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월 24일 (신축) 5번째기사	대내(大內)에서 도두(刀豆)22977) 의 종자를 내다가,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館員)에게 나누어 주고, 각각 재식(栽植)하게 하였다.	○內出刀豆種, 分賜承政院、弘文館、藝文館員, 各令栽植。
성종 25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2월 4일 (경술) 2번째기사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인 직선(職宣)이 하직하였는데,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편지를 받아 평온함을 알게 되니,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고 잘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토산물인 정포(正布) 9필(匹), 면포(綿布) 4필과 지난 경술년(22991) 에 예사(例賜)하는 쌀·콩 아울러 2백 석(碩)과 제시한 황금(黃金), 주홍 동철(朱紅銅鐵) 등의 값으로 면포 1만 9백 6필 26척(尺)을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쳐 보내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였다.	○宗貞國特送職宣辭, 禮曹答書曰: 書來, 得認清勝, 欣慰。 所獻禮物, 謹啓收訖。 將土宜正布九匹、綿布四匹及去庚戌年例賜米、豆并二百碩, 所示黃金、朱紅銅鐵等價, 綿布一萬九百六匹二十六尺, 付回使, 惟領納。
성종 25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2월 11일 (정사) 3번째기사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도사(都事) 진윤평(陳允平)을 보내어 전문(箋文)을 올리기를, “천심(天心)은 인애(仁愛)하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조짐이 있으며, 성덕(聖德)이 환하게 밝아서 감응하는 것이 간격이 없습니다. 도(道)는 진실로 아래 위에서 나타나므로 이치는 아주 적은 것이라도 어긋하는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위(位)를 지키는 것을 인(仁)이라 하니, 상제(上帝)의 법칙을 순응하고 양의(兩儀)23024) 에 참여해서 만물을 양육하였으며, 도(道)는 생성(生成)하는 데 흡족하므로 칠정(七政)23025) 을 가지런히 하여 농사짓는 절후를 잃지 않게 하셨으니, 공(功)은 <천지의> 조화(造化)와 짝할 만합니다. 지난번 성문(星文)23026) 이 연속해서 견책을 보이므로 인사(人事)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는가 깊이 근심하시어 책임을 지고 자신을 나무라시는 것이 번번이 조서[綸綹]에 나타났으며,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깊은 연못가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 위를 건너는 듯 조심하셨으며, 칙명	○江原道觀察使金礪石, 遣都事陳允平上箋曰: 天心仁愛, 降格有徵, 聖德昭明, 感通無間。 道固形於上下, 理無爽於錙銖。 恭惟守位曰仁, 順帝之則, 參兩儀而育物, 道洽生成, 齊七政, 以授時, 功侔造化。 頃屬星文之示譴, 深軫人事之或差, 引咎責躬, 輒形綸綹, 減膳避殿, 若涉淵冰, 勅命惟 [下] 幾, 而精一念之憂勤, 應天以實, 而儆百官之修輔, 夕惕若厲, 誠發於中, 日監在茲, 災銷於上。 驗天人之相與, 知朝野之同歡。 然皇鑑之警君, 以符命而正

(勅命)은 기틀을 생각하였으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기를 정밀하게 하였고 하늘에 순응하기를 성실로써 하되 모든 신하들이 수양하고 보필하도록 경계하였으며, 종일토록 조심하시니 그 정성은 마음속에서 우러났으며, 날로 임감(臨監)하여 여기에 계시니 재앙은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증험하였고, 조정과 민간에서 같이 기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황감(皇鑑)23027) 이 임금을 경계하고 부명(符命)23028) 으로 자신의 덕(德)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바람과 우레의 변고(變故)23029) 로 주공(周公)의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상곡(桑穀)의 요사스러움 23030) 으로 중종(中宗)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周)나라 선왕(宣王)은 가뭄의 재난을 만났고, 송(宋)나라 경공(景公)은 형혹(熒惑)의 재변(災變)23031) 을 만났지만 모두 조심하는 마음을 지녔기에 과연 정비되고 구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도리에 합당하게 할 수 있으면 천시(天時)23032) 가 성실하지 않은 것은 드뭅니다.

요사이 듣건대,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하여 조정의 <관원을> 간식(干食)23033) 하게 만들었습니다. 적(敵)을 만나 패배당한 것은 비록 변장(邊將)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틈을 엿보다가 기회를 잡는 것은 흉노(匈奴)가 한(漢)나라를 가볍게 여긴 것처럼 <야인(野人)이 우리 나라를 가볍게 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오랑캐의 기마(騎馬)만 헤아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흉변(凶變)을 알리는 것에도 부합되니, 또 어찌 재화나 근심의 닥치는 것이 오히려 더러는 뜻밖에 나타나는 것을 알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재앙이 이미 사라졌다고 여기지 마시고 한결같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응답하시며,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이르지 마시고 더욱 모든 일을 즐겁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드러나지 않게

德。 風雷之變，式彰周公之勤勞，桑穀之妖，實啓中宗之寅畏。 宣王值旱魃之虐，宋景遇熒惑之災，皆懷戰兢之心，果有修救之效。 苟能合於人道，鮮不孚于天時。 比聞戎虜之犯關，而致朝廷之吁食。 遇敵見衄，雖邊將之非人，伺隙乘機，慮匈奴之輕漢。 惟茲胡騎之匪茹，若符玄象之告凶，又安知禍患之來，猶或出意料之外？伏望殿下，勿謂災已銷，而仰答一心之敬，毋曰治已至，而益致庶事之康。 不顯亦臨，思上帝之引逸，無疆惟休。 謹天命之靡常，保國可繫於苞桑，備患孰侮於陰雨？和聲聞而妖聲自息，正氣勝而邪氣罔干。 傳曰：“陳戒之意，良可尚也。 以此馳書諭之。”

	<p>이를 것이니, 상제(上帝)께서 편안한 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사모하소서. 그리고 한없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천명(天命)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조심하소서. 그래서 국가를 보전함에 있어 뽕나무 뿌리로 동여맨(23034) 것처럼 하는 것이 가하며, 환란에 대비하는 것을 음우(陰雨)가 내리기 전에 &lt;뽕나무 뿌리를&gt; 가져다가 창문을 동여맨 것(23035) 처럼 한다면 누가 업신여기겠습니까? 화합한 소리가 들리면 요사스런 소문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정당한 기운이 승리하게 되면 간사한 기운은 간섭하지 못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계하도록 진술한 뜻이 참으로 가상하다. 이것으로 치서(馳書)하여 유시(諭示)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2월 13일  (기미) 1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자건(李自健)이 아뢰기를,  “원주 목사(原州牧使) 이감(李堪)이 공진(供進)하는 것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멋대로 거둬들이니, 법에 어긋나는 것이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공죄(公罪)로 논한다면 수령(守令)이 된 자가 누가 기꺼이 징계되어 벌을 받겠습니까? 원주의 주민들이 침탈당하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데 이르렀으니, 다시 그 직임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틀림없이 임금에게 돌아갈 것입니다.”</p> <p>하니, 어서(御書)하기를,  “아뢴 바가 매우 옳다. 다만 이감이 비록 멋대로 거둬들인 것은 있으나, 자기 개인적으로 거둬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죄로 논한 것이다.”</p> <p>하였다. 이자건이 다시 아뢰기를,  “이감이 인리(人吏)들에게 면포(縣布) 2백 56필(匹), 세마포(細麻布) 12필(匹), 황랍(黃蠟) 60냥(兩), 쌀 9석(碩)을 지나치게 거두었는데, 그가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만약</p>	<p>○己未/司憲府持平李自健啓曰：“原州牧使李堪，憑藉供進，橫斂民財，不法莫甚。今若論以公罪，則爲守令者，孰肯懲艾而奉法乎？原州之民，不耐侵苦，以至訴冤若，復還其任，則民怨必歸於上矣。”御書曰：“所啓甚可。但李堪雖有橫斂，不入於己，故以公罪論之。”自健更啓曰：“李堪濫收人吏緜布二百五十六匹、細麻布十二匹、黃蠟六十兩、米九碩，其不畏國法，恣橫無忌如此。今若優容，論以公罪，則恐法網陵夷，守令貪黷者，無所懲矣。律云：‘雖因公事，意涉阿曲，爲私罪。’非國家監司所令，而擅便收斂，</p>

	<p>관대하게 용납하여 공죄로 논한다면 아마도 법망(法網)이 점차로 쇠퇴해질 것이며, 수령(守令)으로서 탐독(貪黷)23038) 하는 자를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律)에 이르기를, ‘아무리 공사(公事)를 기인했다 하더라도 의도하는 것이 아첨하고 왜곡된 데 관계되면 사죄(私罪)가 됩니다. 국가에서나 감사(監司)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편리하게 거둬들였으니, 이것을 공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상(進上)하는 것을 이미 마친 뒤에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독촉하였는데, 그것을 어느 곳에 쓰는 것도 모르니, 공죄로 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청컨대 율문(律文)에 의하여 사죄로 논단(論斷)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是可謂之公乎? 進上已畢之後, 又追督徵, 未知用之何處, 其不可論以公罪明矣。 請依律文, 斷以私罪。” 從之。</p>
<p>성종 25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2월 19일 (을축)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우승지(右承旨) 허침(許琛)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p> <p>“대정(大靜)의 죄수 양녀(良女)인 소은금(召隱今)이 간부(奸夫) 강위량(姜渭良)과 더불어 본부(本夫) 초동(肖同)을 모해(謀害)하려고 소주(燒酒)를 마시게 하고 그가 몹시 취하기를 엿보다가 몽둥이로 때려 죽인 죄는, 소은금은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 강위량은 참대시(斬待時)23052) 에 해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p> <p>“초동이 한 그릇의 술을 마시고서 5, 6차례 구타당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의심스럽습니다.”</p> <p>하고, 우찬성(右贊成) 어세겸(魚世謙)은 말하기를,</p> <p>“소내은금(召內隱今)과 함께 사는 자가 5, 6인(人)인데, 그가 초동을 죽일 때 어찌 아는 자가 없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저 계집이 미리 남편을 죽이려고 꾀하여 소주를 준비해서 억지로 마시게 하</p>	<p>○乙丑/受常參, 視事。 右承旨許琛, 將刑曹啓本啓: “大靜囚良女召隱今, 與奸夫姜渭良, 謀害本夫肖同, 飲燒酒, 伺其沈醉, 以杖打殺罪, 召隱今律該陵遲處死, 姜渭良斬待時。” 上顧問左右。 右議政李克培對曰: “肖同飲一器酒, 而五六度毆打時, 未得出聲而死, 可疑。” 右贊成魚世謙曰: “召內隱今同居者五六人, 其殺害肖同時, 豈無知者乎?” 上曰: “彼女預謀殺夫, 備燒酒強飲之, 使之泥醉, 乃於夜中殺之, 不得出聲。 雖有人, 豈能知之? 其依律施行。” 許琛又啓: “大興囚私奴金孫, 毆打其主得非子, 得非親往禁止, 亦以手揮置罪, 律該斬待時。” 上</p>

	<p>여 그로 하여금 몹시 취하게 하고 밤중에 죽였으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을 것이니, 비록 사람이 있었다고 하나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율(律)대로 시행하라.”</p> <p>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대흥(大興)의 죄수 사노(私奴) 금손(金孫)이 그 주인 득비(得非)의 아들을 구타하므로 득비가 직접 가서 금지시켰는데도 손으로 휘둘러버린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에 하문(下問)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그 문권(文券)이 분명하지 않아 득비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명하여 사형은 감(減)하게 하고 공천(公賤)에 정속(定屬)되게 하였다. 집의(執義) 이복선(李復善)이 아뢰기를,  “김여석(金礪石)이 진문(箋文)을 올려 아침을 바친 것은 비록 신진(新進)의 인사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터인데, 더구나 재상(宰相)이겠습니까? 청컨대 직임을 같고 추문(推問)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추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리 남의 뜻을 탐지하여 아침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으로 그를 체임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p> <p>하였다. 정언(正言) 장순손(張順孫)이 또 김여석을 체임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問左右。克培對曰：“其文券不明，不可的論得非之奴。”命減死，屬公賤。執義李復善啓曰：“金礪石進箋獻諛，雖新進之士，尚恥爲之，況宰相乎？請遞職推問。”上曰：“已令推鞫。然不可逆探人意，以爲諛悅而遞之。”正言張順孫，又請遞礪石，不聽。</p>
<p>성종 25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2월 22일  (무진) 1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진지(傳旨)하기를,  “주례(酒禮)를 베푸는 것은 신명(神明)에게 제사를 받들며 늙은이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그 사용이 많다. 그러나 더러는 굳게 제재(制裁)하지 못하고 탐닉하는 것을 힘쓴다면 재화(災禍)가 됨이 어찌 적겠는가? 이 때문에 선왕(先王)이 예(禮)로써 거듭 &lt;밝히고&gt; 법(法)으로써 단속하였는데, 후세(後世)</p>	<p>○戊辰/傳旨議政府曰：“酒禮之設，所以奉祀神明，羞耆享賓，其用大矣。然或不能剛制，惟務荒腆，則爲禍亦豈少哉？是以先王，申之以禮，約之以法，其在後世，雖嚴禁酒之令，靡救崇</p>

	<p>에서는 비록 술을 금하는 영(令)이 엄격하였지만, 마시기를 숭상하는 화는 구 언하지 못하였으니, 이전의 역사에 충분히 경계하였다. 이제 듣건대, 풍습이 소주(燒酒)를 숭상하여 위로 관부(官府)에서부터 아래로 여항(閭巷)에 이르기 까지 모두 마시기를 좋아하여 점점 풍습을 이루는 데 이르렀으니, 소비[糜費]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간혹 지나치게 마실 것 같으면 역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치가 있다. 지금부터 뒤로는 늙거나 병이 들어 약(藥)으로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계하여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飲之禍， 前史亦足爲戒。 今聞習俗， 尙燒酒， 上自官府， 下至閭巷， 率以好飲， 浸至成習， 非徒糜費爲甚， 如或過飲， 亦有傷人之理。 自今以後， 老病服藥外， 戒勿好飲。”</p>
<p>성종 25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2월 25일 (신미) 3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장순손(張順孫)이 한 충인은 수령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수의(收議)하도록 하였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참외관(參外官)으로 늙은 아버지가 있어 정사(呈辭)23063) 하는 자는 기한이 지나면 파직(罷職)합니다. 그러나 사관(四館)의 풍습이 학록(學錄)으로 파직을 당하면 학정(學正)으로 천거하며 학정으로 파직을 당하면 박사(博士)로 천거를 합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이미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즉시 와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학(四學)23064) 의 훈도(訓導)가 모두 궐원(闕員)23065) 인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기한이 지나 파직된 자는 승진시켜 천거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성균관뿐만 아니라 사관(四館)23066) 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록 옛날 풍습이기는 하나 이극증이 아뢴 것이 옳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御經筵。 講訖， 正言張順孫， 論韓忠仁不合守令事。 上曰：“已令收議， 觀衆議則可知。” 知事李克增啓曰：“成均館參外官， 有老親呈辭者， 過限則罷職。 然四館之風， 以學錄見罷， 則薦學正， 以學正見罷， 則薦博士。 以此雖已過限， 不卽來仕。 今四學訓導皆闕不可。 今後過限罷職者， 勿令陞薦。” 上顧問左右。 領事盧思愼曰：“非但成均， 四館皆然。 此雖古風， 克增之啓是矣。” 上曰：“依所啓施行。” 特進官李克均啓曰：“邊方今將解水， 防禦稍歇。 慶源江水尙深， 待旱乾後可渡， 慶源以下， 無足慮。 而今抄送京軍一百， 若待氷釋而還， 則往來有弊， 亦不可留待來春。 且諸邑供頓之弊不貲。 姑停入送爲便。” 上曰：“其</p>



	<p>“아뢰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p> <p>“변방(邊方)에 장차 얼음이 녹으면 방어하는 것이 조금 험(歎)해질 것입니다. 경원(慶源)은 강물이 깊어서 가물기를 기다린 뒤에야 건널 수 있으니, 경원이하는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군(京軍) 1백 명을 뽑아 보내시고 만약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 돌아오게 한다면 오가는 데 폐단이 있으며, 내년 봄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고을에서 접대하는 폐단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선 들여 보내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 도(道)에 비록 군사가 있다고 하나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많지 않으니, 만약 무재가 없다면 아무리 많더라도 어디에 쓰겠는가? 영안도(永安道)는 비록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방어가 매우 긴요하니, 가을이나 겨울 이전에는 그만두고 돌아올 수 없다.”</p> <p>하였다. 시강관(侍講官) 김심(金諶)이 아뢰기를,</p> <p>“지금 가흥창(可興倉)을 영조(營造)하는데 경상도(慶尙道)의 30고을 사람, 충청도(忠淸道)의 20고을 사람을 역사시켜야 하니, 이것은 실로 시급한 업무가 아닙니다. 대저 거둬들인 전세(田稅)는 여기에다 오래도록 쌓아 두는 것이 아니고 얼음이 풀리면 배에 실어서 옮기니, 창고를 영조하는 것이 도리어 쓸데 없게 됩니다. 경상 하도(慶尙下道)의 백성들은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往來)하는데 자칫하면 열흘이나 한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재목(材木)이 없으므로, 멀리 큰 재를 넘어 운반해 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많은 면포(緜布)를 소비하여 그 구실을 보상해야 하니, 이것은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p> <p>하였는데, 이극균(李克均)·장순손(張順孫)도 그 불가함을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道雖有軍士，有武才者不多，若無才，則雖多何用？永安道雖冰釋，防禦甚繁，秋冬以前，不可罷還。”侍講官金諶啓曰：“今營可興倉，役慶尙道三十邑，忠淸道二十邑人，此實不急之務。大抵其所收田稅，非久積於此，解冰則載船而下，營倉反爲無用。慶尙下道之民，贏糧往來，動經旬月。且其地無材木，遠踰大嶺輸來。若不爾，則多費緜布，以償其役，此非細故。”李克均、張順孫，亦言其不可，上曰：“其營造之由考啓。”</p>
--	--	---

	“그 영조하는 까닭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1일 (정축) 1번째기사	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궐로 돌아올 때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집을 지나오면서 들르고자 한다.”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제신(金悌臣) 등이 아뢰기를, “오늘은 예(禮)를 거행하였으니 사저[私第]에 거둥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지평(持平) 이자건(李自健)도 아뢰자, 전교하기를, “아이가 이 집에 있으니 부자(父子)의情理(情理)로 어찌 서로 보고 싶지 않겠는가?” 하고서, 마침내 그 집에 거둥하여 부인(夫人)에게 중미(中米) 20석(碩), 조미(糙米) 20석, 황두(黃豆) 20석, 정포(正布) 1백 필(匹), 수주(水紬) 10필, 면자(綿子) 30근(斤)을 내려 주었다.	○朔丁丑/上詣文昭殿、延恩殿行朔祭。傳曰：“還宮時欲歷入永膺大君家。”都承旨金悌臣等啓曰：“今日禮行，幸私第未便。”持平李自健亦啓之。傳曰：“兒在此家，父子之情，豈不欲相見乎？”遂幸其第。賜夫人中米二十碩、糙米二十碩、黃豆二十碩、正布一百匹、水紬一十匹、綿子三十斤。
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3일 (기묘) 2번째기사	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練院)에서 베풀었다. 도승지(都承旨) 김제신(金悌臣)과 좌승지(左承旨) 정경조(鄭敬祖)에게 명하여 가서 선운(宣醞)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設耆英宴于訓練院。命都承旨金悌臣、左承旨鄭敬祖往賜宣醞。
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6일 (임오) 2번째기사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전경 문신(專經文臣)23075)에게 강(講)하게 하였다. 시장 재상(侍講宰相)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오로지 학문은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고 벼슬에 나아가기만을 힘써, 더러는 음직(蔭職)을 받고자 하기도 하고 더러는 강습(講習)하는 데에 예속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강(日講)을 싫어하여 아침 식사 때는 겨우 10여명, 저녁 식사 때는 많아야 4, 50명에 이르지만 식사가 끝나면 모두 흩어져 버리니, 국가에서 양현(養賢)한다는 이름은 있어도 그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일강(日講)과 월강(月講)에서 약통(略	○上御宣政殿。講專經文臣侍講。宰相李克增啓曰：“成均館儒生，專不勤學，惟務仕進，或承蔭，或屬講肄，且厭日講，朝食時則僅十餘人，夕食則多至四五十人，食罷則皆散，國家有養賢之名，而無其實。臣意日講、月講略通以上錄之，每季朔移牒吏曹，依蔭子弟取才例敍用，則與《大典》分數優

通)23076) 이상을 기록하게 하고, 계삭(季朔)마다 이조(吏曹)에 이첩(移牒)하게 하여 음자제(蔭子弟)를 취재(取才)하는 예(例)에 의거해서 서용(敍用)한다면, 《대전(大典)》의 분수(分數)가 우등(優等)인 자를 서용하는 법(23077) 과 서로 부합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학문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만약 대수롭지 않게 따로 법을 세운다면 장차 그 폐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서 반드시 더 심한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위에서 학문을 숭상하여 권장(勸獎)하는 것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모두 힘쓸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말하기를,  
“일강(日講)에서 약통(略通)한 사람을 서용한다면 선비의 풍습이 날로 더럽고 낮은 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극증(李克增)은 유생(儒生)들이 태만한 것을 유감으로 여겨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극증은 아뢰기를,  
“신이 더러 유생의 가동(家僮)을 가두어(23078) 권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러 나아가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유생들을 각박(刻迫)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이와 같이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국가에서 <학문을> 권장하는 절목(節目)을 이미 다 갖추어 놓았으니 다시 할 일이 없다.”

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법(法)이란 번거롭게 고쳐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초장(初場)에서 경전(經傳)을 강독(講讀)하는 법을 폐기(廢棄)하지 않으면 학문하지 않는 폐단은 저

等者敍用之法相合，如此則人皆樂赴學矣。”上顧問左右。洪應對曰：“若屑屑別立新法，則將不勝其弊，夫上有好者，下必有甚焉者，君上崇學，以示勸獎，則人皆勸勵。”尹弼商曰：“日講略通者敍用，則士習日就於汚下矣。克增憾儒生儒慢而有是言，然不可舉行。”克增曰：“臣或因儒生家僮以勸之，然就學者不多。”弼商曰：“待儒生不可刻迫也。”上曰：“儒生若是其不學，何哉？國家勸勵，節目已悉，更無可爲事。”李克培啓曰：“法者，不宜紛更，初場講經之法不廢，則自無不學之弊，方今經學如金鈎、金末者，亦未有焉。請依世宗朝故事，不廢講經之法。”洪應啓曰：“有治經學者、有製述者，不可一概論也。”上曰：“政丞言是也。”

	<p>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경학(經學)으로는 김구(金鉤)·김말(金末) 같은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세종조(世宗朝)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경전을 강독하는 법을 폐기하지 않도록 하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은 아뢰기를, “경학(經學)을 익히는 자도 있어야 하고 제술(製述)을 익히는 자도 있어야 하니,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말이 옳다.”</p> <p>하였다.</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7일 (계미) 3번째기사</p>	<p>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이경동(李瓊全)이 어미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부의(賻儀)로 정포(正布) 15필(匹), 쌀·콩을 합하여 15석(碩), 진말(眞末) 20두(斗), 진유(眞油)·청밀(淸蜜) 각 6두(斗)를 내려 주게 하였다.</p>	<p>○同知經筵事李瓊全遭母喪，賜賻正布十五匹、米·豆并十五碩、眞末二十斗、眞油·淸蜜各六斗。</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10일 (병술) 3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오는 13일에 영돈녕(領敦寧) 이상 정부(政府)·육조(六曹)로 하여금 동교(東郊)에서 관가(觀稼)23079) 하게 할 것이니, 술과 음악을 내려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曰：“來十三日，令領敦寧以上政府、六曹，觀稼于東郊，賜酒樂。”</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13일 (기축) 3번째기사</p>	<p>이날에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의(李誼)가 명을 받고 동교(東郊)에서 관가(觀稼)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 김제신(金悌臣)·상전(尙傳) 김자원(金子猿)에게 명하여 선온(宣醞)23082) 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 조지서(趙之瑞)·정광세(鄭光世), 박사(博士) 김일손(金駟孫)에게 명하여 별선온(別宣醞)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p>	<p>○是日，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左副承旨李誼承命觀稼于東郊。命都承旨金悌臣、尙傳金子猿賜宣醞，又命弘文館應教趙之瑞·鄭光世、博士金駟孫，齎別宣醞，往賜之。</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14일</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양계(兩界)23089) 는 군량(軍糧)이 넉넉하지 않는데, 적(賊)이 만약 해마다 난을 일으킨다면 어쩔 수 없이 대군(大軍)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군수(軍需)</p>	<p>○御夕講。講訖，侍講官趙之瑞啓曰：“兩界軍糧不敷，賊若年年作耗，則不獲已必大舉矣。廣儲軍需之策，不可</p>

<p>(경인) 6번째기사</p>	<p>물자를 널리 저축하는 계책을 강구(講究)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강구하고 계획하였지만, 조정에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조지서가 또 아뢰기를,  “신중한 것을 지키면서 경솔한 것을 어거하는 것은 국가의 장구(長久)한 계획이 됩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나라의 기(畿)23090) 천 리(千里)가 되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경기(京畿) 영평(永平) 등의 고을은 사람이 없어 텅비었으며, 강원도(江原道)는 더욱 심합니다. 지난번에 비록 주민을 모집하여 옮겨 살도록 하였지만, 수령(守令)들이 모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이 남쪽 지방에 도착하여 들으니, 이항(里巷)의 백성들이 모두 국가에서 주민을 모아 옮겨 살게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컨대 거듭 여러 도(道)에 유시(諭示)하여 주민을 모집해서 채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수령들이 나의 뜻을 본받지 않는 것을 알겠는가? 마땅히 재상(宰相)과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p>	<p>不講。”上曰：“國家已嘗講畫，當與朝廷更議之。”瑞又啓曰：“居重御輕，爲國長策，《詩》云：‘邦畿千里，維民所止。’今京畿若永平等邑，空虛無人，江原道尤甚，曩者雖募民徙居，守令皆不用意。臣到南方聞之，里巷之民，皆不知國家募徙之意，請申諭諸道，募民以實之。”上曰：“予何以知守令不體予意乎？當與宰相更議之。”</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21일  (정유) 3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강삼(姜參)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도(道)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조미(糙米)를 보건대, 그 품질이 중미(中米)와 같았으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활한 아전이 위엄을 빌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매우 과중(過重)하게 하며, 백성들이 간혹 나머지 쌀을 가지고 가며 도둑질한 쌀이라고 일컬으면서 그것을 빼앗고, 가만히 개인의 창고를 설치하여 그 고을 전세(田稅)의 수(數)를 채워서 그 고을의 세금을</p>	<p>○御經筵。講訖，獻納姜參啓曰：“臣觀諸道收稅糙米，其品與中米同，甚未便。且猾吏假威，收斂太重，民或持餘米而去，則稱盜米奪之，潛置私庫，以充其邑田稅之數，而其邑之稅，私自納焉。請遣臺官收稅，若不然，則使他道剛明守令監收何如？”上顧問左</p>

사사로이 스스로 납부하니, 청컨대 대관(臺官)을 보내어 세금을 거두게 하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道)의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거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정말 말한 바와 같다면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강삼이 또 아뢰기를,  
 “신이 전주(全州)에 있으면서 지방 관리가 불법(不法)을 행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전(前)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계통(李季通)·도사(都事) 신자건(愼自健)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임되는 데 미처서 이계통은 부정(副正)으로 승진되고, 신자건은 정랑(正郎)으로 승진되니, 남쪽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계통이 전세 차사원(田稅差使員)이 되어 혹은 지나치게 거둔 쌀이라고 일컫고 혹은 도둑질한 쌀이라고 일컬으면서 개인의 창고에 많이 받아들여 그 군(郡)에서 응당 납부해야 할 세(稅)를 채우고는 그 나머지 수를 훔쳐서 옥야현(沃野縣)의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또 형벌을 감할 때 과중하게 속(贖)바치게 하여 아전과 백성을 침탈하므로 사람들이 집을 비워두고 도망하여 흩어지니, 더러는 그 집 재물을 철거하여 빨감에 대비하도록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農民)을 권장하고 독려한다고 핑계대고 면포(綿布)를 함부로 징수하였습니다. 신자건은 아들을 위하여 그 도(道)에서 며느리를 맞는데, 감사(監司)에게 아들의 장인[妻父]을 경기전(慶基殿)23099)의 참봉(參奉)으로 삼도록 청하였습니다. 신이 우연히 본부(本府)의 영청(營廳)에 이르러 새로운 농(籠) 네 짝이 있는 것을 보고 부윤(府尹)인 김수손(金首孫)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右。領事尹弼商對曰：“果如所言，則禁之可也。”上曰：“然。”參又啓曰：“臣在全州，嘗聞外吏不法。前益山郡守李季通、都事愼自健尤最，而及其遞來，季通陞副正，自健陞正郎，南民間之，莫不驚怪。季通爲田稅差使員，或稱濫收米，或稱盜米，多納私庫，以充其郡應納之稅，而竊其餘數，送沃野縣已第。又威刑重贖，浸漁吏民，人有空家逃散，或撤其家材，備炬納之。又託勸督農民，濫徵縣布；自建爲子娶婦其道，請于監司，以子之妻父爲慶基殿參奉，臣偶到本府營廳，見有新籠四，問諸府尹金首孫，答云：‘此都事求請于羅州之物也。’且陪箋來京時，求鐵蒺藜于首孫，首孫語臣曰：‘都事面求物未便。’又圖婚于全州之人，求請諸邑，贈遺相續，請于收稅差使員，減其人田稅。惟此二人，須痛懲以快南民之心，以示朝廷用法之明。”上顧問左右。尹弼商曰：“自建事，有迹易推；季通事，無形難明。”上曰：“如此之事，朝廷得聞爲難，令憲府窮鞫之。”司經金駟孫啓曰：“國家內有藝文館及兼春秋掌記時事，朝廷之政，無

도사(都事)가 나주(羅州)에 청구한 물건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전문(箋文)을 받들고 서울로 올 때에 김수손에게 철질려(鐵蒺藜)23100)를 청구하자, 김수손이 신에게 말하기를, ‘도사가 직접 대하여 물건을 청구하니 온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全州)의 사람에게 혼인하기를 도모하고 여러 고을에 청구하였으므로 선물이 서로 잇달았는데, 수세 차사원(收稅差使員)에게 그 사람들의 전세(田稅)를 감(減)하여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모름지기 엄하게 징계하여 남쪽 백성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시고, 조정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함을 보이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자건의 일은 흔적이 있어서 추문(推問)하기 쉽겠지만, 이계통의 일은 드러난 것이 없어 밝히기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조정에서 듣기가 어렵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끝까지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경(司經) 김일손(金駟孫)이 아뢰기를, “국가에 안으로는 예문관(藝文館)과 겸 춘추관(兼春秋館)이 있어 시사(時事)를 말아서 기록하므로, 조정의 정사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사(野史)가 없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의 불법(不法)이 비록 강삼(姜參)이 아뢴 바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되며, 탁월하거나 기위(奇偉)하고 품행이 특이한 자라도 묻혀 없어지고 전해지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빠뜨려진 법입니다. 청컨대 사유(師儒)나 홍문(弘文) 등이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기주(記注) 중 마땅한 사람이 정밀하게 뽑아서 춘추록(春秋錄)을 만들게 한다면, 비록 지방에 살고 있던 기간이라도 듣고 본 것이 정치와 풍화(風化)23101)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기주를 넓히소서.”

不備記，然無野史，故外吏不法，雖有如姜參所啓者，皆不遺臭於後。卓犖奇偉，操行特異者，亦埋沒無傳，此乃方今闕典，請依師儒弘文等錄記注可當人，精擇爲春秋錄，雖在外居閑，其所聞見，有關政治及風化者，無不備錄，以廣記注。”上顧問左右。弼商啓曰：“朝廷既立史官，又承政院、弘文館、侍講院、司諫院、司憲府、六曹、政府，皆兼春秋，以記時政，不必更立新法。”上曰：“野史之法固美，然新法不可立。”駟孫又啓曰：“尊禮大臣，王政所先，昔二疏乞骸，帝賜黃金，朝臣設供帳祖道都門外，車數百兩；唐楊巨源之去亦如是，萬古以爲美談，今盧自亨、李約東，皆朝廷老臣，一朝退老田里，其邑守令，役其家，視同編氓，有乖敬大臣之義。且知中樞府事金宗直，因病受暇，欲輿還故鄉，家貧無僕隸，未備擔輿之人。”上曰：“予以謂宰相告老，退居田里者，不役雜徭，其役之乎？問于該曹，考例以啓。金宗直之間關，若無爾言，予何得知？當給軍傳送。”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조정에는 이미 사관(史官)을 두었으며, 또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시강원(侍講院)·사간원(司諫院)·사헌부(司憲府)·육조(六曹)·정부(政府)가 모두 춘추관(春秋館)을 겸하여 시정(時政)을 기록하고 있으니, 다시 새로운 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야사(野史)의 법이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세울 수는 없다.”

하였다. 김일손이 또 아뢰기를,  
“대신(大臣)을 높이고 예(禮)로 대우하는 것은 왕정(王政)23102)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소(二疏)23103)가 결해(乞骸)23104) 하자, 황제가 황금(黃金)을 내려 주고, 조신(朝臣)들이 도성문(都城門) 밖에서 조도(祖道)23105) 하는 공장(供帳)23106)을 베풀었는데, 수레가 수백 량(輛)이었으며, 당(唐)나라 양거원(楊巨源)이 떠나는 데도 이와 같았으므로 만고(萬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노자형(盧自亨)과 이약동(李約東)은 모두 조정의 노신(老臣)인데, 하루아침에 늙어 전리(田里)로 물러가니, 그 고을의 수령(守令)이 그 집안에 부역을 시키며 편氓(編氓)과 동일하게 보아서 대신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종직(金宗直)이 병(病) 때문에 휴가를 받아 여(輿)23107)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부리는 종이 없으므로 여를 메고 갈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재상(宰相)으로 고로(告老)23108) 하고 전리(田里)에 물러가서 사는 자에게 잡역(雜役)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역을 시키는가? 해조(該曹)에 하문하고 예(例)를 고찰하여 아뢰라. 그리고 김종직이 〈떠나는데〉



	<p>길이 험하여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만약 그대의 말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군사를 지급하여 전송(傳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3월 24일 (경자)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양계(兩界)의 군량(軍糧)을 저축하는 조건을 아뢰기를,  “1. 양계(兩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사로이 저축한 미조(米租)와 황두(黃豆)를 모아 바치게 하여 경중(京中)의 군자(軍資)로 오래 묵은 쌀과 황해도(黃海道)·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의 군자인 조두(租豆)와 바꾸어 지급하게 하소서.  1. 사섬시(司贍寺)에 저장되어 있는 면포(綿布)를 매년 평안도(平安道) 박천(博川)에서 서쪽의 여러 고을에다 1천 필(匹), 영안도(永安道) 홍원(洪原)에서 북쪽의 여러 고을에 1천 필을 들여보내고, 익숙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수령과 함께 단속하여 살피게 하고, 쌀·콩[米豆]과 바꾸어 바치게 하소서.  1. 영안도 홍원에서 북쪽과 평안도 박천에서 서쪽의 여러 고을에 살고 있는 여러 관사(官司) 노비(奴婢)의 공포(貢布)는 군수(軍需)가 두루 넉넉해지기를 기한하여 쌀을 대신 바치게 하소서.  1. 평안도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는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멀고 가까운 것을 참작하여 강변(江邊)으로 옮겨서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호조(戶曹)에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희(沈滄)·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제 1조의 개인의 곡식을 바꾸어 바치게 하는 일은 세조조(世祖朝)에 시험삼아 시행하였는데, 백성에게 폐단이 있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매우 많았으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 2조와 제 3, 4조는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p>	<p>○戶曹啓兩界軍糧儲峙條件: “一。 募納兩界居人, 私儲米租、黃豆, 以京中軍資久陳米及黃海、忠淸、全羅道軍資租豆換給。 一。 司贍寺藏綿布, 每年平安道博川以西諸邑一千匹, 永安道洪原以北諸邑一千匹入送, 遣諳練朝官, 同守令檢察, 換納米豆。 一。 永安道洪原以北、平安道博川以西諸邑居諸司奴婢貢布, 限軍需周足, 以米代納。 一。 平安道諸邑田稅, 令觀察使, 酌遠近, 移納江邊。” 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戶曹。 沈滄、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李克均議: “第一條私穀換納事, 世祖朝試行之, 有弊於民, 而姦僞滋多, 不可施行。 第二, 第三, 四條, 皆依所啓施行。” 傳曰: “世祖朝行之, 有何弊乎?” 沈滄等啓曰: “守令或以官庫餘穀納之, 而自受其價, 或受商賈之賂, 而使之代納, 或聽權勢之請, 而官備納之。 因此厚斂于民, 以侵虐之, 其弊大矣。” 傳曰: “官庫餘穀, 雖千萬碩, 不載會</p>

	<p>“세조조에 그것을 시행하였을 때 어떠한 폐단이 있었는가?”  하자, 심회 등이 아뢰기를,  “수령(守令)이 더러는 관가 창고의 남은 곡식을 바치고 그 값을 받기도 하고, 더러는 장사치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대납(代納)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권문 세가(權門勢家)의 요청을 듣고 관에서 준비하여 바치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에게 후하게 거두어 들여서 그들을 침범하여 포학을 자행하므로 그 폐단이 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가 창고의 남은 곡식은 비록 천만 석(千萬碩)이라 하더라도 회계(會計)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모두 수령(守令)들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물건이 된다. 국가에서 이것을 인연하여 더 증가시켜 기록하도록 한다면 어찌 군수(軍需)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법을 범하는 관리들을 엄히 징계하여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計，故朝廷莫得而知，皆守令任意自用之物，國家緣此以增錄，則豈不補益軍需。 痛懲犯法之吏而換之可也。”</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26일  (임인) 1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虛踪)·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지(柳輕)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양계(兩界)는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지금 들건대, 군량(軍糧)이 넉넉지 못하다고 하니, 군사와 말이 아무리 날쌔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해사(該司)로 하여금 군량을 비축하는 계획을 헤아리고 채우기를 힘쓰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니, 장차 대관(臺官)을 파견해서 직접 감독하도록 할 것이다. 경(卿)은 그것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p>	<p>○壬寅/諭永安道觀察使許踪、平安道觀察使柳輕曰：“兩界防禦最緊，而今聞軍糧不敷，士馬雖強，無食何爲。茲以令該司，算畜糧之策，而存務實之計，將遣臺官親監，卿其知悉。”</p>
<p>성종 251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3월 29일  (을사) 2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비록 양맥(兩麥)이 익으려 하지만 가을의 흉풍은 미리 알 수 없다. 그런데 백성들은 멀리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무절제(無節制)하게 함부로 〈곡식을〉 허비하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경(卿)들은 이러한 뜻을 알고 민간</p>	<p>○下書諸道觀察使曰：“今雖兩麥將熟，秋成豐歉，未可預知。民無遠慮，妄費無節，誠非細事。卿悉此意，曉諭民間，多儲兩麥，毋妄費用。”</p>

	(民間)에 깨닫도록 타일러서 양맥을 많이 저축하게 하고 함부로 허비하여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4일 (기유) 2번째기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또 인정전에 나아가 음복례(飲福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인정전 남무(仁政殿南廡)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여섯 승지(承旨)로 하여금 선위사(宣慰使)를 위하여 음악을 내려 주게 하였다.	○御仁政殿，受百官賀。又御仁政殿，行飲福禮，仍命饋諸執事于仁政殿南廡。令六承旨爲宣慰使賜樂。
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5일 (경술) 2번째기사	종묘(宗廟) 제기 도감(祭器都監) 제조(提調)·낭청(郎廳) 및 장인(匠人)을 충훈부(忠勳府)에 모아 술과 음악을 내려 주었다. 좌승지(左承旨) 정경조(鄭敬祖)·우승지(右承旨) 허침(許琛)·내관(內官) 김효강(金孝江)에게 명하여 별선온(別宣醢)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조·승지·낭청 이하(以下)에게 채단(彩段) 등의 물품을 차등있게 내려 주도록 하였다.	○會宗廟祭器都監提調、郎廳及匠人等于忠勳府，賜酒樂。命左承旨鄭敬祖、右承旨許琛、內官金孝江齎別宣醢以往，仍賜提調、承旨、郎廳以下彩段等物有差。
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11일 (병진) 3번째기사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許琮)이 부름을 받고 왔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조산(造山)에 침입하여 노략질한 뒤로 성밀 야인(野人)들의 실정과 자취가 어떠한가?” 하였다. 허종이 대답하기를, “골간 울적함(骨看兀狄哈)이 성밀에 살고 있는데, 피적(彼賊)들이 조산을 노략질 할 때에 골간이 있는 곳을 거쳐서 왔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도망하였으므로, 실정과 자취가 의심스럽습니다. 도롱오(都弄吾)가 서울에서 본도(本道)로 돌아와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가서 돌아오도록 타이른다면 도망간 골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적이 침입하여 노략질할 때 조산 사람이 적(賊)이 개[狗]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으로 헤아려 보면 아마도 골간이 울적함과 공모하여 노략질하려고 침입한 듯합니다. 조산보(造山堡)는 쉽게 침입하여 노략하지 못하는 지역인데도 이처럼 패배를 당한 것은 전적으로 변장(邊將)이 잘 대비하여 방	○永安道觀察使許琮承召來。上引見，謂曰：“造山入寇之後，城底野人情跡何如？”琮對曰：“骨看兀狄哈居城底，彼賊寇造山時，經骨看而來，未幾逃走，情跡可疑。都弄吾自京還本道，語臣曰：‘吾入歸開諭，則逃歸骨看必還。’今果還來矣。彼賊入寇時，造山人見賊有牽狗者，以此料之，恐骨看與兀狄哈共謀入寇。造山堡未易入寇之地，而如此見敗者，專由邊將不能備禦耳。羅嗣宗雖不直抵造山，若於賊路登山吹角，則賊雖圍城，必自解矣。計不出此，驅逐彼賊，如驅默然，其致敗宜矣。”上曰：“嗣宗果輕進矣。”

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사중(羅嗣宗)이 비록 곧바로 조산에 닿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 적로(賊路)인 산에 올라가 각(角)을 붙게 하였다면 적(賊)이 성을 포위하였다더라도 틀림없이 스스로 〈포위를〉 풀었을 것입니다. 계책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고 피적을 몰아 쫓아 짐승을 몰이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패배를 당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사중이 정말 경솔하게 진격하였다.”

하였다. 허중이 또 아뢰기를,  
 “윤말손(尹末孫)은 미쳐 요격(邀擊)23170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의 계책은 만약 조산보를 시급하게 구원하지 않고 요격한다면 아마도 적이 성(城)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성 밑에 사는 알타리(斡朶里) 박다용개(朴多用介)가 말하기를, ‘지금 나가서 요격한다 하더라도 적이 틀림없이 깊숙이 들어가버려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요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뒤에 들으니, 적들도 요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며칠을 머뭇거리면서 머문 뒤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엔젠가 죄를 묻는다면 당연히 먼저 도로의 굽고 곧은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겠는가?”

였다. 허중이 말하기를,  
 “지금 만약 도로를 탐지(探知)하면 저들이 틀림없이 먼저 알고 미리 대비할 것입니다. 성 밑의 알타리가 모두 말하기를, ‘대국(大國)이 저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것이 작지 않은데 대국으로서 저들의 죄를 신문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습니다. 지금 토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무리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큰 일을 일으킬 때에 이 무리들로 하여금 앞잡이를 삼는다면 도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

琮又啓曰：“尹末孫可及邀擊，但其計以謂，若不急救造山堡而邀擊，恐賊陷城，又城底居斡朶里朴多用介云：‘今雖邀出，賊必深入，不可及也，’以此不邀耳。其後聞之，賊恐其邀擊，逗留數日而後去矣。”上曰：“早晚問罪，則當先知道路迂直，將何以處之？”琮曰：“今若探知道路，則必先預爲之備矣。城底斡朶里，今皆曰：‘大國受辱於彼虜不小，以大國而問彼之罪何難？’今若不討，則此輩必生輕我之心，當舉事之時，令此輩爲先導，則道路可知矣。令斡朶里、兀良哈爲嚮導，則兀狄哈必與斡朶里、兀良哈爲讎，而先報其怨，次及於我，須使此輩爲嚮導可也。或曰：‘興師(代) [伐] 罪，則彼必懷憤，交侵我疆。’臣意謂不然。己卯、庚辰年間北征，我國致敗之由，則主將令諸將分道，期會一處，而主將違約不來，分道諸將，深入相失，適又其時兩甚，未及來會也。然自此北征以後，久無邊患，今不往征，則彼必輕我，今如問罪，則不以勦殺爲務，以萬全爲計，只分二道，大舉而入，則彼必抗拒出戰，如此則在我不得已應之，如

타리(斡朶里) 올량합(兀良哈)으로 향도(嚮導)23171) 로 삼는다면, 올적합이 틀림없이 알타리 올량합과 원수가 되어 그들에게 원수를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이 무리들로 하여금 향도를 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켜 죄 있는 자를 정벌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분(憤)을 품고 번갈아 가며 우리 강토를 침략할 것이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기묘년23172) 과 경진년23173) 에 북정(北征)하였다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주장(主將)이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길을 나누어가도록 하고 <그 뒤> 한 곳에 모이도록 기약하였는데, 주장이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으며 길을 나누어 갔던 여러 장수는 깊이 들어가 서로를 잃어버렸고 마침 또 그 때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미처 와서 모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정이 있는 뒤로부터 오래도록 변방의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서 정벌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죄를 신문한다 하더라도 적을 모두 죽이는 것으로 임무를 삼지 말고, 아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계책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두 길로 나누어 많은 사람을 동원하며 쳐들어간다면 저들이 반드시 항거하며 나와서 싸울 것이니, 이렇게 되면 우리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대응해야 하는데, 모조리 죽일 수 있으면 죽이는 것도 가합니다.

그리고 또 신이 듣건대, 저들 지역의 처음 닿는 곳에 울지령(鬱地嶺)이 있는데 숲과 나무로 꼭 막혀 도로가 험준하고 좁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면 넓은 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고 도로도 평탄하여 적을 멀리 추격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적합은 5성(姓)이 있고 3성(姓)이 있는데 모두 속평강(速平江)가에 있으며 니마거(尼麻車)가 가장 강하고 난을 일으킬 때면 니마거가 꼭 먼저 앞장 서서 통솔합니다. 우리 지경에서부터 니마거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可勦殺，則勦殺可也。且臣聞之，彼土初面有鬱地嶺，林木深阻、道路險隘，過此則平原曠漠，道路平易，可以長驅而入。兀狄哈有五姓焉，有三姓焉，皆在速平江之邊，尼麻車最強，若作耗時，則尼麻車必先唱率，自我疆距尼麻車僅五六日程，若抄精兵、備器械，乘時而舉，則保無敗矣。且於入征時，留軍於鬱地守險，則彼賊又不能要諸路而據險，且軍數當不下萬人，本道軍士不足，以本道連境慶尙、江原道諸邑軍士并抄何如？”上曰：“可。斡朶里其徒有幾？”琮曰：“斡朶里強勇者三百餘人，而其中有軍器者百餘人。此輩與兀狄哈，舊有讎嫌，欲啗其肉，以此輩爲先鋒，則必盡心効力。”上曰：“本道軍士，強弱何如？”琮曰：“本道兵卒，素稱精強，近年則不如古，今則連歲豐稔，少蘇復矣。”上曰：“本道農事何如？”琮曰：“麩麥，時未成長，故未可的知農事豐歉。”上曰：“本道疲弊，予意謂，須令賢宰相久居其地，然後可得蘇復，故予於前日下書仍任。”琮曰：“臣以無狀，安敢當乎？”上曰：“國家若舉兵，則待彼解弛

	<p>겨우 5, 6일 노정(路程)이니 만약 날랜 군사를 뽑고 무기[器械]를 갖추어 기회를 보아 일을 일으킨다면 실패가 없을 것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벌하러 들어갈 때에 군사를 울지령에 머물게 하여 험한 곳을 지키게 한다면 피적(彼賊)이 여러 갈래 길에서 요격하며 험한 곳을 점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군사의 수효는 만명을 밀돌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본도(本道)의 군사(軍士)로는 부족하니, 본도와 지경이 잇닿는 경상도(慶尙道)·강원도(江原道) 여러 고을의 군사를 아울러 뽑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알타리는 그 무리가 얼마나 되는가?”</p> <p>하였다. 허중이 말하기를, “알타리에는 군세고 용맹스러운 자가 3백여 명인데 그 중에 무기를 가진 자는 1백여 명으로 이 무리들은 울적함과 예전부터 원수진 일이 있어 그 살점을 씹으려고 하니, 이 무리들은 선봉(先鋒)으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쓸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 군사의 강하고 약한 것은 어떠한가?”</p> <p>하자, 허중이 말하기를, “본도의 군졸들은 본래 날래고 군세다고 일컬어졌는데, 최근 몇 해 동안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잇달아 풍년이 들어 조금 소복(蘇復)23174)이 되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의 농사(農事)는 어떠한가?”</p> <p>하였다. 허중이 말하기를, “모맥(麩麥)이 아직 성장(成長)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의 흉풍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p>	<p>而後爲之乎，抑急爲之征乎？” 琮曰：“當急速征之，彼人雖犯邊，一不問罪，故雖聞我師之出，不以爲信。今年冬初、明年正月中入征可也。” 上曰：“沍寒之時，難以興師，但此兩月中，用何月乎？” 琮曰：“正月則彼人欲寇竊多聚兵，莫若今年十月也。” 上曰：“然則十月望時可也。” 琮曰：“軍士不可不多，而步兵尤宜多抄，兀狄哈交戰之初，必突圍而與我兵交鋒，急擊以刦之，如此之時，令步兵持防牌操短兵而進，則彼必北走，乘此機以輕騎突之，則彼不敢當矣。且銃筒，彼人所畏，亦可齎去。” 上曰：“彼路險阻，運火車亦不難乎？” 琮曰：“險阻之地，但一鬱地耳，可易運矣。” 上曰：“可。” 琮又啓曰：“臣巡審甲山等處，距建州不遠，而豆滿、鴨綠兩江分流初面連陸，而無大江限隔，防禦最繁。且慶源有牙山堡，慶興有撫夷堡，前者農民布野時，則令軍士防護於江邊，及其秋收，疊入城內。今則秋冬，仍居其野，故分軍卒，一以戍于江邊，一以戍(子) [于] 城內，兵分力弱，戍禦踈虞，請依舊疊入。” 上可。 琮又啓曰：“慶源</p>
--	---	--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가 시들고 쇠약하므로, 내각 생각하기를, 모름지기 현명한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 지역에 있도록 한 뒤에야 소복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에 글을 내려 유임[仍任]하게 하였다.”</p> <p>하자, 허중이 말하기를,  “신이 변변치 못한 자질로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만약 군사를 일으킨다면 저들이 해이(解弛)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하여야겠는가? 아니면 급하게 정벌을 하여야겠는가?”</p> <p>하였다. 허중이 말하기를,  “서둘러 빨리 정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인(彼人)들이 아무리 변경을 침범하여도 한 번도 죄를 신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사가 출동한다는 것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니, 금년 초겨울이나 명년 1월 중으로 쳐들어가서 정벌하는 것이 가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매우 추운 시기에는 군대를 일으키기 어렵다. 단지 이 두 달 중에 어느 달을 써야 하겠는가?”</p> <p>하자, 허중이 말하기를,  “1월은 피인들이 몰래 노략질하려고 군사를 많이 모을 것이니, 금년 10월만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10월 보름께가 가하다.”</p> <p>하였다. 허중이 말하기를,  “군사는 적게 할 수는 없으며 보병(步兵)은 더욱 많이 뽑는 것이 마땅합니다. 올적합과 서로 어울려 싸울 처음에 틀림없이 갑작스럽게 포위하고 우리 군사</p>	<p>以下則無長城，以無石故不能築，然築土爲城，其堅固勝於石城，以土築之何如？且平安、永安兩道，同時入寇，臣始疑其共謀竝舉，其後更聞之，則兀狄哈所居之地，與建州衛相距十餘日之程，勢不得相應也。” 上曰：“但入寇日月相近，故疑之耳。” 琮曰：“國家受辱大矣。 幹朶里等常憾恨曰：‘國家何不舉師問罪乎？’” 上曰：“果然，不可不懲，凡事當臨機措置。” 及琮退，命承旨饋于賓廳。</p>
--	--	--

와 어울려 싸우면서 급히 공격하여 겁내게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때에 보병으로 하여금 방패(防牌)를 소지하고 짧은 무기를 잡고 진격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달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가벼운 기마(騎馬)로 돌진한다면 저들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총통(銃筒)은 피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가지고 가야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의 길이 험하고 막혀 있으니, 화차(火車)를 운행하는 데 어렵지 않겠는가?”

하자, 허종이 말하기를,  
“험준하고 막힌 지역은 단지 울지령(鬱地嶺) 한 곳뿐이니, 쉽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허종이 또 아뢰기를,  
“신이 갑산(甲山) 등지를 순행(巡行)하면서 살펴보니 건주위(建州衛)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두만(豆滿)·압록(鴨綠) 두 강(江)이 나누어져 흐르다 처음 닿는 지역은 육지(陸地)와 잇대어 있어서 큰 강으로 경계가 막힌 것이 없으므로, 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경원(慶源)에는 아산보(牙山堡)가 있고, 경흥(慶興)에는 무이보(撫夷堡)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농민들이 들에 피져 있을 적이면 군사로 하여금 강변에서 방어하며 보호하도록 하였다가 추수함에 미처서는 성안으로 첩입(疊入)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나 겨울에 그대로 그 들에서 살기 때문에 군졸(軍卒)을 나누어 한편으로는 강변을 경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성안을 경비하게 하므로, 군사가 나뉘어져 힘도 약화되어 경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허술하니, 청컨대 옛날대로 첩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p>“가하다.”</p> <p>하였다. 허중이 또 아뢰기를,  “경원에서 아래로는 장성(長城)이 없는데, 돌이 없기 때문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쌓아 성을 만들어도 그 견고함이 돌로 쌓은 정보다 나으니 흙으로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도 또 평안(平安)·영안(永安) 두 도(道)에 같은 시기에 노략질하려 침입한 것을 신이 처음에는 그들이 공모하여 아울러 거사한 것으로 의심하였었는데, 그 뒤에 다시 들으니, 울적함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건주위와의 거리가 10여 일의 노정(路程)이므로 형세로 보아서 호응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지 노략질하려 침입한 월일[日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의심하였을 뿐이다.”</p> <p>하였다. 허중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욕을 당한 것이 큼니다. 알타리 등이 늘 한[憾恨]하기를, ‘국가에서 어찌 군사를 일으켜 죄를 신문하지 않습니까?’고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그러하다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은 그 때에 가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p> <p>하였다. 허중(許琮)이 물러나자,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빈청(賓廳)에서 대접하도록 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16일  (신유) 3번째기사</p>	<p>경상도(慶尙道) 예안현(禮安縣)에 서리가 내렸는데, 곡식은 상하지 않았다.</p>	<p>○隕霜于慶尙道禮安縣，不傷禾。</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p>	<p>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숭원(李崇元)·참판(參判) 여자신(呂自新)·참의(參議) 안우건(安友鵞) 및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중(許琮)이 빈청(賓廳)에 모</p>	<p>○兵曹判書李崇元、參判呂自新、參議安友鵞及永安道觀察使許琮會于賓</p>

(弘治) 4년 4월 17일  
(임술) 3번째기사

여 북정(北征)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다. 허중 등이 아뢰기를,  
 “여러 장수와 군관(軍官)은 주장(主張)의 의의(擬義)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며 군사는 1만 5천 명이 차야만 가합니다. 그리고 영안도 군사가 7천여 명에 가까우니, 그 나머지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와 서울에 있는 군사를 뽑아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활은 모름지기 자작나무 껍질을 써서 겹을 감싸야만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도 활의 갑절을 더한 연후라야 넉넉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도(本道)에는 사용하지 않는 활과 화살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수리하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헤아리고 수를 보태어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갑주(甲冑)는 본도에 남아 있는 숫자가 적으니, 윗 항목의 군사를 뽑아서 정할 때에 여러도(道)의 여러 고을의 쓸 만한 갑옷과 무재(武才)가 없는 군사가 만약 쓸 만한 갑옷을 가지고 있다면 정벌하러 들어가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통(銃筒)과 화약은 본도의 남쪽 고을에 저장한 것이 넉넉하니, 내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화기(火器)를 발사하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 본도 및 경중(京中)의 군사를 정하여 뽑아서 발사하는 것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시위는 수를 갑절로 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량(軍糧)은 본도에 쌀 20여만 석(碩)과 피곡(皮穀) 29만여 석이 있으니 거의 충분할 것이며, 어교(魚膠) 50근(斤)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도원수(都元帥)는 내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군사는 1만 5천 명이면 충분하다. 단지 이 숫자를 정해놓았는데 간혹 사고가 있어 종군(從軍)할 수 없다면, 군사의 수가 모자랄 것이므로, 2만 명을 정하여 뽑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군기시(軍器寺)의 활은 내가 이미 시위를 걸어 조정하여 쏘도록 하였다. 또 화살은 화살 만드는 대나무[箭竹]를 내려보내어 더 만들게 하고, 군기시의

廳, 同議北征事。 琮等啓曰: “諸將軍官, 當待主將擬議, 軍士滿一萬五千人則可矣。 永安軍士幾於七千餘人, 其餘慶尙、全羅、忠淸、京畿京居軍士抄送何如? 弓則須用樺皮着衣, 乃可用之於霧雨之日也。 箭亦加倍於弓, 然後有裕矣。 本道不用弓箭多在, 亦可修補用之, 然量宜加數入送何如? 甲冑則本道遺在數少, 上項軍士抄定時, 諸道諸邑可用甲冑及無才軍士, 若持可用甲冑, 分給入征軍士何如? 銃筒與藥, 則本道南官所儲有裕, 不須下送, 但放火人數少, 本道及京中軍士抄定習放爲便。 弓弦則宜倍數入送。 軍糧則本道米二十餘萬碩、皮穀二十九萬餘碩, 庶可足矣。 魚膠五十斤亦可齎往。” 傳曰: “都元帥則明當定之, 軍士一萬五千足矣。 但只定此數, 而或有故未得從軍, 則軍數益少, 二萬人抄定爲可。 軍器寺弓, 予已令上絃調射。 箭則箭竹下送加造, 軍器寺箭, 亦可量數入送。 甲冑、銃筒事, 依所啓。 弓絃則每一弓給絃二事, 有餘則加入送魚膠, 亦依所啓。” 琮啓曰: “今此舉, 姑勿聲言北征爲便。” 傳曰: “京中不

	<p>화살도 숫자를 헤아려 들여보내는 것이 가하다. 갑주(甲冑)와 총통(銃筒)에 대한 일은 아된 대로 하고, 활시위는 활 1개에 시위 2사(事)를 지급하게 하고 여유가 있거든 더 들여보내라. 어교(魚膠)도 아된 대로 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지금 이 거사(舉事)는 아직 북정(北征)한다고 발설[聲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경중(京中)에는 숨길 수 없다. 양계(兩界)에는 아직 발설하지 말고 군기(軍器)를 가지런히 하며 엄중하게 방비[堤防]하는 뜻을 하서(下書)하여 알아들도록 타이르게 하라.”</p> <p>하였다. 허중이 또 아뢰기를,  “전효상(全孝常)이 평상시에 방어를 삼가지 않았으니, 그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산(造山)은 본군(本軍)이 적은데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5, 6명에 지나지 않으니, 힘으로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활을 잘 쏘는 사람 30여 명이 마침 성중(城中)에 우거[客寓]하고 있었으므로, 전효상이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팽배(彭排)23182) 를 세우고 힘을 다하여 싸웠기 때문에 적(賊)이 그제서야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성(城)이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堡)가 강변(江邊)의 가장 구석진 곳에 처해 있으며, 이전에 적(賊)의 변고(變故)가 없었기 때문에 안일(安逸)한 데 익숙하여 경비(警備)를 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효상의 죄만은 아니니,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용서할 만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모두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고 범한 것이 매우 중대하므로 가볍게 용서할 수는 없다. 다만 인정과 법(法)을 아울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내가 짐작하여 결단하겠다.”</p>	<p>可諱也，兩界姑勿聲言，以軍器整齊，嚴加堤防之意，下書曉諭。” 琮又啓曰：“全孝常平時不謹防禦，罪之固當矣，造山本軍小，能射者不過五六人，力不能拒，然其時能射者三十餘人，適客寓城中，孝常率其人豎彭排力戰，故賊乃退，不然則必屠城矣。且此堡在江邊最僻處，前此無賊變，故狃於安逸，不爲警備久矣，此不獨孝常之罪，情可恕也。” 傳曰：“予亦以爲可恕，然朝廷皆以謂不可赦，而所犯至重，故不得輕赦，但情法所當竝用，予將斟酌斷之。”</p>
--	--	--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19일 (갑자) 1번째기사</p>	<p>하였다.</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윤효손(尹孝孫)·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오순(吳純)·경성 판관(鏡城判官) 이혁(李赫)이 하직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윤효손에게 말하기를,</p> <p>“황해도는 쇠잔하고 피폐한데다 또 장려(瘡癘)23185) 의 기운이 있어 백성들이 소복(蘇復)23186) 하지 못하기에 의원(醫員)을 보내어 구원해서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흑시라도 힘써 구원하지 않고 폐단을 일으키거든 경(卿)은 그것을 검찰(檢察)하도록 하라. 그리고 수령(守令)의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도 경이 출척(黜陟)23187) 을 하는 데 달려 있다.”</p> <p>하였다. 윤효손이 대답하기를,</p> <p>“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p> <p>하니, 오순에게 말하기를,</p> <p>“본도(本道)는 방어(防禦)가 가장 긴박하다. 근래에 적로(賊虜)가 노략질하러 침입하였다가 두 번씩이나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니, 틀림없이 다시 난을 일으킬 것이다. 경은 변장(邊將)들을 엄중하게 경계하여 사졸(士卒)을 훈련시키고 병기[器械]를 손질하여 항상 적(敵)이 나타난 것처럼 하도록 하라.”</p> <p>하고, 이혁에게 말하기를,</p> <p>“경성(鏡城)은 방수(防戍)가 가장 긴요하니, 민사(民事)23188)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방어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날마다 조심을 더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경희(權景禧)에게 이르기를,</p> <p>“부원수(副元帥)를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니 속히 도원수(都元帥)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정하고, 도원수가 돌아가지 않고 있을 때 여러가지 일을 자세히 의논하여 조치하되 빠트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남쪽 지방의 무재(武才)가 있는 수령도 가려 뽑아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p> <p>하였다. 권경희가 말하기를,</p>	<p>○甲子/黃海道觀察使尹孝孫、平安道節度使吳純、鏡城判官李赫辭。上御宣政殿，引見。語孝孫曰：“黃海道殘敝，又有瘡癘之氣，民不蘇復，故遣醫救療。如或不力救或作弊，卿其檢察，守令賢否，亦在卿黜陟。”孝孫對曰：“臣當盡心。”語吳純曰：“本道防禦最緊，近日賊虜入寇，再不得利，必更作耗，卿其嚴勅邊將，鍊士卒、修器械，常如見敵。”語李赫曰：“鏡城防戍最緊，不但民事而已，治民防禦，日加謹慎。”謂右副承旨權景禧曰：“副元帥時未定，速召都元帥，共議定之。都元帥未歸之時，諸事詳議措置，毋使遺漏。南方有武才守令，亦宜揀擇換差。”景禧曰：“二萬人一二朔糧餉，今當計數以啓，未知騎兵幾人、步兵幾人，騎兵則有騎卜馬保人，步兵亦有保人，其馬匹保人糧料亦并給乎？敢取稟。”傳曰：“騎步兵之數，與都元帥議之；馬匹保人給糧事，當考世祖朝北征時例施行。”許琮來啓曰：“副元帥宜早定，節度使成俊未經戰陣，出入督戰，恐未能也。臣持重兵，或在後，</p>
--	---	--

	<p>“2만 명이 한두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지금 계산하여 아뢰어야 하는데, 기병(騎兵)이 몇 명이며, 보병(步兵)이 몇 명인가를 모릅니다. 기병에는 기복마(騎卜馬)와 보인(保人)이 있으며 보병에도 보인이 있습니다. 그 마필(馬匹)과 보인의 양식도 아울러 지급하여야겠습니까? 감히 취품(取稟)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기병과 보병의 숫자는 도원수(都元帥)와 의논하고 마필과 보인에게 양식을 지급하는 일은 마땅히 세조조(世祖朝) 북정(北征) 때의 예(例)를 상고하여 시행할 것이다.”</p> <p>하였다. 허종(許琮)이 와서 아뢰기를,</p> <p>“부원수(副元帥)는 일찍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도사(節度使) 성준(成俊)은 전진(戰陣)23189)을 경험하지 못하여 드나들면서 전투를 감독하고 장려하는 것은 아마 잘하지 못할 듯합니다. 신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더러는 뒤에 있기도 하며 더러는 전투를 감독하며 더러는 길을 나누어 들어가서 정벌하게 되면, 부원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드나들면서 전투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이 본도(本道)로 되돌아 가면 부원수가 서울에 있으면서 조치하도록 한 뒤에야 계책에 빠뜨려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명하여 대사헌(大司憲) 이계동(李季全)을 부원수로 삼고, 장령(掌令) 이수언(李粹彦)·첨정(僉正) 양희지(楊熙止)·부수찬(副修撰) 유순정(柳順汀)·행사용(行司勇) 김수정(金守貞)·부사정(副司正) 여승감(呂承堪)·선전관(宣傳官) 김훤(金萱)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이계동이 와서 아뢰기를,</p> <p>“신이 변변치 못하운데 어찌 감히 부원수의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비장(裨將) 같으면 신이 마땅히 힘을 다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卿)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 도원수(都元帥)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p>	<p>或督戰，或分道入征，則副元帥領兵出入督戰。且臣還本道，則副元帥在京措置，然後無遺策矣。”命以大司憲李季全爲副元帥，掌令李粹彦、僉正楊熙止、副修撰柳順汀、行司勇金守貞、副司正呂承堪、宣傳官金萱爲從事官。季全來啓曰：“臣無狀，安敢當副元帥之任，若裨將則臣當竭力。”傳曰：“無出於卿之右者，其與都元帥，共議措置。”</p>
--	---	---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19일 (갑자) 2번째기사</p>	<p>하였다.          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이 서계(書啓)하기를,          “1. 여러 장수는 1백 50명, 군관(軍官)은 2백 명이어야 하겠습니다.          1. 영안도(永安道) 군사가 7천 명이니, 나머지 1만 3천 명은 병조(兵曹)와 함          께 여러 도(道) 여러 고을의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서로 참고하여 뽑아서          정하도록 하소서.          1. 여러 도의 군사가 들어가는 도로는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          1. 여러 도의 군사가 길을 떠날 때의 양식은 호조(戶曹)와 함께 의논하게 하          소서.          1. 군기시(軍器寺)에 간직된 군기(軍器)를 수송하는 절목(節目)을 상의(商議)          하게 하소서.          1. 여러 장수는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를 아울러 뽑아서 정하게 하          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과 금위(禁衛)의 군사는 많은 숫자를 뽑아서          정할 수 없으니, 대략 헤아려서 서계(書啓)하면 내가 적당히 수를 정하겠다.          그리고 나이가 젊으면서 활을 잘쏘는 무사(武士)를 변방의 일에 익숙하지 않          다고 여겨 같이 뽑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도록 해서 뒷날 기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허종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였다.</p>	<p>○都元帥許琮書啓：          一，諸將一百五十，軍官二百。一，          永安道軍士七千人，餘一萬三千人，同          兵曹以諸道、諸邑騎步兵相參抄定。          一，諸道軍士入歸道路分定。一，諸          道軍士行路時糧料，同戶曹議之。一，          軍器寺所藏軍器輪轉節目商議。一，          諸將竝以兼司僕、內禁衛抄定。          從之。仍傳曰：“內禁衛、兼司僕，禁          衛之兵，不可多數抄定，約量書啓，予          當定數。且年少能射武士，勿以謂未          諳邊事，而不并抄也，當此時，經歷險          阻，以爲後日之用可也。”琮曰：“上          教允當。”</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19일 (갑자) 3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군사를 부리는 기간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허종 등이 아뢰기를          “많아도 3개월을 지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70일에 밀돌진 않아야 합니다.”</p>	<p>○傳曰：“用兵日數議啓。”琮等啓曰：          “多不過三朔，小不下七十日。”傳曰：          “其以三朔爲定。”琮書啓軍士保人并          四萬，三朔糧四萬八千石。傳曰：“騎</p>

	<p>하니, 전교하기를,  “3개월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중이 서계(書啓)하기를,  “군사와 보인(保人)이 아울러 4만이니 3개월 동안이 양식은 4만 8천 석(石)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병·보병의 양식과 말의 식량도 다시 자세하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步兵糧料及馬料，更詳議以啓。”</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19일  (갑자) 4번째기사</p>	<p>어서(御書)를 내리기를,  “1. 기병(騎兵)은 말 두 필(匹)에 보인 1명.  1. 보병(步兵) 두 사람에게 말 한 필을 주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지난번 여주(驪州)에서 강무(講武)할 때에 군사들이 모두 보인(保人) 두 사람을 거느렸었다. 그러나 가끔 짐을 실은 말이 넘어지는데 그 두 사람으로는 도와서 일을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인이 병이 들면 호수(戶首)23190)가 혼자 말을 먹이면서 보인을 구제할 수 없고, 호수가 병이 들면 보인도 혼자서 말 두 마리를 먹이면서 호수를 구제할 수 없으니, 이것도 큰 일이다. 비록 양식이 든다 하더라도 두 사람을 거느리도록 말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보병(步兵) 두 사람에게 아울러 말이 한 필이라면 네 사람이 말 한 마리를 가지는 것이니, 서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적함(兀狄哈)이 서로 어울려 처음 싸울 때에 틀림없이 진(陣)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협할 것이니, 경(卿)이 아뢴 바에 의거하여 도끼[斧]·낫[鎌]·창(槍)·칼[劔]·몽둥이[杖]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마전(磨箭)23191)은 자체가 가벼워 쏘아도 명중시킬 수 없으니 호전(虎箭) 모양으로 별도로 만들어 저들이 진으로 갑자기 뛰어들 때에 맞이하여 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下御書：“一，騎兵馬二匹，保一名。一，步兵二人，并馬一匹。”仍傳曰：“近日驪州講武時，軍士等皆率保人二名，然往往馱馬僵臥，其二人不能扶起。且保人病，則戶首不能獨飼馬而救保人；戶首病則保人亦不能獨飼二馬而救戶首，此亦大事，雖費糧餉，率歸二人何如？且步兵二人，并馬一匹，則四人持一馬，可以相守，且兀狄哈交戰之初，必突陣以恐怯之，依卿所啓，多齎斧、鎌、槍、劔、杖，可也。然磨箭體輕，不能射中，以虎箭樣別造，當彼突陣，逆射之何如？”琮等啓曰：“騎兵保人二名事，恐費糧餉，不可。不但此舉，亦有後日之事，前出征之時，皆率一人，依前例何如？步兵二人，持一馬事及箭，上教允當，但諸</p>

	<p>하였다. 허중(許琮) 등이 아뢰기를,  “기병(騎兵)에게 보인 2명을 주는 일은 아마도 양식을 허비할 듯하니, 불가합니다. 이번 거사(舉事)뿐만 아니고 뒷날의 일도 있습니다. 앞서 출정(出征)할 때에는 모두 한 사람을 거느리게 하였으니, 전례(前例)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병 두 명에게 말 한필을 가지도록 하는 일과 화살은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여러 도(道)에서 명절[名日]에 바치는 장편전(長片箭)은 상의원(尙衣院)에 많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탕(內帑)23192)에 간직된 것이라 신들이 감히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병이 보인은 전례대로 각각 한 사람씩 거느리게 하라. 그리고 상의원에 간직된 화살은 당연히 내어 주도록 하겠다. 단지 이 화살은 모두 정교(精巧)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화살 잘 만드는 기술자를 많이 가려 뽑아서 호전(虎箭)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p>	<p>道有名日進上長片箭，多藏於尙衣院，然內帑所藏，臣等不敢請焉。”傳曰：“騎兵保人，依前例各率一人。尙衣院所藏箭，則當出給。但此箭皆不精造，箭匠善造者多數揀擇，以虎箭樣造之。”</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0일  (을축) 4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자건(李自健)이 와서 아뢰기를,  “이평은 정조(政曹)에 있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적(李績)은 일찍이 공문(公文)을 거짓으로 전달한 죄에 연좌되어 파직(罷職)되었는데, 지금 일년도 지나지 않아 그를 기용하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수언(李粹彦)은 대관(臺官)으로서 차출되어 북정 종사관(北征從事官)이 되었는데 그것도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어찰(御札)을 내리기를,  “참지(參知)23196)의 일을 헌부(憲府)에서 무엇 때문에 번독(煩瀆)하면서 그만두지 않는가? 만약 박계수(朴戒守)의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박계수가 이미 죽어 버려 다시 분변하여 바로잡을 수 없으며, 박계수가 비록 살아 있다 하더라도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평의 죄가 성립된다고는 기약할 수 없는</p>	<p>○司憲府持平李自健來啓曰：“李粹彦不宜在政曹，且李績曾坐公文詐傳之罪罷職，今不經年而用之未便。李粹彦以臺官出爲北征從事官，亦不可。”下御札曰：“參知之事，憲府何以煩瀆而不已也？若以爲受戒守之賂，戒守已死，無復辨正，戒守雖存，亦不可期以納賂成粹彦之罪也。且移寓司倉，爲盜米布，則其時推案俱存，不可以臆度論也。且以獻簇爲媒進，則以進警君之書，而得媒進之名者，古有其人耶？予於李粹</p>



	<p>것이다. 또 사창(司倉)에 우거[移寓]하면서 쌀과 베를 도둑질하였다면 그 당시의 추안(推案)23197) 이 갖추어져 있으니 추측하여 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족자(簇子)를 바쳐 진출하는 매개로 삼았다고 하는데, 임금에게 경계하는 글을 올리고서 진출하는 매개로 삼았다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는가? 내가 이평에게 조금도 사사로운 뜻이 없으니, 거절하고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남의 원통한 것을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적(李績)의 일은 이미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가 파직(罷職)된 것은 죄가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다. 파직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임용하는 데 무어 구애될 것이 있겠는가? 용사(戎事)23198) 는 대단히 중대하니, 이수언(李粹彦)이 비록 대관(臺官)이라 하더라도 파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無一毫私意，而所以拒而不聽者，乃欲伸人之冤也。且李績之事，既已勿論，其罷職非以爲有罪也，罷非以罪，用何有礙？戎事至大，李粹彦雖臺官，亦可遣也。”</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1일 (병인) 3번째기사</p>	<p>중앙과 지방에 술을 금하도록 명하고, 또 감선(減膳)23199) 하도록 명하였다.</p>	<p>○命中外禁酒，又命減膳。</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1일 (병인) 5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극검(金克儉)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서경(書經)》에 ‘만이(蠻夷)23200) 가 중국을 어지럽힌다.’고 하였고, 《시경(詩經)》 ‘험윤(獫狁)23201) 이 매우 성하다.’고 하였으니, 옛날부터 공통된 걱정꺼리였습니다. 진(秦)나라·한(漢)나라로 내려오면서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은 역사책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니, 모두 전하(殿下)께서 일찍이 열람하신 것입니다. 지난봄에 북쪽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약탈하였으며, 지키던 장수를 죽이는 데 이르렀으니, 크거나 작거나 그것을 들은 사람은 심담(心膽)23202) 이 함께 꺾이고 성난 기운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신문하지 않으면 예단(睿斷)23203) 을 드날릴 수 없다고 여겨 초 겨울이 되기를 기다려 장차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 하시니, 무사[武夫]와 건장한 군졸들은 쾌하다고 일컫는 이</p>	<p>○弘文館副提學金克儉等上筓子曰：《書》言：“蠻夷猾夏。”；《詩》稱：“獫狁孔熾。”自古通患，秦、漢以降，利害得失，炳炳史冊，皆殿下所嘗覽。去春北虜犯邊，殺掠人畜，至殺守將，大小聞者，莫不心膽俱喪，怒氣勃鬱，以爲非問罪，不可奮睿斷。俟冬初，將興兵致討，武夫健卒，多稱快焉，臣等庸懦，竊獨危之。深究已往之迹，以爲漢高被圍平城，七日不食而卒以和親，高后怒冒頓書辭極褻慢，議發兵擊</p>

가 많습니니다. 그러나 신 등의 어리석고 나약한 생각으로 저욕이 홀로 위협스럽다고 여깁니다. 이미 지나간 자취를 자세히 궁구해 보면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평성(平城)에서 포위되어 7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다가 마침내 화친(和親)하였으며(23204), 고후(高后)가 목탁(冒頓)의 편지 내용이 너무 버릇이 없는 데 노(怒)하여 군사를 내어 공격할 것을 의논하게 하자, 계포(季布)가 간(諫)하여 그만두었습니다(23205). 그러나 무제(武帝)23206) 만은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양식을 싸가지고 깊숙이 쳐들어가서 비록 대단한 성과는 있었으나 오랑캐들이 번번이 보복하였으므로 전쟁이 계속되고 화난(禍難)이 맺혀져 30여 년 동안 해내(海內)가 고달파하고 어지러웠으니, 이것이 귀감[明鑑]인 것입니다. 대저 성인(聖人)이 이적(夷狄)의 침략 보기를 마치 모기나 등에로 여겨 침입해 오면 몰아다 먼 곳으로 쫓아 버리고, 떠나면 대비하여 지키면서 병력을 다 써 멀리 가서 토벌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지금 오랑캐에게 2만의 군사를 일으켜 조그마한 분(忿)을 쾌하게 하려고 하시고, 군량(軍糧)을 운반하는 수고로움은 돌보지 않고 먼 적지(賊地)에 군대를 깊이 들여보내어 바로 위험한 곳[虎穴]을 탐색하게 하시는데,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운을 둔군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서 오는 피로한 상대를 기다리는 식으로 주객(主客)의 형세가 다르니, 군대를 조종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니다. 다행히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수를 깊이 맺어 노략질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뉘우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국가의 위엄을 떨어뜨리고 손상(損傷)시키는 것이 이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兵]는 흉(凶)한 기물(器物)이며, 전쟁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어찌 흉한 기물을 가지고 위태로운 일을 일으켜 오랑캐들이 늘 하는 짓을 보복하려고 요행(僥倖)을 바라면서 기필할 수 없는 승부(勝負)를 거십니까? 그것은 위상(魏相)23207)이 이른바 ‘성을 내어 떠드는 군대는 아마도 제왕(帝王)이 만전(萬全)을 기한 거사(舉事)가 아니다.’고 한 것에 가깝습니니다.

之, 季布諫而止, 獨武帝選將鍊兵, 贏糧深入, 雖頗有功, 胡輒報之, 兵連禍結三十餘年, 海內罷耗, 此其明鑑。夫聖人視夷狄之侵, 如蚊蟲之螫, 來則驅而遠之, 去則備而守之, 不窮兵不遠討。今欲舉二萬之衆於虜, 以快纖芥之忿, 飛輓之勞, 在所不恤, 而懸軍深入, 直探虎穴, 以逸待勞, 主客勢異, 用兵實難, 幸而得志, 結怨必深, 寇掠不已; 萬一蹉跎, 悔之何及? 其墜損國威, 於茲甚矣。且兵凶器戰危事, 豈擁凶器舉危事, 以報虜之常事, 以僥倖未可必之勝負乎? 殆魏相所謂忿兵, 恐非帝王萬全之舉也。議者以殿下此舉, 保其必勝, 果如所言, 一戰而勝, 凱旋之日, 殿下所知者奏捷, 書稱賀箋, 以快一時之觀聽而已。至如蒙犯風霜, 肝腦塗地之狀, 其可忍見耶! 孤子寡妻冤號之聲, 其可忍聞耶! 賜宴策勳, 厚賞重級, 將士之利, 非百姓之利, 又非國家之利也。且觀宗貞國書, 辭頗涉不遜, 欲歲增船隻, 設爲不可從之請, 以試朝廷之意。其勢將爲腹心之疾, 而撤南備, 遠事窮荒, 招咎益釁, 亦非計之得也。臣等又聞古人有言: “舉大

의논하는 자들은 전하(殿下)의 이번 거사를 틀림없이 이긴다고 보장합니다. 과연 말한 것과 같이 한 번 싸워 이기고 개선(凱旋)하는 날에 전하께서 아실 것은 이겼다는 글을 아뢰고 하례하는 전문(箋文)으로 칭송하면서 한때의 보고 듣는 것을 쾌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다가 참혹하게 죽어 간(肝)과 뇌(腦)가 땅에 발리어진 상황을 차마 볼 수 있겠으며, 아버지를 잃은 자식과 남편을 지어미의 원통해 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잔치를 내려 주고 공훈(功勳)을 책에 기록하며 넉넉한 상(賞)과 중한 자급[級]을 내려 주는 것은 장사(將士)들에게 이로운 것이지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또 국가의 이로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종정국(宗貞國)의 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불손(不遜)한 데 관계가 되며, 해마다 보내는 선척(船隻)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 설령 따를 수 없는 주청이라 하더라도 조정의 의도를 시험하는 것이니 그 형세가 앞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외환[腹心之疾]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방(南方)의 군비(軍備)를 거두어 멀리 오랑캐 지역에서 거사를 하니, 재앙(災殃)을 부르고 혼란(釁端)을 보태는 것으로 훌륭한 계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신 등이 또 옛날 사람이 말한 것을 듣건대, ‘큰 일을 일으킬 때에는 반드시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따라주거나 등지는 것은 재앙과 상서(祥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즈음 해마다 홍수와 가뭄이 잇달으며 별의 변고(變故)가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하늘의 뜻을 알 만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바야흐로 큰 군사를 동원하여 먼 곳에서 계책을 행사하려고 하시니, 비유컨대, 자식이 어버이에게 꾸지람을 당하였을 경우 당연히 온화한 소리로 기운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쳐야 기뻐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갑작스럽게 성난 소리로 마구 노예(奴隸)에게 매질하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멀리 지난 세대를 열람(閱覽)하시고 위로는 하늘

事必順天意，天意向背，見於災祥。”  
 近歲水旱連年，星變屢見，天意可知。  
 殿下方動大衆，事遠略，譬猶人子見謫於親，當怡聲下氣，負罪引慝，庶幾底豫，今乃遽然厲聲，恣箠於奴隸，以此而欲望親之悅己可乎？伏願殿下，遠覽前代，上察天心，下視民情，絕意兵革，以固邊塞，此社稷長久之計。臣等又聞，人臣進言，迎其方銳而折之，則難爲功。殿下銳意用武，而臣等不能奉丈二之笏，奮長纓之請，爲士卒先，而徒勸殿下息兵，諂臣等者，必以爲怯懦，必以爲迂闊。臣等非不知，而所以進言不已，誠以一得之愚，上裨聖聽也。  
 傳曰：“示領敦寧以上與政府。”

	<p>의 마음을 살피시며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뜻을 끊으시고 변방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이 사직(社稷)을 위한 장구(長久)한 계책인 것입니다. 신 등이 또 듣건대, 인신(人臣)이 말을 올리면서 바야흐로 생각이 날카로울 때를 맞아 그것을 꺾으려고 하면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날카로운 생각으로 무력(武力)을 활용하려고 하시는데, 신 등은 두 발[丈]되는 몽둥이를 받들거나 긴 밧줄(23208) 을 청하면서 분발하지 못하고, 다만 사졸(士卒)보다 먼저 전하에게 전쟁을 그만두기만 권면(勸勉)하였으니, 신 등을 나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lt;신 등을&gt; 겁이 많다고 여길 것이며 사리에 어둡다고 여길 것입니다. 신 등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진언(進言)하기를 그치지 않는 까닭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취할 만한 한 가지 생각이 위로 성청(聖聽)(23209) 을 보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2일  (정묘) 5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 및 대간(臺諫)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전효상(全孝常)이 방어를 잘못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게 한 죄는 진실로 사형시켜야 마땅하다. 다만 허종(許琮)이 말하기를, ‘조산(造山)은 일찍이 피적(彼賊)들이 들어와 노략질을 한 것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므로, 앞서의 변장(邊將)들이 모두 마음을 쓰지 않아 방어가 허술하게 되어,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전효상의 죄만은 아닙니다. 또 피적이 함부로 침입하였을 때에 수십명의 적은 군사로 힘을 다하여 적에게 항거한 것은 취(取)할 만하며, 나사중(羅嗣宗)이 패하여 죽을 때에 가서 구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돌아왔으니, 그</p>	<p>○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及臺諫。 傳曰：“全孝常不能防禦，以致人畜被擄，罪固當死，但許琮云：‘造山，彼賊所未及入寇之地，在前邊將，竝不用意以致防禦虛疎，因循至此，非獨孝常之罪也。 且彼賊闖入之時，以數十孤軍，力戰拒賊，是可取也。 羅嗣宗敗沒之時，非不往救，率軍赴鬪，中矢而還，其罪亦可恕也。’ 予意決杖一百，邊遠充軍，使之從軍北</p>

죄도 용서할 만합니다.’고 하였다. 나의 생각으로는 결장(決杖) 1백 대에다 먼 변방에 충군(充軍)시켜 그로 하여금 북정(北征)에 종군(從軍)하게 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게 한다면 전효상이 틀림없이 죽을 힘을 다할 것이니, 여러 사람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전효상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엄한 법률로 조치하지 않으면 후세(後世)를 경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신승선(愼承善)·정문형(鄭文炯)·노공필(盧公弼)·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전효상의 죄는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경계를 보여야 하므로,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할 만하다는 정상을 신 등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허종이 아된 바와 같다면 특별히 사형을 감(減)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장(杖) 1백 대에 충군시키는 것은 가벼운 듯하니, 장 1백 대에 3천리 밖에다 귀양보내어 관노(官奴)로 영속(永續)시켜 목숨을 겨우 보전하면 족할 것입니다.”

하고, 이승원(李崇元)·권건(權健)·한건(韓健)·신종호(申從濩)·송철산(宋鐵山)·이집(李諱)은 의논하기를,

“조산(造山)이 만약 피적(彼賊)들이 이르지 않는 곳이라면 애당초 진(鎭)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을 설치하였으면 당연히 날마다 방어를 조심스럽게 하여 피적으로 하여금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효상은 태만하여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미리 대비하여 막는 것을 해이(解弛)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성(城)을 함락하게 하고 사람과 가축을 죽거나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征，立功自贖，則孝常必盡死力，群意何如?” 沈滄、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魚世謙議：“上敎允當。” 韓致禮議：“全孝常之罪非輕，若不置重典，無以戒後。” 愼承善、鄭文炯、盧公弼、成健議：“孝常之罪，非止一身，示戒將來，法不可貸，其可恕之狀，臣等未悉，果如琮所啓，特減死，使自立功可也。但杖一百充軍則似輕，杖一百、流三千里，永屬官奴，僅保首領亦足矣。” 李崇元、權健、韓健、申從濩、宋鐵山、李諱議：“造山，若彼(賤) [賊] 不到之處，初不設鎭，既已設鎭，當日謹防禦，使彼賊不得入侵，孝常慢不致意，備禦解弛，使賊陷城，殺擄人畜，罪不可恕。” 李封、閔永肩議：“在世祖朝義州牧使禹貢、判官金舜輔、昌城府使朴良臣越江田獵，所率士卒，多爲賊所擄，繫獄推鞫，將置極刑，世祖特許免死而從征李施愛，立功自(贖) [贖]，是則出於(二) [一] 時特恩。今孝常慢不設備，陷失城寨，罪固當死。” 安琛、李季男、尹坦、鄭敬祖、權景祐、姜參、張順孫、崔灌、李禮堅、閔師騫、李自健議：“造

하고, 이봉(李封)·민영견(閔永肩)은 의논하기를,  
 “세조(世祖)에 의주 목사(義州牧使) 우공(禹貢)·판관(判官) 김순보(金舜輔)·창성 부사(昌城府使) 박양신(朴良臣)이 강을 건너가서 사냥을 하었는데, 거느리고 갔던 사졸(士卒)들이 적(賊)에게 많이 사로잡혔으므로 옥(獄)에다 잡아 가두고 추국(推鞠)한 뒤 장차 극형(極刑)23210) 으로 조치하려고 하였는데, 세조께서 특별히 사형을 감면(減免)하도록 하시고 이시애(李施愛)를 정벌하는 데 종군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특별한 은전(恩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효상이 태만하게 대비하지 않아 성채(城寨)가 함락[陷失]되게 하였으니, 죄는 진실로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안침(安琛)·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정경조(鄭敬祖)·권경우(權景祐)·강삼(姜參)·장순손(張順孫)·최관(崔灌)·이예건(李禮堅)·민사건(閔師鶯)·이자건(李自健)은 의논하기를,  
 “조산(造山)이 비록 적로(賊路)는 아니라 하더라도 변장(邊將)이 된 자는 방비를 엄하게 더하여 늘 적을 대한 것처럼 하여 조금도 해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효상이 미리 대비하고 막는 여러가지 일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아 적(賊)으로 하여금 성중(城中)에 함부로 침입하게 하였으니, 비록 조금 나아가서 방어한 일이있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면하려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사중(羅嗣宗)이 패하여 죽을 때에 이르러서도 또 힘껏 구원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저 적(敵)에게 임하여서는 나아가면 죽고 물러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군령(軍令)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서 살려고 하지 누가 기꺼이 나아가서 죽으려 하겠습니까? 이번에 전효상이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고 등을 돌리고 달아났으니, 바로 물러나 살려고 한 것입니다. 청컨대 율(律)에 의거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山雖非賊路，爲邊將者，嚴加設備，常如臨敵，不可少弛，孝常，於備禦諸事，略不致意，使賊闖入城中，雖少有出禦之狀，不過救死耳。至於嗣宗敗沒之時，又不力救，罪不可赦。大抵臨敵，進則死，退則生，若不用軍令，則人皆欲退而生，誰肯進而死乎？今孝常之不力戰背走，正欲退而生也。請依律科斷。”傳曰：“減死，決杖一百、流三千里、永屬官奴，使自立功。”臺諫合辭啓曰：“大抵人情，莫不畏死而欲生，必加重法律，然後忘生盡力。前秋撫夷受賊之後，守城者及節度使，當受重罪，而特命赦之，今全孝常目擊其事，意謂縱不力戰，罪不深重，以至於此，罪固當誅。且臣等所啓，非但據法，今將興大師，而輕罰示衆，恐不可也。”傳曰：“爾等之言固是。但孝常方賊入城，拒而逐出，及追戰勢窮而退，情亦可恕。若曰：‘佯退而矢中於背，則是亦不然，雖當戰之時，周旋之間，豈無中背之理乎？死者不可復生，況今當舉事，頗聞孝常武才超衆，得一人亦難矣。”復啓曰：“臣等聞宰相之議，一無獻減死之議，且以武才卓越免

	<p>“사형은 감(減)하고 결장(決杖) 1백 대, 유(流)23211) 3천 리에다 관노(官奴)로 영속(永續)시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하라.”</p> <p>하였다. 대간(臺諫)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p> <p>“대저 인정(人情)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法律)을 더 무겁게 한 연후에야 살기를 잊어버리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가을 무이(撫夷)에서 적(賊)의 침입을 받은 뒤, 성(城)을 지킨 자와 절도사(節度使)가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명하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번에 전효상이 그 일을 목격(目擊)하였으므로 비록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더라도 죄가 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lt;일이&gt;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참으로 사형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 등이 아뢰는 것은 법에 의거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키는데 가벼운 처벌을 군중에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대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전효상이 바야흐로 적이 성에 침입하였을 적에 항거하면서 쫓아내었고, 추격하면서 싸우다가 형세가 궁하게 되자 물러났으니, 정상을 용서할 만하다. 만약 거짓으로 후퇴하다가 화살을 등에 맞았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다. 비록 한창 전투할 때라 하더라도 왔다갔다하는 즈음에 등에 화살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거사(舉事)하는 때를 당하여 전효상의 무재(武才)가 여러 사람 중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 한 사람을 얻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다.”</p> <p>하였다. 다시 아뢰기를,</p> <p>“신 등이 듣건대, 재상(宰相)들이 의논할 때에 한 번도 사형을 감(減)해야 한다는 의논을 올린 것이 없습니다. 또 무재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사형을 감면</p>	<p>死，則臣等以爲不可。凡交戰之時，雖無罪辜，尙且殺之以示衆者，以奮士氣也。豈愛惜一人之才，輕減不容誅之罪乎！且以爲本非要害之地，當時忘備之所致，而情或可恕，則有一言。本非要害，則初不築城以守之，既已守之而使賊陷之，則守城者不得辭其罪也。”不聽。議弘文館劄子。沈澹、尹壕、李克墩議：“今見弘文館所啓，其待夷之道、動衆之勞、構釁之慮則當矣。然以漢高后之事，擬於今日，則(刑) [形] 勢似不相侔，彼則天下甫定，瘡痍之民，不可遽用；今則在我無釁，累朝撫綏之恩至矣。彼反辜恩負德，殺我邊將，擄我人畜，而肆毒之狀，不可勝言，今計小弊，停問罪之舉，則國家威靈，將何時而示遠乎？臣等聞，圖遠慮者，不求近功；成大事者，不較小弊。今所舉，雖空行空返，不見虜面，祇可示威而已，且所獲有無，非所計也。但臣等意謂，兵貴精不務多，若必充二萬衆，則調兵之際，恐或不精，況往返六七日之間，若多羸卒，將帥必不能護還，不拘多少，須擇精卒爲便。”尹弼商議：“今觀弘文館所上劄</p>
--	---	---

(減免)한다면 신 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울려 전투할 때에는 비록 죄가 없다 하더라도 도리어 죽여서 군중에게 보이는 것은 사기(士氣)를 분발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사형에 용납될 수 없는 죄를 가볍게 감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본래 요해처(要害處)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불러 들인 일이므로, 정상을 혹 용서할 만하다고 한다면 할말이 있습니다. 본래 요해처가 아니라면 애초에 성을 쌓아서 그곳을 지키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지키도록 하고서 적(賊)으로 하여금 그곳을 함락되게 하였다면 성을 지킨 사람은 그 죄를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홍문관(弘文館)의 차자(筓子)를 의논하게 하니, 심희(沈澹)·윤호(尹壕)·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지금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 것을 보건대,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과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고달픔과 혼단(鬪端)을 만들 것이라는 염려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고후(漢高后)의 일을 오늘날에 비교하는 것은 형세가 서로 걸맞지 않은 듯합니다. <한(漢)나라의 경우는 천하가 겨우 안정되었으므로 전쟁의 상처를 입은 백성들을 갑자기 쓸 수 없었지만, 지금의 경우 우리에게 혼단이 없었으며 여러 조정에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도리어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변장(邊將)을 죽이며 우리 백성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니, 멋대로 해독을 끼치는 상황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그만한 폐단을 따져서 죄를 신문하는 거사(擧事)를 정지한다면 국가의 위엄[威靈]을 앞으로 어느 때에 멀리 보이겠습니까?

신 등은 듣건대, 먼 앞날을 염려하여 도모하는 자는 가까운 데서 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큰 일을 이룩할 사람은 조그마한 폐단을 계교(計較)하지 않는다 하였습시다. 이번에 거사하는 것이 비록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와 오랑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위엄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언

子, 其於古昔帝王待夷狄之大道當矣。今則不然, 我之受辱於彼莫甚, 舉兵雪恥, 不可廢也。但今旱甚, 今年豐歉, 未可知也, 若或時屈, 則舉亦難矣, 如其稍稔, 不可不舉。” 洪應議: “前日臣之拙議, 上之所悉, 不復多贅, 伏審弘文館筓子, 正合臣議。今之北征, 乃憤於殺擄之多, 以及守將, 凡有贊之者, 莫不欲一舉盡殲焉。臣獨不以爲然, 以二萬衆伐小醜, 若太山之壓卵, 必得所欲, 然顛木由藁, 遺種尚在, 縱得大勝之名, 開無窮之患, 靡不自此而始。且本道軍糧不敷, 二萬之衆往來所食, 幾六萬餘石, 自茲結鬪既深, 攻擊不已, 士疲於從役, 糧盡於有限, 豈獨一道之困斃哉! 以二萬衆, 深入彼境, 不知隘塞險夷, 士馬相蹂, 虜方以犯邊殺將, 懷疑養銳待之, 而驅烏合橫擢其鋒, 欲以耀武, 反以損威, 亦未可知。曩者, 臣之巡邊也, 卞宗仁語臣曰: ‘五鎮兵馬, 足以制此虜’, 若本道兵七千爲少也, 則約定一萬足矣。至於二萬, 非臣之料也。又疑平安之寇, 頃不得利, 當俟時而發, 不朝則夕, 此不可避之賊, 盍舍永安可已之舉, 當竝



은 것이 있고 없는 것은 계산 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군사는 날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많은 것에 힘쓰지 않는다 합니다. 만약 반드시 2만의 무리를 채우려면 군사를 징발하는 즈음에 아마도 더러 날래지 않는 자가 있을 듯합니다. 더구나 갔다가 돌아오는 6, 7일 사이에 만약 허약한 군사가 많으면 장수(將帥)가 틀림없이 통솔하여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니, 많고 적은 것에 구애되지 말고 모름지기 날랜 군사를 뽑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이제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차자(筊子)를 보건대, 그것이 옛날 제왕(帝王)이 이적(夷狄)을 대우한 대도(大道)23212)의 경우에 있어서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받은 치욕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군대를 일으켜 치욕을 씻는 것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뭄이 심하니, 금년의 풍흉[豐歉]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시기가 궁하게 되면 거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풍년이 들 것 같으면 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지난날의 신의 서툰 의견은 성상께서 모두 아시는 것이므로 다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삼가 홍문관의 차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신의 의논과 바로 들어맞습니다. 지금의 북정(北征)은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이거나 사로잡고, 지키는 장수를 죽인 데에 분격할 것이니, 무릇 그것을 찬성하는 자들은 한 번 거사하여 모두 섬멸하려고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2만의 대중으로 소추(小醜)를 정벌하는 것은 태산(太山)이 계란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틀림없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진 나무의 움과 버려진 씨앗은 오히려 남아 있어서 비록 크게 이겼다는 이름은 얻는다 하더라도 끝없는 환란의 단서를 여는 것이 이

力以圖之耶? 兩寇作耗邊患, 何時而止, 凶奴侮慢, 少不介懷, 高祖之大度; 虛內事外, 中原疲敝, 武帝之黷武。臣之計, 但申飭將士, 申嚴隄備, 以待其來, 特停永安之役, 不勝幸甚。” 盧思慎議: “歷代征討戎蠻成敗得失, 備載史冊, 聖上所悉, 不待人言而決然。今茲入征, 時勢有不便者四, 虜無城郭宮廬, 逐水草而居, 遷徙無常, 若聞大軍入攻, 鳥竄鼠伏於山林草莽之間, 不可一一披榛逐捕, 其難一也。彼間險阻迂直, 我全不知, 今舉大軍, 徑入未諳之路, 其難二也。彼若來敵於我, 則我衆彼寡, 斬獲何難, 但彼雖禽獸, 奸計有餘, 當入攻之時, 則竄伏不出, 待大軍回還, 據其隘塞, 或擊其首, 或擊其尾, 首尾不相救, 而爲其勦殺者多, 其難三也。虜既作賊於我, 其心豈能一日忘我哉? 其所以疑我備我者, 無所不至矣, 其難四也。如不得已而往征, 則臣之愚計, 以爲姑緩期日, 使人探之, 則彼之虛實險阻, 我備詳矣; 年年作爲入攻之勢, 則彼必畏愼, 室不安居, 田不得耕, 而疲於奔命矣。如此而久無聲息, 則防備稍弛, 而必還舊

로부터 시작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본도(本道)는 군량(軍糧)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2만의 대중이 오가면서 먹는 것이 거의 6만여 석(石)이며 이로부터 혼단(饑端)을 맺은 것이 이미 깊어져 공격을 그치지 않는다면 군사는 싸움터에 나가는 데 시달리고 양식은 한도(限度) 안에서 다 떨어질 것이니, 어찌 한 도(道)만이 곤궁해지고 피폐해지겠습니까? 2만의 대중으로 저들의 지경에 깊숙이 들어가 막히고 험하고 평탄한 것을 모르게 되면, 군사와 말이 서로 짓밟게 될 것입니다. 또 오랑캐들은 바야흐로 변방에 침범하여 장수를 죽인 것으로 이심을 품고 예기(銳氣)를 길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훈련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는 군사를 몰아다 그들의 예봉(銳鋒)에 뜻하지 않게 걸리게 한다면 무용(武勇)을 드날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위엄을 손상시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신이 변방을 순행(巡行)할 때에 변종인(卞宗仁)이 신에게 말하기를, ‘오진(五鎭)의 병마(兵馬)로도 이 오랑캐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도의 군사 7천 명을 적다고 여긴다면 1만 명으로 약정(約定)해도 충분할 것이니, 2만 명에 이른 것은 신의 요량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의심하건대, 평안도(平安道)의 구적(寇賊)이 지난번에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때를 기다렸다가 발동하는 것이 조석간(朝夕間)에 있을 것이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적(賊)입니다. 어찌 영안도(永安道)의 그만 둘 수 있는 거사를 버리시어 마땅히 힘을 합쳐서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두 곳의 구적이 난을 일으키니, 변방의 근심이 어느 시기에 그치겠습니까? 흉노(凶奴)가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굴어도 조금도 개의[介懷]치 않았던 것은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큰 도량이며, 나라안의 일을 비워 두고 나라밖의 일에 전념하다가 중원(中原)을 피폐하게 한 것은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함부로 전쟁하여 무덕(武德)을 더럽힌 때문입니다. 신의 계책으로는 다만 거둬 장수와 군사를 경계시키고 거둬 방비를 엄하게 해서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특별히 양

居，乘此之時，使勁將領控絃之士數千，輕裝弱賫掩擊不意，如疾雷之不及掩耳。以二三千兵隨其後，則不須徵集下三道之兵，而可以雪邊民之恥矣。”魚世謙議：“弘文館所啓，臣意亦以爲然，軍旅一興，弊固萬端，不如且止之爲愈也。”成健議：“今見弘文館所啓，實是確論，然近日造山之敗，國家受辱不小，問罪之舉，亦不得不爾。但虜之不忘我，猶我之不忘虜，彼雖得利而去，其心豈一日忘我哉！其所以備我者，必無所不至，國家威靈，在茲一舉，所關匪輕，當思萬全。”從弼商議。

【史臣曰：“今北征之舉，爲造山屠城殺將也，而尼麻車兀狄哈居初面，都骨部落在後面，造山人被擄於都骨部落而還，則都骨之居遠甚，勢未可越尼麻車而討也，且都骨、尼麻車假途連兵，未可知也，則亦不宜先討尼麻車也。今舉二萬之衆，深入虎狼之穴，群臣、臺諫，咸以爲不可，而獨弼商輕發可征之議，及舉朝非之，然後欲改慮不得，惜哉！”】

안도의 전역(戰役)을 정지하시면 정말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역대(歷代)에 오랑캐를 정벌한 성패(成敗)와 득실(得失)이 역사책에 갖추어  
 기재되어 있어 성상(聖上)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벌하러 들어가는 것은 형세로 보  
 아 적당하지 못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랑캐들은 성곽(城郭)이나 궁려(宮廬)가 없어 물이나 풀을 따라서 살므로 옮  
 겨 다니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많은 군사가 공벌(攻伐)하러 들어온  
 다는 것을 들으면 산림(山林)과 초망(草莽)23213) 의 틈바구니에 새나 쥐처  
 량 숨어 버릴 것이므로 일일이 덤불을 헤치면서 따라가 잡을 수 없으니, 그  
 어려운 것의 첫째입니다. 저들 사이의 험하고 막히며 굽고 곧은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지금 많은 군사를 일으켜 익숙하지 않은 지름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의 두 번째입니다. 저들이 만약 와서 우리와 대적한다면 우  
 리는 많고 저들은 적은데 참획(斬獲)23214)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다만 저들이 비록 금수(禽獸)와 같다고는 하더라도 간사한 꾀는 남음이 있으  
 니, 들어가서 공격할 때를 당하여서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다가 많은 군사가  
 되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좁은 요새지에 웅거하고 있다가 더러는 앞부분을 공  
 격하고 더러는 끝부분을 공격하면 앞과 끝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여 죽음을  
 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이것이 어려운 것의 세 번째입니다. 오랑캐가 이미  
 우리에게 난을 일으켰으니 그 마음에 어찌 하루라도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  
 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어려운 것으니 네 번째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가서 정벌해야 한다면,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잠시 기  
 일을 늦추고 사람을 시켜서 탐지하게 한다면 저들의 허실(虛實)과 험함에 대  
 하여 우리가 준비를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서

공격할 형세를 지으면 저들이 틀림없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며, 전지(田地)도 경작할 수 없게 되어 명을 쫓아서 분주히 도망하기에 고달플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오랫동안 성식(聲息)이 없으면 방비도 조금 느슨해지고 또 틀림없이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 올 것이니, 이 기회를 틈타 굳센 장수로 하여금 활 잘 쏘는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게 하여 가벼운 무장(武裝)에다 활을 가지고서 불시에 습격하기를 빠른 천둥 소리가 갑자기 나서 미처 귀를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2, 3천 명의 군사로 그 뒤를 따르게 한다면, 모름지기 하삼도(下三道)23215)의 군사를 징집하지 않아도 변방의 백성이 치욕(恥辱)을 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뢰는 신의 생각에도 그러하다고 여깁니다. 군대를 한 번 일으키게 되면 진실로 폐단이 여러가지로 발생하게 되니, 우선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지금 홍문관에서 아뢰는 것을 보니, 실로 명확한 의논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있었던 조산(造山)의 패배는 국가에서 치욕을 당한 것이 작지 아니하니, 죄를 신문하는 거사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랑캐들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오랑캐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저들이 비록 이익을 얻어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어찌 하루라도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비하는 것이 틀림없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엄(威嚴)도 이번 한 차례의 거사에 달려 있으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만전(萬全)의 계책을 생각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의 의논을 따랐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번의 북정(北征)하는 거사는 조산(造山)의 성(城)

	<p>을 도륙하고, 장수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마거 올적합(尼麻車兀狄哈)은 앞 지역[初面]에 살고, 도골(都骨部落) 부락은 뒷 지역[後面]에 있다. 조산 사람이 도골부락 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는데, 도골이 살고 있는 곳은 매우 멀며 형세가 니마거가 사는 곳을 통과하여 토벌할 수는 없다. 또 도골과 니마거가 길을 빌려서 군사를 잇대어 놓은 것도 알 수 없으니, 니마거를 먼저 토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지금 2만의 군사를 일으켜 호랑이와 이리의 혈(穴)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므로 군신(群臣)과 대간(臺諫)이 모두 불가하다고 여겼는데, 윤필상(尹弼商) 혼자 경솔하게 정벌할 수 있다고 발설하였다가 온 조정이 그것을 그르다고 하는 데 이른 뒤에야 생각을 고치려 하였지만, 고칠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 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2일 (정묘) 6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견문(見聞)이 적고 사리에 어두운 자질로 외람되이 큰 기업(基業)을 지키며 늘 조심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상적인 정치에 이르도록 하려고 기약한 것이 20여 년이 되었다. 그러나 덕(德)은 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총명은 사물을 환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된 정사가 많이 생기고, 어긋나는 기운이 도리어 잇달아 일어났다. 그리하여 여름철에 서리가 내리고 보리가 익을 시기에 가뭄이 드니, 매우 걱정스러워 편히 지낼 겨를이 없다. 그래서 수라상의 음식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업무는 없애도록 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을 나무라며 하늘의 견책(譴責)에 응답하려고 한다. 모든 관료[臣僚]들은 나의 뜻을 체득하여 각각 그대들의 자신을 경계하고 서로 그 직분을 닦도록 하라. 그리고 정치에는 말할 만한 것이 있으며 백성에게는 제거해야 할 폐단이 있으니, 보고 듣는 데는 막히고 가려진 근심을 터놓아야 하며 등용하는 데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계책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여 나의 과실을 구제하도록 하라. 또 옥송(獄訟)의 일은 내가 급하게 여기는 바이다. 이제 지역이 이미 넓고 소송[詞訟]이 매우 번거로우니, 신문하고 평의(評議)하</p>	<p>○傳旨議政府曰：“予以寡昧，叨守丕基，恒存惕慮，期臻至治二十有餘年矣。然由德無化人、明不燭物，闕政多作，乖氣旋隨，夏月隕霜，麥秋成旱，憂心忡忡，不遑寧處，減膳羞之供，除不急之務，省咎罪己，以答天譴。凡百臣僚，咸體予懷，各警乃身，交修厥職，政有可言之事，民有可祛之弊，視聽決壅蔽之患，登庸得賢俊之策，悉陳無隱，以救予失。且獄訟一事，予之所急也，今幅員既廣，詞訟甚繁，訊讞之際，豈無冤濫。昔孝女含怨，有三年大旱之異；賤臣叩心，有六月飛霜之變，匹夫匹婦，足致應感。其令中外，科簡刑獄，務要決滯，用伸枉屈，以副</p>

	<p>는 즘음에 어찌 원통하고 지나친 것이 없겠는가? 옛날에 효녀(孝女)가 원한을 품자 3년 동안 큰 가뭄이 든 이번(異變)이 있었고 천신(賤臣)이 가슴을 치자 6월에 서리가 내리는 변고(變故)가 있었으니, 필부필부(匹夫匹婦)도 감응을 이루기에는 충분하다.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형옥(刑獄)의 처단을 간략하게 하고 지체된 것을 결단하는 데 힘써 억울한 것을 풀게 하며 나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予敬天勤民之意。”</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p>	<p>입거 체찰사(入居體察使) 이철견(李鐵堅)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인해서 아뢰기를,  “강계(江界) 지역의 만포(滿浦)와 고산리(高山里) 사이에 안찬 목책(安贊木柵)이 있는데, 겨울철을 당하여 첩입(疊入)할 때면 조방장(助防將)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며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만포와 고산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거기에다 좁아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갑자기 피로(彼虜)들이 충돌하며 노략질하고 사로잡아 간다면 소리쳐 보아도 구원하는 데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두 만포·고산리·강계 등의 진(鎭)에다 각각 가까운 곳으로 첩입(疊入)하게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단진(碧團鎭)의 성(城) 안에는 우물이 많지 않아 얼음이 얼거나 물이 마를 때면 압록강(鴨綠江) 물을 길러다 쓰기 때문에 꼭 성문을 열어 놓고 지키며 보호해야 합니다. 비록 적(賊)의 변고는 없다 하더라도 적로(賊路)가 매우 가까워 늘 적을 마주 대한 것과 같아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 진(鎭)은 요해처를 웅거한 데가 없는데, 만약 적의 변고가 있어 여러 날 동안 포위 한다면 안에는 한잔의 물도 없으며 밖으로는 조그마한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의 동쪽 1리(里)쯤에는 산도 있고 물도 있으니, 농한기[農隙]를 기다려 옮겨서 배치한다면 산을 의지하고 물을 곁에 두게 되어 마땅히 창주(昌洲)와 같을 것입니다.”</p>	<p>○己巳/入居體察使李鐵堅來復命， 仍啓曰：“江界地面滿浦高山里兩間有安贊木柵， 當冬節疊入時， 助防將率軍守護， 與滿浦高山里相距甚遠， 加以狹窄， 容衆不多， 猝有彼虜衝突擄掠， 則未及呼號救援矣。 居民皆言於滿浦高山里、江界等鎭， 各以附近疊入則可矣。 且碧團鎭城內井泉不多， 氷凍[竭] [渴]涸之時， 則汲用鴨綠江水， 故必開門守護， 雖無賊變， 賊路甚邇， 常如臨敵， 其苦甚矣。 又鎭無據險， 若有賊變， 曠日環圍， 則內無一勺之水， 外無蚍蜉之救。 鎭東一里許， 有山有水， 俟農隙移排， 則依山傍水， 當如昌洲矣。” 傳曰：“下兵曹議啓。”</p>

	<p>하니, 전교하기를,  “병조(兵曹)에 내려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4일  (기사) 3번째기사</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강삼(姜參)이 와서 이평(李枰)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랑캐들이 근심거리가 된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북쪽 오랑캐가 우리 나라를 침범하였으니, 진실로 죄를 신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요성(妖星)23220) 이 자주 나타나고 때아닌 서리가 내렸으며, 지금 또 가뭄이 심하여 양맥(兩麥)23221) 을 먹지 못하는데, 먼길에 군사를 뽑는다면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신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사하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남쪽 지방이 지금은 비록 무사하다고 하나 대비하며 방어하는 계책을 해이(解弛)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남쪽 지방의 무신(武臣)과 수령(守令)도 전진(戰陣)으로 나아가도록 한다고 하니, 신은 저으기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북정(北征)은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가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10월이 되기를 기다려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 만약 농사를 이미 마치고 베어서 거둬들이기를 기다린다면 오가면서 군사를 뽑는 즈음에 세월이 지연되어 그 형세가 반드시 세모(歲暮)에 이를 것이니, 불가할 것이 틀림없다. 그대들이 남쪽 지방의 무신(武臣)인 수령(守令)도 제장(諸將)으로 임명한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강삼이 말하기를,  “이제 듣건대, 전라도 수군 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 전임(田霖)을 우후(虞候)로 삼으셨으며, 하도(下道)의 무신도 모두 정벌에 종군하게 하기 때문에</p>	<p>○司諫院獻納姜參來啓李枰事。 不聽。 又啓曰：“戎狄爲患，自古而然，今北戎侵憑我國，固當問罪，然近者妖星屢見，霜隕不時，今又旱甚，兩麥不食，遠路抄軍，其弊不貲，非謂不可問罪，只恐舉非其時也。 南方時雖無事，備禦之謀，不可解弛，今聞南方武臣守令，亦令赴戰，臣竊以謂未便。” 傳曰：“北征在所當舉，時雖如此，但可已乎？ 予將俟十月欲興師，若農事已畢，以待刈(獲) [穫]，則往來抄軍之際，遷延日月，其勢必至於歲暮矣，其不可也必矣。 爾謂南方武臣守令，亦差諸將，未知指誰也。” 參曰：“今聞全羅道水軍節度使田霖差虞候，下道武臣亦皆從征，故啓耳。” 傳曰：“田霖遞期已逼，武臣守令任邊郡者不可赴，內地守令亦令管押其道之軍以赴。”</p>

	<p>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임은 체임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고, 무신인 수령으로 변방의 고을 맡은 자는 &lt;정벌하는 데&gt; 나아가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지(內地)의 수령은 그 도(道)의 군사를 안동하여 나아가록 해야 한다.”  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5일  (경오) 1번째기사</p>	<p>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극균(李克均)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종사관(從事官)이나 서기(書記)로부터 감사(監司)·병사(兵使)에 이르기까지 영안도(永安道)에 드나든 것이 거의 10년이나 되었으며, 피로(彼虜)들과 싸운 적도 네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랑캐들의 실정을 환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은 안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신이 처음 전효상(全孝常)이 &lt;조산(造山)&gt; 성을 함락되게 하고, 나사중(羅嗣宗)이 해(害)를 당하였다는 것을 듣고서는 신이 비록 우둔하고 용렬하지만 가서 적의 머리를 취(取)하여 대궐 아래 바치고 조금이라도 변방 백성들의 치욕(恥辱)을 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랑캐들은 험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다 수목(樹木)이 덩치고 가렸으니, 우리의 많은 사람을 몰아붙인다면 앞과 뒤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것은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울랑합(兀良哈)은 혼인 관계를 맺어 우리 나라의 동정을 모르는 것이 없으며, 저들도 변방을 침범한 이후로 우리 군사가 반드시 이를 줄을 스스로 헤아리고 그들의 처자를 옮기며 재산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만 머물게 하여 경작하거나 거둬들이는 것을 일삼고, 원근(遠近)을 척후(斥候)하면서 장차 편안하게 기운을 둔군(屯軍)을 거느리고 멀리서 오는 피로한 상대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지금 비록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약하는 바는 단지 실려(室廬)23222) 를 태워 버리며 무력을 드날려 위엄을 보일 따름입니다. 다만 염려하건대, 피로(彼虜)들이 힘을 같이하여 서로 호응하고 요해처에서</p>	<p>○庚午/吏曹判書李克均上書曰：  臣自從事書記，至于監司、兵使，出入永安道幾十年，與彼虜戰者又四，縱不能知洞虜情，亦可謂知其梗概矣。臣初聞孝常地陷，嗣宗被害，臣雖鴛劣，尚欲往取賊首，以獻闕下，少雪邊氓之恥，然虜居險阻，加之樹木蒙蔽，則驅吾萬衆，首尾不救，此危道也。且彼與兀良哈連姻，我國動止，無不知之，彼亦自料，犯邊以後，我軍必至，移其妻孥，藏其畜產，但留壯者，以事耕穫，遠近斥候，將欲以逸待勞，則今雖率數萬之衆入征，所期但焚蕩室廬，耀兵示威而已。但慮彼虜，齊力相應，潛伏險阻，衝突軍後，或尾或首，則我軍安能必其萬全乎？假令全勝，不過出於中策，況遠道之兵，用武於數千里之外，臣恐所損必多。世祖亦嘗戒楊汀曰：“勿與兀狄哈構讐。”其長慮却顧至</p>



잠복(潛伏)하였다가 군대의 뒤를 쳐들어와 공격하되 혹은 뒤에서 혹은 앞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군사가 어떻게 만전(萬全)을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완전히 이겨도 보통 계책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먼 도(道)의 군사들이 수천리 밖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신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손상되는 바가 틀림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조(世祖)께서도 일찍이 양정(楊汀)에게 경계하시기를, ‘올적함(兀狄哈)과 혼단(黠端)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니, 멀리 염려하고 돌아보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정해년(23223)에 경상도(慶尙道)의 군사를 강변(江邊)의 여러 진(鎭)에다 나누어 경비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식성이 조[粟]를 먹는데 익숙하지 않아 병들어 눕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많았으니, 감히 적을 방어하기를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신이 만포(滿浦)에 있으면서도 직접 본 것입니다. 지금 비록 2만의 군사라고 일컫지만, 경중(京中)의 군사와 본도(本道)의 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로한 군사로 편안하게 있는 오랑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또한 병가(兵家)에서 가장 꺼리는 것입니다. 군사가 피로와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비록 계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이 잇따르고 화(禍)가 맺히면 어찌 갑자기 설 수 있겠습니까?

서쪽 지역[西界]의 일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島夷)23224) 가 서사(書辭)23225)에 반복해서 〈언급하니〉 신은 그들이 반드시 경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은 국가가 이를 좇아 일이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지금의 이 거사를 어찌 서두르십니까? 만약 어쩔 수 없이 거사하여야 한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들어가서 공벌(攻伐)할 형세를 보이고 명년에 다시 거사할 형상을 보이면, 저들이 방비(防備)하는 데 피곤하여 농사 일에는 힘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여러 해 동안 들어가 공격하는 것을 당하지 않으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저들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혀서 그렇다고 여길 것이니, 그들이 해이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의 군

矣。歲丁亥，以慶尙軍分戍江邊諸鎭，其人性不慣食粟，多病臥不起，敢望禦敵乎？臣在滿浦，亦所親觀。今雖號二萬之衆，京中軍士、本道之兵外，餘不足用也，以勞兵當逸虜，亦兵家之最忌也。勞師糜費，雖所不較，兵連禍結，豈得遽休！西界之事，亦可慮也，而今島夷書辭反復，臣不能料其必無警也。臣恐國家，從此多事矣，今之此舉，又何遽耶？若不得已而舉，則臣意以謂，今年有入攻之勢，明年爲再舉之狀，則彼疲於防備，不能盡力於農，而累年不見入攻，則虜必謂彼我路阻，待其解弛。遣我勁卒，訶其部落，審其險夷，除遠方勞卒，選近道精兵，併本道兵力，則猶可得志。昔吳爲三軍迭出，以肄楚三年而入郢，此計之得者也。其曰：“以近境斡朶里、兀良哈爲之嚮導，而大軍隨行焉。”則其計亦踈矣。假使嚮導而有功，則國家論賞，其能厭其所望乎？不然狼貪羊狠，構怨必矣，是亦又生一敵也。

仍啓曰：“臣素有此意，故拙草以啓，請垂覽而留中。”傳曰：“今見疏，具悉卿意。然此舉非止爲寇造山也，舉

센 군졸을 파견하여 그 부락(部落)을 염탐하고 그곳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자세히 살피게 하며, 먼 지방의 피로한 군졸을 제외하고 가까운 도(道)의 날랜 군사를 뽑아 본도의 병력(兵力)과 합치게 한다면 오히려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오(吳)나라가 3군(軍)을 만들어 번갈아가며 충돌하게 하여 초(楚)나라가 그것에 익숙해진 3년 만에 초나라 서울인 영(郢)에 침입하였으니, 이것이 계책으로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경의 알타리(斡朶里) 올량합(兀良哈)을 향도(嚮導)로 삼고 많은 군사가 따라서 행진한다고 말하는데, 그 계책도 허술한 것입니다. 가령 향도를 삼아서 공(功)이 있으면 국가에서 상(賞)을 논해야 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리같이 탐욕을 부리며, 양(羊)처럼 이르는 말을 듣지 않아 원한을 맺을 것이 틀림없으니, 이것 또한 또하나의 적(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인해서 아뢰기를,  
 “신이 본래 이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서투르게 적어서 아뢰습니다. 청컨대 살펴보시고 궁중에 머물러 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소(疏)를 보고 경(卿)의 뜻을 모두 알았다. 그러나 이번 거사는 단지 조산(造山)을 노략질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많은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서 공격하는데 비록 추장(酋長)이나 군세고 용맹스런 자는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자[妻孥]를 사로잡고 실려(室廬)를 태워 버리고 온다면 저 구적(寇賊)들이 뒷날 와서 공격하고 싶어도 반드시 두려워하여 가볍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남쪽 지방에는 아무런 혼란이나 사고도 없는데, 어찌 미리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이 거사를 정지할 수 있겠는가? 3군(軍)을 번갈아 가며 출동시켜 오(吳)나라가 초(楚)나라를 공격한 것처럼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으며, 지금 형세도 오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다. 큰 일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반드시 모두 다 들

大衆入攻，縱不得酋長強勇者，擄妻孥焚室廬而來，則彼寇後欲來攻，必畏懼不得輕動。南方時無釁故，豈可預爲有事而停此舉乎？三軍迭出如吳攻楚，則亦不然，今之形勢，異於吳、楚相攻也。大事之興，言之者甚多，必盡聽之，則大事不成，且輕言兵法之罪，載在古典，卿必知之。雖曰留中，豈可不示於外乎？”

下疏政院，使之傳書而後還入。復啓曰：“臣素知兀良哈、兀狄哈其性強悍，樂於戰鬥，不計生死，采入陣中，且常時屯聚，不下三、四百人，以三、四百可以當我國萬兵。我國之兵不然，昇平日久，徒知畏敵，不畏將帥，夫戰者當出其不意，疾如飄風，則可以得利，而我國之人，其性怯懦，難進輕退，況二萬之衆，連絡行軍，則徧布於二舍，入戰之時，彼虜竄伏於草莽，及班師之時，以二、三百驍勇者，邀擊其中，則首尾遠不能救，不然，以我之衆，橫行天下不難矣。且我不知虜地險阻，赴戰時則必以斡朶里二、三百爲先鋒而進，幸得功而還，將何以賞之？唐肅宗於回紇，亦如此，其終難處，古昔帝王，皆置之度外也。”

傳

어준다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병법(兵法)을 경솔하게 말하는 죄는 고전(古典)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은 틀림없이 알 것이다. 그리고 비록 궁중에 머물러 두라고 하지만, 어찌 외부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소(疏)를 정원(政院)에 내리면서 글을 전하게 하였는데, 뒤에 도로 들어와서 다시 아뢰기를,

“신이 평소에 울적합(兀狄哈)과 울량합(兀良哈)을 알고 있는데, 성질이 굳세고 사나워 싸움하기를 즐겨하며 죽고 사는 것을 따지지 않고 진중(陣中)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곳에 모여 사는데, 3, 4백 명에 밀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3, 4백명으로도 우리 나라의 1만 군사를 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군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태평스러운 시절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적(敵)을 두려워 할 줄만 알고 장수(將帥)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저 전쟁이란 것은 마땅히 뜻하지 않게 나아가 회오리바람처럼 빠르게 하면 실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사람은 성품이 겁이 많고 나약하여 진격하기를 어렵게 하고 후퇴하기를 가볍게 합니다. 더구나 2만의 군사가 연이어서 행군(行軍)한다면 두루 2사(舍)23226)에 펼쳐질 것이니, 들어가서 싸울 때 피로(彼虜)들이 풀숲에 앞드려 숨어 있다가 군사를 되돌릴 때에 이르러 2, 3백 명의 날래고 용맹스러운 자로 그 중간에서 맞아 공격한다면 앞뒤가 멀어서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얹으면 우리의 많은 군사로 천하(天下)에 횡행(橫行)23227) 하여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랑캐 지역의 험하고 막힌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이면 반드시 알타리(斡朶里) 2, 3백 명으로 선봉(先鋒)을 삼아 진격할 것인데, 다행하게 공(功)을 이루고 돌아온다면 장차 무엇으로 그들에게 상(賞)을 주겠습니까? 당(唐)나라 숙종(肅宗)이 회홀(回紇)23228) 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가 마침내는 처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제왕(帝王)들이 모두 내버려 두고 도외시(度外視)한 것입니다.”

曰：“曩爾小醜，屢犯我境，今若置而不問，雖城底之虜，必以我爲怯懦。我兵畏敵而不畏將然矣，但在元帥處置如何耳。在我土，則雖犯令不可輕殺，若臨敵，則當從軍法，誰不畏元帥乎？以險阻爲難，則不然。今雖不得志，後日入攻，則已知道路迂直，其勢甚易也。若曰帝王棄之不治，則不如是也，非欲其奪土地也，彼侵我而我攻之，異於武帝之窮兵黷武也。且以爲論賞斡朶里甚難則是矣。然豈可一一盡計而爲之？以堂堂之國，屢屈小醜，此兵不可不舉。”

	<p>하니, 전교하기를,  “조그마한 오랑캐가 자주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데, 지금 만약 내버려 두고 신문하지 않는다면 비록 성 밑에 사는 오랑캐들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우리가 겁이 많고 나약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적(敵)은 두려워하면서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니, 다만 원수(元帥)가 대처하고 조치하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우리 지역에 있을 때면 비록 법령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가볍게 죽일 수 없지만, 만약 적과 마주 보고 있다면 당연히 군법을 따라야 하는데, 누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힘준한 것을 어렵게 여기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비록 품은 뜻을 펴지 못한다 하더라도 뒷날 들어가서 공격한다면 이미 도로의 굽고 곧은 것을 알므로 그 형세가 매우 쉬울 것이다. 만약 제왕(帝王)들이 〈오랑캐들을〉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의 토지(土地)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우리를 침범하기에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니,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무력을 남용(濫用)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알타리(幹朶里)의 상(賞)을 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옳다. 그러나 어찌 낱알이 모두 계산하여 할 수 있겠는가?堂堂(堂堂)한 국가로서 조그마한 추적(醜賊)들에게 굴욕(屈辱)을 당하였으니,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p> <p>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5일  (경오) 3번째기사</p>	<p>김경조(金敬祖)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듣건대, 천지(天地) 사이에는 반드시 그러한 도리도 있으며,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도 있는데, 도리는 진실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운수는 성인(聖人)이 구애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의 성군(聖君)이나 현군(賢君)은 반드시 그러한 도리나 혹 그럴 수도 있는 운수를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변(異變)을 만나면 틀림없이 먼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책</p>	<p>○金敬祖等上疏曰：  臣等聞天地之間，有必然之理，有或然之數，理固人之所守，數非聖人之所泥。古之聖賢之君，不恃必然之理、或然之數，而少遇變異，必先引咎責躬，敬天勤民，禱桑林而出罪己之言，</p>

망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여 상림(桑林)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내며(23229), 운한시(雲漢詩)를 읊으며 하늘에 이르는 정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23230) 당시에 비록 가뭄의 재변(災變)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었으니, 이 어찌 자기 한 사람이 덕(德)을 닦을 뿐이겠습니까? 하늘에 감응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삼가 전하(殿下)께서 허물을 반성하고 자신을 책망하시는 취지를 보건대, 비록 성탕(成湯)의 육책(六責)이나 주선(周宣)23231)의 측신(側身)23232)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성지(聖旨)에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며, 동방(東方) 천만세(千萬歲)토록 태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민영견(閔永肩)의 오늘날 마음은 비록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훈유(薰蕕)23233)는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으며, 어진 사람과 간사한 사람은 같은 세대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진출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간사한 사람들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지금 조정에 과연 모두 어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반열(班列)에 배치되어 있고 간사한 무리들은 모두 제거된 것입니까? 정병(政柄)23234)을 제멋대로 다루면서 상관(上官)에게 의지하고 아첨하는 자가 추관(秋官)23235)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먹고 있으며,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여 행동이 장사치와 같은 자가 무고(武庫)를 감독 관리하며, 용렬하고 완악하며 무식한 자가 갑자기 당상관(堂上官)에 승진하여 큰 진(鎭)의 책임자가 되며, 잔달고 변변치 못한 자가 성랑(星郎)23236)의 지위에 갖추어 있으며, 편녕(便佞)23237)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이며 여러 가지 추잡한 언행을 구비한 자가 외람되게 육경(六卿)의 다음 지위에 있습니다. 이평(李枰)과 같이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르러서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도 전하께서는 여러

賦雲漢而昭格天之誠。故當時雖不能無旱暵之變，亦能弭旱暵之災，是豈修一己之德而已，應天以實，不以文而然爾。臣等伏觀，殿下省咎罪己之旨，雖成湯之六責、周宣之側身，何以加此。聖旨有曰：“登庸得賢俊之策。”此聖旨中第一義也。其東方千萬歲享太平之福，正在於此，伏願殿下，永肩今日之心。雖然，薰蕕不同器，賢邪不竝世，故進賢能，必先去其儉邪。今朝廷之上，果皆賢能布列，而儉邪之徒盡去耶！操弄政柄，依阿上官者；尸素於秋官，放手爲非，行同商賈者；提管於武庫，庸頑無識者；驟陞堂上爲巨鎮之長，瑣瑣斗筲者；備星郎之位，便佞巧詐，備諸衆醜者，濫居六卿之貳，至如李枰之貪黷無恥，國人之所共知，殿下排群議，特授銓曹之官，臣等伏閣請罷幾閱月，殿下回拒不納，用人之失，當無大於此，安知天之譴咎，不在於斯也！殿下雖欲登庸得賢俊之策，不去此數人，則殿下修省之旨，徒爲文具而無其實，終不能答譴告之威也明矣。臣等伏思之，天之示警於殿下，亦已久矣。去年震人闕庭，星又示變，今夏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전조(銓曹)의 벼슬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복합(伏閣)23238) 하여 파직(罷職)을 청한 것이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굳이 물리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어 사람을 기용하는 실수가 마땅히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하늘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아무리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몇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전하께서 반성하고 수양하는 뜻이 한갓 형식뿐이고 실상이 없어 마침내는 견책을 알리는 위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하늘이 전하에게 경계를 보인 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해에는 벼락이 궤정(闕庭)에서 사람에게 떨어졌고 별이 변고를 보였으며, 금년 여름에는 때아닌 서리가 내렸고 가뭄이 재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이달 20일에는 연풍(延豐) 등지에 우박(雨雹)이 내려 곡식을 손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이치와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로 우연히 이런 재앙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신 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천심(天心)은 인애(仁愛)하고 인군(人君)은 성실한 명(命)으로 그 덕(德)을 바로 잡는다고 여기십니까? 신 등은 전하께서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하여 하늘의 견책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인주(人主)가 행동하는 바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位)를 천위(天位)라 하고, 녹(祿)을 천록(天祿)이라고 하는데, 그 함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든 하늘이 명한 바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인사(人事)가 잘못되는 것을 따라 하늘의 변고가 자주 감응되니,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상홍양(桑弘羊)23239) 을 삶아 죽이지 않자 천한(天漢)23240) 의 즘음에 크게 가물었으며, 홍(弘)·패(霸)23241) 를 죽이지 않자 성도(成都) 중에 오래도록 가물었으며, 이덕유(李德裕)23242) 가 정승에 임명되자 곧 비가 내렸으며, 장상영(張商英)이 정승이 되자 큰 비가 내렸으니23243) , 그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한

霜降失節，旱熯爲災，又聞月二十日，雨雹延豐等處，傷我稼穡。臣等未知，殿下以爲必然之理、或然之數，而偶有是災耶？臣等未知，殿下以爲天心仁愛人君，以孚命正厥德耶？臣等以爲，殿下一、二用人之失，可以召天譴也。蓋人主所行，動以天爾，位曰天位、祿曰天祿，其所與共治者，何莫非天之所命！故隨人事之過忒，天變屢應而不差。弘羊未烹，天漢之間大旱；弘霸未死成都之中久旱。李德裕拜相而卽雨；張商英爲相而大雨，其可謂一、二用人之失，不關於天乎？殿下亟去非人，用答天戒，則今雖不能免旱乾之變，而可能弭旱乾之災耳。傳曰：“示領敦寧以上與政府。”

	<p>것이 하늘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빨리 그릇된 사람을 제거하시어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신다면 지금 비록 가뭄의 변고를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뭄의 재해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5일 (경오) 6번째기사</p>	<p>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이 충청도 충주(忠州)의 가흥창(可興倉)과 강원도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原倉)과 춘천(春川)이 소양강창(昭陽江倉)은 모두 하삼도(下三道) 군사가 입정(入征)하면서 경유(經由)하는 길이니, 세 곳 창고의 전세(田稅)인 미두(米豆)를 아직 조운(漕運)하지 말고 군수(軍需)에 보충하도록 아뢰자, 그대로 따랐다.</p>	<p>○都元帥許琮啓: “忠淸道忠州可興倉、江原道原州興原倉、春川昭陽江倉, 皆是下三道軍士入征經由之路, 三倉田稅米豆, 姑勿漕運, 以補軍需。” 從之。</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6일 (신미) 3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극검(金克儉)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군대란 것은 덕(德)을 밝히고 해(害)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사가 외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복(福)은 내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행히 한 번 승리한다면 오랜 분(忿)을 쾌하게는 할 것이나,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고 재정이 고갈되게 하며 원망을 돋우고 화(禍)를 초래하게 하여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생업을 잃어버리게 하며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덕을 밝히고 해를 제거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 거사가 외부에서 적합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p> <p>한(漢)나라 문제(文帝) 14년에 흉노(凶奴) 14만 기(騎)가 조나(朝那)23251)의 소관(蕭關)에 침입하여 북지 도위(北地都尉) 양(昫)을 죽이고 인민과 가축을 사로잡아 간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팽양(彭陽)에 이르러 회중(回中)23252)의 궁(宮)에 침입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장무(張武)·위속(魏遯)·동적(董赤) 등을 장수로 삼아 변방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흉노가 상군(上郡)과 운중(雲中)에 크게 침입하여 죽이거나 노략질한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또 주아부(周亞夫) 등 세 장군(將軍)을 배치하여 세</p>	<p>○弘文館副提學金克儉等上疏曰: 兵者, 所以明德除害也, 舉得於外, 則福生於內, 若然則僥倖一勝以快宿忿, 勞民竭財, 挑怨速禍, 使邊氓將至於失所, 危其社稷者, 不可謂明德除害也, 不可謂舉得於外也。 漢文帝十四年, 凶奴十四萬騎, 入朝那蕭關, 殺北地都尉昫, 虜人民畜產甚多, 遂至彭陽入燒回中宮。 於是張武、魏遯、董赤等爲將, 逐出塞外。 後四年, 凶奴大入上郡雲中, 所殺掠甚衆, 又置周亞夫等三將軍, 屯細柳、棘門、霸上, 以備之。 當此時, 將不乏人, 武夫健卒, 亦習騎射, 米粟非不多也, 兵革非不堅利也, 擐旗摩壘, 執訊獲醜, 可以雪平</p>

류(細柳)·극문(棘門)·패상(霸上)에 주둔시켜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장수는 부족하지 않았고, 무부(武夫)와 건장한 병졸들도 말타고 활쏘는 것을 익혔으며, 곡식이 적지도 않았으며, 무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니, 적을 무찌르고 기(旗)를 빼앗으며 적의 성루[壘]를 허물어뜨리며, 추적(醜賊)을 잡아다 평성(平城)의 치욕을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견디고 참으며 그들과 계교하지 않은 것은 이적(夷狄)은 금수(禽獸)와 같다고 하여 버려두고 눈여겨보지 않으며, 우리 군사로 하여금 틈을 타서 침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조산(造山)에 노략질당한 것은 한(漢)나라가 당한 것보다 많지 않으며, 나사종(羅嗣宗)이 죽은 것도 양(邛)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야인(野人)의 근심도 흉노에 미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거기다 지모(智謀)있는 신하와 용맹스런 장수가 조후(條侯)23253) 만 못하며 재정의 풍부함이 한(漢)나라의 쌓인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것은 전하의 영명(英明)함과 신무(神武)23254)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몇가지 일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賊)을 멀리 몰아서 깊이 들어가려면 6월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을 늦출 수 없을 터인데, 고달픈 백성들에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여 구휼할 겨를이 없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한(漢)나라 문제(文帝)처럼 강토[疆場]를 견고하게 지킬 뿐입니다. 남쪽 지방과 삭방(朔方)과의 거리는 대단히 멀므로 1만 3천 명의 병력이 열흘 만에 이르지 못하여, 등립(箚笠)23255) 이 서로 바라보고, 〈짐을〉 가득 싣고 행진하기 때문에 군사 중에 뛰어난 자도 피로해지고 말 중에 뛰어난 것도 피곤해집니다. 또 그 성격이 틀리는 것이 양월(楊粵)23256) 이 호락(胡貉)23257) 에 대한 것과 같아 더위는 견디면서 춥기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갑옷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거나 병기를 빼들기도 하고 쫓기도 하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험난한 길을 지나 절뚝거리며 행진을 마치려 할 것이니, 추위도 옷을 입을 겨를이 없으며 피로하여도 쉴 겨를이 없

城之恥。然皆隱忍不與之較者，誠以夷狄禽獸，當置諸度外，而使吾無間可入也。今造山見虜，不多於漢；羅嗣宗之死，無甚於邛；野人之患，不及匈奴。加以謀臣猛將，不如條侯；紅腐貫朽，不如漢畜，但所恃者，殿下英明神武耳。然於此數者，有所間焉。且賊長驅深入，則六月之師，不可緩也，積尾尸饗，顧不暇恤，不然則當如漢文，固守疆場而已。南方拒朔方最遠，有兵萬三千，非旬日所至，簞笠相望，輶載而行，士之逸者以勞，馬之駿者以疲。且其性不同，猶楊粵之於胡貉，耐暑不能耐寒。至於被甲帶劔，挺鉞搃鋒，冒霜雪越險隘，踣躄畢行，寒不暇衣，勞不暇息，人馬俱僨，雖良將智士，必不能救。殿下於己酉冬狩，次于漣川；庚戌秋幸驪州，次于龍仁，一遇驟雨，斃馬傷卒，宸鑑所悉。其在平時，尙或如此，況提二萬之衆，越千里之險，以與賊爭死生乎！國家於丁亥歲，征建州；己亥歲又征建州，其猖然欲報之志，愈久愈深。去年冬，邊將又殺其獵者，賈禍益釁，今年春入寇，反喪其有，彼豈有忘我之日乎？第以江



어 사람과 말이 함께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훌륭한 장수나 지모(智謀)가 있는 인사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기유년(23258) 겨울 사냥 때는 연천(漣川)에서 유숙하셨고, 경술년(23259) 가을에는 여주(驪州)에 행차하셔서 용인(龍仁)에서 유숙하셨는데, 한번 소나기를 만나자 말이 죽고 병졸들이 상(傷)하였으니, 신감(宸鑑)(23260)으로 모두 아시는 바입니다. 평상시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2만 대군을 거느리고 멀고 험한 길을 넘어 적(賊)과 사생(死生)을 다투는 것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정해년(23261)에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하였고, 기해년(23262)에 또 건주위를 정벌하였으니,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보복하려고 하는 뜻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변장(邊將)이 또 그들이 사냥하는 것을 죽여 화(禍)를 만들고 더욱 틈이 생기게 하였으며, 금년 봄에는 노략질하러 침입하였다가 도리어 그들이 가진 것조차 잃어버렸으니, 저들이 어찌 우리를 잇을 날이 있겠습니까? 다만 강(江)의 얼음이 이미 풀렸고, <저들이> 생각하기에 그 힘이 부족하다고 여겨 얼음이 얼고 말이 살찌기를 기다린 다음에, 편리한 때를 엿보아 마구잡이로 해독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도에서 적을 방비하는 것을 힘써 서두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굳센 병졸과 예리한 무기를 모두 영안도(永安道)로 보내게 하니, 만약 기회를 틈타 몰래 발동하기를 별똥이나 번개처럼 빠르게 몰아붙이는 것과 같이 한다면 곧 세력이 분산되고 힘이 약화될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신(莊辛)(23263)이 말하기를, ‘토끼를 보고 사냥개를 돌아보아도 늦지 않으며, 양(羊)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잃어버릴 것을 근심하면서도 우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고기를 생각하면서도 사냥개를 돌보지 않는 것은 결단코 훌륭한 계책이 아닙니다.

氷已釋，顧其力不足耳，俟冬初，氷合馬肥，伺便肆毒，不待智者而知。然則平安備賊，當務之急，今以勁卒利兵，盡付諸永安，脫有乘機竊發，星奔電驅，則勢分力弱，其何能禦？莊辛有言：“見兔顧犬，未爲晚也；亡羊固牢，未爲遲也。”然則患其亡，而不固其牢；思其肉，而不顧其犬，決非善計。伏願殿下，勿舉北征，以西鄙爲念，庶不失顧犬固牢之策也。京師乃四方之根本，當居重馭輕，今出兵萬有三千，又選諸將百有五十、軍官二百以從之，是空國而行也。南方隣於島夷呼吸之間，有風有雷，比年以來，全羅人物，屢被殺掠，今又以止數萬之寇爲辭，請增船隻，彼之情僞，亦未可知也。永安士馬，素號強悍，其七千足以制賊，何至於弱侍衛、撤南戍，以病其根本乎？根本一搖，國隨以殆，恐非萬全之舉也。永安一道，屢因師旅，邊庾內積，不甚豐裕，計今二萬之兵，輜重僉從，無慮六萬一千五十有餘，若供入征七日，則費萬有一千四百十二斛，若供徵集往來，則不下十萬，此十萬之粟，可備十年水旱也。爭恨小故，困鹿俱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북정(北征)을 거사하지 마시고 서쪽의 변방을 염려하시면 사냥개를 돌보고 우리를 튼튼히 하는 계책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바로 사방의 근본이므로 정중함을 유지하면서 가벼운 것을 제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보내려는 군사가 1만 3천이며 또 제장(諸將) 1백 50명과 군관(軍官) 2백 명을 선발하여 종군(從軍)하게 한다고 하니, 이는 나라를 텅비워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은 섬 오랑캐와 이웃하고 있어 순식간이면 바람이나 우레처럼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근년에 와서는 전라도(全羅道)에서 여러 차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물건을 노략질당하였으며, 이제 또 수만의 구적(寇賊)이 머물고 있다고 말하면서 선척(船隻)을 늘리어 달라고 청하니, 저들의 실정과 허위도 알 수 없습니다. 영안도의 군사와 말은 본래 군세고 사납다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곳의 7천명 군사이면 적을 제어하기에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시위(侍衛)를 약화시키고 남쪽을 지키는 군사를 철수시켜 근본을 병들게 하는데 이르도록 하십니까? 근본이 한 번 흔들리게 되면 국가가 따라서 위태롭게 되는 것이니, 아마도 만전(萬全)의 거사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영안도(永安道) 한 도(道)는 사려(師旅)23264 때문에 변방 창고의 쌓인 내용물이 매우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2만의 군사에다 짐을 나르고 시중드는 사람을 계산하면 무려 6만 1천 50여 명이니, 만약 들어가서 정벌하는 7일 동안 제공하려면 1만 1천 4백 20곡(斛)23265 을 소비하여야 하고, 만약 징집하여 오는 데 제공하려면 10만 곡에 밀돌지 않을 것이니, 이 10만의 곡식은 10년 동안의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고를 한스럽게 여겨 다투다가 곳간을 모두 고갈되도록 하여 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명맥(命脈)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른 것이겠습니까? 만약 불행하게도 몇년 동안 수재나 한재가 든다면 만백성이 근심하면서 떠들 것이니 국가에서 어떻게 진휼(賑恤)하겠으며, 전쟁이 잇따르고

竭, 使邊民失其命脈, 得乎失乎? 脫有不幸, 有數年水旱之災, 萬姓嗷然, 國何以賑之? 兵連禍結, 有十年數萬之師, 國胡以餽之? 古人有言: “千鈞之機, 不爲鼷發; 明月之珠, 不爲雀彈。” 者爲其所失者多, 所得者少, 況失多之中, 復有他虞哉! 今之議者皆曰: “揚國靈、雪國恥, 雖不見虜而還, 不爲無益。” 臣等獨以爲, 野人犯邊得利, 畏其見討, 空其廬以寄於野, 設其險以阨其路, 約與其類, 應機齊發, 其備我, 猶我之備彼。 且與城底向化, 迭爲耳目, 聲勢相依, 以伺吾間, 如曰向化者, 不與彼通, 臣等竊惑焉。 造山視諸鎮最內, 野人所以越諸鎮以陷之, 必有其由, 以虛實告賊者, 非此人耶? 聽其言以潛師者, 非此賊耶? 及城陷將戮, 自知其罪, 避之者非此人耶? 在今日言當興師問罪者, 又非此人耶? 以其言啓請北征者許琮也。 然則信彼賊之耳目, 以爲我耳目, 終始不悟, 陷於術中, 此一不可也。 入征士卒, 以疲禦悍、以勞擊逸, 如遇險阻, 銜尾相隨, 及與之戰, 又累輜重, 賊若要遮前後, 危殆不測, 此二不可也。 幸而得

재앙이 맺히어 10년 동안 수만의 군사가 있어야 한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천균(千鈞)이나 되는 틀은 새앙쥐 때문에 발사하지 않고, 밤에도 빛이 나는 구슬을 참새 때문에 던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잃는 것이 많은 가운데 다시 다른 걱정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국가의 위엄을 드날리고 국가의 치욕을 씻으면 비록 오랑캐들을 보지 않고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신 등은 혼자 생각하기에 야인(野人)들이 변방을 침범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집을 비워 두고 들판에서 머무르며, 험한 요새를 마련하고 길을 막으면서 같은 무리들과 약속하여 기회가 오면 한꺼번에 발동할 것이니, 그들이 우리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저들을 대비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성(城) 밑의 향화인(向化人)23266) 들과 서로 이목(耳目)의 역할을 하여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고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으니, 만일 ‘향화한 사람은 저들과 내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신 등은 저속이 의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산은 여러 진(鎭)에 비교하여 본다면 가장 내지(內地)에 있는데, 야인들이 여러 진을 넘어와서 함락시킨 것은 틀림없이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허실(虛實)을 적(賊)에게 알려 준 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몰래 군사를 동원한 자들은 이 적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이 함락되고 장수가 살륙된 데 미쳐서 스스로 그 죄를 알고 피해버린 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날 군사를 일으켜 죄를 신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자도 또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로 북정(北征)하기를 계청(啓請)한 사람은 허종(許琮)입니다. 그렇다면 저 적들의 이목 구실을 하는 자들을 믿어 우리의 이목으로 삼으면서 처음

勝, 構怨亦深, 必將桀驚以報我、剽略以病我, 今年如是, 又明年亦如是, 我必竭垂盡之粟、驅重困之民, 以戍之、以逐之, 使朔方繹騷, 此三不可也。有此三不可, 而曰揚國靈、雪國恥, 其可乎哉? 自去冬至今春, 太白晝見經天, 彗星歷天津、虛、危, 犯天倉大星, 又有星出天市, 又有星出天倉。冬十二月, 雷電震人, 熒惑再守軒轅, 春二月月食歲星。今熒惑歷長垣守靈臺, 正月繁霜, 旱燥已甚。臣等切以爲, 殿下方敦化理, 以致太平, 中外晏然, 殊無闕失, 天譴沓臻, 似不可信。及將舉忿兵、勞百姓, 竭倉庾、開邊釁, 而後乃知天之示人, 果不爽也。當呂后時, 冒頓(寢) [寢] 驕, 樊噲願將十萬衆, 橫行匈奴中, 季布言: “噲可斬也。凶奴圍高帝, 噲將三十萬, 不能解其圍, 今搖動天下, 以十萬橫行, 是面謾也。”今許琮身任方面, 兼治闕外, 殿下以去冬遼東所報聲息, 特下諭書, 申勅邊圉, 曾不之察, 使賊屠城殺將, 爲國家羞龜玉之毀, 當任其責之不暇, 在本道則請北征, 及召對則易言之, 既不能銷患於前, 乃欲收功於

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술중(術中)에 빠져 들어가니, 이것이 첫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정벌하러 들어가는 사졸(士卒)들은 피로한 상태에서 사나운 것을 막아야 하며, 고달픈 입장에서 편안한 군사를 공격해야 하는데, 만일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되면 기마(騎馬)가 나란히 가지 못하고 종렬(縱列)로 바짝 붙어 가야 할 것이며, 그들과 교전(交戰)하는 데 미처서도 짐이 많으니, 적이 만약 앞뒤의 중간 부분을 차단한다면 위태로움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승리를 거두어도 원한을 또한 깊이 맺을 것이니 틀림없이 사나운 무리를 거느리고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며, 위협하고 노략질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니, 금년에 이와 같이 하고 명년에도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의 없어져 가는 곡식을 고갈시킬 것이며, 거둬 고달픈 백성들을 몰아다 그들을 경비하고 쫓아버리게 한다면 삭방(朔方)을 오랫동안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불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불가한 것이 있는데도 국가의 위엄을 드날리며 국가의 치욕을 씻어 버린다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지난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경천(經天)하였고, 혜성(彗星)이 천진성(天津星)의 궤도를 지나갔으며, 허수(虛宿)와 위수(危宿)가 천창 대성(天倉大星)을 범(犯)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별이 천시원(天市垣)의 궤도에서 나온 것이 있었고, 또 천창성(天倉星)의 궤도에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인 12월에 번개와 천둥에다 벼락이 사람을 쳤으며, 형혹성(熒惑星)이 두 번이나 현원성(軒轅星)의 궤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철인 2월에는 달이 세성(歲星)을 가렸으며, 지금은 형혹성이 장원성(長垣星) 궤도를 지나 영대(靈臺)의 위치에 있습니다. 1월에는 서리가 많이 내렸으며, 가뭄도 이미 심합니다. 신 등은 간절히 전하께서 교화하며 다스리시기를 바야흐로 돈독하게 하여 태평을 이루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중앙이나 지방에서는 편안하게 특별히 빠뜨려지거나 실수한 것이 없는데 하늘의 견책(譴責)이 몰려 이르니, 믿

後，以搖動國家，是不幾於噲之面謾乎？伏願殿下，側身修德，以答天譴；守靜養威，以備邊徼。

御書曰：“觀疏中之意具焉。予豈不知漢武之窮兵、秦皇之擊胡，功未立而天下罷敝耶？且其起兵，非所以衛邊地而救民死，乃欲以務戰勝而拓疆場也。故士卒愁苦，天下虛耗，今茲永安之役，不然，覆軍殺將，甚為國家之恥，而國家恬然自靜，若不以為意，而不揚威武於強虜，則彼醜虜安知我之畜之禽獸，不比為人而置之於度外耶？非惟虧損國體，適足以益寇之心，而且今若畏結怨深讎，不加程督如虞夏、殷周，則邊氓絕望於降敵，安枕於何日乎？夷狄無義，所從來雖久，時勢有異，在今日寧已，此元帥之請討，大相之與可，予之所從者也。且興師有名，天必不惡，大言乾象，亦近膠固，不允。”仍傳曰：“予之所欲言者多矣，此則示其大概而已。”

을 수 없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분병(忿兵)을 일으켜 백성을 고달프게 하고 창고를 고갈되게 하며 변방의 혼란(釁端)을 열게 하는 데 이른 뒤에야 하늘에서 사람에게 보인 것이 과연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후(呂后)23267) 가 〈임조(臨朝)23268) 할〉 때를 당하여 목탁[冒頓]23269) 이 점점 교만하게 굴자, 번쾌(樊噲)가 ‘원하건대,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흉노 가운데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습니다.’고 하였는데, 계포(季布)가 ‘번쾌를 참형(斬刑)하는 것이 가합니다. 앞서 흉노가 고제(高帝)를 평성(平城)에서 포위하였을 적에 번쾌가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30만 군사를 거느리고도 그 포위를 풀 수 없었는데, 지금 천하를 뒤흔들려 하면서 10만의 군사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는 것은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허종(許琮)이 몸소 방면(方面)의 임무를 맡았고 겸하여 곤외(關外)23270) 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지난 겨울에 요동(遼東)에서 보고한 성식(聲息)에 대하여 특별히 유서(諭書)를 내려 거듭 변방[邊圉]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살피지 않아 적(賊)으로 하여금 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하여 국가의 수치가 되도록 하였으며 귀옥(龜玉)23271) 이 파괴되도록 〈방치하였으니,〉 당연히 그 책임을 지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데, 본도(本道)에 있으면서는 북정(北征)을 주청하였고 소명(召命)을 받고 입대(入對)함에 이르러서는 경솔하게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근심을 없앨 수도 없었으면서 뒤에 공(功)을 거두려고 하여 국가를 뒤흔드니, 이것이 번쾌가 면전(面前)에서 거짓 말한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두려워하고 삼가시면서 덕(德)을 닦아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시고 안정을 지키면서 위엄을 길러 변방[邊徼]을 방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어서(御書)하기를,  
 “상소 중의 뜻을 살펴보니, 모두 갖추어졌다. 내가 어찌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병력을 남용하고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가 오랑캐를 공격하였지만

	<p>공을 세우지 못하여 천하가 지치고 쇠약해진 것을 모르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변경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전쟁에 이기기를 힘쓰고 강토를 개척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졸(士卒)들이 걱정하고 괴로와하였고, 천하의 〈재물이〉 헛되이 소모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영안도(永安道) 역사(役事)는 그렇지 않다. 군대가 패배하고 장수가 살해되어 심히 나라의 치욕이 되는데도 나라에서 편안히 여겨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고서 무력의 위엄을 억센 오랑캐에게 드날리지 않을 것 같으면, 저 추악한 오랑캐들이 우리가 그들을 금수(禽獸)처럼 기르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도외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비단 국가의 체모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략질하려는 마음을 더 보태기에 꼭 충분하다. 또 지금 만약 원한을 맺고 깊은 원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독(程督)23272) 을 더하지 않는 것을 우(虞)·하(夏)·은(殷)·주(周)처럼 한다면, 변방의 백성들이 적(敵)에게 항복한 데 절망할 것이니, 어느 시기에야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는가? 이적(夷狄)이 의리가 없는 것은 그 유래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시기와 형세에는 다름이 있으니, 오늘날에 어찌 그만두겠는가? 이것은 원수(元帥)가 토벌하기를 청하고 대상(大相)이 가하다고 찬성하였으므로 내가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데 명분이 있으니 하늘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천체(天體)의 현상을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융통성이 없는 데 가까우므로 윤희하지 않는다.”</p> <p>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것은 그 대략을 표시했을 뿐이다.”  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7일</p>	<p>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성준(成俊)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하유(下諭)를 받고 순찰하면서 온성(穩城)에 이르러 믿을 만한 피인(彼人)에게 탐문(探問)하니, 유원진(柔遠鎭) 근처에 살고 있는 올량합(兀良哈) 호</p>	<p>○壬申/永安北道節度使成俊馳啓曰:  “臣承下諭, 巡到穩城, 探問可信彼人, 則柔遠鎭近居兀良哈護軍阿良介有心</p>

(임신) 1번째기사

군(護軍) 아랑개(阿良介)가 심계(心計)가 있으므로 그 무리들이 추대하여 장수로 삼았다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그와 함께 말을 해 보았더니, 과연 심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功)을 세우기를 즐겁게 여겼는데, 다만 말하는 분위기가 그의 직질(職秩)이 낮은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 인해서 묻기를, '네가 성(城) 밑에 오래도록 살면서 국가를 위하여 기울이는 정성이 정중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조산(造山)과 경흥(慶興)의 변고를 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이는 옛날에 없었던 바이므로 마음이 상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 마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하는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성밑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를 내게 하여 보복하도록 하되 저를 장수로 삼으신다면 회령(會寧)에서부터 경흥(慶興) 성밑까지 날랜 군사 3, 4백 명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들어가서 정벌하면 비록 모조리 없애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대국(大國)의 치욕을 조금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적(敵)은 많고 병력은 적으니 뜻을 이루기가 어려울 듯하다. 혹시라도 차질(蹉跎)이 생기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틀림없이 기계(器械)를 엄하게 설치할 것이므로, 뒤에 들어가서 정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너의 계획은 허술한 것이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만약 병마(兵馬)를 크게 일으킨다면 저희들이 마땅히 선봉(先鋒)이 되어 온성(穩城)에서부터 출발할 것인데 4일이면 울지령(鬱地嶺)에 도착할 수 있으며, 울지령에서 니마거 울적합(尼麻車兀狄哈)이 살고 있는 곳과는 1식(息)23274) 남짓한 거리입니다. 그러니 울지령으로부터 닭이 울 때에 두 길로 나누어 행군(行軍)하되 한편은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고 한편은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간다면 새벽녘에 양군(兩軍)이 함께 도착할 것이니, 북을 치며 시끄럽게 돌격한다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고 하므로, 신이

計, 其類推爲將帥, 故臣與語, 果有心計, 且喜於立功, 但言勢恨其職卑也。臣仍問曰: '聞汝久居城底, 向國誠重, 可信人也。故今別召汝, 汝聞造山、慶興之變乎?' 答曰: '已聞之, 此古所未有, 不勝痛心。' 臣曰: "然則汝心以爲何以處之?" 答曰: '國家令城底人出兵報復, 以我爲將, 則自會寧至慶興城底, 可得精兵三四百, 誰敢不從? 以此入征, 雖不得勦滅, 庶可小雪大國之恥。' 臣曰: '敵多兵小, 似難得志, 若或蹉跎, 非徒取侮, 彼必嚴設器械, 後難入征, 汝計疎矣。' 答曰: "國家若大舉兵馬, 我等當爲先鋒, 自穩城而發, 四日可到鬱地, 鬱地距尼麻車兀狄哈所居一息餘程, 自鬱地雞鳴時分兩道行軍, 一自北而西, 一自南而西, 平明時兩軍齊到, 鼓噪突擊, 則無不勝矣。' 臣曰: '汝言是矣, 但道路迂直, 汝雖知之, 我國人亦不可不知, 汝假托刷還, 帶率國人二、三名, 使之知路爲可, 若難則潛率往還何如?' 答曰: '與吾衣冠, 帶行指路, 吾亦計之, 然恐彼人或知而害之, 潛率往還, 亦恐見害。如此則非徒吾無顏更謁, 國家大計, 亦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다만 도로의 굽고 곧은 것을 네가 비록 안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도 몰라서는 안되니, 네가 쇄환(刷還)한다고 핑계대고 우리 나라 사람 2, 3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길을 알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만약 어렵다면 몰래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자,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의관(衣冠)을 주고 데리고 가서 길을 가리켜 주는 것을 나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인(彼人)들이 혹시라고 알고서 해롭게 할까 두려우며 몰래 데리고 갔다가 되돌아 오는 것도 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 다시 죄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고 국가의 대계(大計)도 따라서 실패할 것이니, 이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이 맨앞장을 서면 크게 험준한 것도 없을 터이니 국인(國人)이 비록 길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고 하므로, 신이 또 묻기를, ‘이는 내가 분개하여 말하였을 뿐이고 국가의 계획은 아니니, 너는 아직 누설하지 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처자(妻子)를 대하셔도 감히 어찌 말하겠습니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흥(慶興) 근처에 살고 있는 여진(女眞) 중추(中樞) 박단용아(朴丹容阿)는 신이 관찰사(觀察使)가 되었을 때부터 그가 심계(心計)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행하여 지날 때에 또 불려서 보고 말하기를, ‘네가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입고 지위가 2품(品)에 이르렀으니, 국가를 위하여 정성을 오로지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경흥의 일을 네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바이니 마음이 아픈 것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고 하므로, 신이 묻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대국(大國)이 병력으로 어찌 이기지 못할까를 근심하며, 어찌 소추(小醜)를 두려워하여 늘 참고 견디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거사(舉事)를 하려면 8, 9월이 가장 좋습니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만일 진흙에 빠지는 곳이나 혹은 큰 물에 막히는 곳에는

從而敗, 以此難之。 吾意以爲, 吾等前驅, 且無大險阻, 國人雖不知路無妨矣。’ 臣又問曰: ‘此吾憤憤而言之耳, 非國計也, 汝姑勿洩。’ 答曰: ‘如此事, 至對妻子, 何敢言之?’ 且慶興近居女眞中樞朴丹容阿, 臣自爲觀察使時, 知其有心計, 今過行時, 又招見曰: ‘汝世蒙國恩, 位至二品, 向國必誠, 近日慶興之事, 汝心以爲何如?’ 答曰: ‘前昔所未聞見, 痛心何極?’ 臣問曰: ‘然則何以爲之?’ 答曰: ‘以大國兵力, 何患不克, 安得畏小醜, 常常含忍, 萬有舉事, 八、九月爲最。’ 臣曰: ‘如有泥陷處, 或阻大水, 何以爲之? 人言十月、正月爲好, 汝何獨言八、九月乎? 汝言似踈。’ 答曰: ‘吾非不知水凍時最好, 但此道之人, 衣無綿絮, 只着熟麻, 如遇大寒, 手足不能運, 若八、九月則手足能運, 且踏損穀田, 令彼失秋收之望, 故言之耳。 如得絺衣, 履冰入征, 可保萬全矣。’ 臣亦以勿洩戒之。 二人所言如此。 臣意亦以爲, 征與不征, 彼之更侵, 必不得免。 然征之則彼雖欲請兵報復, 畏威不從者必多, 爲禍似小; 不征則近者得利已多,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10월과 정월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 혼자 8, 9월을 말하는가? 너의 말이 허술한 듯하다.’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제가 얼음이 얼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도(道)의 사람들은 솜을 넣어서 만든 옷이 없고 단지 숙마(熟麻)23275) 를 착용하였으므로, 만일 큰 추위를 만나게 되면 수족(手足)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8, 9월이라면 수족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전지(田地)의 곡식을 밟아 손상시켜 저들로 하여금 추수(秋收)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만일 솜옷을 얻는다면 얼음을 밟고 들어가서 정벌하는 것에 만전(萬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고 하므로, 신이 또한 누설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계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한 바가 이와 같으니, 신의 생각에도 정벌하거나 정벌하지 않아도 저들이 다시 침입하는 것은 틀림없이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벌하면 저들이 비록 군사를 청하여 보복하려고 하여도 위엄을 두려워하여 따르지 않는 자가 반드시 많아서 화(禍)가 작을 듯하며, 정벌하지 않으면 요즈음 이익을 얻은 것이 이미 많고 되돌아갈 때에 맞아서 공격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가볍게 여기어 만일 다시 군사를 청하면 저들이 모두 기꺼이 따라 주어 화가 틀림없이 클 것이니, 정벌하지 않고 저들에게 경멸당하기보다는 한번 정벌하여 국가의 위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벌하는 시기를 모두 정월이 가장 좋고 10월이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10월이면 저들이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군사를 청할 겨를이 없을 것이며, 정월에 이르면 아마 저들도 군사를 모아 나와서 난을 일으킬 듯합니다. 만약 피차(彼此)가 모르고 양쪽의 군사가 서로 만나다면 비록 패배하는 데는 이르지 않겠으나, 그것이 만전의 계책에서 나왔다고는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계교하여 보면 10월보다 나은 때가 없습니다.

回還又無邀擊，彼必輕我，如更請兵，彼皆樂從，爲禍必大，與不征而爲彼所輕，何如一征而使知國威。且入征之期，皆言正月爲最，十月次之，然臣意以爲十月，則彼因收穀未暇，請兵至正月，則恐彼亦聚兵出賊矣。若彼此不知兩軍相值，則雖不至於敗，其出於萬全，未可必也，以此計之，莫如十月也。言者或以爲，勞師遠征，不如坐而嚴兵，以逸待勞。然臣聞彼之出賊也，潛從山路，牽馬徐行，勞亦不驕，日不過一息半息而止，無疲勞之理，以此計之，以逸待勞之言，亦無謂也。雖反覆百計，莫如大舉一征，以示國威之爲愈也。然此愚臣妄料，豈合廟算，伏惟上裁。”

	<p>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군사를 고달프게 하여 멀리 정벌하러 가는 것보다는 앉아서 군사를 엄격히 훈련시켜 편안하게 다듬어진 군사로 고달프게 오는 군사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들건대, 저들이 나와서 난을 일으킬 때에는 몰래 산길을 따라 말을 끌고 천천히 행군하며 고달프고 말을 타지 않고 하루에 1식(息)이나 반식(半息)에 지나지 않도록 하여 그치므로 피로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계교하여 본다면 편안한 군사로 피로한 군사를 기다린다는 말도 이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러 가지 계교를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크게 군사를 일으켜 한 번 정벌하여 국가의 위엄을 보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신의 망령된 요량인데 어찌 조정에서 의논한 계책과 부합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p> <p>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8일 (계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강삼(姜參)이 이평(李枰)이 정조(政曹)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균(李均)이 또한 북정(北征)의 불가함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무기는 흉한 기구(器具)이며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큰 일을 일으키면서 내가 어찌 짐작하여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피로(彼虜)들이 변경에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런데 지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죄를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나 한(漢)나라 무제(武帝)처럼 강토를 개척(開拓)하려고 무력(武力)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p> <p>하였다. 이균(李均)이 말하기를,</p> <p>“큰 일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상의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에 수의(收議)하였을 때에는 더러 불가하다고 하는 자가 있었</p>	<p>○御經筵。講訖，獻納姜參論李枰不宜政曹。不聽。侍讀官李均，亦啓北征不可。上曰：“兵凶器，戰危事。舉大事，予豈不酌量乎？彼虜侵犯邊場，擄掠人畜，其罪大矣。今之舉兵，欲以問罪，非若秦皇、漢武之開拓境土，窮兵黷武也。”均曰：“舉大事，必待詢謀僉同，今收議時，或有不可者，請更收議于群臣，處之。”上曰：“兵家勝敗，未可預料，我軍今或未利而還，山川險阻，可以知之，其於後日問罪，豈無補歟？況彼虜知我國之威，則亦必畏懼，不肆侵陵矣。”特進官鄭</p>

	<p>으니, 청컨대 다시 여러 신하에게 수의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가(兵家)의 승리와 패배는 미리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군사가 이번에 흑시 이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도 산천(山川)의 험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뒷날 죄를 신문할 적에 어찌 보탬이 없겠는가? 더구나 피로(彼虜)들이 우리 나라의 위세(威勢)를 안다면 그들도 틀림없이 두려워하여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문형(鄭文炯)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이 변방에 침범한 것은 실로 허혼(許混) 때문이니, 청컨대 경상(境上)에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자제(子弟)를 모으고 허혼의 머리를 베어 널리 보이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마음에 쾌하게 여길 것이고, 변방의 사변[邊警]이 그쳐질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는 말하기를,  “신의 요량도 정문형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에 연변(沿邊)의 만호(萬戶)가 공(功)을 노리어 고기 잡는 왜인(倭人)을 잡아다 죽였으므로, 세종께서 경상(境上)에서 만호의 목을 베어 그들에 보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허혼의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며, 또 살해당한 사람의 자제들에게 부의(賻儀)를 보낸다면 저들이 틀림없이 은혜에 감사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이니, 어찌 변방을 침범할 계교를 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혼을 경상(境上)에서 목을 베어 그 자제들을 기쁘게 한다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우리를 약하게 여길 것이니, 너무나 국가의 체모를 잃는 것이 되므로, 매우 불가하다.”  하였다.</p>	<p>文炯曰：“戎虜犯邊，實許混之故，請於境上，聚被殺人子弟，斬混頭以廣視，則虜必快於心而邊警息矣。”同知事李世佐曰：“臣之料計，亦如文炯所啓。昔世宗朝，沿邊萬戶，欲邀功，捕殺釣魚倭人，世宗命於境上斬萬戶以示之。今宜斬許混，又致賻被殺人子弟，則彼必感恩不暇，豈生犯邊之計乎？”上曰：“誅混境上，以說子弟，則虜必弱我，殊失國體，甚不可。”</p>
<p>성종 252권, 22년</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p>	<p>○御夕講。講訖，侍讀官趙之瑞啓曰：</p>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8일  
(계유) 5번째기사

가 아뢰기를,  
 “지금 대군(大軍)을 일으켜 북정하는 데는 반드시 7, 8월부터 군사를 징집해야 할 것이니, 그런 연후에야 10월의 기한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만여 명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잃게 하는 것이 첫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토지를 팔아 말을 사서 떠나므로 이것 때문에 생업을 잃어버리는 자가 많을 것이니, 두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기유년(23292)·경술년(23293) 강무(講武) 때에는 머무른 날짜가 많지 않았는데도 군마(軍馬)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지방에서 북도(北道)로 가는 것은 두 달이 걸리는 노정(路程)이 되니, 말이 틀림없이 많이 죽을 것이므로, 세 번째의 해로운 것입니다. 2만 명이 떠나는 데에 따르는 무리들도 갑절이 될 것이니 3개월 동안의 양식으로 반드시 10만 석이 소비될 것이며, 말의 식량도 여기에 맞추어야 하므로 창고가 텅 빌 것이니, 네 번째의 해로운 것입니다. 2만의 병마(兵馬)가 왕래하는 길이 남도(南道)의 경우를 나누어서 가겠지만 전지의 곡식을 밟아서 손상시키는 것이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안도(永安道)는 한 길로만 경유하여야 하므로 그 초료(草料)를 공급하기가 어렵게 되면 모두 여염(閭閻) (23294) 에 흩어서 전지의 곡식을 베게 할 것이니, 영안도의 백성들이 틀림없이 의지하여 생활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거처를 잃어버릴 것이니 다섯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평안도(平安道)에서 이미 혼단을 만들었고 하삼도(下三道)의 왜노(倭奴)도 틈을 엿보고 기회를 타서 국경을 침범하려고 도모하는데, 국가에서는 조그마한 분함을 금하지 못하고 금수(禽獸)와 서로 싸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피곤하게 하여 국가의 맥(脈)을 스스로 쇠잔하게 하니, 여섯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승냥이와 이리의 소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속히 되돌아와야 하는데, 저들이 만약 뒤쫓는다면 틀림없이 쇠약한 말과 기계(器械)를 버리고 올 것이니, 일곱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가

“今舉大軍北征，必自七、八月徵兵，然後可及十月之期，使二萬餘人，失耕穫之時，一害也。赴戰之人，盡賣土田，買馬以去，因此失業者必多，二害也。己酉、庚戌講武之時，留日不多，而軍馬多斃，今自南方赴北道兩月之程，則馬必多斃，三害也。二萬人之行，從徒亦倍，三朔糧餉，必費十萬，而馬料稱是，倉廩空竭，四害也。二萬兵馬往來之途，南道則分路而往，然踏損田穀必多，況永安道只由一路，其草料難以供給，則皆散於閭閻，芟刈田穀，永安之民，必不聊生，從之失所，五害也。平安道既已構釁，而下三道倭奴謀欲伺隙，乘便犯境，而國家不勝小憤，與禽獸交鋒，使吾民皆疲困，以自殘其國脈，六害也。采入豺狼之窟穴，不能久留，必速還來，而彼若逐之，則必棄羸弱之馬與器械而來，七害也。往返三朔之內，若值雨雪，則人馬皆凍，僵仆而死者多矣，八害也。彼人懼服，不敢近邊則已，若懷報復之計，年年入寇，則數十年間，抄兵助防，無時而休，邊氓尤受其禍，九害也。土地祖宗之土地也，積儲祖宗之積儲也，

되돌아오는 3개월 내에 만약 비나 눈을 만나면 사람과 말이 모두 얼어서 쓰러져 죽는 것이 많을 것이니, 여덟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피인(彼人)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며 감히 변경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그만이었으나, 만약 보복할 계교를 품고 해마다 침입하여 노략질을 한다면 수십년 동안 군사를 뽑아 방어를 도와야 할 것이니 휴식할 때가 없을 것이며, 변방의 백성들이 더욱 그 화(禍)를 받을 것이니, 아홉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토지(土地)는 조종(祖宗)의 토지이며 비축[積儲]한 것은 조종께서 비축하신 것입니다. 이제 조종의 백성을 소동(騷動)하게 하고 조종의 창고를 텅 비도록 하여 조종의 토지가 편안하지 못하니, 열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지금 열 가지 해로운 것을 범하면서 큰 일을 일으키시니, 신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병력을 남용하여 강토를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피로(彼虜)들이 까닭 없이 우리 조종의 변경을 침요(侵擾)하며, 우리 조종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가는데, 이제 만약 내버려 두고 신문하지 않는다면 더욱 우리를 경멸하는 마음을 먹고서, 침입하여 노략질하며 작난하는 것이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인하여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북정(北征)하는 일에 대하여 홍문관(弘文館)에서 내가 그것을 고집한다고 여기니, 내일 지난날 함께 의논하지 못한 재상(宰相)과 하숙부(河叔溥) 등 변방의 일을 아는 무신(武臣)을 불러 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의(李誼)가 아뢰기를,  
 “북쪽 지역은 매우 추운데도 솜이 없어 유의(襦衣)를 착용한 자가 많지 않고 모두 베옷에다 갑옷을 착용하는데, 부유한 자는 개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청컨대 제용감(濟用監)과 사섭시(司瞻寺)에 간직된 쥐가 찢은 목면(木綿)과 전설사(典設司)의 찢어진 차일(遮日)과 휘장으로 유의(襦衣)를 만들

今使祖宗之百姓騷動， 祖宗之倉庾空虛， 祖宗之土地未寧， 十害也。 今犯十害， 以舉大事， 臣以謂未可也。” 上曰：“予非欲窮兵、黷武以拓土開疆也， 彼虜無故侵擾我祖宗之邊圉， 殺擄我祖宗之人民， 今若置而不問， 則益生輕我之心， 侵寇作耗， 無時已也。” 仍謂承旨曰：“北征事， 弘文館以我爲固執也， 明日召前日不與議宰相及河叔溥等知邊事武臣， 收議以啓。” 左副承旨李誼啓曰：“北地甚寒而無絨絮， 着襦衣者蓋寡， 皆着布甲衣， 富者以狗皮爲衣， 請以濟用監、司瞻寺藏鼠破木綿及典設司破件遮日帳製襦方衣， 賜北道驍勇軍士之無衣者。” 上曰：“可。” 金悌臣曰：“臣於北道親見之， 其民皆着單衣， 然自少已習， 故能耐寒， 南人則不能堪矣， 誠如李誼所啓， 製衣給之爲佳。” 上曰：“鼠破木絨及遮日帳數磨鍊， 量其可製幾衣而啓之。 李惟清前日拜持平七日， 以弘文館所啓， 含默不言， 而換差臺諫， 雖言官， 安能七日之間展布素蘊乎？ 今爲持平， 臺諫又以此論駁， 然以臺諫爲臺諫所駁， 不可仍任臺諫， 故不得已換差耳。 以此之故，

어, 북도(北道)의 날래고 용맹스런 군사로서 옷이 없는 자에게 내려 주어 나누어 입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김제신(金悌臣)이 말하기를,  
“신이 북도에서 직접 보았는데, 그곳의 백성들은 모두 단의(單衣)를 착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이미 익혔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사람의 경우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진실로 이의(李誼)가 아뢴 바와 같이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쥐가 찢은 목면 및 차일과 휘장을 수대로 마련하여 몇 벌의 옷을 만들 수 있는지 헤아려서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이유청(李惟淸)은 지난날 지평(持平)에 임명된 지 7일 만에 홍문관(弘文館)에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바꾸어 임명하였다. 대간(臺諫)이 비록 언관(言官)이기는 하나 어찌 7일 사이에 평소의 쌓였던 것을 진술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지평이 되자 대간이 또 이것으로 논박(論駁)하였는데, 대간으로서 대간의 논박하는 바가 되었으니 대간에 유임하게 할 수 없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어 임명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침내 대간이 될 수 없으니, 정상이 매우 애매하다.”

하였다.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아침에 관원으로 임명되어 저녁에 상소[奏疏]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으면 7일 동안을 급하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고 말하기는 불가하니, 정말 애매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 대간에 임명할 일을 정조(政曹)에 전교하라.”

終不得爲臺諫，情甚曖昧。”悌臣啓曰：“古人云：‘朝拜官而夕奏疏，’然若無事可言，則七日之間，不可遽謂之含默，果似曖昧。”上曰：“今後差臺諫事，傳于政曹。”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4월 28일 (계유) 6번째기사</p>	<p>하였다.          도원수(都元帥)의 단자(單子)에,          “10월에 거사(舉事)하려 한다면 먼 도(道)의 군사는 반드시 8월 초에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길을 갈 때에 말이 먹을 풀도 여유가 있으며 열거나 추운 폐단이 없으므로 첫째 가한 것이며, 피인(彼人)들이 비록 이미 곡식을 베었거나 들에 쌓아 두고 다 거둬들이지 않았으니 쌓아 둔 곡식을 태워 버려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어렵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둘째로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거쳐가는 길가의 곡식은 틀림없이 밟아서 손상시키거나 몰래 베어가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첫째 불가한 것이며, 가을이 깊어지면 오랑캐의 말이 살찌고 건장한 것이 둘째 불가한 것입니다. 2월의 오랑캐의 말은 가을에 비교하면 더러 살찌거나 건장하지 않으니 첫째 가한 것이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낮이 길어지니 둘째 가한 것입니다. 2월에 거사한다면 먼 도의 군사가 반드시 11월 15일 후에는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길을 갈 때에 눈이 들 관에 가득 쌓여 사람과 말이 동상(凍傷)에 걸리는 폐단이 많이 있을 것이니 첫째 불가한 것이며, 피인들이 늘 1, 2월 사이에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는데, 만약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한다는 것을 들으면 급히 맞아서 항거할 것이니 둘째 불가한 것입니다. 신 등이 이것으로 가(可) 불가(不可)를 헤아려 정하고 10월이 가장 좋다고 의논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는데, 그 끝에다 어서(御書)하기를,          “내가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하니, 어찌 시기와 형편에 알맞게 부합되도록 처리하겠는가? 그러나 아된 것으로 생각하면 2월이 10월만 못하다. 두 가지 가하다는 계획은 참으로 당연하며 두 가지 불가하다는 계교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오랑캐의 말이 비록 살찐다 하더라도 잘 먹이면 우리 말도 건장해지는 것이다. 다만 군사가 거쳐가는 곳의 〈곡식이〉 밟혀서 손상되</p>	<p>○都元帥單子：          十月舉事則遠道軍士，必於八月初發程，行路時馬草有餘，無凍寒之弊，一可也。彼人雖已刈穀，或有積在於野，未畢收入，焚此積穀，使彼艱食，二可也。軍士所經路邊禾穀，必有踏損盜刈之弊，一不可也。秋高則胡馬肥健，二不可也。二月胡馬，比秋則或不肥健，一可也。時氣漸暖且日長，二可也。二月舉事，則遠道軍士，必於十一月望後發程，行路時積雪滿野，人馬多有凍傷之弊，一不可也。彼人每於正、二月間聚兵作賊，若聞我入攻，遽即迎拒，二不可也。臣等以此可、不可商確而論，十月最可，伏惟上裁。御書其尾曰：“予不知邊事，豈合機宜而處之，然以所啓思之，二月不如十月，二可之謀固當然也，二不可之計亦不甚焉。秋高則胡馬雖肥，善秣則我馬亦健也。但軍士所經，踏損盜刈之弊，果有之矣，然先諭領將，嚴明號令，不犯秋毫，則自無其弊，儻或有之，當責其將。”</p>
--	--	--

	<p>거나 몰래 베어 가는 폐단은 정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통솔하는 장수에게 유시(諭示)하여 호령(號令)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범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절로 그 폐단은 없어질 것이며, 혹시라도 있으면 그 장수를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9일 (갑술) 4번째기사</p>	<p>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 변종인(卞宗仁)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날 경(卿)에게 영(令)을 내려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北方)으로 달려가라고 하였는데, 경이 길성(吉城)의 영동역(嶺東驛)에 도착하여 취품(取稟)하지 않고 갑자기 곧 돌아왔기 때문에 유사(攸司)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번에 경에게 유시하여 허중(許琮)의 절도(節度)를 듣도록 하였는데, 경이 허중의 북도(北道)는 강(江)의 얼음이 풀려서 방어가 조금 험(歇)하게 되었지만 갑산(甲山)과 삼수(三水)의 방어는 긴급하니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되돌아와 머물면서 변고에 대비하게 하라는 일을 치계(馳啓)한 글을 보고 허중의 절도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거느리고 간 군사와 말의 꼴과 양식이 부족하므로 중도에서 오래 머물기 어렵다고 염려하여 군사를 풀어서 돌아왔으니, 실정과 도리를 미루어 캐어보면 마땅히 용서할 만하다. 특별히 관전(寬典)을 보여 경의 죄를 용서한다. 지금 농민들이 들에 피져 있으며 초목(草木)이 뺏뺏하게 우거졌으니, 방어하는 여러가지 일을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조치를 더하여 &lt;내가&gt; 북방을 생각하는 근심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p>	<p>○諭永安南道節度使卞宗仁曰：“前日，令卿領精兵馳赴北方，而卿到吉城嶺東驛，不取稟，遽卽回還，故令攸司鞫之。然前諭卿聽許琮節度，而卿見許琮北道江氷解泮，防禦稍歇，甲山、三水防禦緊急，令節度使還留待變事馳啓之文，謂許琮節度，不可不聽，又慮領去軍馬，芻糧不足，中路難以久留，罷兵而還，推原其情，理宜可恕，特示寬典，以宥卿罪。今農民布野，草木鬱密，防禦諸事，不可不嚴，更加措置，以寬北顧之憂。”</p>
<p>성종 252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4월 29일 (갑술) 5번째기사</p>	<p>북정(北征)하는 일을 여러 재상(宰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대저 병사(兵事)는 먼저 곡직(曲直)을 논해야 합니다. 울적함(兀狄哈)이 우리들과 본래 원수나 혐의진 일이 없는데, 까닭없이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고 성읍(城邑)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변장(邊將)을 죽였으니, 왕법(王法)23298)</p>	<p>○命議北征事于諸宰。李克培議：“大抵兵事，先論曲直，兀狄哈與我，本無讎嫌，無端入寇，攻陷城邑，屠害邊將，在王法必誅而不赦者也。今此舉兵，或者以爲憤兵，所謂憤兵者，爭恨小</p>



에 있어서 반드시 주벌(誅罰)해야 하고 용서하지 않아야 할 자입니다. 이번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분노한 군대라고 여기는데, 이른바 분병(忿兵)이라는 것은 원한을 겨루는 것이 작기 때문에 분노함을 금하지 못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고 저들이 그르다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죄를 성토(聲討)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분노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힘쓸 것은 신중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경솔하게 진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사(擧事)하는 절도(節度)는 원수(元帥)에게 위임하여 분분(紛紛)한 말로 그것을 이간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 일의 대체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이르러서는 신이 미리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하고, 유자광(柳子光)은 의논하기를,  
 “지난번에 북쪽의 오랑캐가 나사종(羅嗣宗)을 죽이고, 또 서쪽의 적로(賊虜)가 와서 창주(昌洲)를 포위하였으니, 국가에서 군사를 일으켜 죄를 성토하는 것은 그만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혼(許混)이 서쪽의 변경에서 혼단을 만들었으며 또 근년(近年)에는 남쪽 지방에서도 <변이 있어> 자주 놀랐으니, 만약 급박한 일이 있으면 그 재난이 서북(西北) 지방보다 더 시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의 적로(賊虜)가 허혼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보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거듭 북쪽 오랑캐가 침입하여 노략질한 치욕도 있습니다. 더구나 영안도 오진(五鎭)의 군사와 말이 쇠잔하고 피폐하여 떨치지 못하는데, 지금 남쪽 지방의 백성을 뽑아다가 멀리 북쪽의 관문(關門)으로 나아가게 하면 사람과 말이 곤궁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진의 사마(土馬)를 아울러서 적(敵)의 지경에 깊숙이 들어가게 한다면 손상되는 바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승리하고 패배하는 데 이르러서도 한심(寒心)스럽습니다.”

하고, 이철건(李鐵堅)·한치형(韓致亨)·손순효(孫舜孝)·정괄(鄭佶)·하숙부(河叔溥)·여자신(呂自新)·이병정(李秉正)·이승조(李承祚)·한숙후(韓叔厚)·안우건(安友

故, 不勝憤怒之謂也。 我直彼曲, 不過奉天討罪而已, 何憤之有? 但務在持重, 不宜輕進, 擧事節度, 委之元帥, 勿使紛紛之說, 得以間之, 事之大體, 當如是也。 至於成敗, 非臣所能逆料。” 柳子光議: “頃者, 北虜殺羅嗣宗, 又西賊來圍昌洲, 國家擧兵聲罪致討, 在所不已, 但令許混構虜西邊, 又近年南方屢驚, 脫有緩(悉) [急], 其禍急於西北, 且西賊欲報許混殺父之讎, 又重北虜入寇之恥, 況永安五鎭土馬, 殘敝不振, 而今抄南方之民, 遠赴北門, 人馬困斃, 并其五鎭土馬, 深入敵境, 則所傷必多, 至於勝敗, 亦可寒心。” 李鐵堅、韓致亨、孫舜孝、鄭佶、河叔溥、呂自新、李秉正、李承祚、韓叔厚、安友騫議: “虜於我國, 本無橫釁, 遽犯邊境, 殺擄將士, 罪惡貫盈, 固當問罪。 然兵家勝敗難必, 不可輕擧, 且二萬之衆, 竝計輜重人馬, 不下五、六萬, 留連往還之間, 糧餉則已矣, 至於芻蒿, 非永安民力所能獨辦, 弊必及於他道。 假令大捷, 揚示威武, 他日兵連禍結, 邊氓之害, 可勝言哉!” 盧公弼、曹幹、權佺、趙益

騫)은 의논하기를,  
 “오랑캐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본래 혼단을 만든 것이 없는데, 갑자기 변경(邊境)을 침범하여 장수와 사졸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으니, 죄악(罪惡)이 가득 찼습니다. 진실로 죄를 신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병가(兵家)의 승리와 패배는 기필하기 어려우므로 경솔하게 거사(舉事)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만의 대중에다 짐바리를 나르는 인마(人馬)를 아울러 계산하면 5, 6만에 밀돌지 않는데, 오랫동안 머물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사이에 드는 식량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심지어 풀과 같은 것도 영안도 백성의 힘만으로 홀로 처리할 바가 아니니, 폐단이 틀림없이 다른 도(道)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가령 크게 이겨서 권위와 무력을 드날려 보인다고 하더라도 뒷날 전쟁이 잇따르고 화(禍)가 맺어진다면 변방 백성들의 피해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공필(盧公弼)·조간(曹幹)·권정(權挺)·조익정(趙益貞)·한한(韓儻)·권건(權健)·송철산(宋鐵山)·안침(安琛)·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은 의논하기를,  
 “소추(小醜)들이 대국(大國)을 경멸하여 성(城)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는데에 이르렀으니, 우리에게 치욕이 되는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신문하는 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저들이 우리에게 혼단을 만들고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정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방비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시키지도 않은 군사로 경솔하게 그들의 예봉(銳鋒)을 만나게 한다면 아마도 만전(萬全)의 거사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마다 들어가서 공벌한다고 발설하며, <그런> 형세(形勢)를 짓기도 하면, 저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대비하는 데 피로하여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이며 오래 되면 반드시 계를 러져서 방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틈타 군사를 일으켜 소굴을 공격한다면 국가의 치욕을 조금은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하기를,

貞、韓儻、權健、宋鐵山、安琛、李季男、尹坦議：“小醜輕侮大國，至於陷城殺將，爲我之恥極矣，問罪之舉，不得不爾。但今年則彼以構釁於我，必謂我入征，備我無所不至，而我以不習之兵，輕擢其鋒，恐非萬全之舉，宜年年聲言入攻，作爲形勢，彼必勞於備我，不獲寧居，久則必怠而無備，乘此之時，舉兵擣穴，則可以小雪國恥。”  
 御書曰：“今觀群議，紛紜莫定，如舉大事，豈宜如此？兵家勝敗，不可預度，虜之情狀，制在良將，我意已決，不可卒變，定大計示威可也。”

	<p>“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분운(紛紜)하여 결정됨이 없음을 보았는데, 만일 큰 일을 일으킨다면 어찌 이와 같은 것이 마땅하겠는가? 병가(兵家)의 승리와 패배는 미리 헤아릴 수 없으며, 오랑캐의 정상(情狀)은 훌륭한 장수가 제어하는 데 달려 있다.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으니, 큰 계획을 정하여 위엄을 보이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1일 (병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지금의 북방 정벌[北征]은 시세(時勢)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시세(時勢)란 것은 무엇인가? 어느 때에 정벌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조지서가 아뢰기를 “지금 재변(災變)이 여러번 나타나고 가뭄이 너무 심하여 연사(年事)가 장차 흉년이 들지 않을 것이니, 어찌 큰 일을 일으킬 시기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흉년이 들 것을 미리 기필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만약 비가 내린다면 흉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조지서가 다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가 불화(不和)의 단서(端緒)가 없는데도 저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니, 죄지은 자를 치는 일을 어찌 중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은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히 죄지은 자를 정벌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 저들의 지역은 추측컨대, 반드시 지세(地勢)가 험준한 곳이 많을 것이니, 2만 명의 군사는 용납할 곳이 없을 듯합니다. 토병(土兵)23313) 7천 명이 만약 모자란다면 2, 3천 명을 보태어 1만 명의 수효를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p>	<p>○御經筵。講訖，侍講官趙之瑞啓曰：“今之北征，時勢有不便者。”上曰：“所謂時勢何耶？何時爲可伐也？”之瑞曰：“今災變屢見，旱氣太甚，年將不熟，是豈舉大事時也？”上曰：“豈可預期凶歉乎？今若下雨，不至凶年矣。”之瑞復言其不可。上曰：“我無釁而彼敢侮我，問罪之舉，豈得已乎？”領事洪應啓曰：“固當問罪，但彼地想多阻隘，二萬之衆，恐無容處，土兵七千若不足，則加二三百，充一萬之數可也。”副元帥李季全適以特進官入侍。上顧問。季全啓曰：“不必一時行軍，若遇隘塞，分軍以爲後援，則軍士不可不多也。”上曰：“與都元帥議啓。”同知事慎承善啓曰：“今宗貞國書辭不遜，南道之軍，竝赴北方未便。”上曰：“宗貞國衣食，專在我國，豈有異心乎？”</p>

	<p>하였다. 부원수(副元帥) 이계동(李季叡)이 때마침 특진관(特進官)으로서 입시(入侍)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돌아보고 물으니, 이계동이 아뢰기를</p> <p>“한꺼번에 행군(行軍)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지세(地勢)가 좁고 험준한 곳을 만나서 군대를 나누어 후원을 삼는다면 군사가 많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도원수(都元帥)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라.”</p> <p>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신승선(愼承善)이 아뢰기를,</p> <p>“지금 종정국(宗貞國)의 서사(書辭)가 불손(不遜)한데, 남도(南道)의 군사를 모두 북방에 가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종정국의 의식(衣食)이 오로지 우리 나라에 달려 있는데, 어찌 배반할 마음이 있겠는가?”</p> <p>하였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2일 (정축)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북방 정벌에 따라간 서울과 지방에 접거(接居)한 첩(妾)의 자손과 한량인(閑良人)23324 의 가난한 사람은 사람마다 쌀 2석(碩)과 면포(綿布) 2필(匹)씩을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曰：“從征京外接居妾子孫及閑良人貧乏者，人給米二碩、綿布二匹。”</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4일 (기묘) 3번째기사</p>	<p>도원수(都元帥) 허중(許琮)이 사목(事目)을 아뢰기를,</p> <p>1. 여러 도(道)의 군사를 가려 뽑을 때, 절도사(節度使)가 오로지 관장(管掌)하는 데도 그 거느린 차사원(差使員)23326 이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과 같이 좋은 군사를 가리는데, 혹은 사정(私情)으로써, 혹은 관중(官中)의 역사(役使)로, 건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빼뜨리고 쇠약하고 못난 사람으로써 대신했으므로 도원수(都元帥)가 점고(點考)할 때에 &lt;부정(不正)이&gt; 나타나게 되면 사면(赦免) 전임을 논할 것 없이 색리(色吏)23327 ·패두(牌頭)23328 ·</p>	<p>○都元帥許琮啓事目；“一，諸道軍士擇抄時，節度使專掌，而其率領差使員，同諸邑守令精擇，或以私情，或以官中役使，容漏壯實有材者，代以殘劣，而都元帥點考時現露，則勿論赦前，色吏、牌頭、旅帥全家徙邊；差使員及諸邑守令，勿論堂上官、功臣、</p>

여수(旅帥)23329) 는 전가 사변(全家徙邊)23330) 하게 하고, 차사원(差使員)과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당상관(堂上官)이든지, 공신(功臣)이든지, 의친(懿親)23331) 이든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23332)에 의거하여 장형(杖刑) 1백 대를 집행하고, 절도사(節度使)는 추국(推鞠)과 출(罷黜)시키고, 경차관(敬差官)23333) 은 점고(點考)할 때 해이(懈弛)한 사람이 있으면 또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1. 군사를 가려 뽑을 때에 먼저 들어온 별시위(別侍衛)23334) 와 갑사(甲士)23335) 와 파적위(破敵衛)23336) 와 팽배(彭排)23337) 와 대졸(隊卒)을 뽑아 정하고, 정병(正兵)·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전함 조사(前衛朝士)·작산 군사(作散軍士)23338) ·한량인(閑良人)·첩자손(妾子孫)·제색 군사 보인(諸色軍士保人)·제읍(諸邑)의 향리(鄉吏)·아전(衙前)·향교 생도(鄉校生徒)·재인(才人)·백정(白丁) 내에서 기병(騎兵)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안장을 엮은 말을 가진 건장한 사람으로써 가려 뽑고, 비록 활쏘는 힘은 강(強)하지 못하더라도 과감(果敢)하고 용건(勇健)한 사람과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뽑고, 그 보병(步兵)은 몸이 건장하고 힘이 있어서 걸음을 잘 걷고 달음박질을 잘하여 한 사람이 백 명을 당적할 사람을 가려 뽑아서 채우게 하고, 군사를 뽑을 때에 정군(正軍)과 보인(保人) 등이 혹은 도망해 피하거나, 혹은 신병(身病)으로 죽었다고 일컫거나, 혹은 사고(事故)를 핑계하고 피하기를 피하는 사람은 수령(守令)이 친히 살펴서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에게 보고하면, 관찰사와 절도사는 다시 조사하여 이것이 사실이면 뒤따라 즉시 충원(充員)해 정하고, 그 도망해 피하는 사람은 쫓아가 잡아서 사죄(赦罪)하지 말고 전일의 군법(軍法)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는데, 그래도 현신(現身) 자수(自首)하지 않는 사람은 처자(妻子)와 잡고(雜故)라고 거짓 일컬은 사람은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고 정상(情狀)을 알고도 거짓 보고한 수령(守令)은, 당상관(堂上官)이든지, 공신(功臣)이든지, 의친(議親)이

(懿) [議] 親，竝依制書有違律，決杖一百；節度使推鞠罷黜；敬差官點考時有陵夷者，亦并鞫之。 一，軍士擇抄時，先入別侍衛、甲士、破敵衛、彭排、隊卒抄定，而正兵、忠贊衛、忠順衛、前衛朝士、作散軍士、閑良人、妾子孫、諸色軍士保人、諸邑鄉吏、衙前、鄉校生徒、才人、白丁內，騎兵則以能騎能射鞍馬有實人揀擇，雖弓力不强，果敢勇健者，有能射御者，并抄。 其步兵則以身實有力能步能走，一可敵百者，充擇。 抄軍時正軍及保人等，或逃避，或稱身病物故，或托故規避者，守令親審，報觀察使、節度使，觀察使、節度使更覈之，實則隨即充定。 其逃避者追捕，勿揀赦(依前) [前，依] 軍法處斬；猶不現身者，妻子及妄稱雜故者，全家徙邊；知情妄報守令，勿論堂上、功臣、議親，依制書有違律，決杖一百，抄軍後如此謀避人，妄報守令，亦依右例施行。 一，在喪人內，軍士及庶人，則例當從軍，如前衛、朝士、閑良、諸色人員，則雖短不從制，入征時大祥已過人，竝抄。 一，今依分定諸邑軍數揀擇，如不準

	<p>든지를 논할 것 없이 제서 유위율(制書有衛律)에 의거하여 장형(杖刑) 1백 대를 집행하도록 하고, 군사를 뽑은 후에도 이와 같이 피하기를 피하는 사람을 거짓 보고한 수령(守令)은 또한 위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p> <p>1.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 내에서 군사와 서민(庶民)은 예(例)에 따라 마땅히 종군(從軍)해야만 하는데, 전함(前銜) 조사(朝士)23339) 이거나 한량(閑良) 제색 인원(諸色人員)과 같은 경우는 비록 기일(期日)을 짧게 줄여 상제(喪制)에 따르지 않지마는 입정(入征)할 때에 대상(大祥)을 이미 지난 사람은 모두 뽑도록 하소서.</p> <p>1. 지금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한 군사와 수효에 의거하여 가려 뽑도록 하되, 만약 수효에 준(準)하지 못한다면, 다른 고을에 접거(接居)하여 응당 징발해야 될 사람의 내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은 미루어 옮겨서 수효에 충당하도록 하소서.</p> <p>1. 여러 고을에 군사를 뽑은 후에 만약 날날이 기발(起發)23340) 하지 않는다면, 다만 군사상(軍事上)의 기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간사하고 거짓된 것이 혹시 있게 될 것이니, 절도사(節度使)는 각기 그 지경(地境)에 친히 이르러 군사를 점검(點檢)하되, 군사가 백 명 이상이 되면 수령(守令)이 친히 스스로 데리고 올 것이며, 군사가 백 명 이하가 되면 색리(色吏)와 삼반 수리(三班首吏)23341) , 유향소의 좌수[留鄉座首], 품관(品官)이 데리고 점고(點考)하는 곳에 이르러 교부(交付)하도록 하되, 만약 질서 정연하게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수령(守令)은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결정할 것이고,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죄가 무거운 자는 사죄(赦罪) 전임을 가릴 것 없이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소서.</p> <p>1.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은 본디부터 산업(產業)이 없으므로, 지금 북방 정벌에 나가는 때에 종군(從軍)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혼자 장만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북방 정벌에 나갔다가 돌아올 동안에는 동류(同類) 중의 부실(富實)한</p>	<p>數， 則以他官接居應徵人內有武才者， 推移充數。 一， 諸邑抄軍後， 若不一起發， 則非惟失誤軍機， 奸僞容或有之， 節度使各其地境親到， 點檢軍士， 百名以上， 守令親自押領； 百名以下， 色吏及三班首吏、留鄉座首、品官押到點考處交付， 如不整齊領到， 則守令隨其輕重決罪， 其餘各人罪重者， 勿揀赦前， 全家徙邊。 一， 才人、白丁， 本無產業， 今赴征時， 從軍諸緣， 獨辦爲難， 赴征還來間， 以同類富實人各給六名， 以爲保人。 一， 軍士等如遮日、雨具、炊飯器、斫刀、斧劍等， 一應隨身之物， 考察齋來， 如有陵夷者， 率領差使員論罪。 一， 入征所用人馬乾糒， 準十五日備持。 一， 軍士所着衣服， 知會考察， 須令體短袖窄甲赤古里， 則聽今去敬差官之言， 用厚紙漬鹽水四五度做。 沙乙甲之回項、膝甲、騎馬前後遮亦用紙， 依上造作。 一， 步行人所着月老只， 并令自造， 騎兵中可備人， 亦令自造。 一， 甲上佩持筒介不便， 竝用貼介， 其未易造辦者， 勿令督造。 一， 郊草當以馬一匹給五束， 其所在差使員， 預考各運馬匹之數， 每</p>
--	---	--

	<p>사람으로 각기 6명씩을 주어 보인(保人)을 삼도록 하소서.</p> <p>1. 군사들은 차일(遮日)·우구(雨具)·취반기(炊飯器)23342) ·작도(斫刀)·도끼·칼 등의 일체 몸에 따른 물건을 가지고 왔는가를 살펴서, 만약 가져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거느리고 온 차사원(差使員)을 논죄(論罪)하도록 하소서.</p> <p>1. 들어가 정벌할 때 쓰이는 사람과 말의 건후(乾糶)23343) 는 15일을 기준(基準)으로 갖추어 가지도록 하소서.</p> <p>1. 군사들이 입는 의복은 통지[知會]하여 고찰(考察)하되, 모름지기 몸은 짧고 소매가 좁도록 할 것이며, 갑적고리(甲赤古里)는 지금 가는 경차관(敬差官)의 말을 들어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소금물에 4, 5번을 적시어 사을갑(沙乙甲)의 목을 두르는 슬갑(膝甲)23344) 을 만들도록 하고, 말을 탈 때 앞뒤로 막는 것도 또한 종이를 사용하여 위의 것에 의거하여 만들게 하소서.</p> <p>1. 걸어다니는 사람의 입는 월로지(月老只)도 모두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며, 기병(騎兵) 중에 갖추어야 할 사람도 또한 스스로 만들도록 하소서.</p> <p>1. 갑옷 위에 차는 통개(筒介)23345) 는 불편하니 모두 첩개(貼介)를 사용하되, 쉽사리 만들 수 없는 것은 독촉하여 만들지 말도록 하소서.</p> <p>1. 들판의 풀은 마땅히 말 1필에 5속(束)을 주도록 하되, 그 있는 곳의 차사원(差使員)은 각기 운반하는 마필(馬匹)의 수효를 미리 상고하여 매 숙소(宿所)에서 풀을 베어 모아 쌓아서 쫓말을 세우고는 모두를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에게 주면 그 차사원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이며, 당초에 들판의 풀을 베어 올 때는 군사들의 숙소(宿所)에서 사방(四方)으로 10리(里) 안에서는 풀을 베지 못하도록 하소서.</p> <p>1. 산료(散料)23346) 할 때 수효가 많은 군사를 낱낱이 점명(點名)23347) 하여 제사를 매겨 주는 것[題給]은 어려울 것이니, 본고을의 수령이 군사의 수목(數目)을 상고하여 군사를 거느린 차사원(差使員)과 함께 석수(碩數)로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이며, 여러 고을의 장수들은 차례대로 나누어 주되, 매 석</p>	<p>於宿所刈聚積之立標， 都授率領差使員， 其差使員分給所領軍士， 當初郊草刈取時， 軍士宿所四方十里內， 勿令竝刈。 一， 散料時數多軍士箇箇點名題給爲難， 本官守令， 考軍數目， 同領軍差使員以碩數分給， 諸邑將帥， 次次均分， 每碩或未滿十五斗者， 或雜以塵土腐朽者容或有之， 令其道觀察使， 定剛明差使員， 預先作碩積置後， 令敬差官抽出斗量， 散料時亦令率領差使員， 依右例斗量， 如有雜物相雜， 或不準數作碩者， 勿揀赦前， 色吏、監考全家徙邊； 守令依制書有違律， 勿論功臣、議親、堂上官， 決杖一百； 觀察使、都事并重論。 一， 元非軍士人， 則如甲冑、弓箭一應軍器， 備之爲難， 用諸邑所藏元數， 以三分之一擇給官藏， 不足則以留在軍士有實甲冑換給。 一， 無章標則識別爲難， 裁帛書某差使員所領， 某道某邑居某軍士某帖胸， 又於頭具竝插肖旗。 一， 軍士等行路時， 或有虛稱疾病者， 率領差使員詳悉親審， 如有妄告者， 堅囚所在官， 報其道觀察使， 推鞠啓聞， 依軍法處斬； 病實者交付所到官， 救以粥飯藥物， 待差赴征。</p>
--	---	--

(碩)마다 혹은 15두(斗)에 차지 못한 것이나, 혹은 먼지와 흙을 섞어 썩은 것도 간혹 있을 것이니,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강직하고 명민(明敏)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미리 먼저 석수(碩數)를 만들어 쌓아 둔 후에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뽑아 내어 말로 곡식을 되도록 할 것이며, 산료(散料)할 때는 또한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위의 예(例)에 의거하여 말로 곡식을 되도록 하되, 만약 잡물(雜物)이 서로 섞여져 있거나, 혹은 수효에 준하여 석수(碩數)를 만들지 않은 것은, 사죄(赦罪) 전임을 가릴 것 없이 색리(色吏)23348)와 감고(監考)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고, 수령은 제서 유위율(制書有衛律)에 의거하도록 하되, 공신(功臣)과 의친(議親)과 당상관(堂上官)을 논할 것 없이 장형(杖刑) 1백 대를 집행하도록 하고, 관찰사(觀察使)와 도사(都事)도 모두 중죄(重罪)로 논결(論決)하도록 하소서.

1. 본디 군사가 아닌 사람은 갑옷·투구·활·화살 등 모든 군기(軍器)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 고을에 간직한 원수(元數)를 사용하여 3분이 1을 가려서 주도록 하고, 관청에서 간직한 것이 모자란다면 남아 있는 군사들의 실제 있는 갑옷과 투구로 바꾸어 주도록 하소서.

1. 장표(章標)23349)가 없으면 분별하여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니, 비단을 끊어서 모차사원(某差使員)이 거느린 모도(某道) 모습(某邑)에 거주하는 모군사(某軍士)인 모(某)라고 써서 가슴에 붙이고, 또 두구(頭具)에 있어서도 모두 초기(肖旗)를 뜻하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길을 갈 때에 혹시 거짓으로 병이 났다고 일컫는 자가 있으면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친히 살펴보아서 만약 거짓 알리는 자가 있으면 관할 고을에 단단히 가두고는 그 도(道)의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추국(推鞠) 계문(啓聞)하여 군법(軍法)에 의거해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하고 병이 실제 있는 자는 이르는 고을에 교부(交付)하여 죽·밥과 약물(藥物)로써 구료(救療)하여 병이 낫기를 기다려 정벌에 나가도록 하소서.

一, 行路時正軍及保人中如有物故, 率領差使員令所到官守令, 具棺埋置立標, 依例致奠, 移文所居邑知會, 自願移葬者, 令諸邑諸驛遞送。 一, 軍士等往還時及赴征時所用多曷, 自備爲難, 令諸道觀察使、節度使, 用會計付鐵物, 分定諸邑打造, 每一人各給, 行路時番兒多曷一部, 赴征時頭銳釘多曷二部, 其或不精造, 或不給與, 則守令及節度使、觀察使重論。 一, 軍士入居時, 永安道安邊以北, 則由一路而行; 忠淸、江原道, 則諸邑軍資不敷, 要須分道而行, 所經道路, 遙度爲難, 今去敬差官同其道觀察使、節度使議定軍士宿處, 遠不過六、七十里, 量其所經邑軍需之數, 某差使員所領軍士數幾, 受某邑幾日糧, 具數以啓後更議。 一, 諸道上來軍士各處津渡過涉時船隻, 外方則令諸道觀察使、都事, 勿論公私船, 不下三”四十隻推刷, 所在守令, 多率邑吏護涉; 路梁、楊花渡、三田渡、廣津則令工曹推刷, 同曹及義禁府、漢城府郎廳護涉, 如或陵夷推刷, 或不用心護涉, 人馬溺死, 則議涉守令郎廳及率領守令、將帥, 并重論。 一,



	<p>1. 길을 갈 때에 정군(正軍)과 보인(保人) 중에서 만약 죽는 자가 있으면,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은 이르는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관(棺)을 갖추어 묻어 두고 뜻말을 세우고는 예(例)에 의하여 전(奠)을 드리게 하며, 거주하는 고을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통지(通知)하며, 옮겨 장사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으로 하여금 차례로 여러 곳을 거쳐서 보내도록 하소서.</p> <p>1. 군사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든지 정벌에 나갈 때에 쓰이는 다갈(多曷)23350) 은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 도(道)의 관찰사와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회계(會計)를 사용하여 철물(鐵物)을 주어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이를 만들도록 하여, 1인마다 각기 길을 갈 때는 번아 다갈(番兒多曷) 1부(部)씩을 주도록 하고 정벌에 나갈 때는 두예정 다갈(頭銳釘多曷)23351) 2부(部)씩을 주도록 하되, 그 혹시 정성을 들여 잘 만들지 않거나, 혹시 주지 않거나 한다면, 수령(守令) 및 절도사(節度使)·관찰사는 중죄(重罪)로 논결(論決)하게 하소서.</p> <p>1. 군사들이 함경도(咸鏡道)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영안도(永安道)의 안변(安邊) 이북(以北) 지방은 한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고, 충청도(忠淸道)와 강원도(江原道)는 여러 고을의 군자(軍資)가 넉넉치 못하니 모름지기 길을 나누어 가도록 할 것이며, 경유하는 길도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 가는 경차관(敬差官)은 그 도(道)의 관찰사·절도사와 함께 군사들의 숙박할 곳을 의논해 정하되, 멀어도 6, 70리(里)에 지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 지나가는 고을의 군수(軍需)의 수량을 헤아려 모차사원(某差使員)이 거느린 군사의 수효 몇 명이 모습(某邑)의 몇 날 양식을 받았는가를, 수량을 갖추어 위에 아뢰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p> <p>1. 여러 도(道)에서 올라온 군사들이 각 곳의 나루를 건너 갈 때의 배[船隻]는, 지방에서는 여러 도(道)의 관찰사와 도사(都事)로 하여금 공선(公船)과 서</p>	<p>都目狀內諸色軍士，上、中、下分揀施行，三件成帖，送于都元帥，某某軍幾名，摠數啓聞。一，軍士行路時，路邊禾穀踏損刈取，或於民間作弊可慮，令率領差使員軍士內，擇職高有識人，定爲將帥，嚴加考察，使不得如此，而或有所犯至重，則依軍法處斬，輕犯人隨宜論罪，陵夷考察將帥及差使員，勿論堂上官、功臣、議親，輕重分揀決杖。一，諸道軍士入來時，所經諸邑，散料散草，或不趁時，人馬飢困可慮，分遣從事官于京畿、江原、忠淸道考察，并察軍士民間作弊者。一，凡軍令要須三令五申，使皆通曉，然後自不犯令，事目內辭緣，令諸邑守令備細知會，使軍士無不周知，敬差官到處講論，如有不能通曉者，其官守令論罪。一，軍士率領差使員，多齋酒肉米糲，作弊可慮，令分遣從事官檢舉，而騎卜馬察訪外，並用衙養馬。一，令今去敬差官，知會外方居諸將軍官，來七月初十日及到京中，甲冑、長片箭受去，其到京給驛騎馱，并給從人二名，私持騎馱各一匹，草料粥飯。”右副承旨權景禧將事目以啓。上曰：“事目內處斬</p>
--	---	--

선(私船)을 논할 것 없이 3, 40척(隻)에 밀돌지 않게 찾아내어 있는 곳의 수령(守令)이 고을의 아전을 많이 거느리고서 보호해 건너도록 할 것이며, 노량(露梁)·양화도(楊花渡)·삼전도(三田渡)·광진(廣津)에서는, 공조(工曹)로 하여금 배를 찾아내어 공조(工曹)와 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郎廳)23352) 이 함께 보호해 건너도록 할 것인데, 만약 혹시 배를 찾아내는 일에 해이(懈弛)하거나, 혹시 보호해 건너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사람과 말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면 보호해 건너는 수령(守令)과 낭청(郎廳)이든지, 거느린 수령과 장수(將帥)는 모두 중죄(重罪)로 논결(論決)하도록 하소서.

1. 도목장(都目狀) 내에 제색 군사(諸色軍士)23353) 는 상(上)·중(中)·하(下)로 분간(分揀)하여 시행하고 3건(件)을 첩(帖)을 만들어 도원수(都元帥)에게 보내어 모모군(某某軍) 몇 명 총수(總數)를 위에 계문(啓聞)하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길을 갈 때에 길가에 있는 버를 밟거나 베어와서 혹시 민간(民間)에 폐를 끼치게 될 일이 염려스러우니,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군사들 중에서 관직이 높고 견식이 있는 사람을 거러서 장수(將帥)로 삼아 엄중히 고찰(考察)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못하도록 하고, 혹시 범죄가 지극히 무거운 것이 있으면 군법(軍法)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고,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은 적당히 논죄(論罪)할 것이며, 흐리멍덩하게 고찰(考察)한 장수와 차사원(差使員)은 당상관(堂上官)이든지, 공신(功臣)이든지, 의친(議親)이든지론 논할 것 없이 죄의 경중(輕重)을 분간(分揀)하여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하소서.

1. 여러 도(道)의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지나간 여러 고을에서 산료(散料)와 산초(散草)를 혹시 시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사람과 말이 굶주려 피곤할 것이 염려되니, 종사관(從事官)을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충청도(忠淸道)에 나누어 보내어 고찰(考察)하도록 하고, 군사들이 민간(民間)에 폐를 끼치는 것도 아울러 살피도록 하소서.

條幾許。”景禧啓曰：“禾穀踏損，逃避等事耳。”上曰：“此軍機重事，不可不如此也。”

	<p>1. 무릇 군령(軍令)은 자주 되풀이하여 훈령하고 신칙[三令五申]하여 모두 환하게 알도록 한 후에야 스스로 영(令)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사목(事目) 내의 사연(辭緣)은 여러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상세히 알도록 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경차관(敬差官)도 이르는 곳마다 강론(講論)하도록 할 것이니, 만약 환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을의 수령은 논죄(論罪)하도록 하소서.</p> <p>1. 군사를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은 술·고기·쌀가루를 많이 가져가므로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 나누어 보낸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고, 짐 싣는 말을 탄 찰방(察訪) 외에는 모두 관아(官衙)에서 기른 말을 사용하도록 하소서.</p> <p>1. 지금 간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지방에 거주하여 여러 장수와 군관(軍官)에게 통지(通知)하여 오는 7월 초10일에 서울에 와서 갑옷·투구·장전(長箭)·편전(片箭)을 받아 가도록 하고, 그들이 서울에 이를 때는 역(驛)에서 타는 말과 짐 싣는 말을 주도록 하고, 종인(從人) 2명에게 사사로이 사용할 타는 말, 짐 싣는 말 각 1필과 초료(草料), 죽·밥[粥飯]을 아울러 주도록 하소서.</p> <p>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사목(事目)을 가지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목(事目) 내에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조목이 몇 개나 되는가?”  하니, 권경희가 아뢰기를,  “벼를 밟아 손상시키고 도망해 피하는 등의 일뿐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군사상(軍事上)의 기밀로 중대한 일이니, 이와 같이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p>	
--	--	--

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4일  
(기묘) 4번째기사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신종호(申從濩) 등이 소(疏)를 올리기를,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흉노(凶奴)가 해독을 끼친 것은 유래가 오래 되었는데, 상세(上世)에서는 반드시 이를 정벌한 이가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주(周)나라·진(秦)나라·한(漢)나라가 이를 정벌했지만, 모두 상책(上策)은 얻지 못했다. 주(周)나라는 중책(中策)을 얻었고, 한(漢)나라는 하책(下策)을 얻었고, 진(秦)나라는 계책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시황(始皇)이 몽염(蒙恬)에게 명하여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흉노(匈奴)를 7백여 리(里)나 물리쳤으니 오랑캐들이 감히 남방에 내려와서 말을 먹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대(三代)23354 이하(以下)에서는 외국의 오랑캐를 뛰어난게 제어(制御)한 나라는 진(秦)나라보다 더 성(盛)하게 한 나라는 없었는데도, 계책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찌 조그만 분노(憤怒)로 인하여 백성의 힘을 사역(使役)하여 세상이 토붕(土崩)하게 됨으로 천하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큰 일을 좋아하고 공명(功名)을 좋아하여 무력(武力)을 남용(濫用)한 군주(君主)들은 모두가 계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 분노(憤怒)를 참지 못하며 장차 많은 군대를 일으켜 불모(不毛)의 땅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므로, 시종신(侍從臣)과 대간(臺諫)이 극론(極論)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였으나 임금의 결단이 이미 분발(奮發)되어 끝내 돌이킬 수가 없으니 임금의 마음은 깊고 원대(遠大)하므로 쉽사리 헤아릴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또한 그 만분의 일분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수고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편안할 수가 없고 잠시 동안 방비하지 않으면 영구히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방의 오랑캐가 국법(國法)을 범하여 변방 백성이 손해를 입으니 차라리 군사(軍士)를 피로하게 하고 비용을 허비할지라도 전쟁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하(殿下)께서 결단하여 반드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다만 전쟁을 하는 이익만 보시고 그 손해는 보시지 못하며, 다만 무력(武力)을 남용(濫用)하는 쉬운 것만 들으시고 그 어려운 것은 듣지 못하시어

○司憲府大司憲申從濩等上疏曰：  
古人云：“凶奴爲害，所從來久矣，未聞上世有必征之者也。周、秦、漢征之，皆不得上策，周得中策，漢得下策，秦無策焉。”始皇命蒙恬，將三十萬衆，却匈奴七百餘里，胡人不敢南下而牧馬，三代以下雄制外夷者，莫盛於秦，而以爲無策者，豈非因小憤役民力，宇內土崩，爲天下笑耶！世之好大喜功、窮兵黷武之主，皆無策者也。今殿下不忍悁悁之憤，將舉大兵，深蹂不毛，侍從、臺諫，極論不置，英斷已奮，訖不可回，宸禁深遠，未易測度，然亦竊窺其萬一矣。不一勞則不久佚，不暫備則不永寧，北虜干紀，邊氓被害，寧勞師費財而兵不獲已，此殿下所以斷然而必行者也。殿下徒見用兵之利，而不見其害；徒聞黷武之易，而不聞其難。欲安民而興師，是何異揚湯而止沸，抱薪而救火，兵連禍結，從此而始矣。臣等反覆開陳，凱動天聽，而殿下視爲迂闊而莫之省。噫！迂闊之論，世多有之，在秦穆則叔之言爲迂闊；在漢武則韓安國之言爲迂闊，其後肴陵之敗、馬邑之失利，果如何耶！願

백성을 편히 하려고 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끊는 물을 드 날리면서 끊는 것을 그치게 하고, 섯을 안고서 불을 끄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전쟁이 계속되어 재화(災禍)가 맺어지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臣) 등이 되풀이하면서 진술하여 임금의 들어주시기를 엿보고 있었으나, 전하께서는 오활(迂闊)23355) 하다고 여기고는 이를 살피지도 않았습니 다. 아아! 오활(迂闊)하다는 의논은 세상에 많이 있었으니, 진 목공(秦穆公) 시대 에 있어서는 건축(蹇叔)의 말이 오활함이 되었고, 한 무제(漢武帝) 시대에 있 어서는 한안국(韓安國)의 말이 오활함이 되었는데, 그 후 효릉(肴陵)에서의 패 전(敗戰)과 마읍(馬邑)에서의 실리(失利)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전하께서는 지난 시대의 후회했던 일들을 밟지 말기를 원합니다. 건주(建州)의 오랑캐는 우리와 혼단(釁端)을 맺어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틈을 타서 문득 발동하는데,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게 되면 반드시 전갈의 독침(毒針)을 함부로 쏘게 될 것이니, 토병(土兵)이 수효가 적고 힘이 약하여 거의 대항하기가 어 려운 편입니다. 조정(朝廷)에서 도와 성원(聲援)하려고 하지마는, 건장한 병졸 과 용감한 장수가 모두 북쪽 변방에 나가 있으므로 힘으로 능히 구원하지 못 하니 나라의 수치(羞恥)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별빛이 경계를 보였는데, 그 점(占)은 주로 전쟁에 관 한 것이었으니, 꼭 두려워하며 반성 수양할 시기입니다. 한(漢)나라 때에 치 우기(蚩尤旗)23356) 가 나타나니 그 후에 군대가 30년 동안이나 출동하여 나 라 안이 텅 비어 거의 전복(顛覆)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천도(天道)가 사 람에 보이는 것이 그 응험(應驗)이 이와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하시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억누르시고는 홀로 결단하여 이를 행하시 니, 예로부터 이같이 하고도 능히 성공(成功)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전쟁의 단서(端緒)가 한 번 열리게 되면 해독이 한없는 지경에 미치게 될 것이니, 전 하께서는 이를 근신(謹慎)해야 할 것입니다.

殿下， 毋蹈前世之悔也。 建州虜醜， 與我結釁， 欲噬之心， 乘間輒發， 當秋高馬肥， 必肆蠱毒， 士兵寡弱， 殆難支梧， 朝廷欲助聲援， 而健卒猛將， 盡赴北庭， 力不能救， 恐貽國羞， 此不可不爲之預慮也。 去歲星文示警， 其占主兵， 正恐懼修省之時， 漢時蚩尤之旗見， 厥後師行三十年， 海內虛耗， 幾至顛覆， 天道示人， 其應如此， 殿下忽天戒， 據衆議， 獨斷而行之， 自古如此而能濟者鮮矣。 兵端一開， 害及無窮， 惟殿下慎之。 伏觀北征教書， 雪涇陽周恥， 報雲中漢羞之語， 獮狄內侵， 命將征之， 盡境而還， 周不以爲恥也； 匈奴入寇， 命將擊逐， 出塞而還， 漢不以爲讎也。 蓋夷狄禽獸， 難與校其曲直， 勞師制勝， 快心於窮荒不毛之域， 非帝王之盛節也。 殿下登三邁五， 周宣、 漢武不能擬其髣髴也。 雪恥報讎， 漢文之所不爲， 而獨汲汲於此， 何耶！ 千鈞之弩， 不爲鼷鼠而發機， 以堂堂大國之勢， 忍與小醜角勝負哉！ 唐太宗自以爲威制六合， 功冠萬代， 乃曰：“雪恥酬百王， 除兇報千古。” 雄心壯志， 蓋將泛濛汜而涉溟渤， 猶未厭也， 其後

삼가 북방 정벌의 교서(敎書)를 보니 경양(溇陽)의 주(周)나라 치욕(恥辱)23357) 을 씻고 운중(雲中)의 한(漢)나라 수치(羞恥)23358) 를 갚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험윤(獫狁)23359) 이 안으로 침범하므로 장수에게 명령하여 이를 정벌하여 국경 끝까지 나갔다가 돌아왔으니 주(周)나라는 이를 수치(羞恥)로 여기지 않았으며, 흉노(匈奴)가 쳐들어오므로 장수에게 명령하여 이를 쳐서 쫓아내어 변방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으니 한(漢)나라는 이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개 오랑캐는 짐승이므로 그들과 옳고 그름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군사를 피로하게 하면서 승리하여 초목이 나지 않는 먼 오랑캐 땅에서 마음에 상쾌함을 얻는 것은 제왕(帝王)의 성절(盛節)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삼왕(三王)23360) 보다도 더 낫고 오제(五帝)23361) 보다도 더 뛰어났으니, 주 선왕(周宣王)과 한 무제(漢武帝)도 하지 않던 바인데, 유독 이일에 서두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천균(千鈞)23362) 무게의 쇠뇌[弩]는 새양쥐를 위하여 고동을 쏘지 않는 법인데, 당당(堂堂)한 큰 나라의 세력으로 차마 작은 오랑캐와 더불어 승부(勝負)를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당 태종(唐太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엄은 육합(六合)23363) 을 제압하고 공업(功業)은 만대(萬代)에 으뜸간다고 여기고는 ‘수치(羞恥)를 씻어 백왕(百王)23364) 에게 보답하고, 흉적(兇敵)을 제거하여 천고(千古)에 보답한다.[雪恥酬百王 除兇報千古]’고 했으니, 웅대(雄大)한 마음과 웅장한 뜻은 장차 몽범(濛汜)23365) 을 지나고 명발(溟渤)23366) 을 건너도 오히려 만족함이 없을 정도인데도, 그 후에 요동(遼東)의 싸움에 시달려서 천자(天子)의 위엄을 손상시켰으니, 그가 이른바 수치(羞恥)를 씻고 흉적(兇敵)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뒷날의 군주(君主)는 깊이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이 오늘날의 거사(擧事)를 살펴보건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으로써 논한다면, 지는 것이 복이 되고 이기는 것이 화(禍)가 될 것이니, 무슨 이유

困於遼東，虧喪天威，其所謂雪恥報兇者，果何在耶？後之人主，可不深戒乎哉！臣等觀今日之舉，以勝負論之，負爲福而勝爲禍。何者，六師失利，交綏而退，將士知戒，益嚴邊備，虜不能犯，此其福也。捷書星馳，凱音交奏，殿下捧萬壽之觴，薦勳祖廟，有輕視四夷之心，將士狃勝，虜則含怒欲報，嘯聚醜類，健馬利兵，歲犯王略，邊氓有守陴之苦，朝廷貽旰食之憂，其爲害可勝道哉！昔漢高帝欲伐匈奴，兵踰勾注，婁敬猶諫之，今王師未動，何難止之？在成命一下耳。選賢將付邊鎖，完城壁鍊士卒，有不可犯之形，來則制之，去則勿追，此當今制戎之上策也。釋上策而不爲，欲效秦人之無策，臣等不知其可也。

御書曰：“兵戰之事，予豈好之，但以勢不得已。卿等所以諫之不已者，徒恐兵連禍結而已，已定之事，今何止也？不允。”

인가 하면 육사(六師)23367)가 이기지 못하고 양군(兩軍)이 다 같이 물러간다면 장수와 군사가 경계할 줄을 알아서 변방의 수비를 더욱 엄하게 하여 오랑캐가 능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 복이 되는 것이고, 첩서(捷書)23368)가 아주 빨리 달려오고 개가(凱歌)23369)가 번갈아 아뢰게 되면, 전하(殿下)께서 만수(萬壽)를 축원하는 술잔을 받으시고 조묘(祖廟)23370)에 공훈(功勳)을 바치고는 사이(四夷)를 깔보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장수와 군사는 승리에만 익숙하게 됨으로 오랑캐는 분노(憤怒)를 품고서 갇으려고 하여 나쁜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건장한 말과 예리한 병기(兵器)로 왕의 지경을 해마다 침범하여 변방 백성은 성가퀴를 지키는 노고가 있고 조정에서는 정무에 바쁜 근심을 끼치게 되니, 그 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한 고제(漢高帝)가 흉노(匈奴)를 정벌하려고 하여 군사가 구주(句注)23371)를 넘었는데도 누경(婁敬)은 오히려 이를 간(諫)했으니, 지금 왕의 군사가 출동하지 않았는데 이를 중지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임금의 명령을 한번 내리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훌륭한 장수를 뽑아서 변방의 수비를 맡겨서 성벽(城壁)을 튼튼히 하고 사졸(士卒)을 교련(敎鍊)하여 침범할 수 없는 형세가 되도록 하여 오랑캐가 오면 이를 제어하고 오랑캐가 가면 뒤쫓지 않는 것은, 이것이 지금 오랑캐를 제어하는 가장 좋은 계책인데, 가장 좋은 계책을 버리고 하지 않고서는 진(秦)나라 사람의 계책 없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니, 신 등은 그 옳은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하기를,

“군사가 싸우는 일을 내가 어찌 이를 좋아하겠는가? 다만 형세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경(卿) 등이 이를 간(諫)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다만 전쟁이 계속되어 화(禍)가 맺어짐을 두려워하는 것뿐인데, 이미 정해진 일을 지금 어찌 중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는,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5일 (경진) 1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하여 양전(兩殿)23372) 에서 감선(減膳)23373) 하였는데, 지금 비가 이미 흠족히 내린 까닭으로 내가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그전대로 회복하기를 청한다.” 하니, 양전(兩殿)에서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주상(主上)이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그전대로 회복한 후에 마땅히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그전대로 회복할 것이니, 그전대로 음식을 올리게 하라.” 하였다.</p>	<p>○庚辰/傳曰：“頃因旱乾，兩殿減膳，今雨澤已足，故予請復膳，敎曰：‘主上復膳，然後當復膳。’其依舊進膳。”</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6일 (신사)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권경우(權景祐)와 지평(持平) 이자건(李自健)이 북방 정벌이 적당하지 못함을 논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큰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지할 수가 없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신(臣)은 어릴 때부터 북방에 드나들었으므로 오랑캐의 실정을 조금 알고 있는데, 경솔히 가서 정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인해서 소매 속의 글을 내어 아뢰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 “운성(穩城)은 서울과 거리가 2천 5백여 리(里)나 되니 하도(下道)의 군사는 모름지기 8월 초승에 출발해야만 그 기일에 미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는 벼가 경작하는 논에 가득 차 있으니 밟아서 손상시킬 것이 염려가 됩니다. 군사를 돌이킨 후에는 쌓인 눈이 반드시 깊을 것이니, 6천 리(里)의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말은 피곤하고 사람은 굶주릴 것이니 능히 돌아오기를 보장(保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서는 우선 이 거사(擧事)를 정지시켰다가明年的 겨울을 기다려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금년 여름에 들어가 공격한다.’고 해서 오랑캐로 하여금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겨울에 이르러서는 저들이 반드시 그 경계와 수비를 느슨하게 할 것이니, 그런 후에 저들의 형세</p>	<p>○辛巳/御經筵。講訖，司諫權景祐、持平李自健論北征不便。上曰：“大事已定，不可已也。”特進官李克均啓曰：“臣自少出入北方，稍知虜情，不可輕易往伐。”因出袖中書以啓。其略曰：“穩城距京城二千五百餘里，下道之兵，須發八月初，乃及其期，其時則禾稼盈疇，踏損可慮，旋師之後，則積雪必深，往返六千里之路，馬困人飢，其能保還乎？臣意以爲，姑停此舉，以待明年之冬，聲言今夏入攻，使虜莫知我情，則至冬彼必緩其戒備，然後審彼形勢，預積郊草，峙我軍糧，則庶幾威武可振。且本道軍糧不敷，除今糧費，所餘不知有幾，如遇凶荒，漕路不通，救民無術，益可慮也。且今入征之後，自慶源至造山，乃兀狄哈沿</p>



	<p>를 자세히 살펴서 들관의 풀을 미리 쌓아두고 우리의 군량(軍糧)을 쌓아둔다면 거의 위세(威勢)와 무력(武力)을 떨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본도(本道)23374) 는 군량이 넉넉지 못하니 지금 군량의 소비(消費)를 제한하면 남은 것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흉년을 만난다면 운반하는 길이 통하지 않아서 백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또 지금 들어가 정벌한 후에 경원(慶源)으로부터 조산(造山)에 이르기까지는 곧 울적합(兀狄哈)의 바닷가를 따라 경유(經由)하는 길이니, 저들의 계책이 이곳에 나온다면 허술한 곳을 공격당할 근심도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이곳에 급히 서둘지 말고 금년은 서쪽 변방에 오로지 힘을 써서 만전(萬全)을 기약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도원수(都元帥)에게 보여서 이를 의논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의논하는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금년이 들어가 공격할 형세가 되었으며, 명년에도 이와 같을 것이고, 우명년(又明年)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이 의논을 가지고 도원수(都元帥)에게 물으니, 도원수는 말하기를,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었지마는 일을 한다면 빨리 하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는 까닭으로, 지금 갑자기 군사를 일으킨 것뿐이다. 또 대간(臺諫)들의 말에는, ‘사졸(士卒)이 원망합니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태평한 시일이 오래 되어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못한 까닭으로 두려워해서 말한 것뿐이니, 어찌 민심(民心)의 원망한다는 이유로써 이 큰 거사(舉事)를 정지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p>	<p>海經由之路，彼計出此，則擣虛之患，豈可不慮？伏望毋急於此，今年則專事西邊，期於萬全。”上曰：“當示都元帥議之，但議者皆曰：‘今年爲入攻之勢，明年如此，又明年如此。’予將此議問諸都元帥，則云：‘不爲則已，爲則莫若速也。’故今遽興師耳。且臺諫之言曰：‘士卒怨咨。’是則昇平日久，民不見兵，故畏懼而言耳。豈以民心之怨咨，停此大舉乎？”</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7일 (임오) 5번째기사</p>	<p>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임금의 계획이 먼저 정해져서 북방 정벌에 마음을 단단히 차리고 계시니, 만약 뛰어난 무용(武勇)과 명확한 판단으로 큰 계책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능히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허종(許琮)을 임금의 면전(面前)에</p>	<p>○武靈君柳子光上疏曰：  伏以聖算先定，銳意北征，若非神武明斷，審於大計，其能然乎？其以許琮爲面諛，引樊噲爲言者非也；其以窮兵、</p>

서 아첨한다고 인정하여 변쾌(樊噲)의 고사(故事)23387) 를 인용(引用)하여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무력(武力)을 남용(濫用)하는 것으로 한 무제(漢武帝)와 진 시황(秦始皇)의 고사(故事)를 인용(引用)하여 말을 하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모두 서생(書生)과 우유(迂儒)23388) 들이 전하(殿下)의 성산(成算)23389) 을 움직여서 반드시 북방 정벌을 간(諫)하여 중지시키려고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허중(許琮)이 어찌 전하의 면전에서 아첨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허중은 변방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지금 또한 북쪽 지역을 세밀히 살피고 있으니, 그가 토벌을 청하는 것은 나사중(羅嗣宗)이 살해를 당한 치욕(恥辱)을 씻고 나라의 위엄을 떨치려고 한 것이니 마땅한 일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의논하는 신하들이 인사(人事)와 천시(天時)의 염려할 말한 것을 논하여 되풀이하면서 그치지 않았는데, 천시(天時)와 인사(人事)의 혹 그렇기도 하고 혹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은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사(人事)의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은 오진(五鎭)에 군사와 말이 쇠잔하고 피폐하여 거의 떨치지 못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군사와 말이 쇠잔하고 피폐한다면 능이 적(敵)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을 보장(保障)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남방의 군사를 많이 징발한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피곤하므로 북방은 아마도 많은 양(羊)떼를 내몰아 사나운 범을 공격하는 듯합니다. 큰 나라가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마땅히 만전(萬全)한 것으로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혹시 실패하는 누우침이 있게 된다면 그 치욕(恥辱)은 어찌 한 사람의 나사중(羅嗣宗)이 살해를 당한 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이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방(西方)의 적(賊)은 허혼(許混)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그 염려는 실제 북방 정벌의 급한 것보다 더 깊은 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의 의논은 금년 가을의 거사(舉事)는 잠시 정지시키고는 허중(許琮)을 절도사(節度使)로 삼고, 성준(成俊)·이철견(李鐵堅)·이극균(李克均)·

鬻武, 引漢武、秦皇爲言者亦非也。此皆書生迂儒, 欲動殿下之成算, 必欲諫止北伐, 而設爲辭耳。琮豈面謾殿下者也? 琮備諳邊事, 今亦觀察北地, 其爲請討, 欲雪羅嗣宗見殺之恥, 以張國威宜也。去四月二十九日, 議臣論人事、天時之所可慮者, 反覆不已, 天時、人事之或然或未然, 不可不深慮, 今人事之最宜先慮者, 五鎭(四) [士] 馬之殘弊, 幾於不振也。士馬殘弊, 則其能深入敵境, 保其必勝乎? 雖曰多調發南兵, 困於道路, 比至北門, 其殘弊也必甚, 臣恐驅羣羊而攻猛虎。大國出師, 當以萬全爲算, 倘有蹉跎之悔, 其恥豈一嗣宗之見殺乎? 此不可不深慮者也。況西賊欲報許混之讎, 其慮實深於北征之急, 是以臣議以姑停今秋之舉, 以許宗爲節度使, 如成俊、李鐵堅、李克均、李季全列爲五鎭守將, 以重北虜之聽聞, 則北門可鑰, 北虜可威。唐郭子儀之受拜回紇; 宋寇準之鎖鑰北門, 其曰軍中有一范, 西賊聞之, 心膽寒然, 則一人之重, 可以威四方; 一人之重, 可以安國家, 其重如此。況使琮等四、五重臣, 使守北門,

이계동(李季全)과 같은 사람을 나라히 오진(五鎭)의 수장(守將)으로 삼아, 북쪽 오랑캐의 들음에 무계를 가한다면, 북방의 관문(關門)을 닫을 수가 있을 것이고 북쪽 오랑캐를 위압(威壓)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唐)나라의 곽자의(郭子儀)는 회홀(回紇)에게 절을 받았으며, 송(宋)나라의 구준(寇準)은 북방의 관문(關門)을 봉쇄(封鎖)하였으며, 군졸들의 말에, ‘군중(軍中)에 한 사람의 범중엄(范仲淹)이 있으니 서방(西方)의 적(賊)이 이를 듣고는 심담(心膽)이 서늘하게 되었다.23390)’고 했으니, 그렇다면 한 사람의 중망(重望)이 사방(四方)을 위압(威壓)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중망(重望)이 국가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대한 임무가 이와 같은데, 하물며 허종(許琮) 등 4, 5명의 중신(重臣)들로 하여금 북방의 관문(關門)을 지키도록 하고, 지금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정벌하려는 2만의 현재 병졸이 길에서 쓰는 비용을 모두 오진(五鎭)에 운반하여 금년에는 토병(土兵)을 은혜로 무마(撫摩)하여 그 쇠잔하고 피폐한 것을 진작(振作)시켜 그 용기(勇氣)를 고무(鼓舞)해 주고 또 면포(綿布)를 많이 운반해 두고, 또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들어 그 오진(五鎭)에 흘려서 주면, 성(城) 밑에 거주하는 야인(野人)이 그들의 욕심을 충족(充足)하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이 입게 된 것을 즐겁게 여겨서 앞장서서 들어가 정벌하는 성의(誠意)가 어떤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서방 적(賊)의 실정(實情)도 아울러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토병(土兵)을 어루만져 길러서 능히 용기를 진작(振作)하게 하여 모두 한 번 싸우기를 생각하게 한다면, 혹 내년 봄에서 가을까지 병졸이 비록 2만 명에 차지 않더라도 또한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정벌할 수 있을 것이므로, 파죽지세(破竹之勢)23391)로 공(功)을 세워 백두산(白頭山)에 비석(碑石)을 세우고 흑룡강(黑龍江)에 말을 물마시게 할 것이니, 그 거사(舉事)는 만전(萬全)을 기해야 하므로 도리어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력(國力)을 기르고 예병(銳兵)을 길러 오랫동안 스스로 편안하게 있다가 시기를 기다려 출동(出動)하는 것이니, 이목(李牧)23392)이

以今入征二萬見兵道路冗費，盡輸之五鎭，期以今年，恩撫土兵，振其殘弊，鼓其勇氣，又多輸綿布，又煮海爲鹽，散其五鎭，城底野人，肥其所欲，樂其飽煖，審觀前道入征誠意何如，而竝觀西賊之情，撫養土兵，而能使鼓氣，皆思一戰，則或明年春至於秋，兵雖不滿二萬，亦可入征收功，破竹立石白頭山，飲馬黑龍江，其爲舉也，在於萬全，顧未晚也。蓄力養銳，久於自逸，待時而發，李牧所以稱良將於趙者，用此術也。今不慮土馬之強弱，卒遽而專意北征，南方勇銳者，盡驅北門，或未及旋師，而又西賊結爲大倫入寇，則何以哉？伏願殿下，更留三思。傳曰：“疏意已悉。舉大事，予豈偶然思慮乎？雖小事，當以參酌衆論。今北征大事也，既深思而定，不可更改。都元帥許琮、副元帥李季全，皆非常宰相也，其下諸將，亦備嘗大事者，必不妄動矣。其以此疏，示都元帥。”

	<p>조(趙)나라에서 양장(良將)23393) 으로 일컫게 된 까닭은 이 술책(術策)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군사와 말의 강함과 약함은 생각하지 않고서 갑작스럽게 북방 정벌에만 마음을 써서 남방의 용감하고 날랜 군사를 북방의 관문(關門)에 다 몰아내게 되고 뒤미처 군사를 돌이키기도 전에 또 서방의 적(賊)이 모여서 대부대(大部隊)가 되어 혹시 쳐들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 다시 세번 생각하시고 유념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상소(上疏)의 뜻은 이미 잘 알았지마는, 큰 일을 일으키는 데에 내가 어찌 우연히 생각했겠는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참작해야 할 것인데, 지금 북방의 정벌은 큰 일이므로 이미 깊이 생각한 후에 정했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다. 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과 부원수(副元帥) 이계동(李季叟)은 모두 뛰어난 재상(宰相)이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장수들도 또한 큰 일을 겪은 사람이니, 반드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상소(上疏)를 도원수(都元帥)에게 보이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9일 (갑신) 4번째기사</p>	<p>이세좌(李世佐)가 와서 아뢰기를,</p> <p>“지금 사관(史官)에게 들으니, 여러 사람에게 서로 의논하여 찬동(贊同)했다는 말을 신(臣)이 아뢰고 하려 역사에 쓴다고 하는데, 역사의 기록은 천만세(千萬世)에 전하는 것이니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날 정문형(鄭文炯)이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남김없이 진술했는데, 처음에는 군량(軍糧)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잇달아 순제(舜帝)가 우왕(禹王)을 천거할 때 여러 사람에게 서로 의논하니, 모두가 찬동(贊同)한다는 것을 말하자,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계획이 여러 사람에게 따르면 천심(天心)에 부합(副合)한다.’고 하는데, 사관(史官)이 반드시 이것을 신(臣)의 말로 인정하여 잘못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또 그 날에 신(臣)이 다만 이</p>	<p>○李世佐來啓曰：“今聞史官以詢謀僉同之言，爲臣之所啓，筆之於史，史記千萬世之所傳，不可不辨。其日鄭文炯極陳北征不可事，初以糧餉不敷爲言，繼言舜之舉禹，詢謀僉同，釋之者曰謀從衆，則合天心。史官必以是爲臣言而誤記之矣。且其日臣但言李柈、李惟清之事，若言北征之事，其日侍講之臣及臺諫等必聞之矣。何待許琛之言而後論啓乎？”傳曰：“昨日史官</p>

	<p>평(李枰)과 이유청(李惟淸)의 일만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 북방 정벌의 일을 말했다면 그 날 시강(侍講)하는 신하와 대간(臺諫) 등이 반드시 이를 들었을 것이니, 어찌 허침(許琛)의 말을 기다린 후에 논계(論啓)했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어제 사관(史官)이 글로 써서 아뢰었지마는, 그러나 나는 듣지 못한 바인 까닭으로 되풀이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에는 사관(史官)이 비슷하여 분간할 수 없는 말을 듣고서 마침내 경(卿)의 말로 인정하여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 그 날에 내가 생각하기는 경(卿)이 북방 정벌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경(卿)의 백부(伯父) 광릉군(廣陵君)23405)은 정벌할 수 있다고 하고 계부(季父) 이극균(李克均)은 정벌할 수 없다고 한 까닭으로 따를 바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만약 정문형(鄭文炯)에게 묻는다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p> <p>하고는, 이에 정문형을 불러서 이를 물으니, 정문형이 아뢰기를,</p> <p>“그 날에 신(臣)이 아뢰기를, ‘북방 정벌은 큰 일이므로 경솔히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순제(舜帝)가 우왕(禹王)을 천거할 때 말하기를, ‘여러 사람에게 서로 의논하니 모두가 찬동(贊同)한다.’고 했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계획이 여러 사람에게 따르면 천심(天心)에 부합(副合)한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지금 경(卿)의 말을 들으니 이미 그 일을 잘 알게 되었다.”</p> <p>하고는, 이에 사관(史官)에게 전교(傳敎)하기를,</p> <p>“사관(史官)이 된 사람을 마땅히 사실대로 써야만 그제야 직필(直筆)이 되는 것인데, 어찌 판서(判書)23406)의 말을 광양(廣陽)23407)의 말로 삼았는가?”</p> <p>하니, 유송조(柳崇祖)가 아뢰기를,</p>	<p>書啓，然予所不聞，故反復深思而未悟，意謂史官聞疑似之言，遂爲卿言而誤記之矣。且其日予意卿之不言北征事者，以其卿伯父廣陵則以爲可伐，季父克均則以爲不可伐，故莫適所從而然，若問文炯則可知矣。”仍召文炯問之。文炯啓曰：“其日臣啓曰：‘北征大事也，不可輕舉，昔舜之舉禹，曰詢謀僉同，釋之者曰謀從衆，則合天心。’”傳曰：“今聞卿言，已悉其事矣。”仍傳于史官曰：“爲史官者，當以實書之，乃爲直筆，何以判書之言，爲廣陽之言乎？”柳崇祖啓曰：“臣俯伏不見其面，但聞其聲，故意謂世佐之言而書之。”傳曰：“史筆傳信於後世，此事今適因事而發，故廣陽知其非己之言，若歲月已久，則何以辨其是非乎？爾等當受其責，然無情故勿論。今後若一、二人入對，其言易辨則雖不舉首而聽可也，若諸宰相入對，議論旁午，未能的知，則擡頭審聽可也。”</p>
--	--	--

	<p>“신(臣)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 얼굴은 보지 못하고 다만 그 소리만 들었던 까닭으로, 생각에 이세좌(李世佐)라고 여겨 이를 썼던 것입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역사를 쓰는 필법(筆法)은 뒷세상에 믿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마침 어떤 일로 인하여 발각된 까닭으로 광양(廣陽)이 그것이 자기의 말이 아닌 것을 알았지마는, 만약 세월이 이미 오래 된다면 어찌 그 시비(是非)를 분변할 수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정(私情)이 없었던 까닭으로 논죄(論罪)하지는 않는다. 지금부터 후에는 만약 한 두 사람이 입대(入對)할 적에 그 말이 분변하기가 쉽다면 비록 머리를 들고서 듣지 않더라도 되겠지마는, 만약 여러 재상(宰相)들이 입대(入對)할 적에 의논이 번잡(繁雜)하여 확실히 알 수가 없다면 머리를 들고서 자세히 듣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11일 (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북방 정벌의 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과 종사관(從事官) 양희지(楊熙止)·유순정(柳順汀)과 군관(軍官) 고숭례(高崇禮)·윤성경(尹成罔)을 불러 보고 인해 말하기를,</p> <p>“지금 북방 정벌의 거사(舉事)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면서 논의(論議)가 각각 다르니,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번의 거사(舉事)는 곡직(曲直)이 분명(分明)하니, 하늘이 반드시 순리(順理)를 도울 것이다.”</p> <p>하니, 허종이 아뢰기를,</p> <p>“성공과 실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의 거사(舉事)는 별로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저들 지역 산천(山川)의 험준하고 평탄함과 도로(道路)의 둘러 가고 바로 감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성(城) 밑에 거주하는 야인(野人)들은 모두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p>	<p>○丙戌/上御宣政殿，置酒引見北征都元帥許琮、從事官楊熙止·柳順汀、軍官高崇禮·尹成罔，仍曰：“今北征之舉，人皆曰不可，論議各異，將何以處之？今此之舉，曲直分明，天必助順矣。”琮啓曰：“成敗未可知也，然此舉別無難事。但所疑者，未諳彼地山川險夷、道路迂直也。城底野人皆曰：‘不難’，但疑彼人藉我兵力，欲報己怨，故易言之也。日者成俊所啓城底居阿良介者，頗識事理，自中稱爲將帥，常</p>

지마는,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피인(彼人)이 우리의 병력(兵力)을 빌려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를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준(成俊)이 아뢰 바의 성(城) 밑에 거주하는 아량개(阿良介)란 자는 사리(事理)를 자못 알고 있기에 그들 중에서 장수(將帥)로 일컫고 있는 사람으로, 늘 말하기를, ‘대국(大國)23410) 이 어찌 군사를 일으켜 죄지은 자를 토벌하지 않습니까?’고 하고 있습니다. 신(臣)이 일찍이 이 사람과 더불어 저들 지역의 일을 서로 의논한 적이 있었으니, 신이 마땅히 내려간다면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상세히 물어보고 형세를 살펴보고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쇄환(刷還)23411) 한 사람들은 도골(都骨)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는데, 도골(都骨)과 니마거(尼麻車)가 힘을 합쳐서 도적질을 하고는 사로잡은 사람을 각기 나누었는지, 도골(都骨)이 홀로 와서 도적질을 하고서 사로잡아 돌아갔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니마거가 근래에 해마다 도적질을 하니, 모두 정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죄가 있는 자를 정벌할 뿐인데, 만약 가리지 않고서 정벌한다면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같이 재액(災厄)을 당하게 되므로, 저들이 반드시 분개하고 원망하여 불화(不和)의 틈을 만들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성(城) 밑에 거주하는 야인(野人)과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조칙(詔勅)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통문(通問)하기를, ‘조산(造山)에서 도적질한 자가 누구인가? 만약 사로잡아 간 사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죄지은 자를 토벌할 것이다.’고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도로(道路)의 둘러 감과 바로 감도 알 수가 있고 죄인(罪人)도 또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인(野人)으로 하여금 통문(通問)한다면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므로 알기가 어려울 것이니, 먼저 그들의 처자(妻子)를 잡아 가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言曰：‘大國何不舉兵問罪乎?’ 臣曾與此人商論彼地之事，臣當下去，更招此人，詳問觀勢而處之。今刷還人等，被擄於都骨而還，未知都骨、尼麻車并力作寇，而各分所擄之人也；都骨獨來入寇而擄歸也，然尼麻車近來年年作賊，竝伐之可也。” 上曰：“當伐有罪而已，若不擇而伐，則玉石俱焚，而彼必憤怨構讐矣。予意謂，令城底野人及我國人，賚勅通問彼人曰：‘造山作賊者誰歟？若不還擄俘人，當大舉問罪。’彼必答之以實也。然則道路迂直可知，罪人亦可得矣。然使野人通問，反覆難知，先拘囚妻子何如？” 琮曰：“兀狄哈非建州衛有酋長之類，本無體統，若送我國之人，則必拘囚不送矣。臣前日馳啓，請勿令城底人刷還，今更計之，令城底可信人，名為刷還，而探問彼土，則知我國被擄人在處，亦知山川道路迂直矣。” 上曰：“征討日期，定以何時乎？” 琮曰：“十月初十日以後可也。” 上曰：“高崇禮、尹成瓘皆本道人也。不知彼土道路乎？” 琮曰：“此人等，自言未諳，然生長其土，聞見已熟，今若入去，亦可識之矣。”

	<p>하니, 허중이 아뢰기를,  “올적합(兀狄哈)은 건주위(建州衛)의 주장(酋長)이 있는 종류(種類)는 아니므로 본디부터 체통(體統)이 없으니, 만약 우리 나라의 사람을 보낸다면 반드시 잡아 가두고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치계(馳啓)하여 성(城) 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쇄환(刷還)시키지 못하도록 했으나, 지금 다시 헤아려보니, 성(城) 밑에 거주하는 민을 만한 사람에게는 걸으로는 쇄환한다고 하고는 저들 지역을 탐문(探問)하게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의 있는 곳을 알 수가 있고, 산천(山川)·도로(道路)의 둘러 가고 바로 가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정벌하는 기일(期日)은 어느 때로 정해야 하겠는가?”</p> <p>하니, 허중은 아뢰기를,  “10월 초10일 이후(以後)가 좋겠습니다.”</p> <p>하자, 임금의 말하기를,  “고숭례(高崇禮)와 윤성경(尹成罔)은 모두 본도(本道)23412) 사람인데, 저들 지역의 도로(道路)를 알지 못하는가?”</p> <p>하니, 허중은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나서 자랐으므로 듣고 본 것이 이미 익숙해졌으니, 지금 만약 저들 지역에 들어간다면 또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국마(國馬)23413) 는 수요가 적으므로 전마(戰馬)23414) 를 가려뽑아 겨우 40필을 얻었으니 그런 까닭을 백성을 모집하여 말을 바치게 했지마는, 그러나 정벌에 나가는 군사는 비록 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에 좋은 말이 또한 어찌 많겠는가?”</p>	<p>上曰：“國馬數少，選戰馬僅得四十四，故募民納馬。然赴征軍士雖有馬，必不肯納，民間良馬，亦豈多哉？”琮曰：“我國馬政虛疎，諸牧場所養，甚不蕃息，民間亦無良馬。”右副承旨權景禧啓曰：“納者若優給其價，則民樂納之。且令司僕提調，擇納健馬可也。”上曰：“副元帥同司僕提調揀擇可也。”上執玉杯賜琮，又命進爵。令都承旨將玉盃賜從事官、軍官等。賜琮衣一襲、雨具一件、胡椒一倍、韃服具弓箭；又賜從事官、軍官各弓一張、胡椒一倍。又出寶劍一，賜琮曰：“此予之所帶也。”仍親製教書下承政院曰：“令善寫者書賜之。”僉啓曰：“雖善寫者，不如御書之爲寶也。”上手書賜之曰：“今茲北征，非是好大喜功，而廷議紛紜，莫適所主。予雖寡昧，豈不思兵戰之凶危哉？然用兵大事，勢不得已，而朝中言者，或以小寇常事，不足與較，宜置度外，至引以商宗之伐鬼方；周宣之逐玁狁；高帝之困白登；漢武之征四夷，欲止此舉，其於進戒達懷之辭，雖若善矣，而當今出師問罪之義，殆不深究。蠢茲北虜，匪茹入侵，</p>
--	--	---



	<p>하니, 허중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마정(馬政)23415) 은 허술하여 여러 목장(牧場)에서 기르는 말이 그다지 번식(蕃息)하지도 못하고 민간에도 또한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경희(權景禧)는 아뢰기를,  “말을 바친 사람은 그 값을 후하게 준다면 백성들이 즐거이 이를 바치게 될 것이며, 또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로 하여금 긴장한 말을 가려서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원수(副元帥)는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와 함께 말을 가려 뽑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임금이 옥배(玉杯)를 잡아 허중에게 내려 주고 또 술잔을 올리도록 명했으며, 도승지(都承旨)로 하여금 옥배(玉杯)를 가지고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 등에게 내려 주고, 허중에게 의복 1습(襲), 우구(雨具) 1건(件), 호초(胡椒) 1대(袋), 건복(韃服)23416) 에 활과 화살을 갖춘 것을 내려 주고, 또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에게도 각기 활 1장(張), 호초(胡椒) 1대(袋)를 내려 주었다. 또 보검(寶劍) 한 자루를 내어 허중에게 내려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차던 것이다.”  하고는, 이에 친히 교서(敎書)를 지어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써서 내려 주도록 하라.”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비록 글을 잘 쓰는 사람일지라도 어서(御書)의 보배로움이 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수서(手書)를 내리기를,  “지금 이 북방의 정벌은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도 조정의 의논이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부산하여 주장된 바가 없으니, 내가 비록</p>	<p>侮慢大國，肆行蜂蠆之毒，極逞豺狼之志，無釁犯我，屠將戮卒，此豈天心之所樂、王法之不誅者耶？肆興師旅，聲罪致討，固非如貪土地、好戰勝，強驅無辜之民於死地者也。且師有直壯，辭直氣壯，而民又知過不在上，必不以爲暴，則虜衆雖盛，胡可畏也？所謂有不戰，戰必勝也。自古命將專制闕外，苟非文武全才，何足以撫衆威敵？《詩》不云乎。‘文武吉甫，萬邦爲憲；赫赫南仲，獫狁于襄。’，此今日元帥之任也。東北之事，一以委卿，可不勸哉！今特賜劍，卿豈不度！是乃宋祖征江南，授劍曹彬之意也。” 仍命賜燕于忠勳府。</p>
--	--	--

건문이 적고 우매하나 전쟁이 흉하고 위태한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전쟁을 하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에 형세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데  
 도, 조정에서 말하는 사람이 혹은 조그만 구적(寇賊)은 보통 일이므로 더불어  
 겨룰 것이 못되니 마땅히 생각 밖에 두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상(商)나라  
 고종(高宗)이 귀방(鬼方) 23417) 을 정벌한 것과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험윤(玁狁) 23418) 을 내쫓은 것과, 한(漢)나라  
 고제(高帝)가 백등(白登) 23419) 에서 곤박(困迫)된 것과, 한(漢)나  
 라 무제(武帝)가 사이(四夷)를 정벌한 것을 인용(引用)하기까지 하면서  
 이번의 거사(擧事)를 중지시키려고 하니, 그것이 경계를 올리고 소회(所懷)를  
 알리는 말에 있어서는 비록 좋은 듯하지마는, 지금 군대를 동원하여 죄지은  
 자를 토벌하는 의리는 거의 깊이 헤아리지 않았던 것이다. 어리석은 이 북쪽  
 오랑캐가 헤아림이 없이 침범하여 큰 나라를 업신여겨서 벌과 전갈의 독(毒)  
 을 함부로 행하고 승냥이와 이리의 뜻을 멋대로 부려서, 불화(不和)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 땅을 침범하여 장수를 무찌르고 군사를 죽였으니, 이것이 어찌  
 천심(天心)의 즐겨하는 바이며 왕법(王法)의 토벌(討伐)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드디어 군대를 일으켜 죄를 범한 사실을 세상에 발표하고 토벌을 하게 되니,  
 진실로 토지를 탐내고 싸움에 이기기를 좋아하여 죄없는 백성을 죽을 곳에  
 억지로 몰아넣는 것과는 같지 않다. 또 군대는 정직하고 용감한 것이 있으니,  
 말이 정직하고 기운이 용감하고도 백성들이 또한 과실이 위에 있지 않음을  
 알고서 반드시 난폭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오랑캐의 무리가 비록 많더라도 어  
 찌 두려워하겠는가? 이른바 ‘싸우지 않음이 있을 지라도 싸우면 반드시 이긴  
 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장수에게 명령할 적엔 도성(都城) 밖의 일은 전제(專  
 制)하도록 했으니, 진실로 문식(文識)과 무략(武略)이 구비된 인재가 아니면  
 어찌 군사를 어루만지고 적(敵)에게 위엄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시경(詩  
 經)》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는가? ‘문식과 무략을 갖춘 길보(吉甫)는 여러 나

	<p>라에서 모범을 삼게 되고 위명(威名)이 나타난 남중(南仲) 23420) 은 힘윤(獵兪)을 제거(除去)했다.’고 하니, 이것은 오늘날 원수(元帥)의 임무이다. 동북(東北) 지방의 일은 일체 경(卿)에게 맡기니, 힘을 쓰지 않겠는가? 지금 특별히 보검(寶劍)을 내려 주니, 경(卿)이 어찌 헤아리지 않겠는가? 이것은 곧 송 태조(宋太祖)가 강남(江南)을 정벌할 때 조빈(曹彬)에게 검(劍)을 내려 준 뜻(23421) 이다.”</p> <p>하고, 이에 충훈부(忠勳府)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게 하였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12일 (정해) 2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가니, 행사직(行司直) 김우신(金友臣)이 형조(刑曹)의 계목(啓目)을 가지고 아뢰었다. 물러가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김우신이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기력(氣力)은 오히려 강건(強健)하고 또 능히 일을 아뢰니, 그를 동반직(東班職)에 임명하라.”</p> <p>하였다. 인하여 백사 철릭(白紗帖裏) 1, 남사 탐호(藍紗搭胡) 1, 호초(胡椒) 1대(斛)를 하사(下賜)하고, 또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고는 전교(傳敎)하기를, “이는 나의 감반(甘盤) 23422) 이다.”</p> <p>하였다. 이보다 먼저 특별히 김우신에게 명하여 일을 아뢰도록 하였다.</p>	<p>○上御宣政殿。行司直金友臣將刑曹啓目以啓，及退，傳曰：“金友臣雖年老，氣尚強健，又能啓事，其敍東班職。”仍賜白紗帖裏一、藍紗搭胡一、胡椒一斛，又命饋酒。傳曰：“是予甘盤也。”先是，特命友臣啓事。</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12일 (정해) 3번째기사</p>	<p>월성군(月城君) 이철건(李鐵堅)이 와서 아뢰기를</p> <p>“허혼(許混)의 일에 관계된 34인 내에 차유(車宥)와 계기상(桂己尙)은 무재(武才)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저 사람들이 충심(衷心)으로 복종하여 매양 안부(安否)를 묻게 되고, 만약 서로 본다면 손으로 그 등을 어루만지면서 ‘나는 마땅히 너를 사위로 삼겠다.’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도 또한 모두 무재(武才)가 있는데, 지금 형률(刑律)을 적용하여 장형(杖刑) 1백 대와 유형(流刑) 3천 리(里)로 결정했습니다. 만포(滿浦)와 강계(江界)는 곧 적(賊)이 침입하는 길의 요해(要害)의 땅이므로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니, 이 34인을 만약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방어(防禦)가 소홀해질 것입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을 죄를 결정한 후에는 본고을의 고역(苦役)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또 창주(昌洲)와 창성(昌城)에서 접전(接戰)할 때의 군공(軍功)</p>	<p>○(越城君) [月城君] 李鐵堅來啓曰：“許混事干三十四人內，車宥、桂己尙武才卓異，彼人心服，每問安否，若相見則手撫其背曰：‘吾當以爾爲婿’，其餘人亦皆有武才，今照律決杖一百、流三千里。滿浦、江界乃賊路要害之地，防禦最緊，此三十四人，若徙他處，則防禦疎虞。臣意謂，此人等決罪後，定本官苦役爲便。且昌洲、昌城接戰時軍功，令觀察使論啓，觀察使非親見之，乃以傳聞論功，必多失其實。且</p>

	<p>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논계(論啓)하도록 했는데, 관찰사는 이를 친히 본 것이 아니고 전문(傳聞)한 것으로써 논공(論功)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실상을 잃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또 창주(昌洲) 싸움에는 관노(官奴) 말(末伊)과 별시위(別侍衛) 김수산(金守山) 등이 홀로 전진하여 힘껏 싸웠으나, 화살이 떨어지고 기세가 다하여 적(賊)의 포위를 당하자 스스로 그 활을 꺾고는 벼랑에 의지해 서 있으니, 적(賊)이 그를 죽여 머리를 베고서 배를 가르고 갔 습니다.”</p> <p>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경희(權景禧)는 아뢰기를,  “신(臣)도 일찍이 이 두 사람의 싸우다가 죽은 것을 들었을 뿐이온데, 지금 이철건(李鐵堅)의 말을 들으니, 그들의 죽음이 매우 참혹합니다. 청컨대 영안(永安) 전망인(戰亡人)의 예(例)에 의거하여 제사(祭祀)와 부물(賻物)을 내려 주어 군사의 절개를 장려하게 하소서.”</p> <p>하였다. 이날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의 논공 계본(論功啓本)이 마침 이르니, 이철건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아뢰는 바의 뜻은 이미 자세히 알았으니, 이 계본(啓本)을 보고 난 후에 발락(發落)23423) 하겠다.”</p> <p>하였다.</p>	<p>昌洲之戰，官奴末伊、別侍衛金守山等獨進力戰，矢盡勢窮，爲賊所圍，自折其弓，依崖而立，賊殺之，斬頭刳腹而去。”右副承旨權景禧啓曰：“臣嘗聞斯二人戰死而已。今聞鐵堅之言，其死甚慘，請依永安戰亡人例致祭賻，以勵士節。”是日，平安道觀察使論功啓本適到。傳于鐵堅曰：“所啓之意已悉，覽此啓本後發落。”</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12일 (정해) 4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창성(昌城)의 관노(官奴) 말(末伊) 등은 조산(造山)에서 전사(戰死)한 사람의 예(例)에 의거하여 제사(祭祀)를 내리고 부물(賻物)을 내리게 하라.”</p> <p>하였다.</p>	<p>○傳曰：“昌城官奴末伊等，依造山戰死人例，致祭致賻。”</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15일 (경인) 3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이조양(李朝陽)은 이미 허혼(許混)이 오랑캐를 잡은 땅을 살피지도 못하고 또 군공(軍功)의 등급 차례도 잘못 아뢰었는데, 양면(楊沔)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또한 허혼(許混)의 거짓을 알고서 이조양은 친히 만포(滿浦)에 이르렀</p>	<p>○御經筵。講訖，大司諫金敬祖啓曰：“李朝陽既不審許混獲虜之地，又誤啓軍功等第，楊沔雖在遠處，亦知許混之詐，朝陽親到滿浦，豈不知混之情乎？今從未減，只收告身，請更鞫重論。”</p>

으니, 어찌 허혼(許混)의 사정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말감(末減)23440)에 따라서 다만 고신(告身)만 회수하니, 청컨대 다시 국문(鞫問)하여 중죄(重罪)로 논정(論定)하소서.”

하고, 장령(掌令)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이조양(李朝陽)의 죄는 공로와 과실이 서로 덮을 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성(昌城)의 싸움에 이미 미처 구원하지 못했고 또 능히 힘을 다하여 싸우지 못하여 그 전쟁의 기회를 잃고서 저 오랑캐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고서 돌아가게 했으니, 죄가 진실로 큰 편인데,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은 아뢰기를,  
 “이조양(李朝陽)이 허혼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신(臣)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마는, 군공(軍功)을 잘못 아된 것은 죄가 진실로 큼니다.”

하고, 지사(知事) 어세겸(魚世謙)은 아뢰기를,  
 “만약 저 오랑캐들이 편편한 언덕에 군사를 둔치고 있었는데 우리 군사가 경솔히 나아가다가 패전(敗戰)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가 마지못해서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적(敵)을 막은 것은 경솔히 범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王)이 말하기를,  
 “이조양이 허혼의 일을 알고 있다고 여길 수는 없다.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敵)을 막는 것을 어찌 능히 이곳에 있으면서 멀리서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조위(曹偉)가 또 아뢰기를,  
 “북방 정벌의 거사(舉事)는 나라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지마는, 그러나 북도(北道)의 군량(軍糧)이 넉넉지 못하는데 지금 갑자기 군사를 일으키게 되니, 그것이 너무 급박한 것이 염려됩니다. 신(臣)이 듣건대, 전조(前朝)23441)에서는 북쪽 변방에 불화(不和)의 씨를 만들어 분심(憤心)을 배설(排洩)하지 못하여 후사(後嗣)에게 부탁을 남기고는 윤관(尹瓘)으로 하여금 가서 그 죄를 토

掌令曹偉啓曰：“朝陽之罪，不謂功過相掩也。昌城之戰，既不及救，又不能力戰，失其軍機，使彼虜得利而還，罪固大矣，何功之有？”領事尹弼商啓曰：“朝陽知許混之情，則臣未能的知，誤啓軍功，罪固大矣。”知事魚世謙曰：“若彼虜屯兵平原，我軍輕進而敗則不可矣。其不得已臨機禦敵，則未可謂輕犯矣。”上曰：“不可以朝陽爲與知許混之事矣，且應變禦敵，安能在此而遙度乎？”偉又啓曰：“北征之舉，國議已定，然北道軍糧不敷，今遽興師，恐其太迫也。臣聞前朝，構釁北邊，憤不能洩，遺囑後嗣，使尹瓘往問其罪，得九城之地。自此兵連禍結，軍需不足，終不保有九城，是其驗也。姑待五、六年，儲糧鍊兵，往伐何如？”不允。

	<p>별하여 구성(九城)의 땅을 얻었지마는, 이로부터 전쟁이 계속되어 재화(災禍)가 맺어졌는데 군수(軍需)가 모자라서 마침내 구성(九城)을 보유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그 징험입니다. 우선 5, 6년을 기다려 군량을 저축하고 병졸을 훈련시킨 후에 가서 정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했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19일          (갑오)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두 도(道)에서는 비가 모자라서 보리와 밀이 말라서 손상되고 논에는 묘(苗)가 서지 못한 곳이 많으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이다. 보리와 밀의 종자와 농사지를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 준비할 등의 일을 미리 먼저 포치(布置)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今平安、黃海兩道，雨澤不足，兩麥枯損，水田多未立苗，誠爲可慮。兩麥種及農糧儲備等事，其預先布置。”</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20일          (을미) 3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개 듣건대, ‘충명한 군주(君主)가 왕위(王位)에 있을 때에는 음(陰)과 양(陽)이 차례대로 운행(運行)하여 바람과 비가 제때에 맞추어 백성들이 편안하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우러러 아주 지당한 도리를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겠는가? 나는 보잘것없는 몸으로써 삼가 임금의 지위를 받았으나 충명은 사물을 환하게 알지 못하고 덕(德)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여, 천재(天災)와 지변(地變)이 함께 이르러서 해마다 그치지 않고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가뭄[亢陽]이 해를 끼치고, 농작물을 기름지게 하는 비가 흡족하지 못하여 전답(田畝)이 장차 황폐해지려고 하니, 말을 시작하여 이에 이르르면 진실로 마음이 몹시 상하는데, 깊이 스스로 몹시 책망하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형법(刑法)이 어긋나고 틀려서 백성들이 부당하게 죄에 걸리게 된 사람이 많으며, 송사(訟事)가 원통하고 판결이 지체되어 억울하게 퍼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에 한 가지라도 있게 되면 화기(和氣)를 능히 상하게 할 수가 있으니, 그 이유를 미루어 구명(究明)한다면 죄는 실제로 나에게</p>	<p>○傳旨議政府曰：“蓋聞明主之在位也，陰陽順序，風雨以時，黎庶康寧，家給人足，仰惟至理，何以臻此。予以眇末，祇膺大寶，明不能燭，德不能綏，災異竝臻，連年不息，自春及夏，亢陽爲虐，膏雨未洽，田疇將廢，興言及此，良用痛傷，深自刻責，未知其由，得非刑法舛謬，民之橫罹者衆歟！獄訟冤滯，屈而未伸者多歟！有一於此，足傷和氣，推原其故，罪實在予，宜敷在宥之澤，以覃作解之恩。今五月二十日昧爽以前，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蠱毒魘魅，但犯事干國家，關係綱常，貪污強竊盜殺人者外，已發</p>

	<p>있으니 마땅히 자재관유(自在寬宥)23478) 의 덕택(德澤)을 시행하여 과실을 용서하는 은혜를 널리 베풀어야 할 것이다. 지금 5월 20일 어둑새벽 이전에 모반(謀反)·대역(大逆)·모반(謀叛)과 자손(子孫)이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모살(謀殺)하거나 구매(毆罵)23479) 한 것과 처첩(妻妾)이 남편을 모살(謀殺)한 것과 노비(奴婢)가 주인을 모살(謀殺)한 것과 고독(蠱毒)23480) 과 염매(魘魅)23481) 를 행한 것과 다만 범죄가 국가에 관계되고 강상(綱常)에 관계되고 탐오(貪污)와 강도(強盜)·절도(竊盜)와 살인자(殺人者)를 제외(除外)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결정(結正)되지 않은 것을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게 하라.”</p> <p>하였다.</p>	<p>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咸宥除之。”</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22일 (정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한언(韓堰)이 아뢰기를,</p> <p>“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사면(赦免)은 자주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난해에 사면(赦免)하고 올해에도 또 사면했으니, 이는 소인(小人)의 요행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근래에 달을 거둬서 비가 오지 아니하여 벼가 장차 손상(損傷)되려고 하니, 큰 죄는 그만이지만 작은 죄는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없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이를 사면(赦免)한 것이다.”</p> <p>하였다. 한언은 아뢰기를,</p> <p>“사면(赦免)이란 것은 소인(小人)의 요행이요 군자(君子)의 불행(不幸)이니, 그 죄의 경중(輕重)을 구분하여 이를 석방(釋放)시키면 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사면할 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지사(知事) 이승원(李崇元)이 대답하기를,</p>	<p>○丁酉/御經筵。講訖，大司憲韓堰啓曰：“古人云：‘赦不數下’，國家去年赦，今年又赦，是小人之幸也。”上曰：“頃者連月不雨，禾穀將損，大罪則已矣，小罪不無冤抑，故赦之。”堰曰：“赦者小人之幸，君子之不幸，分其罪之輕重而放之可也，何必赦乎？”上顧問左右。知事李崇元對曰：“既已頒赦，何以還收乎？但赦不可輕下也。”堰又啓曰：“通事康繼祖等，亦在原例，此事干貪污，不可不鞫。”上曰：“事在久遠，且有死亡，勢難推覈，又以徑赦，而復令鞫之，於事體何？”堰曰：“通事不足論，宰相恣行不法，帶率興利之人，法當懲之，雖曰經赦，請畢推</p>

“이미 사면령(赦免令)을 반포(頒布)했으니, 어찌 도로 거두어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면(赦免)은 경솔히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한언이 또 아뢰기를,

“통사(通事) 강계조(康繼祖) 등도 또한 용서하는 예(例)에 있는데, 이 일은 탐오(貪汚)에 관계되니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오래 되었고 또 사망(死亡)한 사람이 있으니 형세가 추핵(推覈)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 곧 사면(赦免)하고서 다시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한다면 일의 대체(大體)에 어찌되겠는가?”

하였다. 한언이 아뢰기를,

“통사(通事)는 논할 것이 못되지마는, 재상(宰相)이 법에 어긋난 일을 제멋대로 행하여 이익을 늘리는 사람을 데리고 갔으니, 법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면(赦免)을 지났다고 하지마는 다 추국(推鞠)하여 사정을 알아내기를 청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었다. 이승원(李崇元)이 대답하기를,

“북경(北京)에 간 사신(使臣)이 이익을 늘리는 사람으로써 군관(軍官)의 자제(子弟)를 삼아 포물(布物)을 많이 가지고 가서 사람이 넘어지고 말이 죽었으니, 이것이 지금의 큰 과실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장관(書狀官)이 정신을 차려 단속을 하였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일이 널리 퍼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그러나 통사 등을 반드시 끝까지 추핵(推覈)하여 형장(刑杖)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겠는가?”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가 아뢰기를,

“지금의 여승[尼僧]은 다만 서인(庶人)뿐만이 아니라 사족(士族)의 딸에 이르

得情。”上問左右。崇元對曰：“赴京使臣，以興利人爲軍官子弟，而多齋布物，人仆馬斃，此當今之巨疵也。”上曰：“書狀官用意檢舉，則何至如是汎濫乎？通事等必欲窮推，加之刑杖，則豈無冤枉乎？”大司諫金敬祖啓曰：“今之尼僧，非特庶人，至於士族之女，其夫身死未幾，卽削髮爲尼，又年少未嫁之女，爭自削髮甚未便。大抵男有室、女有家，人之情也，年少爲尼，未有伉儷，則是亦傷和召災之由也，請刷還俗。”上曰：“大司諫之言甚善，寡婦強爲尼僧者，果何意歟？縱不爲尼，豈不能守其節乎？雖爲尼，無節行，則亦有何益？況年少之女，競相爲尼，以絕人道，則不無傷和召災之理，若推刷則似紛擾，憲府禁之可也。”堰曰：“僧人則推刷矣，尼僧則禁之實難。”敬祖曰：“臣所居鄉漣川有一族屬，尼僧引誘三寸姪女十歲者，使之削髮，而今移居淨業院矣。尼僧非推刷則何得而禁乎？”上曰：“推刷則不可。”堰曰：“漣川尼僧，其家長請鞫。”上曰：“可。”



기까지 그 남편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곧 머리를 깎고 여승[尼僧]이 되며, 또 나이가 젊고 시집가지 않는 여인(女人)도 다투어 스스로 머리를 깎게 되니, 매우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대저 남자는 아내가 있고 여인은 남편이 있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나이가 젊어 여승[尼僧]이 되어 배필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청컨대 세속으로 쇄환(刷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간의 말이 매우 훌륭하다. 과부(寡婦)가 역지로 여승[尼僧]이 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비록 여승이 되지 않더라도 어찌 능히 그 절개를 지킬 수가 없겠는가? 비록 여승이 되더라도 절개를 지킨 행실이 없다면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물며 나이가 젊은 여인들이 다투어 서로가 여승이 되어 인도(人道)를 끊어버린다면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초래하는 이치가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찾아내어 되돌아 가도록 한다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울 듯하니,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한언이 아뢰기를,

“남승[僧人]은 찾아내어 되돌아 가게 할 수가 있지만, 여승[尼僧]은 이를 금지시키기가 실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김경조는 아뢰기를,

“신(臣)이 거주하는 고을 연천(漣川)에서는 어떤 겨레불이의 여승[尼僧]이 열살되는 3촌(寸) 질녀(姪女)를 피어내어, 그에게 머리를 깎도록 하고는 지금 정업원(淨業院) 23487) 에 옮겨 거주하게 했으니, 여승을 찾아내어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찾아내어 되돌려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한언은 아뢰기를,

	<p>“연천(漣川)의 여승[尼僧]은 그 가장(家長)을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23일 (무술) 6번째기사</p>	<p>또 허중(許琮)과 유지(柳攄)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면포(綿布) 1천 필을 보내니,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주어서 곡식을 바꾸어 군수(軍需)에 보충하도록 하라. 만약 별도로 곡식을 저축하는 계책이 있으면 그것을 헤아려 아뢰게 하라.” 하였다.</p>	<p>○又下書許琮、柳攄曰：“今送綿布一千匹，分授沿邊諸邑，質穀以補軍需，若別有儲粟之策，其商略以啓。”</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24일 (기해) 4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이미 비가 흠족하게 내렸으니, 주금(酒禁)을 폐지하라.” 하였다.</p>	<p>○傳曰：“今雨澤既足，其罷酒禁。”</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25일 (경자)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윤희손(尹喜孫)이 아뢰기를, “서울 안에서는 비가 비록 흠족하게 내렸지만, 여러 도(道)에서도 모두 그러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리와 밀이 말라 손상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오히려 밥먹기가 어려우니, 주금(酒禁)을 폐지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비록 술마시는 것을 금하더라도 죄를 받는 사람은 모두 미천한 백성일 것이다. 지금 비 내리는 형세를 보건대, 여러 도(道)에 고루 퍼진 듯하므로 보리와 밀이 말라 탄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가을까지 술 마시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희손은 아뢰기를, “지금 양계(兩界)에 사변(事變)이 있으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니, 주금(酒禁)을 폐지하지 말기를 청합니다.”</p>	<p>○庚子/御經筵。講訖，司諫尹喜孫啓曰：“京中雨澤雖足，未知諸道皆然，且兩麥枯損，民尙艱食，罷酒禁未便。”上曰：“雖禁酒，其受罪者皆小民也。今見雨勢，似遍於諸道，兩麥不至焦枯，安可至秋禁酒乎？”喜孫曰：“今兩界有事，上下所當戒慎，請勿罷禁。”上曰：“雖西北有事，酒禁何與焉？”同副承旨曹偉啓曰：“大抵國俗豪侈，凡會飲，既設卓又設行果盤，至於婚姻之時，競尙華麗，糜費不貲，此巨弊也。”上曰：“此則前日多有言者，其於宴飲，既設饌卓，又設行果盤，一</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비록 서북(西北) 지방에 사변(事變)이 있더라도 주금(酒禁)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대저 나라의 풍속이 대단히 사치하여, 무릇 모여서 술을 마실 적에는 이미 탁자(卓子)를 설치하고는 또 몇 줄의 과일 쟁반을 설치하고 있으며, 혼인(婚姻)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다투어 화려함을 숭상하여 써 없애는 비용이 계산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큰 폐단입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이것은 전일에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잔치할 적에는 이미 음식 탁자(卓子)를 설치하고는, 또 몇 줄의 과일 쟁반을 설치하고서 하루에 몇 날의 음식을 겸해 먹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장령(掌令) 민감(閔臧)은 아뢰기를,  “매와 물개를 모두 여러 도(道)로 하여금 바치게 하였는데, 만약 생산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를 얻을 길이 없을 것이며, 마지못해서 많은 값으로 사서 바치도록 하면 그 폐해가 계산할 수도 없으니, 신(臣)은 원컨대 각 고을로 하여금 윤번(輪番)으로 바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의 좌우의 신하에게 물었다.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신(臣)이 일찍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그 폐해가 과연 민감(閔臧)이 아뢴 것과 같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매가 생산되지 않는 도(道)에서는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관찰사가 이미 이를 바치게 된다면 절도사(節度使)는 바치지 못하도록 해야</p>	<p>日兼數日之饌，是豈可乎？”掌令閔臧啓曰：“鷹子、獐狗，皆令諸道封進，若不產之處，得之無由，不獲已優價購納，其弊不貲，臣願令各官輪次以進。”上問左右。同知事李世佐曰：“臣曾爲慶尙道觀察使，知其弊果如閔臧所啓。”上曰：“鷹子不產之道，勿令封進何如？”特進官李克均曰：“觀察使既封進，則節度使可勿進也。”上曰：“然。”</p>
--	---	---

	<p>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25일 (경자)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금년에는 서북(西北) 지방에 사변(事變)이 있는데다 동북(東北) 지방에도 또 한 사변이 있었으며, 연사(年事)의 풍년과 흉년도 능히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 만약 흉년이 든다면 북방 정벌은 내 처분(處分)에 달려 있지만 서북(西北) 지방의 일은 비록 흉년일지라도 형세가 그만둘 수가 없으니, 평안도(平安道)의 군자(軍資) 수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곧 조사여 아뢰도록 하라. 또 군수(軍需)를 많이 저축할 계획도 호조(戶曹)로 하여금 조치(措置)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年西北有事東北亦有事，歲之豐歉，未能逆料，若凶荒則北征在予處分，西北之事，雖凶年，勢不可已。平安道軍資數今幾許，卽令考啓，且軍需廣儲之策，使戶曹措置可也。”</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28일 (계묘) 6번째기사</p>	<p>어서(御書)를 내리기를, “하절(夏節)에 쓸 약 호초(胡椒)를 나누어 주는데, 의정부(議政府)의 삼정승(三政丞)과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에게는 각기 6두(斗)씩을 주고,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2품 이상 관원과 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과 도총관(都總管)과 충훈부(忠勳府)와 중추부(中樞府)의 2품 이상 관원과 대사헌(大司憲)과 돈녕부(敦寧府)의 2품 이상 관원과 예문관(藝文館)의 2품 당상관(堂上官)에게는 각기 4두(斗)씩을 주고, 승정원(承政院)의 당상관(堂上官)과 대사간(大司諫)과 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부제학(副提學)과 중추부(中樞府)의 당상관(堂上官)과 여러 위(衛)의 장수와 홍문관(弘文館)의 주서(注書)에게는 각기 3두(斗)씩을 주고23513)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예문관(藝文館) 관원에게는 각기 2두(斗)씩을 주고, 종친(宗親) 1품에게는 각기 6두(斗)씩을 주고, 의빈부(儀賓府)의 1품에게는 6두(斗)를, 2품에게는 4두(斗)를 주도록 하라.”</p>	<p>○下御書曰：“頒賜夏節藥胡椒。議政府三政丞、領敦寧以上各六斗；政府六曹二品以上、漢城府堂上、都總管、忠勳府、中樞府二品以上、大司憲、敦寧府二品以上、藝文館二品堂上各四斗；承政院堂上、大司諫、六曹堂上、副提學、中樞府堂上、諸衛將、弘文館注書各三斗；【衛將內二品四斗。】司憲府、司諫院、藝文館各二斗；宗親一品各六斗，儀賓府一品六斗；二品四斗。”</p>

<p>성종 253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5월 30일 (을사) 4번째기사</p>	<p>하였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심(金諶)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은 듣건대, ‘먼저 이길 수 없다고 여겨 적에게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까닭으로, 지키면 방비가 튼튼하고 싸우면 적을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는 태평에 익숙해져서 양계(兩界)23519) 의 방비가 해이(解弛)해져서 앉아서 오랑캐의 침범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지난봄에는 조산(造山)에 함부로 들어와서 성(城)을 무찌르고 장수를 죽였으며, 또 창주(昌洲)를 침범하여 여러 날 동안을 서로 싸웠으니, 그들에게 죽거나 사로잡힌 것은 비록 나타나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자못 더러 소문이 널리 퍼뜨려졌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적(敵)을 이길 수 있는 계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일을 의논하는 사람은, 혹은 말하기를, ‘건주위(建州衛)는 모련위(毛憐衛) 23520) 와 더불어 형세가 서로 인접(隣接)하지 못하니, 함께 모의(謀議)해서 일으킨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臣) 등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건주위(建州衛)가 우리에게 와서 조현(朝見)하는 사람은 길이 모련위(毛憐衛)를 경유하게 되고 모련위가 중국(中國)에 들어가 조공(朝貢)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주위(建州衛)를 경유하게 되니 그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하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 나라에 쳐들어오면서 같은 시기에 함께 군사를 일으킨 것이 어찌 두 오랑캐가 함께 모의(謀議)하여 나누어 공격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랑캐의 간사한 계책은 헤아릴 수가 없을 듯하니, 지금에 있어서 먼저 할 일은 훌륭한 장수와 강한 병졸을 가려 뽑아서 양쪽에 나누어 주고는, 군량을 저축하고 무기(武器)를 날카롭게 하여 날랜 병졸을 기르고 군대의 위세(威勢)를 길러 우리에게 있어서 당당(堂堂)히 적(敵)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완벽한 형세를 가지게 하여, 적이 오면 승리(勝利)하게 되고 적이 가면 추격(追擊)하지 않는 것이 병법(兵法)에, ‘우리의 편안한 군사로써 적(敵)의 피로한 군사를 기다리게 하고 적을 우리에게 오도록 하고 우리가 적</p>	<p>○弘文館副提學金諶等上疏曰：  臣等聞，先爲不可勝，以待敵之可勝，故以守則固，以戰則勝。今我國家狃於昇平，兩界備禦解弛，坐啓戎心，去春闌入造山，屠城殺將，又寇昌洲，累日交兵，其被殺擄，雖不顯言，頗或騰播，是則在我無可勝之策耳。今之議者，或言建州衛與毛憐衛，勢不相接，非共謀而發，然臣等竊料建州衛來朝于我者，路由毛憐衛，毛憐衛入貢上國者，必經建州衛，其聲勢相倚。今者入寇，同時竝舉，安知非兩虜協謀分攻乎？然則虜之奸計，似不可測。在今先務，擇良將勁卒，分授兩邊，積糧餉、精機械，蓄銳養威，使在我堂堂、有不可勝之勢，來則制勝，去則勿追，此兵法以逸待勞，致人而勿致於人者也。近者慶興被擄者，還自虜地言，虜備戰具，遼東所報亦悉虜情。明者觀未萌，況已著者乎？其備兩虜，不可偏有輕重，今獨以造山之敗爲可恥，排群議斷大舉，提兵二萬，精銳盡行，虜乘此隙，衝突西鄙，則平安、黃海彫瘵之兵，安保其必勝乎？此北征不可者一</p>
--	---	---

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일에 경흥(慶興)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이 오랑캐 땅으로부터 돌아와서 오랑캐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요동(遼東)에서 통보하는 바도 또한 오랑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현명(賢明)한 사람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미 일이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두 곳의 오랑캐를 방비하는 일에는 치우치게 경시(輕視)하거나 중시(重視)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되는데, 지금 유독 조산(造山)의 패전(敗戰)만으로써 수치(羞恥)스럽게 여겨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큰 거사(擧事)를 결단하여,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가서 날랜 군사가 다 출동하게 되는데, 오랑캐가 이 틈을 타고서 서쪽 변방에 와서 부딪친다면 평안도(平安道)와 황해도(黃海道)의 쇠약한 병졸로써 어찌 그 반드시 이길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북방 정벌의 옳지 못한 것이 첫째이고, 전쟁을 하는 요령은 먼저 저 적(敵)의 강약(強弱)·허실(虛實)과 산천(山川)의 험준·평탄한 것과 도로(道路)의 둘러 가고 바로 가는 것을 살펴본 후에야 아주 안전(安全)하여 근심이 없게 됩니다. 그런 까닭은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가 외효(隗囂)를 정벌하려 할 때 마원(馬援)이 쌀을 산처럼 많이 모아두고 형세(形勢)를 지획(指畫)23521) 하니, 오랑캐가 눈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으며, 당(唐)나라 이소(李愬)는 회서(淮西)를 평정할 때 적장(賊將) 이우(李祐)를 사로잡아 이에 그 계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침내 오원제(吳元濟)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적(敵)의 정세(情勢)를 헤아리지 않고서 능히 승리(勝利)한 사람을 있지 않았습니다.

듣건대, 오랑캐 땅의 산천(山川)은 험준하고 좁으며 수풀은 넓고 멀어서 끝이 없다고 하는데, 다만 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오랑캐의 수포가 많고 적음과 군사가 강하고 약한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데도, 다만 성(城) 밑에 거주하는 향화(向化)한 사람의 말만 믿고서 그로 하여금 향도(向導)를 삼게 되니, 이 무리들이 비록 말하기는 향화인(向化人)이

也。用兵之要，先審彼敵強弱虛實、山川險夷、道路迂直，然後可以萬全而無虞。故光武欲征隗囂，馬援聚米爲山，指畫形勢，虜在目中；李愬平淮西得賊將李祐，乃用其策，卒擒元濟，自古及今，未有不料敵而能制勝者。聞虜地山川險阨，林藪無際，非惟未諳道路，至於虜之衆寡強弱，亦未有知者，徒以城底向化之言爲信，使之向導焉。此輩雖曰向化，與同類相婚，造山之陷，已疑其導，今者之擧，亦已馳告，吾所恃以爲嚮導者，首鼠兩端，豈如馬援之可任，李祐之可信也？孫子言：“地有絕澗、天井、天牢、天羅、天陷、天隙，必亟去之勿近也。”今虜地必多六害，犯此兵忌，何以制勝？北征之不可者二也。帝王用師，名其爲賊，敵乃可服，今虜種非一，居近地者曰尼麻車，居遠地者曰都骨，初信向化之言，欲征尼麻車，及見被擄者之招，似是都骨，不審尼麻車爲賊耶？都骨爲賊耶？尼麻車賊也則征都骨不可，都骨賊也則征尼麻車不可，賊在都骨，則假途尼麻車，用兵實難，莫適爲主，竝征二虜，則力有不給，罪人未得，何以聲罪

동류(同類)와 더불어 서로 혼인(婚姻)했다고 하지마는, 조산(造山)이 함락될 적에 이미 그 향도(向導)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금일의 거사(舉事)에서도 또한 이미 달려와서 알렸으니, 우리가 믿고 향도(向導)로 삼은 사람도 수서 양단(首鼠兩端)23522) 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찌 마원(馬援)의 말길 만하고 이우(李祐)의 믿을 만한 것과 같겠습니까?

손자(孫子) 23523) 가 말하기를, ‘땅에는 절간(絶澗)·천정(天井)·천뢰(天牢)·천라(天羅)·천함(天陷)·천극(天隙)이 있으니, 반드시 빨리 이를 없애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랑캐 땅에는 반드시 육해(六害)23524) 가 많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병가에서 꺼리는 것을 범하고서 어찌 승리(勝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방 정벌의 옳지 못한 것이 둘째이고, 제왕(帝王)이 군대를 사용할 적에는 그것이 도적[賊]이 된 것을 지칭(指稱)해야만 적(敵)이 그제야 굴복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오랑캐 종족(種族)은 한둘이 아니므로, 가까운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니마거(尼麻車)라 하고, 먼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도골(都骨)이라고 하니, 처음에 향화(向化)한 사람의 말만 믿고서 니마거(尼麻車)를 정벌하려고 하다가 사로잡혀 간 사람의 공초(供招)를 보고서는, 이것이 도골(都骨)인 듯하다고 하니, 니마거(尼麻車)가 도적이 된 것인지, 도골(都骨)이 도적이 된 것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마거(尼麻車)가 도적이라면 도골(都骨)을 정벌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이고 도골이 도적이라면 니마거(尼麻車)를 정벌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도적이 도골(都骨)에 있다면 니마거(尼麻車)에게 길을 빌려야 할 것이므로, 군사를 사용하기가 실로 어렵게 되어 어느 것을 주(主)로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두 오랑캐를 모두 정벌한다면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죄인(罪人)을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죄를 범한 사실을 세상에 발표하여 적(敵)을 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불화(不和)의 단서(端緒)를 만들고 원망만 만들 뿐이니 북방 정벌의 옳지 못한 것이 세째이고, 지금 북방 정벌에 뜻을 결정한 것은 전하(殿

而服敵乎? 徒結讐構怨而已。北征之不可者三也。今決意北征者, 殿下必以爲, 國富兵強, 將帥賢明, 必能了此大事, 蕞爾小醜, 不足平矣。然唐太宗以英武之主, 舉天下之兵, 將帥如李勣、李靖、薛萬徹、道宗、張亮、薛仁貴, 皆不世出之才, 以此征高句麗, 不啻如千鈞壓鳥卵, 然而困一安市小城, 挫衄而歸, 爲天下後世笑。兵凶戰危, 固不可易言, 況我國將才兵力, 不及唐室, 而虜地之險, 不下安市乎! 假如此舉, 仗國靈、承廟算, 多致克獲, 以快一時之忿, 然不能殄殲無遺, 則結怨益深, 常思報復, 年年必矣。今歲二萬師費七萬穀, 靡有餘力, 以給後日。臣等竊恐, 國家自此紛紛多故矣。北征之不可者四也。臣等前此仰瀆宸聰者非一, 徒以大事已定, 不曾迎納, 且臺諫所言, 指爲沮止臆謾, 竝罷其職, 臣等深以直士之氣, 沮喪爲憂, 敢進筍子。御書云: “安欲使士之正直之氣, 沮喪乎雷霆之下乎?” 然自此士氣, 不期沮喪而(而)沮喪。今方西鄙有事, 北征之不可兩舉, 人孰不知, 殿下之股肱耳目, 曾無一言及之,

下)께서는 반드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고 장수가 현명(賢明)하니 반드시 이 큰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보잘것 없는 작은 오랑캐는 평정할 것도 못된다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당 태종(唐太宗)은 무용(武勇)이 뛰어난 군주(君主)로서 천하의 군사를 일으켰으며, 장수는 이적(李勣)·이정(李靖)·설만철(薛萬徹)·도종(道宗)·장량(張亮)·설인귀(薛仁貴) 같은 사람은 모두가 세상에 여간하여 나오지 않는 인재인데, 이 같은 세력으로써 고구려(高句麗)를 정벌하는 것은 천군(千鈞)의 무게로써 새 알을 누르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시(安市)란 한 조그만 성(城)에 시달려 기세가 꺾여져 패전하고 돌아가서 천하 후세(後世)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무기(武器)는 흉한 기구이고 전쟁은 위대한 일이므로 진실로 쉽사리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나라는 장수의 재간과 군대의 힘은 당(唐)나라에 미치지 못한데도 오랑캐 땅의 험준한 것은 안시성(安市城)보다 못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이번의 거사(擧事)가 나라의 위광(威光)에 의지하고 조정에서 결정한 계책을 받들어 적을 이겨 많이 사로잡아서 한때의 분노(忿怒)를 시원스럽게 풀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적을 남김없이 죽이지 못하게 된다면 원망을 맺음이 더욱 깊어져서 상시로 보복할 것을 생각하여, 해마다 기필코 침범할 것입니다. 금년에 2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7만 석의 곡식을 소비했으므로 남은 힘으로 후일(後日)에 공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신(臣) 등은 가만히 국가가 이로부터 부산하고 사고가 많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방 정벌의 옳지 못한 것이 네째입니다.

신 등은 이보다 먼저 성상의 총명에 우러러 모독(冒瀆)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닌데도, 다만 큰 일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유로써 일찍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대간(臺諫)의 말한 것은 이을 저지(沮止)시키고 억측으로 속인다고 지적(指摘)하고는 모두 그 관직을 파면시켰으니, 신 등은 정직한 선비의 기개(氣概)가 저상(沮喪)이 되는 것을 매우 근심하여 감히 차자(箚子)를 올립니다.

恐非國家之福，而治平之美事也。  
御書曰：“已悉予意，而不回所執何也？不允。”



	<p>임금이 손수 쓴 글에 이르기를, ‘어찌 선비의 정직한 기개로써 임금의 성난 위엄 아래에 저상(沮喪)시키려고 하겠는가?’고 하지마는, 그러나 이로부터 선비의 기개는 저상(沮喪)되기를 기약하지 않고도 저상(沮喪)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서쪽 변방에 사변(事變)이 있으니, 북방 정벌을 두 가지 다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누군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하(殿下)의 고�굉(股肱)23525) 과 이목(耳目)23526) 은 일찍이 한마디 말도 이에 미친 일이 없으니, 아마 국가의 복이고 치평(治平)의 아름다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p> <p>하니, 어서(御書)하기를,</p> <p>“이미 내 뜻은 자세히 알았을 것인데도 자기의 주견(主見)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p> <p>하고는, 윤희하지 아니했다.</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4일 (기유) 2번째기사</p>	<p>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p> <p>“신(臣)이 김주성가(金主成可)에게 상(賞)을 내려 간첩(間諜)을 행하는 계책으로써 천총(天聰)을 우리러 모독(冒瀆)했으나 윤희(允許)를 얻지 못했는데, 물러와서 이를 생각해 보니, 대저 적(敵)의 사정(事情)은 귀신(鬼神)에게서 찾아낼 수도 없고 일에서 본보기로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사람에게서 찾아야만 적(敵)의 사정(事情)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적(敵)의 사정(事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장수가 될 수가 없으며, 군주(君主)의 보좌(補佐)가 될 수가 없으며, 이기는 주장(主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첩(間諜)이란 것은 신기(神奇)한 기율(紀律)이니 군주(君主)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삼군(三軍)의 일은 간첩보다 친밀(親密)한 것이 없고 상(賞)은 간첩보다 후하게 할 곳이 없으며, 일은 간첩보다 비밀히 할 데가 없으니, 성지(聖智)23537) 가 아니면 간첩을 능히 사용할 수가 없으며, 인의(仁義)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가 없으며, 미묘(微妙)한 지혜가 아니면 간첩의 실정(實情)을 알아낼 수가 없으니,</p>	<p>○西北面都元帥李克均上書云： 臣以賞金主成可行間諜之策， 仰瀆天聰， 未蒙兪允， 退而思之， 夫敵情不可取於鬼神， 不可象於事， 必取於人， 知敵之情也， 不知敵之情者， 非人之將也， 非主之佐也， 非勝之主也。 間者神紀， 人君之寶也， 故三軍之事， 莫親於間， 賞莫厚於間， 事莫密於間， 非聖智不能用間， 非仁義不能使間， 非微妙不能得間之實， 微哉微哉， 無所不用其間也！ 況間有五， 而因其鄉人而用之， 此今之策也。 昔韋孝寬以金帛啗齊人， 而齊人遙通書疏， 甚得因間之道。 今反惜數匹之貨， 以鹽之數升， 器之一、</p>

미묘(微妙)하고 미묘하게도 그 간첩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간첩은 다섯 가지가 있지마는 그 고을 사람을 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계책입니다.

옛날에 위효관(偉孝寬)은 황금과 비단으로써 제(齊)나라 사람에게 미끼를 주어 꺾었는데, 제(齊)나라 사람이 멀리서 서소(書疏)를 보내 왔으니, 심히 간첩을 이용(利用)하는 방법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몇 필의 포화(布貨)를 아껴서 소금 몇 되와 그릇 한두 개로써 적(敵)의 사정(事情)을 꺾어 알아내려고 하니, 비유하건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고 배를 버리고서 강 건너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의논한 것에, ‘오늘 한 가지 변고(變故)를 보고하고 내일 한 가지 변고를 보고하는데 우리가 모두 날날이 상(賞)으로 보답한다면 장래에는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만약 또 혹상(賞)을 주기도 하고 혹 상을 주지 않기도 한다면 도리어 원한(怨恨)을 생기게 할 것이니, 대저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은 마땅히 전일의 규정(規定)을 일체 따라야만 할 것이고 별도로 새로운 예(例)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지만, 이는 다만 평상시에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이고 전쟁을 할 때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욱이 상(賞)과 벌(罰)은 한때 시행하는 것이지 후일에 예(例)를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방의 섬 오랑캐가 비록 국가에 이롭거나 해로울 바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들의 하고자 하는 것은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도, 유독 김주성가에게는 변고(變故)를 보고한 공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서 소금 몇 되로써 그 공을 보답하려고 하니, 신(臣)은 이를 이해(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서도(西道)에 명령을 받았으니 감히 이 일로써 한때의 공을 꼭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을 보답하는 법식(法式)에서 옳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二，欲釣索敵情，比如緣木而求魚，捨舟而望濟也。今議有云：“今日報一變，明日報一變，而我皆一一報賞，則將來難繼，如又或賞或否，則反生怨恨，大抵待夷之道，當一遵前規，不可別生新例。”此特平常待夷之道，非所用於用武之時也。又況賞罰施之於一時，不可爲例於後日也。南方島夷，雖無所利害於國家者，其所求欲，無不從之，獨於主成可，都不計報變之功，而以鹽數升酬報其功，臣未之解也。臣受命西道，非敢以此要就一時之功，其於國家酬功之典，有所不可也。命議于領敦寧以上。僉曰：“依克均所啓。”從之。

	<p>“이극균이 아뢰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자,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7일 (임자)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개 듣건대, 적저(積貯)23542) 란 군국(軍國)의 시급한 일이라고 한다. 진실로 곡식이 많고 재물에 여유가 있어서 이로써 나라를 지키면 튼튼해질 것이고 적(敵)과 싸우면 이길 것이니, 무엇 때문에 성공(成功)하지 못하겠는가? 한(漢)나라에서는 백성을 모집하고 곡식을 들이라는 조서(詔書)가 있었고, 송(宋)나라에서는 부중(府中)에 추량(芻糧)23543) 을 들이라는 법령(法令)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권도(權道)로 그 때의 사정에 맞도록 한 것으로서 변방의 방비가 충실(充實)해지도록 하려고 한 것뿐이다. 우리 나라는 근년 이래로 연사(年事)가 자주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군량(軍糧)이 넉넉지 못하니, &lt;곡식 따위를&gt; 비축(備蓄)하는 한 가지 일을 마땅히 강구(講究)하고 계획해야만 할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서북 양계(兩界)에 바야흐로 변경의 경보(警報)가 있으니, 수만 명의 무리를 장차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운반의 노고(勞苦)를 아마 능히 지탱할 수가 없을 듯하니, 대소 신민(大小臣民)으로 하여금 두도(道)에 저축된 것은 있는 곡식의 수량을 모두 사실대로 계문(啓聞)하고 각기 그 값에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벼와 곡식을 원하는 데에 따라 교환(交換)하도록 하라. 이는 한때 임시(臨時) 편의(便宜)한 거사이고 억지로 품삯을 주고 사들이는 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니, 중앙과 지방에 알아듣게 타일러서 모두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議政府曰：“蓋聞，積貯者軍國之急務，苟粟多而財有餘，以守則固，以戰則勝，何爲而不成哉！漢有募民入粟之詔；宋有入中芻糧之令，是皆權時之宜，欲實邊備而已。我國家近年以來，歲比不登，軍餉不裕，儲峙一事，所當講畫，矧今西北兩界方有邊警，數萬之衆，將何以濟？飛輓之勞，恐不能支，其令大小臣民，蓄積於兩道者，其所有穀數，咸以實聞，各隨其直，京外布粟，從願質換。此是一時權宜之舉，非抑勤雇買之比，曉諭中外，咸使知悉。”</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9일 (갑인)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과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북정 부원수(北征副元帥) 등에게 명하여 병방 승지(兵房承旨)와 함께 정벌에 나가는 서울 군사를 훈련원(訓練院)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도록 하고, 이어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와 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에게 명하여 선온(宣醞)23549) 을 가지고 가서 하사(下賜)하게 하고 또</p>	<p>○命議政府、兵曹、漢城府堂上及西北面都元帥、北征副元帥等，同兵房承旨試射赴征京軍士于訓練院，仍命都承旨鄭敬祖、左承旨許琛齎醞賜之，又賜樂。</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10일 (을묘) 2번째기사</p>	<p>음악(音樂)도 하사하였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정탁(鄭鐸)이 와서 아뢰기를, “군량(軍糧)이 넉넉지 못하니 마땅히 북방 정벌은 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북방 정벌을 정지시키려고 말하는 것인가?” 하자, 정탁이 아뢰기를, “북방 정벌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까닭으로 그 큰 폐단을 들어서 이를 아뢴 것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같은 소환(疏闊)23553 한 말은 다시는 논계(論啓)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司諫院獻納鄭鐸來啓: “軍糧不敷, 不宜北征。” 傳曰: “欲停北征而言乎?” 鐸啓曰: “欲停北征, 故舉其大弊而啓之耳。” 傳曰: “欲免含默而有是言乎? 如此踈闊之言, 勿復論啓。”</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11일 (병진) 2번째기사</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정탁(鄭鐸)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아뢴 바, ‘군량(軍糧)이 넉넉지 못하니 마땅히 북방 정벌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윤희를 받지 못했으니, 세 번 생각해 주시기를 원 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북방 정벌의 일은 비록 큰 승리(勝利)를 얻더라도 그대들은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대들은 또한 반드시 세차게 뛰면서 이를 말한 것이다. 지금의 형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내가 혼자 결단 하여 큰 일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일찍이 변경(邊境)을 진압하여 다스린 대 신(大臣)과 조정에 있는 여러 재상(宰相)들과 더불어 의논해 정하여 이를 한 것이니, 절대로 중지(中止)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대는 물러가서 승패(勝敗) 를 기다리고 있으라.” 하였다. 정탁이 다시 아뢰기를, “북방 정벌의 거사(舉事)는 폐해가 진실로 만단(萬端)이나 되므로, 지금 비록</p>	<p>○司諫院獻納鄭鐸來啓曰: “昨日啓: ‘軍糧不敷, 不宜北征.’ 未蒙允許, 願留三思。” 傳曰: “北征之事, 雖得大捷, 爾等必不喜也; 若不利而還, 則爾等亦必奮躍而言之。當今之勢已如此, 予非獨斷而舉大事, 嘗與鎮邊大臣及在朝諸宰議定爲之, 萬無中止之理, 爾其退去, 以待勝敗。” 鐸更啓曰: “北征之舉, 弊固萬端, 今雖已辦, 以此備邊可也, 中止何害?” 傳曰: “勿復言。” 傳于兵曹曰: “京軍士抄擇試射時, 佯不能窺避忠贊衛許儉決杖一百、徙昌洲; 閑良崔叔南決杖一百、徙碧團; 吹螺赤權戒山決杖一百、徙造山堡。”</p>

	<p>이미 구비(具備)했다라도 이로써 변경(邊境)을 방비(防備)하면 될 것이니, 중지(中止)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였다.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경군(京軍)을 가려 뽑아 활쏘기를 시험할 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면서 피하기를 도모한 충찬위(忠贊衛)의 허검(許儉)은 곤장(棍杖) 1백 대를 집행한 후 창주(昌洲)로 귀양보내고, 한량(閑良) 최숙남(崔叔南)은 곤장 1백 대를 집행한 후 벽단(碧團)에 귀양보내며, 취라치(吹螺赤)23556 권계산(權戒山)은 곤장 1백 대를 집행한 후 조산보(造山堡)로 귀양보내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6월 14일  (기미) 2번째기사</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정탁(鄭鐸)이 와서 아뢰기를,  “북방 정벌에 군량(軍糧)의 비용이 셀 수 없을 정도이므로, 전후(前後)에 중지할 것을 간(諫)하는 말을 굳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결망(缺望)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p> <p>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司諫院獻納鄭鐸來啓曰：“北征，軍糧之費不貲，而前後諫止之語，固拒不納，不勝缺望。” 不聽。</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6월 16일  (신유) 4번째기사</p>	<p>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뢰기를,  “북방 정벌의 폐해는 이보다 먼저 이미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臣) 등이 되풀이해 이를 생각해 보건대, 저 오랑캐들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요채처(要害處)에 험고(險固)를 설치하여 우리 군대를 맞아 친다면 아마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이 있을 듯하니, 그 치욕(恥辱)은 경흥(慶興)에서 당한 것보다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殿下)께서는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p> <p>하였다. 지평(持平) 홍계원(洪係元)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종성 판관(鍾城判官)이 되었기에 본도(本道)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본도(本道)는 군량(軍糧)이 모두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나라에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저축된 곡식을 헤아려 보니 자못 틀린 것</p>	<p>○臺諫(合) [闔] 司來啓曰：“北征之弊，前此已啓之矣，然臣等反覆思之，彼虜自知其罪，設險要害，以邀我軍，則恐有不測之患，其恥有甚於慶興者矣。願殿下更留三思。” 持平洪係元啓曰：“臣曾爲鍾城判官，知本道之事，本道軍糧，皆散在民間，曩者國家遣敬差官，改量儲穀，頗有差繆，監司受教，又改量，多虧欠，分徵官吏，其充納者，或以瞿麥，或以蕎麥，以盈其數，而會</p>

	<p>이 있었으며, 감사(監司)가 상교(上敎)를 받아 또 고쳐 헤아려 보니 모자라는 것이 많았으므로, 관리(官吏)에게 나누어 징수(徵收)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서 바친 사람은 혹은 구맥(瞿麥)23571) 으로, 혹은 교맥(蕎麥)23572) 으로 그 수량을 채우고 회계(會計)는 모두 쌀로써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남겨둔 곡식도 또한 해가 오래 되어 좀먹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 많은 군사를 몰아서 본도(本道)에 들어오면 장차 무엇으로써 군량(軍糧)을 대겠습니까? 더구나 본도(本道)는 산은 많으나 넓은 들은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산에서 밭을 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꼴도 넉넉하지 못하니, 지금은 아마 미처 갖추지 못할 듯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 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어찌 일찍 와서 아뢰지 않았는가?”</p> <p>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부터 아뢰는 것도 오히려 늦지는 않습니다. 비록 시기에 임하여 겨우 2, 3일이 떨어져도 오히려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저 일에는 혹 고칠 수 없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p> <p>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計則皆載以米，且其留庫之穀亦年久蠹朽不堪食。國家驅大軍入本道，將何以饋餉。且本道多山而無廣野，民皆墾田於山，芻茭不敷，今恐未及辦也。”傳曰：“此言不可聽也，何不早來啓之乎？”臺諫更啓曰：“自今啓之，尙未晚也，雖臨時纔隔二、三日，猶可停也，大抵事或有不可更改，此則可改也。”不聽。</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6월 17일 (임술) 2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유인(李有仁)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愨) 등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상고해 보건대, 옛날 노(魯)나라 임금 백금(伯禽)을 정벌할 적에 구량(糗糧)23578) 을 쌓아두고 추교(芻茭)23579) 를 쌓아두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군대를 내보내고 여러 사람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영안(永安) 한 도(道)는 산천(山川)이 험준하며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적으니, 2만 명 군사의 건량(乾糧)과 추교(芻茭)를 아마 지탱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또 남방의 백성들은 편안히 살아온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전쟁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초목(草木)도 나지 않는 땅에 몰아들이</p>	<p>○司憲府大司憲李有仁等、司諫院大司諫尹愨等上疏，其略曰：  謹按昔伯禽之征西戎，峙乃糗糧，峙乃芻茭，然則行師動衆，必以此爲先，永安一道，山川險阻，土瘠民少，二萬之衆，糗糧芻茭，恐不能支，且南民安養旣久，不習兵革，一朝驅入不毛之地，不戰而氣索，魂膽俱喪，烏得而用之哉？北方風氣早寒，九月之間，雨雪載</p>

게 되면 싸움을 하기 전에 기력(氣力)이 다하여 혼담(魂膽)이 모두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북방은 풍기(風氣)가 일찍이 추워서 9월 중순이면 눈이 길에 가득 차게 내려서 사람과 말이 다니지 못하고 10월에 얼음이 얼게 되면 쌓이 눈이 정강이까지 빠지게 되어 놓고 낮음을 분변할 수가 없으니, 남방 사람의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는 습성(習性)으로 넘어지고 빠져서 얼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랑캐는 승냥이와 이리와 같은 존재이어서 시기를 타서 몰래 일어나는 줌도 독과 같았으므로, 옛날의 제왕(帝王)들은 이들을 몰아내기를 모기와 같이 할 뿐이었습니다. 만서(嫚書)23580)의 모욕(侮辱)은 천하의 큰 치욕(恥辱)이므로, 10만 군사로써 흉노(匈奴)의 땅에 횡행(橫行)하기를 자원(自願)한 번쾌(樊噲)의 계책이 실수가 아닌데도 세상에 계포(季布)가 없었다면, 누가 번쾌가 목을 베일 사람인 줄을 알았겠습니까?23581) 옛날의 대신(大臣)은 군주(君主)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목전(目前)의 공도 구하지 않고서 국가를 위해 장구(長久)한 생각을 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는데, 지금 한 명의 장수의 죽음이 과연 만서(嫚書)의 치욕(恥辱)보다 더한 모욕이 되겠습니까? 비록 선우(單于)의 목을 매달고 월지(月支)의 머리를 음기(飲器)23582)로 만들어 한 번 군사를 일으켜 다 멸망시키더라도 또한 인정전(仁政殿)에서 한 번 하례(賀禮)를 받는 일에 불과할 뿐일 것이며, 얻은 것이 잃은 것을 보충할 수가 없다면 그것이 나라의 계책에 또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일 성공과 실패를 알기가 어렵고 편안함과 위태함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 이미 소비된 저축은 1개월 동안에 갑자기 넉넉해질 수 없으며, 이미 발단(發端)된 불화(不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여 갑자기 지식(止息)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잇달아 화(禍)가 맺어져서 시끄러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록 의논하는 사람이 살코기를 씹어 먹더라도 무엇이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臣) 등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분디 한 가지 일도 없었는데, 무엇이 괴

塗, 人馬不通, 至於十月之交, 則積雪沒脛, 不辨高下, 以南人不耐寒之性, 顛仆陷溺而凍死者, 不知幾何也。 戎狄豺狼也, 乘時竊發, 有同狗偷, 古之帝王, 驅之如蚊蠅而已。 嫚書之辱, 天下之大恥也, 願以十萬衆, 橫行匈奴中, 樊噲之策, 未爲失也, 世無季布, 誰知噲可斬也? 古之大臣, 不徇君意, 不邀近功, 爲國家長遠慮蓋如此。 今一將之死, 果辱於嫚書之恥乎? 縱使繫單于之頸, 飲月支之頭, 一舉而盡滅之, 亦不過仁政殿一受賀而已, 所獲不得補其所亡, 其於國計又何補焉? 萬一成敗難知, 安危不測, 則已費之儲, 不可旬月而遽裕; 已開之釁, 不可談笑而遽息, 兵連禍結, 糾紛不解, 雖食議者之肉, 何補於事哉? 臣等以爲, 國家本無一事, 何苦而爲此乎? 古人有言曰: “國家之得失、生民之利害、社稷之大計, 惟所見聞而不繫職司者, 獨宰相行之, 諫官言之。” 聖上以興師雪恥, 謀及卿相, 卿相曰可者, 非不知窮兵遠略之爲非, 而逢迎上意, 莫敢矯其非, 豈爲相之道乎! 臺諫論此而見罷, 聖上拒諫而不納, 國事日非, 恐自此而始矣。

로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국가의 득실(得失)과 백성의 이해(利害)와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보고 들으면서도 직사(職司)에 매이지 않는 것은, 오직 재상(宰相)만이 이를 실행하고 간관(諫官)만이 이를 말한다.’고 했는데, 성상(聖上)께서 군대를 일으켜 치욕(恥辱)을 씻는 일로써 모의(謀議)가 경상(卿相)에게 미치니, 경상(卿相)으로 ‘웁습니다.’고 말한 사람은 무력(武力)을 남용(濫用)하여 먼 지방을 경략(經略)하는 것이 그릇된 일인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성상 뜻에 영합(迎合)하여 그 그른 것을 감히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재상(宰相)이 된 도리이겠습니까? 대간(臺諫)이 이를 논(論)하다가 파면을 당하고 성상(聖上)께서 간언(諫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라 일이 날로 그릇되는 것이 아마 이로부터 시작될 듯합니다. 근일에 정수강(丁壽岡)이 간관(諫官)이 되어 또한 이를 본받아 부회(附會)하였으나, 그는 언행(言行)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소인(小人)이므로 그다지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조정의 취향(趣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大臣)이 근본으로써 생각을 하지 않고서 한갓 목전(目前)의 일만 유쾌하게 여긴다면 소신(小臣)이 누군들 공을 구하는 일을 계책으로 삼고서 반드시 한 자루에 칼에 만족함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거사(學事)를 정지시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르시고, 겸하여 정수강(丁壽岡)을 추국(推鞠)하여 아첨하는 기풍(氣風)을 막으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상소(上疏) 중에 말한 ‘대간(臺諫)이 이를 논(論)하다가 파면을 당하고 성상(聖上)께서 간언(諫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대간(臺諫)이 파면을 당한 것은 북방 정벌을 간(諫)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도 또한 들어줄 만한 것인데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대간(臺諫)의 말도 또한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이 있으니, 그른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어찌 이를 간언(諫言)을 거절한다고 하겠는가? 비록 군량(軍糧)이

近日丁壽岡爲諫官，亦效此而附會，彼則反覆小人，不足深責，然亦足以見朝廷之趣向矣。大臣不以根本爲念，而徒快目前之事，則小臣孰不以邀功爲策，而必欲求逞於一劍哉？特停此舉，以從輿情，兼推壽岡，以杜諂佞之風。傳曰：“疏中言臺諫論此而見罷，聖上拒諫而不納，臺諫之見罷，非以諫北伐也，予之不聽，亦非所聽而不聽也。臺諫之言，亦有是有非，非而不聽，豈可謂之拒諫乎？雖曰糧餉不敷，國家亦已酌量矣。新進之士，則或有才察而言之，大司憲、大司諫，皆耆宿諳練，何以予所無之事，列於疏章乎？其問以啓。”



	<p>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마는 국가에서도 또한 이미 짐작하여 헤아리고 있다. 신진(新進)의 선비가 혹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사헌(大司憲)과 대사간(大司諫)은 모두가 덕망이 있는 노인으로서 〈일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없는 일을 소장(疏章)에 열거(列擧)하는가? 그것을 몰아서 아뢰라.”</p> <p>하였다.</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26일 (신미) 1번째기사</p>	<p>중궁(中宮)의 탄일이었다. 왕세자(王世子)가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하례(賀禮)를 올렸다. 명하여 종친(宗親) 1품과 의빈부(儀賓府),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과 도총관(都摠管)·홍문관(弘文館)·승정원(承政院)·예문관(藝文館)의 관원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도록 하였다.</p>	<p>○辛未/中宮誕日。王世子率百官陳賀，命饋宗親一品、儀賓府、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堂上、都摠管、弘文館、承政院、藝文館、入直諸將。</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26일 (신미) 3번째기사</p>	<p>도원수(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유막동(劉莫同)이 상언(上言)한 것을 가지고 아뢰기를,</p> <p>“전일에 유막동(劉莫同)이 곡식 3백 석(碩)을 바치고 그 아들 유종생(劉從生)을 속죄(贖罪)하기를 청했으므로, 그에게 공(功)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도록 명하셨는데, 지금 또 상언(上言)하기를, ‘유종생(劉從生)이 나이 60세가 넘었으며 또 변방으로 옮길 때 신장(訊杖)을 17차례나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력(氣力)이 건장하지 못하니, 어떻게 공을 세우겠습니까?’ 하면서 쌀 백 석(碩)을 바치고 그 아들을 속죄(贖罪)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여야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그것을 오늘 와서 모이는 재상(宰相)에게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 이세좌(李世佐)가 의논하기를,</p> <p>“곡식을 바치고 죄를 면하는 일이 비록 옛날에 있었다고는 하나, 경상(經常)23602의 법은 아니니, 다른 방법에 의거하여 공을 세워 죄를 속(贖)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만약 한때의 권의(權宜)로 소원을 따르는 것이 방</p>	<p>○都元帥李克均將劉莫同上言啓：“前日劉莫同請納粟三百碩而贖其子從生，命令立功自贖，今又上言曰：‘從生年逾六十，且徙邊之時，受訊杖十七次，今氣力不健，何以立功?’請納米百碩，贖其子，何以處之?”傳曰：“其議于今日來會宰相。”李世佐議：“納粟免罪，雖古有之，然非經常之法，依他立功贖罪爲便。若以一時權宜，從願爲不妨，則須令納穀倍數，以防富者僥倖之弊。”從之。</p>

	<p>해가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배수(倍數)의 곡식을 바치게 하여 부자(富者)가 요행을 바라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254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6월 29일 (갑술) 2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윤효손(尹孝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26일에 큰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려서 나무가 뽑히고 벼가 넘어졌으며 민가(民家)가 무너지고 인물(人物)이 깔려서 상(傷)했습니다.”</p> <p>하니,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경(卿)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도내(道內)의 풍재(風災)가 매우 심한 것을 자세히 알고서 내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벼곡식이 손상(損傷)된 상황(狀況)을 다시 자세히 살펴서 빨리 아뢰도록 하고, 또 깔려서 상(傷)한 인물(人物)을 구료(救療)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黃海道觀察使尹孝孫馳啓：“本月二十六日大風且雨，木拔禾偃，民家頽落，人物壓傷。”下書曰：“今因卿啓，備悉道內風災甚劇，予甚懼焉。其禾穀損傷之狀，更審馳啓，且救療壓傷人物。”</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1일 (을해) 1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난 6월 26일 황해도(黃海道)에 큰 바람이 불어서 벼가 넘어지는 재변(災變)이 있었으므로 내가 매우 두려워하였다. 도내(道內)에 풍재(風災)가 있고 없는 것을 급히 치계(馳啓)하라.”</p> <p>하였다.</p>	<p>○朔乙亥/下書諸道觀察使曰：“去六月二十六日，黃海道有大風偃禾之變，予甚懼焉。道內風災有無，斯速馳啓。”</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3일 (정축) 2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가 아뢰기를, “어제 명하여 윤호(尹壕)에게 묻도록 했으나 사간원(司諫院)에서 함문(緘問)23619) 하였는가를 알 수가 없으므로, 품지(稟旨)23620) 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윤호(尹壕)를 불러서 이를 묻고 또 이런 뜻으로써 사간원(司諫院)에 유시(諭示)하라.”</p> <p>하였다. 윤호(尹壕)가 와서 아뢰기를, “전의원(典醫院)과 혜민서(惠民署)의 일은 내약방(內藥房)23621) 에서 모두 다스리는데 제조(提調)가 약리(藥理)를 알지 못한다면 외방(外方)에서 바치는</p>	<p>○都承旨鄭敬祖啓曰：“昨日命問尹壕，未知諫院緘問乎？請稟旨。”傳曰：“召問之，又以此意諭諫院。”尹壕來啓曰：“典醫、惠民之事，內藥房總治之，提調不解藥理，則外貢藥材真假，必不能辨，臣與藥房提調同議啓之。車得驂以通政，例不得爲提調，其時鄭麟趾、權瓚，以藥房提調，薦得驂爲提調。”傳曰：“以領敦寧之言，諭諫</p>

	<p>약재(藥材)의 진가(眞假)를 반드시 능히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약방 제조(藥房提調)와 함께 의논하여 아뢴 것입니다. 그런데 차득참(車得驂)은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관계(官階)로서는 준례(準例)에 의하면 제조(提調)가 될 수가 없는데도 그 때 정인지(鄭麟趾)와 권찬(權攢)이 약방 제조(藥房提調)로 차득참(車得驂)을 천거하여 제조(提調)로 삼았던 것입니다.”</p> <p>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영돈녕(領敦寧)의 말을 사간원(司諫院)에 유시(諭示)하라.”</p> <p>하였다. 정언(正言) 권유(權瑠)가 다시 아뢰기를,  “정인지(鄭麟趾)가 차득참을 천거한 것이 어찌 규식(規式)이겠습니까? 대저 &lt;관직을&gt; 제수(除授)하는 것은 전조(銓曹)23622)의 임무이니 윤호(尹壕)가 어찌 감히 관권(官權)을 침해하면서 이를 계청(啓請)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의원(醫員) 당상관(堂上官)의 청탁(請託) 때문에 계청(啓請)한 것일 것이니, 그 실정(實情)을 추국(推鞠)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어찌 사정(私情)이 있었겠는가? 가령 대사간(大司諫)이 제조(提調)가 되었다라도 약리(藥理)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약품(藥品)의 좋고 나쁜 것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일로 추국(推鞠)할 수는 없다.”</p> <p>하였다. 권유가 아뢰기를,  “의약(醫藥)에 관한 일은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진실로 이를 주관(主管)해야만 하는데, 인물(人物)을 진퇴(進退)시키는 것이 어찌 윤호(尹壕)의 임무이겠습니까?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院。”正言權瑠更啓曰：“鄭麟趾薦得驂，豈是規式？大抵除授，銓曹之任也，壕豈敢侵官啓之？此必因醫員堂上請托而啓也。請推其情。”傳曰：“豈有私情，假令大司諫爲提調，不知藥理，則焉知藥之善惡？不可以此而推之。”瑠曰：“醫事，藥房提調固當主之，進退人物，豈是壕之任哉？請鞠之。”不聽。</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4일</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권유(權瑠)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정인지(鄭麟趾)와 권찬(權攢)은 같은 시기의 제조(提調)가 아닌데, 윤호(尹壕)가 어느 곳에서 듣고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까? 또 인물(人</p>	<p>○戊寅/司諫院正言權瑠來啓曰：“臣聞鄭麟趾與權攢非一時提調，壕何所聞而啓之如此乎？且銓選人物，吏曹之任</p>

<p>(무인) 1번째기사</p>	<p>物)을 전선(銓選)하는 것은 이조(吏曹)의 임무인데도 제조(提調) 홍상(洪常)과 권경희(權景禧)가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아울러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혜민서(惠民署)는 외방(外方)에서 바치는 약재(藥材)를 모두 맡고 있으므로, 윤호(尹壕) 등은 약방 제조(藥房提調)로서 이를 아뢰었던 것이니, 어찌 사정(私情)이 있었겠는가?”</p> <p>하였다. 권유가 아뢰기를,</p> <p>“정인지(鄭麟趾)와 권찬(權攢)은 같은 시기의 제조(提調)가 아닌데도 억탁(臆度)하여 아뢰었으니,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마땅히 한림(翰林)으로 하여금 이를 묻도록 하겠다.”</p> <p>하고는, 즉시 검열(檢閱) 손중돈(孫仲墩)에게 명하여 가서 묻도록 하니, 윤호(尹壕)가 답하기를,</p> <p>“전일에 한 늙은 의원(醫員)이 있어 이 일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시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손중돈이 이대로 아뢰니, 전교(傳敎)하기를,</p> <p>“이것은 실로 실정(實情)이 없는 것이니, 다시 물어 무엇하겠는가? 그것을 사간원(司諫院)에 유시(諭示)하라.”</p> <p>하였다.</p>	<p>也，而堤調洪常、權景禧同議而啓請，并問之。”傳曰：“惠民署全管外貢藥材，壕等以藥房提調啓之，豈有私情？”瑠曰：“鄭麟趾與權攢，非一時提調而臆度以啓，請鞫之。”傳曰：“當使翰林問之。”卽命檢閱孫仲墩往問之。壕對曰：“前日有一老醫言之，然日久忘不記得。”仲墩以啓。傳曰：“此實無情，更問何爲，其諭諫院。”</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5일 (기묘) 2번째기사</p>	<p>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김응기(金應箕)가 와서 아뢰기를,</p> <p>“신(臣)이 평안도(平安道)로부터 오면서 본도(本道)와 황해도(黃海道)의 농사를 살펴보니 보리와 밀이 이미 다 타서 손상(損傷)되었고, 지난달 26일에는 풍재(風災)가 더 보태어져서 큰 나무가 뽑히고 벼가 다 넘어졌으므로 이미 추수(秋收)의 가망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도(道)의 군사를 징발하여 변경</p>	<p>○司憲府執義金應箕來啓曰：“臣自平安道而來，觀本道及黃海道農事，兩麥旣已焦損，去月二十六日，加以風災，大木拔去，禾稼盡偃，已無秋望，而調兩道兵，分戍邊境，非徒往戍者不能贏</p>

(邊境)을 나누어 지키게 하니, 비단 가서 지키는 군사가 식량(食糧)을 싸가지고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도 또한 반드시 굶주림에 고생할 것입니다. 만약 본도(本道)의 병사(兵使)로 하여금 무재(武才)가 있는 수령(守令)을 선택하여 거느리고 방어(防禦)하게 하며 또 경중(京中)의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아 보내어 여러 진(鎭)을 나누어 방어(防禦)하도록 한다면 또한 죽히 미리 준비하여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니, 어찌 특별히 원수(元帥)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금년 농사(農事)가 이와 같으므로 북방 정벌의 거사(舉事)는 그쳐야 할 것인데도 그치지 않으니, 신은 실로 결망(缺望)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모두가 마지못해서 하는 거사(舉事)이다.”

하였다. 김응기가 아뢰기를,  
 “평안도에서는 다만 합번(合番)23641) 하여 방수(防戍)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원수(元帥)를 보낸다면 폐해가 이보다 심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북방 정벌은 비록 혹 뜻대로 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니, 전쟁이 계속되고 재화(災禍)가 맺어져서 거의 편안한 해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군주(君主)는 백성의 부모(父母)이니 어찌 죄 없는 백성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신(臣)은 이로부터 변방의 근심이 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대는 조정의 의논을 알지 못하고서 함부로 아뢰는 것이다. 국가에서 이미 짐작(斟酌)하여 행하는 것인데, 그대가 적자(赤子)23642) 를 반드시 죽을 곳에 몰아넣는다고 말하니, 이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의 말과 같다. 옛날의 제왕(帝王)이 군사를 일으켜 죄 지은 자를 토벌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백성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었던 것인가? 지금의 이 거사(舉事)는 강토(疆土)를 넓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사지(死地)에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며, 마지못해서

糧，居民亦必阻飢。若令本道兵使，擇率有武才守令防禦，又抄遣京中能射人分防諸鎭，則亦足備禦，何必特遣元帥乎？且今年農事如此，而北征之舉可已不已，臣實缺望。”傳曰：“皆不得已之舉也。”應箕曰：“平安道，但令合番防戍可也，遣元帥則弊莫甚焉。且北征雖或得意而還，彼必報復，兵連禍結，殆無寧歲。夫君者，民之父母也，豈可驅無罪之民於死地乎？臣恐自是邊患不息矣。”傳曰：“爾不知朝廷之議而妄啓也，國家既已斟酌爲之，爾云驅赤子於必死之地，是猶不學者之言也。古之帝王，興兵討罪，是皆驅民於死地乎？今之此舉，非欲拓疆土也、非欲納民於死地也，在所不得已也。”

	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5일 (기묘) 3번째기사	임금이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曹偉)·응교(應敎) 조지서(趙之瑞)· 저작(著作) 이의손(李懿孫)에게 명하여 성균관(成均館)에 가서 유생(儒 生)들에게 시험을 보이게 하고 시권(試券)을 거두어 오도록 하였다. 이어 주 서(注書)에게 명하여 선은(宣醞)23643) 을 가지고 가서 성균관의 관원과 유 생(儒生)과 조위(曹偉) 등을 접대하도록 하고, 식마논도(息馬論道)로써 부제 (賦題)를 내어 시험하게 하였다.	○命同副承旨曹偉、應敎趙之瑞、著 作李懿孫往成均館，試儒生，收券而 來。仍命注書齋宣醞，饋館員及儒 生。曹偉等以息馬論道爲賦題試之。
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6일 (경진) 2번째기사	임금이 명하여 호조 참판(戶曹參判) 권건(權健)과 대호군(大護軍) 신종호(申從濩)와 대사성(大司成) 이숙감(李淑瑊)을 불러 와서 유생 (儒生)들의 제술(製述)을 과차(科次)23648) 하게 하고, 이어 선은(宣醞)을 내 려 주었다. 생원(生員) 황필(黃瑱)에게는 호초(胡椒) 3두(斗), 대록피(大鹿皮) 1장(張)을 내려주고, 제 2등인 최숙생(崔淑生)에게는 호초(胡椒) 2두(斗)를 내 려 주었다.	○命召戶曹參判權健、大護軍申從 濩、大司成李瑒瑊，科次儒生製述，仍 賜宣醞。生員黃瑱等十四人中格，賜 黃瑩胡椒三斗、大鹿皮一張，第二崔淑 生胡椒二斗。
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7일 (신사) 1번째기사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간 (臺諫)·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불러 전교(傳敎)하기를, “허혼(許混)의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여러 사람 의 의논을 채택(採擇)하여 이를 정해야 할 것이니, 각기 헤아려 정하여 아뢰 도록 하라.” 하니, 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허혼(許混)의 죄는 마땅히 율에 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는 예(例)가 있으니 정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임금을 속인 죄는 진실로 주형(誅刑)에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러나 우리 나라의 변방 병졸들은 대개가 모두 겁이 많고 약하여 성식(聲 息)23650) 이 있음을 들으면 모두 물러나 움츠리면서 스스로 편안할 계책만	○辛巳/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 曹、漢城府、臺諫、弘文館。傳曰： “許混之罪，固不可赦，然當更採衆議 而定之。其各商推以啓。”洪應、李 克培、尹壕議：“許混之罪，當依律施 行，然立功自贖有例，上裁。”魚世謙 議：“許混欺罔之罪，固不容誅，但我 國邊卒，類皆怯弱，聞有聲息，皆退縮 爲自安之計，無一人攘臂而先者，遠近 聞混殺野人而被誅，烏能悉混奸詐之 情？恐士卒疑沮縮惡，氣益不振也。 且混初因車宥等之言，遂生邪計，不過

찾고 한 사람도 팔을 걷어 올리면서 선두(先頭)에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에서 허혼이 야인(野人)을 죽이고 자기가 주형(誅刑)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찌 능히 허혼의 간사한 실정(實情)을 자세히 알겠습니까? 사졸(士卒)들이 의심하여 기가 꺾이며 움츠리고 부끄러워서 기세(氣勢)가 더욱 떨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허혼은 처음에 차유(車宥) 등의 말 때문에 마침내 간사한 계책을 내었으니, 공을 탐내었는 데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혼을 국경(國境) 위에서 죽여 야인(野人)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은 야인(野人)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고 한갓 우리의 약점(弱點)만 보일 뿐이니, 나라의 체면(體面)에 어떻겠습니까? 다만 야인(野人)을 죽인 일로 죄명(罪名)을 삼지 말고 바로 임금을 속인 죄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면 어찌 명분(名分)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다.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신하의 죄는 임금을 속인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신정(申澣)은 자신(自身)이 공신(功臣)이 되고 죄는 또 사유(赦宥)를 지났는데도 오히려 임금을 속인 것으로써 주형(誅刑)을 당했으니, 정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실수로 범한 죄는 큰 것이라도 용서하고, 고의(故意)로 저지른 죄는 작은 것이라도 형벌(刑罰)한다.’고 했는데, 지금 허혼의 사죄(死罪) 3조(條)는 모두가 고범(故犯)이니, 형률(刑律) 밖에서 살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방의 장수로 군사를 잃고 죄에 해당하는 자는 혹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는 것을 허가하지만, 허혼은 이와 같은 등류(等類)가 아닙니다.”

하였다. 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처음 마음은 다만 작상(爵賞)만을 요행히 바라고 탐욕(貪慾)이 시키는 바가 되어 성충(聖聰)을 속이고는 변방의 혼단(釁端)을 초래(招來)하는 지

貪功耳。或者欲戮混於境上，使野人知之，是爲野人報讎，徒示弱也，於國體何？但不以殺野人爲罪名，直據欺罔之罪罪之，何患無名？”李克均議：“人臣之罪，莫大於欺罔，申澣身爲功臣，罪又經赦，而猶以欺罔見誅，上裁。”鄭文炯議：“《書》云：‘宥過無大，刑故無小。’，今許混死罪三條，皆是故犯，不可律外求生，邊將喪師當罪者，或許以立功自贖，許混非此之類也。”李封議：“許混初心，只是僥倖爵賞，貪慾所使，而至於欺罔聖聰，以致邊釁，其罪固不容誅，祖宗朝邊將敗軍，立功自贖者，恐非此例。”盧公弼議：“許混貪功，欺罔朝廷，結釁隣寇，使西北之民騷然，不得寧居，若論其罪，死尙餘辜，宜正邦憲，以謝西民。”成健議：“許混，其志只在貪功，然欺罔國家，以啓邊釁，罪在當死。”呂自新、李有仁議：“許混罪狀，係干國家，不可更議，依律文施行爲便。但近日彼人之屢犯邊境，專以許混生釁之故也。臣等意謂，毋諱許混之事，斬於境上，又諭彼人致賻弔祭，則豈不解怨而快於心哉？臣等妄意，邊釁自此而息

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진실로 주형(誅刑)에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 변방의 장수가 싸움에 지고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한 사람은 아마 이런 예(例)가 아닌 듯합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은 의논하기를,  
 “허혼은 공을 탐내어 조정(朝廷)을 속이고 이웃 구적(寇賊)과 혼단(釁端)을 맺어 서북(西北) 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란스럽게 하여 편안히 거처할 수 없도록 했으니,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죽어도 오히려 죄가 남습니다. 마땅히 국법(國法)을 바르게 행하여 서방의 백성에게 사과(謝過)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허혼은 그 뜻이 다만 공을 탐내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속이고 변방의 혼단(釁端)을 발생시켰으니, 죄는 마땅히 죽는 데 해당합니다.”

하고, 여자신(呂自新)과 이유인(李有仁)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죄상(罪狀)은 국가에 관계되니 다시 의논할 수가 없고,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다만 근일에 저쪽 사람의 변경(邊境)을 여러번 침범하는 것은 오로지 허혼이 혼단(釁端)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臣) 등이 생각하기에는 허혼이 일은 숨기지 말고 국경(國境) 위에서 목을 베도록 하고, 또 저쪽 사람들을 개유(開諭)하여 부물(賻物)과 제문(祭文)을 내려 준다면 어찌 원망을 풀고서 마음에 통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신(臣) 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변방의 경보(警報)는 이로부터 그쳐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였다. 조익정(趙益貞)은 의논하기를,  
 “허혼(許混)은 임금을 속였으니,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또 저쪽 사람들이 자주 변경(邊境)을 침범하는 것은 오로지 허혼이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소치(所致)이니, 국경(國境) 위에서 목을 베어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朝廷)의 본뜻이 아닌 줄을 환하게 알도록 하고, 또 본가(本家)에 후(厚)

矣。” 趙益貞議：“許混欺罔君上，罪固當死，且彼人屢犯邊境，專是許混枉殺無辜之所致也，斬於境上，使彼人曉然知非朝廷本意，又厚賻本家，以解其怨。” 韓僴、李季全、權健、宋鐵山、李諱議：“許混邀功罔上，開釁召禍，斷之以律，情法無疑。” 閔永肩、尹愨議：“許混之罪，死有餘辜，可殺不可赦。” 尹坦、金諶、權景祐、鄭光世、黃事孝、楊沔議：“許混之罪，一則非奉調遣境外，擄掠人口，以至傷人，一則欺罔國家，一則境內奸細，走透消息於外人，三罪俱在斬律，求之生道，無所據依，況西北繹騷，必欲食其肉矣。依律科斷，以快其憤。” 趙之瑞議：“許混罔上邀功，罪不可赦，不容更儀。然以西北生釁，必由於混，當誅之，則情或不然，國家於丁亥、己亥，再加征討，殺其父兄，係虜其妻孥，彼常欲舐糠及米，以報于我，而混之事，適與時會，不然則前何忘我於大，而後何必報於細乎？造山失守，使賊屠城殺將，及被其鞫，罔上納招，其罪與混無幾，國家卒用寬典，今且北征，許人自贖，混之罪雖不可赦，然其人能馳



하게 부물(賻物)을 주어 그들의 원망을 풀도록 하소서.”

하고, 한간(韓僑)·이계동(李季叟)·권건(權健)·송철산(宋鐵山)·이집(李諶)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공을 구하여 임금을 속이고 혼단(釁端)을 열어 전화(戰禍)를 초래(招來)했으니, 형률(刑律)로써 처단(處斷)하는 것이 사정(事情)과 국법(國法)에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민영건(閔永肩)과 윤민(尹愆)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죄는 죽어도 남은 죄가 있으니, 죽어야 하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윤탄(尹坦)·김심(金諶)·권경우(權景祐)·정광세(鄭光世)·황사효(黃事孝)·양면(楊沔)은 의논하기를,

“허혼의 죄는 한 가지는 임금의 명령으로 국경(國境) 밖에 보낸 것이 아닌데도 인구(人口)를 사로잡아 사람을 상(傷)하기까지 한 것이고, 한 가지는 국가를 속인 것이고, 한 가지는 경내(境內)의 간첩(間諜)이 달아나서 소식(消息)을 외인(外人)에게 통하게 한 것입니다. 세 가지 죄가 모두 참형(斬刑)에 해당하니, 이를 살리는 길을 구하여도 의거할 데가 없습니다. 하물며 서북(西北) 지방이 계속해 소란스러우니, 반드시 그 살코기를 먹고 싶을 것입니다. 형률(刑律)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여 그 분심(憤心)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소서.”

하였다. 조지서(趙之瑞)는 의논하기를,

“허혼은 임금을 속이고 공을 구했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다시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북(西北) 지방에 혼단(釁端)을 만든 것이 반드시 허혼에게서 말미암았다 하여 마땅히 죽여야 한다면, 사정(事情)이 혹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국가에서 정해년(23651) 과 기해년(23652) 에 두 번이나 정벌을 행하여 그 부형(父兄)을 죽이고 그 처자(妻子)를 사로잡았으니, 저들이 상시로 겨를 앓다가 마침내 쌀까지 먹어치우듯이 욕심이 점점 커져서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했는데, 허혼의 일이 마침 시기가 서로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馬試劍，素號武健，其在世祖朝嘗被選擢，使混率其子爲士卒先，則或能忘驅敵愾，不爲無益，且國家人才有限，邊警不已，若一一任法，則能全者必少矣。吳純以大將失馭，不審國家，必置諸法乎？昔韓信當斬而不斬以立功，誠以才不可易得耳。” 李琚、許諶、李達善、申用漑、姜渾、金勘、李懿孫議：“許混行詐欺國，開釁招寇，此而不誅，無以懲後。” 劉璟、鄭鐸、權瑠、趙珩議：“許混邀功行詐，構釁西北，一國之人騷擾未寧者，皆混啓之也，依律文科斷何如？” 傳曰：“許混如有生道，固當活也，天道，春夏發生長養，秋冬肅殺斂藏，許混有武才，稍解文理，故在祖宗朝已嘗選用，予亦以爲有才，任爲邊將，混乃先爲要功之計，潛殺無辜野人，詐報節度使，稱爲獻捷，其欺罔莫甚。且賂遺唐人，欲掩其迹，若使上國聞之，其謂我國有人乎？虜再犯境，使國家多事，由混構釁之故也。造山之變，以許琮之言觀之，似不由混，然亦安知實非混之所致乎？今觀諸政丞之議，欲從輕典，然此不過求生道，未爲過也。趙之瑞常在經幄，

면 전일에는 어찌 우리에게 큰 것을 잇고 있다가 뒤에 와서는 어찌 작은 것을 만드시 보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조산(造山)이 수비(守備)를 잃어 적(賊)으로 하여금 성(城)을 무찌르고 장수를 죽이게 했는데, 후에 국문(鞫問)을 당하자 임금을 속이고 공초(供招)를 바쳤으니 그 죄는 허혼(許混)과 더불어 별로 틀리지 않았는데도 국가에서는 마침내 관대한 형벌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 또 북방 정벌에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속죄(贖罪)하도록 허가했으니 허혼의 죄는 비록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잘달리고 칼을 시험하여 본디부터 무용(武勇)이 있었고 건장(健壯)하다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세조조(世祖朝)에서 일찍이 선발(選拔)되었었으니, 허혼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거느리고 사졸(士卒)의 선두(先頭)에 서게 한다면 혹시 능히 자기의 몸을 염두(念頭)에 두지 않고 군주(君主)를 위하여 원한을 푸는 일에 이익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국가의 인재(人才)는 한정이 있으나 변방의 경보(警報)는 그치지 않았으니, 만약 날날이 형법(刑法)을 쓴다면 능히 보전(保全)될 사람은 만드시 적을 것입니다. 오순(吳純)은 대장(大將)으로써 통솔(統率)함을 잃었으니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만드시 형법(刑法)에 처(處)하겠습니까? 옛날에 한신(韓信)은 목을 베어야만 하는데도 목을 베지 않고서 공을 세우게 했으니, 진실로 인재(人才)를 쉽사리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거(李据)·허집(許誼)·이달선(李達善)·신용개(申用漑)·강혼(姜渾)·김감(金勘)·이의손(李懿孫)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속임수를 행하여 나라를 속이고 혼단(釁端)을 열어 구적(寇賊)을 불러 오게 했으니, 이와 같은데도 목을 베지 않는다면 후일의 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유경(劉璟)·정탁(鄭鐸)·권유(權瑠)·조행(趙珩)은 의논하기를,  
“허혼이 공을 구하여 속임수를 써서 서북(西北) 지방에 혼단(釁端)을 만들었

每進直言，予以爲直士也。今觀其議，未知意之所在也。全孝常之事，與此大不類，而引以爲例，吳純之事，亦非混之比也，而以爲若殺許混則吳純亦可置法，此言甚不是。又引韓信當斬不斬，韓信之事，固異於此，而其時勢亦異於今，然之瑞能知古事，豈不知事勢之不同而發此議乎？此必欲活許混而爲此議也。予欲問其情。但初欲博採群議，令各言其志，故置之耳。且議者或引申澣之事，澣元勳之子，身爲功臣，只以欺罔見誅，許混非特欺罔也，構釁邊境，以致國家之擾，罪固當死，其請刑境上之議，亦不可施行，宜速三覆典刑也。”趙之瑞啓曰：“臣果有罪，請待罪。”司憲府、司諫院(合) [闕] 司啓曰：“臣等初不知趙之瑞之議，今聞上教，全孝常、吳純之事，固與此不同，而以爲若殺許混則亦殺吳純乎？是要君也。韓信之事亦異於此，而引以啓之，必有其情，請鞫之。”傳于諸宰相曰：“之瑞非新進之士，久在經幄，且知古今之事，而其議如此，然已令言志而鞫之，不可，故置之。今臺諫請鞫，何以處之？”左議政洪應等

으니, 온 나라 사람이 소란을 일으켜 편안하지 못한 것은 모두가 허혼이 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율(律)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허혼을 만일 살리는 길이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살려야 할 것이다. 천지(天地) 자연의 도리는 봄과 여름에는 만물(萬物)을 낳아서 키우고, 가을과 겨울에는 초목(草木)을 말라 죽게 하고 거두어 두게 하는데, 허혼은 무재(武才)가 있고 문리(文理)도 조금 이해하는 까닭으로 조종조(祖宗)에서 이미 일찍이 선발하여 임용하였으며, 나도 또한 재간(才幹)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용하여 변장(邊將)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허혼이 이에 먼저 공을 요구하는 계책을 세워서 죄없는 야인(野人)을 몰래 죽이고는 절도사(節度使)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기를, ‘승전(勝戰)하여 수습을 바친다.’고 일컬었으니, 그 속임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었다. 또 중국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자취를 숨기려고 했으니, 만약 중국(中國)에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 나라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겠는가? 오랑캐가 국경(國境)을 두 번이나 침범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이 많도록 한 것은 허혼이 혼단(釁端)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산(造山)의 변고(變故)는 허중(許琮)의 말로써 살펴본다면 허혼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또한 실제 허혼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 여러 정승(政丞)들의 의논을 살펴보건대, 경(輕)한 형벌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살리는 도리(道理)를 구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니 지나친 것은 아니다.  
 조지서(趙之瑞)는 항상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매양 바른 말을 올리니 내가 정직한 선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논을 살펴보니 뜻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 전효상(全孝常)의 일은 이것과는 아주 같지 않는데도 이를 인용(引用)하여 예(例)를 삼기도 하고, 오순(吳純)의 일도 또한 허혼과 비교할 것이 아닌데도 말하기를, ‘만약 허혼을 죽인다면 오순(吳純)도 또한 형벌에 처

啓曰：“之瑞之議，果似有情，然已令各言其志而鞫之，則後之議國事者，必皆隨時低昂，不以實對。”傳曰：“諸議如此，其勿鞫。”臺諫更啓曰：“之瑞雖以生道求之，當直言其可生、可死而已，吳純等事，與此萬萬不同，而引以爲例，傳會議啓，必有其情，不可不問。”傳曰：“卿等之言是也，然已令言志，不可問也。”臺諫更啓曰：“之瑞議許混欺罔之罪，而對以不直之論，是亦欺罔也。今若置而不問，則後之議國事，亦必有挾情巧辭而無忌憚矣。請鞫之。”傳曰：“果如卿等之言，之瑞之議，必有其情，今若不問，後必有弊，憲府其鞫問以啓。”

(處)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말은 매우 옳지 못하다. 또 한신(韓信)의 목을 베어야만 하는데도 목을 베지 않은 일을 인용(引用)했지만, 한신의 일은 진실로 이와는 다르며, 그때의 형세도 또한 지금과는 다르다. 그러나 조지서는 능히 옛날의 일을 알고 있으니 어찌 사세(事勢)의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서 이런 의논을 꺼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허혼을 살리려고 해서 이런 의논을 한 것일 것이다. 내가 그 실정(實情)을 묻고자 하나, 다만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採擇)하려고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기 그 뜻을 말하도록 한 까닭으로 내버려 둘 뿐이다. 또 의논하는 사람중에 어떤 이는 신정(申靜)의 일을 인용(引證)하지마는, 신정은 원훈(元勳)23653)의 아들로써 자신(自身)이 공신(功臣)이 되었는데도, 다만 속인 일로써 주형(誅刑)을 당했는데, 허혼은 비단 임금을 속인 일뿐만이 아니라 변경(邊境)에 혼단(罅端)을 만들어 국가의 소란을 초래(招來)했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죽어야만 할 것이다. 그 국경(國境) 위에서 처형(處刑)할 것을 청하는 의논도 또한 시행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빨리 전형(典刑)을 삼복(三覆)23654) 해야 할 것이다.”

하니,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신(臣)이 과연 죄가 있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신(臣) 등은 처음에는 조지서(趙之瑞)의 의논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성상의 전교(傳敎)를 들으니 전효상(全孝常)과 오순(吳純)의 일은 진실로 이것과는 같지 않는데도, ‘만약 허혼을 죽인다면 오순(吳純)도 또한 죽이겠습니까?’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헐박하는 것입니다. 한신(韓信)의 일도 또한 이것과는 다른데도 이를 인용(引用)하여 아뢰었으니, 반드시 그 사정(私情)이 있을 것입니다.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조지서(趙之瑞)는 신진(新進)의 선비가 아니고 오랫동안 경약(經幄)에 있었으

며, 또한 고금(古今)의 일도 알고 있을 것인데도 그의 의논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이미 뜻을 말하도록 하고 국문(鞫問)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내버려 두었는데, 지금 대간(臺諫)이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 등이 아뢰기를,  
“조지서의 의논은 과연 사정(私情)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각기 그 뜻을 말하도록 하고서 국문(鞫問)한다면 후일의 국사(國事)를 의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시세(時勢)에 따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변동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국문(鞫問)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조지서는 비록 사람을 살리는 길로써 이를 구했지마는, 마땅히 살릴 만한 것을 바로 말해야 하였을 뿐입니다. 오순(吳純) 등의 일은 이것과는 절대로 같지 않는데도 인용(引用)하여 예(例)로 삼고 부회(傳會)하여 의논해 아뢰었으니, 반드시 그 사정(私情)이 있을 것입니다. 신문(訊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卿) 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미 뜻을 말하도록 했으니, 신문(訊問)할 수는 없다.”

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조지서가 허혼(許混)이 속인 죄를 의논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은 의논으로써 대답했으니 이것도 또한 속인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내버려 두고서 신문(訊問)하지 않는다면 후일의 국사(國事)를 의논하는 사람들도 또한 반드시 사정(私情)을 두고 교묘한 말로써 어렵게 여겨서 꺼림이 없을 것이니, 이를 국문(鞫

	<p>問)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과연 경(卿) 등의 말과 같다면 조지서의 의논은 반드시 그 사정(私情)이 있을 것이니, 지금 만약 신문(訊問)하지 않으면 후일에는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그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8일  (임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을 불러 말하기를,  “근일에 변방 백성이 사로잡혀 갔으니, 내가 실로 마음이 아프다. 지난번에 여러번 변방의 경보(警報)가 있었는데도 만호(萬戶)가 마음을 써서 방비해 막지 않았으며, 절도사(節度使)도 또한 능히 사실을 조사하고 단속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적변(賊變)을 불러 오게 하였으니 내가 실로 대단히 상심(傷心)하였다. 이 때문에 원수(元帥)에게 빨리 달려가서 조치(措置)하게하기를 명한다.”  하니, 이극균이 대답하기를,  “근일에 일어난 일은 모두 만호(萬戶)가 용렬하여 능히 방비를 하지 못하고 절도사(節度使)도 또한 사실을 조사하고 단속하지 못한 때문이오니, 국가에서 마땅히 율(律)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좁도독은 그 무리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먼저 적(賊)의 발자취를 알고 나서 저들이 몰래 강을 건너오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타서 모두 사로잡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적(賊)이 만약 와서 침범한다면 반드시 벽동(碧潼)의 경계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이(阿耳)의 적(賊)에게 앉아서 사로잡혔으니, 이것은 오로지 봉수(烽燧)23656) 와 후망(候望)23657) 을 근신(謹慎)하지 않은 데서 그렇게</p>	<p>○壬午/上御宣政殿，引見西北面都元帥李克均曰：“近者邊氓被擄，予實痛心，往者屢有邊警，而萬戶不用心備禦，節度使亦不能檢舉，致此賊變，予實痛心，肆命元帥，馳往措置。”克均對曰：“近日之事，皆緣萬戶庸劣不能防備，而節度使亦不能檢舉也。國家當以律治之。”上曰：“今之鼠竊，其徒幾何？予欲使先知賊之蹤迹，俟彼潛涉，乘機盡擒，何以則可乎？”克均曰：“賊若來寇，必發於碧潼地界矣。向者阿耳之賊，坐而見擄，專由不謹烽燧候望之致然也，且守護者皆釋鞍解甲，而賊虜則必自上流先登高岸，望見守護有無，農民出入，乘間竊發，故雖有守護，莫能及救。臣意以謂，遣人越境，訶知賊蹤，賊若乘夜潛涉，則擇其驍勇者若干人，整其器械，潛伏林莽，使若農民孤單出野，賊必輕我而來，乘此時邀</p>

된 것입니다. 또 수호(守護)하는 군사가 모두 안장을 풀고 갑옷을 벗고 있었는데도 오랑캐들은 반드시 상류(上流)에서 먼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 우리 수호군(守護軍)이 있고 없는 것과 농민(農民)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난 뒤 틈을 타서 몰래 일어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수호(守護)하는 군사가 있더라도 능히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臣)의 의견으로는 사람을 보내어 국경(國境)을 넘어가서 적(賊)의 발자취를 염탐해 알도록 하였다가, 적(賊)이 만약 밤을 이용하여 몰래 강을 건너온다면 사납고 용맹한 군사 약간인(若干人)만을 가려 뽑아서 그 무기(武器)를 갖추고 숲속에 몰래 매복(埋伏)하게 하고는 농민(農民)과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단(孤單)하게 들관에 나가게 한다면 적(賊)은 반드시 우리를 깔보고 올 것이니, 이때를 타서 맞아 친다면 모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臣)이 지금 길을 떠나면 오는 8월 보름 때에는 강계(江界)에 도착할 것인데, 강(江)에 있는 여러 진(鎭)을 돌아다니며 살펴보고서 방략(方略)을 지시(指示)하고 강계(江界)로 돌아온다면 오는 9월 초순(初旬)에는 서울에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臣)이 지금 데리고 가는 군대는 그 중에서 날랜 병졸을 가려 뽑는다면 3천명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오랑캐가 만약 여러 번 침범한다면 어찌 앉아서 그 치욕(恥辱)을 받겠습니까? 신(臣)은 적(賊)이 집으로 돌아가서 병졸이 흩어진 기회를 타서 바로 그 소혈(巢穴)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만약 우리의 위엄을 보이려고 한다면 마땅히 저들이 변방을 침범하는 것을 기다려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니, 경(卿)은 마땅히 참작하여 빨리 아뢰야 한다. 내가 조정의 신하와 더불어 의논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擊，則可以盡擒矣。 臣今發行，來八月望時可到江界，巡審沿江諸鎭，指授方略，還到江界，則來九月初旬，可以還京矣。” 又啓曰：“臣今帶去之軍，擇其精兵，則不下三千矣。 虜若屢犯，安可坐受其辱乎？ 臣欲乘賊還家兵散，直擣巢穴。” 上曰：“然，如欲示威，當俟彼犯邊問罪矣。 卿當斟酌馳啓，予與廷臣議爲之。” 克均曰：“臣與吳純領軍二，三百，分行諸鎭，脫有賊變，當領軍馳赴，若竝輸輜重而往，軍行不得銳進。 請於所留之鎭，二日以上散料。” 上曰：“可。” 仍賜克均段衣一領、弓二事、大箭一部、韃服俱，賜宴于訓練院。 命都承旨鄭敬祖、左副承旨權景禧賫宣醞(性) [往] 赴。

	<p>“신은 오순(吳純)과 더불어 군사 2, 3백 명만 거느리고 나누어 여러 진(鎭)에 갈 것인데, 만약 적(賊)이 침범하는 변고가 있으면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빨리 달려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군수품(軍需品)을 같이 운반하여 간다면 군대의 행진(行進)이 빨리 갈 수가 없으니, 머무는 진에서 2일 이상은 산료(散料)23658) 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p> <p>하고는, 이내 이극균에게 단의(段衣) 1령(領), 활 2사(事), 대전(大箭) 1부(部), 건복(鞬服)까지 하사(下賜)하고 훈련원(訓練院)에다 잔치를 내리게 하였으며,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와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희(權景禧)에게 명하여 선은(宣醜)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10일 (갑신) 2번째기사</p>	<p>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하직하니,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대저 오랑캐는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므로 선동(煽動)하여 병란(兵亂)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 그들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원대(遠大)한 의견(意見)을 자세히 구(求)하고 깊은 계획을 낱낱이 가려보건대, 옛날의 제왕(帝王)들은 기미(羈縻)의 정책(政策)으로 대우(待遇)하여 중하(中夏)의 침범을 방비(防備)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것이 곧 떳떳한 도리(道理)였다. 어리석고 불손(不遜)한 이 야인(野人)이 함부로 우리 국경(國境)에 인접(隣接)해 있으므로 조종(祖宗)께서 처음 건국(建國)한 이래로 좀도둑질을 해오면 금수(禽獸)로써 이를 용납하였으며, 이마를 땅에 대어 절을 하면서 변신(藩臣)이라 일컬으면 예양(禮讓)으로써 접대(接待)한 지가 오래 되었다. 지난번에 변방의 신하가 공을 구하고자 한 것을 연유(緣由)로 하여 갑자기 혼단(釁端)을 만들어 틈을 타 몰래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변성(邊城)을 공격하고 포위하고는 수초(水草)와 가축(家畜)을 따라와서 우리의 농민(農民)을 약탈하</p>	<p>○西北面都元帥李克均辭。賜敎書若曰：“夫戎狄，人面獸心，趨扇風塵，蓋其常性也。詳求遐議，歷選深謀，若昔帝王，莫不待以羈縻防猾夏，是乃常道也。蠢茲野人，誕隣邦域，粵自祖宗開倉以來，鼠竊狗偷，則禽獸以畜之；稽顙稱藩，則禮讓以接之者尙矣。頃緣邊臣邀功，遽爾構釁，乘間竊發，攻圍我邊城，遂草隨畜，搶擄我農民，覘覩踵係，羽書日聞，恣睢之勢，維其棘矣，備禦之方，不可不爲之慮也。惟卿經世猷遠，凌雲志壯，素蘊儒者之氣象，兼畜大將之方略，出鎭鎖鑰，仁威夙著，入典兵柄，尊酒雍容，予嘉乃</p>



	<p>고 사로잡아 갔으며, 틈을 엿보고 잇달아 침범하니 전쟁을 알리는 격문(檄文)이 날마다 들리게 되고 방자하여 함부로 흘겨보는 형세(形勢)가 매우 심해졌으니, 미리 준비하여 막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p> <p>다만 경(卿)은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이 원대(遠大)하고 속세(俗世)를 떠나려는 뜻이 웅장(雄壯)하여 평소부터 유자(儒者)의 기상(氣象)을 가진 위에 대장(大將)의 방략(方略)까지 겸해 가지고 있어 진(鎭)에 나가 변방의 관문(關門)을 지키는 적에는 인덕(仁德)과 위명(威名)이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들어와서 병마(兵馬)는 권병(權柄)을 맡을 적에는 술자리를 베푸는 온화(溫和)한 모습이 있었다. 내가 그대의 덕을 가상(嘉尙)히 여겨 부월(斧鉞)23669) 을 주면서 서북(西北) 지방의 방수(防戍)하는 한 가지 일을 모두 경(卿)에게 위임(委任)하니, 부장(副將) 이하(以下) 대소(大小) 군관(軍官)과 사졸(士卒)로 군대에 있는 자는 경(卿)이 군령(軍令)으로 종사(從事)하여 명령에 따르는 사람은 상(賞)을 주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罰)을 주도록 하라. 아아! 도성(都城) 밖의 임무는 내가 꿰어앉아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일23670) 을 본받으니, 군주(君主)의 원한을 풀어 주는 일은 경(卿)이 손으로 머리를 막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p>	<p>德，授以鈇鉞，西北防戍一事，悉以委卿，惟是副將以下大小軍官士卒之在行者，卿其以軍令從事，賞罰用命不用命。於戲！分闕之行，予式克跪而推轂；敵王所愾，卿其如手之捍頭。”</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10일 (갑신) 7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난 초하루에 비가 두루 흠족하게 내려 농사가 장차 풍년이 될 듯하다가, 지금 이삭이 켈 때를 당하여 열흘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으므로 내가 매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도내(道內)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것과 농사의 결실(結實)과 결실(結實)되지 않은 것을 속히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諸道觀察使曰：“去朔雨澤周足，穡事將登，今當發穗之時，連旬不雨，予甚憂懼。道內諸邑雨澤及農事實不實，斯速馳啓。”</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10일 (갑신) 9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벼가 이삭이 켈 때를 당하여 열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 경외(京外)에 명하여 비가 오기를 빌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今當禾穀發穗之時，連旬不雨，請令京外祈雨。”從之。</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13일 (정해) 3번째기사</p>	<p>영안북도 평사(永安北道評事) 이세경(李世卿)이 사로잡힌 달생(達生) 등 3인을 거느리고 오니, 임금(上)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이세경을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본도(本道)의 농사(農事)는 어떠한가?”  하니, 이세경이 아뢰기를,  “단천(端川)·길성(吉城)·북청(北靑) 등지에는 씨앗을 뿌릴 때 마침 가물어서 벼의 싹[苗]이 선 것이 드물었으나, 지금은 조금 여물었습니다. 육진(六鎭)은 전년(前年)에 비한다면 풍년이 들었으며, 영흥(永興) 이남(以南)은 무성(茂盛)했습니다. 신(臣)이 올 때에 육진(六鎭)이 조금 가물었으나, 영흥(永興) 이남(以南)은 비가 흠족히 내렸습니다.”  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풍년이 드는 것은 다만 하늘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풍년이 들게 되면 큰 일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지금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니, 기뻐할 만하다. 도내(道內)의 군기(軍器)는 이미 정제(整齊)되었는가?”  하니, 이세경이 아뢰기를,  “거의 정제(整齊)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만 달생(達生) 등 뿐인가?”  하니, 이세경이 아뢰기를,  “지난 6월 18일에 정흥수(鄭興守)가 또 왔는데, 이 사람은 달생(達生) 등과 더불어 같은 때에 도망해 오던 노중(路中)에서 거절 올적함(車節兀狄哈)에게 사로잡혀서 도골(都骨)에 도로 가서 몇 달 동안을 머물어 있다가 이제야 도망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였다.</p>	<p>○永安北道評事李世卿率被擄達生等三人來。上御宣政殿，引見世卿謂曰：“本道農事何如？”世卿曰：“端川、吉城、北靑等處，播種時適旱，立苗稀疎，今則稍稔，六鎭比前年則豐稔，永興以南茂盛，臣之來時，六鎭小旱，永興以南雨澤周洽。”上曰：“豐穰惟天所爲，非人力所及，不可必期，年豐，則舉大事何難？今聞歲稔可喜，道內軍器已整齊耶？”世卿曰：“庶幾整齊矣。”上曰：“被擄而還者，但達生等乎？”世卿曰：“去六月十八日，鄭興守又來，此人與達生等同時逃來，路中爲車節兀狄哈所獲，還往都骨，留數月乃得逃還。”</p>
--	--	---

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13일  
(정해) 4번째기사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다시 나아가 달생(達生) 등을 인견(引見)하고는 조산(造山)에서 사로잡혔던 이유를 물으니, 달생(達生) 등이 아뢰기를,  
“정월 12일 효두(曉頭)23678) 에 연대(煙臺)23679) 에서 봉화불 5병(柄)을 드니 부사(府使) 나사중(羅嗣宗)이 적변(賊變)인 것을 알고서 군대를 정돈시켜 문을 나가니, 벌써 어둑어둑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신(臣) 등은 활과 화살도 없었으며 더구나 일이 급박(急迫)했으므로, 관중(官中)의 장전(長箭) 1부(部)를 나누어 각기 10개씩 가지고 부사(府使)를 따라 달려서 조산(造山)으로 향했는데, 저 적(賊)이 이미 사람과 가축(家畜)을 사로잡아서 장차 도로 강을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부사(府使)가 학익진(鶴翼陳)23680) 을 만들어 뒤쫓아 강을 지나가니 저 적(賊)들이 한꺼번에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병(騎兵)을 돌려서 맞아 공격하였으므로 잠깐 사이에 우리의 중축(中軸)이 포위되어 양편의 군대가 서로 접전(接戰)하니 적군(賊軍)과 야군(我軍)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賊)이 부사(府使)의 말을 쏘아 맞혔는데 부사가 채찍을 치니 말은 벌써 넘어졌습니다. 적(賊) 50여 명이 혹은 칼로 혹은 활로 다투어 부사(府使)를 죽였으나 신 등은 또한 갑옷과 투구도 없었고 화살도 다 떨어졌으므로 활만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적이 도복고(都僕姑)를 쏘므로 신이 처음엔 패도(佩刀)로 적 1명을 찔러 죽였으나 끝내는 힘이 다하여 활과 칼을 다 버리고는 꿇어앉아서 손을 모으니, 적(賊)이 말에서 내려 신을 결박(結縛)하고는 혹은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혹은 활로 쏘기도 하면서 못견디게 굴면서 갔으므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을 갔습니다. 적(賊)은 우리 군대가 뒤쫓아 이르는가를 의심하고 매양 그치는 곳마다 반드시 나누어 둔을 치고는 한 사람을 내어 갑옷을 입혀 후망하게 하다가 밤이 깊은 후에야 그만두었습니다. 이 같이 한 것이 5, 6일이 되자 적 2, 3인이 밥 짓는 그릇을 가지고 먼저 달려서 숙박(宿泊)하는 곳에 이르러 사로잡아 간 소와 말을 잡아서 쌀과 고기를 섞어 죽을 만드니, 적(賊)들이 잇달아 이르러 이를 먹었습니다. 낮에 길을 간 것이 12일,

○上復御宣政殿。引見達生等，問造山被擄之由，達生等啓曰：“正月十二日曉頭，煙臺舉燧五柄，府使羅嗣宗知賊變，整軍出門則已昧爽矣。臣等無弓矢且事迫，分官中、長箭一部，各持十箇，隨府使馳向造山，彼賊已擄人畜，將還渡江，府使作鶴翼陣追逐過江，彼賊一時大呼回騎逆擊，須臾圍我中軸，兩軍相接，未辨彼我，賊射中府使之馬，府使着鞭則馬已僵仆，賊五十餘人，或劔或射，爭殺府使，臣等亦無甲冑，矢盡持弓而立，賊以都僕姑射之。臣初欲以佩刀刺一人而死，終至勢窮，弓與刀皆棄之，跪而攢手，賊下馬縛臣，或杖或射，驅迫而去，半死而行。賊疑我軍追至，每於止處必分屯，出一人着甲候望，至夜深乃已，如是者五六日，賊二、三人持炊飯器，先馳至宿處，宰殺擄去牛馬，和米肉作粥，賊等繼至而食，晝行十二日，夜行八日，乃到都骨屯。”上曰：“賊馬何如?”達生等曰：“人馬皆壯健矣。”上曰：“弓箭何如?”達生等曰：“弓矢皆強勁，設風爐造箭鏃，皆淬之。”上曰：“居室何如?”達生曰：“其作室之形，一樑通

	<p>밤에 길을 간 것이 8일 만에 그제야 도골둔(都骨屯)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賊)의 말은 어떠하던가?”      하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사람과 같이 모두 몸이 썩썩하고 튼튼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활과 화살은 어떠하던가?”      하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활과 화살은 모두 굳세고 튼튼했는데 풍로(風爐)를 설치하여 화살을 만들었      으며, 활촉은 모두 달군 것을 물에 담가 식혀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처하는 집은 어떠하던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그들의 집을 짓는 형상(形狀)은 한 개의 들보에 4, 5간(間)을 마치 승사(僧      舍)와 같이 통하게 하였고, 큰 구리쇠로 된 가마솥을 좌우(左右)에 배치(排置)      하여 한 가마솥에서는 밥을 지어서 먹었고, 한 가마솥에서는 쪽정子和 겨를      사용하여 죽을 만들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획을 세워 생활하는 것이 어떠하였으며, 하는 일은 무슨 일이던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필단(匹段)23681) 과 포물(布物)을 많이 저축하여 한 사람이 가진 초피(貂      皮)와 서피(鼠皮)가 3백여 장(張)에 이르렀으며, 닭이 처음 울면 비로소 일어      나서 종일(終日)토록 쌀을 찼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다른 종족      (種族)의 울적합(兀狄哈)이 있었는데, 피물(皮物)을 가지고 와서 쌀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혹 2, 3일을 머물렀다가 2, 3바리를 싣고 돌아갔습니</p>	<p>四、五間如僧舍，以大銅釜排置左右，一釜炊飯而食，一釜用糲雜作粥以養馬。”上曰：“計活何如？所事何事歟？”達生曰：“多儲匹段布物，一人所有貂鼠皮，可至三百餘張，雞初鳴始起，終日舂米，隔一江有他種兀狄哈，持皮物質米而去，其人或留二、三日，載二、三馱而歸矣。”上曰：“汝見朴丹容阿之女，相語乎？”達生曰：“賊使臣每日斫木負來，手足皆裂流血，臣呼泣。賊呼朴丹容阿女子，問其呼泣之意，臣具言其故。丹容阿女子告賊，賊曰：‘誰能使汝，坐費飲食乎？如此則將殺之。’，臣畏不敢復言。一日丹容阿女子招臣，臣往見之，饋酒食曰：‘汝見此飯，不漸不去沙，此犬馬之食，非人之食也。在我土生長父母之家，豈見如此之食乎？’又語臣曰：‘今汝所寓之家，乃富家也，汝雖無衣，其家造給之矣。我則貧乏無衣，汝脫一衣贈我何如？’臣脫衫兒以贈之，仍問邇來事，答曰：‘爾國無刷還之意而多送京兵，必將來伐矣。’”上問曰：“其言聞諸何處而言之乎？”達生曰：“臣問言根，其女云：‘此土之人，因質販到爾國</p>
--	---	---

	<p>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박단용아(朴丹容阿)의 딸을 만나보고 서로 이야기해 보았는가?”      하니, 달생(達生)이 아뢰기를,      “적(賊)이 신(臣)으로 하여금 날마다 나무를 베어 지고 오게 했으므로 손과 발이 모두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신(臣)이 부르짖으면서 우니 적(賊)이 박단용아의 딸아이를 불러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우는 뜻을 묻기에, 신(臣)이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하니 박단용아의 딸아이가 적(賊)에게 알렸습니다. 적이 말하기를, ‘누가 너로 하여금 앉아서 음식(飮食)을 소비(消費)하도록 했느냐? 이와 같이 하면 장차 죽일 것이다.’ 하므로, 신(臣)이 두려워서 감히 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박단용아의 딸아이가 신(臣)을 부르므로 신이 가서 보니, 주식(酒食)을 권해 먹게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 밥을 보아라. 쌀을 물에 일지도 아니하고 모래도 제거(除去)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개와 말의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다. 우리 땅에 있으면서 부모(父母)의 집에서 나서 자랐다면 어찌 이와 같은 먹이를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신(臣)에게 말하기를, ‘지금 네가 기우(寄寓)한 집은 곧 부가(富家)이니, 네가 비록 옷이 없더라도 그 집에서 지어 줄 것이다. 나는 가난하여 옷이 없으니 네가 한 벌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므로 신(臣)이 적삼을 벗어서 주고는 이어 근래(近來)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lt;사로잡혀 간 사람들&gt; 쇄환(刷還)할 뜻은 없으면서 경병(京兵)23682)을 많이 보내서 반드시 장차 와서 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그 말은 어느 곳에서 듣고서 말하는 것인가?”      하니, 달생(達生)이 아뢰기를,      “신(臣)이 소문(所聞)의 출처(出處)를 물으니, 그 여인(女人)이 말하기를, ‘이</p>	<p>邊境，聞而來說矣’，臣聞此言，潛議曰：‘我等寧中路而斃，必欲逃還。’，一日二更，窺彼人就宿，騎山逃走。左夾日出行五日，渡一水路逢兀狄哈四人，臣與金山避匿，鄭興守見獲。臣等初來糧米，盡付興守而所齎糧僅八、九升，常食生米，十三日乃絕。其後或拾橡栗，或裂月老只而食，飢困不能步，相約縊死，掛索於樹，欲死而未能，遙見一處，有人煙，臣等相謂曰：‘等死耳，寧乞食而死。’往則彼人方炊飯，問曰：‘汝是何人，又向何地?’，臣等答曰：‘朝鮮人。’彼曰：‘汝等見擄於都骨而逃來矣。’先食粥又食飯，率臣向日而行二日到南訥，拘留一月，無解送之意，臣等潛約逃走，至一處飢困，坐食生米，南訥六人追至，結縛驅去，行二日還到彼處。南訥使曾被擄遼人解我語者，問臣等曰：‘汝欲死乎? 還都骨乎? 抑欲還本國乎?’ 臣等答曰：‘雖死欲還本國。’又問曰：‘在汝國爲何事歟?’ 臣給之曰：‘鎮撫。’曰：‘然則必解文矣，書汝名。’臣僅書臣名與金山之名，彼人送人于城底兀良哈。歸(十)十五日持踏印公文及空紙筆墨而</p>
--	--	--

땅의 사람들의 무관(質販)23683) 으로 인하여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에 가서 듣고 와서 말한 것이다.’ 하므로, 신이 이 말을 듣고는 몰래 의논하기를, ‘우리들은 차라리 중로(中路)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도망해 돌아가겠다.’ 하고는 어느날 이경(二更)에 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산을 타고 도주(逃走)하여 왼쪽으로 해를 끼고 나가서 길을 떠난 지 5일 만에 한 물을 건너서 길에서 울적함(兀狄哈) 4인을 만났는데, 신(臣)은 김산(金山)과 더불어 정흥수(鄭興守)에게 피해 숨어 있다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신(臣) 등이 처음 와서 양미(糧米)23684) 를 모두 정흥수에게 맡겼으므로, 가진 바의 식량(食糧)은 겨우 8, 9되[升]뿐이었는데 항상 생쌀[生米]을 먹고 있다가 13일 만에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혹은 상수리나무의 열매와 밤을 주워서 먹기도 하고, 혹은 월로지(月老只)를 찢어서 먹기도 했으나, 굶주리고 피곤하여 능히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서로 목을 매어 죽기로 약속하고는 노끈을 나무에 걸고 죽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곳에 인연(人煙)23685) 이 있는 것을 보고는 신(臣) 등은 서로 말하기를, ‘똑같이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밥을 빌어서 먹다가 죽겠다.’ 하고는 가 보니 저 사람들이 바야흐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고 하므로, 신(臣) 등이 대답하기를, ‘조선(朝鮮) 사람이다.’고 하니, 저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골(都骨)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왔구나.’ 하고는, 먼저 죽을 먹인 뒤 밥을 먹이고서 신(臣)을 거느리고 해를 향하여 길을 간 지 이틀 만에 남눌(南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동안 구류(拘留)되어 있었으나 해송(解送)해 줄 뜻이 없었으므로, 신(臣) 등이 몰래 약속하여 달아나 한 곳에 이르렀는데 굶주리고 피곤하여 앉아서 생쌀을 먹고 있었더니, 남눌(南訥) 여섯 사람이 뒤쫓아와서 결박(結縛)하여 몰고갔습니다. 길을 간 지 이틀 만에 저들의 땅에 돌아와 이르니, 남눌(南訥)이 일찍이 사로잡혀갔던 요동(遼東) 사람으로 우리 말을

返, 迫臣書契而送。 臣不知公文之意而痛哭, 彼人曰: ‘何以哭之?’ 臣又給之曰: ‘此公文云, 姑留三日, 一日尙難度, 況三日乎? 以是哭之.’ 翌日彼人八名率臣等行五日, 到訓戎鎮江邊山間, 縛臣等令七人守之, 一人先到兀良哈家, 初更與兀良哈一人來到, 臣見兀良哈痛哭, 兀良哈曰: ‘明日到汝土, 何哭爲?’ 兀狄哈曰: ‘償我饋汝之費.’ 脫臣等所衣而去。 兀良哈率臣等到其家, 則日已明矣。 訓戎鎮僉使載酒來饋兀良哈及押臣等而來者, 仍率臣等而還。” 上謂金山曰: “汝之言必與達生同矣。” 承旨其問諸興守, 興守亦啓被擄逃來之狀。 上曰: “汝等往來時, 渡幾水乎? 水之廣狹何如?” 達生等曰: “所渡之水無大江, 類皆淺狹, 臣等登山跋涉, 乘夜而來, 不能詳記其數, 大概不過五六矣。” 傳曰: “此人等艱苦而來, 可矜也。 饋酒食, 給紬襦衣一領, 綿布二匹及糧, 又令本道各給米一碩。”

아는 사람을 시켜 신(臣) 등에게 묻기를,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도골(都骨)에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므로, 신(臣)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죽더라도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묻기를, ‘너희 나라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므로, 신(臣)이 꾸며대어 말하기를, ‘진무(鎭撫) 벼슬에 있었다.’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반드시 문자(文字)를 알 것이니 네 이름을 써 보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겨우 신(臣)의 이름과 김산(金山)의 이름을 써 보였더니 저 사람들이 사람을 성(城) 밑에 거주하는 올량합(兀良哈)에게 보냈는데, 10일, 15일에 돌아간다는 인(印)이 찍힌 공문(公文)과 공지(空紙)·필묵(筆墨)을 가지고 돌아와서 신(臣)의 서계(書契)를 박촉(迫促)하여 보내었습니다. 신(臣)이 공문(公文)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통곡(痛哭)하니, 저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하므로, 신(臣)이 또 꾸며대어 말하기를, ‘이 공문(公文)에는 잠정적으로 사흘만 머문다.’고 했는데 하루도 오히려 지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흘 동안이나 되는가? 이 때문에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저 사람들 여덟 명이 신(臣) 등을 거느리고 닷새 동안을 가서 훈융진(訓戎鎭)의 강변(江邊) 산간(山間)에 이르렀는데 신(臣) 등을 결박(結縛)시켜 일곱 명을 시켜 지키도록 하고, 한 명을 먼저 올량합(兀良哈)의 집에 가 초경(初更)에 올량합(兀良哈)의 한 명과 더불어 돌아왔습니다. 신(臣)이 올량합(兀良哈)을 보고서 통곡하니, 올량합이 말하기를, ‘내일이면 너희 땅에 도착할 것인데, 무슨 이유로 우느냐?’고 하였습니다. 울적합(兀狄哈)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먹인 비용을 보상(報償)하겠다.’ 하면서 신(臣) 등이 입은 옷을 벗겨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올량합(兀良哈)이 신(臣) 등을 거느리고 그 집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밝았습니다. 훈융진 첨사(訓戎鎭僉使)가 술을 싣고 와서 올량합(兀良哈)과 신(臣) 등을 압송(押送)해 온 사람을 접대하고는, 이내 신(臣) 등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p>하였다. 임금이 김산(金山)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은 반드시 달생(達生)과 더불어 같다. 승지(承旨)가 그것을 정홍수에게 물어보라.”</p> <p>하니, 정홍수가 또한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형상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갔다가 올 때에 몇 개의 물을 건넜으며 물의 넓고 좁은 것은 어떠하였느냐?”</p> <p>하니, 달생(達生) 등이 아뢰기를,  “건넜던 물은 큰 강은 없었으며 대개가 모두 얇고 좁았습니다. 신(臣) 등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밤을 이용하여 왔으므로 그 수효를 능히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사오나, 대개 5, 6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왔으니 불쌍히 여길 만하다. 주식(酒食)을 대접하고 명주(明紬), 유의(襦衣) 1령(領)과 면포(綿布) 2필과 식량을 내려 주고, 또 본도(本道)로 하여금 각기 쌀 1석(碩)을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15일  (기축) 4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두 대비전(大妃殿) 이외(以外)는 감선(減膳)23690) 하도록 하라.”</p> <p>하고는, 이어 술을 금하도록 명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旱乾太甚，兩大妃殿外，其減膳。”仍命禁酒。</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16일  (경인) 3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권유(權瑠)가 와서 아뢰기를,  “당초에 대신(大臣)들이 북방 정벌의 편부(便否)를 의논했는데,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천천히 연사(年事)의 풍흉(豐凶)을 보고서 행해야 합니다.’고 하니, 전하(殿下)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가뭄이 너무 심하여 벼가 말라 죽었으므로, 여러 도(道)에서 수확할 만한 곡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상시(平常時)일지라도 오히려 밥먹기가 힘든데, 하물며 양식(糧)을</p>	<p>○司諫院正言權瑠來啓曰：“當初大臣議北征便否，而尹弼商以爲徐觀歲之豐歉而爲之，殿下已許之。近來旱乾太甚，禾穀枯槁，諸道無可收之穀，雖平居尙且艱食，況羸糧赴征乎？請停北征之舉。”傳曰：“臺諫言事，當務的實，</p>



	<p>食)을 가지고 정벌에 나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북방 정벌의 일을 정지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대간(臺諫)이 국사(國事)를 말할 적에는 마땅히 적실(的實)하기에 힘써야 할 것인데, 그대들이 여러 도(道)에 수확할 만한 곡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일에 대간(臺諫)과 경연관(經筵官)이 북방 정벌을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말하기를, ‘금년에는 보리와 밀이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팔도(八道)에 빨리 물어보니, 경기 감사(京畿監司)는 와서 말하기를, ‘봄 보리는 비록 수확할 수가 없더라도 가을 보리는 말라 죽는 데 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였고, 지금 강원도(江原道)에서도 치계(馳啓)하기를, ‘비가 흠족하게 내렸습니다.’ 하였고, 평안도(平安道)에서도 또한 아뢰기를, ‘강가에서는 조금 무성(茂盛)합니다.’고 하였고, 영안도(永安道)에서는 평사(評事) 이세경(李世卿)이 와서 말하기를, ‘농사(農事)가 조금 무성(茂盛)합니다.’고 하였다. 만약 팔도(八道)의 농사(農事)가 여물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모두가 밥 먹기가 어렵다면, 비록 내일 들어가 정벌하기를 약속했다라도 출병(出兵)을 그만둘 수가 있을 것이다. 대사간(大司諫) 윤민(尹愨)은 나이가 많고 일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어찌 말하는 것이 적실(的實)하지 않는가?”</p> <p>하였다. 권유(權瑠)가 아뢰기를,</p> <p>“신(臣) 등은 올해가 초목(草木)이 다 말라 죽은 가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7월 20일 이후는 곧 벼가 이삭이 쫄 때인데도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신(臣)은 벼가 이삭이 패지 못하여 연사(年事)가 풍년이 들지 않을 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爾等言諸道無可收之穀何耶? 前日臺諫、經筵官, 以北征爲不可云, 今年兩麥盡枯, 予卽馳問八道, 京畿監司來言, 春牟雖不可收, 秋牟不至枯損; 今江原道馳啓, 雨澤周足; 平安道亦啓, 江邊稍盛; 永安則評事李世卿來言, 農事稍盛, 若八道農事不熟, 民皆艱食, 則雖約明日入征, 可以罷兵矣。 大司諫尹愨, 年高諳事者也, 何言之不的實耶?” 瑠啓曰: “臣等非謂今年赤地之旱也, 七月二十日之後, 乃禾穀發穗之時, 而彌月不雨, 臣恐禾未秀而歲不登也。” 不聽。</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p>	<p>경상도 초군 경차관(慶尙道抄軍敬差官) 김훤(金萱)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 아뢰기를,</p>	<p>○慶尙道抄軍敬差官金萱來復命, 仍啓曰: “慶尙右道, 雨澤周足, 禾穀茂盛;</p>

<p>(弘治) 4년 7월 17일 (신묘) 2번째기사</p>	<p>“경상우도(慶尙右道)는 비가 흡족하게 내려서 벼가 무성(茂盛)하였고, 좌도(左道)는 비록 우도(右道)와 같지는 않았지만 또한 벼가 말라 죽지는 않았으며, 충청도(忠淸道)는 비록 경상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비가 또한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다만 경기(京畿)는 가까운 날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삭이 패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p>	<p>左道雖不若右道，而亦不枯損；忠淸道雖不及慶尙，而雨澤亦足。但京畿近日不雨，則禾穀必不得發穗矣。”</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17일 (신묘) 4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권유(權瑠)가 와서 아뢰기를, “삼가 의정부(議政府)에 내리신 전지(傳旨)를 보건대, ‘지금 바야흐로 유화(流火)의 달인데도 오히려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있어 백성이 장차 밥먹기에도 어려울 것이니, 나라가 또한 무엇에 힘입겠는가?’고 했는데, 신(臣)의 생각으로는 전하(殿下)께서는 올해의 가뭄 때문에 농사(農事)가 여물지 못함을 모르는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으니, 북방 정벌을 정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대가 전지(傳旨)의 문장(文章)에 의거하여 말을 하였으나, 이는 어린애와 더불어 말하는 것과 같다. 대저 글을 짓는 사람은 문장(文章)으로써 뜻을 해롭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군주(君主)가 가뭄을 근심하는 마음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북방 정벌의 거사(舉事)는 이미 정해졌으니, 한 사람의 의논으로 중지(中止)할 수는 없다.” 하였다. 권유(權瑠)가 또 아뢰기를, “송철산(宋鐵山)은 마땅히 자계(資階)를 올려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司諫院正言權瑠來啓曰：“伏見下議政府傳旨云：‘今方流火之月，尙有亢旱之災，民將艱食，國亦何賴？’，臣意以爲，殿下非不知今年之旱，而農事之未稔也，願停北征。”傳曰：“爾據傳旨之辭爲言，是似與兒童言之也。大抵作書者，不以辭害意，人君憂旱之心，當如是也，北征之舉已定，不可以一人之議而中止也。”權瑠又啓宋鐵山不宜加階。不聽。</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20일 (갑오) 1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유경(劉璟)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의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북방 정벌의 거사(舉事)는 마땅히 연사(年事)의 풍년과 흉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금년에는 봄부터 4월에 이르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6월과 7월에도 또한 가물었으니 연사(年事)의 풍년이 들지 않을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북방 정벌을 정지</p>	<p>○甲午/司憲府持平劉璟來啓曰：“前日敎云：‘北征之舉，當觀歲之豐歉。’今自春至四月不雨，六月、七月亦旱，歲之不熟無疑，請停北征。且南道巡邊之行，亦可停也。倭人性本多疑，當</p>

	<p>할 것을 청합니다. 또 남도(南道)의 변방(邊方)을 순찰(巡察)하는 행차도 또한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인(倭人)은 성질이 본래부터 의심이 많은데 이러한 군사를 뽑은 시기를 당하여 또 대신(大臣)을 보낸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할 것입니다. 신(臣) 등이 변방 순찰 사목(事目)을 보건대, 모두가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 별도로 대신(大臣)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듣건대, 여러 도(道)에서는 조금 곡식이 여물었고 경기(京畿)에서는 가뭄이 조금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도(道)의 실농(失農)으로 큰 일을 폐지할 수는 없다. 대신(大臣)을 보내어 변방을 순찰(巡察)하는 것도 또한 깊은 뜻이 있으니, 정지할 수 없다.”</p> <p>하였다. 유경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此抄軍之時，又遣大臣，則彼必生疑，臣等見巡邊事目，皆觀察使、節度使所堪爲，不必別遣大臣也。”傳曰：“予聞諸道稍稔，京畿少有旱氣，然不可以一道失農，廢大事也。遣大臣巡邊，亦有深意，不可停也。”璟更啓，不聽。</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7월 20일  (갑오) 3번째기사</p>	<p>강원도 경차관(江原道敬差官) 정광세(鄭光世)와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세영(金世英)이 들어와서 왜인(倭人) 피고이라(皮古而羅)의 초사(招辭)를 아뢰고는, 이어 아뢰기를,  “이 왜(倭)는 본래 부산포(釜山浦)에 거주했는데, 어느날 그 아버지가 땔나무를 베어오도록 하니 피고이라(皮古而羅)가 동무인 왜인 상선(桑船)과 더불어 대포(大浦)에 이르러 배를 정박시키고 산에 올라 땔나무를 베다가 가졌던 양미(糧米)와 짧은 낫, 칼, 포대(布袋)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노하여 죽이겠다고 위험한 말로 두렵게 하였으므로, 피고이라(皮古而羅)가 도망해 울진(蔚珍) 땅에 이르러 잡히게 되었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정승(政丞)과 승지(承旨)와 대간(臺諫)이 함께 끝까지 힐문(詰問)하여 아뢰도록 하라. 또 이 초사(招辭)에 의거하여 빨리 경상감사(慶尙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부산포(釜山浦)에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p>	<p>○江原道敬差官鄭光世、義禁府經歷金世英還啓倭人皮古而羅招辭，仍啓曰：“此倭本居釜山浦，一日其父令刈薪而來，皮古而羅與伴倭(桑)〔乘〕船到大浦泊船，登山取薪，而失所賣糧米短鎌刀子布袋而還，其父怒，恐動之以殺害，皮古而羅亡到蔚珍地面見捕。”傳曰：“下義禁府，同政丞、承旨、臺諫窮詰以啓，且據此招辭，馳諭慶尙監司，問釜山浦以啓。”</p>

	하였다.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27일 (신축) 1번째기사</p>	<p>명하여 복膳(復膳)23705) 하도록 하고, 주금(酒禁)을 폐지하도록 하였다.</p>	<p>○辛丑/命復膳，罷酒禁。</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27일 (신축) 3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거(李据)가 와서 아뢰기를,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曹偉)의 종이 조례(皂隸)23706) 임북간(林北間)을 때려서 죽였는데, 조위는 그 일이 발각날 것을 두려워하여 많은 뇌물을 써서 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 조위는 내신(內臣)23707) 인데도 즉시 자수(自首)하지 않았으나, 매우 옳지 못합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승원(李崇元)의 아들 이만령(李萬齡)은 도사(都事)로써 호조 정랑(戶曹正郎)에 승진되었으며,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극균(李克均)의 일서(擊壻)23708) 정내필(鄭來弼)은 참봉(參奉)으로써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승원과 이극균이 서로가 부탁하여 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또 근일의 정사(政事)에서 김수말(金守末)은 현명함과 우매함을 논하지 않고 다만 대군(大君)의 외구(外舅)란 이유로 첨정(僉正)에 승진되었으며, 이영(李榮)은 비록 구임(久任)으로 개만(簡滿)23709) 되었다 하나 평천(平遷)하는 것이 예(例)인데 또한 부정(副正)에 승진되었으니 벼슬이 또한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이계남(李季男)은 특별히 나타난 공로와 빛나는 재간(才幹)이 없음에도 상피(相避)를 헤아리지 않고서 충청 감사(忠淸監司)에 의망(擬望)했는데 감사(監司)는 2품의 관직입니다. 근일에 통정 대부(通政大夫)로써 감사(監司)에 임명된 성숙(成俶)·이칙(李則)·김여석(金礪石)과 같은 사람은 모두 특별히 자계(資階)를 승진시켰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계남(李季男)이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희망하여 몰래 그 아우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의망(擬望)하게 했던 것입</p>	<p>○司憲府掌令李据來啓曰：“同副承旨曹偉之奴，打殺皂隸林北間，而偉恐其事覺，厚賂止之，偉內臣也，而不卽自首，甚不可。兵曹判書李崇元子萬齡，以都事陞爲戶曹正郎；吏曹判書李克均擊壻鄭來弼，以參奉爲宣傳官，此必崇元、克均相囑而換手也，請鞫之。且近日政，金守末不論賢否，而徒以大君外舅，陞爲僉正；李榮雖久任，簡滿平遷例也，而亦陞副正，官爵不亦濫乎？請竝改正。李季男別無顯顯之功、赫赫之才，而不計相避，擬望於忠淸監司，監司二品職也，近者以通政拜監司，如成俶、李則、金礪石，皆特加階，此必李季男希望嘉善，潛囑厥弟而使之擬望也，請改正而鞫吏曹官吏。”傳曰：“知子、知臣，莫如君父，曹偉若知其奴打殺之事，則何不卽啓乎？李崇元、李克均，豈爲如此之事乎？然言官已駁，故將推之。守末則陞爲僉正，未爲過也。李榮事，前日已詳諭之</p>

	<p>니다. 개정(改正)을 하고 이조(吏曹)의 관리를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아들을 알고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과 아버지와 같은 이가 없는데, 조위(曹偉)가 만약 그 종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인 일을 알았더라면 어찌 즉시 아뢰지 않았겠는가? 이승원(李崇元)과 이극균(李克均)도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했겠는가? 그러나 언관(言官)이 이미 논박(論駁)했으니, 장차 이를 추문(推問)할 것이다. 김수말(金守末)을 첨정(僉正)에 승진시킨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이영(李榮)의 일은 전일에 이미 상세히 유시(諭示)하였다. 이계남(李季男)의 일은 전일에 대간(臺諫)이 송철산(宋鐵山)의 품계(品階)를 승진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을 가지고 와서 아뢰므로, 내가 전교하기를, ‘그전에 이숙감(李淑臧)은 통정 대부(通政大夫)로서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되었으니, 지금 이계남(李季男)을 특별히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승진시켜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삼고, 송철산(宋鐵山)도 또한 품계(品階)를 승진시켜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삼는 것은 이것이 모두 한때의 은전(恩典)이다.’고 하니, 대간(臺諫)이 회계(回啓)하기를, ‘이계남은 사람된 품이 송철산과는 같지 않으니 비록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승진시키더라도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 말이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뢴 말인지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뢴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정언(正言) 권유(權瑠)의 말입니다.”  하였다. 이거(李据)가 다시 아뢰기를,  “전하(殿下)께서 김수말(金守末)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반드시 대군(大君)을 위열(慰悅)시키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왕(先王)께서 관사(官司)를 설치하고 직장(職掌)을 나누어 전하(殿下)에게 주었으니, 어찌 관직(官職)이 사가(私家)에 미치지겠습니까? 옛날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관도 공</p>	<p>矣。李季男事，前日臺諫將宋鐵山加階未便事來啓，予敎之曰：‘前者，李淑臧以通政爲全羅監司，今季男特加嘉善爲忠淸監司，鐵山亦加階而爲廣州牧使，此皆一時之恩也。’臺諫回啓云：‘季男爲人與鐵山不同，雖陞爲嘉善猶可也。’未知此言，諫院所啓乎，憲府所啓乎?’ 政院僉啓曰：“正言權瑠之言也。” 李据更啓曰：“殿下之陞用守末者，必欲慰悅大君之心也，先王設官分職，以遺殿下，何官及於私乎? 昔漢明帝時，館陶公主爲子求官，明帝不許官爵，而只許錢穀，則官爵不可及私也。李榮暫無賢能之效，而徒以舉動習熟，遽陞其職，甚爲未便。 臣聞平安、黃海道俱失農，而京畿亦凶荒，請勿罷酒禁。” 竝不聽。</p>
--	--	--

	<p>주(館陶公主)가 아들을 위하여 관직(官職)을 구하자 명제(明帝)는 관작(官爵)은 허가하지 않고 다만 전곡(錢穀)만 허가했으니, 관작(官爵)은 사가(私家)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영(李榮)은 조금도 현능(賢能)의 공효(功效)가 없는데도 다만 거동(舉動)이 익숙하다하여 갑자기 그 관직을 승진시키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신(臣)이 듣건대, 평안도(平安道)와 황해도(黃海道)에서 모두 실농(失農)을 했으며, 경기(京畿)에서도 또한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주금(酒禁)을 폐지하지 말기를 청합니다.”</p> <p>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29일 (계묘) 1번째기사</p>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치계(馳啓)하기를, “강릉 도호 부사(江陵都護府使) 황윤형(黃允亨)의 보고에 이르기를, ‘왜선(倭船) 5척이 형체를 드러내었는데 강릉부(江陵府)의 군사가 모두 북방 정벌과 번상(番上)23717)에 나가 남아 있는 수효가 적으므로, 방어(防禦)가 고단(孤單)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적(賊)이 만약 점차 형세가 성하여 연변(沿邊)의 포구(浦口)에 이르는 곳마다 출몰(出沒)한다면 본도(本道)의 적은 수효의 군사로는 적(敵)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변고(變故)가 조석(朝夕)에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본도(本道)의 정벌을 따라가는 군사를 비록 전감(全減)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동(嶺東)의 군사 2백 6명을 남겨두어 변방을 방비(防備)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승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대저 하삼도(下三道)의 백성들은 왜변(倭變)을 들을 것 같으면 먼저 스스로 놀라고 동요하여 황급(惶急)하게 거조(舉措)를 잃게 되는데, 지금 관찰사(觀察使)도 또한 말하기를, ‘변고(變故)가 조석(朝夕)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북방 정벌 군사의 수효를 감(減)하여 남겨두어 방어(防禦)하기를 청하니, 이것은 관찰사가 먼저 스스로 놀라고 미혹(迷惑)하고 있는 것이다. 미친한 백성이 만약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소란을 일으키고 몹시 놀라게 될 것이다. 북방 정</p>	<p>○癸卯/江原道觀察使金礪石馳啓曰： “江陵都護府使黃允亨報云：‘倭船五隻現形，府軍士皆赴北征及番上，遺在數少，防禦孤單，臣意賊若漸熾，沿邊浦口，隨處出沒，以本道數少軍士，禦敵無由，恐變在朝夕，本道從征軍士，雖不得全減，請以嶺東軍士二百六名，留防備邊。’傳于承政院曰：“大抵下三道之民，若聞倭變，先自驚動，蒼黃失措，今觀察使亦云，變在朝夕，且請北征軍士減數留防，是則觀察使先自驚惑，小民若聞之，必騷擾驚駭矣。北征軍士，不可減數，今欲擇諳練朝官，馳到江原，與監司同議看審諸浦防戍。”仍命李茁爲敬差官。</p> <p>【史臣曰：“江原道，海無島嶼，大洋中不通舟楫，只可巖岸漁採耳。江陵</p>

별의 군사는 수효를 감(減)할 수 없으니, 지금 사무를 익숙하게 아는 조관(朝官)을 가려 빨리 강원도(江原道)에 도착하게 하여 감사(監司)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도록 하고 여러 포구(浦口)의 방수(防戍)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려고 한다.”

하고는, 이어서 이죽(李茁)을 명하여 경차관(敬差官)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강원도는 바다에 섬이 없고 큰 바다 가운데에 배가 통행하지 않으니 다만 배를 언덕에 갖다 대고서 고기를 잡고 수산물(水産物)을 채취(採取)할 뿐이다. 강릉(江陵)의 수졸(燧卒)23718) 이 ‘바다 가운데 왜선(倭船) 5척이 정박(停泊)하고 있으나 햇빛이 빛나고 바다의 빛이 푸르고 아득하여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알리자, 관찰사 김여석(金礪石)

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조처(措處)할 바를 몰라서 밤을 새워 치계(馳啓)하여 본도(本道)의 북방 정벌의 군사를 감(減)하여 왜적(倭賊)을 막기를 청했으나, 필경(畢竟)에는 곧 거짓말이었다. 김여석은 젊었을 때 동인(東人)23719)의 술작(述作)을 기송(記誦)하여 과거(科擧)에 합격하였으며, 병조 좌랑(兵曹佐郎)이 되어 군부(軍簿)를 맡았는데, 총명하고 민첩함을 자랑하여 사졸(士卒)들의 마음을 수합(收合)하였다. 친척(親戚)과 고구(故舊)23720)의 일은 비록 법에 어긋난 것이라도 반드시 변명하여 구(救)한 후에야 그만두었는데, 그런 까닭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동료(同僚)들이 법에 구애(拘礙)된 점이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깊이 노하여 풀지를 아니했다. 본디는 빈천(貧賤)했으나 산업(產業)을 부지런히 다스렸기 때문에 제택(第宅)을 여러 번 짓고 전장(田庄)을 많이 마련하였다. 무릇 승지(承旨)가 사진(仕進)하는 날 일이 있어 먼저 나가는 사람은 다만 고장(告狀)만 써서 원리(院吏)23721)에게 맡겨두고 동료(同僚)에게는 알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전례(前例)인데, 김여석은 도승지(都承旨)가 되자 임금이 바야흐로 융성(隆盛)하게 대우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뢰기를, ‘오늘 신(臣)이 사위를 맞이하게 되니 먼저 나가기를 청합니다.’고 하

燧卒, 告以海中倭船五隻立泊, 日光照曜, 海色蒼茫, 不得更見, 觀察使金礪石, 驚惶罔措, 星夜馳啓, 請減本道北征軍士備禦, 畢竟乃虛妄也。礪石少記誦東人述作, 取第爲兵曹佐郎, 掌軍簿, 矜銜聰敏, 收士卒心, 親戚故舊之事, 雖悖於法, 必營救乃已, 故己之所欲, 僚友辭以有礙於法, 則必深怒不解, 素貧賤以勤治產業, 累建第宅, 多設田庄。凡承旨仕進之日, 有故先出者, 只書告狀, 給付院吏, 不告僚案而出, 例也, 礪石爲都承旨, 上方隆遇, 一日忽啓: ‘今日臣取壻, 請先出去。’上卽命盡賜御廚餘貯物膳, 其扛擡抱負者, 逼側闕門而出, 行己用心, 大概類此。”】

	<p>였다. 그러자 임금(御)이 즉시 명하여 어주(御廚)의 남은 물선(物膳)을 다 하사(下賜)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마주 들고 안고 지고가는 것이 대궐 문에 닿도록 가지고 나갔으니, 그 처신(處身)과 용심(用心)이 대개 이와 같았다.” 하였다.</p>	
<p>성종 255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7월 30일 (갑진) 2번째기사</p>	<p>명하여 종척(宗戚)과 재신(宰臣)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도총부(都摠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인정전(仁政殿)의 동무(東廡)에서 음식을 접대하게 하고, 음악도 하사(下賜)하였다.</p>	<p>○命饋宗宰一品以上、政府、六曹、漢城府、都摠府、承政院、弘文館、藝文館員于仁政殿東廡，賜樂。</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익산(益山)의 아전 만손(萬孫)의 공초(供招)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에게 군수(郡守)가 쌀 3곡(斛)23743 을 주었다.’고 하고, 이계통(李季通)의 공초(供招)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란 곧 강삼(姜參)이다.’고 했습니다. 지난 기유년(23744) 3, 4월 사이에 쌀 2곡(斛)을 주었는데, 강삼(姜參)은 말하기를, ‘무신년(23745) 겨울철에 전주(全州)로 돌아갔다.’고 했으며, 이계통은 말을 변경하여 이르기를, ‘과연 기유년 봄철이 아니고 곧 무신년 겨울철이라.’고 했으니, 그 만손(萬孫)과 이계통의 말하는 바의 쌀은 같지 않으며, 이계통과 강삼(姜參)에게 쌀을 준 시절(時節)도 또한 다릅니다. 또 김여려(金汝礪)는 말하기를, ‘강삼(姜參)의 종이 청탁하는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때마침 이계통이 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했으므로 그 편지를 바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이계통에게 말하니, 이계통이 쌀 1곡(斛)을 보냈으므로 내가 강삼(姜參)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강삼(姜參)은 말하기를, ‘김여려(金汝礪)가 쌀 12두(斗)를 보내므로 내가 받고는 희롱하는 편지로써 답하기를,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쌀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했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계통이 주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김여려를 추국(推鞠)한다면 강삼(姜參)이 청구하였는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손(萬孫)과 이계통은 강삼(姜參)이 자기를 조사한 일로써 원한을 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초(供招)를 바쳤다면 그 마</p>	<p>○甲寅/義禁府啓：“益山吏萬孫供云：‘名不知忠淸道都事處，郡守給米三斛。’李季通供云：‘名不知忠淸道都事，卽姜參也。去己酉年三’四月間，給米二斛。’姜參云：‘戊申冬節，歸全州。’季通變辭云：‘果非己酉春節，乃戊申年冬節。’其萬孫、季通所言米穀不同，而季通、姜參給米時節亦異，且金汝礪云：‘姜參奴持請簡而來，適季通因病不出，未呈而歸，其後將此意言於季通，季通送米一斛，吾傳於姜參。’姜參則云：‘汝礪送米十二斗，吾受而戲書答之曰：「吾不求之，而贈米何耶?’’此非以季通所贈而受之也，若推汝礪，其姜參之請與否可知矣。且萬孫、季通，以姜參覈己爲恨，而如此納招，則其設心尤詐，故欲推而知其情，非以姜參爲有罪也。”傳曰：“姜參雖受汝礪送米，非求而得也，萬孫、</p>



	<p>음을 쓰는 것이 더욱 간사한 까닭으로 추국(推鞠)하여 그 실정(實情)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강삼(姜參)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강삼(姜參)은 비록 김여려(金汝礪)가 보낸 쌀을 받았으나 청구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 만손(萬孫)과 이계통이 모두 말하기를, ‘쌀을 주었다.’고 하니, 강삼(姜參)은 ‘받지 않았다.’고 하니, 이 일로써 형벌이 강삼(姜參)에게 미치게 된다면 이는 강삼이 일을 말하다가 화(禍)를 얻은 것이다. 강삼이 만약 이계통이 보낸 쌀을 받았다면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히 이계통이 법에 어긋남을 말하겠는가? 이와 같은데도 반드시 추국(推鞠)한다면 언로(言路)가 아마 막힐 것이다. 강삼(姜參) 및 일이 만손(萬孫)과 김여려에 관계된 것도 모두 추국(推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하였다.</p>	<p>(李通) [季通] 皆云給之, 姜參云不受, 以此而刑及姜參, 則是姜參言事而賈禍也。 姜參若受季通送米, 寧不愧於心而敢言季通之不法乎? 此而必推, 言路恐閉矣。 姜參及事千萬孫、汝礪竝勿推可也。”</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8월 15일 (기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양대비전(兩大妃殿)에 진연(進宴)하였는데, 명하여 종친(宗親) 2품 이상과 충훈부(忠勳府), 의정부(議政府), 도총부(都摠府), 의빈부(儀賓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과 승정원(承政院),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의 관원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들에게 술과 음악을 하사(下賜)하였다.</p>	<p>○己未/上進宴于兩大妃殿, 命召宗親二品以上、忠勳府、議政府、都摠府、儀賓府、六曹、漢城府堂上、承政院、弘文館、藝文館、入直諸將, 賜酒樂。</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8월 18일 (임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가서 술자리를 차리고 부원수(副元帥) 이계동(李季全)에게 이르기를,</p> <p>“도성문(都城門) 밖의 일은 장군(將軍)이 주관(主管)하는 것인데, 지금 군무(軍務)를 도원수(都元帥)가 이미 처치(處置)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p> <p>하니, 이계동은 아뢰기를,</p> <p>“마땅히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윤성경(尹成罔)이 전일(前日)에 가서 길을 살피면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p>	<p>○壬戌/上御宣政殿, 置酒引見副元帥李季全及從事官李粹彦。 上謂季全曰: “闕外之事, 將軍制之, 今軍務都元帥已處置, 予復有何言? 惟望捷還耳。” 季全曰: “當盡死力矣。” 上曰: “尹成罔前日往審道路, 不深入而還, 然已知大概矣。 聞都元帥將欲遣人更審, 然或爲彼所獲則不可, 卿當與元帥商略, 善處之。” 上親賜爵, 又命進爵, 仍賜</p>

	<p>돌아왔으나 이미 그 대개는 알았던 것이다. 듣건대 도원수(都元帥)가 장차 사람을 보내어 다시 길을 살피려고 한다 하는데, 그러나 혹시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좋지 못한 일이니, 경(卿)이 마땅히 원수(元帥)와 더불어 계획을 세워 잘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친히 술잔을 하사(下賜)하고는, 또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인하여 필단 유의(匹段襦衣) 1령(領), 화(靴) 1사(事), 사의(蓑衣) 1령(領), 활 2장(張), 화살 1부(部)를 하사하고, 이수언에게는 활 1장(張), 화살 1부(部)를 하사(下賜)하였다. 또 이날에 전송(餞送)하는 잔치를 충훈부(忠勳府)에 하사(下賜)하고는, 윤필상(尹弼商)·이철견(李鐵堅)·어세겸(魚世謙)에게 명하여 잔치를 주관하게 하고,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와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희(權景禧)에게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위로하게 하였다.</p>	<p>匹段襦衣二領、靴一事、蓑衣一領、弓二張、箭一部； 粹彦弓一張、箭一部。 又於是日，賜餞宴于忠勳府。 命尹弼商、李鐵堅、魚世謙押宴，都承旨鄭敬祖、左副承旨權景禧賚宣醞往慰之。</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8월 18일 (임술) 2번째기사</p>	<p>영안도 도사(永安道都事) 유빈(柳濱)이 도원수(都元帥) 허중(許琮)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p> <p>“원수(元帥)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p> <p>하니, 유빈(柳濱)이 대답하기를,</p> <p>“영흥(永興)에 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서장(書狀)의 뜻을 보고 처치(處置)가 적당함을 알았으니, 이와 같이 하면 좋을 것이다.”</p> <p>하였다. 유빈이 아뢰기를,</p> <p>“전일에 하교를 받들건대 성(城) 아래에 거주하는 야인(野人)이 장차 저 오랑캐들과 몰래 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병(伏兵)을 요로(要路)에 설치하여 맞아 치도록 했는데, 다만 아치랑구(阿赤郎口)로부터 저들의 땅에 이르는 데는 그 길이 한둘이 아니며, 울지(鬱地) 이북(以北)은 다만 한 길뿐이니 울지(鬱地)에서 군사를 매복(埋伏)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곳은 오랑캐의 지역과 거</p>	<p>○永安道都事柳濱賚都元帥許琮書狀而來，上引見曰：“元帥今在何處？”濱對曰：“在永興。”上曰：“予見書狀之意，處置得宜，如是可也。”濱啓曰：“前日承教，以城底野人將漏通彼虜，令設伏要路以邀之。但自阿赤郎口至彼土，其路非一，鬱地以北，則唯一路，可於鬱地伏兵。但此地距虜地不遠，兵多則恐彼先知，少則亦必見執，欲於近我境中路，伏兵要截矣。”上曰：“此不可遙制，在元帥臨機善處耳。”上曰：“農事何如？”濱曰：“永興以北富寧以南，禾穀茂盛，惟北青不茂矣。”上曰：“其道亦有風災乎？”濱</p>

	<p>리가 멀지 않으니 병졸이 많으면 아마도 저들이 먼저 알 듯하고 병졸이 적으면 또한 반드시 잡히게 될 것이니, 우리 국경(國境)에 가까운 중로(中路)에 군사를 매복(埋伏)시켜 막아 끊으려고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먼 곳에서 지시(指示)할 수 없는 것이니, 원수(元帥)가 시기에 임(臨)하여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農事)는 어떻던가?”</p> <p>하니, 유빈이 말하기를, “영흥(永興) 이북(以北)과 부령(富寧) 이남(以南)은 벼가 무성했으나, 다만 북청(北靑)은 벼가 무성하지 않았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도(道)에도 또한 풍재(風災)가 있던가?”</p> <p>하니, 유빈이 아뢰기를, “비록 있었으나 손상은 없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무(軍務)는 다 포치(布置)되었던가?”</p> <p>하니, 유빈이 아뢰기를, “이미 다 포치(布置)되었습니다.”</p> <p>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원수(元帥)가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무릇 군무(軍務)와 교초(郊草)23754) 등의 일은 조치(措置)할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원수(元帥)가 재상(宰相) 한 사람을 보내어 도내(道內)의 일을 대신 다스리기를 청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신(大臣)을 보내어 도내(道內)의 일을 총괄해 다스리려고 하는</p>	<p>曰：“雖有，無傷矣。” 上曰：“軍務盡布置否？” 濱曰：“已盡矣。” 仍啓曰：“元帥入征則凡軍務郊草等事，無人措置，故元帥請遣一宰相，代治道內事。” 上曰：“予欲將遣大臣，摠治道內事，元帥時未知予意也。元帥、節度使入征，則彼此緊急之事，於何傳報？今觀元帥之啓，甚合予意。” 賜濱藍袖襦衣一領、靴一事。</p>
--	--	---

	<p>데, 원수(元帥)가 현재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원수(元帥)와 절도사(節度使)가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피차(彼此)의 긴급한 일을 어디서 전해 보고하겠는가? 지금 원수(元帥)의 장계(狀啓)를 살펴보니, 매우 내 뜻에 맞다.”</p> <p>하였다. 유빈에게 남주 유의(藍紬襦衣) 1령(領)과 화(靴) 1사(事)를 하사(下賜)하였다.</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19일 (계해) 1번째기사</p>	<p>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 경팽 수좌(慶彭首座) 등 25인에게 연회(宴會)를 베풀어 주었다. 술이 일곱 순배(巡盃)가 되자, 임금이 경팽(慶彭)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으므로, 너희들을 위해서 연회(宴會)를 베풀었으니 한껏 술을 마셔라.”</p> <p>하니, 경팽(慶彭)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오늘 용안(龍顏)23755 을 뵈옵고 절하게 되니, 기쁨이 한이 없습니다.”</p> <p>하였다. 연회가 끝나자, 임금이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下賜)하였다.</p>	<p>○癸亥/御仁政殿，宴日本國王使臣慶彭首座等二十五人，酒七行，命慶彭進爵。上曰：“汝等遠路辛苦而來，爲汝等設宴，其極飲。”慶彭等頓首曰：“今日視拜龍顏，喜極無涯。”宴畢賜物有差。</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1일 (을축) 3번째기사</p>	<p>북정 부원수(北征副元帥) 이계동(李季全)이 하직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잘 갔다가 잘 돌아오라.”</p> <p>하였다. 이계동이 아뢰기를, “여러 장수 중에서 기복(起復)23757 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기력(氣力)이 매우 쇠약하니, 권도(權道)에 따라 개소(開素)23758 하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賊)을 본다면 마땅히 무찔러 죽여야 할 것이니, 어찌 고기 먹는 것을 꺼리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나도 또한 개소(開素)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상복(喪服)을 벗고 전쟁에 종사(從事)하게 되니, 이미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것인데, 또 그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은 나는 차마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議政府)의 관원에게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p>	<p>○北征副元帥李季全辭。傳曰：“好去好來。”季全啓曰：“諸將起復者，不食肉味，氣力甚衰，請從權開素，此人等見賊當勦殺，何嫌食肉乎？”傳曰：“予亦欲令開素，但此人等釋衰從戎，已有隱痛，又使食肉，予不忍之。其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僉議以啓曰：“起復從戎，固宜開素，命令開素。”</p>

	<p>“기복(起復)시켜 전쟁에 종사(從事)하게 하니, 진실로 마땅히 개소(開素)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개소(開素)하도록 하였다.</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1일 (을축) 6번째기사</p>	<p>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삼가 유서(諭書)를 받들어 보건대 선유(宣諭)23759) 하심이 엄하고 간절하오니, 신(臣)은 놀라고 당황함을 깨닫지 못하여 죽으려고 하여도 되지 않았습니다. 각진(各鎭)의 병력(兵力)이 넉넉하지 못한데, 지금 추수(秋收)를 당하여 수호(守護)하는 군사를 가는 곳마다 나누어 보내고, 또 연강(沿江)에 병졸을 매복(埋伏)시켜 적로(賊路)23760) 를 실제 염탐하고 있으니, 진(鎭)에 남아 있는 현재의 병졸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만약 적변(賊變)이 있으면 모름지기 4, 5진(鎭)의 용사(勇士)를 뽑아내야만 성사(成事)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적인(賊人)이 혹은 밤을 이용하여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오기도 하고, 혹은 산에 올라서 우리를 엿보기도 하면서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것이 일정(一定)함이 없으니, 동쪽을 보강(補強)하고 서쪽을 허술하게 하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산(理山)·위원(渭原)·강계(江界) 같은 곳에는 진장(鎭將)이 죄를 지었으므로, 현재는 비록 직임에 있더라도 아침에 저녁일을 보장(保障)할 수가 없으니, 비록 조용히 포치(布置)하려고 하지마는 저절로 저지(沮止)하게 됩니다. 신의 뜻으로 함부로 생각하기를 죄를 지은 진장(鎭將)일지라도 그 재간(才幹)이 쓸 만한 사람은 형벌을 집행한 후 그대로 임용한다면 거의 그 주략(籌略)23761) 을 다 쓸 것입니다. 또 어찌 새 장수가 그전 장수보다 못할런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불화(不和)를 맺은 이래(以來)로 군사와 백성들이 자주 사로잡히고 살해를 당하게 되니, 농민(農民)들이 해가 높이 뜨고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 비로소 들에 나갔다가 해가 겨우 서쪽으로 기울어지면</p>	<p>○西北面都元帥李克均馳啓， 略曰： “伏奉諭書， 宣諭嚴切， 臣不覺驚惶， 欲死不得。 各鎭兵力不贍， 今當秋收， 守護軍隨處分送， 且沿江伏兵， 賊路體探， 留鎭見卒甚尠， 如有賊變， 須抄四、五鎭勇士， 乃能可濟。 況賊人或犯夜乘船沿江而下， 或登山窺覘出沒無常， 補東虛西， 亦所不可， 加以如理山、渭原、江界鎭將作罪， 時雖在任， 朝夕不保， 雖欲從容布置， 自爾摧沮。 臣意妄謂， 作罪鎭將， 其才可用者， 決罰仍任， 則庶可盡其籌略矣。 又安知新將之不如舊也？ 且自構釁以來， 軍民數被擄殺， 農民待日高霧開， 始出野， 日纔西下， 還驅輒入， 收穫事緩， 禾穀九分在野， 若專意捕賊， 則棄穀不收， 民將艱食， 事勢狼狽。 臣欲兩全而未能。 且賊終不悔罪， 則問罪之舉， 亦不得已， 入攻之路， 又不可不預知。 今選勇士五十九人， 令李益文、姜自成、李石全等領入賊穴， 探其道路。” 命示領敦寧以上議政府。 沈澮等僉議，</p>

도로 달음질을 쳐서 첩입(輒入)하게 되니, 벼를 거두는 일이 늦어져서 벼가 9분(分)은 들에 있게 됩니다. 만약 적(賊)을 잡는 일에 전심(傳心)하게 된다면 곡식을 버리고 거두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식량(食糧) 때문에 고생할 것이니, 사세(事勢)가 낭패입니다. 신(臣)은 두 가지를 온전히 하려고 하지마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 적(賊)이 마침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죄지은 자를 정벌하는 거사(舉事)도 또한 마지못할 일이니, 들어가 공격하는 길도 또한 미리 알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용사(勇士) 59인을 뽑아서 이익문(李益文)·강자성(姜自成)·이석동(李石叢) 등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적(賊)의 굴혈(窟穴)23762)로 들어가게 하여 그 도로(道路)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議政府)의 관원에게 보이게 하니, 심회(沈滄) 등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갔다가 오는 사이에 도리어 적(賊)에게 손상을 당할까 두려우니, 유서(諭書)를 내리어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별도로 원수(元帥)를 보낸 까닭은 혹은 끌어들이서 불의(不意)에 공격하든지, 혹은 가까운 지경에 와서 둔쳐서 공격할 만한 형세가 있으면 군사를 놓아서 뒤쫓아 잡도록 한 것뿐이다. 원수(元帥)가 떠날 때에 승지(承旨)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간다면 어찌 능히 사로잡지 못하겠는가?’고 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나도 또한 싸움에 이긴 보고를 기대(期待)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싸움에 이겨서 적(賊)을 잡았다는 보고는 듣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백성이 사로잡힌 욕(辱)만 보게 되었다. 지금의 치계(馳啓)한 글에도 또한 이르기를, ‘농민이 들에 흩어져 있으니 형세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변방 백성들에게 곡식을 버리고 거두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는가? 전일에 절하고 하직할 때에 말하기를, ‘만약 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죄지은 자를 정벌해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내

啓曰：“恐往來之間，反爲賊所傷，令下諭詳審處之何如?” 傳曰：“予之所以別遣元帥者，或引入掩擊，或來屯近境，有可擊之勢，則縱兵追捕耳。元帥去時，承旨聞其言曰：‘我若往焉，豈不能擒乎?’ 故予亦以捷奏期待，厥後未聞捷獲，反見擄辱。今之馳書亦云：‘農民散野，勢甚難焉。’ 予豈欲邊民棄穀而不收乎? 前日拜辭時言，若不得已，當舉問罪，予答之曰：‘待元帥還京，收朝議爲之。’，今以五十餘人探其窟穴，若主成可所報，賊五百餘人屯聚一處，相遇而戰，則安能以寡敵衆乎? 今欲下書止之，亦無及矣。” 僉啓曰：“上敎允當，斯速下諭則猶可及止也。” 傳曰：“賊若屯聚近境，則選兵勦擊可也，直探巢穴，則不稟予命而遽爾爲之不可。其將此意下諭。”

	<p>가 대답하기를, ‘원수(元帥)가 서울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조정의 의논을 수합(收合)하여 이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0여 인으로써 그들의 굴혈(窟穴)을 찾도록 했는데, 김주성가(金主成可)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적(賊) 5백여 명이 한 곳에 둔처 모였다가 서로 만나서 싸우게 된다면, 어찌 적은 군사로써 많은 적병(賊兵)을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유서(諭書)를 내려서 이를 중지(中止)시키려고 하더라도 또한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p> <p>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p> <p>“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적당합니다. 빨리 유서(諭書)를 내린다면 아직도 중지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p> <p>하자, 전교(傳敎)하기를,</p> <p>“적(賊)이 만약 가까운 지경에 둔처 모여 있다면 군사를 가려 뽑아서 무찔러 공격하는 것이 옳겠다. 바로 적(賊)의 소혈(巢穴)23763) 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나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갑자기 하게 될 것이니,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유서(諭書)를 내리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8월 23일 (정묘)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양면(楊沔)이 아뢰기를,</p> <p>“평안도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영(營)의 아전(衙前)을 많이 설치하여 비록 군사일지라도 또한 속하게 하여 병사(兵使)의 영(營)에는 거의 6백 명이나 되고 감사(監司)의 영(營)에는 4백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출근(出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쌀을 거두는데 명칭을 대량(代糧)이라 하고, 당연히 국경의 방비에 나가야 하는데도 나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쌀을 거두는데 명칭을 동제(冬除)라 하며, 또 공장(工匠)을 함부로 점유(占有)하여 사역하게 하니, 이것은 오로지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가족(家族)을 거느리고 임지(任地)에 가서 생활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또 상시</p>	<p>○御經筵。講訖，掌令楊沔啓曰：“平安道觀察使、節度使，多設營衙前，雖軍士亦許屬，兵使營則幾六百，監司營則四百餘人，而其中不願仕者，斂其米，名曰代糧，應赴防而不願赴者，斂其米曰冬除，又濫占工匠以役之。此專由監司、兵使挈家赴任，爲營產計耳。且常在營中，不勤巡行，請依他道例，勿令挈家。”上顧問左右。領事洪應對曰：“自祖宗朝，各道監司，</p>

영중(營中)에 있으면서 순행(巡行)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니, 다른 도(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가족(家族)을 거느리고 가지 말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들은 혹은 가족(家族)을 거느리고 가기도 하고, 혹은 데리고 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신(臣)의 아버지는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되어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겸무(兼務)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도(道)의 가족(家族)을 거느리고 가는 법을 혁파(革罷)했으나 유독 양계(兩界)만은 혁파(革罷)하지 않은 것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 도(道)에 있으면서 초면(初面)에 사무를 다스리도록 하고,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변방을 순찰(巡察)하여 적군(敵軍)의 침입을 막도록 한 것이니, 법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마는,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를 맡은 사람의 과실입니다. 지금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어세겸(魚世謙)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향리(鄉吏)가 없는 까닭으로 양인(良人)을 토관(土官)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효위(驍尉)23768)로 삼기도 했으니, 감사(監司)의 체모(體貌)를 엄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절도사(節度使)의 아전(衙前)은 실제 모두가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니, 만약 창졸간에 변방의 경보(警報)가 있으면 절도사(節度使)가 3, 4명을 거느리고서 나가더라도 곧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지마는, 만약 홀로 간다면 비록 절도사(節度使)일지라도 어찌 능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삼도(下三道)23769) 에는 군현(郡縣)이 많으니, 감사(監司)가 1년 동안에 순행(巡行)하는 것이 2, 3번에 지나지 않지만, 양계(兩界)에는 군현이 적으니, 며칠 안에 두루 순행(巡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시로 순행(巡行)한다면 여러 고을의 접대(接待)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가족(家族)을 거느리고 가는 법이 유독 양계(兩界)에서만 시행되는 까

或挈家或否，臣父爲京畿監司，兼牧廣州，其後革諸道挈家之法，獨兩界不革者，以距京師遠，令監司在其道初面治事，節度使巡邊防禦，法非不善也，而弊至於此者，任職者之過也。今不可更改。”知事魚世謙啓曰：“平安道無鄉吏，故以良人爲土官，或爲驍尉，所以嚴監司體貌也。節度使衙前，實皆驍勇者，若卒有邊警，節度使擇率三、四而赴，乃可濟事，若獨往，雖節度使，何能爲也？下三道郡縣多，監司一年之間，巡不過二、三次，兩界郡縣少，不日可以遍巡，若常巡行，則諸邑供億之費不貲，此所以挈家之法獨行於兩界耳。節度使當夏不能巡江邊者，或因霖雨久留一郡，數多驍從，難以支供，冬節赴防時所供之需，諸邑預辦而亦難之，若令冬夏常巡，諸邑恐不堪也。”上曰：“果在人，非法之弊也。但營衙前濫占則不可。其下書諭之。”



	<p>답인 것입니다. 절도사(節度使)가 여름에는 강변(江邊)을 순행(巡行)하지 못하는 것은 혹은 흠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한 고을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수많은 추종(騶從)23770)을 접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겨울철의 국경 방비에 나갈때에 공급하는 수용(需用)도 여러 고을에서 미리 판비(辦備)하는데 또한 이를 어렵게 여기고 있으니, 만약 겨울과 여름에 상시로 순행(巡行)하도록 한다면 여러 고을에서 아마 감내하지 못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사람에게 달려 있고 법의 폐해는 아닌 것이다. 다만 영(營)의 아전(衙前)을 함부로 점유(占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것을 유서(諭書)를 내려서 개유(開諭)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4일 (무진) 4번째기사</p>	<p>북정 부원수(北征副元帥) 성준(成俊)에게 필단 유철릭(匹段襦帖裏) 1개, 겹철릭(袂帖裏) 1개, 유오자(襦襖子) 1개, 궁(弓) 2정(丁), 대전(大箭) 1부(部), 건복구(鞮服具) 사의(蓑衣) 1부(部), 호초(胡椒) 3두(斗), 화(靴) 1부(部), 옹황(雄黃) 1근(斤), 낭자(囊子) 1개를 하사(下賜)하고,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 변종인(卞宗仁)에게 유철릭(襦帖裏) 1개, 유오자(襦襖子) 1개, 궁(弓) 2정(丁), 사의(蓑衣) 1부(部), 대전(大箭) 1부(部), 옹황(雄黃) 1근(斤)을 하사(下賜)하고는, 전교(傳敎)하기를, “이 물건을 선위사(宣慰使)가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p>	<p>○賜北征副元帥成俊匹段襦帖裏一、袂帖裏一、襦襖子一、弓二丁、大箭一部、鞮服具蓑衣一部、胡椒三斗、靴一部、雄黃一斤、囊子一；南道節度使卞宗仁襦帖裏一、襦襖子一、弓二丁、蓑衣一部、大箭一部、雄黃一斤。傳曰：“此物，宣慰使賚去，分與之。”</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5일 (기사) 3번째기사</p>	<p>성절사(聖節使) 박승질(朴崇質)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이달 15일 아침에 통사(通事) 김맹경(金孟敬)을 보내어 총병관(摠兵官) 나웅(羅雄)에게 나아가 호송(護送)할 군사를 청하니, 나웅(羅雄)이 묻기를,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기에, 김맹경(金孟敬)이 대답하기를, ‘성식(聲息)이 있음을 들은 까닭으로 지금 호송(護送)하는 군사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나웅이 말하기를, ‘건주위(建州衛)의 달자(獐子) 복화독</p>	<p>○聖節使朴崇質回到遼東馳啓曰：“臣本月十五日朝，遣通事金孟敬詣摠兵官羅雄，請護送軍，雄問：‘汝國邊境有何事乎？’孟敬答云：‘聞有聲息，故今請護送軍。’雄曰：‘建州衛達子卜花禿等，九十月、十一二月間，欲犯汝國邊境，汝國禮義之地，與中國似一家，摠</p>

(卜花禿) 등이 9, 10월이나 11, 12월 사이에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을 침범하려고 하나, 그대 나라는 예의(禮義)의 땅이므로 중국(中國)과 더불어 한 집안과 같으니, 총병관(總兵官)이 군사로 팔참(八站)까지만 호송케 하면 비록 달자(達子)일지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야인(野人)의 일은 보첩(報牒)이 이곳에 도착했으니 내일 다시 와서 초(抄)해 가라.’고 하였습니다. 16일 아침에 김맹경이 초해왔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성지(聖旨)로 임명하여 개원(開原) 등지에 나누어 지키게 한 우참장(右參將) 도지휘사(都指揮使) 최승(崔勝)이 오랑캐의 사정(事情)을 전해 보고한 일은, 개원 비어 도지휘사(開原備禦都指揮使) 배진(裴震)의 정문(呈文)에 의거하고, 홍치(弘治) 4년(23787) 7월 초10일에 통사(通事)인 백호(白戶) 백홍(白洪)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해서(海西) 갈림위(葛林衛) 여진(女眞)의 지휘(指揮) 답한출(答罕出) 등 5명이 시장(市場)에 도착하여 보고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금년 6월 28일에 흑룡강(黑龍江) 야인(野人)의 두아(頭兒) 23788 인 주공혁(主孔革)이 2, 3백의 인마(人馬)를 거느리고는 말하기를, 「개원(開原) 지방에 와서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해서 산장(海西山場)과 송화강(松花江) 삼채(三寨)의 사람이 개원(開原)에 먼저 알릴까 두렵고, 그곳의 인마(人馬)가 뒤쫓아와서 빼앗아갈 수 없을까 두려우므로 아매(我每)가 너희 삼채(三寨)의 산장(山場) 사람을 빼앗아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7월 초1일에 아매 도독(我每都督) 도리길마우(都里吉馬牛)의 백성 마홀(馬忽) 등 30명의 많은 인마(人馬)가 거짓으로 요하(遼河)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말하고는 한인(漢人)의 땅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빼앗아 갔다.」 고 했으며, 또 해서(海西) 함진하위(欽眞河衛)의 여진(女眞) 합답(哈答)이 또한 보고하기를, 「7월 초3일 건주(建州)의 두아 도독(頭兒都督) 복화독(卜花禿)이 우리의 본채(本寨)에 와서 말을 샅을 주고 빌려가면서 그가, 아매(我每)가 먼저 고려(高麗) 23789) 의 후문(後門)에 가서 두 번을 빼앗아 가

兵官使兵護送於八站，則雖達子何畏。’ 又云：‘野人事報牒到此，明日更來抄去。’，十六日朝，孟敬抄來，其文曰：‘欽差分守開原等處右參將都指揮使崔勝爲傳報夷情事，據開原備禦都指揮使裴震呈，弘治四年七月初十日，據通事百戶白洪呈，審得海西葛林衛(女直) [女眞] 指揮答罕出等五名，到市報說：「今年六月二十八日，有黑龍江野人頭兒主孔革，領著二、三百人馬，說稱要來開原地方上偷搶，又怕爾海西山場并松花江三寨的人，先去開原報道，怕他人馬趕殺不得搶時，我每說搶爾三寨并山場的人回去。」 又說：「七月初一日，我每都督都里吉馬牛的百姓馬忽等三十多人馬，詐說遼河打魚，要來漢人地上偷搶行間。」 又有海西欽眞河衛(女直) [女眞] 哈答亦報：「七月初三日，有建州頭兒都督卜花禿來我本寨雇馬，他說：『我每先去高麗後門搶了兩遭回來了，如今又來雇馬，還要去搶高麗。』 又與我每說：『南朝的人馬，要到秋間，征伐爾海西一帶的人。』」 我每聽得這話害怕，就來開原馬法，每上報得知道，據報備

지고 돌아왔으니 지금에 또 와서 말을 샀을 주고 빌려가는 것은 고려(高麗)에 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라고 말하였으며, 또 아매(我每)와 더불어, 남조(南朝)23790)의 인마(人馬)가 추간(秋間)에 이르러 너희 해서(海西) 일대(一帶)의 사람을 정벌할 것이라라고 말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아매가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하여 개원 마법(開原馬法)에 나아와서 보고를 올려서 알게 되었는데, 보고에 의거하여 정문(呈文)을 갖추어 성지로 임명하여 개원(開原) 등지에 나누어 지키게 한 곳에 도착하여 모였습니다. 태감(太監) 남간(藍看)이 보고한 바를 알고 앞서 행속(行屬)을 제거하고 방비를 엄근(嚴謹)하기를 청한 외에 수본(手本)을 사용하여 번거롭게 알리기를 청하였으니, 수본(手本)이 이르게 된 것은, 홍치(弘治) 4년 7월 초10일에 우참장(右參將) 도지휘사(都指揮使) 최승(崔勝)이 「성지로 임명하여 개원(開原) 등지에 나누어 지키게 한 우참장(右參將) 도지휘사(都指揮使) 최승(崔勝)이 전해 보고하게 된 일은, 개원 비어 도지휘사(開原備禦都支揮使) 배진(裴震)의 정문(呈文)에 의거하고 통사(通事) 백홍(白洪)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해서(海西) 갈림위(葛林衛) 여진(女眞)의 지휘(指揮) 답한출(答罕出)이 보고한 말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건주(建州)의 두아(頭兒) 복화독(卜花禿)이 친히 와서 우리 해서(海西)의 두아(頭兒) 올가(兀可)의 푸른 말을 고용(雇用)하려고 하니 올가(兀可)가 그에게 주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는데, 하룻밤을 쉬고 난 후 그에게 네가 말을 빌려주었는가를 물으니 얼마에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복화독(卜花禿)이 돌아와 말하기를, 5, 6월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고려(高麗)의 집을 세 번이나 빼앗았는데, 지금 좋은 말을 고용(雇用)하고 인마(人馬)를 많이 수습(收拾)하는 것은 가서 빼앗기 위한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려(高麗)의 후문(後門)을 알지 못하고 한인(漢人)의 지방에 가서 어떤 것을 빼앗았는지도 알지 못하므로, 내가 친히 와서 개원마법문(開原馬法們)의 보고를 보고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홍치(弘治) 4년 7월 22일.”

呈到來會同。欽差分守開原等處，太監藍看得所報，前請除行屬，嚴謹隄備外，合用手本，煩請知會，須至手本者。弘治四年七月初十日，右參將都指揮使崔勝，欽差分守開原等處，右參將都指揮使崔勝爲傳報事，據開原備禦都指揮使裴震呈，據通事白洪呈，審得海西葛林衛(女直)〔女眞〕指揮答罕出報說：「建州頭兒卜花禿親來租我海西頭兒兀加的青馬，有兀加不肯與，他歇了一夜，問他：『爾租馬要做甚麼？』卜花禿回說：『五、六月船上過江，搶了高麗家三遭，如今租好馬，多收拾人馬，還要去搶。』」不知高麗後門，不知漢人地方上去搶有這等事。我親來見開原馬法們報得知道。弘治四年七月二十二日。”命示經筵宰相，仍傳曰：“金主成可告變與書狀之言相合，賊雖作謀，如今水漲犯邊者，不過鼠竊狗盜，不得大舉入寇無疑矣。但都元帥歸時言，邊事措置而後上來，予亦許之。今若上來，賊之乘間入寇，未可知也。節度使雖措置備邊，不如元帥共謀備禦之爲善，卽令下書，仍留邊鎮，別遣朝臣，以諭是意，又聽元帥之

	<p>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경연(經筵)의 재상(宰相)에게 보이게 하고는, 이내 전교(傳敎)하기를,</p> <p>“김주성가(金主成可)의 고변(告變)이 서장(書狀)의 말과 서로 합(合)한다. 그러므로 적(賊)이 비록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처럼 물이 불은 때에 변방을 침범하는 자는 좁도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군사를 크게 일으켜 침구(侵寇)할 수가 없을 것은 의심이 없다. 다만 도원수(都元帥)가 돌아올 때 변사(邊事)를 조치(措置)한 후에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나 또한 허락했는데, 지금 만약 서울로 올라온다면 적(賊)이 틈을 타서 쳐들어올런지를 알 수가 없다. 절도사(節度使)가 비록 조치(措置)하여 변경을 방비(防備)한다 해도 원수(元帥)가 함께 모의(謀議)하여 미리 준비하여 막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니, 즉시 교서(敎書)를 내려서 그대로 변진(邊鎭)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별도로 조신(朝臣)을 보내어 이런 뜻을 개유(開諭)하고, 또 원수(元帥)의 의사(意思)를 듣고 와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니, 이극배(李克培) 등이 아뢰기를,</p> <p>“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적당합니다.”</p> <p>하자, 전교(傳敎)하기를,</p> <p>“이거(李据)가 이문(吏文)을 알고 있는데, 오늘 경연(經筵)의 일 때문에 올 것이니, 그로 하여금 번역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이거(李据)와 이창신(李昌臣)이 이문(吏文)을 번역하여 들어오니, 전교(傳敎)하기를,</p> <p>“비록 번역했다고 하나 여전히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2본(本)을 써 오라. 내일 1본(本)을 내가 볼 것이고, 1본(本)은 이창신이 친히 읽어서 아뢴 것이다.”</p> <p>하였다.</p>	<p>意來啓何如?” 李克培等啓曰: “上敎允當。” 傳曰: “李据解吏文, 今日因經筵來矣, 使之翻譯。” 据及李昌臣翻譯以入。 傳曰: “雖翻譯, 尙未解見。書二本, 明日一本予見之, 一本昌臣親讀以啓。”</p>
<p>성종 256권, 22년</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가서 일본 국왕(日</p>	<p>○壬申/上幸景福宮, 御慶會樓下, 宴</p>

<p>(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8일 (임신) 1번째기사</p>	<p>本國王의 사신(使臣)인 중 경팽 수좌(慶彭首座) 등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종척(宗戚)과 재신(宰臣)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술이 일곱 순배(巡盃)가 되자, 임금이 상관인(上官人) 경팽(慶彭)과 부관인(副官人) 설정(雪艇) 등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는, 이내 물품을 차등(差等)이 있게 하사(下賜)하였다.</p>	<p>日本國王使臣僧慶彭首座等。 宗宰入侍，酒七行，命上官人慶彭、副官人雪艇等進爵，仍賜物有差。</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8일 (임신) 2번째기사</p>	<p>명하여 임사홍(任士洪)의 집에 면포(綿布) 5백 필, 정포(正布) 2백 50필, 수주(水紬) 20필, 정주(鼎紬) 20필과 중미(中米) 30석(碩), 조미(糙米) 50석(碩), 청밀(淸蜜) 2석(碩), 유(油) 3석(碩), 진말(眞末) 5석(碩)을 하사(下賜)하도록 하고는, 이내 전교(傳敎)하기를, “보통 사람이 잘못하여 불을 내더라도 또한 구휼(救恤)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옹주(翁主)가 하가(下嫁)하는 날에 이런 화재(火災)가 있었던 것이겠는가?” 하였다.</p>	<p>○命賜任士洪家綿布五百匹、正布二百五十四、水紬二十四、鼎紬二十四、中米三十碩、糙米五十碩、淸蜜二碩、油三碩、眞末五碩。 仍傳曰：“凡人失火，亦有救恤之意，況翁主下嫁之日，有是火災乎？”</p>
<p>성종 256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8일 (임신) 4번째기사</p>	<p>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이 하직(下直)하니, 허침(許琛)에게 유청 필단 겹천익(柳靑匹段袂天益)과 자주 유철릭(紫紬襦帖裏)을 각 1령(領)씩을 하사(下賜)했으며, 또 도원수(都元帥) 이극균(李克均)에게는 주자 소오자(紬子小襖子) 1개, 호초(胡椒) 4두(斗), 사의(蓑衣) 1부(部), 석옹황(石雄黃) 1근(斤), 낭자(囊子) 1개를 하사(下賜)하고. 부원수(副元帥) 오순(吳純)에게는 남주 겹철릭(藍紬袂帖裏), 대홍주 유철릭(大紅紬襦帖裏) 각 1령(領)씩과 낭자(囊子) 1개, 궁전 건복구(弓箭韃服具)를 하사(下賜)하고는, 인하여 허침(許琛)에게 전교(傳敎)하기를, “경(卿)이 이 물품을 가지고 가서 두 원수(元帥)에게 내려 주고, 부원수(副元帥)에게 말하기를, ‘경(卿)은 이룬 바의 공로도 없고, 또 물품을 줄 만한 의리(義理)도 없으나, 일에 부지런한 까닭으로 내려 줄 뿐이다.’고 하라.” 하였다.</p>	<p>○左承旨許琛辭。 賜琛柳靑匹段袂天益、紫紬襦帖裏各一領；又賜都元帥李克均紬子小襖子一、胡椒四斗、蓑衣一部、石雄黃一斤、囊子一；副元帥吳純藍袖袂帖裏、大紅紬襦帖裏各一領、囊子一、弓箭韃服具。 仍傳于許琛曰：“卿賚去此物，賜兩元帥，誥副元帥曰：‘卿無所成之功，又無可與之義，然勤勞故賜之耳。’”</p>
<p>성종 256권, 22년</p>	<p>평안도 도원수(平安道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군관(軍官) 이석동(李石叀)을</p>	<p>○癸酉/平安道都元帥李克均遣軍官李</p>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8월 29일  
(계유) 1번째기사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21일에 적(賊) 2백여 명이 고사리성(高沙里城)을 포위하므로 우리 군사가 뒤쫓아 잡아서 적(賊)의 머리 39급(級)을 베었는데, 그들이 도망하다가 배가 뒤집혀 죽은 자는 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자, 이석동(李石叟)이 아뢰기를,  
 “지난 21일에 신(臣) 등이 척후장(斥候將)으로서 저들의 경계에 들어가 염탐하려고 길을 떠나 위원(渭原)·이산(理山) 등지에 도착하니, 첨사(僉使) 김윤제(金允濟)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적(賊)이 세 갈래로 나누어 2, 3백 명이 때를 지어 황성(皇城)·평림(平林)·망합동(亡哈洞)·가야지동(加也之洞)을 지나서 올 것이니 그대가 비록 들어가더라도 저들은 수효가 많고 우리는 수효가 적으므로 서로 대적할 수가 없으니, 속히 달려가서 구원하도록 하라.’고 하므로, 신(臣) 등이 거느린 군사 50여 명을 이끌고 옹후현(甕後峴)에 도착하니, 밤이 장차 새려고 했습니다. 신(臣)이 이익문(李益文)에게 이르기를, ‘고사리성(高沙里城)에는 군사가 적으니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야겠다.’ 하니, 이익문(李益文)이 거느린 군사 1대(隊)로써 고사리(高沙里)에 보내고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만포(滿浦)로 향하여 갔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상하(上下)의 연대(煙臺)에서 불기운이 공중에 올라가고 또 화포(火炮)를 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산 위를 보니 2인이 우리 무리를 바라보고서 백림(白笠)23796) 으로써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백림(白笠)을 자세히 살펴보니 곧 우리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물어보니,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바야흐로 적(賊)과 별을외평(別乙外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고 하므로, 신(臣) 등이 달려가서 보니 적(賊)이 강을 따라 포열(布列)하고는 강을 건너려는 듯하면서 강물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우리 군사도 또한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실상은 적(賊)이 강을 건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짐짓 성세(聲勢)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진(鎭)에 가서 구원

石全馳啓曰：“本月二十一日，賊二百餘圍高沙里城，我軍追捕斬獲三十九級，其奔還覆舟而死者，又不知幾許。”上引見石全，啓曰：“去二十一日，臣等以斥候，將入探彼境，行到渭原、理山等處，僉使金允濟使人云：‘賊分三運，二、三百爲群，由皇城平林亡哈洞、加也之洞而來，汝雖入去，彼衆我寡，不可相敵，其速馳來救援。’臣等領所率軍五十餘人，到瓮後峴，夜將向曙，臣謂李益文曰：‘高沙里城孤軍少，可遣軍救援。’李益文以所領軍一隊送高沙里，領餘軍直向滿浦，望見上下煙臺，火氣騰空，且有放炮聲，見山上有二人，望我輩以白笠揮之，審見其笠，乃我國人也。問之則曰：‘我軍方與賊，戰于別乙外平。’臣等馳往見之，賊沿江布列，似若渡江，從流上下，我軍亦從而上下，使不得渡，其實賊非欲渡江，故作聲勢，使不得往救他鎭。少頃有人呼曰：‘賊已圍高沙里。’臣等又以所領軍馳往，賊已解圍，倉黃北走，皆墜于絕壁，我軍乘勝追斬凡三十九級矣。”上曰：“斬首者誰耶？”石全曰：“射之者爭追斬之，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어느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적(賊)이 이미 고사리(高沙里)를 포위했습니다.’고 하므로, 신(臣) 등은 또 거느린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니, 적(賊)은 벌써 포위를 풀고서 매우 급하게 패하여 달아나다가 모두 절벽(絶壁)에 떨어졌으므로, 우리 군사가 이긴 기세(氣勢)를 타서 뒤쫓아 목을 베었는데, 무릇 39개나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적(賊)의 머리를 벤 사람은 누구인가?”

하자, 이석동(李石叟)이 아뢰기를,  
 “활을 쏜 사람들이 다투어 뒤쫓아 가서 목을 베었습니다. 또 도원수(都元帥)가 일찍이 여러 진(鎭) 영(令)을 내리기를, ‘적(賊)이 이르면 성중(城中)에서는 떠들지 말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여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일을 적당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첨절제사(僉節制使) 강지(姜漬)는 적변(賊變)을 듣고서 곧 성상(城上)의 궁가(弓家)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 1인과 몽둥이 가진 사람 2인으로 하여금 몰래 숨어 엎드려 이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적(賊)이 강변(江邊)에 둔치고 통사(通事)를 불렀으나 짐짓 대답하지 아니했으며, 조금 후에 서자명(徐自明)이 누상(樓上)에서 대답하기를, ‘통사(通事)는 없다.’고 하니 적(賊)이 말하기를 ‘어째서 없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너희 나라 사람을 빼앗아 가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때 적(賊)의 보병(步兵)은 이미 몰래 강을 건너 국사당현(國祀堂峴)을 따라 방패를 끼고 강변(江邊)에 둔치고 있었으며, 또 강을 덮어 건너와서 적(賊)의 추장(酋長) 3인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서 사닥다리를 타고 성(城)에 올라서 돌을 뽑아내므로 우리 군사가 돌을 던지니 적(賊)이 성(城)에서 떨어져 달아나므로 군관(軍官) 유희(兪灝)가 쏘아서 그 이마를 꿰뚫었으며, 서자명(徐自明) 등이 또 2명을 쏘아서 죽이니 적(賊)이 모두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조전장(助戰將)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문(北門)을 나가서 그 장성(長成)에 가는 길을 누르고, 강지(姜漬)는 이긴 기세(氣勢)

且都元(帥) [帥] 嘗令於諸鎭云: ‘賊至城中, 毋喧擾, 使若無人, 臨機應變。’ 是日僉節制使姜漬聞賊變, 乃於城上弓家, 令能射者一人、持杖者二人潛伏以候之, 賊屯江邊, 呼通事, 故不應, 俄而徐自明從樓上答曰: ‘通事無矣。’ 賊曰: ‘何以言無, 我欲搶去汝國人而來。’ 時賊步兵已潛涉江, 從國祀堂峴, 擁盾屯江邊, 又蔽江而渡, 賊酋三人, 被甲胄緣梯攀城拔石, 我軍以石投之, 賊墜城而走。 軍官兪灝射之, 洞其頂; 徐自明等又射殺二人, 賊皆北走; 助戰將領軍, 出北門扼其長城之路; 姜漬領軍出東門乘勝窮追, 賊皆墜絕壁下, 我軍俯而射之, 賊船窄狹, 僅容二、三人, 而賊爭涉, 四、五人同乘船, 或沈或浮, 其一人中矢驚動, 則舟必傾覆, 以此溺死者多。” 上曰: “先登城者, 何以知其爲賊酋乎?” 石叟曰: “觀其甲胄及指揮其類, 則疑是賊酋也。” 上曰: “我軍戰死者幾何?” 石叟曰: “中矢者六人, 僅傷其皮, 無一人死者, 賊在江越邊, 觀望我軍搜索其奔竄者, 徇示彼賊斬之, 賊有哭踊叩頭者。” 上曰: “賊兵幾何?” 石叟曰:

	<p>를 타서 끝까지 뒤쫓아가니 적(賊)이 모두 절벽(絶壁)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우리 군사가 내려다보고서 이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적(賊)의 배가 좁아서 겨우 2, 3명만 용납하는데도 적(賊)이 건너기를 다투어 4, 5명이 같이 타게 되니, 배가 혹은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혹은 물에 뜨기도 했는데, 그 중 1명이 화살에 맞아 놀라서 요동하면 배는 반드시 기울어져 뒤집히게 되어 이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성(城)에 오른 사람을 어떻게 적(賊)의 추장(酋長)인 것을 알 수가 있는가?”</p> <p>하니, 이석동(李石叟)이 아뢰기를, “그 갑옷과 투구와 그 무리들을 지휘(指揮)한 것을 살펴보니, 적(賊)의 추장(酋長)인 것이 의심이 났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p> <p>하니, 이석동이 아뢰기를, “화살에 맞은 사람은 6명이나 되지만, 겨우 그 피부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 한명도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賊)이 강 건너편에 있으면서 형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군사가 그 도망해 숨은 곳을 찾아내어 저 적(賊)들에게 죽여서 보이고는 목을 베니, 적(賊)이 슬피 울면서 뛰기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도 있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賊)의 병졸은 얼마나 되던가?”</p> <p>하니, 이석동이 아뢰기를, “성(城)을 포위한 자는 2백여 명이나 되었고 강 밖에 있는 기병(騎兵)이 또한 2, 3백명이나 되었으며, 만포(滿浦)에서 형적(形跡)을 나타낸 자는 또 이보다</p>	<p>“圍城者二百餘人，在江外騎兵又二、三百，其滿浦見形者又多。”於此上謂左副承旨權景禧曰：“唯此舉似矣。”景禧對曰：“近者，國家屢受辱於虜，雖擒鼠竊者亦足喜也。況賊自以爲大舉入寇，而斬獲如此，可喜也。”石全曰：“既斬獲，令士卒呼賊曰：‘我國待汝，來則食之，求則與之，又授之以爵，所欲無不從之，近者汝等屢犯邊境，我可以勦殺而不爾者，國家禁其捕獲也。今爾大舉入寇，則其斬獲不得已也，然亦非國家之意也，今將帥適在他所，若在此則汝無噍類矣。’於是，賊五人下馬免胄叩頭而謝曰：‘是言然矣，是言然矣。’賊還，哭聲徹天。”上謂承旨曰：“以予喜意，諭元帥可也。然不無再寇之理，并諭之。”命饋石全酒飯，賜草綠紬帖裏一領、胡椒一斗。石全既出，又啓曰：“曾被擄高山里田孝安者，役使於賊家，唐女二人亦被擄在其家，孝安與其女同在農田，見賊騎從北絡繹而來者六、七日，孝安問其女，女曰：‘汝國有高山里、滿浦之地乎？’孝安曰：‘有之。’女曰：‘虜請兵於鏡城、穩城近地兀狄哈，欲寇滿浦、高山</p>
--	---	---



많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희(權景禧)에게 이르기를,  
 “그런가? 이번 거사(擧事)는 그럴듯하다.”  
 하니, 권경희가 대답하기를,  
 “요사이 국가에서 여러 번 오랑캐에게 욕을 당했으니 비록 좀도둑질하는 자  
 를 사로잡았더라도 또한 기뻐할 것인데, 하물며 적(賊)이 스스로 군사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왔는데도 목을 벤 것이 이와 같으니 기뻐할 만합니다.”  
 하였다. 이석동(李石叟)이 아뢰기를,  
 “이미 적(賊)의 목을 베고는 사졸(士卒)을 시켜 적(賊)을 불러 말하기를, ‘우  
 리 나라에서 너희를 대우하여 오면 밥을 먹이고 구하면 물품을 주고, 또 관작  
 (官爵)까지 주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요사  
 이 너희들이 여러 번 변경(邊境)을 침범하게 되니 우리가 무찔러 죽여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앓는 것은 국가에서 그 잡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지  
 금 너희들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왔으니 그것을 목을 베고 사로잡는  
 것은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국가의 의도(意圖)는 아닌 것이  
 다. 지금 장수(將帥)가 다른 곳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이곳에 있었다면  
 너희 무리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이에 적(賊) 5명이 말에서  
 내려 투구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례(謝禮)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하였으며, 적(賊)이 돌아가자 우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  
 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원수(元帥)에게 유시(諭示)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  
 나 다시 침구(侵寇)할 이치도 없지도 않으니, 아울러 이것도 유시(諭示)하게  
 하라.”  
 하였다. 명하여 이석동에게 술과 밥을 대접하도록 하고, 초록주 철릭(草綠紬

里。’ 後賊謂孝安曰：‘汝好在無憾，吾  
 往寇汝國，汝妻在高山里城中乎？年歲  
 容貌何如？吾將攜來給汝。’ 孝安曰：  
 ‘爾等雖往，事必不利，國家自吾輩被  
 擄，遣都將帥防禦，有武才者皆來赴  
 耳。’ 賊怒罵指其掌曰：‘高山里城如  
 此，其中能容幾許乎？軍行何出此不吉  
 之言。’ 遂拳毆其脣。翼日賊空其窟  
 穴而出，孝安乘其空，請於其女得糧料  
 賊衣服，先賊軍潛來至高山里江邊，呼  
 船而渡曰：‘虜之來寇，非今日則必明  
 日。’ 賊翼日果來寇也。” 傳曰：“孝  
 安逃來告此賊變，是懷戀故國也。其  
 諭都元帥，田孝安之事與石全所啓相  
 合，則令其郡給米四碩、賜紬衣一領，  
 否則取稟可也。” 政院啓曰：“虜來犯  
 邊，邊將斬獲，乃其職分也。然近者，  
 國家受辱於虜屢矣。今者，斬獲如此，  
 國人孰不喜悅。曩時，許混欺罔國家，  
 斬獲只七人，猶下宣慰，今則斬獲倍  
 多，且承旨已歸本道，今若命宣慰，則  
 高山里軍民，豈不激勵乎？” 傳曰：“今  
 若褒獎，予恐邊將驕惰，防禦解弛，姑  
 寢之以待後事。”

帖裏) 1령(領)과 호초(胡椒) 1두(斗)를 하사(下賜)하였다. 이석동이 이미 나가자, 또 아뢰기를,

“일찍이 사로잡혀 간 고산리(高山里)의 전효안(田孝安)이란 사람이 적(賊)의 집에서 역사(役使)되었을 때 중국 여자 2명이 또한 사로잡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전효안이 그 여자와 더불어 함께 농전(農田)에 있다가 적(賊)의 기병(騎兵)이 북쪽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것을 본 지가 6, 7일이 되었는데, 전효안이 그 여자에게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 나라에 고산리(高山里)와 만포(滿浦)의 땅이 있는가?’ 하므로, 전효안이 ‘있다.’고 하니, 여자가 말하기를, ‘오랑캐가 경성(鏡城)·온성(穩城)에 가까운 땅의 울적함(兀狄哈)에게 군사를 청하여 만포(滿浦)와 고산리(高山里)를 침구(侵寇)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후에 적(賊)이 전효안에게 이르기를, ‘너는 잘 있으니 마음에 섭섭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를 가서 침구(侵寇)할 것인데, 너의 아내가 고산리(高山里)의 성중(城中)에 있는가? 나이와 용모가 어떠한가? 내가 장차 사로잡아와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니, 전효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가더라도 일은 반드시 이롭지 못할 것이다. 국가에서 우리 무리들이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도장수(都將帥)23797)를 보내어 방어(防禦)하고,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구원하고 있다.’ 하니, 적(賊)이 성내어 꾸짖으며 그 손바닥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고산리성(高山里城)이 이와 같은데 그 속에 능히 얼마쯤을 용납하겠는가? 군대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불길(不吉)한 말을 입 밖에 내는가?’ 하고는 마침내 주먹으로 그의 입술을 때렸습니다. 이튿날 적(賊)이 그 굴혈(窟穴)을 비워두고 나갔는데, 전효안은 그 빈틈을 타서 그 여자에게 청하여 양료(糧料)와 적(賊)의 의복을 얻어가지고 적군(賊軍)보다 먼저 몰래 와서 고산리(高山里)의 강변(江邊)에 이르러 배를 불러 건너면서 말하기를, ‘오랑캐의 쳐들어 오는 것은 오늘이 아니면 반드시 내일일 것이다.’ 하였는데, 적(賊)이 이튿날에 과연 쳐들어왔습니다.”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전효안(田孝安)이 도망해 와서 이 적변(賊變)을 알린 것은 고국(故國)을 깊이 사모(思慕)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도원수(都元帥)레세 유시(諭示)하여 전효안의 일이 이석동(李石叟)의 아뢰 바와 서로 맞는다면 그 고을로 하여금 쌀 4석(碩)과 주의(紬衣) 1령(領)을 하사(下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아뢰어 결정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오랑캐가 와서 변경(邊境)을 침범하면 변방의 장수가 오랑캐의 목을 베고 사로잡는 것은 곧 그들의 직분(職分)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국가에서 오랑캐에서 욕을 당한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지금 적(賊)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이와 같으니, 나라 사람이 누군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허혼(許混)이 국가를 속이고서 적(賊)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단지 7명뿐인데도 오히려 선위(宣慰)를 내리셨는데, 지금은 적(賊)의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갑절이나 많습니다. 또 승지(承旨)가 이미 본도(本道)에 돌아갔으니, 지금 만약 명하여 선위(宣慰)하게 한다면 고산리(高山里)의 군민(軍民)이 어찌 격동(激動)하여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만약 칭찬하고 권장(勸獎)한다면 나는 변장(邊將)이 교만하고 게을러져서 적(賊)을 방어(防禦)하는 일이 해이(解弛)해질까 염려스럽다. 우선 중지(中止)하고 뒷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57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9월 3일 (병자) 4번째기사</p>	<p>경주 부윤(慶州府尹) 윤해(尹垓)가 졸(卒)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윤해(尹垓)는 탄망(誕妄)하고 성실함이 없었으나 척리(戚里)23802) 에 인연(夤緣)하여 갑자기 당상(堂上)에 올랐으며, 일찍이 청송 부사(靑松府使)가 되어서는 횡렴(橫斂)하는 데에 끝이 없었다. 뒤에 경주</p>	<p>○慶州府尹尹垓卒。  【史臣曰：“垓，誕妄無實，夤緣戚里，驟陞堂上。嘗爲靑松府使，橫斂無藝。後尹慶州，日事聚斂，民甚苦之，</p>

	<p>부윤(慶州府尹)이 되어서도 날로 취렴(聚斂)을 일삼으니, 백성들이 심히 괴로와하였다. 병이 위급한 데 이르렀는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죽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미 죽었는데도 가인(家人)들이 윤희의 명(命)이라 속이고는 관고(官庫)의 재물(財物)을 다 취한 뒤에야 발상(發喪)하였다. 그 아들 윤사원(尹士元)은 친상(親喪)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나 또한 슬퍼하지 않았고 일찍이 통간한 기생과 거처하면서 술을 마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하였다.</p>	<p>及疾革，民猶恐不死，既死，家人誣以垓之命，悉取官庫財物而後發喪。其子士元奔喪，亦不悲哀，與曾奸妓同處，飲酒如常。”】</p>
<p>성종 257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9월 5일 (무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유인(李有仁)이 아뢰기를, “요즈음 여러 번 경연관(經筵官)에게 주악(酒樂)을 내려 주셨는데 그것이 대체(大體)에 어떻겠습니까? 3월 3일과 9월 9일에도 주악(酒樂)을 내려 주셨으니 은혜(恩禮)가 이미 우악(優渥)한데, 또 명하여 달을 구경하며 밤을 새도록 하였으니, 유폐(流弊)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경(卿)은 무슨 일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가? 근자에 경연관(經筵官)에게 기영회(耆英會)에 가서 참석하라고 명하였는데, 반드시 이 일일 것이다.” 하였다. 이유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연회는 기영(耆英)을 위해서 베풀었지 경연관(經筵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서 참석하라고 명하셨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9월 9일과 3월 3일에 경연관에게 주악(酒樂)을 내려 주심도 또한 해로움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유인이 말하기를, “진(晉)나라 때에 사안(謝安)23816) 이 기생을 데리고 동산(東山)에서 놀았던 까닭으로 그 풍속이 끝내는 방탕(放蕩)하고 허무(虛無)함을 숭상하여서 진나</p>	<p>○御經筵。講訖，大司憲李有仁啓曰：“近者，屢賜經筵官酒樂，其於大體何如? 三月三日、九月九日，賜酒樂，恩禮已優，又命翫月徹夜，恐有流弊。” 上曰：“卿據何事言之? 近命經筵官往參耆英會，必是事也。” 有仁曰：“然。” 上問左右。領事沈澮對曰：“臺諫之言然矣，然此宴爲耆英而設，非爲經筵官也，雖命往參何妨? 九月九日、三月三日，經筵官賜酒樂亦無妨。” 有仁曰：“晉時，謝安携妓東山，故其俗終以放蕩虛無爲尙，晉室促亡。今不可比擬於晉，然恐一開其源，末流不可復塞。觀稼之時，只令政府、戶曹往觀可也，而會諸宰，設酒樂於門外，未便。上待弘文館甚厚，或於本館，或於政院，賜酒飲之可矣，何必特賜酒樂乎?” 上曰：“然，弘文館亦請勿翫月，予命往之，其後遂廢耆英會例</p>

	<p>라 왕실의 멸망을 재촉하였으니, 이제 진나라에 비교하여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한 번 그 근원을 열면 말류(末流)를 다시 막을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관가(觀稼)23817) 할 때는 단지 정부(政府)와 호조(戶曹)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함이 옳으며, 그리고 여러 재신(宰臣)을 모아 문밖에서 주악(酒樂)을 베푸는 것도 또한 미편(未便)합니다. 성상께서 홍문관(弘文館)을 대우하심이 매우 후(厚)하니 본관(本館)에, 혹은 정원(政院)에 술을 내려 마시게 함도 옳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특별히 주악(酒樂)을 내려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 홍문관(弘文館)에서도 또한 달을 구경하지 않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가라고 명하였다. 그 뒤에 드디어 기영회(耆英會)의 예사(例事)를 폐(廢)하였는데, 대간(臺諫)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홍문관(弘文館)은 직질이 낮은데도 가서 참석한 것을 미편(未便)하게 여기기 때문이니, 금후로는 가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p>	<p>事，而臺諫言之者，必以弘文館秩卑往赴未便也，後勿往參可也。”</p>
<p>성종 257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9월 6일 (기묘) 2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주연(酒宴)을 베풀고, 영안도 도체찰사(永安道都體察使) 노사신(盧思愼)을 인견(引見)하고 위로하였는데, 종사관(從事官) 정석견(鄭錫堅)과 한사문(韓斯文)도 또한 들어왔다. 임금이 노사신에게 이르기를,</p> <p>“제장(諸將)이 입정(入征)하여 한 도가 공허(空虛)할 것이므로, 경(卿)을 번거롭게 하며 진(鎭)에 가게 하니, 내가 근심할 것이 없겠다. 그러나 다만 서적(西賊)이 패배(敗北)하여 분원(憤怨)을 아직 덜지 못하였으므로, 삼수(三水)·갑산(甲山) 등지에 적(賊)이 몰래 일어날까 염려스럽다.” 하니, 노사신이 대답하기를,</p> <p>“한 도(道)의 정예(精銳)한 군졸을 다 정벌(征伐)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만약 적(賊)의 몰래 일어남이 있게 되면 아마도 방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p>	<p>○上御宣政殿，置酒引見永安道體察使盧思愼慰之。從事官鄭錫堅、韓斯文亦入。上謂思愼曰：“諸將入征，一道空虛，煩卿往鎭，予無憂矣。但西賊敗北，憤怨未洩，三水、甲山等處，竊發可慮。”思愼對曰：“一道精銳之卒，盡令赴征，脫有竊發，恐難禦之。”上曰：“本道防禦亦繁，豈之帥盡率精銳乎？與元帥共議置，若能守城，萬無見敗之理。”思愼曰：“守城則雖婦人，小子亦能禦敵，今時則禾穀盡收，人民</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本道)의 방어(防禦)도 또한 긴요하니, 어찌 원수(元帥)가 정예(精銳)한 군사를 다 거느리겠느냐? 원수(元帥)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조치(措置)하라. 만약 능히 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결코 패배할 리가 없을 것이다.”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성(城)을 지키는 것은 비록 부인(婦人)과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또한 적(敵)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다 수확하였고 백성을 첩입(輒入)23818) 시켰으니, 근심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고산리(高山里)의 싸움은 저들 적(賊)이 먼저 만포(滿浦)에서 요병(耀兵)23819) 하며 침공(侵攻)하는 형세를 취하였으나, 실은 고산리(高山里)를 엄습(掩襲)하려고 한 것이었다. 소추(小醜)가 어찌 성(城)을 공격하고 남의 땅을 침략하는 원대(遠志)한 뜻이 있겠는가? 두축(頭畜)을 약탈하고 사로잡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서자명(徐自明)이 이르기를, ‘만포성(滿浦城) 안에서 화광(火光)이 〈하늘까지〉 뻗쳤고, 또 포(炮)를 쏘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강지(姜漬)가 가서 구원하려고 하자 서자명과 유호(兪灝)가 굳이 저지하여 마침내 대첩(大捷)할 수 있었다.’ 하였는데, 서자명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강지가 서자명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만포(滿浦)로 가서 구원하였더라면 고산리(高山里)는 반드시 대패(大敗)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장수(將帥)는 지략(智略)이 먼저인 것이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이의(李誼)가 아뢰기를,  “신(臣)이 일찍이 들으니 영안도(永安道)는 군량(軍糧)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신은 이제 입정(入征)하는 데에 오고 가는 군수(軍需)를 넉넉히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문죄(問罪)한 뒤에 오랑캐가 또한 해마다 침범(侵犯)하면 양항(糧餉)이 부족할까 두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輒入，似無可憂。”上曰：“高山里之戰，彼賊先耀兵滿浦，爲侵攻之勢，實欲掩襲高山里也。小醜豈有攻城略地遠大之志？不過搶擄頭畜而已。徐自明云：‘滿浦城中火光洞徹，又有放炮之聲，姜漬欲往救，自明、兪灝固止之，竟能大捷。’自明之言，不可盡信，然姜漬不從自明之言，往救滿浦，則高山里必大敗。由是觀之，將帥智略爲先。”右承旨李誼啓曰：“臣曾聞，永安道軍糧不敷。臣意，今入征往來軍需，猶足以給之，若問罪之後，虜亦連年侵犯，則糧餉恐不足，不可不慮。前者諸司奴婢之貢，戶曹請以穀輸納於郡，但本道多內需司奴婢，而諸邑雜貢如皮物之類亦多，請從市直以穀輸納。”上曰：“可。”誼又啓曰：“賊寇滿浦，而楸坡上土之兵皆來赴，則兵力非不足也，而僉使金允濟不能誘致擊之，先自畏怯，輒放炮，使之驚走，有違國家措置之意。請鞫之。”上曰：“然。”賜思慎貂裘一領、匹段帖裏一領、紬帖裏一領、耳掩一、靴一、胡椒一袋、弓二張、大箭一部、韃服具、蓑衣諸緣具，從事官亦賜弓矢。</p>
--	--

	<p>지난번에 제사(諸司) 노비(奴婢)의 공물(貢物)을 호조(戶曹)에서 곡식으로 군(郡)에 수납(輸納)하기를 청하였습시다마는, 그러나 본도(本道)는 내수사 노비(內需司奴婢)가 많아서 제읍(諸邑)의 잡공(雜貢)인 피물(皮物)과 같은 종류가 또한 많으니, 청컨대 시장의 값을 따라서 곡식으로 수납(輸納)할 것을, 노사신(盧思愼)으로 하여금 그 편부(便否)를 살펴서 조치(措置)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p> <p>하였다. 이의(李誼)가 또 아뢰기를, “적(賊)이 만포(滿浦)를 침입하였을 때 추파(楸坡)와 상토(上土)의 군사가 모두 내부(來赴)하였다면, 병력(兵力)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첨사(僉使) 김윤제(金允濟)는 능히 유인하여 공격하지 못하고, 먼저 스스로 두려워하여 갑자기 포(炮)를 쏘아 놀라서 달아나도록 하였으니, 국가에서 조치(措置)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p> <p>하고, 노사신에게 초구(貂裘) 1령(領), 필단 철릭(匹段帖裏) 1령(領), 주철릭(紬帖裏) 1령(領), 이엄(耳掩) 하나, 화(靴) 하나, 호초(胡椒) 1대(岱), 궁(弓) 2장(張), 대전(大箭) 1부(部), 건복구(韃服具), 사의 제연구(蓑衣諸緣具)를 내려 주고, 종사관(從事官)에게도 또한 궁시(弓矢)를 내려 주었다.</p>	
<p>성종 257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9월 9일 (임오) 4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거(李据)가 와서 아뢰기를, “이조(吏曹)에서 이르기를, ‘돈녕 정(敦寧正)이 될만한 사람은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말은 잘못입니다. 조정(朝廷)에 어찌 돈녕정(敦寧正)이 될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약 그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돈녕부(敦寧府)는 치사(治事)하는 관사가 아니니, 잠시 꺾(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하필이면</p>	<p>○司憲府掌令李据來啓曰: “吏曹云: ‘爲敦寧正者無其人.’ 其言非也。 朝廷豈無人可爲敦寧正者乎? 若無其人, 敦寧府非治事之官, 姑闕焉可也。 何必以副正陞授乎? 李績之患得患失, 令</p>

부정(副正)을 승차시켜 제수하겠습니까? 이적(李績)의 얻지 못할까 근심하고 잃을까 근심함은 신 등으로 하여금 배척하여 말하게 한 것입니다. 대저 대간(臺諫)은 동료(同僚)와 더불어 모두 함께 가부(可否)를 의논한 뒤에야 혹은 상언(上言)하기도 하고 혹은 상소(上疏)하기도 하는 것이 예(例)인데, 이적은 정언(正言)이 되어 홀로 소장(疏章)을 지어 소매 속에 넣고 와서 스스로 진달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사론(士論)이 수중 상소(袖中上疏)라고 기롱하였으니, 이것이 곧 얻지 못할까를 근심함입니다. 뒤에 남원 판관(南原判官)으로 체임(遞任)되고, 예조 정랑(禮曹正郎)으로 천전(遷轉)되었는데, 끝내 육조 낭관(六曹郎官)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교대(交代)하지 않고서 왔으니, 이것이 바로 잃을까를 염려함입니다.

또 들으니 전교(傳敎)하여 이미 사문(赦文)을 내렸는데도 또 이계통(李季通)과 신자건(愼自健)을 죄주었으니, 이것은 실신(失信)함입니다. 신(臣) 등의 생각으로는 이계통(李季通)이 스스로 이르기를, ‘쌀 15석(碩)과 면포(縣布) 10여 필(匹)을 형(兄) 이숙통(李叔通)의 종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취하지 않았음을 알겠습니까? 신자건은 도사(都事)로서 또한 전최(殿最)23837)에 참여하여서 수령(守令)의 증유(贈遺)를 받았습니다. 대저 장오(贓汚)는 사열(赦列)에 있지 않으니, 비록 장안(贓案)23838)에 기록되었더라도 또한 실신(失信)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숙감(李淑臧)과 최관(崔瓘)의 죄도 또한 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창신(李昌臣)을 돈녕정(敦寧正)으로 제수하는 것이 미편(未便)하다면, 만약 다른 관사(官司)의 정(正)으로 제수하면 어떠하겠느냐? 이적(李績)의 일은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겠다. 이계통과 신자건은 아뢴 바를 따름이 옳으니 이숙감은 이미 파직(罷職)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더하겠는가? 최관(崔瓘)은 비록 증유(贈遺)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구하여 청한 것이 아니고, 또 용류(庸流)

臣等斥言之，大抵臺諫與同僚僉議可否，然後或言或疏，例也。績爲正言，獨製疏章，袖來自達，其時士論，以袖中上疏譏之，此卽患得也。後遞南原判官，拜禮曹正郎，俄遷工曹正郎，恐終失六曹郎官，不交代而來，此卽患失也。且聞傳敎既降赦文，而又罪季通、自建，是失信也。臣等謂，李季通自云：‘以米十五碩、縣布十餘匹，給兄叔通之奴。’安知不自取之？愼自建，以都事亦參殿最，而受守令贈遺。大抵贓汚不在赦列，雖錄贓案，亦非失信也。李淑臧、崔瓘之罪，亦不可棄。”傳曰：“以昌臣授敦寧正爲未便，若授他司正則如之何？李績事，將議于大臣。季通、自建，可依所啓。淑臧，既罷職，復何加哉？崔瓘雖受贈，非自求請，又非庸流，若以赦前事，追論科罪，則於大體何如？”

据曰：“昌臣，有罪之人，敦寧府尙不可，況他司乎？”傳曰：“昌臣，有才又能漢語，其人不可廢棄也。以我編小之國，人才幾許，不可以小過捨之也。且一有過失而終身棄之，則孰能改過而自新乎？予觀今世有罪者，雖或可疑，必毀之而



	<p>가 아니니, 만약 사유(赦宥) 전의 일이라 하여 추론(追論)하여 과죄(科罪)하면 대체(大體)에 어떠하겠느냐?”</p> <p>하였다. 이거(李据)가 말하기를,  “이창신은 죄가 있는 사람이니, 돈녕부(敦寧府)도 오히려 불가(不可)하거늘, 하물며 다른 관사이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이창신은 재주가 있고 또 한어(漢語)에 능(能)하니, 그 사람을 폐기(廢棄)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는 편소(編少)한 나라로써 인재(人才)가 얼마 되질 않으니, 작은 잘못으로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한 번의 과실(過失)이 있다고 해서 종신토록 버린다면 누가 능히 개과(改過)하여서 스스로 새로와지겠느냐? 내가 보건대 지금 세상에 죄가 있는 자는 비록 혹 의심할 만하여도 반드시 험뜯은 뒤에야 그만둔다. 이창신의 죄(罪)는 일부러 범한 죄가 아니고 곧 그 처(妻)의 소위(所爲)이다. 내가 보건대 이창신은 홍문관(弘文館)에 전임(前任)하였는데, 비록 그 마음을 알더라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장령(掌令)은 이창신과 더불어 홍문관(弘文館)에 동임(同任)하였으니 족히 그 마음을 알 것이다.”</p> <p>하였다. 이거(李据)가 아뢰기를,  “신이 이창신과 더불어 5, 6년을 같이 근무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그의 과실(過失)을 보지 못하였으나, 정욕(情欲)을 이기지 못하고 재리(財利)에 빠졌으니, 그 과실이 어느 것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이거에게 참연(參宴)하게 하였다.</p>	<p>後已，昌臣之罪，非故犯，乃其妻所爲也。予觀昌臣，前任弘文館，雖知其心，豈能盡知乎？掌令與昌臣同任弘文館矣，足以識其心矣。” 据啓曰：“臣與昌臣，同任五、六年矣，然何以識其心乎？臣未曾見其過失，然而不勝情欲，陷於財利，其過孰大於是？請改正。” 不聽。命据參宴。</p>
<p>성종 257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9월 13일</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홍계원(洪係元)이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제조(提調)가 구임(久任)함은 미편(未便)한 일입니다.”</p>	<p>○御經筵。講訖，持平洪係元啓諸司提調久任未便事。上曰：“大臣皆曰：‘定箇月，非待宰相之體。’故仍舊</p>

(병술) 2번째기사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모두 이르기, ‘개월(箇月)을 정하면 재상(宰相)을 대우하는 체모가 아니다.’라고 한 까닭으로 그전대로 하게 하였다.”  
하였다.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오랫동안 제조(提調)를 하면, 그 사(司)의 노예(奴隸) 보기를 자기의 노복(奴僕)과 같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자,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제조(提調)에게 개월(箇月)을 정함은 불가(不可)하며,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일을 겸(兼)함도 또한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홍계원(洪係元)과 정탁(鄭鐸)이 또 아뢰기를,  
“이창신(李昌臣)을 돈녕 정(敦寧正)으로 승수(陞授)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탁(鄭鐸)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복천사(福川寺)에 공양하는 부여창(扶餘倉)의 소금 40석(碩)을 해마다 봄가을에 백성으로 하여금 전수(轉輸)하게 하니, 백성이 심히 괴로와합니다. 선왕조(先王朝)에 중 신미(信眉)가 이 절에 있었으므로 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만, 이제 신미(信眉)가 이미 죽었는데도 그 폐단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청컨대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寺社)를 혁파할 만한 일이 어찌 이것뿐이겠느냐? 조종조(祖宗朝)에서 설치한 것이라서 차마 갑자기 혁파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정탁이 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의 법도(法度)도 손익(損益)할 수가 있거늘, 하물며 이 일이겠습니까? 만약 혁파함이 불가하다면 마땅히 승도(僧徒)로 하여금 전수(轉輸)하

耳。” 獻納鄭鐸啓曰：“久爲提調，視其司奴隸，如己奴僕者有之矣。” 領事洪應啓曰：“提調定箇月不可，一人兼數事亦不可。” 上曰：“然。” 係元、鄭鐸又啓：“李昌臣不宜陞授敦寧正。” 不聽。 鄭鐸又啓曰：“忠淸道福川寺所供扶餘倉鹽四十碩，每年春秋，令民輸轉，民甚苦之。 先王朝，以僧信眉在此寺有是事，今信眉已死，而其弊猶存，請革之。” 上曰：“寺社可革之事，豈但此乎？ 以祖宗朝所設，不忍頓革耳。” 鐸曰：“祖宗朝法度，猶可損益，況此事乎？ 若不可革，當使僧徒輸轉。” 不聽。 鐸又啓曰：“臣嘗爲全羅道都事，觀本道風俗，尙淫祀，祈禱于錦城山者，非徒旁近居民，雖遠處人亦羸糧往來，士族婦女，亦率處女，經宿乃還，以此或夫婦相失，醜聲騰聞，風俗之毀，莫甚於此，守令欲禁而不能者，以其祠稅米，歲納歸厚署故也。 請革之以正風俗。” 上問左右。 應對曰：“此弊，臣亦聞之。 但其來已久，不可一切禁之。 當初必以群聚淫祀者衆，故征以抑之。 根本既不可除去，則稅米亦不當廢也。” 上曰：“然，征

	<p>게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탁이 또 아뢰기를,</p> <p>“신(臣)이 일찍이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가 되어 본도(本道)의 풍속(風俗)을 보니, 음사(淫祀)23850) 를 숭상하여, 금성산(錦城山)에 기도(祈禱)하는 자가 가까운 곳에서 사는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비록 먼 곳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식을 지고 왕래하였으며,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도 또한 처녀(處女)를 데리고 밤을 지내고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혹 부부(夫婦)가 서로 잘못되어 추한 소리가 비등하여 풍속의 훼손됨이 이보다 심함이 없었습니다. 수령(守令)이 금(禁)하려고 하지만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세미(祠稅米)를 해마다 귀후서(歸厚署)23851) 에 납부하는 까닭이니, 청컨대 혁파시켜서 풍속을 바르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p> <p>“이 폐단은 신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력이 오래 되어 일체(一切) 금지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반드시 우리가 모여 음사(淫祀)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여겼던 까닭으로 정세(征稅)로써 억제하였는데, 근본(根本)을 제거(除去)할 수 없다면 세미(稅米)도 또한 마땅히 폐(廢)하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 정세(征稅)의 법(法)은 비록 갑자기 혁파함이 부당(不當)하다 하더라도 음사(淫祀)만은 통금(痛禁)함이 옳겠다.”</p> <p>하였다. 참찬관(參贊官) 김심(金諶)이 아뢰기를,</p> <p>“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그 염산(斂散)을 관장하게 하는데, 그 전수(典守)하는 노자(奴子)는 비록 관위(官威)에 인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백성을 침학(侵虐)하거늘, 하물며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함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稅之法， 雖不當猝革， 淫祀則可痛禁。” 參贊官金諶啓曰：“內需司長利， 令守令掌其斂散， 其典守奴子， 雖不因官威， 猶侵虐於民， 況使守令掌之乎？” 上曰：“予非使守令斂散也， 慮恐典守者作弊， 令守令檢察而已。 若以爲不便， 則當從所啓。”</p>
--	---	--

	<p>“내가 수령으로 하여금 염산(斂散)하게 한 것이 아니다. 전수(典守)하는 자가 작폐(作弊)할까 염려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하였을 따름인데, 만약 불편(不便)하다고 생각되면 아뢴 바를 따름이 마땅하다.”</p> <p>하였다.</p>	
<p>성종 257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9월 18일 (신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건원릉(健元陵)과 현릉(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거가(車駕)가 돌아오다가 주정(晝停)23860) 에 이르니, 왕세자(王世子)가 거가를 맞이하여 물선(物膳)을 바치므로, 명하여 종재(宗宰)와 제장(諸將)을 대접하게 하였다.</p>	<p>○辛卯/上詣健元陵、顯陵，親祭。駕還至晝停，王世子迎駕獻物膳。命饋宗宰諸將。</p>
<p>성종 257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9월 18일 (신묘) 2번째기사</p>	<p>북정 도원수 종사관(北征都元帥從事官) 한구(韓昫)가 원수(元帥)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오니, 곧 입정(入征)한 뒤에 유방(留防)하는 부원수(副元帥) 이계동(李季叟)의 방어(防禦)할 일과 야당지(也堂只)로 하여금 향도(嚮導)를 삼아 두만강(豆滿江)에 부교(浮橋)를 만드는 등의 일이었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p> <p>“도원수(都元帥)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p> <p>하니, 한구(韓昫)가 아뢰기를,</p> <p>“초9일에 영흥(永興)을 출발하여 벌써 북도(北道)로 향하였습니다. 신(臣)은 초9일에 홍원(洪原)을 출발하여 14일에 노사신(盧思愼)을 문천(文川)에서 만났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서장(書狀)의 뜻을 보았는데, 원수(元帥)가 야당지(也堂只)로 하여금 길을 가리키게 하려고 하던가?”</p> <p>하니, 한구가 말하기를</p> <p>“야당지(也堂只)는 본시 니마거(尼麻車) 종족입니다. 일찍이 우리 나라에 변고를 보고하였고, 순령(順令)23861) 을 본받아 서울에 조회하려고 왔으나, 저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문죄(問罪)하는 거사를 알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원수(元帥)가 일찍이 1, 2인을 사로잡아 군중(軍中)에 묶어 두었다가 향도(嚮導)로</p>	<p>○北征都元帥從事官韓昫賚元(帥) [帥] 書狀而來，乃入征後留副元帥李季叟防禦事，及令也堂只嚮導、豆滿江造浮橋等事也。上引見謂曰：“都元帥今在何處?” 昫啓曰：“初九日發永興，已向北道。臣初九日發洪原，十四日遇盧思愼於文川。” 上曰：“予見書狀之意，元帥欲令也堂只指路乎?” 昫曰：“也堂只，本尼麻車種，曾於我國報變效順，(令) [今] 欲朝京而來。彼人不知我國問罪之舉明矣。元帥曾欲生擒一、二人，縛置軍中，使爲嚮導。今此虜適來，元帥喜甚。” 上問北方氣候何如，昫曰：“八月十三日間霜降，晚種蕎麥，似未及收，他穀則無傷，農事稍稔。九月初三日，吉城、明川等處，下雪尺餘。然臣來時，日氣還暖，元帥疑入征時江水未合，已遣權景祐、</p>

삼고자 하였는데, 이제 이 오랑캐가 왔으므로, 원수가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묻기를,  
 “북방(北方)의 기후(氣候)는 어떠하냐?”  
 하니, 한구가 말하기를,  
 “8월 13일 사이에 서리가 내려서, 늦게 심은 교백(蕎麥)은 수확하지 못할 것  
 같으나, 다른 곡식은 상(傷)함이 없었으며, 농사(農事)는 조금 풍년이었습니  
 다. 9월 초3일에 길성(吉城)·명천(明川) 등지에서 눈이 한 자 남짓이 내렸으  
 나, 신이 올때에는 일기(日氣)가 다시 따뜻해져서 원수(元帥)가 입정(入征)할  
 때에 강의 얼음이 얼지 않을까를 의심하여, 이미 권경우(權景祐)와 김곤(金坤)  
 을 보내어 미리 부교(浮橋)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원수(元帥)가 정벌(征伐)을 마친 뒤에도 이계동(李季叟)을 그대로 머무르게  
 하여 방어하게 하고자 하나, 두 부원수(副元帥)가 모두 5진(五鎭)에 있으면  
 형세가 어려울 것 같다. 성준(成俊)은 이미 절도사(節度使)로서 부원수를 겸  
 (兼)하였으니, 방어(防禦)가 반드시 허소(虛疎)하지 않을 것이다. 이계동은 정  
 벌을 마친 뒤에 올라움이 어떻겠느냐?”  
 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원수(元帥)의 뜻은 입정(入征)한 뒤에 적(賊)이 보복(報復)하고자 모의(謀意)  
 할 것이므로 이계동을 머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림(田霖)과 육한  
 (陸閑)은 모두 무용(武勇)이 있는 사람이니 성준이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수  
 (戍)자리를 나누어 방어(防禦)한다면 이계동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한구(韓洵)더러 이르기를,  
 “이 뜻을 돌아가거든 원수(元帥)에게 말하라.”  
 하였다. 한구가 말하기를,  
 “입정(入征)하는 군졸(軍卒)은 4운(運)으로 나누어서 행군하였는데, 인마(人

金坤，預設浮橋。”上謂承旨曰：“元帥罷征後，欲以李季全仍留防禦，兩副元帥〔帥〕俱在五鎭，勢似難矣。成俊既以節度使兼副元帥防禦，必不虛疎，季全則罷征後上來何如？”同副承旨曹偉啓曰：“元帥意，入征後賊謀欲報復，故欲留季全耳。然田霖、陸閑，皆武勇人也，成俊與此二人，分戍防禦，則季全不必留在。”上謂洵曰：“以此意歸語元帥。”洵曰：“入征軍卒，分四運而行，人馬皆壯健，不至疲困。”上〔白〕曰：“予以天氣早寒，恐士馬凍傷，常軫慮。今聞農事稍稔，時未苦寒，士馬充實，而也堂只適來，予亦喜焉。日雖寒凜，元帥必能措置，豈使士馬凍傷哉！”命饋洵酒食。

	<p>馬)가 모두 장건(壯健)하여 피곤(疲困)한 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날씨가 일찍 추워져 사마(土馬)가 동상(凍傷)에 걸릴까 두려워 항상 진려(軫慮)하였다. 이제 듣건대 농사(農事)가 조금 풍년이 들고 때가 아직 지독하게 춥지 않으며, 사마(土馬)가 충실(充實)하고 야당지(也堂只)가 마침 왔다고 하니, 내 또한 기쁘구나. 날씨가 비록 심히 춥더라도 원수(元帥)가 반드시 잘 조치(措置)할 것이니, 어찌 사마(土馬)로 하여금 동상(凍傷)에 걸리게 하겠느냐?”  하고, 명하여 한구에게 주식(酒食)을 대접하게 하였다.</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0월 4일  (정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거(李瑠)가 아뢰기를,  “근자(近者)에 참봉(參奉)을 모두 연소(年少)한 자제(子弟)로 등용(登用)하였는데 이는 매우 합당치 못합니다. 《대전(大典)》 23898)에는 여러 해 거관(居館)23899) 하면서 일곱 번 과거를 보아 합격하지 못한 자라야 서용(敍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舉行)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만약 유생(儒生)을 거용(擧用)하면 연소(年少)한 자가 관작(官爵)을 희망하여 글 읽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안처량(安處良)은 말하기를,  “《대전(大典)》의 법이 이와 같으니, 유생(儒生)을 골라서 임용(任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이거가 또 아뢰기를,</p>	<p>○丁未/御經筵。 講訖， 掌令李瑠啓曰：“近者， 參奉皆用年少子弟， 甚未便。 《大典》， 累年居館， 七舉不中者敍用， 請令該曹舉行。” 上問左右。 領事尹壕對曰：“若擧用儒生， 則年少者希望官爵， 不喜讀書。” 特進官安處良曰：“《大典》之法如此， 選用儒生可也。” 上曰：“可。” 瑠又啓：“兩界戍卒， 艱苦太甚， 中朝則防戍軍皆給衣服。 臣意， 兵曹、 都摠府徵贖布， 分給兩界戍卒， 使彼知殿下軫念之意何如？” 上曰：“可。” 獻納鄭鐸啓曰：“祖宗朝王子君師傅及內侍教官， 一員兼之， 其後加設一員， 今者王子師傅、 內侍教官， 各授三員， 是冗官也。 請汰之。” 上曰：“近來， 內官學文者多，</p>

	<p>“양계(兩界)의 수졸(戍卒)은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방수(防戍)하는 군사에게 모두 의복(衣服)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에서 징속(徵贖)한 베[布]를 양계의 수졸(戍卒)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전하(殿下)께서 진념(軫念)하시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p> <p>하였다.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왕자군(王子君)의 사부(師傅)와 내시 교관(內侍敎官)은 한 사람이 겸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지금 왕자 사부(王子師傅)와 내시 교관(內侍敎官)을 각각 세 사람씩 제수하는데, 이는 쓸데없는 관직입니다. 청컨대 도태시키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즈음 내관(內官)으로서 학문하는 자가 많고, 왕자 등도 여염(閭閻)에 나누어 거처(居處)하므로, 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늘린 것이다. 지금 만약 부득이해서 도태시킨다면 내시 교관(內侍敎官)을 도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하였다. 정탁이 말하기를, “왕자군(王子君)들이 만약 나이가 장성하게 되면 마땅히 종학(宗學)23900)에서 수업(受業)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탁이 또 아뢰기를, “복천사(福泉寺)에 해마다 주는 소금은 백성들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굽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인데, 비록 중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王子等亦分處閭閻，非一人所能遍往敎誨，故加設耳。今若不得已汰之，則內(待) [侍] 敎官汰之可也。” 鐸曰：“王子君若年長，則當受業於宗學。”不聽。鐸又啓曰：“福泉寺歲給鹽，令民轉輸煮鹽，本以爲民，雖與之，僧徒亦可令自輸。”上曰：“寺社事可革者多矣，然以祖宗朝事，故未敢遽革耳。”</p>
--	---	---

	<p>“사사(寺社)의 일은 고칠 것이 많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의 일이므로, 감히 서둘러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7일 (경술) 2번째기사</p>	<p>유학(幼學) 정형(鄭洞)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의 아버지 정수(鄭洙)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제수(除授)되었는데, 사간원(司諫院)에서 신의 아버지가 만형과 누이와의 송사(訟事)에 관여하였다 하여 논박(論駁)하여 서경(署經)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이미 신의 아버지가 간여되지 않은 자취를 핵실(覈實)하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미 관명된 일을 거론(學論)하여 허물이 있는 곳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니, 신은 통분하고 민망함이 더욱 심합니다.” 하였는데, 사간원에서 거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수(鄭洙)가 내수사(內需司)에 정장(呈狀)하여 정진(鄭溱)의 집값을 나누어 가지고자 하여, 한성부(漢城府)에서 입송(入訟)할 때에 해당 관리를 초빙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었는데, 그 어미의 문기(文記)와 도서(圖書)를 고찰하기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형(兄) 정회(鄭淮)에게 노비(奴婢)를 별도로 지급(支給)한 문기를 빙고(憑考)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으니, 그 형과 틀어져 다툰 것이 분명합니다. 청컨대 수리(受理)하지 마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정수(鄭洙)의 공사(供辭)를 고찰하여 아뢰라고 하였다.</p>	<p>○幼學鄭洞上書曰： 臣父洙，除司憲府監察，司諫院以臣父與伯姊之訟，駁不署經。義禁府，前此已覈臣父不干之迹，而今猶論已辨之事，擠之有過之地，臣之痛悶滋甚。 司諫院據此啓：“洙呈狀于內需司，欲分得鄭溱家價，漢城府立訟時，邀該吏饋酒飯，及考其母文記圖書，而乃云：‘請憑考兄淮奴婢別給文記。’其與兄乖爭明矣。請勿受理。”命議于領敦寧以上。沈滄、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議：“依所啓施行。”命考鄭洙供辭以啓。</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8일 (신해) 1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양현고 주부(養賢庫主簿) 정수(鄭洙)가 쌀과 콩을 계산해 보니, 2백여 섬이나 손실되었으므로, 해조(該曹)에 보고하여 고자(庫子)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니, 고자 종생(終生) 등이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양현고의 쌀과 콩은 오로지 어진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쌓아</p>	<p>○辛亥/先是，養賢庫主簿鄭洙斗量米豆，其耗欠者二百餘石，報該曹，分徵庫子，庫子終生等上言陳訴。傳曰：“養賢庫米豆，專爲養賢而設，積置年久，或爲鼠損，或雜塵土，不無虧欠之</p>



	<p>둔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쥐 때문에 손실되기도 하고 흙이 섞이기도 하여 부족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인데, 고자에게 죄를 물어 징납(徵納)하게 함은 애매한 일이다. 지금 징수하지 않고 특별히 쌀과 콩을 내려 주어 감손된 수를 채우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오래 되어 모자라게 된 수를 이제 와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과연 애매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학전(學田)23902 을 넉넉히 주어 학교를 대우한 것이 지극하였으니, 또 쌀과 콩을 더 하사(下賜)하는 것은 역시 한때의 은혜입니다.”</p> <p>하였다.</p>	<p>弊，而委罪庫子徵納曖昧。今欲不徵，特賜米豆，以充耗數何如？”承政院啓曰：“久陳劣數，至是分徵，果爲曖昧。前者優賜學田，待學校至矣。又加賜米豆，則亦一時之恩也。”</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9일 (임자) 2번째기사</p>	<p>명하여 성균관(成均館)에 쌀 3백 섬, 면포(綿布) 5백 필(匹), 정포(正布) 5백 필을 내려 주게 하고, 이어서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양현고(養賢庫)의 쌀과 콩이 많이 감손되었다고 하여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성균관은 어진이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특별히 내려 주는 것이다.”</p> <p>하였다.</p>	<p>○命賜成均館米三百碩、綿布五百匹、正布五百匹。仍傳曰：“予非因養賢庫米豆多耗而賜之，成均養賢之地，故特賜耳。”</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0일(계축) 4번째기사</p>	<p>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 이극증(李克增) 등이 유생(儒生)을 거느리고 진문(箋文)을 올렸는데, 쌀과 베[米布]를 하사(下賜)하고 술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p>	<p>○成均館同知事李克增等率儒生上箋謝賜米布，命饋酒。</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2일(을묘)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제도(諸道)의 연분(年分)23904) 의 등제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윤필상(尹弼商)·이철건(李鐵堅)·한치례(韓致禮)·이숭원(李崇元)·노공필(盧公弼)·민영견(閔永肩)·이집(李諶)·이평(李枰)·윤탄(尹坦)은 의논하기를,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소서.”</p> <p>하고, 이극돈(李克墩)·권건(權健)·김우신(金友臣)은 의논하기를,  “금년에 제도(諸道)의 농사가 제대로 결실(結實)되지 아니하였으니, 세금을 거</p>	<p>○議政府、六曹議啓諸道年分等第。尹弼商、李鐵堅、韓致禮、李崇元、盧公弼、閔永肩、李諶、李枰、尹坦議：“依諸道觀察使啓本施行。”李克墩、權健、金友臣議：“今年諸道農事不實，收稅之數，較諸去年，不足三萬三千七百餘石，而全羅減數則二萬二千</p>

	<p>두는 수량은 지난 여러 해와 비교할 때 3만 3천 7백여 섬이 부족한데, 전라도(全羅道)의 감손된 수량은 2만 2천 3백여 섬이고, 그 밖에 육도(六道)의 감손된 수량은 총계(摠計)하면, 다만 1만 2천 4백여 섬입니다. 전라도의 농사는 다른 도(道)에 밀돌지 않는데, 등급을 매긴 것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 하전(下田)·중전(中田)은 한 등급을 더 올리고, 그 나머지 제도(諸道)는 모두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소서.”</p> <p>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은 마침 일로 인하여 빈청(賓廳)에 나아갔는데, 전교(傳敎)하기를,</p> <p>“금년에 군수(軍需)를 많이 비축해야 하는데, 전라도에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므로, 호조(戶曹)에서 의논하여 등급을 올려 세금을 거두고자 하니, 나의 생각도 옳다고 여긴다. 어떻겠는가?”</p> <p>“대체로 금년에는 서리가 일찍 내렸고, 또 수재(水災)까지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결실(結實)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만약 등급을 더한다면 군수(軍需)는 비록 조금 도움이 되겠으나, 신(臣) 등의 의견으로는 계본(啓本)에 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였다.</p> <p>“가(可)하다.”</p> <p>하였다.</p>	<p>三百餘石，其餘六道減數則摠計只一萬二千四百餘碩矣。全羅道農事不下於他道，而等第太輕，其下中田則加一等，其餘諸道，並依啓本施行。”領敦寧以上，適因事詣賓廳。傳曰：“今年多備軍需，而全羅農事稍登，戶曹議欲加等收稅，予意亦以爲然，何如？”弼商等啓曰：“大抵，今年早霜，且有水災，而農事不實，今若加等，則軍需雖有小補，然臣等意，依啓本爲便。”傳曰：“可。”</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0월 12일(을묘)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p> <p>“홍화(紅花)·지초(芝草)·매실(梅實)·양모(羊毛) 등의 공물(貢物)을 금년에는 이미 다 바쳤는데, 또다시 명년(明年)의 공물까지 인납(引納)23905)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양모 같은 것은 그만이지만, 지초·매실·홍화 같은 것은 모두 계절이 아닌데, 만약 인납하게 한다면, 수령(守令)이 반드시 백성에게 거두어 들일 것이므로, 백성이 받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무역(貿易)하여 쓰도록 하소서.”</p>	<p>○戶曹判書李克墩來啓曰：“紅花、芝草、梅實、羊毛等貢物，今年既畢納，而又引納明年之貢甚不可，如羊毛則已矣，若芝草、梅實、紅花，皆非其時，若引納則守令必賦於民，民之受弊不貲。請貿易用之。”傳曰：“可。”</p>

	<p>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5 일(무오) 2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봉선사(奉先寺)는 다른 사찰(寺刹)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일찍이 쌀과 베를 준 전례가 있으니,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p>	<p>○傳曰: “奉先寺非他寺刹之比, 曾有給米布之例, 依例爲之.”</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6 일(기미) 1번째기사</p>	<p>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김극검(金克儉)이 치계(馳啓)하기를, “여러 번 내리신 전지(傳旨)로 인하여,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음사(淫祀)는 항상 금단(禁斷)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미(神米) 60섬을 해마다 귀후서(歸厚署)에 바치는데, 이 때문에 본읍(本邑)의 수령(守令)이 사족(士族) 부녀(婦女)의 출입(出入)은 금하고, 서인(庶人)은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령(條令)에 기재된 도승(度僧)·선승(選僧)·신포(神布)23913) ·신미(神米)의 유(類)는 성조(聖朝)에서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음사(淫邪)를 금하는 뜻과 크게 서로 모순이 되고 있으니, 신미를 바치는 법을 혁파(革罷)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대신(大臣)들과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이철건(李鐵堅)·어세겸(魚世謙)·이승원(李崇元)·이극돈(李克墩)·여자신(呂自新)·권건(權健)·김우신(金友臣)은 의논하기를, “음사(淫祀)를 금하는 것은 《대전(大典)》 23914) 에 실려 있습니다. 금성(錦城)의 음사(淫祀)에 대해 여러 번 교지(敎旨)를 내려 엄하게 금하였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설(邪說)에 현혹되어 법을 어기고 행하니, 이는 수령(守令)이 살펴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다시 신법(新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신미(神米)는 곧 금법(禁法)을 범한 물건이므로, 마땅히 관(官)에서 몰수(沒收)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己未/全羅道觀察使金克儉馳啓: “累因降旨, 羅州錦城山淫祀, 常加禁斷, 然其神米六十碩, 歲納歸厚署, 以此本邑守令, 只禁士族婦女, 而不禁庶人. 當今條令所載, 度僧選僧神布神米之類, 與聖朝關異端禁淫邪之意, 大相矛盾, 請革納神米之法.” 命議于大臣. 沈滄、尹弼商、李克培、李鐵堅、魚世謙、李崇元、李克墩、呂自新、權健、金友臣議: “淫祀之禁, 《大典》所載, 錦城淫祀, 屢降敎旨痛禁, 而愚民惑於邪說, 冒法行之, 是守令不檢察耳, 何不更立新法? 其神米乃犯禁之物, 當沒官. 請仍舊.” 從之.</p>
<p>성종 258권, 22년</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돈(李克墩)·참판(參判) 권건(權健)·참의(參議) 김우신</p>	<p>○戶曹判書李克墩、參判權健、參議</p>

<p>(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6 일(기미) 2번째기사</p>	<p>(金友臣)이 아뢰기를,  “기유년(23915)의 전례에 의하여 봉선사(奉先寺)에 쌀 30섬,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1백 필(匹)을 내려 주도록 명하셨는데, 지금 국가(國家)에 일이 많아서 군수(軍需)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계(兩界)에 나누어 보내는 면포(綿布)도 군수로 사서 바꾸었습니다. 신(臣) 등이 전례를 상고하건대 쌀만 주고 면포는 주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쌀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부득이(不得已)하다면, 청컨대 면포의 수량을 감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면포(綿布)와 정포(正布) 각각 50필을 감하도록 하라. 봉선사는 선왕(先王)의 진전(眞殿)을 위해 설치한 것이니, 그 중함이 어찌 군수(軍需)만 못하겠는가? 다만 금년에는 군수가 많이 소비되었으므로 수량을 감한 것이다.”  하였다.</p>	<p>金友臣啓曰：“命依己酉年例，賜奉先寺米三十碩、綿布、正布各一百匹，今國家多事，軍需不敷，故兩界分送綿布，質換軍需。臣等考前例，或只給米而無綿布，今亦只給米何如？如不得已，請減綿布之數。” 傳曰：“減綿布、正布各五十四匹，奉先寺爲先王眞殿而設，其重豈不如軍需乎？但今年軍需多費，故減數耳。”</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7 일(경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예건(李禮堅)과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근일(近日)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綿布)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들이 본래 놀고먹는데다가 본사(本寺)의 중은 또 가만히 앉아서 조세(租稅)를 거두어 들이니, 이번에 쌀과 면포를 내려 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봉선사는 다른 절과는 예(例)가 다르므로, 특별히 하사(下賜)했습니다. 그러나 대간(臺諫)의 뜻은 국廩(國廩)의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선사(奉先寺)와 정인사(正因寺)에는 일찍부터 사급(賜給)한 전례(前例)가</p>	<p>○御經筵。講訖，執義李禮堅、獻納鄭鐸啓曰：“近日賜奉先寺米布，僧徒本遊手、遊食，而本寺僧又坐收租稅，今賜米布，甚未便。” 上問左右。領事尹弼商對曰：“奉先寺，非他寺例，故特賜之。然臺諫之意，以國廩多費而言也。” 上曰：“奉先寺、正因寺，曾有賜給之例，是爲先王，非爲僧也。” 同知事李世佐啓曰：“臣意亦謂不可也。” 不聽。〔禮賢〕〔禮堅〕又啓曰：“《大典》頒降後受教可行條件，令印頒，旋命停之。臣意外方官吏，</p>

있는데, 이는 선왕(先王)을 위한 것이지 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신(臣)의 생각으로서도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견(李禮堅)이 또 아뢰기를,  
 “《대전(大典)》을 반강(頒降)한 뒤에 수교(受敎)하여 시행해야 할 조건(條件)  
 을 인쇄해서 반포하라고 하셨다가, 곧 이어 중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외방(外方)의 관리(官吏)도 오히려 방헌(邦憲)을 잘 모르는데,  
 더구나 세민(細民)들 이겠습니까? 청컨대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무릇 수교(受敎)는 다만 일시(一時)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영구(永  
 久)한 법은 아니므로, 인쇄해서 반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세조(世祖)의 하교(下敎)와 모든 경국법(經國法)이 다 《대전(大典)》  
 에 실려 있으니, 유사(有司)가 마땅히 법과 대조하여 쓰면 되는 것이지 어찌  
 반드시 신법(新法)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은 아뢰기를,  
 “시행해야 할 조건(條件) 중에는 일이 같으면서도 제조(諸曹)의 수교(受敎)가  
 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재상(宰相)과 제조(諸曹)  
 의 당상(堂上) 각 1명으로 하여금 회의(會議)하여 가부(可否)를 참작해서 품  
 지(稟旨)한 다음에 인쇄해서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공천(公賤)을 모집하여 강원도(江原道)에 이주(移住)시켰으므로, 제  
 읍(朝邑)의 노비(奴婢)가 다투어 응모(應募)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외방  
 (外方)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는 오히려 가하겠지만, 제읍(諸邑)의 경우는 노

尙不知邦憲，況細民乎？請印頒。”上問左右。弼商對曰：“凡受敎，但救一時之弊，非永久之法，不必印頒。臣嘗聞世祖之敎，凡經國之法，具載《大典》，有司當比法而用之，何必更立新法？”特進官李克墩啓曰：“可行條件，有事同而諸曹受敎或異者。臣謂，宜令宰相及諸曹堂上各一員會議，參酌可否，稟旨印頒。”上曰：“可。”克墩又啓曰：“前者，募公賤徙江原道，故諸邑奴婢，爭起應募。臣意，外方諸司奴婢猶可也，諸邑則奴婢本少而役事甚苦，雖以他奴婢充給，其供役豈得如元居者乎？請竝與其已應募者停之。”上曰：“已應募者，不可停。自今勿許募。”

	<p>비(奴婢)가 본래 적은데다가 역사(役事)가 매우 괴로우니, 비록 다른 노비로 충급(充給)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에 이바지함이 어찌 본래 있던 자만 하겠습니까? 청컨대 이미 응모(應募)한 자까지 아울러 중지시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응모한 자는 중지시킬 수가 없다. 다만 이제부터는 응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7일(경신) 7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유인(李有仁)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綿布)를 내려 주는 것이 불가(不可)함을 논(論)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司憲府大司憲李有仁等上筭子論賜米布於奉先寺不可。不聽。</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7일(경신) 8번째기사</p>	<p>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니, 권경희가 아뢰기를, “신(臣)이 이달 초1일에 선위(宣慰)하고, 초2일에 습진(習陣)하고, 초3일에 신이 경성(鏡城)을 출발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江)의 얼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권경희가 아뢰기를, “그 때에는 날씨가 여전히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았었는데, 도원수(都元帥)가 이미 권경우(權景祐)를 보내어 부교(浮橋)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칩[葛藟]은 많이 생산되는데, 갈대[蘆葦]는 적습니다. 칩은 물에 가라앉지만 갈대는 뜨므로, 만약 칩으로 부교(浮橋)를 만들면 아마도 빠질 위험이 있을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김곤(金坤)을 보내어 여덟 군데에 나무 다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가 언제쯤 건너갈 예정인가?”</p>	<p>○左副承旨權景禧來復命。上引見，景禧啓曰：“臣於本月初一日宣慰，初二日習陣，初三日，臣發鏡城。”上曰：“江水何如？”景禧啓曰：“時日尚溫，冰未合矣。都元帥已遣權景祐造浮橋，但其處葛藟多產而蘆葦稀少，葛性沈而蘆性浮，若以葛爲浮橋，恐有陷溺之患，故又送金坤設木橋八處。”上曰：“濟師當在何時？”景禧曰：“今日始渡矣，十五日先遣李季全，潛渡淺灘，邀截彼人往來處，使之成橋，稱九都將號曰鷹揚、虎奮、鶻擊、龍驤、豹攫、獅吼、雷奔、火烈、風馳，而一都將各有十五隊將，一隊將各領軍二十五人，摠計九都將，所領三千餘人，以</p>

하니, 권경희가 말하기를,  
 “오늘 처음 건너갔습니다. 15일에 이계동(李季叟)을 먼저 보내어 얇은 여울로 몰래 건너가서 피인(彼人)들이 왕래(往來)하는 길목을 차단하여 다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아홉 도장(都將)의 이름을 일컫기를, ‘응양(鷹揚)’·‘호분(虎奮)’·‘골격(鶻擊)’·‘용양(龍驤)’·‘표획(豹攫)’·‘사후(獅吼)’·‘뇌분(雷奔)’·‘화열(火烈)’·‘풍치(風馳)’라고 하였는데, 한 도장(都將)에 각각 15대장(隊將)이 있으며, 한 대장이 각각 25명의 군사를 거느리는데, 아홉 도장이 거느리는 군사를 총계(總計)하면 3천여 명입니다. 그들로 선봉을 삼고, 기치(旗幟)를 새로 만들어 각각 장수의 이름을 쓰고, 대장(隊將)은 각각 자호(字號)를 써서 구별하였습니다. 아홉 도장으로는, 이거인(李居仁)·홍정로(洪貞老)·육한(陸閑)·유자영(柳自英)·정유지(鄭有智)·김계종(金繼宗)·황형(黃衡)·변극곤(邊克坤)·엄귀손(嚴貴孫)이고, 대장도 모두 무재(武才)가 있는 명사(名士)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중(許琮)으로 중군(中軍)을 삼고, 이계동(李季叟)으로 좌아장(左亞將)을 삼고, 전임(田霖)으로 우아장(右亞將)을 삼아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하여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진서(陣書)에 따라 설치하였는데, 오위(五衛)의 중위장(中衛將)으로서는 왕종신(王宗信)이 부오(部伍)를 나누어 들어가게 했으며, 또다시 성준(成俊)을 전원장(前援將), 이굉(李紘)을 중원장(中援將), 한충인(韓忠仁)을 후원장(後援將)으로 삼아 각각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는데, 전원장(前援將)은 울지(鬱地)를 지나 둔병(屯兵)하고, 중원장(中援將)은 울지의 위에 이르러 둔병하고, 후원장(後援將)은 울지의 아래 이르러 둔병하게 하였습니다. 선봉(先鋒)이 만약 니마거(尼麻車)를 공격하여 포로를 잡게 되면 원장(援將)에게 넘겨주고 들어가서 도골(都骨)을 공격하며, 세 원장은 대군(大軍)이 돌아올 때까지 군대를 거느리고 움직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군기(軍期)가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만약 8운(運)23928)의 군졸(軍卒)을 다

此爲先鋒，新造旗幟，各書將號，隊將則各書字號以別之。 九都將則李居仁、洪貞老、陸閑、柳自英、鄭有智、金繼宗、黃衡、邊克坤、嚴貴孫也。 隊將亦皆有武才名士也。 其次則許琮爲中軍，李季全爲左亞將，田霖爲右亞將，各領兵繼入。 又其次則從陣書設五衛，中衛將則王宗信，分部伍而入。 又以成俊爲前援將，以李紘爲中援將，韓忠仁爲後援將，各領軍。 前援將則過鬱地屯兵，中援將則至鬱地上屯兵，後援將則至鬱地下屯兵。 先鋒若攻尼麻車，獲其俘，則傳授援將而入攻都骨，三援將則限大軍回還，按兵不動。” 又啓曰：“軍期逼近，若盡聚八運軍卒習陣，則恐其稽緩，只聚先運時到軍士習陣，軍馬壯健，以四百餘人，作彼敵形勢，爲接戰之狀，士卒驍勇，能上下山坂，馳驅險阻，如履平地。 又道內器械嚴整，旗幟鮮明，新造盾彩盡眩耀，馬駭不敢近。 且士卒奮勇，皆欲爲先鋒也。” 上曰：“然則所慮者，但彼人逃竄耳。” 景禧又啓曰：“元帥以也堂只及穩城居野人英守等五人拘留鏡城，宣慰日，元帥送酒肉

모아서 습진(習陣)시키려면 아마도 늦어질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선 운(運)의 군사들이 이르는 대로 모아서 습진(習陣)시켰는데, 군마(軍馬)가 장건(壯健)하였습니다. 4백여 명으로 적(敵)의 형세(形勢)를 만들어 접전(接戰)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사졸(士卒)들이 날쌔고 용맹하여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험한 곳을 달리기를 마치 평지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道內)의 기계(器械)가 엄정(嚴整)하고 기치(旗幟)가 선명(鮮明)하였으며, 새로 만든 방패가 채색이 화려하게 빛나서 말이 놀라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으며, 또 사졸(士卒)들이 용감하여 모두 선봉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염려되는 것은 다만 피인(彼人)들이 도망하여 숨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권경희가 또 아뢰기를,  
 “원수(元帥)는 야당지(也堂只)와 온성(穩城)에 사는 야인(野人) 영수(英守) 등 5명이 경성(鏡城)에 구류(拘留)하여 두었는데, 선위(宣慰)하는 날 원수(元帥)가 술과 고기를 보내어 대접하니, 야당지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떠나고자 하였으나, 국가(國家)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길을 경우해서 들어갈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하므로, 그 도로(道路)의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앞은 자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처럼 평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여기서 울지(鬱地)까지 3, 4일의 길이고, 울지에서 니마거(尼麻車)까지가 1식(息)이며, 니마거에서 도골(都骨)까지가 3, 4일 길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성경(尹成罔)의 말과 대략 같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야당지는 말하기를, ‘니마거로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도골(都骨)로 들어가면 돌아오는 길이 더욱 가깝다.’고 하였고, 영수(英守)는 말하기를, ‘비록 니마거

饋之，也堂只言：‘我今欲行奉國家之意，第未〔知〕其由何路而入。’問其道路，則指坐席曰：‘平易如此。’又問其遠近，則答云：‘自此距鬱地三、四日程，自鬱地距尼麻車一息，自尼麻車距都骨三、四日程。’” 上曰：“與尹成罔言略同。” 又啓曰：“也堂只則曰：‘不入尼麻車，直入都骨，則歸路尤近。’英守則曰：‘雖經尼麻車所居，都骨歸路遠近不異矣。’臣意謂也堂只卽尼麻車人，故惡其入攻，言之如是。” 又啓曰：“臣曾聞本道軍需不足，今往問之，守令皆言，國家雖再舉兵，軍需有餘矣。”



	<p>가 사는 곳을 거쳐 간다고 하더라도 도골에서 돌아오는 길의 거리는 다르지 않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서는 야당지는 곧 니마거의 사람이므로, 그 들어가 공격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본도(本道)의 군수(軍需)가 부족(不足)하다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수령(守令)들이 모두 말하기를, ‘국가에서 비록 다시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군수(軍需)는 넉넉합니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8 일(신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황사효(黃事孝)·장령(掌令) 양면(楊沔)이 아뢰기를,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綿布)를 내려 준 것은 옳지 못합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御經筵。講訖，司諫黃事孝、掌令楊沔啓：“奉先寺賜米布未便。”不聽。</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8 일(신유) 3번째기사</p>	<p>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황사효(黃事孝) 등이 차자(劄子)를 올려, 봉선사에 쌀과 면포를 내려 준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司諫院司諫黃事孝等上劄子論不可賜米布于奉先寺。不聽。</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19 일(임술) 3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유경(劉璟)과 정언(正言) 권유(權瑠)가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綿布)를 주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제기(祭器)와 서책(書冊)은 관장하는 자가 없어서 유실(遺失)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구임관(舊任官)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고, 사(仕)23930)가 만약 다 차지 아니하였으면 비록 대간(臺諫)이나 수령(守令)이라 하더라도 서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p>	<p>○御經筵。講訖，持平劉璟、正言權瑠啓奉先寺賜米布不可。不聽。知事李克增啓曰：“成均館祭器、書冊，無有掌之者，多致遺失，今後令舊任官專掌。仕若未滿，雖臺諫、守令勿敘何如?”上曰：“可。”</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20 일(계해) 2번째기사</p>	<p>하였다.</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표연말(表沿沫)이 아뢰기를,  “곽인(郭璘)의 딸은 이미 납채(納采)를 했는데, 또다시 금혼(禁婚)하라고 명(命)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록 납채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금혼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알았으니, 다시 금혼하지 않게 하더라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하였으면 모르겠지만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허물을 고칠 수 있으면 이는 허물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p> <p>하고 헌납(獻納) 정탁(鄭鐸)은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혼인하기를 의논하고 납채(納采)하면, 마침내 혼인(婚姻)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고(舅姑)의 상(喪)을 만나게 되면 비록 성혼(成婚)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땅히 최마(衰麻)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납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몰래 장가들면 이이(離異)하게 하는 법이 영갑(令甲)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그 법을 적용하고, 윗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불가(不可)합니다.”</p> <p>하고, 대사헌(大司憲) 이유인(李有仁)은 아뢰기를,  “곽인의 집에서 납채한 사실을 전하(殿下)께서 처음에는 비록 알지 못하셨으나, 지금은 이미 아셨으니, 청컨대 금혼하지 말게 하소서.”</p> <p>하고, 영사(領事) 홍응(洪應)은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문호(門戶)와 재산(財産)을 비교하여 나이 어릴 적에 비록 이미 혼인할 것을 의논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국가에서 금혼하게 하면 마땅히 납채했던 것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곽인의 딸에게 금혼시키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광양군(廣陽君)이 이미 다시 곽인과 혼인을 의논하지 않게 되면 곽인도 반드시</p>	<p>○御經筵。侍講官表沿沫啓曰：“郭璘女子既納采，而又命禁婚，其時雖不知納采而禁婚矣，今既知之，勿復禁婚，有何害焉？若不知則已，知而不改，甚不可。過而能改，是爲無過。”獻納鄭鐸啓曰：“凡人議婚納采，則遂爲婚姻之家，若遭舅姑之喪，則雖未成婚，當服衰麻，且納采而他人潛娶，則離異之法，著在令甲。在下則用此法，而在上則自壞之，至爲不可。”大司憲李有仁啓曰：“郭家之納采，殿下初雖不知，今既知之，請勿禁婚。”領事洪應啓曰：“凡人較門戶、財産，年少時雖已議婚，若國家禁婚，則當還所納之采。今郭女禁婚何妨？”上曰：“廣陽既不復與郭議婚，則郭亦必議婚於他處矣。然則禁婚何不可之有？”有仁、鄭鐸啓奉先寺賜穀布未便，不聽。</p>
---	---	---

	<p>시 다른 곳으로 혼인할 것을 의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혼한다고 해서 무슨 불가(不可)할 것이 있겠는가?”</p> <p>하였다. 이유인과 정탁이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綿布)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0월 20일(계해) 4번째기사</p>	<p>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황사효(黃事孝) 등이 차자(笱子)를 올려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를 주는 것의 불가(不可)함을 논(論)하고, 또 곽인(郭隣)의 딸을 금혼(禁婚)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司諫院司諫黃事孝等上笱子論奉先寺給米布不可，又論郭隣女子禁婚未便。不聽。</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0월 21일(갑자) 2번째기사</p>	<p>북정 도원수(北征都元帥) 허종(許琮)과 부원수(副元帥) 성준(成俊)·이계동(李季全)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 변종인(卞宗仁)이 전문(箋文)을 올려 주연(酒宴)과 의약(衣藥)을 하사(下賜)한 데 대하여 사례(謝禮)하였다.</p>	<p>○北征都元帥許琮、副元帥成俊、李季全，南道節度使卞宗仁上箋謝賜宴衣藥。</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0월 24일(정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릉(敬陵)·창릉(昌陵)에 가서 친제(親祭)하고 소차(小次)23941)에 들어와 전교(傳敎)하기를,  “소차에서 어떻게 감히 의자(倚子)에 앉겠는가? 이제부터는 요만 깔도록 하라.”</p> <p>하였다. 어가(御駕)가 돌아와 대주정(大晝停)에 이르니, 왕세자(王世子)가 어가(御駕)를 맞이하고 물선(物膳)을 바쳤는데, 종재(宗宰)와 여러 장수(將帥)를 대접하게 하였다.</p>	<p>○丁卯/上詣敬陵、昌陵親祭，入小次，傳曰：“於小次，豈敢坐倚子乎？自今只設褥席。”駕還至大晝停，王世子迎駕進物膳，命饋宗宰及諸將。</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0월 25일(무진)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전교(傳敎)를 받들건대 제도(諸道)에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을 파견하는 것이 너무 늦었는데, 곡식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복심(覆審)하려고 하면 근거할 것이 없을 것이니, 언제쯤 파견해야 할 것인지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신(臣) 등이 《대전(大典)》을 고찰하건대, 무릇 전답(田畓)은 매년 9월 15일 이전에 수령(守令)이 연분(年分)의 등제(等第)를 조사하여 정해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사실을 밝혀서 수(數)를 갖추어 계문</p>	<p>○戶曹啓：“今承傳敎：‘諸道災傷敬差官發遣太晚，禾穀收穫後，覆審無據，其發遣早晚，商議以啓。’臣等按《大典》：‘凡田，每歲九月望前，守令審定年分等第，報觀察使，觀察使覈實，具數啓聞，遣朝官覆審。’以此每年九月望後遣之，若太早則待霜降覆審，久留</p>

	<p>(啓聞)하면, 조관(朝官)을 보내어 복심(覆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년 9월 15일 이후에 보내는데, 만약 너무 이르면 상강(霜降)을 기다려서 복심하지만, 오래 머물면 폐단이 있을 것이며, 너무 늦어서 곡식을 거두어들였으면 복심할 근거가 없게 될 것이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관찰사가 연분 등제(年分等第)를 비록 계문(啓聞)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으레 9월 초순에 파견하여 복심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有弊；太晚則禾穀已收，覆審無據，請自今觀察使年分等第，雖未啓聞，例於九月初生發遣覆審。”從之。</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27 일(경오)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傳敎)하여, 정인사(正因寺)에 봉선사(奉先寺)의 예에 의하여 쌀 30섬과 면포(綿布)·정포(正布) 각각 50필을 하사(下賜)하게 하였다.</p>	<p>○傳于戶曹，正因寺依奉先寺例，賜米三十碩綿布、正布各五十匹。</p>
<p>성종 258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0월 28 일(신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예견(李禮堅)이 아뢰기를,</p> <p>“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 윤흥신(尹興莘)이 역관(驛館)을 수리(修理)한 공(功)이 있다고 하여 정찰방(正察訪)으로 승진(陞進)시켜 제수(除授)하라고 명(命)하셨으므로 신(臣) 등이 너무 지나치다고 논박(論駁)하자, 명하여 재상(宰相)에게 의논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특진관(特進官) 조익정(趙益貞)이 대답하기를,</p> <p>“신(臣)이 일찍이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로 있을 적에 윤흥신의 사람됨을 보았는데, 검소하고 정직하여 탐욕(貪慾)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우(館宇)를 수리할 적에 역졸(驛卒)이 폐스럽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또한 칭찬할 만합니다. 나라에서 일찍이 역졸이 조잔(凋殘)하고 쇠모(衰耗)해질 것을 염려하여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를 직로(直路)의 역참(驛站)에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준 노비가 생산(生産)이 번성(繁盛)하여 이미 그 수(數)를 충당하게 되면, 여정(餘丁)으로 더러는 선상(選上)을 세우기도 하고 더러는 공포(貢布)를 바치게 하기도 하므로 이 때문에 한 집에서 양역(兩役)을 하게 되어, 아버</p>	<p>○御經筵。講訖，執義李禮堅啓曰：“銀溪道察訪尹興莘，以修理驛館有功，命陞授正。臣等論其太過，命議宰相，不知其終。”上問左右。特進官趙益貞對曰：“臣嘗爲江原道監司，見興莘，質直不貪人也。其館宇修理時，驛卒不以爲弊，是亦可嘉，國家嘗慮驛卒凋耗，以諸司奴婢分給於直路驛站，其分給奴婢，生産繁盛，已充其數，則餘丁或立選上，或納貢布，以此一家兩役，父爲驛卒，子爲選上，皆訴其冤矣。諸驛雖有修理之功，前此察訪，苟延日月，以待箇滿，無一修理者矣。臣意，雖授此職無妨。”上曰：“論功陞職，欲以礪後人耳。”司諫黃事孝曰：“興</p>

는 역졸(驛卒)이 되고 아들은 선상(選上)이 되니, 모두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제역(諸驛)에 비록 수리한 공이 있었으나, 이보다 앞서서는 찰방(察訪)이 세월만 보내면서 개만(簡滿)23943) 되기만 기다렸지 한 사람도 제대로 수리한 자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비록 그 직위(職位)를 제수한다고 하더라도 무방(無妨)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공(論功)하여 승진(陞進)시키는 후인(後人)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자, 사간(司諫) 황사효(黃事孝)가 말하기를,  
“윤홍신이 6품직(六品職)으로서 3품직(三品職)에 승진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니, 동반직(東班職)으로 체임(遞任)하여 제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홍응(洪應)은 말하기를,  
“윤홍신은 그 이력[踐歷]을 고찰해 보건대 비록 첨정(僉正)이나 부정(副正)을 제수하더라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임(歷任)한 바를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익정이 또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조잔(凋殘)하고 쇠모(衰耗)하므로, 나라에서 이미 백성을 모집하여 이주(移住)시켰습니다. 그러나 온 도(道)의 호수(戶數)가 1만 2천여 호(戶)에 불과한데, 하도(下道)에는 한 고을의 호수가 3만에 이르기조차 하니, 이는 한 고을이 강원도의 한 도보다 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로(直路)의 제역(諸驛)에는 이미 노비(奴婢)를 나누어 주었으므로, 내왕(來往)하는 이를 영송(迎送)할 수 있지만, 소로(小路)의 역관(驛館) 노비는 단지 한두 집만 있으므로, 마필(馬匹)또한 적습니다. 소로의 역관에도 노비를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홍응이 말하기를,

莘，以六品之職陞三品太過，遞授東班職可矣。”領事洪應曰：“興莘，考其踐歷，雖授僉正、副正，亦足矣。”上曰：“其考歷任。”益貞又啓曰：“江原道土田瘠薄，人民凋耗，國家業已募民徙之，然一道戶數不過一萬二千餘戶，下道一邑之戶或至三萬，是一邑倍有江原一道之戶矣。直路諸驛，既分給奴婢，可以迎來送往，唯小路驛館奴婢，只有一、二家，馬匹亦數少，小路驛館，亦分給奴婢何如？”應曰：“諸驛凋殘，不止於此，若一開端，必援例而請之矣。”知事魚世謙曰：“非特驛路無奴婢，諸邑亦然，雖百人訴狀，勢不得聽理，所以然者，若許一邑，則餘皆援例矣。”上曰：“令該司議啓。”事孝又啓曰：“高山里軍功，論賞過重。”應啓曰：“己亥年雖有深入彼地之功，然其斬獲率皆老弱；高山里斬獲，則皆桀驁壯健之人。彼虜亦言於遼東曰：‘幾至百名敗死於朝鮮。’若是則斬獲甚多矣。”上曰：“己亥年軍功，一等或加三資，或加二資，今此則一等皆授三資，故臺諫如此論啓矣。然高山里之舉，比諸己亥年，等爲有功矣。”禮

	<p>“제역(諸驛)의 조잔(凋殘)함이 이에 그치지 않는데, 만약 한 번 단서(端緒)를 열어놓게 되면, 반드시 그 예를 들어 청하게 될 것입니다.”</p> <p>하고, 지사(知事) 어세겸(魚世謙)은 말하기를,</p> <p>“역로(驛路)에만 노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읍(諸邑) 또한 그러하니, 비록 1백 명이 소장(訴狀)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한 고을에 허락해 주면 다른 곳에서도 모두 그것을 예로 들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 황사효(黃事孝)가 또 아뢰기를,</p> <p>“고산리(高山里)의 군공(軍功)은 논상(論賞)이 과중(過重)합니다.”</p> <p>하니, 홍응이 아뢰기를,</p> <p>“기해년(己亥年)에 비록 깊이 적지(敵地)에 들어간 공(功)은 있지만, 참획(斬獲)한 것은 모두 노약자(老弱者)였었는데, 고산리에서 참획한 것은 모두 걸오(桀驁)23944) 하고도 장건(壯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들이 요동(遼東)에서 말하기를, ‘거의 1백 명이나 조선(朝鮮)에서 패(敗)하여 죽었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으면 참획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기해년의 군공(軍功)에 대해서는 1등에게 3자급(資級)을 더해 주기도 하고, 2자급을 더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1등에게 모두 3자급을 더해 주었으므로, 대간(臺諫)들이 그렇게 논계(論啓)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산리의 거사(擧事)는 기해년에 비하여 매우 공이 있는 것이다.”</p> <p>하였다. 이에건이 아뢰기를,</p> <p>“사람을 서용(敍用)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 마음가짐과 행실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적(李績)은 정언(正言)으로 있을 적에 이미 동료(同僚)들과 함께</p>	<p>堅啓曰：“用人當取其心行，李績爲正言時，既共議同僚而獨疏，今又上疏，欲辨患得、患失之狀，而疏語與禁府招辭皆牴牾，爲士者不可如此用心而立朝。”上問左右。應對曰：“臣嘗鞫此事，績初與同僚共議製疏而久不斤正，故獨進。其遞南原判官也，謂有府使，雖不交代上來無妨，此亦窄狹料事之錯也，以此指爲鄙夫。古人於鄙夫釋之曰：‘小則吮癰舐痔。’此皆瑣屑諂媚之態也，如此小事，指爲鄙夫，則朝中無全人矣。”上曰：“觀其招辭，同僚非不知也。久遠之事，豈可追論抵罪?”</p> <p>【史臣曰：“績，上疏飲宣醞而來，同僚相謂曰：‘此家嘗染血於齒，今乃爾也。然只飲宣醞，不愜於所望矣。’績布衣時，上疏得拜宣傳官故云。”】</p>
--	--	--

	<p>의논해 놓고서도 단독(單獨)으로 상소(上疏)하였었고, 이제 또다시 상소하여 환득 환실(患得患失)의 정상(情狀)을 변명하려는 것처럼 하였는데, 상소의 내용이 의금부(義禁府)의 초사(招辭)와 모두 어긋나고 있으니, 선비로서 마음씀이 그러하면서 조정(朝廷)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p> <p>“신(臣)이 일찍이 그 일을 국문(鞫問)하였었는데, 이적(李績)이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상소문(上疏文)을 짓기로 해놓고서 오래도록 근정(斤正)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남원 판관(南原判官)으로 체임(遞任)되어서는 부사(府使)가 있으니, 비록 교대(交代)하지 않고 올라오더라도 무방(無妨)하다고 여겼으니, 그것도 좁은 소견으로 일을 잘못 헤아릴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부(鄙夫)라고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비부에 대해 해석하기를, ‘작은 일로서는 중기를 빼아주고 치질도 훤히 알아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자질구레하게 아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작은 일을 가지고 지적하여 비부라고 한다면 조정(朝廷) 안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초사(招辭)를 보건대, 동료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오래 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추론(追論)하여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적(李績)이 상소(上疏)하고서 선운(宣醜)을 마시고 오자, 동료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 집이 일찍 이[齒]에다가 피를 물들이더니, 이제 과연 그렇구나. 그러나 선운만 마셨으니, 기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적이 포의(布衣) 때에 상소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이 아뢰기를,</p>	<p>○御夕講。 講訖， 左承旨許琛啓曰：“銀溪道察訪尹興莘， 以繕修驛館爲能，</p>

<p>(弘治) 4년 11월 1일 (계유) 4번째기사</p>	<p>“은계도 찰방(銀溪道察訪) 윤흥신(尹興莘)이 역관(驛館)을 수선하는 일을 잘하였다 하여 승서(陞敍)하라고 명하셨으나, 신(臣)은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흥신은 사람됨이 늘 간알(干謁)23945) 을 일삼고, 또 술과 고기를 많이 장만하여 오가는 손님을 후하게 접대했으니, 반드시 폐해가 역리(驛吏)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더구나 역관의 영선(營繕)은 윤흥신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監司)가 간가(間架)23946) 를 헤아려 주고 여러 고을을 시켜 수리할 뿐입니다. 또 윤흥신은 안변(安邊)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시애(李施愛)의 난(亂) 때 신의 형 허종(許琮)이 그 도(道)의 절도사(節度使)가 되어 안변에 가자, 그 고을 백성이 다 형을 죽이려 하였는데, 윤흥신도 거기에 끼었습니다. 형이 윤흥신 등을 불러 조정(朝廷)의 뜻을 개유(開諭)하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이 윤흥신을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이 경차관(敬差官)23947) 이 되어 안변에 가니, 윤흥신이 형의 연고로 보러 왔으므로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경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진하게서는 알고 쓰셔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간알하는 사람이라면, 소인(小人) 중에서도 심한 자이니, 쓸 수 없다. 이제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그 영선에 폐단이 없으며 그 인물이 어진지를 물은 뒤에 처치하여야 하겠다.”</p> <p>하였다.</p>	<p>命陞敍， 臣竊以爲未便。 興莘爲人， 常以干謁爲事， 且多辦酒肉， 厚饋往來賓客， 必弊及驛吏。 況驛館營繕， 非興莘所能措置， 乃監司計授間架， 令諸邑修治耳。 且興莘安邊人也。 昔李施愛之亂， 臣兄琮爲本道節度使至安邊， 則其邑人民皆欲殺兄， 而興莘亦與焉。 兄召興莘等， 開諭朝廷之意得免， 因此兄知興莘， 厥後臣爲敬差官往安邊， 興莘以兄故來謁， 與之語， 輕薄人也。 殿下宜知而用之。” 上曰：“果干謁之人， 則小人之尤者， 不可用也。 今宜下書監司， 問其營繕之無弊， 其人之賢否而後處之。”</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2일 (갑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박숭질(朴崇質)이 아뢰기를, “신(臣)이 사축서 제조(司畜署提調)가 되었는데, 사중(司中)의 관원은 오직 사축(司畜)과 별좌(別坐)뿐이므로, 예조(禮曹)의 객인(客人)에 대한 연향(宴享)과 궐내(闕內)의 공궤(供饋)를 같은 때에 아울러 거행하면, 두 관원이 두 곳을 분주하게 다니느라 사중이 빡니다. 대저 축생(畜牲)은 관원이 감독하여 기르지</p>	<p>○御經筵。 講訖， 特進官朴崇質啓曰：“臣爲司畜署提調。 司中官員， 唯司畜及別坐耳， 禮曹客人宴享及闕內供饋， 一時並舉， 則二員奔走兩處， 司中空矣。 大抵畜牲， 官不監養， 則牧(如[奴])必盜其穀。 如典涓司、 造紙署</p>



	<p>않으면 목노(牧奴)가 반드시 그 곡식을 훔칠 것입니다. 그런데 전연사(典涓司)나 조지서(造紙署) 같은 곳에는 별좌(別坐)가 많이 있으니, 그 긴요하고 험한 곳을 참작하여 이 관사(官司)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내시 교관(內侍敎官)23948) 3원(員) 가운데에서 이제 1원을 줄였는데, 이를 옮겨서 별좌로 제수(除授)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사중이 비어서는 안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該司)를 시켜 상의하여 옮기게 하라.”</p> <p>하자, 장령(掌令) 이거(李据)가 아뢰기를, “박승질이 아뢰는 바 다른 관사의 별좌를 옮겨 차정(差定)하려는 것은 좋을 것 같으나,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아랫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줄인 교관을 임용하기를 바란 말은 잘못된 듯합니다.”</p> <p>하였는데, 박승질이 아뢰기를, “신이 이른바 교관을 차출하려는 것은 그 벼슬을 옮기기를 바란 것이고, 그 관원을 임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p> <p>하니, 이거가 아뢰기를, “내시 교관이 군직 별좌(軍職別坐)를 겸대(兼帶)하면 곧 전함(前銜)인 관원이니, 이른바 그 벼슬을 옮기기를 바란 것이라는 말은 도피하는 말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뜻은 다만 옮겨 임용하여 사중이 비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다.”</p> <p>하였다.</p>	<p>別坐多有之，酌其繁歇處，移此司何如？且內侍敎官三員，今汰一員，以此移授別坐無妨。”上問左右。領事尹壕對曰：“此言甚當，司中不可空虛矣。”上曰：“其令該司商議推移。”掌令李据啓曰：“崇質所啓，以他司別坐移差之猶可也，爵人非在下者所得擅便，欲以見汰敎官任之之語，則殆失之矣。”崇質啓曰：“臣所謂以敎官差之者，欲移其職，非以其員任之也。”据曰：“內侍敎官，兼帶軍職，別坐則前銜官也。所謂欲移其職之語，是遁辭也。”上曰：“所啓之意，只欲推移任之，不使司中空虛爾。”</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3일</p>	<p>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동하여 열무(閱武)하고, 그 다음에 방포(放炮)를 시험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방포를 보건대 잘 쏘는 자는 반드시 능히 하겠지만, 힘이 약한 자는 잘</p>	<p>○乙亥/上幸慕華館閱武，次試放炮。上曰：“予觀放砲，善射者則必能之，若力弱者，恐未能也。今日隨駕武士</p>

(을해) 1번째기사

하지 못할 듯하니, 오늘 수가(隨駕)23949) 한 무사(武士) 가운데에서 잘 쏘고 힘이 있는 자 20인을 가려서 방포를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영돈녕(領敦寧)이상에게 물어 보라.”

하였는데, 모두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에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별시위(別侍衛) 20인을 가려서 방포를 시험하고, 또 방포한 군사 중에서 능히 순(盾)23950) 를 맞힌 자에게는 1시(矢)23951) 에 면포(綿布) 2필(匹)을 주었다.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 이척(李則)이 아뢰기를,  
“신(臣)이 보진대 내금위 등의 방포가 약장(藥匠)23952) 보다 낫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외방(外方)의 군사 중에서 힘이 있는 자를 가려서 당번(當番)하면 경중(京中)에서, 하번(下番)하면 본도(本道)에서 늘 방포를 익히게 한다면 갑작스러운 때에 쓸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를 불러서 말하기를,  
“인군(人君)의 도(道)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사람을 쓰는 도는 더욱이 그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이제 윤흥신(尹興莘)이 역관(驛館)을 잘 수리하였다고 하므로 특별히 장권(獎勸)하여 체차(遞差)할 때에 정3품(正三品)의 벼슬에 올리려 하였다. 그런데 대간(臺諫)이 역임(歷任)이 없으므로 초승(超陞)23953)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중3품(從三品)의 벼슬을 제수(除授)할 것을 의의(擬義)하였다. 그러나 조익정(趙益貞)은 윤흥신이 순직(純直)한 사람이라 하나, 허침(許琛)은 간알(干謁)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간알한다면 순직하다고 할 수 없거니와, 윤흥신이 간알하는 사람이라면 곧 소인(小人)일 것이니, 쓸 수 없다. 수가(隨駕)한 재상(宰相)들에게 물르

中，擇其善射有力者二十人，試放何如？其問于領敦寧以上。” 僉啓曰：“上敎允當。” 於是擇內禁衛、兼司僕、別侍衛二十人試放，且放炮軍能中盾者，一矢給綿布二匹。 軍器寺提調李則啓曰：“臣觀內禁衛等放炮，優於藥匠。 臣意，外方軍士，擇有力者，當番則京中，下番則本道，使之常常習放，庶可用於倉卒矣。” 上曰：“可。” 上召都承旨鄭敬祖曰：“人君之道，莫大於用人，用人之道，尤莫大於辨其賢否。 今以尹興莘爲善修驛館，特加獎勸，遞時欲陞正三品職，臺諫以爲無歷任，不可超陞，擬授從三品。 但趙益貞則謂興莘爲純直人，許琛則曰干謁之人，若干謁則不可謂純直，興莘若干謁之人，則是小人，不可用也。 其問于隨駕諸宰。” 沈澮、尹弼商、洪應、尹壕、李崇元議：“興莘果不可以人人之言，遽爲用舍，其爲人曾與同處者必細知矣。 下問後用之何如？” 韓致亨、韓致禮議：“興莘若實干謁，則不可擢用。” 柳子光議：“一人之譽，有不足信，一人之毀，亦不足信，今興莘，若不以財物賂人，則不可以廚傳之美爲

	<p>라.”</p> <p>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윤호(尹壕)·이승원(李崇元)이 의논하기를,</p> <p>“윤흥신을 과연 사람마다 하는 말에 따라서 갑자기 쓰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됨은 전에 함께 있던 자가 자세히 알 것이니, 하문하신 뒤에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한치형(韓致亨)·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p> <p>“윤흥신이 참으로 간알하였다면 발탁하여 쓸 수 없겠습니다.”</p> <p>하였다. 유자광(柳子光)은 의논하기를,</p> <p>“한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족히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헐뜯는 것도 또한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윤흥신이 남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주전(廚傳)23954) 을 잘한 것을 간알이라 할 수는 없겠으며, 참으로 간알을 잘하였다면 이제 상을 받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그 정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그 재능을 상주어 시험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p> <p>하고, 이극중(李克增)·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p> <p>“윤흥신은 아버이를 봉양하느라 안변(安邊)에 물러가 살고 있으며 오래 벼슬하지 않았으니, 그가 권세 있는 자에게 간알하였는지는 감히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강원도의 잔폐(殘弊)한 역관을 수리한 공로는 헛되이 버릴 수 없겠습니다.”</p> <p>하고, 신준(申浚)·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p> <p>“윤흥신이 간알한 일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관을 수리할 때에 일을 처리한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능(賢能)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3품의 현직(顯職)에 오르게 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p> <p>하였다. 이세좌(李世佐)·한한(韓僴)·한건(韓健)·임수창(林壽昌)은 의논하기를,</p>	<p>干謁。實巧於干謁，則今雖蒙賞，後必露其情狀。臣意姑賞其能以試之何如?”李克增、成健議：“興莘以養親退居安邊，久不仕。其干謁權勢，未敢的知。但江原道殘弊館驛修理之功，不可虛棄。”申浚、李克墩議：“興莘干謁之事，則未能悉知，今雖有驛館修理辦事之跡，不可謂之賢能。臣意陞三品顯秩似過。”李世佐、韓僴、韓健、林壽昌議：“臣素不知興莘之爲人，然素無名望，遽以一人之譽，驟陞三品，恐累用人事體。”金升卿、權健議：“人之毀譽，不可盡信。然益貞但見居官之跡，許琛相知已久，亦悉心行修葺館宇之功，在所當錄，若遽陞副正，似乎太過。”傳曰：“大抵欲用人而如此毀之，非也。豈用輕易論人乎?予欲問傳聞之處於許琛，何如?”沈澮等僉啓曰：“上教允當。”仍問許琛，琛啓曰：“干謁非必謂贈人財貨，求媚過客，亦是干謁。臣之子菑言：‘興莘多畜鷹獵雉，贈遺勢家。’臣姪朴億年亦言：‘興莘多辦酒肉，厚饋過客。’臣之姊夫洪任、朴林宗皆云：‘興莘庸下人。’臣意謂，人君擢用人才，當從物</p>
--	--	--

“신은 본디 윤홍신의 사람됨을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명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칭찬에 따라 3품에 취승(驟陞)시킨다면 아마도 사람을 쓰는 사체(事體)에 누를 끼칠 듯합니다.”

하고, 김승경(金升卿)·권건(權健)은 의논하기를,

“사람들이 험뜯거나 칭찬하는 것을 죄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익정은 벼슬살이의 자취를 보았을 뿐이고, 허침은 서로 안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마음과 행실을 또한 잘 알 것입니다. 관우(館宇)를 수리한 공로는 채택해야 하겠으나, 갑자기 부정(副正)에 올리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저 사람을 쓰려 하는데 이렇게 험뜯는 것은 그르다. 어찌 쉽사리 사람을 논하겠는가? 내가 허침에게 전해 들은 곳을 물으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심희 등이 함께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마땅합니다.”

하니, 곧 허침에게 물었다. 허침이 아뢰기를,

“간알이란 반드시 남에게 재물을 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는 손에게 잘보이기를 바라는 것도 곧 간알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 허평(許砬)이 말하기를, ‘윤홍신이 매를 많이 길러 꿩을 사냥하여 권세 있는 집에 보냈다.’고 하였고, 신의 조카 박억년(朴億年)도 말하기를, ‘윤홍신이 술과 고기를 많이 장만하여 지나는 손에게 후히 먹였다.’ 하였으며, 신의 자부(姊夫) 홍임(洪任)·박임종(朴林宗)이 다 말하기를, ‘윤홍신은 용렬한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임금이 인재를 발탁하여 쓸 때에는 물망에 따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承旨)는 이들에게서 전해 들었거니와, 이들을 추문(推問)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니, 헌부(憲府)를 시켜 추문하여 아뢰라.”

望。” 傳曰：“承旨則傳聞於此輩矣。若推此輩則可知矣。 其令憲府推問以啓。”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4일 (병자) 1번째기사</p>	<p>하였다.        전교하기를,        “곽인(郭璘)의 딸을 양원(良媛)23956) 에 봉(封)하여 임자년23957) 정월에 동궁(東宮)에 들이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곽인의 어머니 모씨(某氏)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풍류를 좋아하여, 여종에게 가곡을 가르쳐서 날마다 관악기를 불고 현악기를 타게 하며, 못 여종을 시켜 자리 위에서 춤추게 하고서, 앉아 노래하여 어울렸다. 이웃에 있는 현감(縣監) 황사형(黃事兄)의 첩은 늙은 음부(淫婦)였는데, 모씨(某氏)는 날마다 그 집에 가서 손을 잡고 실컷 마시며 젓가락을 두들기고 번갈아 노래하고는 서로 가서 자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그리고 한때는 술에 취하여 마을 안의 무뢰한 자를 끌어들여 뜰 아래에 앉혀 비파(琵琶)를 타게 하고는 말하기를, ‘자네의 비파 소리가 가장 미묘하네. 나를 위하여 두어 곡을 타게 하라.’ 하였다. 또 마을 안의 상스러운 아낙네 몇을 데리고 걸어서 장의문(藏義門) 밖으로 나가 산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날이 이미 어두운 줄도 모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성문이 이미 닫혔으므로 문 밑에서 한뼘잠을 잤다. 곽인 역시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경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전취(前娶)인 유수(柳洙)의 딸이 아들 곽임중(郭林宗)을 낳았고, 계실(繼室)인 권치중(權致中)의 딸이 양원(良媛)을 낳았으며, 권치중의 아내 이씨(李氏)는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종의 첩에게서 낳았는데 이씨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여동생인 사자(士子)23958) 권덕영(權德榮)의 아내는 제종과 간통한 죄로 죽었다. 곽인의 처형인 현감(縣監) 길수(吉壽)의 처는 음탕한 행실이 있어서 길수에게 버림받았고 늘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하기 좋아하였는데, 곽인의 집에 들러 술에 취하면 자곤 하여 처소를 가리지 않았다.” 하였다.</p>	<p>○丙子/傳曰：“郭璘女子封良媛，以壬子年正月納于東宮。”        【史臣曰：“璘母某氏早寡，喜風流，教女奴歌曲，日吹竹彈絲，令群婢踏筵舞，坐歌而和之。璘有縣監黃事兄妾，老淫婦也。某氏日造其家，執手酣飲，擊箏迭歌，相就宿無度。嘗醉酒，引里中無賴坐庭下，令彈琵琶曰：‘子絃聲最幼妙，可爲我操數弄’，又與里中庸婦數輩，步出藏義門外，遊山中歡飲，天且雨，不知日已黑，及還城，門已閉，露宿門下。璘亦好飲酒，輕薄無狀，前娶柳洙女，生子林宗，繼室權致中女，生良媛。致中妻李氏，讓寧大君奴妾出也。李氏同母妹，士子權德榮妻，坐奸其奴死。璘妻姊(孫) [縣]監吉壽妻，有淫行，爲壽所棄，常喜道淫穢醜亂之言，過璘家，飲醉輒宿，不擇所。”】</p>
<p>성종 259권, 22년</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면(楊沔)·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조형(趙珩)이</p>	<p>○司憲府掌令楊沔、司諫院正言趙珩</p>

<p>(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7일 (기묘) 3번째기사</p>	<p>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정인사(正因寺)에 쌀과 베를 내리셨다 합니다. 거동하실 때마다 어찌 으레 내리셔야 하겠습니까? 전일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베를 내리셨을 때에 신(臣)들이 논계(論啓)하니, 전교하기를, ‘진전(眞殿)23965) 을 위한 것이지 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이미 내려 주었으니, 뒤에 도로 거둘 수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정인사는 진전이 없으므로 봉선사의 유가 아닌데도 이처럼 내려 주셨으니, 이는 중들을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능(陵)을 참배할 때마다 어찌 으레 놓고먹는 무리에게 내려 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풍저창(豐儲倉)에 물었더니 아직 내려 주지 않았다 하니, 성명(成命)23966) 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來啓曰：“今聞，正因寺賜米布，每當行幸時，豈宜例賜乎？前日奉先寺賜米布時，臣等論啓，傳曰：‘爲眞殿也，非爲寺刹也，且已賜給，不可追還。’今正因寺則無眞殿，非奉先寺之比，而如此賜給，是爲僧徒也。年年拜陵，豈可例賜遊食之徒乎？臣等問諸豐儲倉，則時未賜給，請收成命。”不聽。</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8일 (경진)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에건(李禮堅)이 아뢰기를,  “전에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베를 내리고, 이제 또 정인사(正因寺)에 내리시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재물과 곡식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데, 일하지 않고 놓고먹는 무리에게 특별히 내리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청컨대 도로 거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선사에는 진전(眞殿)을 위하여 내려 주었고 정인사에는 선왕(先王)을 위하여 내려 주었는데, 이것은 전례가 있으며 또 두 대비(大妃)께서도 이미 아시니, 뒤에 도로 거둘 수는 없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 묻자,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이 일이 조정(朝廷)의 의논에 만족되지 못하므로 대간(臺諫)이 말하나, 선왕 때에도 개경사(開慶寺)에 쌀과 베를 내린 고례(古例)가 있습니다.”</p>	<p>○御經筵。講訖，執義李禮堅啓曰：“前賜奉先寺米布，今又賜正因寺，甚未便。”獻納鄭鐸啓曰：“財穀出於民力，而特賜遊手遊食之徒，甚不可，請還收。”上曰：“奉先則爲眞殿賜之，正因則爲先王賜之，此有古例，且兩大妃已知之，不可追還。”仍問左右。領事李克培對曰：“此事，未滿朝議，故臺諫言之，然先王朝亦有開慶寺賜米布之例。”鐸更論啓。上不聽。知事李克增啓曰：“《周易》，於五經尤重，而儒生不喜讀，學官知易者亦少。自今講《周易》者，依表箋例倍給分數，則學易者多矣。”上問左右。克</p>

	<p>하였다. 정탁이 다시 논계(論啓)하였으나, 임금(王)이 들어주지 않았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p> <p>“《주역(周易)》은 오경(五經)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인데, 유생(儒生)이 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주역》을 아는 학관(學官)도 적으니, 이제부터는 《주역》을 강(講)하는 자는 표(表)·전(箋)의 예(例)에 따라 분수[分數]23967)를 갑절로 주면, 《주역》을 배우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p> <p>하니, 임금(王)이 좌우(左右)에 물었다.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p> <p>“이 말이 옳습니다. 세조(世祖) 때에 《주역계몽(周易啓蒙)》을 강하여 약(略)이상은 과시(科試)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또, 김구(金鉤)·김말(金末)이 집현전(集賢殿)의 관원(官員)으로,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는 날이 아니면 성균관(成均館)에 상사(常仕)23968) 하여 유생(儒生)을 가르쳤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 《주역》을 아는 홍문관(弘文館)의 관원(官員)을 시켜 고례(古例)에 따라 유생(儒生)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주역》을 강하는 자는 분수(分數)를 갑절로 주라고 명하였다.</p>	<p>培對曰：“此言是矣。世祖朝講《周易啓蒙》，略以上許赴試。且金鉤、金末，以集賢殿員，非入侍經筵之日，則常仕成均館，教訓儒生。臣意謂，令弘文館員解《周易》者，依古例以教儒生。”從之，且命講易者倍給分數。</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8일 (경진) 4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조형(趙珩)이 와서 아뢰기를,</p> <p>“정인사(正因寺)에 쌀과 베를 내려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司諫院正言趙珩來啓正因寺賜米布未便。不聽。</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8일 (경진) 5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유인(李有仁) 등이 차자(筵子)를 올려, ‘정인사에 쌀과 베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司憲府大司憲李有仁等上筵子論正因寺賜米布不可。不聽。</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9일</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유경(劉璟)·정언(正言) 조형(趙珩)이 아뢰기를,</p> <p>“정인사(正因寺)에 쌀과 베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p>	<p>○御經筵。講訖，持平劉璟、正言趙珩啓正因寺賜米布不可。不聽。</p>

(신사) 2번째기사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愨) 등이 차자(笏子)를 올려 아뢰기를,  “하늘이 재물을 내는 것은 한정된 수량이 있을 뿐이고, 한 자의 베와 한 말의 쌀도 다 백성의 고혈(膏血)에서 나오는데, 어찌 백성의 고혈을 빼앗아서 놓고 먹는 무리에게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쌀과 베를 정인사(正因寺)에 내려서 부처에게 이바지하고 중을 먹여 명복(冥福)을 바라니, 어찌 성명(聖明)의 큰 흠이 아니겠습니까? 또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이 대신(大臣)의 직임이니, 이극배(李克培)는 벼슬이 영경연사(領經筵事)이므로 신(臣)들이 아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마땅히 먼저 간(諫)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고문(顧問)하셨을 때에 망령되게 고례(古例)를 끌어대어 뜻을 맞추고 아첨하는 말을 올렸으므로 대신의 의리가 전혀 없습니다. 청컨대 추국(推鞠)하게 하여 성상께 아첨하고 부처에게 아첨하는 풍습을 끊으소서.”</p> <p>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그대들은 내가 부처에게 이바지하여 복을 바란다고 생각하는가? 또 대신을 허물하는 것이 지나치다.”</p> <p>하였다.</p>	<p>○司諫院大司諫尹愨等上笏子曰：“天之生財，只有此數尺布斗米，皆出民膏血，豈可浚民膏血，以供遊手遊食之徒乎？今賜米布於正因寺，供佛齋僧，以求冥福，豈非聖明之大累乎？且引君當道，大臣之職也。李克培職領經筵，不待臣等之啓，當先諫正，而反於顧問之時，妄引古例，逢迎獻諛，殊無大臣之義，請令推鞠，以絕上佞佛之風。”御書曰：“爾等謂予供佛求福歟？且咎大臣，過矣。”</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10일(임오) 2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이수언(李粹彦)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랑캐[虜]의 살림이 어떠하던가?”</p> <p>하니, 이수언이 아뢰기를,  “평탄하고 넓은 들에 땅이 매우 기름졌고 곡식을 많이 쌓아 두었는데, 갑자기 옮길 수가 없었으므로 우리 군사가 다 불사르고 혹 가져다가 말을 먹이기도 하였습니니다. 저들의 땅에 속평강(速平江)이란 곳이 있는데 강 북쪽의 넓은 들은 끝이 없어서 적이 강을 건너 달아나면 쫓아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적은 다 갑옷을 입었던가?”</p> <p>하였다. 이수언이 아뢰기를,</p>	<p>○受常參。引見李粹彦，上曰：“虜之居計何如？”粹彦啓曰：“平原廣野，土地甚饒，多積穀，不能遽移，我軍皆焚之，或取飼馬。彼地有速平江，江之北，廣野無垠，賊渡江逃去，則不可追捕。”上曰：“賊皆着甲乎？”粹彦曰：“着甲者十未能一二，但以石鱗或塗于胸，或着于胄，其光如水銀甲。”上曰：“冰合時則幾日程乎？”粹彦曰：“行五六日，可到賊巢。”上曰：“自尼</p>



	<p>“갑옷을 입은 자는 열 가운데에서 한둘도 못되었습니다만, 돌비늘을 혹은 가슴에 칠하기도 하고 투구에 입히기도 하여 그 빛이 수은갑(水銀甲)과 같았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이 열 때에는 며칠 길인가?”</p> <p>하였다. 이수언이 아뢰기를,  “대엿새 가면 적의 소굴에 닿을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니마거(尼麻車)에서 도골(都骨)까지는 며칠 길인가?”</p> <p>하였다. 이수언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이 다섯길이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大軍)을 일으켜 입공(入攻)하였으므로, 죄다 섬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참획(斬獲)한 것은 많을 것인데, 이제 오랑캐의 낮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군사가 온전히 돌아오고 죽거나 다친 자가 하나도 없으니, 기쁘다.”</p> <p>하자, 이수언이 아뢰기를,  “아속(阿速)이 잡혔을 때에 적이 죽이려 하였으나 아속이 말하기를, ‘너희 무리의 장사(壯士) 30인이 온성(穩城)에 갇혀 있고 우리 형제가 모두 성 밑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 나를 살려 준다면 우리 형제가 반드시 변장(邊將)에게 고하여 너희 무리를 돌려보내겠으나,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면 형제가 반드시 변장에게 고하여 죄다 죽일 것이다.’ 하였더니, 이에 적들이 머뭇거리면서 죽이지 않고 다만 결박하여 갔는데, 아속이 틈을 타서 도망하여 돌아왔다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麻車距都骨幾日程?” 粹彥曰: “人云五日程。” 上曰: “舉大軍入攻, 雖不能盡殲, 所獲必多, 今不見虜面, 此則可恨, 然全師而還, 一無死傷, 可喜也已。” 粹彥曰: “阿速見擄, 賊欲殺之, 阿速謂曰: ‘汝之徒壯士三十人, 囚於穩城, 而我之弟兄, 俱在城底, 汝今生我, 則我弟兄必告邊將, 還汝之徒, 汝若殺我, 則弟兄必告邊將, 盡殺之。’ 於是, 賊等猶豫不殺, 但縛致之, 阿速乘隙逃還。” 上曰: “二百人邀截相戰之時, 可以多獲而不能, 何歟?” 粹彥曰: “平原廣野, 便於用武之地, 則賊不敢來, 若阨塞之地, 則賊據險逆戰, 因此未能多獲矣。” 右承旨權景禧啓曰: “賊皆竄伏, 雖不能盡獲, 然大揚國威, 全師而還, 賊不敢拒, 彼豈不畏威乎? 但防禦不可稍弛。”</p>
--	--	--

	<p>“2백 인이 맞아 서로 싸울 때에 많이 참획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하였다. 이수언이 아뢰기를,</p> <p>“평탄하고 넓은 들의 군사를 쓰기 편리한 땅이면 적이 감히 오지 못하였으며, 만약 좁고 막힌 땅이면 적이 험한 곳에 의지하여 맞아 싸웠으므로, 이 때문에 많이 참획하지 못하였습니다.”</p> <p>하고,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는 아뢰기를,</p> <p>“적이 다 도망하여 숨었으므로, 비록 죄다 참획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라의 위세를 크게 드날렸으며, 군사가 온전히 돌아왔고 적이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어는 조금도 늦출 수 없겠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15 일(정해) 2번째기사</p>	<p>임금이 숭문당(崇文堂)의 문(門)에 나아갔다. 종친(宗親) 1품(品), 영돈녕 이 상, 의금부(義禁府) 당상(堂上) 과 도총부(都摠府)·대간(臺諫) 각각 1원(員)과 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이 입시(入侍)하였다. 박철산(朴鐵山)의 상서(上書)를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p> <p>“성대(聖代)의 북정(北征)한 제장(諸將)은 다 충신이므로 소신(小臣)의 마음으로 군사를 돌이켜서 모반(謀反)하리라고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사는 양녀(良女) 말비(末非)가 양주(楊州)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그 곳에 사는 사람의 말이 「허종(許琮)이 근간에 군사를 돌이켜 모반할 것이므로 우리 들은 곡식을 묻고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작지 않은 말을 듣고도 아뢰지 않으면 아마도 신하의 의리가 없을 것이므로, 아침에 아뢰고 저녁에 죽더라도 차마 잠자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의 근원이 나온 것을 청컨대 차례차례 추국(推鞠)하소서. 이제 국가의 정병(精兵)의 반 이상이 양계(兩界)23981) 에 들어갔으므로 남은 군사가 적어 시위(侍衛)가 허술하니</p>	<p>○上御崇文堂門，宗親一品領敦寧以上、義禁府堂上、都摠府、臺諫各一員、承旨、注書、史官入侍，下朴鐵山上書。其書曰：“聖代北征，諸將皆忠臣，小臣之心，不疑回兵謀反，然隣居良女末非，還自楊州言曰：‘其處居人云：「許琮近間回兵謀反，我等欲埋穀登山」’，如此不小之言，聽而不以聞，則恐無臣子之義，朝啓夕死，不忍默默，言根出處，請次次推鞠。今國家精兵，過半入兩界，遺軍數少，侍衛虛疎，迷臣之心，痛憫無際。京畿、京中居公私賤口五十歲以下十五歲以上，</p>

미신(迷臣)의 마음이 매우 통민(痛憫)하기 그지없습니다. 경기(京畿)와 경중(京中)에 사는 50세 이하 15세 이상의 공천(公賤)·사천(私賤) 중에서 활을 잘 쏘고 포(炮)를 잘 쏘는 사람을 많이 시험하여 뽑아서 서북(西北)의 정벌하는 일이 끝나는 기간 동안 굳게 시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曹偉)에게 명하여 박철산을 국문(鞫問)하게 하니, 박철산이 공초(供招)하기를, “이웃에 사는 양녀(良女) 말비에게 언니의 딸이 있는데 충의위(忠義衛) 이권생(李卷生)이 장가들어 첩으로 삼으려고 신에게 중매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이렛날 여드렛날 쫓에 말비가 양주(楊州) 송산(松山)의 농가(農家)로 돌아가려 할 때에 신이 말비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내 말을 타고 가서 네 언니에게 이권생이 첩으로 삼으려는 뜻을 말하라.’ 하니, 말비가 응낙하고 드디어 신의 말을 타고 갔다가, 이달 13일에 돌아왔습니다. 신이 맞이하여 위로하려고 아내를 시켜 술을 가지고 먼저 가게 하고 신도 뒤따라 갔는데, 같은 마을 사람 애검산(艾檢山) 부부와 진치(陳治)의 처와 돈일(頓逸)의 처 등도 술을 가지고 모였으므로, 같이 앉아 마셨습니다. 신의 외방(外方)의 일을 물으니, 말비가 말하기를, ‘경중은 안정(安靜)되어 있으나 외방은 소요하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무엇 때문이냐?’고 하니, 말비가 대답하기를, ‘허종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으로 갔는데 근일 조정(朝廷)에서 허혼(許混)을 전형(典型)하였으므로, 허종이 분노하여 군사를 돌이켜 곧 나올 것이니, 땅을 파서 곡식을 묻고 산으로 올라가 피해야 하겠다 하며, 송산에 사는 백성이 자못 떠들썩하다.’ 하였는데, 신과 같이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신이 곧 아뢰려 하였으나 큰 재상(宰相)의 일을 경솔히 말할 수 없으므로 다시 헤아려 15일에 말비와 같이 사는 종[婢] 자근덕(者斤德)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저께 말비가 말한 말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송산에 사는 말비의 숙부(叔父) 양 충찬위(梁忠贊衛)에게서 듣고 와서 말하였다.’

有能射侯放火人，多數試取，西北征事畢間，金城侍衛何如?” 命同副承旨曹偉鞫問鐵山，鐵山供云：“隣居良女末非有姊女，忠義衛李卷生欲娶爲妾，請臣媒之，去九月初七八日間，末非歸向楊州松山農舍，臣言於末非曰：‘願騎吾馬而行，說與卷生作妾之意於汝姊’，末非應之，遂騎臣馬而去，本月十三日還來，臣欲迎慰，使妻持酒先行，臣隨歸。同里人艾檢山夫妻、陳治妻與頓逸妻等，亦持酒而會，同坐飲之。臣問外方之事，末非曰：‘京中則安靜，外方甚騷擾。’臣問曰：‘何也?’末非答曰：‘許琮領軍北行，而近日朝廷典刑許混，故琮忿怒回軍，近當出來，宜掘地藏穀登山而避。松山居民，頗喧騰矣。’臣及同坐諸人皆聽之。臣卽欲啓達，以大相之事，不可輕發，更商量，十五日招末非同居婢者斤德語之曰：‘昨昨日末非所說之言，聽於何人?’答曰：「松山居末非叔父梁忠贊衛聞而來說矣。」十七日，臣因事往長湍，二十四日還來，末非及同生兄等到臣家，臣問末非曰：‘前日歸松山所聞之言，聽於何人?’末非曰：‘松山人，誰不言

하였습니다. 17일에 신이 일 때문에 장단(長湍)에 갔다가 24일에 돌아왔는데, 말비와 친형 등이 신의 집에 왔으므로, 신이 말비에게 묻기를, ‘전일 송산에 가서 들은 말은 어느 사람에게 들은 것이냐?’ 하니, 말비가 말하기를, ‘송산 사람이면 누구들 말하지 않겠느냐?’ 하기에, 신이 다시 말을 낸 사람의 성명을 물으니, 말비의 형이 말하기를, ‘다시 성명을 물어서 어떻게 하려느냐?’ 하며, 끝내 말하지 않았으므로, 25일 아침에 신이 손수 말비의 말을 써서 승정원(承政院)에 바쳤습니다.”

하였고, 말비는 공초하기를,

“신첩(臣妾)이 지난 9월 초이렛날에 이웃집 박철산의 말을 빌어 타고 송산 양역산(梁億山)의 처가에 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양역산의 처가 말하기를, ‘경중은 평안하나 외방은 소요하여 편히 살 수가 없다.’ 하기에, 신첩이 묻기를, ‘어떠하더냐?’ 하니, 양역산의 처가 대답하기를, ‘북정하는 군사가 들어갈 때에 길에서 내말을 빼앗아 가는 것을 겨우 뒤쫓아가서 찾아왔는데, 연로(沿路)에 이러한 자가 많았으므로 돌아올 때에도 반드시 그러할 것이니, 곡식과 벗단을 장차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도원수(都元帥)가 북방에 들어갔으나 아직 접전(接戰)하지 않고 주둔하여 있거니와, 집에 있는 미곡(米穀)은 반드시 땅을 파서 묻어 두어야 빼앗기는 것을 면할 것이라 하여, 민간에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첩이 이 말을 듣고 이달 12일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날 저녁에 박철산의 아내가 병술을 가지고 와서 맞이하며 위로할 때에 박철산이 조금 있다가 찾아와서 외방의 일을 묻기에, 신첩이 들은 말로 대답하였으며, 그 때의 증청인(證聽人)은 이웃에 사는 고음산(古音山)의 어미와 이름을 모르는 여자 한 사람뿐입니다. 박철산은 그달 17일에 장단에 갔다가 24일에 돌아왔는데, 이날 초혼(初昏)에 신첩이 박철산의 집에 가서 그 아내와 같이 앉아 술을 먹으며 이야기하였는데, 박철산이 묻기를, ‘전일 송산에 내려갔을 때에 들은 말은 어느 사람에게서 들었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미열(迷劣)한 여

之?’ 臣更問發說人姓名, 末非兄曰: ‘更問姓名, 何爲乎?’ 遂不開說。二十五日朝, 臣手書末非之言, 進呈于承政院。” 末非供云: “臣女, 去九月初七日, 借騎隣家朴鐵山馬, 往松山梁億山妻家談話, 億山妻曰: ‘京中則平安, 外方則騷擾, 不得聊生。’ 臣女問曰: ‘何如?’ 億山妻答曰: ‘北征軍士入去時, 路上奪我馬而去, 僅得追尋取來, 沿路如此者多, 回還時亦必如之, 穀食藁草, 將不得保有之矣。 都元帥入北方, 時未接戰而留屯, 在家米穀, 必掘地埋置, 庶免攘奪, 民間喧說。’ 女聞此言, 本月十二日還京, 是日夕, 朴鐵山妻持瓶酒來迎慰, 鐵山尋到, 問外方事, 女以所聞之言答之, 其時證聽人, 則隣居古音山母名不知女一人而已。 鐵山同月十七日往長湍, 二十四日還來, 是日初昏, 女往鐵山家, 鐵山與其妻同坐, 饋酒談話, 鐵山問曰: ‘前日松山下去時所聞之言, 聽於何人?’ 我答曰: ‘迷劣女人處聞之, 他無證聽人矣。’ 上問左右。 尹弼商、洪應、李克培啓曰: “末非招辭, 必巧飾也。 其曰: ‘都元帥時未接戰, 若回軍時, 則掘

	<p>인에게서 들었다.’ 하였으며, 그 밖에 증청인은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묻자,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p> <p>“말비가 공초한 말은 반드시 공교하게 꾸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도원수가 아직 접전하지 않았는데, 만약 군사를 돌이켜 올 때에는 땅을 파서 곡식을 묻어야 빼앗기는 것을 면할 것이다.’ 하였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말한 것이 있는데도 그 정상을 모조리 털어놓지 않으니, 다시 국문하면 정상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터무니 없는 말이라면 이와 같은 큰일을 박철산이 어찌 하여 늘려서 말하겠습니까?”</p> <p>하고, 이철건(李鐵堅)은 아뢰기를,</p> <p>“12일 술을 마실 때에 증청(證聽)한 사람도 곧바로 아뢰지 않았으니,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일은 정상으로 보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북정하는 군사가 들어갈 때에 거느리는 장수가 능히 검찰(檢察)하지 않아서 민간에서 마음대로 표략(剽掠)하게 하였으므로 민간에서는 돌아올 때에도 반드시 이러하리라고 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듣고 전하였을 것이다. 최전(崔湍)이 능히 거느리지 못한 죄는 바야흐로 가두어 두고 추국할 것이다.”</p> <p>하였다. 사간(司諫) 안팽명(安彭命)이 아뢰기를,</p> <p>“대저 옥사(獄辭)는 첫 공초를 상세히 받은 후라야 말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니, 박철산에게는 반드시 다시 상세히 공초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말비가 공초하기를, ‘대군(大軍)이 돌아올 때에는 땅을 파서 곡식을 묻어야 빼앗기는 걱정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인데, 이 여자가 입으로는 말하고 싶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두려워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p>	<p>土埋穀，庶免攘奪。’ 其間必有所言而不盡輸其情，更鞫則可以得情矣。 若無根之言，則如此大事，鐵山何以敷衍言之乎?” 李鐵堅啓曰：“十二日飲酒時證聽之人，亦不直告，是亦可疑。” 上曰：“此事，以情狀觀之則然矣，北征軍士入去時，率領將不能檢察，致令恣行，剽掠民間，故民間必以謂，回還之時，亦必如此，迷惑之人，誤聽而傳之也。 崔湍，以不能領率之罪，時方囚禁推鞫矣。” 司諫安彭命啓曰：“大抵獄辭，詳悉取初招，然後必不能變辭，鐵山須更詳悉取招。 末非供云：‘大軍回還時，掘土埋穀，可免攘奪之患，’ 其間必有情矣。 此女口欲言而不言此，必畏必懼而不敢發言也。” 掌令李瑠啓曰：“此女只言回軍時掘土埋穀，而不言其所以然，辭甚無謂，請更鞫其情。” 諸宰相僉啓曰：“先鞫證聽人，然後更鞫此女爲便。” 上曰：“可卽遣義禁府郎廳， 拿梁億山妻及其家人來。” 私奴艾檢山供云：“去九月十二日，隣居良女末非往松山還來，臣以迎慰，率妻往末非家飲酒，隣居朴鐵山夫妻、陳治妻、私奴頓逸妻等，各持瓶酒</p>
--	--	---

<p>하고, 장령(掌令) 이거(李据)는 아뢰기를,  “이 여자가 군사를 돌이켜 올 때에 땅을 파서 곡식을 묻는다는 것만을 말하고 그 까닭을 말하지 않으니, 말이 매우 뜻이 없습니다. 청컨대, 그 정상을 다시 국문하소서.”</p> <p>하고, 재상들은 함께 아뢰기를,  “증청인을 먼저 국문하고 나서 이 여자를 다시 국문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 “좋다.”</p> <p>하고, 곧 의금부의 낭청(郎廳)을 보내어 양덕산의 아내와 그 집 사람을 잡아 왔다. 사노(私奴) 애검산(艾檢山)이 공초하기를,  “지난 9월 12일에 이웃에 사는 양녀 말비가 송산에 갔다가 돌아왔으므로, 신이 맞이하여 위로하려고 처를 데리고 말비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실 때에, 이웃에 사는 박철산 부부와 진치(陳治)의 처와 사노 돈일(頓逸)의 처 등이 각각 병술을 가지고 또한 왔는데, 박철산이 말비에게 외방의 기사(奇事)를 물으니, 말비가 대답하기를, ‘외방은 소요스럽고 이상한 말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철산이 묻기를, ‘어떠하더냐?’ 하니, 말비가 말하기를, ‘북정하는 군사가 들어갈 때에 연로에서 많이 빼앗았으니, 돌아올 때에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인데, 허영공(許令公)의 군사가 철령(鐵嶺)을 넘지 않고 주둔하였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다. 얼마되지도 않는 농사 지은 것을 반드시 다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니, 땅을 파서 묻어야 하겠다 하여, 민간에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말비의 말인데 같이 앉아 있던 여러 사람과 말비의 친형과 고공(雇工)인 차근덕(者斤德) 등이 다 들었습니다.”</p> <p>하고, 진치의 처는 공초하기를,  “그날 술을 마실 때에 박철산이 외방의 일을 물으니, 말비가 대답하기를, ‘대군이 처음 들어갈 때에 민간에서 양탈(攘奪)을 하였으니, 돌아올 때에도 이러</p>	<p>亦來。 鐵山問外方奇事於末非， 末非答曰：‘外方則騷擾， 異言喧騰。’ 鐵山曰：‘何如?’ 末非曰：‘北征軍士入去時， 沿路多攘奪還， 來時亦必如此， 許令公軍不踰鐵嶺留屯回來之奇有之， 數少農作， 必不得喫破， 當掘土埋之， 民間喧騰矣。’ 此末非之言， 同坐各人及末非同生兄女及雇工者斤德等， 皆聽之。”</p> <p>陳治妻供云：“其日飲酒時， 朴鐵山問外方之事， 末非答云：「大軍初入時， 攘奪民間， 回還時亦必如此’， 臣女只聞此言， 他無所聞。” 上曰：“既聞此言， 則其他言說， 豈不聞之乎?” 陳治妻供云：“年七十二歲， 耳聾不能詳聽人言矣。” 頓逸妻私婢內隱非供云：“不記月， 去秋十二日間， 從母以迎慰末非， 持酒一瓶往其家， 同里艾檢山夫妻、 朴鐵山夫妻等亦持酒而來， 鐵山問外方之事於末非， 末非曰：‘京中安靜， 外方騷擾。’ 鐵山更問何以騷擾， 末非曰：‘北征軍士， 多般攘奪， 領軍許元帥， 不入去而回軍奇別有之， 若然則數小農作， 不得喫破， 掘地埋置逃散事， 民間喧騰’云。” 命檢山、 末非面質， 而末非猶不顯言， 令檢山誦其所聞之言</p>
---	---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첩은 이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 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 말을 들었다면 그 밖의 말을 어찌 듣지 않았겠느냐?”  
 하자, 진치의 아내가 공초하기를,  
 “나이가 72세이므로 귀가 멀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였다. 돈일의 처 사비(私婢) 내은비(內隱非)가 공초하기를,  
 “달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지난 가을 12일쯤에 어미를 따라 말비를 맞이하여 위로하고자 술 한 병을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같은 마을에 사는 애검산 부부와 박철산 부부 등도 술을 가지고 왔는데, 박철산이 말비에게 외방의 일을 물으니, 말비가 말하기를, ‘경중은 안정되어 있으나 외방은 소요스럽다.’ 하였고, 박철산이 어찌하여 소요스러우냐고 다시 물으니, 말비가 말하기를, ‘북정하는 군사가 여러 가지로 양탈(攘奪)하였으며 군사를 거느린 허원수(許元帥)가 들어가지 않고 군사를 돌이킨다는 소식이 있으므로, 만약 그렇다면 얼마 안되는 적은 농작물이나 다 먹을 수 없으니 땅을 파서 묻고 달아나야 한다고 민간에서 떠들썩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애검산과 말비를 면질(面質)시켰으나 말비가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므로, 애검산을 시켜 그 들은 말을 외어서 질문하게 하자, 말비가 다시 공초하기를,  
 “다른 말은 전에 공초한 데에다 더하거나 줄일 것이 없습니다만, 애검산의 공초에, ‘허영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주둔하였다가 바빠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한 말은 양역산의 아내가 말하였는데, 신첩이 과연 들었습니다.”  
 하였다.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박철산은 죽은 과주 목사(坡州牧使) 이윤(李掄)의 종인데, 글은 조금 알지만

以質之，末非更招云：“他餘辭則前招無加減，但艾檢山招內，許令公領軍入歸留屯，急速還來奇別有之之言，億山妻說導而女果聽之。” 金升卿啓曰：“鐵山故坡州牧使李掄奴也，稍解文字，性本奸譎，謀叛之言，女人豈知之乎？必鐵山敷衍之也。” 上曰：“更問鐵山。” 鐵山招辭與初無異。鐵山既出，上問左右曰：“何如？” 弼商、洪應啓曰：“問億山妻，然後可卞，許混事，非女人所能言，必鐵山詐飾之辭也。” 克培啓曰：“迷惑之心，必以謂許混與許琮同姓，故言之耳。”

	<p>성질이 본디 간사합니다. 모반(謀叛)이라는 말을 여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반드시 박철산이 늘려 말하였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철산에게 다시 물으라.”</p> <p>하였으나, 박철산이 공초한 말은 처음과 다른 것이 없었다. 박철산이 나가고 나서, 임금이 좌우에 말하기를,  “어떠한가?”</p> <p>하자, 윤필상과 홍응이 아뢰기를,  “양억산(梁億山)의 처에게 물은 뒤라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허혼(許混)의 일은 여인이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박철산이 속여 꾸민 말일 것입니다.”</p> <p>하고, 이극배는 아뢰기를,  “미혹한 마음에 반드시 허혼과 허종이 동성(同姓)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말하였을 것입니다.”</p> <p>하였다.</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16  일(무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하였는데, ‘신하가 임금에게 아첨하고 뜻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한 데에 이르러, 사간(司諫) 안팽명(安彭命)이 아뢰기를,  “전일 정인사(正因寺)에 쌀과 베를 내린 것이 온편하지 못하다는 것을 헌부(憲府)에서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간원(諫院)이 경연에서 또 아뢰었으므로 성상께서 고문(顧問)하셨을 때에, 이극배(李克培)는 간(諫)하여 그만 두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선왕(先王)의 전례를 끌어대어 아첨하고 뜻을 맞추었으니, 대신(大臣)의 바로잡는 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p> <p>하고, 대사헌(大司憲) 이유인(李有仁)은 아뢰기를,</p>	<p>○御經筵。講《性理大全》，至「臣之於君，不可阿諛逢迎。」司諫安彭命啓曰：“前日正因寺賜米布未便事，憲府屢啓，未蒙俞允，而諫院於經筵又啓，上顧問時，李克培非惟不能諫止，又引先王故例，阿諛逢迎，其大臣匡救之道安在？”大司憲李有仁啓曰：“克培於顧問時，不能正救，而援例以啓，大臣之道，豈可若是。”彭命曰：“近者，賜米布于成均館，喜溢橋門，孰不知殿</p>



“이극배는 고문하실 때에 바로잡지 못하고 전례를 끌어대어 아뢰었으니, 대신의 도리가 어찌 이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팍명이 아뢰기를,

“근자에 성균관(成均館)에 쌀과 벼를 내리시자 기쁨이 교문(橋門)23983)에 넘치니, 누구인들 전하께서 유(儒)를 숭상하고 도(道)를 존중하시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신(臣)들은 전하께서 이단(異端)을 숭상하지 않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사사(寺社)에 쌀과 벼를 내린 것을 후세 사람이 어찌 선왕을 위한 일인 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신은 전하께서 선왕을 위하여 내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으로 문득 대신을 가리켜 아첨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신의 도리는 무릇 일에 있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마땅한데, 만약 혹 대간(臺諫)의 논박을 두려워하여 말해야 마땅한데도 말하지 않고, 혹 공교하게 꾸며서 말한다면 어찌 대상(大相)의 도리이겠는가? 미곡(米穀)을 내린 것은 오로지 선왕을 위한 것인데도 대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부처를 숭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처를 숭상한다면 경성(京城)안의 사사가 하나뿐이 아닌데 어찌 유독 두 절에만 내리겠는가? 대상의 한마디 잘못된 말을 가리켜 아첨이라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안팍명이 또 아뢰기를,

“전에 신이 축성 종사관(築城從事官)으로 평안도에 갔으므로 그 도(道)의 폐단을 잘 아는데, 강변(江邊)에서 방수(防戍)하는 군졸의 말이 살찌고 장건하지 않으니, 급할 때에는 어찌하겠습니까? 또 양계(兩界)에서 방수하는 군졸 중에 제 녹봉(祿俸)을 바치고 말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자가 빈번하게 있으니, 바라는 것을 들어주소서.”

下崇儒重道之意。 臣等非不知殿下不崇異端，然賜米布寺社，後之人，豈知爲先王事乎?” 上問左右。 領事洪應對曰：“臣意謂，殿下爲先王賜之也。”

上曰：“不可以此遽指大臣爲阿諛也。 大臣之道， 凡事出於心， 則宜無所不言， 若或畏臺諫論駁， 當言而不言， 或巧飾言之， 豈大相之道哉? 米穀之賜， 專爲先王， 而臺諫言之如此者， 必謂我崇佛也， 我若崇佛， 則京城之內寺社非一， 豈獨賜兩寺乎? 以大相一言之失， 指爲阿諛， 甚不可。” 彭命又啓曰：“前者， 臣以築城從事官往平安， 詳知其道之弊， 江邊防戍軍卒之馬， 不肥壯， 其如緩急何? 且兩界防戍之軍， 欲納其祿而望賜馬者， 比比有之。 請從所願。” 上問左右。 應對曰：“此言然矣， 然軍士一身衣服之需， 專仰祿俸， 不可如此。 臣意謂， 諸島之馬， 分賜兩界戍軍何如?” 右承旨權景禧啓曰：“臣往見永安道， 馬種繁多， 人或有作場牧馬者， 平安道則不然， 請先給平安道軍卒。” 上曰：“可。”

	<p>하니, 임금의 좌우에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이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군사는 제 한 몸의 의복에 드는 것을 오로지 녹봉에만 의지하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섬의 말을 양계에서 방수하는 군사에게 나누어 내려 주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는 아뢰기를,  “신이 영안도에 가 보니, 말의 종류가 많아서 사람들 중에는 혹 목장을 만들어서 말을 먹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평안도는 그렇지 않으니, 평안도의 군졸에게 먼저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1월 16일(무자) 3번째기사</p>	<p>임금이 북정 부원수(北征副元帥) 이계동(李季全)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경(卿)은 절역(絶域)을 왕래 하였으니, &lt;산을&gt; 넘고 &lt;물을&gt; 건너 편력한 고난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수만의 무리를 몰고 헤아릴 수 없는 땅에 들어갔는데, 내가 성패(成敗)를 몰라 자나 깨나 마음에 잊은 적이 없더니, 마침 적이 다 달아나 숨어버려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군사를 완전히 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臣)이 험난하고 먼길에 군사와 말이 지칠세라 매양 염려하였으나, 본도(本道)에 이르러서는 군사와 말이 장건(壯健)하여 사람마다 선봉(先鋒)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알타리(斡朶里)의 마소를 빼앗아 간 울적함(兀狄哈)이 화해하려고 알타리의 집에 왔으므로, 신들이 사기(事機)를 누설할까 염려하여 먼저 12인을 피어서 경성(鏡城)에 가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가두었습니다. 신이 먼저 강을 건너고 제장(諸將)이 이어서 이르러 20리 쯤 되는 곳에서 머물러 자고, 김장손(金長孫)을 시켜 우리 군사 50</p>	<p>○上引見北征副元帥李季全曰：“卿往來絶域跋涉之苦，何可勝言，驅數萬之衆，入不測之地，予未知成敗，寤寐之間，(未)[未]嘗忘于懷，適賊皆逃竄，縱未大捷，完師而還，予甚喜焉。”季全啓曰：“臣每慮間關遠路，士馬困疲，及至本道，則士馬壯健，人人皆欲爲先鋒。前者兀狄哈搶擄斡朶里牛馬，欲和解來至斡朶里家，臣等恐洩事機，先誘十二人囚鏡城，其餘人分囚諸邑。臣先渡江，諸將繼至，二十里許止宿，使金長孫率我軍五十，斡朶里六十人，先大軍體探而入。許琮戒長孫曰：“幸路遇兀狄哈，而彼寡可以掩襲則襲之，</p>

인과 알타리 60인을 거느리고 대군(大軍)에 앞서서 체탐(體探)하러 들어가게 하였는데, 허종(許琮)이 김장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어찌다가 길에서 올 적함을 만나거든 저들이 적어서 엄습(掩襲)할 만하거든 엄습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많아서 엄습할 수 없거든 삼가 피하여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나, 김장손 등이 적 8인을 만나서 죄다 잡지 못하여 적이 달아나 부락에 알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김장손의 잘못이었습니다. 신들이 처음에는 밤에 달려가 돌격하려 하였으나, 제장이 다 말하기를, ‘적이 복병하여 요격(邀擊)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방도이니, 여기에 하영(下營)하고 내일 먼동 틀 때에 달려 들어가 분격(奮擊)하는 것만 못하다.’ 하므로, 신들이 그 계책을 옳게 여기고 적의 소굴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23일에 적의 소굴로 쳐들어갔는데 적이 이미 달아나 숨었으므로, 허종이 정유지(鄭有智)·엄귀손(嚴貴孫)·허희(許熙)를 나누어 보내어 집을 불살라 없앴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집이나 불태웠는가?”

하니, 이계동이 말하기를,  
“신(臣)은 불꽃이 충천(衝天)해 치솟았기 때문에 멀리서 세어 보았는데 4백여 호(戶) 쯤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는 집이 어떠한가?”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대들보 하나로 된 집이고 그 만들새는 중국인이 사는 집과 서로 닮았는데, 이것은 올적함이 예전에 개원위(開原衛) 사람을 잡아다가 남녀가 혼인하여 여러 세대를 살아 왔기 때문에 그 사는 집의 만들새가 이러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살림살이가 어떠한가?”

毋使逃逸，若彼衆不可掩襲則謹避之，毋令知覺。長孫等遇賊八人，不能盡獲，而俾賊逃告部落。此長孫之過也。臣等初欲犯夜馳突，諸將皆曰：‘賊若伏兵邀擊，則此危道也。莫如下營於此。明日昧爽，馳入奮擊。’臣等然其計，距賊巢廿里許止宿，廿三日馳至賊巢，則賊已奔竄。許琮分遣鄭有智、嚴貴孫、許熙焚蕩室廬。” 上曰：“焚燒幾室乎？”季全曰：“臣因火焰衝起，望見數之，則四百餘戶也。” 上曰：“居室何如？”季全曰：“一梁之室，其制與唐人居室相似，此則兀狄哈，昔時搶擄開原衛之人，男婚女嫁，累代而居，故其居室之制如此。” 上曰：“其計活何如？”季全曰：“臣曾見斡朶里、兀良哈，居室不豐，室廬陋陋。兀狄哈則室大淨潔，又作大櫃盛米，家家有雙砧，田地沃饒，犬豕雞鴨亦多畜矣。” 上曰：“有瓦屋乎？”季全曰：“皆茅屋也。賊所積之穀，軍士取以飼馬，斡朶里等，素知賊藏物處，掘地搜得，女服與匹段分之。其日下營賊巢而宿，其處無木，但取門板與柳木設柵止宿。許琮欲仍留數日，以觀賊

하자, 이제동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보니, 알타리(斡朶里)와 올랑합(兀良哈)은 사는 집에 풍족하지 못하여 집이 좁고 더러웠는데, 올적합은 집이 크고 깨끗하며 또 큰 케를 만들어 쌀을 담고 집집이 쌍다듬잇돌[雙砧]이 있으며 밭이 기름지고 개·돼지·닭·오리도 많이 길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와집이 있던가?”  
 하자, 이제동이 아뢰기를,  
 “다 초가였습니다. 적이 쌓아 둔 곡식을 군사가 가져다가 말에게 먹였고, 알타리들은 본디부터 적이 물건을 간수하여 두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파고 여자의 옷과 비단을 찾아내어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적의 소굴에 하영(下營)하여 잤는데, 그 곳에는 나무가 없으므로 문 널빤지와 버드나무를 가져다가 울짙을 설치하고 머물러 잤고 허종은 며칠 동안 그대로 머물러서 적의 형세를 보려 하였습니다. 한밤에 아속(阿速)이 도망하여 돌아와 외치며 진중(陣中)으로 들어왔는데, 허종이 신을 불러 말하기를, ‘아속은 본디 올적합과 사귀어 이 곳을 왕래한 지 오래 되었었는데, 이제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왔으므로 그 정상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대가 장막 안에서 아속을 데리고 곁에서 자며 찬찬히 그 정상을 물으라.’ 하기에, 신이 아속을 데리고 장막으로 돌아가 그 정상을 캐어 물었으나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저 적들이 달아나 숨은 곳을 네가 아느냐? 지금 쫓아가면 장건하고 용맹한 자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처자들을 잡을 수는 있겠느냐?’ 하니, 아속이 말하기를, ‘강 북쪽 들 밖의 한 곳에 적들이 처자를 숨긴 곳인 듯하나, 이 들은 다 가파른 바윗돌이고 또 습한 곳이 있어서 밭을 갈아 먹지 못하거니와 말을 달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저 적들의 말은 오랫동안 머물러 두면서 기른 것이고 우리 군사의 말은 멀리 오느라 지쳤으니, 쫓더라도 적이 퇴거(退

勢, 夜半阿速逃還, 呼入陣中。 許琮呼臣語之曰: “阿速本交兀狄哈, 往來此地久矣。 今見擄生還, 其情難測, 汝率阿速於幕中寢側, 徐問其情。 臣率阿速還幕, 窮問其情, 似無可疑。 臣問曰: ‘彼賊逃匿之處, 汝尋知之乎? 今若窮追, 則縱不獲壯勇, 可獲妻子乎?’ 阿速曰: ‘江之北野外一處, 似是賊等匿妻子之處, 然此野皆巉巖之石, 又有沮洳處, 不得耕田而食, 馳馬甚難, 況彼賊之馬, 久休留養, 我軍之馬, 遠涉疲困, 縱使追逐, 賊引去則擒獲爲難。’ 許琮謂臣曰: ‘昨日已與諸將議定, 留觀賊勢, 夜更思之, 軍馬齋糧幾盡, 若留數日, 回軍之際, 彼賊邀截, 不能計日旋歸, 則軍卒必中道飢困。’ 呼諸將共議, 庶言皆同。 二十四日回軍, 彼賊登高峰呼斡朶里指天語之曰: 「此天開後, 朝鮮曾不來此侵我, 汝等嚮導, 焚蕩我家產, 朝鮮軍士則歸入長城中, 汝歸何往。’ 斡朶里答曰: ‘汝等屢犯國家, 國家命我等隨往, 故我等來耳。’ 賊又曰: ‘汝爲朝鮮, 則何不着朝鮮紗帽而着我等衣冠乎?’ 臣行至十五里許, 彼賊或五六人, 或七八人, 或三

去)하면 잡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허중이 신에게 말하기를, ‘어제 제장과 의논하여 머물러 적의 형세를 보기로 정하였으나, 밤에 다시 생각하니 군사와 말의 양식으로 가져온 것이 거의 떨어졌는데, 며칠 머물렀다가 군사를 돌이켜 갈 즈음에 저 적들이 중간에서 요격(邀擊)한다면 예정한 날짜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군졸이 중도에서 굶주려 괴로울 것이다.’ 하므로, 제장을 불러 함께 의논하니, 모두 말하는 것이 다 같았습니다.

24일에 군사를 돌이켜 오는데, 저 적들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알타리를 부르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하늘이 개벽한 뒤로 조선이 여기에 와서 우리를 침범한 적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길잡이가 되어 우리 가산(家産)을 불살라 없애거니와, 조선 군사는 장성(長城) 안으로 들어가겠으나 너희는 어디로 가겠느냐?’ 하므로, 알타리가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여러 번 국가를 침범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따라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 것이다.’ 하니, 적이 또 말하기를, ‘너희가 조선을 위한다면, 어찌하여 조선의 사모(紗帽)를 쓰지 않고 우리들의 의관(衣冠)을 착용하느냐?’ 하였습니다.

신이 15리쯤 갔는데, 저 적들 중 대여섯 사람 또는 일여덟 사람 또는 서른 남짓한 사람이 말을 달려 쫓아왔는데, 우리 군사에서 3백 보나 4백 보쯤 떨어져 있었으나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의 소굴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서 하영하여 머물러 잤으나, 적이 와서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25일 행군할 때에 신과 육한(陸閑)·엄귀손(嚴貴孫)이 한후(捍後)23984) 하여왔는데, 머물러 잔 곳에서 대여섯 마장쯤 떨어진 곳에서 적 60여 인이 산허리를 타고 왼쪽을 끼고 오고, 또 60여 인이 산허리를 타고 오른쪽을 끼고 오고 또 1백여 인이 뒤를 싸는 듯이 왔습니다. 모화관(慕華館)의 지세로 비교하여 본다면, 오른쪽을 낀 적은 성밀의 멧뿌리에 있는 것 같았고, 왼쪽을 낀 적은 예빈시(禮賓寺)의 멧뿌리에 있는 것 같았으며, 뒤를 싸는 듯한 적은 경영

十餘人，馳馬追至，距我軍三四百步許，不敢近之，距賊巢二十里許，下營止宿，賊不能來犯。二十五日行軍，臣與陸閑、嚴貴孫捍後而來，距止宿處五六里許，賊六十餘人乘山腰，挾左而來，又六十餘人乘山脊，挾右而來，又百餘人擁後而來，以慕華館地勢比之，挾右之賊，如在城底之岳，挾左之賊，如在分禮賓之岳，擁後之賊如在京營庫之橋，陸閑之軍如在慕華館門前，嚴貴孫之軍如在館池墻隅，臣之軍如在都藏洞。貴孫射其左，陸閑射其右，逆戰而來，臣則顧後徐行，如在沙峴下。貴孫軍少次其後，陸閑軍北走奔來，幾過臣陣，臣拔長劍，呼陸閑欲斬之，閑在軍中，臣未及分辨，閑軍還馳向我陣，後奔軍亦定。臣顧見之，七賊追閑，幾執馬韁，閑中六矢，肌膚無傷，但一矢穿臂，閑因勢迫，不暇抽去。臣之軍官李之芳、(鄭殷當) [鄭殷富]、具賢輝等壯士十餘人，齊發射之，賊或中矢，或墜馬，兩軍相距纔十步許，我軍二人墜馬，彼賊拔劍擊之，然不重傷。臣登小岸，臨而射之，兩軍發矢如雨，賊窘迫半彎而射。臣高

고(京營庫)의 다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육한의 군사는 모화관 문앞에 있는 것 같았고, 엄귀손의 군사는 관지(館池)의 담 모퉁이에 있는 것 같았으며, 신의 군사는 도장동(都藏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귀손은 그 왼쪽을 쏘고 육한은 그 오른쪽을 쏘며 역전(逆戰)하면서 오고 신은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오니, 마치 사현(沙峴) 아래에 있는 것 같았고 엄귀손의 군사는 그 뒤에 조금 처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육한의 군사가 패주하여 와서 거의 신의 진(陣)을 넘어가려 하므로 신이 장검(長劍)을 뽑아 육한을 불러 베려 하였으나, 육한이 군사들 가운데에 있었으므로 신이 미처 분별하지 못하였고, 육한의 군사가 도로 우리 진 뒤로 달려갔으므로 달아나던 군사도 안정되었습니다. 신이 돌아보니, 일곱 명의 적이 육한을 쫓아 거의 말고삐를 잡게 되었고 육한은 여섯 대의 화살을 맞았는데, 살갓에는 다친 데가 없었고 한 대의 화살만이 팔을 꿰었으나, 육한은 형세가 급박하므로 뽑아 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신의 군관(軍官) 이지방(李之芳)·정은부(鄭殷富)·구현휘(具賢輝) 등 장사(壯士) 10여 명이 일제히 활을 쏘니, 적이 화살에 맞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양군은 서로 겨우 10보(步)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 두 사람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적이 칼을 뽑아 찼으나,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신이 작은 언덕에 올라가 굽어보며 쏘니, 양군이 쏘는 화살이 비 오는 듯 하였는데, 적은 궁박하여 활을 반만 당겨 쏘았습니다. 신이 소리를 크게 지르며 말을 채찍질하여 언덕을 내려가니, 모든 군사가 죽을 각오로 싸우며 떨쳐 공격하였으므로, 적이 무너져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 4급(級)을 베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죽고 다친 자는 몇 사람인가? 경(卿)은 또한 화살을 몇 번 쏘았는가?” 하자, 이제동이 아뢰기를, “신들이 참급(斬級)을 많이 하지 못하여 죽고 다친 자가 비록 많기는 하였으나 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군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화살을 무수

聲鞭馬下岸，諸軍殊死戰奮擊，賊奔潰，追斬四級。”上曰：“死傷者幾人乎？卿亦幾發矢乎？”季全曰：“臣等不多斬級，死傷者雖多，不可定數，然兩軍相迫，無數發矢，戰罷拾矢，血深矢竹者亦多。臣亦發三十餘矢。賊中箭則或走登山，或竄伏林莽，一賊背穿兩矢，猶能射之，李之芳射中一賊肩甲，賊抽矢投地，戰罷拾見，則矢竹着肉如指。”上曰：“交戰時放炮乎？”季全曰：“事勢大迫，放炮人多不被甲，臣等蔽立於前，不能放炮。但發一矢，適中賊。”上曰：“賊着甲者幾何？”季全曰：“僅二三十人，其餘皆着青染半體衲衣。”上曰：“我軍馬一無死傷者乎？”季全曰：“沃川軍人，金應輔矢中股上墜馬，絕而復蘇，翌日乃死。馬中矢者三四耳。”上曰：“自尼麻車距都骨幾日程？”季全曰：“人云五六日程，而然無的知者，幹朶里等與弓乙未車兀狄哈世讎，若到都骨，則路經弓乙未車，畏其見獲，自祖父未嘗往來於都骨。”上曰：“我國距尼麻車幾日程乎？”季全曰：“臣渡江九日，始到彼地，若奉使平常之行，則不過六七日之

히 쏘았는데 싸움이 끝나고 화살을 주워 보니, 살대에 피가 깊이 묻은 것이 또한 많았으며 신도 서른 대 남짓한 화살을 쏘았습니다. 적의 화살에 맞으면 산으로 올라가거나 수풀 속으로 숨었으며, 한적은 등에 두 대의 화살을 맞고 도 능히 활을 쏘았습니다. 이지방이 한적의 어깨를 쏘아 맞힌 것을 적이 화살을 뽑아 땅에 버렸는데, 싸움이 끝나고 주워 보았더니, 살대에 손가락만한 살점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교전(交戰)할 때에 포(炮)를 쏘았는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사세가 매우 급박하였으나, 포를 쏘는 사람들 중에는 갑옷을 입지 않은 자가 많았고 신들이 앞에 가려 섰으므로 포를 쏠 수 없었으므로, 단지 한 살[矢]만을 쏘았는데 적에 맞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갑옷을 입은 적은 얼마나 되던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겨우 20, 30인이고 그 나머지는 다 푸르게 물들인 반신(半身)의 남의(衲衣)23985) 를 입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와 말은 하나도 죽거나 다친 자가 없었는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옥천(沃川)의 군인 김응보(金應輔)가 화살에 다리를 맞아 말에서 떨어져 기절하였다가 되살아났으나 이튿날에 죽었고, 화살에 맞은 말은 서넛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니마거(尼麻車)에서 도골(都骨)까지는 며칠길이던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程。且臣等二十八日，南羅峴平下營止宿，黎明行軍。許琮令尹成罔率壯士三十人，落後覘賊，賊七人於下營處周回數匝，成罔下馬如拾失物之狀，賊乘馬一時高聲還向山間。”上曰：“雖不大捷，賊必畏威震懾也。”季全曰：“臣聞兀良哈之言，其初兀狄哈等云：‘兀良哈五人不敵我一人，朝鮮十人不敵我一人，若朝鮮入侵，則是自驅驅馬人口，資我農業耳。臣等聞其言，切齒腐心，彼賊一敗以後，更不現形，豈不畏威乎？且成俊屯兵鬱地云：‘三百步許設木柵，罷陣而還，斫大樹蔽塞城門，賊見之則必壯之矣。’上曰：“彼地有阨塞設險之處乎？”季全曰：“臣等初聞鬱地僅十里許，二十一日四更始入，縱馬促行，二十二日申時乃出，始知鬱地六十餘里矣。大木如櫛，鬱密蔽空，小路僅通，木枝翳路，弓韃矢服，必爲木枝所冒，使一百五十名持斧先入，芟夷其大木，則雖斫之，必附他木，不能落地，竟不見天日。至一處，百步許無木，始見天日，至一處，左右高險，賊若設柵，使五六十兵守之，則萬夫莫敵也。未及鬱地，又有何順平，

“사람들은 대엿셋길이라 하나, 확실히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알타리들은 우  
 을미거 울적합(于乙未車兀狄哈)과 대대로 원수인데, 도골에 가려면 길이 우  
 을미거를 지나므로 그들에게 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할아버지 때부터 도골에 왕래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니마거에서 며칠길이나 떨어졌는가?”  
 하자,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은 강을 건넌지 9일 만에야 그 곳에 닿았는데 만약 사명을 받은 평상시의  
 행차라면 예니랫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들이 18일에 남라현평(南  
 羅峴平)에 하영하여 머물러 자고 어둑어둑한 새벽에 행군할 때에 허종이 윤  
 성경(尹成罔)을 시켜 장사(壯士) 30인을 거느리고 뒤에 처져서 적을 엿보게  
 하였는데, 적 7인이 하영하였던 곳에서 주위를 몇 바퀴 돌기에, 윤성경이 말  
 에서 내려 잃은 물건을 줍는 듯한 형상을 지으니, 적이 말을 타고 일시에 소  
 리를 지르고 도로 산속으로 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크게 이기지 못하는 못하였더라도 적은 위세를 두려워하여 떨 것이다.”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이 울량합의 말을 들으니, 처음에는 울적합들이 말하기를, ‘울량합 다섯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조선의 열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당  
 하지 못하니 만약 조선이 들어와 침범한다면 곧 스스로 선마(驪馬)23986) 와  
 사람을 몰아다가 우리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를 깔고 속을 썩혔는데, 저 적들이 한 번 패한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준(成俊)이 울  
 지(鬱地)에 군사를 주둔하였으며 ‘3백 보쯤 목책(木柵)을 설치하였는데, 파진  
 (罷陣)하고 돌아올 때에는 큰 나무를 베어 성문을 가리어 막았다.’ 하니, 적이

左右山勢，互起如蠶頭，水三曲流，地  
 勢險巖，東有賊路三處，南訥沙車、亏  
 乙未車、大小車節等出來之處，西則海  
 西火刺溫出來之路，若賊據險邀擊，則  
 此亦難當處。 臣至其處，爲先鋒而來，  
 頓無人跡。” 賜季全病母食物。



	<p>보면 굉장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 땅에 좁고 막힌 곳으로 설험(設險)23987) 한 곳이 있던가?”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들이 처음에는 울지가 겨우 10리쯤이라고 들었는데, 21일 4경(更)에 처음 들어가 말을 재촉하여 갔으나 22일 신시(申時)에야 나왔으므로, 비로소 울지가 60여 리인 줄 알았습니다. 큰 나무가 빗살처럼 뻗뻗이 하늘을 가리고 작은 길이 겨우 통하는데, 나뭇가지가 길을 덮어서 활통[弓韃]·살통[矢服]이 나뭇가지에 걸릴 것이므로, 1백 50명을 시켜 도끼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 큰 나무를 베어 없애게 하였더니 베더라도 반드시 다른 나무에 걸려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해를 보지 못하다가, 한 곳에 이르니 1백 보쯤 나무가 없어서 비로소 해를 보았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좌우가 높고 험하여, 적이 성책을 설치하여 오륙십명의 군사를 시켜 지키게 한다면 1만 명이 당하지 못할 듯하였습니다. 울지에 못 미쳐서 또 하순평(何順平)이 있는데, 좌우의 산세(山勢)가 누에 머리처럼 서로 솟고 물이 세 번 굽어 흘러서 지세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동쪽에 적이 다니는 길 세 곳이 있는데, 남눌사거(南訥沙車)·우을미거(于乙未車)·대소거절(大小車節) 등이 나오는 곳이고, 서쪽은 해서 화라온(海西火刺溫)이 나오는 곳입니다. 적이 험한 곳에 의거하여 요격(邀擊)한다면 이 곳도 당하기 어려운 곳이겠습니다. 신이 그 곳에 이르러 선봉(先鋒)이 되어왔는데, 사람의 자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계동의 병든 어머니에게 식물(食物)을 내렸다.</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18      일(경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숭문당(崇文堂) 문에 나아가고, 종친(宗親) 1품(品)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의금부(義禁府)·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대간(臺諫)·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이 입시(入侍)하였다. 양억산(梁億山)의 처에게 물으니 공초(供招)하기를,</p>	<p>○庚寅/上御崇文堂門, 宗親一品領敦寧以上、議政府、義禁府、都摠府、兵曹、臺諫、承旨、注書、史官入侍。 問梁億山妻, 供云: ‘夫億山曰:</p>

	<p>“지아비 양역산이 말하기를, ‘김서 의(金西義)의 말이, 「허종(許琮)이 철령(鐵嶺)을 넘어서 돌아오는데, 군사가 들어갈 때에 침탈(侵奪)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군사를 돌이켜 올 때에도 이러할 것이니, 모든 재물과 곡식은 땅을 파서 감추어 두어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더라.’ 하였는데, 신첩(臣妾)이 이 말을 듣고 마침 말비(末非)를 만나서 말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증청(證廳)한 사람은 없습니다.”</p> <p>하였는데, 양역산에게 물으니, 말하는 것이 그 처가 공초한 말과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김서 의는 군사가 무슨 일로 돌아온다고 하더냐?”</p> <p>하니, 양역산이 말하기를,</p> <p>“돌아오는 까닭은 신(臣)이 듣지 못하였습니다.”</p> <p>하였는데, 김서 의에게 물으니, 공초한 것이 양역산의 말과 거의 같았고, 또 말하기를,</p> <p>“허영공(許令公)이 철원(鐵原)을 들러서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황당합니다.”</p> <p>하였는데, 민은(閔銀)에게 물으니 공초한 것이 또한 양역산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좌우에 묻자,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p> <p>“북정(北征)하는 군사가 처음 들어갈 때에 의롭지 않은 짓을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혹 부녀자를 간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침략(侵虐)하였으므로, 백성이 괴로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박철산(朴鐵山)이 늘렸을 뿐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박철산에게 묻기를,</p> <p>“네가 상언(上言)에는 허종이 군사를 돌이켜 반역을 꾀한다고만 하였는데, 추문(推問)할 때에 이르러서는 또 말하기를, ‘허종이 나라에서 허혼(許混)을 처형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군사를 돌이켜 위를 범하려 합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언에는 어찌하여 아울러 적지 않았느냐?”</p> <p>하니, 박철산이 말하기를,</p>	<p>‘金西義云許琮踰鐵嶺，回還軍士，入去時恣行侵奪，回軍時亦必如此。凡財穀，宜掘土藏置，可以保全。」’ 臣女聞此言，適見末非言之耳，他無證聽之人。” 問億山所言，與其妻供辭同。</p> <p>上曰：“金西義云，軍士以何事回還乎？” 億山曰：“回還之由，則臣未得聞。” 問金西義，所供與億山之言略同，又言曰：“許令公歷入鐵原甚荒唐。” 問閔銀，所供亦與億山之言同。</p> <p>上問左右。尹弼商對曰：“北征軍士初入時，恣行不義，或奸婦女，多般侵虐，故百姓苦之有此言而鐵山敷衍耳。” 上問鐵山曰：“汝於上言，但言許琮回兵謀叛，至推問時，又曰許琮忿國家誅許混，回兵犯上，此言若實，則於上言何不并錄乎？” 鐵山曰：“臣意以回兵謀叛爲重，若忿誅許混，回兵之言似不緊，故不并錄耳。” 命拷訊鐵山。拷訖，上曰：“止此必不眞告，當得情決罪。鐵山情狀已露，發言根如閔銀、末非外，其他事干，皆放之。”</p>
--	--	--

	<p>“신의 생각에는, 군사를 돌이켜 반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허훈을 처형한 것을 분하게 여겨 군사를 돌이킨다는 말은 긴요하지 않을 듯하였으므로, 아울러 적지 않았습시다.”</p> <p>하였는데, 박철산을 고신(拷訊)하라고 명하였다. 고신이 끝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치라, 이는 반드시 바른 대로 고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실정을 알아 내어 죄를 처결해야 하겠다. 박철산의 정상은 말의 근원이 되는 자에게서 이미 드러났으니, 민은·말비 같은 자는 제외하고 그 밖의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놓아주라.”</p> <p>하였다.</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1월 22일(갑오)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안팽명(安彭命)과 장령(掌令) 이거(李瑠)가, 정수(鄭洙)와 최을두(崔乙斗)는 서경(署經)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안팽명이 말하기를,</p> <p>“신이 지난번에 평안도에 있을 때에 변방(邊方)의 일을 보니, 수령(守令)은 다 아록(衙祿)23993 이 있고 첨절제사(僉節制使)도 경직(京職)을 겸대하여 그 처자를 부양할 수 있으나, 만호(萬戶)는 아록이 없어서 자신이 가장 괴롭고 처자도 부양할 수가 없으며, 갈릴 때에도 현직(顯職)을 얻지 못하고, 제수(除授)되는 것이 사맹(司猛)이나 사용(司勇)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다 서반(西班)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을 보지 않고 녹(祿)만 먹는 자가 많이 있으니, 이 무리의 녹과 연굴암(演窟菴)·인왕암(仁王菴)·복세암(福世菴)·원각사(圓覺寺)의 중들을 부양하는 곡식을 아록으로 삼아서 주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p> <p>“만호는 과연 고생을 하니, 병조(兵曹)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헤아려 의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적당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司諫安彭命、掌令李瑠論啓鄭洙、崔乙斗不宜署經。不聽。彭命曰：“臣頃在平安道，觀邊方事。守令皆有衙祿，僉節制使亦帶京職，足以養其妻子，萬戶則無衙祿，其身最難苦，而妻子亦無所養，遞代時亦不得顯職所授，不過司猛、司勇，故人皆不樂爲。西班多有不治事而食祿者，請以此輩之祿及演窟、仁王、福世菴、圓覺寺僧徒所養之穀，爲衙祿給之。”上問左右。領事洪應對曰：“萬戶果爲艱苦，令兵曹商議節目甚便。”上曰：“可。”特進官金升卿啓曰：“閱銀當親問時云，未嘗有所聞，及鞫於禁府，金西義供云：‘許琮入鐵原，持綿紬</p>

	<p>“좋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민은(閔銀)은 친문(親問)하실 때에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였으나, 금부(禁府)에서 국문(鞫問)함에 이르러서 김서희(金西義)가 공초(供招)하기를, ‘허중(許琮)이 철원(鐵原)에 들어가 명주 열 필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민은에게서 들었다.’ 하기에, 민은에게 물었더니, 민은이 말하기를, ‘서넛이 길을 가던 중이 말하였는데 이는 단지 허중이 기치(旗幟)를 만들려는 생각이었다 한다.’ 하였고, 또 ‘철원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이나?’고 물으니, 민은이 말하기를, ‘그 때 술에 취하여 말하였다.’ 하였으니, 이런 말은 민은이 김서희에게 이야기하고 김서희가 양억산(梁億山)의 처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머지는 논할 것도 못된다. 반역을 꾀한다는 말은 박철산(朴鐵山)이 늘인 것이다. 박철산이 하는 짓을 보면,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여 말을 만들 만한 자이다.”      하였다.</p>	<p>十四去矣。’ 此言聞諸閔銀，及問銀，銀曰：‘三四行路，僧言之，此特許琮欲爲旗幟之計耳。’ 又問入鐵原之言何耶，閔銀曰：‘其時醉酒而言之矣。’ 此等之言，閔銀說與金西義，西義說與梁億山妻耳。” 上曰：“餘不足論，其謀叛之言，皆鐵山所敷衍也，觀鐵山所爲，甚奸猾，可造言者也。”</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1월 25일(정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아뢰기를,      “경기 연분 경차관(京畿年分敬差官) 정성근(鄭誠謹)이 벼를 이미 베어 들인 뒤에 벼의 뿌리가 크고 작은 것으로 등급을 매겼으므로, 이 때문에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다 국문(鞫問)을 당하고 이서(吏胥)도 장차 이에 연좌되어 사변(徙邊)23996) 될 것이니, 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경기 감사(京畿監司)도 이것을 말하였다. 대저 물이 축축한 땅은 곡식이 여물지 못하였더라도 그 뿌리와 밀줄기가 물에 잠겨 습기를 머금어 키지고, 습기가 없는 땅이라면 곡식이 많이 여물었더라도 그 뿌리가 말라서 작</p>	<p>○御經筵。講訖，領事尹壕啓曰：“京畿年分敬差官鄭誠謹，禾穀已刈取後，以禾根大小爲等第，以此諸邑守令皆被鞫，而吏胥亦將坐此徙邊，似未便。” 上曰：“前日，京畿監司亦言之。大抵水濕之地，則穀雖未稔，其根莖沈水浸漬而大，若非水濕之地，則穀雖豐稔，其根乾燥，而小不可以此爲等第也。” 知事李克增啓曰：“年分之法，監司、守令，於禾穀未刈時，審視凶稔定等第</p>

	<p>아지니, 이것으로 등급을 매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연분(年分)23997) 을 매기는 법은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벼를 아직 베지 않았을 때에 풍흉(豐凶)을 살펴보고 등급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벼 뒤에 벼 뿌리의 크고 작은 것으로 그 등급을 정한다면 매우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감사가 국가의 용도(用度)를 헤아리지 않고 다만 백성에게 원망받을 것을 염려하여 연분의 등급을 너무 가볍게 잘못 매긴 것도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임금이 많이 거둬들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래에서도 반드시 순종할 것이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성근은 범상한 무리가 아닌데, 이러한 큰일을 어찌 잘 살펴서 하지 않았겠는가? 정성근이 오거든 다시 의논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극증의 이 응대(應對)에는 폐단이 없지 않다. 나라의 세법(稅法)이 가볍더라도 상세(常稅) 이외의 과렴(科斂)23998) 과 역역(力役)이 훨씬 더 많은데, 이극증은 일찍부터 귀현(貴顯)하여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벼슬을 지내지 않았으므로 그 말이 이러하였다.”하였다.</p>	<p>矣。若於已刈之後，以禾根大小，定其等第，則甚不可。然今之監司，不計國家用度，但恐取怨於民，年分等第，失於太輕，亦甚未便。” 上曰：“人主，以厚斂爲心，則下必承順，其弊不貲，誠謹非常流也。如此大事，豈不詳察爲之乎？待誠謹之來，更議可也。”          【史臣曰：“克增是對，不無弊焉。國之稅法雖輕，而常稅外科斂力役，其數倍多。克增早貴顯，不經親民之職，故其言如此。”】</p>
<p>성종 259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1월 30          일(임인) 1번째기사</p>	<p>예안 현감(禮安縣監) 김詮(金詮)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재주 없는 몸으로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벼슬에 있게 되어, 정성을 다룬 데에 두지 않고, 오직 백성을 어루만져 돌보는 데에만 마음을 썼는데도 전리(田里)에서 근심으로 한탄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지 못한 데에는 두가지가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감면한 조곡(糶穀)24008) 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지친 백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미 지쳤는데 다시 부리고, 조곡을 이미 감면하였는데 오히려 거두어들이는 것은 스</p>	<p>○壬寅/禮安縣監金詮上疏曰：“臣以不才，待罪專城，斷斷無他，唯知以撫字爲心，而不能使田里絕愁嘆之聲者有二焉。一曰，徵已蠲之糶。二曰，役已勞之民。民已勞矣而復役之，糶已減矣而猶徵之，自非汚吏刻民之甚者所不忍爲，而臣坐視寒心不獲已(已)者，已</p>

스로 백성을 괴롭히는 더러운 관리가 아니면 차마 볼 수 없는데, 백성이 어떻게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하직하던 날에 특별히 받은 성교(聖敎)에, ‘감사(監司)에게 폐단을 알려서 백성의 고통을 없애는 데 힘쓰라.’ 하셨으므로, 분부를 받고 와서 더욱 스스로 절제(節制)를 다하였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는 감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좋은 때를 만나 밝은 조정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입을 열어 하소연하지 못한다면, 백성의 고통을 어느 때에야 없애겠습니까?

나라에서 병술년(24009) 봄에 모든 도(道)에 영을 내려 백성에게 곡식을 꾸어준 것이 5년이 넘은 것이면 일체 환납(還納)을 면제하고 3년이 넘은 것이면 반을 줄여서 거두어 들이게 하였으므로 그때에 모든 고을의 백성이 모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안(禮安) 한 현(縣)만은 유독 지극한 은택을 입지 못하여 30년이 되도록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수령(守令)이 납세(納稅)를 독촉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꺼리고, 회계를 맞추는 것만을 능사로 여기어 걸치레만을 일삼아 꾸어준 것을 받아들였다 하며 흠어 주고 거두어 들인 실상을 꺼꾸로 하고, 응당 면제해야 할 것을 거두어 들이게 하고 거것으로 기록된 수(數)를 취(取)하는 데 책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이렇게 하는데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술년으로부터 헤아리면, 신사년(24010) 이전이 5년이 넘었고 계미년(24011) 이전이 3년이 넘었으니, 그 응당 면제해야 할 곡식이 무려 2천 6백여 곡(斛)이었습니다.

계사년(24012) 에 고을 백성 수십여 인이 그 억울함을 아뢰자, 본도(本道)로 하여금 그 흠어 주고 거두어 들인 문서를 살펴서 밝히게 하였더니, 과연 다 흠어 주고 아직 거두어 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내린 정한(定限)에 따라야 할 것인데 도리어 감면하는 예(例)에 들어 있지 않았으니, 신은 저으기 의혹스럽습니다. 거두어 들인 것이 감면한 때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면 어찌 두 번 거두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흠어 준 것이 감면하는 정

踰期月矣。臨民尙不忍視，爲民何堪自處。臣陛辭之日，特蒙聖敎，陳弊監司，務去民瘼，拜嘉以來，倍自罄節。但此二者，非監司所得而處之。幸因令辰，得造明庭，亦不一開口籲呼，則民瘼何時而祛也。國家於丙戌春，下令諸道，民糶五年以上一切免還，三年以上一半減收，當時列邑之民，竝受其賜，而禮安一縣，獨不蒙至澤，垂三十年。民不聊生者，專由守令，以催科之拙爲諱，會計之當爲能，徒事虛文，以糶爲糶，散斂易實，致令應免之收，責取虛張之數，爲吏如此，爲民奚罪。以丙戌計之，辛巳爲五年以上，癸未爲三年以上，其應免穀粟，無慮二千六百餘斛。當癸巳年間，縣民數十餘人上其冤，令本道驗其斂散之籍，果皆散而未斂，合從下令之限，却不在蠲免之例，臣竊惑焉。斂在蠲免之先，則豈宜再徵，散在蠲免之限，則在所當免，反覆籌之，乖刺實多。戊戌冬，縣民五十餘人，復陳不已，該曹以爲禮安當免，初不在監司啓本中，使不得免焉。徵斂無虛歲，臣惑滋甚，守令既謬爲已斂以應之，監司正墜其計

한에 들어 있다면 면제해야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반복하여 헤아려 보아도 어그러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술년(24013) 겨울에 고을 백성 50여 인이 다시 아뢰어 마지않았는데, 해조(該曹)에서 ‘예안은 면제해야 마땅하나, 처음부터 감사의 계본(啓本) 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하여 면제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거두어 들이지 않는 해가 없었으니, 신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수령이 이미 잘못하고서는 이미 거두어 들인 것이라고 응답하고, 감사는 바로 그 계략에 빠졌거니와, 또 무엇 때문에 면제해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까? 해조에서 게으른 관리의 걸치레를 고집하여 백성을 너그럽게 돌보신 참 혜택을 오래도록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털린 끝에도 죄다 바치지 못한 자 중에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인 백성이 많고 반은 유망(流亡)하였는데, 떠난 자와 남아 있는 자가 아직 못 바친 수를 아우르면 모두 5백여 곡이니, 이것은 이미 거두어 들인 것이 1천여 곡이라는 뜻이 되므로, 백성을 손상시킨 것이 또한 많습니다. 조정의 아름다운 뜻이 막혀서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게 한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에게서 비롯하였으니, 통탄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병신년(24014) 겨울에 갑사(甲嗣) 이성윤(李成閏)의 말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해 이전에 죽고 후사(後嗣)가 없는 자와 갑오년(24015) 이전에 유망하고 후계가 없는 자의 조곡을 감면한 것과 고을 백성이 죽거나 이사하여 감면해야 할 것도 6백여 곡이 밀돌지 않는데, 이제까지 바치지 못한 것은 겨우 1백여 곡이니, 그 고을에서 각박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수령이 전에 잘못된 것을 살피고 백성의 그치지 않는 폐해를 없애어, 조정에서 이미 내린 은택이 문서 사이에서 막히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한 고을의 다행일뿐이 아니라 조정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백성의 힘을 가볍게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쓰지 않을 수는 없거니와, 전토(田土)에 따라서 무역할 사람을 내도록 법에 실려 있

中，又何從以爲當免。該曹堅執慢吏虛文，久孤寬民實惠，積年隳突之餘，猶未盡輸者多鰥寡孤獨之民，而半於流亡併去，留之數併五百餘斛，是已斂二千餘斛，傷民亦多矣。使朝廷美意，壅隔而不能下(宄) [究]，目親民者，始可勝痛哉！又於(內) [丙] 申冬，因甲士李成閏之言，特減是年以上身死無後，甲午以上流亡無後者之糶，縣民之死徙，應在免限者，亦不下六百餘斛，于今未輸者纔百有餘斛，非刻剝其鄉黨，曷能臻此。伏願殿下，察守令已往之失，祛生靈未弭之害，使朝廷已降之澤，無沮抑於簿書之間，則非徒一縣之幸，朝廷幸甚。國家不輕用民力，而亦不得不以爲用，用田出夫，著爲令式，法至詳也。顧以土地之大小，民生之衆寡，而勞佚休戚，迥不相同，寡力之不如衆力久矣。禮安爲縣，地不滿百里，戶不過數百，山巔水際，皆磽薄之田，窮村僻巷，多捐瘠之民，蕭條邑里，人煙不接，供貢賦轉輸之役，不加於他縣，而民之受病倍之，由其民寡而力不贍，循環之役，不終歲而復至於一夫，不啻五六民之息肩，寧幾時乎？

으므로 법은 지극히 상세한데, 도리어 토지의 대소(大小)와 백성의 중과(衆寡)에 따라 노고하고 안일한 것이 아주 같지 않아서, 힘이 적은 것이 힘이 많은 것만 못한 지가 오랍니다.

예안현(禮安縣)은 땅이 1백 리가 못되고 집이 수백에 지나지 않으며, 산꼭대기와 물가에 다 메마른 밭이 있을 뿐이고 궁벽한 촌마을에는 쇠약한 백성이 많으며, 쓸쓸한 읍리(邑里)에는 인가가 잇대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貢賦)를 나르는 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다른 고을보다 더하지도 않은데 백성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한 까닭은 백성이 적어서 힘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둘러가며 하는 부역이 한 해를 마치기 전에 한 사람 앞에 대여섯 번 넘게까지도 다시 돌아오니, 백성이 어깨를 쉴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동(安東)은 한 도 안의 큰 부(府)이므로 땅이 넓고 백성이 조밀(稠密)한데다가, 풍산(豊山)·임하(臨河)·감천(甘泉)·일직(一直)·길수(吉數)·내성(奈城)·춘양(春陽)·개단(皆丹)·재산(才山)·소천(小川)의 열 고을이 붙어 있는데, 그 토지와 백성은 한 고을로 예안현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올해에 몇 고을을 부리고 내년에도 몇 고을을 부려 돌아가며 일한 즈음에 백성은 일하는 자가 잇단 성에서 나오는 것을 모릅니다. 토지를 나누고 작위(爵位)를 벌이는 것이 대소가 같지 않은 것은 본디 그 서차(序次)가 있는 것이나, 백성의 노고와 안일이 어찌 달라야 하겠습니까? 열 고을에 현감(縣監)이 없어도 절로 다스려지는데, 좁은 예안현만은 어찌하여 현감을 두겠습니까? 예안현을 없애어 안동에 아울러 붙여야 백성이 비로소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애지 못한다면, 재산(才山)·소천(小川) 두 고을은 본부(本府)와 떨어져서 경계가 서로 잇따라 붙어 있지 않고 예안현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그 곳의 백성이 본부에 왕래할 때에 반드시 길을 빌고 자고서야 도달하는 것은 매우 괴롭거니와, 참으로 두 고을을 덜어서 주면 예안 백성이 살아날 뿐더러 두 고을의 백성도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安東爲一道大府，地廣民稠，而加之十邑附焉。曰豊山，曰臨河，曰甘泉，曰一直，曰吉數，曰奈城，曰春陽，曰皆丹，曰才山，曰小川，其土地人民，無不一當禮縣而又有加焉。今年役數邑，明年役數邑，循環之際，民不知役者連城矣。分土列爵，大小之不同，固其序也，民之勞佚，豈宜異同，十縣無監而自治，禮縣之偏小，獨安用監廢禮安，併屬安東，民始無事矣。如其不廢，則才山、小川二縣，與本府絕越境壤，不相連屬，而禮縣介其間，彼民之往來本府，必假道信宿而達，亦甚病焉。誠能捐二縣而畀之，不特禮民其蘇，而二邑之民，亦以爲便矣。說者以爲州府郡縣，大小異制，不宜割府之有以益縣。臣謂郡邑之沿革離合，代各有之，不但東方輿圖而已。如九州十二州可見，小縣不能有二邑於襟帶之間，而大府有餘地餘民於風馬牛不相及之地，其輕重緩急何如哉。伏願殿下，念斯民勞佚不均，憐小縣困瘁不支哀多益寡，使僻鄉荒陬，無息偃職勞之異，不勝幸甚。”命下戶曹。



	<p>말하는 자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은 크기를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부(府)에 속한 땅을 갈라서 현(縣)에 보태어서는 마땅하지 않다.’ 하나,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을의 연혁(沿革)·이합(離合)은 각대(各代)에 다 있는데, 동방(東方)의 지도(地圖)뿐이 아니라, 이를테면 구주(九州)·십이주(十二州)에서도 볼 수 있거니와, 작은 현(縣)은 옷깃이나 띠처럼 서로 잇닿은 사이에서 두 고을을 가질 수 없고 큰 부(府)는 암수가 서로 찾는 마소도 미치지 못하게 멀리 떨어진 땅에서 남는 땅과 남는 백성을 갖는다면 그 경중(輕重)·완급(緩急)이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백성의 노고와 안일이 고르지 않은 것을 염려하고 작은 현이 지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가없이 여기시어, 많은 데에서 뽑아서 적은 데에 보태어 편벽하고 황폐한 시골이 쉬고 일하는 차이가 없게 하소서. 그러면 더 없이 다행하겠습니다.”</p> <p>하였는데, 호조(戶曹)에 내리라고 명하였다.</p>	
<p>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2월 1일 (계묘) 6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와 경차관(敬差官)의 연분(年分)24016) 등급을 상고하여 아뢰었는데, 때마침 여러 재상(宰相)들이 일이 있어 예궐(詣闕)하였으므로, 임금(上)이 전교하기를,</p> <p>“이제 등급을 보니, 고하(高下)에도 서로 다름이 있고, 손실(損實)에 있어서도 또한 다른 바가 있는데,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따르면 납세(納稅)가 많아지고, 경차관의 계본에 따르면 납세가 적는데, 경차관(敬差官) 정성근(鄭誠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찌 경망하게 하였으랴? 그러나 정성근은 벼를 이미 수확한 뒤에 한갓 그 뿌리의 가늘고 굵은 것만을 보고서, 높고 낮은 등급을 매긴 것이니,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어찌 관찰사(觀察使)가 친히 보고 등급을 매긴 것과 같으랴? 더욱이 경기(京畿)의 백성들이 경차관의 등급이 불공평하다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자가 많다 하니, 아직은 경차관의 등급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였다. 심회(沈澮) 등이 아뢰기를,</p>	<p>○承政院考京畿觀察使及敬差官年分等第以啓。 時諸宰因事詣闕，傳曰：“今觀等第，高下有異，損實亦殊，從觀察使之啓，則納稅多；從敬差官之啓，則納稅少，敬差官鄭誠謹非庸人也，豈妄爲哉？然誠謹，於禾穀既穫之後，徒見其根之細大而爲高下，是可疑也。 豈若觀察使親見而等第之乎！況京畿之民，有以敬差官等第爲不公而訴冤者多，姑勿用敬差官等第何如？”沈澮等啓曰：“上教允當。”傳曰：“從觀察使啓本施行。”</p>

	<p>“성상의 하교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관찰사의 계본에 따라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2일          (갑진) 4번째기사</p>	<p>유구 국왕(琉球國王)이 야차랑(耶次郎) 등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유구 국왕 상원(尙圓)은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글을 받들어 올리 나리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귀국(貴國)과 누방(陋邦)은 바닷길이 요원하여 항상 왕복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함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데도 돈어(豚魚)24019) 의 소식마저 잃은 것 같사오나, 어찌 옛 은혜를 잊으오리 까? 한 사자(使者)를 보내어 미세하고 천박한 물품으로 모질(茅絃)24020) 을 잡고 드리오니, 그 수효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전(歲前)에 사자의 선박을 보냈을 때는, 그 접대가 더욱 후하였사오며, 특히 귀지(貴地)의 소산물을 아울러 받았으니, 이른바 천박한 물품을 경요(瓊瑤)24021) 로 갚으신 것이라, 지극히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안국사라는 절이 있사운데, 개국 초기(開國初期)의 선찰(禪刹)로서 복을 비는 신령한 도량(道場)이기도 합니다. 그러하오나 삼보(三寶) 가운데에서 아직도 법보(法寶)를 갖추지 못하였으니, 실로 결전(缺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해에 2회나 부상(扶桑)24022) 사람 신사랑(新四郎)을 보내어 비로 법보(毗盧法寶) 1장(莊)을 구하였사오나, 회보해 온 글에 유시하시기를, ‘여러 곳에서 구하여 가므로 이미 떨어지고 없다.’고 하였습니다. 존명(尊命)이 이미 멀리 왔사오나 과인(寡人)이 원하고 바라던 마음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특별히 전사(專使)를 거둬 보내어 이의 구함을 전달하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돌아오는 사자에게 1장을 내리시와 나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시면 실로 그 은혜를 지극히 느낄 것이오니, 어떤 영광과 은사(恩賜)가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선</p>	<p>○琉球國王遣耶次郎等來聘。其書曰：“琉球國王尙圓，奉書朝鮮國王殿下。恭惟貴國與吾陋邦，滄溟遼遠，每歎不易于還，歲月因循，似失豚魚信矣，豈忘舊恩耶！遣一价之行李，以納微薄把茅，幸賜采納爰數，歲前差遣使船，接待尤厚，特所賜貴產併以拜，所謂瓊瑤之報也。感激之至也。抑於吾邦有教寺曰安國，蓋國初之禪刹，以爲祈福之靈場也。然而三寶之內，猶以未具法寶，實缺典也。繇是往歲，兩回遣扶桑人新四郎，以求毗盧法寶一莊，報書諭曰：‘因諸處求去，已盡矣。尊命已羨，雖然寡人未遂願望之心，故今特差專使，以重而致此求，切望付回价賜一莊，則令遂我願望者，實感恩之至也。何榮賜加之乎？善莫大焉，勿敢拒矣。冀高明恕容，茲所遣使者正副二官，耶次郎五郎三郎，奉獻納方物，具如別幅收錄。若時保畜。劍刀二十把、丁香一百斤、模段香一百斤、</p>

	(善)도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이오니, 굳이 거절하지 마옵시고 고명(高明)하신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보내는 정·부(正副) 2관(官) 야차랑(耶次郎)·오랑 삼랑(五郎三郎)이 받아들여 헌납하는 방물(方物)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어 수록하였나이다. 항상 근신하시고保重(保重)하소서.” 하였는데, 별폭(別幅)에는 검도(劍刀) 20자루, 정향(丁香) 1백 근(斤). 모단향(模段香) 1백 근, 상아(象牙) 1본(本)이었다.	象牙一本。”
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9일 (신해) 7번째기사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면(楊沔)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들건대 향온(香醞) 속에 티끌과 더러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원 및 술을 빚은 사람을 이미 금부(禁府)로 하여금 추국(推鞠)토록 하였다 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제조(提調)까지도 신문(訊問)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제조(提調)가 알 바가 아니니, 국문(鞫問)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司憲府掌令楊沔來啓曰：“臣聞香醞有塵汚之物，其官員及釀酒之人，已令禁府推鞠，請竝按提調。”傳曰：“此非提調所知，不可鞠也。”
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10일(임자) 4번째기사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면(楊沔)이 와서 아뢰기를, “향온(香醞)에 찌꺼기가 있었으니, 그 간수(看守)하는 책임자를 마땅히 중죄(重罪)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 특별히 놓아주심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잡약(雜藥)을 섞어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금부(禁府)로 하여금 국문(鞫問)케 한 것인데, 이제 들으니, 그 도기(陶器)가 잘 익지 않아서, 농도(濃度) 높은 술에 용해되어 생긴 찌꺼라 하니, 그들의 죄가 아니므로 놓아준 것이다.” 하였다.	○司憲府掌令楊沔來啓曰：“香醞有滓，主守者宜置重罪，今特放之，不可。”傳曰：“予初疑其和雜藥以進，令禁府鞠之。今聞陶器未熟，爲醞酒所浸鑱而爲滓耳，非其罪，故放之。”
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13일(을묘) 2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안팽명(安彭命)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평안도(平安道) 모든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현재 모두 백성을 부러 둔전(屯田)을 경작시키고 또 쌀방아까지 찼게 하여, 백성들이 몹시 괴로	○御經筵。講訖，司諫安彭命啓曰：“臣聞平安道諸邑守令，今皆役民，耕治屯田，又使(舂) [舂] 米，民甚苦之，請令觀察使檢察。”掌令楊沔曰：“觀

	<p>와한다 하니, 청컨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이를 검속(檢束)하게 하소서.”        하고, 장령(掌令) 양면(楊沔)은 말하기를,        “관찰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도(本道)는 사명(使命)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규핵(糾劾)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관둔전(官屯田)은 촌 백성을 부려 다스리지 말라고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수령이 아전(衙前)을 시켜 때를 타서 경작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뒤로부터는 백성은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안팎명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고령(高靈)의 관둔전(官屯田)이 벼[種稻]가 2섬 가량 들고, &lt;토질이&gt; 매우 비옥하여 1년 수확이 거의 3백여 섬에 이른다 하는데, 전일에 신정(申靜)이 현감(縣監)에게 청탁하여 이를 사유(私有)로 만들었다 합니다. 모든 고을의 둔전이 다 호조(戶曹)에 적(籍)을 두고 있어, 사사로이 줄 수 없으니, 청컨대 속공(屬公)께 하시고, 인하여 그 때의 현감을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묻자, 홍응이 대답하기를,        “둔전은 사사로이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된 일을 추론(追論)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다만 그 전지만 속공토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연히 속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게 된 연유를 물은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察使非不知也，但本道使命頻頻，故因循不糾劾矣。”上問左右。領事洪應對曰：“官屯田勿使村民治之，載在《大典》，守令當以人吏乘時耕治之。”上曰：“今後使不得役民可也。”彭命又啓曰：“臣聞高靈官屯田，可種稻二碩而甚沃饒，一年所收幾至三百餘碩，前日申靜請於縣監而有之。諸邑屯田，皆籍於戶曹，不可私與，請屬公，仍鞫其時縣監。”上問左右。應對曰：“屯田不可私與人，然年久之事，不宜追論。但其田屬公，似可。”上曰：“固當屬公，然問與之之由，然後處之，可也。”</p>
--	--	---

<p>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17 일(기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예건(李禮堅)·사간(司諫) 안팽명(安彭命)이 유자광(柳子光)을 체찰사(體察使)로 삼을 수 없음을 아뢰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관찰사(觀察使)는 남대지(南大池)를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이르고, 혹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대신(大臣)을 보내어 이를 자세히 살펴 확정하려는 것이다.” 하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유자광을 체찰사로 삼은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남대지(南大池)는 그 유래도 이미 오래 되었거니와, 흉년에 백성들이 마름[菱]이니 가시연[芡]을 캐서 먹으면, 족히 구황(救荒)도 되는지라, 이 못이 백성에게 유리함이 큼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경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남흔(南忻)이 아뢰기를, “경기(京畿) 연분(年分)의 착오를 일으킨 곳에, 황사효(黃事孝)를 파견하여 다시 복심(覆審)하고 그 고을 아전(衙前)을 국문(鞫問)하게 하셨으나, 신의 의견으로는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어서 징험해 살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 개간한 것을 목은 전답으로 만들었다는 곳에 있어 황사효의 견해가 어찌 정성근과 다르겠습니까? 또 당해(當該) 아전이 저지른 등급의 착오는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비록 형을 가하여 신문(訊問)한다 하더라도, 어찌 쉽게 그 실정을 얻어내겠습니까? 만약 끝까지 국문하려 한다면 시간도 천연(遷延)되려니와, 조세(租稅)의 수납도 늦어질 것입니다. 정성근이 이르기를, ‘세가(勢家)의 전답은 그 등급이 매우 가볍게 매겨 졌다.’고 하나, 재상(宰相)이 어찌 청탁이야 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執義李禮堅、司諫安彭命啓：“柳子光不可爲體察使。” 上問左右曰：“觀察使以爲南大池可許民耕墾，或言不可許，故欲遣大臣審定耳。”領事盧思愼對曰：“以子光爲體察使，何不可之有？但南〈大〉池，其來已久，凶荒之歲，百姓採菱芡，亦足救荒，此池有利於民大矣。”上曰：“不許耕可也。”參贊官南忻啓曰：“京畿年分差錯處，遣黃事孝覆審而鞫其官吏。臣意，雪深水凍，審驗爲難，若以墾爲陳之處，則事孝之見，何以異於鄭誠謹乎？且該吏之差錯等第，其罪非輕，雖刑訊，豈易得情乎？若欲畢鞫，綿歷日月，收稅亦晚矣。誠謹謂，勢家之田則等第甚輕，然宰相豈爲請托乎？”上曰：“予於宰相，無毫髮之疑，但該吏爲勢家輕歇，不可不懲，故遣事孝推鞫耳。前日臺諫來言年分事，予欲待戶曹議啓而後處之，昨見戶曹所啓，以誠謹爲非，然且請鞫該吏，予未知何以如此爲也。《大典》內，守令看審年分而報監司，監司更審而啓聞，然後又遣朝官覆審，今若不用敬差官啓本，則殊無國家遣官之意，而《大典》</p>
---	---	---

	<p>“내가 재상에게는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않으나, 다만 해당 아전이 세가를 위하여 가볍고 험하게 한 것이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황사효를 보내어 국문토록 한 것이다. 전일에 대간(臺諫)이 와서 연분(年分) 사건을 말하였으므로 나는 호조(戶曹)의 의계(議啓)24038) 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어제 호조에서 아된 것을 보니 정성근이 그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해당 아전의 국문을 청하니 나는 어찌하여 이같이 하는지 모르겠다. 《대전(大典)》 안에 ‘수령(守令)이 연분을 보고 잘 살펴서 감사(監司)에게 통보하면, 감사가 다시 살펴 계문(啓聞)한 연후에, 또 조정 관원을 파견하여 복심(覆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 경차관(敬差官)의 계본(啓本)을 쓰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에서 관원을 파견하는 뜻도 없으려니와, 《대전》의 본의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p> <p>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특진관(特進官) 이계동(李季叟)이 아뢰기를,</p> <p>“국가에서 이미 복심을 명하였다면, 마땅히 경차관의 계본을 써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황사효가 국문하여 계문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 조치할 것이다.”</p> <p>하였다.</p>	<p>之意毀矣。” 領事盧思愼、特進官李季叟啓曰：“國家既命覆審，則當用敬差官啓本矣。” 上曰：“待事孝推鞠以聞後處之。”</p>
<p>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17 일(기미) 3번째기사</p>	<p>임금이 두 대비전(大妃殿)에 잔치를 올리고, 종친(宗親) 2품(品) 이상과, 의빈(儀賓)으로는 영돈녕(領敦寧) 이상, 정부(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의 당상(堂上), 그리고 예문관(藝文館) 관원들에게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술과 풍악을 내렸다.</p>	<p>○上進宴于兩大妃殿。 命饋宗親二品以上、儀賓、領敦寧以上、政府、六曹、漢城府堂上、入直都摠府諸將、承政院、弘文館、藝文館于明政殿庭，賜酒樂。</p>
<p>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22</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유구국(琉球國) 사신 야차랑(耶次郎)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건(成健)에게 명하여 야차랑에게 전교하기를,</p>	<p>○甲子/上御仁政殿， 宴琉球國使臣耶次郎等， 命禮曹判書成健傳于耶次郎曰：“汝等遠涉海路，良苦良苦。” 耶</p>

<p>일(갑자) 1번째기사</p>	<p>“너희들이 멀리 바닷길을 건너왔으니, 실로 수고하였다.” 하니, 야차랑이 사례하여 말하기를, “신(臣) 등이 국왕의 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용안(龍顔)에 배알함을 얻었으니, 영광이 큼니다. 무슨 노고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부관인(上副官人)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도록 하고는 물품을 하사하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p>	<p>次郎謝曰：“臣等受國王書而來，得拜龍顔，榮幸大矣。何勞之有？”命上、副官人進爵，賜物有差。</p>
<p>성종 260권,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 (弘治) 4년) 12월 29 일(신미) 1번째기사</p>	<p>술과 풍악을 입직한 도총부(都摠府)의 모든 장수와 승정원(承政院)·사관(史官)·홍문관(弘文館) 관원에게 내려 주었다.</p>	<p>○辛未/賜酒樂于入直都摠府諸將及承政院、史官、弘文館員。</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1일 (임신) 3번째기사</p>	<p>임금이 두 대비전(大妃殿)에 잔치를 베풀어 올리고, 인하여 종친(宗親) 정1품 이상,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와 입직(入直)한 도총부(都摠府)의 모든 장수와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불러 술과 풍악을 명정전(明政殿) 뜰에 내려 주고 옥배(玉杯)를 내리면서 이어 전교하기를, “이 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마시되, 반드시 꼭 취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上，進宴于兩大妃殿，仍召宗正一品以上、領敦寧以上、議政府(議) [儀] 賓府、六曹、漢城府、入直都摠府諸將、承政院、弘文館員，賜酒樂于明政殿庭下，玉杯，仍傳曰：“以此滿酌，期在必醉。”</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4일 (을해)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곡식이 용도가 부족하니, 중미(中米) 1백 50석(碩)을 수송(輸送)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內需司穀食，用度不足，其輸送中米百五十碩。”</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5일 (병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양면(楊沔)이 아뢰기를, “예조 정랑(禮曹正郎) 민이(閔頤)는 그 근무 연한이 아직 차지 않았는데도 이조(吏曹)에서 첨정(僉正)으로 승진하여 제수(除授)하였으니, 이는 필시 좌랑(佐郎) 김준손(金駿孫)을 정랑(正郎)에 제수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御經筵。掌令楊沔啓曰：“禮曹正郎閔頤仕未滿，吏曹陞授僉正，此必欲以佐郎金駿孫授正郎也。”上曰：“予意以謂，銓曹職掌用人，仕雖未滿，若可用人，則用之何妨？其云欲授金駿孫</p>

	<p>“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조(銓曹)는 사람 쓰는 직책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연한은 비록 차지 않았더라도 만약 쓸 만한 사람이면 쓴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김준손을 제수하려고 했다는 것은 억측(臆測)한 말이다.”</p> <p>하고, 이어 좌우 신하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만약 그 사람이 현명하다면, 연한이 비록 차지 않았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일의 인사 행정은 연한이 차지 않은 자를 의망(擬望)하는 사례가 많으니, 《대전(大典)》의 법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자세히 물어 조치하겠다.”</p> <p>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 정성근(鄭誠謹)이 벼뿌리의 대소(大小)를 가지고 연분(年分)의 등급을 정하였고, 또 부호(富豪)와 거실(巨室)들을 기록해 아뢰었으므로 이제 황사효(黃事孝)로 하여금 추국(推鞠)하라 명하셨는데, 신은 그욕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차관의 계본(啓本)을 쓰게 되면, 법을 범한 수령(守令)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입을 것이며, 감사(監司)의 계본을 쓰게 되면, 관원을 파견하여 복심(覆審)하게 하는 본래의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흉년이니, 잠시 권의(權宜)를 따르고 백성을 위하여 감사의 계본을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다만 《대전》에, ‘감사가 연분을 정하여 보고한 뒤에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복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 경차관의 계본을 쓰지 않는다면 《대전》의 법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형신(刑訊)을 쓰게 되면 백성들이 그해를 입을 것이다.”</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유자광(柳子光)이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수령(守令)이 다 연분 등급이 맞지 않아 추문(推問)을 당하게</p>	<p>者, 乃臆度之言也。” 仍問左右。 領事洪應對曰: “如其賢也, 仕雖未滿, 乃可用也。 然以近日之政, 以仕未滿擬望者多, 竊恐《大典》之法壞矣。” 上曰: “予將詳問而處之。” 應又啓曰: “敬差官鄭誠謹, 以禾根大小, 定年分等第, 又書豪富巨室以啓。 今命黃事孝推鞠, 臣竊以爲不可。 今用敬差官啓本, 則犯法守令必被重罪; 用監司啓本, 則有違遣官覆審之意。 然今年凶荒, 姑從權宜, 爲百姓用監司啓本何如?” 上曰: “然, 但《大典》監司定年分啓聞後, 遣朝官覆審, 今若不用敬差官啓本, 則壞《大典》之法, 若用刑訊則民被其害。” 特進官柳子光啓曰: “京畿守令, 皆以年分失中被推, 而獨廣州誠謹所居, 避不覆審, 故不被推, 用敬差官啓本未便。” 上曰: “今年爲民屈法, 用監司啓本可也。” 子光又啓曰: “安桑雞, 以先王外孫, 職在下流, 敦寧府專爲族親設也, 桑雞之才幹, 臣實未知, 獨不可用於敦寧府乎?” 應曰: “世宗外孫, 獨有桑雞, 且有學術, 可用也。” 上曰: “桑雞不見用, 予之過也, 其速用之。”</p>
--	--	---



	<p>되었는데, 유독 광주(廣州)만은 정성근의 거주지로서 회피하고 복심(覆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문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경차관의 계본을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백성을 위해 법을 굽히어 감사의 계본을 쓰는 것이 옳다.”</p> <p>하였다. 유자광이 또 아뢰기를, “안상계(安桑雞)는 선왕(先王)의 외손(外孫)으로 그 직위가 하류(下流)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녕부(敦寧府)는 오로지 족친(族親)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안상계의 재간(才幹)을 신이 실지로 모르나, 유독 돈녕부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p> <p>하자, 홍응이 말하기를, “세종의 외손으로는 오직 안상계만이 있으며, 또 학술(學術)도 있어 쓸 만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상계가 등용되지 못한 것은 나의 과실이다. 속히 쓰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6일 (정축) 6번째기사</p>	<p>백관연(百官宴)24074) 을 태평관(太平館)에 내려 주고,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먹이게 하였다. 원일(元日)에 비가 내려 회례연(會禮宴)을 정지했기 때문이다.</p>	<p>○賜百官宴于太平館。 命右承旨權景禧賫宣醞往饋，以元日因雨停會禮宴故也。</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7일 (무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이조(吏曹)에서 임기(任期)가 차지 않은 민이(閔頤)에게 첨정(僉正)을 제수(除授)하고, 또 말을 꾸며 아뢰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滄)가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뜻은, 4품 중에도 마땅히 제수할 만한 자로 다른 사람도 있었</p>	<p>○御經筵。 講訖，大司憲金礪石啓曰：“吏曹以未簡滿閔頤除僉正，又飾辭啓，甚不可。” 上問左右。 領事沈滄對曰：“臺諫之意，四品當授者亦有他人，而必以未簡滿者除授爲不可也。” 上曰：“然則當改正。” 礪石曰：“國家今築諸</p>

는데 굳이 만기가 되지도 않은 자에게 제수하였으므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개정(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지금 모든 포(浦)에 성(城)을 쌓고 있는데, 신은, 수군(水軍)은 마땅히 언제나 해상에 있으면서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성을 쌓기 위해 항상 성중에 있게 되면, 해상의 방비가 소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상도(慶尙道)와 충청도(忠淸道) 두 도는 수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족히 쌓을 수 있지만, 강원도(江原道)에 이르러서는 모든 포의 수군이 적은 데는 혹 60명에 이르기도 하고, 많아도 90명을 넘지 못하며, 또 모두가 빈한하고 잔약하니, 어찌 쌓겠습니까? 각포의 성은 꼭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수군을 설치하여, 언제나 해상에 있으면서 항상 적(敵)을 봄과 같이 하여 대비하고 방어하게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운 본의는 극진하였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전일에 조숙기(曹淑沂)가 여러 성을 쌓기를 청하였기에 모든 대신(大臣)들에게 이를 논의토록 명하신 바, 혹은 조종(祖宗)의 법을 무너뜨리면서 성을 쌓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이르고, 혹은 위태롭고 긴박할 때에는 성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성상께서는 만전(萬全)의 계책을 따르셔서 모두 성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에도 만호(萬戶)의 수군이라 하여 어찌 오랫동안 물 위에만 있을 수 있으며, 또 각포(各浦)에는 육지의 물건도 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혹시 왜구(倭寇)가 갑자기 침입해 와서 그 육지의 물건이 있는 창고를 불사른다면, 만호의 수군은 자기 몸도 보전하기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 적을 막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이 없이는 방비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또 하삼도(下三道)의 해변에는 도서(島嶼)가 서로 보일 만큼

浦之城，臣謂水軍當長在水上，以備不虞，若使築城而常處城中，則水上之備踈矣。且慶尙、忠淸兩道水軍多，猶足以築之，至於江原道諸浦水軍少，或至六十，多不過九十，又皆貧寒殘弱，何以築之？各浦城子，不必築也。”知事李克增曰：“國家設水軍，長在水上，常如見敵，使之備禦，其立法本意，可謂至矣。前日曹淑沂請築諸城，命議諸大臣，或謂壞祖宗之法而築城未便，或謂危迫之時不可無城，上從萬全之計，皆令築城。臣意亦謂萬戶水軍，豈能長在水上？且各浦陸物亦多，藏之庫中，倘有倭寇卒至焚陸物之庫，則萬戶水軍身且難保，何能禦敵？此不可無城以備之。且下三道沿海等處，島嶼相望，倭寇之來，無處不可泊，江原道風浪險惡，又無船泊之處。臣意江原水軍之數，不如下三道，以此也。”上曰：“雖令築城，非欲以水軍長在城中也。”特進官李鐵堅曰：“非徒水軍，水邊居民亦多，若遇倉卒之變，則可入城以避之。”澹曰：“已令築之，豈可或築或否乎？”克增曰：“臣聞北征軍士，齋糧甚少，在途飢死者有之，比及

	<p>인접해 있어, 왜구가 와서 정박(定泊)하지 못할 곳이 없으나, 강원도(江原道)는 풍랑(風浪)이 험악하고 또 배가 정박할 곳이 없습니다. 신은 강원도의 수군의 수효가 하삼도만 못한 것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성을 쌓게 한다 하더라도, 수군을 장구하게 성안에 있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철건(李鐵堅)이 말하기를, “비단 수군만 아니라 물가에 사는 백성도 또한 많이 있으니, 만약 창졸(倉卒)간에 변고를 만나게 되면, 성에 들어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p> <p>하니, 심회(沈澮)가 말하기를, “이미 쌓게 하였는데, 어떻게 혹은 쌓고 혹은 쌓지 않게 하겠습니까?”</p> <p>하였다. 이극증이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북정(北征)한 군사들이 양식을 가지고 간 것이 매우 적어서, 도중에서 굶어 죽은 자도 있었고, 강을 건널 무렵에 이르러서는 강한 바람을 만나서 많이 동사(凍死)하였다 합니다. 앞서 노사신(盧思愼)으로 하여금 군사와 말이 물고(物故)24078) 한 것을 점검(點檢)토록 하셨는데, 노사신이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군왕의 일로 죽은 자는 마땅히 조상(弔喪)하고 구제하여야 하니, 청컨대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 사망자를 점검하고 상고하게 하시고, 쌀을 내려 구제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각도로 하여금 위로하고 구제토록 하였다.”</p> <p>하였다.</p>	<p>越江，適值大風，多致凍死。前者，令盧思愼點檢士馬物故，思愼未及點考而來，死於君事者，所當弔恤。請令諸道監司，點其死亡，賜米以存恤。”</p> <p>上曰：“已令諸道存撫矣。”</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8일</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가 영안도(永安道)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물기를, “내 듣건대, 북정군(北征軍)이 돌아올 때 동상(凍傷)에 걸린 자가 많았다고 하</p>	<p>○御夕講。 都承旨鄭敬祖回自永安道。 上引見，問曰：“予聞北征軍還，多有凍傷，然乎?” 敬祖曰：“臣路見軍</p>

(기묘) 4번째기사

는데, 그러하던가?”  
하니, 정경조가 말하기를,  
“신이 길에서 군사를 보니, 혹은 얼굴이 얼어서 마치 옷[漆]빛 같이 된 자가 있어 겨우 말을 타곤 하였는데, 만약 풍설(風雪)을 만나게 되면, 어찌 살아서 돌아오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백성에게 폐단과 고통을 주는 일들을 물으니, 정경조가 말하기를,  
“육진(六鎭)의 군사들이 장기간 번(番)에 들어 방어하면서도 거의 쉬는 날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몹시 괴로와하여 신에게 이르기를, ‘남쪽의 백성을 옮겨 변방을 채워서 사람과 물자가 번성하게 하면, 서로 번갈아 번에 들고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역(各驛)의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 이극증(李克曾)이 본역(本驛)이 소로(小路)라 하여 그 위전(位田)24080) 과 말의 수요를 감축하였기 때문에 각역이 이로 말미암아 매우 쇠잔해졌는데 방어 군관(防禦軍官)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 만약 근처에 사는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를 알맞게 헤아려서 각역에 주면 거의 조금은 소생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각역을 보니, 몹시 쇠잔해 있는데도 얼음이 얼기에 이르면 역리(驛吏)들이 말을 가지고 장구한 날을 절도사(節度使)의 행영(行營)에 있게되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또 강원도(江原道)의 길을 경유하였는데, 역리들이 이르기를, ‘각역에 공수전(公需田)이 있으나, 그 수입이 심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객(使客)을 지공(支供)할 수 없으므로 역리들이 사곡(私穀)을 가지고 이어 가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전일에는 어염(魚鹽)의 세금으로 각역에 지급하여 공궤(供饋)의 수요(需要)에 보충하게 하였는데, 한 역리가 법을 범한 일이 있어, 이로 인해 드디어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다시 이를 준다면 소생하여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士, 或有面凍如漆, 僅能騎馬, 如遇風雪, 豈得生還?” 上又問民間弊瘼, 敬祖曰: “六鎭軍士, 長番防禦, 殆無休日, 民甚苦之, 謂臣曰徙南民實塞, 使人物繁盛, 則可以相遞番休。各驛之人又曰, 量田巡察使李克增, 以本驛爲小路, 減其位田與馬數, 各驛由是彫殘, 而防禦軍官絡繹不絕, 人不堪其苦, 若以近居各司奴婢量給各驛, 則庶可小蘇。臣觀各驛甚凋殘, 及其氷合也, 驛吏持馬, 長在節度使行營, 其苦不可勝言。臣又路經江原道, 驛吏等謂, 各驛有公需田, 然所收甚少, 凡大小使客, 無以支供, 則驛吏收合私穀以繼之, 何以支當? 向以魚鹽之稅, 給各驛以補供饋之需, 有一驛吏犯法, 因此遂廢, 今若復給, 可以蘇息。臣又聞永安北道, 冬月積雪擁路, 人馬難行, 防禦不至甚繁, 若至二月, 積雪始消, 氷面漸澌, 馬行不跌, 賊來甚易, 防禦不可踈虞。赴防軍士, 解氷前未可遞也。且軍糧今雖不竭, 然恐虛張其數, 臣又聞各官軍糧, 皆久陳不用, 而穩城則一萬三千餘石, 積地已五十餘年, 雖犬馬不食。臣恐此穀雖畜無益於用,

또 듣건대, 영안북도(永安北道)는 겨울철이면 눈이 쌓여 길을 덮기 때문에 사람과 말이 다니기 어려우므로 방어가 몹시 긴급한데 이르지 않는으나, 만약 2월에 이르면 쌓인 눈이 비로소 녹고 얼음이 점차 풀리므로 말이 다녀도 넘어지지 않아서 도적들이 오기가 몹시 용이하여 그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방 군사(赴防軍士)를 얼음이 풀리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군량(軍糧)이 지금은 고갈되지 않았으나, 혹시 그 수효를 헛되게 과장한 것이 아닌가 염려되었습니다. 신이 또 듣건대, 각관(各官)의 군량을 모두 오랫동안 묵혀 두고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온성(穩城)에서는 1만 3천여 섬[石]을 땅에 쌓아 둔 지 이미 50여 년이 되어, 비록 개나 말까지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곡식은 비록 비축해 둔다 하여도 쓰는데 유익함이 없을 듯합니다. 청컨대 해마다 민간에 흠어 주고, 그 반액만 징납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상의(商議)해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정경조가 또 말하기를,  
 “육진(六鎭)의 수령(守令)을 오로지 무신(武臣)으로 임명하게 되면, 절도사(節度使)와 군관(軍官) 등이 모두 한때의 비슷한 무리이므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기 때문에 문신(文臣)과 교차(交差)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신이 비록 활을 능히 쏘다 하더라도 어찌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서 화살과 돌이 날라오는 사이를 출입하겠습니까? 만일 사변(事變)이 있게 되면, 아마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사변이 있으면 마땅히 권도(權道)로 오로지 무신에게 맡길 것이다.”

하였다. 정경조가 또 말하기를,  
 “신이 경흥(慶興)에 이르러서 사로잡혔던 사람 김귀정(金貴精)을 만나보니 그

請逐年散給民間而徵納其半。” 上曰：“其令該司商議施行。” 敬祖又曰：“六鎭守令，專任武臣，則節度使軍官等皆一時儕輩，多有求請，貽弊於民，故交差文臣。然文臣雖能射，豈能被甲帶劍，出入矢石之間，萬有事變，則恐不可用也。” 上曰：“若有事變，則當以權宜專任武臣。” 敬祖又曰：“臣到慶興，見被擄人金貴精，圖其地形以示臣。西有尼麻車，東有弓末車，都骨在其北，南訥在其南。貴精曰：‘都骨與愁州兀狄哈，來寇造山擄去之時，行三日到南訥，遂至都骨。’然則入寇造山者未可的指爲尼麻車也，然尼麻車嘗寇于撫夷等處，城底野人亦曰：‘常時來寇者尼麻車也。’” 上曰：“造山之賊，安知非尼麻車乎？”

	<p>지형(地形)을 그려서 신에게 보여주었는데, 서쪽에는 니마거(尼麻車)가 있었고, 동쪽에는 우미거(汚未車)가 있었으며, 도골(都骨)은 그 북쪽에 있었고, 남눌(南訥)은 그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귀정이 말하기를, ‘도골과 수주(愁州)의 울적합(兀狄哈)이 조산(造山)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노략(擄掠)해 갈 때에, 3일 동안을 가서 남눌에 도착하였고, 드디어 도골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산에 침입한 자가 분명히 니마거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니마거가 일찍이 무이(撫夷) 등지에 침입하여 노략질한 바가 있었고 성저(城底)의 야인(野人)도 또한 말하기를, ‘항상 침입해 오는 자는 니마거였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산(造山)의 도적이 니마거가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월 9일 (경진) 1번째기사</p>	<p>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이 아뢰기를, “경연관(經筵官)이 상(喪)을 당하면 예(例)에 의하여 모두 부의(賻儀)를 보내는 법인데, 이제 이승원(李崇元)이 경연관으로서 졸(卒)하였으니, 역시 부의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승원은 공신(功臣)으로서 경연관이 되었으니, 본래 부의를 보내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은 차등(差等)이 없을 수 없으니, 그 부의를 쌀과 콩 아울러 20석, 정포(正布) 20필, 진말(眞末) 20두, 청밀(淸蜜)24081) 6두, 진유(眞油)24082) 6두로 하고, 이를 영원히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p>	<p>○庚辰/左承旨許琛啓曰：“經筵官遭喪，例皆致賻，今李崇元以經筵官卒，其亦致賻歟？”傳曰：“崇元以功臣爲經筵，自有致賻之例，然堂上、堂下，不可無差等，其賻米豆并二十碩、正布二十四、眞末二十斗、淸蜜六斗、眞油六斗，以此永爲恒式。”</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월 10일</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서릉군(西陵君) 한치례(韓致禮)의 처(妻) 안씨(安氏)에게 부의(賻儀)로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 정포(正布) 20필, 청밀(淸蜜) 10두, 진유(眞油) 2십 두, 진말(眞末) 3석, 종이 1백 권(卷), 유둔(油苴) 3</p>	<p>○傳旨戶曹，賜西陵君韓致禮妻安氏賻米豆并三十碩、正布二十四、淸蜜十斗、眞油二十斗、眞末三碩、紙一百</p>

<p>(신사) 6번째기사</p>	<p>장(張)을 내려주었다. 한치례는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의 아우이며, 안씨는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딸이다.</p>	<p>卷、油菴三張。致禮，仁粹王大妃之弟，安氏，延昌尉孟聃之女也。</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14일 (을유) 3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최부(崔溥)를 인견(引見)하고, 표류(漂流)할 때의 일을 물으니, 최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은 무신년(2409) 정월에 제주(濟州)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상보(喪報)를 듣고 황급(遑急)하게 바다를 건너가다가 밤에 초란도(草蘭島)에서 정박(定泊)하던 중 홀연히 북풍이 일어, 배가 파도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표류하였는데, 중국(中國) 영파부(寧波府) 지경에 이르러서 2척의 배를 만났습니다. 신 등이 목이 몹시 말라서 손으로 입을 가리켰더니, 뱃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아듣고 물 2통(桶)을 주었습니다. 밤 2경에 그 배의 20여 명의 사람이 창(槍)과 칼을 들고 신의 배로 돌입하여 옷가지와 양식을 겁탈(劫奪)하고, 또 닻[碇]과 노(櫓)를 빼앗아 바닷속에 던지고는 신의 배를 끌어다가 대양(大洋) 속에 놓아 버렸습니다. 무릇 5일 동안을 바다 위에 떠있다가, 마침 동풍을 만나서 다시 표류하여 우두(牛頭)의 외양(外洋)에 이르니, 홀연 6척의 선박이 함께 신의 배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배에서 묻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조선국(朝鮮國) 사람으로, 왕명을 받들고 해도(海島)를 순찰하다가 바람을 만나서 표류해 왔는데, 여기가 어느 나라 지경인지도 모른다.’고 하니,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기갈(飢渴)이 너무 심하여 밥을 지으려 한다.’고 사양하였고, 그 사람들도 마침 비를 만나서 모두 선창(船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 등이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비를 무릅쓰고 도망쳐 두 고개를 넘어 한 마을의 신사(神社)로 들어갔더니, 남녀가 몰려와서 보기도 하고, 혹은 장국[米漿]·차[茶]·술 등을 가지고 와서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칼을 찬 자가 많았으며, 징과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격돌하며</p>	<p>○上御宣政殿。引見崔溥問漂流時事。溥對曰：“臣於戊申正月在濟州，聞父喪，遑遽渡海，夜泊草蘭島，北風忽起，隨濤上下，漂至中國寧波府界，遇船二艘。臣等渴甚，以手指口，船人解臣意，遺水二桶。夜二鼓，其船二十餘人，持槍刀突入臣船，劫奪衣糧，又奪碇櫓投海中，拿臣船放之大洋。凡五日浮海上，適遇東風，漂到牛頭外洋，忽見有六船，共圍臣船，一船問：‘爾從何方來?’ 臣答曰：‘我是朝鮮國人，奉王事巡海島，遇風漂來，不知是何國地界也。’ 曰：‘然則爾等可隨我行。’ 臣辭以飢渴太甚，欲做飯。其人等適遇雨，皆入船窓，臣等舍舟登岸，冒雨遁過二嶺投一里社，男女聚觀，或以米漿茶酒饋者，其里人多帶劔擊錚鼓，叫號隳突，擁驅遞送，每里如是。行五十餘里，有官人許清者，來問曰：‘爾是何國人? 何以到此乎?’ 臣曰：‘我乃朝鮮國人，遇風漂到。’ 清饋臣等酒飯，令軍吏疾驅。臣等過二嶺，有佛宇，日將暮，清欲留臣等宿，里人</p>

에워싸 몰다가 보내곤 하였는데, 마을마다 이와 같았습니다. 다시 50여 리(里)를 갔더니, 관인(官人) 허청(許淸)이란 자가 와서 묻기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나는 조선국 사람인데 풍파를 만나서 표류하여 왔다.’고 하였더니, 신 등에게 술과 밥을 먹이고는 군리(軍吏)를 시켜서 신 등을 빨리 몰아가게 하였습니다. 두 고개를 지나가 절이 있었는데 날이 장차 저물려고 하자 허청이 신 등을 여기에 묵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된다고 하자, 허청이 신에게 이르기를, ‘네가 만약 문사(文士)라면 시(詩)을 지어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기에, 신이 즉시 절구(絕句)를 써서 보였는데도 역시 숙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몰려서 한 큰 고개를 넘어 밤 2경(更)에 한 냇물위에 이르니, 피곤하여 걸을 수가 없었고, 따르는 자도 모두 엎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허청이 신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신은 발이 부르터서 촌보(寸步)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관인이 군병을 거느리고 왔는데, 군대의 위엄이 매우 성대하였습니다. <이들이> 신 등을 몰아 3, 4리쯤 가니, 성(城)이 있었고, 성 가운데에 안성사(安性寺)란 절이 있었는데, 신 등을 여기에서 자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 관인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도저소 천호(桃渚所千戶)다. 왜인(倭人)이 지경을 침범하였다는 말을 듣고 군병을 거느리고 왔는데, 허청의 보고로 인해 너희 무리를 몰고 온 것이다. 그러나 진위(眞僞)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마땅히 도저소로 가서 신문(訊問)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신 등을 몰고 20여 리를 갔는데, 한 성(城)에 이르자 숙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처음 도착하여 머물던 곳은 사자채(獅子寨)의 관할 구역인데, 채(寨)를 지키던 관원이 너희들을 왜인(倭人)이라고 속이고 그 머리를 바쳐 공로를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선(倭船) 14척(隻)이 변경을 침범했다고 거짓 보고하고는, 장차 군병을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여 목을 베려던 참이었었는데, 너희들이 배를 버리고

皆以爲不可。 淸謂臣曰：‘汝若文士，可製詩以示之?’ 臣卽書絕句以示，亦不許宿。 又驅過一大嶺，夜二更至一川上，困莫能行，從者亦皆顛仆欲死，淸執臣手以起，臣足繭，寸步不能致。 復有一官人，領兵而至，軍威甚盛，驅臣等可三、四里，有城。 城中有寺曰安性，止臣等宿。 臣問官人則曰：‘桃渚所千戶也。 聞倭人犯境，領兵而來，因許淸之報，往驅爾輩而來，然未知眞僞，明當到桃渚所訊問之矣。’ 翌日，驅臣等行二十餘里，至一城許宿焉。 有一人謂臣曰：‘爾初到泊處，是轄獅子寨之地，守寨官誣汝爲倭，欲獻馘圖功，故詐報倭船十四隻犯邊，將領兵捕斬，爾輩舍舟投入里中，故不得逞其謀。 今把總官將訊爾輩，其知之。’ 辭有錯誤，事在不測，俄而千戶等七、八員鞠臣曰：‘爾倭船十四艘犯邊，今只有一船，其餘十三艘在何地?’ 臣答曰：‘我朝鮮人也，與倭語音有異，衣服殊制，以此可辨。’ 又問：‘倭之善爲盜者，往往有爲朝鮮人服者，安知爾之非倭乎?’ 臣出示印信、馬牌，其馬牌有中朝年號，故始信之。 臣自此乘轎行，



마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계획을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파총관(把摠官)이 장차 신문(訊問)할 것이니, 너희들은 알도록 하고, 말에 착오가 있게 되면, 일이 헤아리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천호(千戶) 등 7, 8인이 신을 국문하기를, ‘너희 왜선 14척이 변경을 침범하였다는데, 지금 다만 한 척만 있으니, 그 나머지 13척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기에, 신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조선 사람이다. 왜인과는 말이 다르고 의복의 제도도 다를 것이니, 이를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왜인으로 도적질을 잘하는 자가 가끔 조선 사람의 복장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왜인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인신(印信)과 마패(馬牌)를 내 보였는데, 그 마패에 중국 연호(年號)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믿어 주었습니다. 신이 여기에서 교자(轎子)를 타고 10여 일간의 노정(路程)을 지나 다시 배를 타고 드디어 중국 서울에 이르니, 황제(皇帝)께서 옷 1벌[襲]을 하사하고, 아울러 고의(袴衣)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광녕(廣寧)으로 돌아가니, 대인(大人)이 옷 1벌을 주면서 말하기를, ‘전하(殿下)를 위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의 또 그 백성들의 가옥과 성곽(城郭), 남녀의 의복을 물었다. 최부가 말하기를,

“대강(大江)24092) 으로부터 남쪽 소(蘇)·항(杭)24093) 사이는 거대한 가옥들이 담을 이어서 즐비하게 있었는데, 대강으로부터 북쪽은 서울에 이르도록 인민의 생활이 그다지 번성하지 못하였고 간혹 초가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부(官府)의 성(城)은 역시 모두 높이 쌓았고, 성문의 누각(樓閣)은 혹 2층, 3층이 되는 것도 있었으며, 문밖에 다 옹성(擁城)이 있었고, 옹성 밖에 또 분장(粉牆)이 있어서, 무릇 3중(重)이나 되었습니다. 남녀의 의복은, 강남(江南)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게 큰 검정색 유의(襦衣)와 고의(袴衣)를 입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모두 옷깃을 외로 여미고 있었으며, 영파부(寧波府) 이남의 부인(婦

過十日餘程，始乘船，遂至帝都。帝賜衣一襲，並給衣袴。還到廣寧，大人贈衣一襲曰：‘爲殿下與之。’”上又問民居城郭、男女衣服。溥曰：“大江以南，蘇、杭之間，巨家大屋，連牆櫛比；大江以北至帝都，人烟不甚繁盛，間有草廬，官府之城，亦皆高築，城門之樓，或有二層、三層者。門外皆有擁城，擁城之外，又有粉牆(几) [凡]三重，男女衣服，江南人皆穿寬大黑襦袴，女皆左衽。寧波府以南，婦人首飾圓而長；寧波府以北，圓而銳。”命賜溥襦衣及靴曰：“溥跋涉死地，亦能華國，故賜之。”

	<p>人)의 수식(首飾)은 등글면서 길었고, 영과부 이복은 등글고 뽀족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최부에게 유의(儒衣) 및 가족신을 내리고 말하기를, “최부가 사지(死地)를 밟아 헤치고 다니면서도 능히 나라를 빚냈기 때문에 주노라.” 하였다.</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16일 (정해) 6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 전교하기를, “소를 도살(屠殺)한 사람을 추쇄(推刷)하여 전가(全家)를 절도(絶島)로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刑曹曰：“推刷屠牛人，全家徙絶島。”</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17일 (무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중을 선발하는 법은 마땅히 혁파해야 할 것이나, 만약 갑자기 혁파하지 못한다면, 청컨대 예조 낭청(禮曹郎廳)을 보내어 선발을 감시하는 것은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시독관(侍讀官) 강겸(姜謙)이 말하기를, “《대전(大典)》에 구애되어 도승(度僧)의 법을 고치지 않으시니, 지금 이때를 잃고 고치지 않으면, 어느때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의(執義) 이예건(李禮堅)은 아뢰기를, “예조의 낭청(郎廳)이 석서(釋書)를 모르니, 비록 시험을 감시하게 한다 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또 비록 정선(精選)하게 한들, 국가에 무슨 보익(補益)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을 선발하는 것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입니다. 또 주지(住持)로 하여금 사찰(寺刹)을 지키게 한다면 시험 선발하여 맡기지 않을 수 없고, 시험해 취할 것 같으면 반드시 외람(猥濫)된 폐단이 있을 것이니, 낭관(郎官)</p>	<p>○御經筵。講訖，獻納鄭鐸啓曰：“選僧之法，在所當革，若不遽革，請勿遣禮曹郎廳監選。”侍讀官姜謙曰：“拘《大典》，不改度僧之法，失今不改，則何時可改乎？”執義李禮堅啓曰：“禮曹郎廳，不知釋書，雖使監試何益？且雖使精選，亦何補國家乎？”上問左右。領事尹弼商對曰：“選僧既是祖宗故事，且以住持守刹，則不可不試取而任之，若試取，則必有猥濫之弊，不可不遣郎官也。”上曰：“若火其廬，人其人則已矣，不然，禮官不可不遣也。”特進官趙益貞曰：“祖宗朝遣內直別監試取。其遣禮曹郎官，未知始自何時。大抵爲僧者多，故國家軍額日減，誠非細故也。”弼商曰：“內直別監試取，有猥濫之弊，不得已遣禮官</p>

	<p>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만약에 그 짐을 불사르고 사람도 불살라 버린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관(禮官)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익정(趙益貞)이 말하기를,</p> <p>“조종조에서는 내직 별감(內直別監)을 보내어 그 시험해 취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였는데, 예조 낭관을 보낸 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중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드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p> <p>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p> <p>“내직 별감을 보내어 시취(試取)하게 하면 외람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예조의 관원을 보낼 뿐입니다.”</p> <p>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p> <p>“강원도(江原道)는 인민이 희소한데, 금강산(金剛山)과 오대산(五臺山)에는 사찰(寺刹)이 대단히 많고, 여기에 살고 있는 중의 무리가 몇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니, 만약 이들로 충군한다면 어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p> <p>하자, 조익정은 말하기를,</p> <p>“강원도는 인민이 영세(零細)하여 겨우 1만 2천여 호이며, 한 도(道)의 백성을 다하여도 다른 도의 한 거읍(巨邑)을 당하지 못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p> <p>하였다. 강겸은 말하기를,</p> <p>“강원도는 군수(軍需) 물자가 지극히 적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산사(洛山寺)와 유점사(楡岾寺) 등의 사찰에다가 국가에서 식염(食鹽)을 주고 있는데 그 수효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으로 곡식을 사서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면 어찌 풍족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또 낙산사는 사염분(私鹽盆)24098) 도</p>	<p>耳。” 謙曰：“江原道人物鮮少，而有如金剛山、(五)臺山，寺刹甚多，所居僧徒，不知其幾，若以此充軍，豈不有益乎？” 益貞曰：“江原道人物凋殘，僅一萬二千餘戶，舉一道之民，不敵他道一巨邑。 此無他， 爲僧者多故也。”</p> <p>謙曰：“江原道軍需至少， 不可不慮也。 洛山、楡岾等寺， 國家給食鹽， 其數甚多， 以此貿穀補軍需， 豈不足用？ 且洛山寺私鹽盆亦多， 不須官給也。” 益貞曰：“誠如謙所啓， 以應給洛山等寺之鹽， 貿穀以裨軍需可也。”</p> <p>上曰：“自祖宗朝給之已久， 今不可遽革。” 禮堅曰：“爲僧者， 但書四祖呈兩宗， 由是多僞， 須令受本官無役公文， 方給度牒， 則爲僧者必不多矣。 且僧徒雖持僞牒， 守令何以知之？ 其令禮曹考楡岾修理都監度牒成給年月， 移于諸道， 則可辨其眞僞矣。” 上曰：“可。 且官差雖不得上寺， 然僧徒必有下山之時， 此時推刷， 則無牒之僧可得矣。” 謙曰：“大抵江原諸邑， 不產大口魚， 惟杆城一邑獨產， 故諸邑不能自備， 皆貿易以進， 請以所產之物定貢。” 益貞曰：“本非不產也， 產不多</p>
--	---	--

	<p>또한 많으니 관에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p> <p>하고, 조익정이 말하기를,</p> <p>“진실로 강겸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낙산사 등의 사찰에 줄 소금을 곡식으로 바꾸어서 군수 물자에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조종조로부터 주어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이제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다.”</p> <p>하였다. 이에견이 말하기를,</p> <p>“중이 되는 자가 단지 사조(四祖)24099) 만을 써서 양종(兩宗)에 바치는데, 이로 말미암아 위조하는 사례가 많으니, 모름지기 본관(本官)의 정역(定役)이 없다는 공문을 받게 한 뒤에 비로소 도첩(度牒)을 주면, 중이 되려는 자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의 무리가 비록 위첩(僞牒)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수령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조로 하여금 유점사(楡岾寺)의 수리 도감 도첩(修理都監度牒)을 내어준 연월(年月)을 상고하여 각도(各道)에 이첩(移牒)하게 하면 그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옳다. 또 관차(官差)가 비록 절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중들이 반드시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 추쇄하면 도첩 없는 중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p> <p>“대저 강원도의 각 고을에서는 대구어(大口魚)가 생산되지 않고 오직 간성(杆城)한 고을에서만 나기 때문에 여러 고을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없어 모두 무역하여 바치고 있습니다. 청컨대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공물(貢物)을 정하게 하소서.”</p> <p>하니, 조익정이 말하기를,</p>	<p>也, 故高城、杆城、通川等官, 質於永安道; 平海、江陵、蔚珍等官, 質於京中。” 上曰: “無乃已問於諸道而定貢乎? 魴魚不產於安邊, 故亦減之矣。其更考產、不產。”</p>
--	--	---

	<p>“본래 생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성(高城)·간성·통천(通川) 등의 고을에서는 영안도(永安道)에서 무역해 오고, 평해(平海)·강릉(江陵)·울진(蔚珍) 등의 고을에서는 서울에서 무역해다가 바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미 모든 도(道)에 물어서 공물을 정하지 않았던가? 자라[魷魚]도 안변(安邊)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감(減)하였다. 생산되고 생산되지 않는 것을 다시 상고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월 18일 (기축) 1번째기사</p>	<p>성균관(成均館)에서 하사받은 쌀과 베를 가지고 술자리를 배설하여 유생(儒生)들을 먹이고 또 모든 재상(宰相)도 와서 참석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영돈녕(領敦寧) 이상과 관각 당상(館閣堂上),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가서 참석하라고 명하고,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에게 명하여, 선온(宣醞)24100) 50병(瓶)을 싸가지고 가서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재상(宰相)과 유생(儒生)들에게까지 내리도록 하였다.</p>	<p>○己丑/成均館以受賜米置酒饋儒生, 又請諸宰來參。 上命議政府、六曹、漢城府、領敦寧以上及館閣堂上、弘文館、藝文館官員往參。 命都承旨鄭敬祖、左承旨許琛、右承旨權景禧, 賫宣醞五十瓶, 賜參宴諸宰, 下至儒生。</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월 21일 (임진)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p> <p>“우리 나라에 계속 흉년이 들어서 국고(國庫)의 비축이 넉넉하지 못하니, 청컨대 사사(寺社)의 전지(田地)를 혁파(革罷)하여 군수(軍需)에 보충하도록 하소서. 또 우리 나라 초기에는 다만 3가지 공신(功臣)만 있었는데 지금은 8가지 공신이 있고 모두 사전(賜田)24115) 이 있으며, 조신(朝臣)은 녹(祿)을 받고 또 직전(職田)24116) 이 있습니다. 신이 전에 승지(承旨)가 되어 이 폐단을 진달(進達)하여, 공신의 전지는 전량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뒤에 그 불가함을 말한 자가 있어, 다시 옛날대로 환원하였습니다. 청컨대 직전을 혁파하고 공신전(功臣田)도 반액의 세(稅)를 거두어서 군수를 보충하</p>	<p>○御經筵。 講訖, 大司憲金礪石啓曰: “我國連年凶荒, 國廩不裕, 請革寺社田以補軍需。 且國初但有三功臣, 今有八功臣, 皆有賜田。 朝臣受祿, 又有職田。 臣曾爲承旨, 陳此弊。 功臣田不許全收, 其後有言其不可者, 乃復其舊。 請革職田, 收功臣田半稅, 以補軍需。” 上曰: “功臣田, 所以重功臣也。” 仍問左右。 領事李克培對曰: “此事至重, 不可輕議, 宜令該司議</p>

	<p>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공신전(功臣田)은 공신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p> <p>하고, 이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여 말하기를,</p> <p>“이 일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서 가볍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해사(該司)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다. 김여석이 또 아뢰기를,</p> <p>“강원도(江原道) 연해(沿海)의 백성들이 소금을 구워서 유점사(楡岾寺) 등 절에 바치고 있는데, 그 노고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중의 무리도 스스로 구워 먹을 수 있으니, 백성을 부려서 공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 소금으로 곡식을 무역(貿易)하여 군수 물자에 보충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금 말한 것은 모두 조종(祖宗)의 옛법이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송영(宋瑛)이 아뢰기를,</p> <p>“국가에서 비록 학교(學校)를 중히 여기고 있으나, 지방의 유생(儒生)들은 학문에 뜻을 두는 자가 적으니, 청컨대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모든 고을을 순행하며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겸하여 제술(製述)을 시험하여 만약 뛰어난 자가 있으면 갖추어서 기록하여 계문(啓聞)케 한 뒤에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파견해 복시(覆試)하여 그 진위(眞僞)를 시험케 하고, 과연 특이한 재예(才藝)가 있다면 그 소재지의 수령(守令)과 교관(敎官)이 상전(賞典)을 논하여 권면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를 좌우에 물었다.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여 말하기를,</p> <p>“따로 조관(朝官)을 보낸다면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p>	<p>啓.” 礪石又啓曰：“江原沿海之民，煮鹽輸納楡岾等寺，不勝其勞，僧徒自可煮食，不宜役民供給。請以此鹽貿穀，補軍資。” 上曰：“今所言皆祖宗舊法，不可輕變。然令該司議啓可也。” 特進官宋瑛啓曰：“國家雖重學校，然外方儒生志學者少。請令諸道監司，巡行諸邑，講經書兼試製述，若爲異等者，則錄啓聞後，遣弘文館員覆試，以驗眞僞，果有異才，所在守令、敎官，論賞以勸之。” 上問左右。克培對曰：“別遣朝官，似有弊。” 特進官李則曰：“全羅道儒生或有志學者，忠清道則絕無。然遣朝官考試，不可也。” 礪石曰：“江原道江陵人皆好學，登科者比比有之。” 瑛曰：“南陽府使朴處綸，能訓誨諸生，以至成就。臣意雖不遣朝官，下書諭監司，使之勸獎爲便。” 上曰：“其下書諸道觀察使，使之講書製述，其優等者并試券以啓。”</p>
--	--	--

	<p>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칙(李則)은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의 유생은 혹 학문에 뜻을 둔 자가 있으나, 충청도(忠淸道)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 관원을 파견하여 고시(考試)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김여석은 말하기를,  “강원도 강릉은 사람들이 학문을 좋아하고, 등과(登科)한 자도 자주 있습니다.”  하고, 송영은 말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처륜(朴處綸)이 제생(諸生)을 잘 가르쳐서 성취하게 하였으니, 신은 비록 조정 관원은 보내지 않더라도 글을 내리시어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권장토록 하는 것이 편의(便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려 책을 강(講)하고 글을 제술(製述)하게 하여, 그 우등(優等)에 뽑힌 자는 시권(試券)도 아울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25일  (병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금년 과거(科擧)는 3월에 시작하여 5월에는 마땅히 끝내야 하는데, 한창 농사철을 당하여 외방(外方)의 유생(儒生)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는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기일(期日)을 단축해서 시취(試取)하거나 그렇게 않으면 오는 가을로 물려서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는 과거를 봄에 시험해서 마쳤는데, 혹 가을로 물리는 것은 근일의 법입니다. 마땅히 올봄에 시험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p>	<p>○御經筵。講訖，獻納鄭鐸啓曰：“今年科擧，始於三月，至五月當畢，正當農時，外方儒生贏糧往來有弊，請刻期試取，不然，可退定來秋。”上問左右。領事李克培對曰：“往者，科擧畢試於春，或退于秋，近日之法也。當於今春畢試。”上曰：“可。”參贊官安琛啓曰：“臣以宣慰高山里將士往平安道，適金主成可報虜欲入寇高山里等處，都元帥李克均即日馳赴待變，防禦</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신(臣)이 고산리(高山里)의 장사(將士)를 선위(宣慰)하려고 평안도(平安道)에 갔더니, 마침 김주성(金主成可)가 통보하기를, ‘오랑캐가 고산리 등지로 침입해 노략질하려고 한다.’고 하므로, 도원수(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당일에 달려가서 사변 발생에 대비하면서 방어의 제반 일을 지극히 주밀(周密)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적이 비록 들어온다 하더라도 방어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단지 본도(本道)는 군자(軍資)가 넉넉하지 못한데 이제 대군(大軍)이 가서 먹고 있어 이것이 염려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이 풍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면포(綿布)를 보내어서 양곡(糧穀)을 무역하여 군자를 보충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를 죄우에게 물었다. 이극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침의 말이 옳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적들이 반드시 노략질하러 올 것인데, 다만 근자에 변고의 보고가 없을 뿐이며,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도 또한 모든 성(姓)의 울적함(兀狄哈)들이 장차 큰 병력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도원수(都元帥)가 만약 변방의 방비를 엄중하게 한다면, 적들이 비록 침입하더라도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p> <p>하였다. 이때 허종(許琮)이 관찰사로 있었으니, 이는 곧 북정(北征) 때의 도원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사리(事理)로 본다면, 적(賊)들이 반드시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정(北征) 때 집을 모두 불태웠으므로 저희들도 집을 짓고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니, 어느 겨울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은 미리 갖추어</p>	<p>諸事，至爲周備，賊雖入寇，何難禦之？但本道軍資不裕，今又大軍就食，是可慮也。今幸豐稔，請依前例，送絁布，質穀以補軍資。”上問左右。克培對曰：“安琛言是。”上曰：“賊必入寇，但近無報變，永安道觀察使亦啓諸姓兀狄哈，將大舉入寇，然豈知眞也？都元帥若嚴邊備，賊雖入寇，何慮之有？”時許琮爲觀察使，乃北征時都元帥也。克培曰：“以事觀之，賊必報怨，然北征時焚蕩室廬，彼亦造家營產，何暇出來？然防禦諸事，不可不預備也。”上曰：“防禦在都元帥措置，當更加嚴備，不可頃刻少弛也。”克培曰：“人情久則必懈，請更下諭，使益嚴備，常如見敵。”上曰：“然。”</p>
--	--	--



	<p>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어는 도원수의 조치(措置)에 달려 있을 것이나, 마땅히 엄한 준비를 다시 더하여 잠시라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오래 되면 반드시 해이해지게 마련입니다. 청컨대 다시 유지(諭旨)를 내리셔서, 더욱 엄히 대비하여 항상 적(敵)을 보는 것같이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27일  (무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술자리를 선정전(宣政殿)에 베풀고 야인(野人) 동상시(童尙時) 등 16인을 접견(接見)하였는데, 승지(承旨) 허침(許琛)과 권경희(權景禧)에게 명하여 야인들에게 옥배주(玉杯酒)를 나누어 주게 하고,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북정(北征)에 종군(從軍)한 공로가 있으니, 마음껏 취하고 배불리 먹도록 하라.”  하니, 동상시가 대답하기를,  “비록 중국 병사(兵士)라 하더라도 저쪽 땅을 밟은 적이 아직 없었는데, 조선(朝鮮) 병사가 유독 능히 왕래하였으니, 전하(殿下)의 성덕(盛德)이 마땅히 천하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어 물품을 차등을 두어 내렸고, 또 관직(官職)으로 포상(褒賞)하라고 명하였다.</p>	<p>○戊戌/上置酒宣政殿，接見野人童尙時等十六人。命承旨許琛、權景禧分賜野人玉杯酒。傳曰：“汝等從征有勞，可醉飽。”尙時對曰：“雖中朝之兵，未涉彼土，而朝鮮兵獨能往來，殿下盛德，當滿天下。”賜物有差，又命賞職。</p>
<p>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29일  (경자) 5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愨) 등이 차자(笏子)를 올려 선승(選僧)·도승(度僧)의 〈법과〉, 계문(啓聞)한 뒤에 중을 수금(囚禁)하고, 사찰(寺刹)에 소금과 쌀을 지급하는 등의 법을 폐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司諫院大司諫尹愨等上笏子，請革選僧度僧啓聞囚僧及寺刹給鹽米等法。不聽。</p>

성종 26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월 29일  
(경자) 6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침(安琛)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현성(賢聖)한 군왕은 대대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도(道)가 크게 행하여지  
 는 것은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殿下)께  
 서는 즉위(即位)하신 이후로 어진이를 존경하시고 도(道)를 즐기시며 선(善)을  
 좋아하시는 것을 게을리 아니하셨으니, 들으시는 바는 다 바른 말이었고 보시  
 는 바는 다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우치거나 방탕(放蕩)하거나 간사  
 (奸邪)하거나 편벽(偏僻)된 말들을 물리치시고 그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  
 시었으니, 전하께서는 이단(異端)에 미혹(迷惑)되지 않으셨다고 이를 만합니  
 다. 그러나 고쳐야 할 법을 고치지 않고 버려야 할 폐단을 버리지 않으시니,  
 양종(兩宗)과 원각사(圓覺寺)가 학궁(學宮)과 한 도성(都城) 가운데에 섞여 있  
 습니다. 그리고 내불당(內佛堂)·복세암(福世菴)·연굴사(演窟寺) 등 사찰의 중에  
 게 밥을 먹이는 비용 등이 소모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 시  
 험하는 법은 문무(文武)의 제과(諸科)와 함께 예조(禮曹)에 속하고 있으며 주  
 지(住持)의 선임도 공경(公卿)의 제배(除拜)와 더불어 전조(銓曹)에 같이 맡겨  
 져 있습니다. 또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하며, 사찰의 수색을 금지하는  
 것 등은 모두 정치를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지만, 중에게 도첩(度牒)을  
 지급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이르러서는 그 해독이 더욱 심한 바가 있습니다.  
 군졸(軍卒)은 나라의 조아(爪牙)로서 그들에게 의탁하여 안으로 시위(侍衛)하  
 고 밖으로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대저 위험한 곳을 버리고 평안한  
 데로 나아가며, 편한 것을 좋아하고 수고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상  
 정(常情)입니다. 궁노(弓弩)·시석(矢石)의 위태함이 어찌 임금(琳宮)24133) 과  
 범우(梵宇)24134) 안의 평안함만 하며, 풍상(風霜) 속에서 변방을 방어하는  
 소고로움이 어찌 밭 갈지 않고 먹고 배 짜지 않고 입는 안일함만 하겠습니  
 까? 한집안이 함께 일하여 몇 년만 근로(勤勞)하면 족히 30필(匹)의 베를 마  
 려하므로, 이를 관(官)에 바치고 그 첩(牒)24135) 만 받게 되면 베개를 높이

○弘文館副提學安琛等上疏曰：  
 賢聖之君，世不常有，道之大行，必待  
 其人。殿下即位以來，尊賢樂道，好  
 善不倦，所聞皆正言，所見皆正事，斥  
 去(波) [諛] 淫(耶) [邪] 僻之說，使  
 不得入於其間，殿下之於異端，可謂不  
 惑矣。然而法可改而未改，弊可祛而  
 未祛，兩宗圓覺與學宮參錯於都中，內  
 佛堂、福世菴、演窟等寺飯僧之資，糜  
 費不貲，而選試之法與文武諸科，竝屬  
 於禮曹，住持之選與公卿除拜，同(住)  
 [任] 於(詮) [銓] 曹，與夫啓聞囚禁  
 之徒，搜索寺刹之禁，皆妨政害治之大  
 者。至於度僧一事，其害滋甚。軍  
 卒，國之爪牙，所恃以衛內而禦外者  
 也。夫去危就安，好逸惡勞，常人之  
 情，弓弩矢石之危，孰若琳宮梵宇之  
 安；風霜戍禦之勞，孰若不耕而食，不  
 織而衣之爲逸？若一家共作勤力，數年  
 足以辨三十匹之布，納於官而受其牒，  
 則高枕而臥，浪度歲月，爲終身無役之  
 民，携妻挈子，醉濃飽鮮，無不如意，  
 其爲計豈不便且易也？是則桑門之法，  
 適足爲奸猾之氓、逃賊之淵藪，僧徒繁  
 而軍額減，軍額減而邊備踈，備邊踈而

베고 누워서 세월을 허랑(虛浪)하며 보내어도 평생 동안 노역(勞役) 없는 백성이 되어, 처자(妻子)를 데리고 진한 술에 취하고 신선한 고기를 배불리 먹는 등 뜻과 같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계책이 어찌 편하고도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상문(桑門)의 법이니 간사한 백성들이 부역을 도피하는 연수(淵藪)로 만드는 데 꼭 알맞은 것입니다. 중의 무리가 번성하면 군액(軍額)이 줄어들고, 군액이 줄어들면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며,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면 국세(國勢)가 허약하게 될 것이니, 어찌 몹시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자에 변방에 근심할 만한 일이 없어서 조야(朝野)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병란을 보지 못하였는데, 전일 북정(北征)의 거사 때에 날이 바야흐로 매우 추웠음에도 수만의 무리가 궁벽하고 거친 벌판에서 노숙(露宿)하였으므로 향리(鄉里)로 살아 돌아온 자에게 친척이 함께 치하하였으니, 백성들이 더욱 더 병졸이 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런 것이며 중이 되는 것이 가장 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일 정전(丁錢)을 바치는 자가 전보다 몇 배나 늘어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백성들의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에서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제부터 아버지는 그 자식을 가르치고 형은 그 아우를 가르쳐서 전답과 집과 소까지 팔아 정전을 마련하여 중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비록 날마다 천백(千百)에 이른다 해도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끝내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점차 다스릴 망정 갑자기 개혁할 수 없다고 이룬다면, 바야흐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오히려 성상께서 몸소 바른길로 인도하시는데 힘입어서 공경 대부(公卿大夫)가 거의 향방(向方)을 알고 있기에, 상례(喪禮)를 행하는 집에서는 부도(浮屠)를 쓰는 자가 드물고, 도(道)를 담론(談論)하는 선비는 석(釋)·로(老)24136 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니, 이때를 타서 고치지 아니하면 끝내 고칠 만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무릇 그 화환(禍患)을 없애지 않고 그 화환이 스스로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國勢弱，豈非可懼之甚耶？邇來邊境無虞，朝野寧謐，民不見兵，日者北征之舉，時方沍寒，數萬之衆，暴露窮荒，生還鄉里者，親戚共賀，人民益知爲兵之最苦，爲僧之最安矣。似聞，近日丁錢之納，倍蓰於前，民情好惡，於茲可驗。竊恐自今，父教其子，兄教其弟，賣田廬牛犢，備丁錢而願爲僧者，雖日至千百，此法不改，則終不能禁也。借曰：“治之以漸，不可遽革。”則方今之時，尙賴聖上躬率，以正公卿大夫，庶幾知所向方，行喪之家，鮮用浮屠；談道之士，恥言釋、老，不因此時而改之，則終無可改之時矣。夫不除其患而待患之自無，是猶惡火之燎原，不加撲滅而謂火之自滅，寧有是理？議者之言曰：“祖宗之法，不可輕改。”又曰：“度人爲僧，乃所以禁絕爲僧之路。”其彌縫傳會杜群下之言，而堅殿下之意益甚，彼豈非讀聖人之書，學聖人之道者耶？身居廊廟，職在輔佐，以道事君，不宜如是。竊聞，治以道同，政由俗革，帝王之法，因時制宜，此古今之通義也。且以近日之事言之，乙巳《大典》，凡良賤之條，

불길이 원야(原野)를 태우는 것을 미워하면서도 박멸(撲滅)을 가하지 않고 불이 스스로 멸할 것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고, 또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도첩(度牒)을 주어서 중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중이 되는 길을 금절(禁絶)하는 길이다.’라 고 하니, 그 미봉(彌縫)하고 부회(傳會)하는 것이 여러 신하들의 말을 막고 전하의 뜻을 굳게 함이 더욱 심합니다. 저 사람들이라고 어찌 성인(聖人)의 글을 읽지 아니하였으며, 성인의 도(道)를 배우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 몸이 낭묘(廊廟)24137) 에 있고, 직책이 보좌(補佐)하는 자리에 있으니, 도(道)로서 임금을 섬겨야 할 것이지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옥이 듣건대 ‘다스림이란 도(道)가 같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정사란 속(俗)을 혁파함으로써 비롯된다.’고 하니, 제왕(帝王)의 법은 그 때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고금(古今)의 통의(通義)입니다. 또 근일의 일로 말씀하더라도 을사년24138) 《대전(大典)》의 범양천(凡良賤)이란 조목(條目)에, ‘제도(制度)는 그 문(文)이 말(末)이 되니, 시세(時勢)와 인정(人情)에 따라 또한 변통(變通)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유독 이 도승(度僧) 등의 일만은 금석(金石)같이 지키고 사시(四時)같이 행하시니, 전하께서는 <조종의> 뜻을 이어서 왕업을 전해 가는 효(孝)가 된다고 여기십니까? 국가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도첩을 주어 중이 되는 것을 허가해 놓고 그 도첩이 없는 자를 금한다면, 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도첩을 받고 중이 되도록 권장하는 것이니, 이것이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도록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중들의 도첩 없는 것을 금하는 것이 어찌 그 도첩을 받은 자까지도 아울러 금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신들이 비록 어리석긴 하나 어찌 감히 고금(古今)을 살펴보지 않으며 사의(事宜)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한갓 중정(中正)을 넘고 시속(時俗)을 놀라게 하는 논의를 주장

制度文爲之末，因時勢人情，亦多有變而通之者。獨此度僧等事，守之如金石，行之如四時，以爲殿下繼志述事之孝乎？國家既許度人爲僧，而禁其無度牒者，是則勸齊民受度牒而爲僧也。是何異教猱以升木也？禁僧徒之無度牒，曷若竝與其受度牒者而禁之耶？臣等雖愚，亦豈敢不揆古今，不度事宜，而徒爲過中駭俗之論，以變先王之法乎？誠以聖明之主罕出，而可爲之時難逢，今而不改，後誰望焉？惓惓之懷，自不能已。古者，國有事，謀及卿士，謀及庶人，今臺諫侍從皆曰可改，而宰輔之議，尙亦未同，願以臣等之言，廣議于朝，俯採公論，廓揮剛斷，命改給度，啓囚選試等諸條，使人心益正，教化益明，軍額益增，邊備益固，吾道幸甚，國家幸甚。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

	<p>하여 선왕(先王)의 법을 변경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실로 성명(聖明)하신 임금의 나심은 드물고 할만한 때를 만나기는 어려우니, 지금 고치지 아니하면 뒤에 누구에게 바라겠습니까? 이 권권(惓惓)24139) 한 회포를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나라에 일이 있으면 그 대책을 경사(卿士)와도 의논하고 서인(庶人)과도 의논하였습니다. 지금 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이 모두 개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도 재보(宰輔)24140)의 논의만 아직 같지 않으니, 원컨대 신 등의 말을 가지고 널리 조정에서 의논하게 하시어 굽어 공론(公論)을 채택하시고 강(剛)한 결단을 내리시어, 도첩을 주는 것과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하는 것과 시험해 선발하는 모든 조항(條項)을 고치도록 명하시어 인심이 더욱 바르고 교화(教化)가 더욱 밝아지며 군액(軍額)이 더욱 증대하고 변비(邊備)가 더욱 공고(鞏固)하게 되도록 하시면, 우리의 도(道)가 더욱 다 행할 것이고 국가도 더 다행할 것입니다.”</p> <p>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2월 1일 (임인) 2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도원수(都元帥)가 가지고 간 약이(藥餌)24147) 로는 반드시 장수와 군사들에게 두루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데리고 간 의원(醫員)이 어떻게 사람마다 직접 치료(治療)할 수 있겠는가? 내의원(內醫院)으로 하여금 상처를 치료할 약(藥)을 조제(調劑)하여 방서(方書)와 함께 양계(兩界)24148)의 여러 진(鎭)에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曰：“都元帥賚去藥餌，必不得遍及將士，且帶行之醫，豈能人人親自治療乎？其令內醫院劑治療之藥，并方書送于兩界諸鎭。”</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2월 5일 (병오) 3번째기사</p>	<p>지경연사(知經筵事) 어세겸(魚世謙)의 어미가 죽으니, 임금이 듣고 부물(賻物)로 정포(正布) 15필, 쌀·콩 아울러 15석, 진말(眞末) 20두, 기름·꿀 각각 6두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는데, 경연관(經筵官)의 부모상(父母喪)에 부의(賻儀)를 주는 것은 통례(通例)이었다.</p>	<p>○知經筵事魚世謙母亡。上聞之，命賜賻正布十五匹、米豆菽十五碩、眞末二十斗、油蜜各六斗，經筵官父母喪給賻例也。</p>
<p>성종 262권, 23년</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민휘(閔暉)가 아뢰기</p>	<p>○戊申/御經筵。講訖，持平閔暉啓</p>

<p>(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7일 (무신) 1번째기사</p>	<p>를,  “내수사(內需司)의 종은 본래 잡역(雜役)을 면제하였었는데, 이제 또 부역(賦役)을 덜어 주었으니, 같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노고(勞苦)함과 안일(安逸)함이 균등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정언(正言) 조형(趙珩)이 말하기를,  “모든 백성은 진실로 부역을 균등하게 해야 마땅한데, 유독 내수사의 종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수사에서 지금 영선(營繕)을 관장(管掌)하면서 바야흐로 그 종들을 역사(役使)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영구한 법이 아니다.”  하였다. 민휘(閔暉)가 말하기를,  “만약 내수사 종들의 부역(賦役)을 줄인다면 반드시 다른 백성들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lt;이를&gt;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다만 영선(營繕)할 때에만 덜어줄 뿐이라고 하나, 이 역사(役事)도 국가(國家)의 일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내수사의 종들을 부리지 말고 일체 선공감(繕工監)에 위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모든 군(君)과 옹주(翁主)의 집은 칸수[間數]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體制)가 광활(廣闊)하고 또 높고 장려하여 공역(功役)이 지극히 무거우며 큰 재목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가옥은 낮고 작아야 먼 훗날까지 지탱할 수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가옥의 체제를 높고 장려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나는 본래 장려(壯麗)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창경궁(昌慶宮)을 영선(營繕)하고 남은 재목을 써서 짓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이다.”</p>	<p>曰：“內需司奴子，本除雜役，而今又蠲賦，同一國民而勞逸不均。”正言趙珩曰：“凡民固當均役，內需司奴子獨免可乎？”上曰：“內需司今掌營繕，方役其奴，故不得不爾，非永久之法也。”暉曰：“若蠲內需司奴子賦役，必移於他民矣。”上問左右。領事洪應對曰：“只蠲營繕時耳，然此役亦國家事也。臣意勿役內需司奴子，一委繕工監可也。且諸君、翁主家舍，間數有限，故體制廣闊而高壯，其功役至重，巨材亦不易得，凡家舍低小者，可以經遠。請家舍體制，勿使高壯。”上曰：“然，予非固欲壯麗也。用昌慶宮營繕餘材構之，故如此耳。”特進官鄭佶曰：“家舍高壯，則必不經遠，王子、王孫，猶可持守，至于後世，則持守亦難。”特進官李則曰：“內需司奴婢，本甘露寺奴婢也，屬內需司已久，至今豈有漏丁乎？但內需司無雜役，故公私賤苦其役重，投屬者頗多。”佶曰：“誠如則所啓，私賤苦其役重，多投屬內需司，一錄正案，其主不得告爭，抱冤者多。請立開通之法。”應曰：“錄正案者，不得告爭，已有立</p>
--	---	---

	<p>하자, 특진관(特進官) 정괄(鄭括)이 말하기를,  “집이 높고 장려하면 반드시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왕자(王子)와 왕손(王孫)은 그래도 유지하여 지킬 수 있겠지만, 후대에 이르면 유지해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척(李則)이 말하기를,  “내수사의 노비(奴婢)는 본래 감로사(甘露寺)의 노비였는데, 내수사에 예속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누락된 장정이 있겠습니까? 단지 내수사는 잡역(雜役)이 없기 때문에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그 노역(勞役)이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 투속(投屬)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p> <p>하였는데, 정괄(鄭括)이 말하기를,  “진실로 이척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사천(私賤)이 그 노역의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 내수사에 많이 투속(投屬)하고 있는데, 한 번 정안(正案)에 기록하게 되면 그 주인이 고하여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품은 자가 많으니, 청컨대 개통(開通)하는 법을 세우게 하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정안(正案)에 기록된 자는 고하여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세워진 법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관리(官吏)와 부동(符同)하여 투속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자는 주인이 고하여 다룰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사한 무리가 비록 내수사에 투속(投屬)하더라도 만약 속안(續案)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개통(開通)할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이척(李則)이 말하기를,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는 20년 만에 정안(正案)을 작성하고, 3년 만에 속안(續案)을 작성하는데, 3년 안에는 단지 생산(生産)한 것과 물로(物故)한 것</p>	<p>法。 臣意若與官吏符同投屬明著者，則許人告爭可也。” 上曰：“奸詐之徒，雖投屬內需司，若許改續案，則可以開通矣。” 則曰：“各司奴婢二十年成正案，三年成績案，三年內只推刷生産、物故，至二十年考續案乃成正案。 今內需司不然，每三年推刷依正案例，可乎?” 上曰：“雖已載宣頭案，何不可告爭之有?” 則又啓曰：“今命送火車二十五部于平安道，本道諸鎮，何以遍及? 平壤、寧邊皆有工匠，可以自造。” 應曰：“依則啓，送京匠教之可也。” 上曰：“近聞西北圍城時解圍之功，莫如火車。” 括曰：“臣見全羅道諸浦水軍，專不習火砲，雖有一、二人習放，亦老而不快，緩急無所用。 請擇壯健年少者，常令習放。” 則又啓曰：“臣聞金宗直素清寒，今聞其家無湯藥之炭，宗直下鄉後，自以爲不在官，一不受祿，請計未受之祿，令所在官題給。” 上問左右。 應對曰：“宗直，本廉靜人也。 今猶在職，可給其祿，亦令觀察使并給食物。” 皆從之。</p> <p>【史臣曰：“初用昌慶宮餘材構桂城君恂家，過爲高大，自後諸君、翁主家，</p>
--	---	--

만을 추쇄(推刷)하고, 20년에 이르러서야 속안(續案)을 상고해서 정안(正案)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3년마다 추쇄(推刷)하기를 정안(正案)의 예(例)에 의거하니, 그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미 선두안(宣頭案)24160)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어찌 고하여 다룰 수 없겠느냐?”

하였다. 이척이 또 아뢰기를,  
“지금 명하시어 화차(火車)24161) 25부(部)를 평안도(平安道)에 보내게 하셨으나, 본도(本道)의 모든 진(鎭)에 어찌 두루 미치지겠습니까? 그러나 평양(平壤)·영변(寧邊)에는 모두 공장(工匠)이 있으니,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이척이 아뢴 바에 의하여 서울의 공장(工匠)을 보내어 가르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듣건대 서북(西北)의 성(城)이 포위(包圍)되었을 때 그 포위를 풀게 한 공(功)이 화차(火車)만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하자, 정괄이 말하기를,  
“신이 전라도 여러 포(浦)의 수군(水軍)들을 보건대, 전혀 화포(火砲)를 익히지 않았었습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쏘는 법을 익혔다고 하나, 또한 늙어서 시원스럽지 못하니, 위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소용(所用)이 없습니다. 청컨대 장건(壯健)하고 연소(年少)한 자를 가려서 평소 쏘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하였다. 이척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김종직(金宗直)은 본래 청빈(淸貧)한 사람이라, 지금 그 집에는 약(藥)을 달일 숯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종직은 고향으로 내려간 후 스스로

皆效之，遣官取材於忠淸、黃海，輦輸不絕，軸轡銜尾，又役水軍，冬夏督役，內需司書題，皆非士人，監涖工匠，猥濫頗多，故應啓罷內需司，令繕工主之，而僉正金靈雨代幹其事，與金僞輩希求恩寵，爭務奢麗，壯棟宇、高垣墉，僭擬宮闕，苛督役夫，夜以繼晝，侵耗百端，民甚苦之。後因臺諫、侍從言，稍損其制，而勞費不減。內需司奴興守，最奸黠，聞公私賤欲避本役，陰誘符同，投狀陳告，仍暗錄宣頭案，由是私賤之謀背本主者、官奴之規免本役者，爭賂興守，紛紜投托，一錄於案，則雖有契券，不得辨理，故則等言之。洪應、鄭恬，大臣中最有名望，而則亦有度量，見推於時輩。”】



벼슬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체 녹봉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컨대 받지 않은 녹봉을 모두 헤아려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제급(題給)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김종직(金宗直)은 본래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벼슬자리에 있으므로 녹(祿)을 줄 수가 있으니, 또한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아울러 식물(食物)을 주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처음에 창경궁(昌慶宮)의 남은 재목(材木)을 써서 계성군(桂城君) 이순(李恂)의 집을 지었는데,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하니, 이후로 모든 군(君)과 옹주(翁主)의 집에서 모두 그것을 본받아 관리를 충청도와 황해도에 보내어 재목을 채취하게 하였으므로 운반하는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선박의 꼬리가 잇달았으며, 또 수군(水軍)을 역사(役事)시키면서 겨울 여름없이 역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내수사 서리[內需司書題]는 모두 사인(士人)이 아니었는데도, 공장(工匠)을 감독하며 외람된 일이 자못 많았다. 그래서 홍응이 내수사(內需司)를 파하고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도록 아뢰었는데, 첨정(僉正) 김영우(金靈雨)가 그 일을 대신 주관하게 되자, 김칭의 무리와 은총(恩寵)을 바라고 서로 다투어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힘써서, 동우(棟宇)를 장려하게 하고 담장을 높게 하여 참람(僭濫)함이 궁궐에 견줄 만하였으며, 역부(役夫)를 가혹하게 독려하여 밤낮으로 계속하며 여러 가지로 침해하니, 백성들이 몹시 괴로와하였다. 뒤에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점차 그 체제(體制)는 줄었으나, 노비(勞費)24162)는 줄지 않았다. 내수사의 종[奴] 흥수(興守)는 가장 간사하고 교활해서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본역(本役)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들으면 은밀히 피어 부동(符同)하고는 고발장을 내어 진고(陳告)하게 하고, 몰래 선두안(宣頭

	<p>案)에 기록하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사천(私賤)으로서 본주인을 배반하려고 꾀하는 자와 관노(官奴)로서 본역(本役)을 면하려고 꾀하는 자가 다투어 홍수에게 뇌물(賂物)을 주면서 부산하게 부탁하여, 한 번 안(案)에 기록하게 되면 비록 계권(契券)24163) 이 있다 하더라도 분변(分辨)하여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척 등이 그것을 말했던 것이다. 홍응·정괄은 대신(大臣) 가운데 가장 명망(名望)이 있었고, 이척 또한 도량(度量)이 있었으나, 시배(時輩)에게 추궁당하였다.” 하였다.</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7일 (무신) 5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정승조(鄭崇祖)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중추부사(知中樞副使) 김종직(金宗直)이 밀양(密陽)의 촌가[村莊]에서 병(病)을 요양하고 있는데, 그 생계가 본래 청빈(淸貧)하니, 식물(食物)을 갖추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慶尙道觀察使鄭崇祖曰：“知中樞府事金宗直，養病于密陽村莊，居計本淸貧，其備給食物。”</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8일 (기유) 3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許琮)에게 보명단(保命丹) 80알[丸], 보명단침주(保命丹浸酒) 15병을 내려 주었다. 이보다 앞서 북정(北征) 때의 군공(軍功)을 등제(等第)하는 것으로 명소(命召)하였던 바, 허종이 병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던 것이었다.</p>	<p>○賜永安道觀察使許琮保命丹八十丸，保命丹浸酒十五瓶。先是，以北征軍功等第命召之，琮以疾不至，故有是賜。</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11일 (임자) 4번째기사</p>	<p>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시장 사람[市人]으로서 악미(惡米)24185) 를 쓰는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24186) 하고, 아울러 인보(隣保)24187) 까지도 죄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전가 사변(全家徙邊)은 너무 무거우니, 청컨대 제서 유휘율(制書有違律)24188) 로 논하게 하소서.” 하였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아된 대로 시행케 하소서.” 하였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漢城府啓請，市人用惡米者全家徙邊，并罪隣保。命議于領敦寧以上。沈澮議：“全家徙邊過重，請以制書有違律論。”尹弼商議：“所啓施行。”洪應議：“此事舉行為難，如欲勝奸，日增其法，國家威令安在？以惡米之故全家徙邊過重，以雜物相糶爲惡米，在頃刻間，雖同居者尙不能知，況隣保乎？近間之法，多不緣情，此事爲尤甚。”上從應議。</p>

	<p>“이 일은 거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만약 간사함을 억제하려고 날마다 그 법(法)을 늘리게 되면, 국가의 위령(威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미(惡米) 때문에 전가 사변(全家徙邊)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우며, 잡물(雜物)을 섞어서 악미를 만드는 것은 잠깐 사이에 있는 일이므로, 비록 함께 사는 자라도 오히려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더욱이 인보(隣保)이겠습니까? 근래에 법이 인정(人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 일은 더욱 심합니다.”</p> <p>하니, 임금(洪應)의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19일 (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북정(北征)에 따라갔던 야인(野人) 이아다가(李阿多可) 등 15인을 인견(引見)하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으며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고, 명하여 각각 1자급(資級)씩을 더해 주게 하였다.</p>	<p>○庚申/上御宣政殿，引見從征野人李阿多可等十五人饋之，賜物有差，命各加一資。</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19일 (경신)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여석(金礪石)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은 듣건대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공을 세운 사람에게 녹(祿)을 준다’ 하였고, 전(傳)에 이르기를, ‘녹(祿)이란 것은 벼슬살이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공(功)이 없는 사람에게 가볍게 줄 수 없으며, 신하는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서 헛되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직(金宗直)은 멀리 고향[鄉土]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배알하지 못하여, 이미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할 길이 없으며, 또 왕사(王事)에 분주히 근로할 수도 없으니, 비록 가난하고 어질다 하더라도 한가하게 살면서 함부로 천록(天祿)을 먹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정직(正直)하다는 이름을 팔아 세상을 속였으니 어질다고 이를 수 없고, 세 고을에 전장(田莊)을 두었으니 가난하다고 이를 수 없는데, 식물(食物)의 하사(下賜)만으로도 이미 그 분수를 넘었거늘, 또 풍부한 녹(祿)을 나누어 주셨으니, 또한 지나치지 않습니까? 옛날 한(韓)나라 소후(昭侯)는 현 바지를 간직해 두고 공(功)을 세우기를 기다리라고 명한 바 있는데 2품(二品)의 녹(祿)은 바로 이 현 바지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공(功)이</p>	<p>○司憲府大司憲金礪石等上疏曰： 臣聞，《禮》曰：“以功詔祿。”傳曰：“祿者，仕者之奉。”然則君不可無功而輕予，臣不可不仕而虛受。宗直邈處鄉土，久絕趨跲，既不能匪躬於夙夜，又不能鞅掌於王事，雖貧且賢，不宜居閑而冒食天祿。況沽直欺世，不可謂賢；有三邑田莊，不可謂貧，食物之賜，已踰其分，又頒豐祿，不亦濫乎？昔韓昭侯命藏敝袴，以待有功，二品之祿，直特敝袴。謝事歸鄉，有何功焉？今以一、二人之私言而輕予之，則祿有濫而士不勸矣。且天門九重，下情難達，委置納言，以掌出納，居其位者，唯以公而不宜干以私。日者，</p>

	<p>있겠습니까? 지금 한두 사람의 사사로운 말에 따라 가볍게 주신다면 녹이 외람된 바가 있어서 선비들이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p> <p>또 천문(天門)24209) 이 아홉 겹으로 둘러싸여 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되기 어렵기 때문에 납언(納言)24210) 을 설치하여 위임해 두고 그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그 직위에 있는 자는 오직 공변되게 해야 하고, 사사롭게 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근일에 성균관(成均館)에서 황필(黃瑋)의 행실이 없음을 미워하고 여러 유생(儒生)들이 논박(論駁)받은 것을 민망하게 여겨 옥(獄)에 나아가 변명(辨明)하기를 원하며 궤문(闕門) 아래에 모여서 봉장(封章)24211) 을 바치고자 한 자가 1백 50명이었으니, 진실로 빨리 받아들여 성상께 계문(啓聞)함이 마땅한데, 정원(政院)에서는 사사롭게 진소(陳訴)하는 것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그리고 황필(黃瑋) 형제는 서로 허물을 전가하면서 국법을 모면하려고 모독(冒瀆)하여 상언(上言)하였으므로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굳게 물리쳐야 할 터인데도 도리어 받아서 계문(啓聞)하였으니, 출납(出納)의 임무를 과연 이와 같이 해야 합니까? 이는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함부로 후설(喉舌)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 뜻대로 조종하며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어서 억울함을 펴야 할 자로 하여금 펴 수 없게 하고, 진소(陳訴)할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진소하게 한 것이니, 만약 사정(私情)을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는 정치를 행하셔서 김종직(金宗直)에게 지나치게 주신 녹을 거두시고 정원에서 사정(私情)을 쓴 죄를 추국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윤희(允許)하지 않았다.</p>	<p>成均館嫉黃瑋之無行， 悶諸生之被論， 願就獄辨明而集于闕下， 欲上封章者百五十人， 固宜收納， 亟聞于上， 政院指爲私訴而不納； 黃瑋兄弟， 互相歸惡， 而欲道邦典， 冒瀆上言， 所宜依法固拒， 而反受以聞， 出納之任， 果如是乎？ 是不知大體者冒居喉舌， 恣意操縱， 心無畏忌， 使可伸者不得伸， 不可訴者得以訴， 若非挾私， 奚至於此？ 伏望殿下， 廓揮剛斷， 收宗直濫受之祿， 鞫政院用情之罪。 不允。</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2월 20일</p>	<p>사헌부(司憲府)에서 합사(合司)24212) 하여 와서 아뢰기를,  “김종직(金宗直)은 멀리 고향[鄉村]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빈한(貧寒)하다고 하여 녹(祿)을 주십니까?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비록 훈척 대신(勳戚大臣)이라</p>	<p>○辛酉/司憲府(合) [闕] 司來啓曰：  “金宗直遠居鄉村， 豈以貧寒而給祿乎？ 自祖宗朝， 雖勳戚大臣， 退居于外， 則</p>

<p>(신유) 1번째기사</p>	<p>하더라도 외방(外方)에 물러가 살면 녹을 주는 예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또 정원(政院)에서 유생(儒生)의 상소(上疏)는 당연히 받았어야 했는데도 받지 않았고, 황필(黃瓚) 등의 상소(上疏)는 받아서는 안될 것을 받았으므로, 사정(私情)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김종직(金宗直)이 매우 가난하다고 하므로, 식물(食物)을 주게 하고, 또 명하여 녹봉(祿俸)을 주게 하였는데, 이제 경(卿)들이 힘써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다. 정원(政院)의 일은 설령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다섯 승지(承旨)가 어떻게 모두 사정이 있었겠는가? 죄줄 수 없다.”</p> <p>하니, 김여석(金礪石) 등이 두세 번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絕無給祿之例。且政院儒生上疏，當受而不受；黃瓚等上疏，不當受而受之，其有情無疑，不可不罪也。” 上曰：“予聞宗直貧甚，令給食物，又命給祿俸，今卿等力言，故從之。政院事，借曰有情，五承旨豈皆有情？不可罪也。” 礪石等再、三論啓，不聽。</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21일 (임술) 8번째기사</p>	<p>태감(太監) 김보(金輔)의 어머니에게 쌀 5석, 면포(綿布) 15필을 내려 주었다.</p>	<p>○賜太監金輔母米五碩、綿布十五匹。</p>
<p>성종 26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2월 24일 (을축) 1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서 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 조문(條文)을 아뢰기를,  “1. 거골장(去骨匠)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령(管領)24221)·절린(切隣)에게 보증[保授]하게 하고, 본조(本曹)에서 간혹 사람을 보내어 그 간악(奸惡)함을 적발하게 하되, 범한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해서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고, 그 관령과 인보(隣保)는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준 율(律)로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1. &lt;범인을&gt; 잡아서 고한 자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논상(論賞)하고, 아울러 잡은 소의 가죽과 고기도 주게 하소서.”</p> <p>하였다.</p>	<p>○乙丑/刑曹啓禁牛隻宰殺條：“一，去骨匠錄簿，保授管領、切隣，本曹或遣人撻奸，其有犯者，依律論罪，全家徙邊，其管領、隣保，以知情藏匿罪人律科斷。一，捕告者，依《大典》論賞，并給所宰牛皮肉。”</p>
<p>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p>	<p>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신(使臣) 야차랑(也次郎)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p>	<p>○癸酉/琉球國王使也次郎等辭。其答書曰：“茲者遠致書問，副以佳貺，</p>

<p>(弘治) 5년) 3월 3일 (계유) 1번째기사</p>	<p>“이번에 멀리 글을 보내어 안부를 물어주고 게다가 좋은 선물까지 보내 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원하는 《대장경(大藏經)》은 어찌 감히 아껴서이겠습니까만, 다만 인본(印本)이 많지 않은데다가 앞서 요구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으므로, 요즈음 와서는 남은 것이 별로 없는데다, 다행히 한 벌[一件]이 남아 있던 것마저 산락(散落)되어 편질(編帙)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선문(禪門)의 관람(觀覽)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내 온 명을 받고서도 말씀대로 응해 드리지 못했었는데, 지금 또 바닷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신을 보내어 매우 은근하게 청하시므로, 소장(所藏)된 것을 다 찾아 내었으나, 질(帙)이 차지 않는 것으로 겨우 한 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온 사신편에 보내드리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p> <p>하였다. 그 별폭(別幅)에는 《대장경》 질이 차지 않는 것 1부(部), 백세면주(白細緜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 만화방석(滿花方席) 5장, 인삼(人蔘) 40근(斤), 유지(油紙) 10장 중에 6장씩 붙인 것이 다섯, 4장씩 붙인 것이 다섯, 백접선(白摺扇) 1백 파(把), 청밀(淸蜜) 10두(斗), 해송자(海松子) 3백 근, 소주(燒酒) 30병(瓶)이었다.</p>	<p>良用慰悅。 所索《大藏經》，豈敢愛惜，但印本不多，而前者求之者非一，比今殆無所餘，幸餘一件，亦復散落，編帙不具，不足以備禪門之觀覽，前承來命，未副所諭，今又不遠海程，再勞使舶，求之甚勤，茲以罄倒所藏，僅將不帙一部，就付來使，惟冀照領，餘具別幅。 《大藏經》不帙一部，白細緜紬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雜彩花席五張、滿花方席五張、人蔘四十斤、油紙十張內六張付五、四張付五、白摺扇一百把、淸蜜一十斗、海松子三百斤、燒酒三十瓶。”</p>
<p>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3월 3일 (계유) 2번째기사</p>	<p>보제원(普濟院)에 기영연(耆英宴)24227) 을 베풀고,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을 보내어 선운(宣醞)24228) 을 하사(下賜)하였다.</p>	<p>○設耆英宴于普濟院。 遣都承旨鄭敬祖、左承旨許琛賜宣醞。</p>
<p>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3월 3일 (계유) 6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혼인(婚姻)·제사(祭祀)나 노병(老病)으로 복약(服藥)할 적에 병술[瓶酒]을 준비하는 것과 헌수(獻壽)·유가(遊街)·사후(射侯) 외의 술을 쓰는 것은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曰：“婚姻祭祀，老病服藥，持瓶酒獻壽遊街射侯外用酒者一切禁之。”</p>
<p>성종 263권, 23년</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북정(北征)에 따라간 야인</p>	<p>○丙子/上御宣政殿，置酒引見從征野</p>

<p>(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3월 6일 (병자) 1번째기사</p>	<p>(野人) 여룡신(汝弄臣) 등 15명을 인견(引見)하고, 이어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下賜)하였다.</p>	<p>人汝弄巨等十五人，仍賜物有差。</p>
<p>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3월 7일 (정축) 1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휘(閔暉)가 와서 아뢰기를,  “일찍이 들으니, 북정(北征)했던 인마(人馬)가 많이 사망(死亡)했다고 하였는데, 지금 강원도(江原道)의 계본(啓本)을 상고하건대, 사망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도(本道)에서는 종정(從征)한 자가 많지 않은데도 사망자가 그러한데, 더구나 다른 도(道)이겠습니까? 또 들으니, 입정(入征)할 때에 군사(軍士)들로 하여금 10일 식량만 싸가지고 가게 하여 중도(中途)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말을 잡아 먹기도 하였는데, 그 때문에 죽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원수(都元帥) 허중(許琮)은 전사(全師)하여 돌아온 것으로써 아뢰었으니, 이는 기망(欺罔)함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나,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아뢴 것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사졸(士卒)이 그렇게 낙후(落後)되었다면 이는 사람을 니마거(尼麻車)에게 버려둔 것인데, 어찌 그러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병조(兵曹)에서 후면(後面)을 막았던 장수만 국문하고 원수(元帥)는 국문하지 않으니, 그것은 잘못이다. 마땅히 그 국문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민휘가 또 아뢰기를,  “정승조(鄭崇祖)·정괄(鄭括)·윤은로(尹殷老)·이세좌(李世佐)가 모두 병을 핑계로 부경(赴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릇 조정(朝廷)에서 한 번 모이게 되면 반열(班列)에 따라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데, 서로 부경(赴京)하기를 싫어하여 그렇게 핑계하고 있으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丁丑/司憲府持平閔暉來啓曰：“嘗聞，北征人馬多死亡，今考江原道啓本，其死亡未還者多至四十餘人，本道從征者不多，而死亡如此，況他道乎！又聞，入征時令軍士等賚十日糧，中途絕糧，或宰馬而食，因此物故者亦多，今都元帥許琮，以全師而還啓之，無乃欺罔之甚乎？請鞫之。”上曰：“爾等所啓良是，然士卒如此落後，則是棄人於尼麻車，安有是理乎？今兵曹只鞫捍後將而不鞫元帥，此則非矣。當待其畢鞫而處之。”暉又啓曰：“鄭崇祖、鄭括、尹殷老、李世佐，皆稱病不赴京，凡朝廷一會，無不隨班，而憚於赴京，如此托故。請鞫之。”傳曰：“大臣豈有詐病者乎？”</p>

	“대신(大臣)이 어찌 병을 사칭(詐稱)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3월 7일 (정축)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선운(宣醞)을 하사(下賜)하면서 말하기를, “옛부터 천하(天下)·국가(國家)를 다스림은 다 백성의 일을 위함이다. 근일(近日)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근심했었는데, 오늘 비가 내렸으므로, 술을 주어 나의 기쁜 뜻을 보여 준다.” 하였다.	○賜宣醞于承政院曰：“自古治天下國家，皆爲民事，近日不雨，予以爲憂，今日得雨，故賜酒，用示予喜意。”
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3월 17일 (정해) 2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부경 사신(赴京使臣)이 모두 병을 핑계대고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신(臣) 등이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또 병을 핑계대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모두 국문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판윤(判尹)이 병으로 거절하므로 체임(遞任)시키도록 명하였다. 내가 듣기로는 천자(天子)가 조회(朝會)에 나오면 군신(群臣)이 모두 추창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참으로 병이 있는 자라면 진실로 강행(強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정탁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임금을 섬기는 것은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한결같이 절의(節義)를 지켜 죽는 것도 피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멀리 간다고 해서 꺼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宰相)이 만약 병이 없었다면 어찌 회피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말하기를, “신(臣)은 풍질(風疾)이 있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辭免)하였습니다만, 마음으로는 사실 미안하였습니다. 신의 나이가 아직 50도 되지 아	○御經筵。講訖，獻納鄭鐸啓曰：“頃者赴京使臣，皆托疾不行，臣等請鞫之，不聽，今又稱疾者多，請皆鞫之。”上曰：“判尹辭以疾，命遞之。予聞天子御朝，群臣趨入，若實有病者，固難強行。”鐸曰：“大臣事君，夷險一節，死且不避，豈宜以遠行爲憚?”上曰：“宰相若無病，豈有托避之理乎?”同知事李世佐曰：“臣有風疾，未堪遠行，以此辭免，心實未安。臣年未五十，以人所見，豈以臣爲有病乎? 然一時儕輩，誰不知之? 臣雖無狀，豈以無疾爲有疾以自欺乎?”仍啓曰：“今年穀貴，外人來京者，專以綿布貿穀而食，綿布一匹直米二斗，國家設倉，所以備凶歉也。有祿軍士則已，如正兵、錄事、胥徒，在所當恤。請發常平倉以救之。”領事盧思慎亦啓曰：“常平倉之法，於國家有益，雖增



	<p>니하였으니, 남이 보기에 어찌 신에게 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때의 제배(儕輩)24250) 들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신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병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병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 속이겠습니까?”</p> <p>하고, 이어 아뢰기를,  “금년(今年)에 곡식이 귀하여 서울에 와 있는 외인(外人)은 오로지 면포(綿布)로써 곡식을 바꾸어 먹고 있으므로, 면포 한 필의 값이 쌀 두 말입니다. 국가(國家)에서 상평창(常平倉) 24251) 을 설치한 것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봉(祿俸)이 있는 군사는 괜찮겠습니까만, 정병(正兵)·녹사(錄事)·서도(胥徒)들은 마땅히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상평창의 곡식을 풀어서 구제하게 하소서.”</p> <p>하고,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도 아뢰기를,  “상평창의 법은 국가에 유익한 것이므로, 비록 값을 증가하여 주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공사(公私)간에 매우 편합니다. 청컨대 녹봉이 없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소서.”</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p>	<p>價給之，亦不爲損，甚便公私，請給無祿人。” 上曰：“其令該司議啓。”</p>
<p>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3월 17일 (정해)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상평창의 쌀을 풀어서 면포 한 필마다 시가 한 말 닷 되를 증가시켜 녹봉이 없는 군사(軍士)·녹사(錄事)와 제색(諸色)의 생도(生徒)·나장(羅將)·조례(皂隸)·공천(公賤)으로 하여금 모두 무역할 수 있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發常平倉米，每綿布一匹，增市直一斗五升，令無祿軍士、錄事、諸色生徒、羅將、皂隸、公賤，皆得質之。” 從之。</p>
<p>성종 263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3월 26일</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북정(北征)에 따라 갔던 야인(野人) 시랑합(時郎哈) 등 34명을 인견(引見)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下賜)하였다.</p>	<p>○丙申/上御宣政殿，置酒引見從征野人時郎哈等三十四人，賜物有差。</p>

(병신) 1번째기사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휘(閔暉)가 와서 아뢰기를,  “올해 흉년이 들었는데, 금주(禁酒)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소비를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청컨대 유가(遊街)24274) 를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생원(生員)·진사(進士)는 금할 수 있으나, 문·무과(文武科)는 금할 수 없다.”  하였다.</p>	<p>○司憲府持平閔暉來啓曰：“今年凶，所以禁酒者，欲民之省費也，請禁遊街。”上曰：“生員、進士可禁，文、武科不可禁也。”</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4월 2일  (임인) 4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유경(劉璟)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은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자가 자못 많으니, 청컨대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여 구휼(救恤)하게 하소서. 또 전의 하교에 ‘문·무과(文武科)의 유가(遊街)24285) 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유가로 소비되는 재물은 생원(生員)·진사(進士)와 더불어 다름이 없사오니, 청컨대 아울러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가(遊街)는 제집에서 하는 것인데 어찌 나라에서 참여하겠는가?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는 일은 마땅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는데, 심희(沈澮)는 의논하기를,  “양맥(兩麥)24286) 이 성숙(成熟)할 동안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순행(巡行) 고찰(考察)하여 빈민(貧民)을 진제(賑濟)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금년이 비록 흉년[凶歉]이 들기는 했으나 모맥(牟麥)24287) 이 이미 이삭이 났으므로 우선 수십일 동안만 기다리면 의뢰하여 충분히 살아갈 터이니, 반드시 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예전의 흉년이 든 해에는 으레 모두 진제하였으니,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예(例)를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p>	<p>○司憲府持平劉璟來啓曰：“今年凶險，飢饉者頗多，請設賑濟場以恤之。且前教云：‘文、武科遊街勿禁。’遊街費財，與生員、進士不異，請竝禁之。”傳曰：“遊街，自家所爲，何與於國？設賑濟場事，當議于領敦寧以上處之。”沈澮議：“兩麥成熟間，請令各道監司巡行考察，賑濟貧民。”尹弼商議：“今年雖凶歉，牟麥已發穗，姑待數旬，亦足聊生，不必賑濟。”李克培議：“在古凶歲，例皆賑濟，請令該曹考例施行。”盧思愼議：“貧民飢餓者，京中則五部，外方則監司，隨宜賑恤事，已曾布置。況今蔬菜滿野，採而食之，亦足自活，且賑濟之事，當議於春初困乏之時，今則恐緩。”尹壕議：“今春穀貴民貧，宜置賑濟場。”上從克培議。</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빈민(貧民)으로 주린 자는, 경중(京中)은 오부(五部)24288) 에서 외방(外方)은 감사(監司)가 적당한 데 따라 진휼(賑恤)하는 일은 이미 일찍이 포치(布置)하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소채(蔬菜)가 들에 가득하므로, 채취해서 이를 먹으니, 또한 자활(自活)하는 데 족할 것입니다. 또 진제의 일은 마땅히 초봄[春初]의 곤핍(困乏)한 때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늦은 듯합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금년 봄은 곡식이 귀(貴)해서 백성이 빈곤(貧困)하니, 진제장을 설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이극배(李克培)의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5일  (을사) 6번째기사</p>	<p>호조에 전지하여, 졸(卒)한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에게 부의(賻儀)로 미·두(米豆) 아울러 1백 석(碩), 백정포(白正布) 20필(匹), 백면포(白縣布) 20필, 정포(正布) 50필, 저포(苧布) 10필, 청밀(淸蜜)24348) 1석, 황랍(黃蠟)24349) 30근(斤), 종이[紙] 1백 50권(圈), 석회(石灰) 50석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 卒左議政洪應賜賻米、豆并一百碩、白正布二十四、白縣布二十四、正布五十四、苧布十匹、淸蜜一碩、黃蠟三十斤、紙一百五十卷、石灰五十碩。</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6일  (병오) 1번째기사</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홍응(洪應)의 졸(卒)한 것으로써 연일 소선(素膳)을 드시니, 청컨대 육선(肉膳)을 진어(進御)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음이 슬퍼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p> <p>하였는데, 유자광이 재삼 아뢰어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丙午/司饗院提調武靈君柳子光來啓曰：“今以洪應之卒，連日素膳，請進肉膳。” 傳曰：“予心之慟，不可食肉也。” 子光再、三啓請，不聽。</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12일  (임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지금 유생(儒生)이 병(病)을 핑계하고서 성시(省試)24372) 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이미 금령(禁令)이 있으니, 무과(武科)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청</p>	<p>○御經筵。 講訖，大司憲金升卿啓曰：“今儒生托病不走省試者， 已有禁令，武科亦有如此者， 請皆禁之。” 上曰：“文武一也， 可竝禁之。” 升卿又啓曰：</p>

	<p>컨대 모두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文武)는 한가지이니, 아울러 금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금년에 민간(民間)의 곡식이 귀해서 면포(綿布) 1필(匹)의 값이 쌀[米] 2두(斗) 5승(升)인데, 상평(常平) 24373) 은 1두(斗)를 더합니다. 그러나 시중(市中)의 면포는 척수(尺數)에 준하지 않고 관납(官納)은 반드시 척수에 준하므로, 관부(官府)에 왕래하는 것을 더하여도 겨와 쪽정이를 까불러 버리고 나면 시가(市價)와 비교하여 많아야 4, 5승(升)에 불과하니, 백성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청컨대 또 1두를 더하게 하소서.”  하니, 특진관(特進官) 권건(權健)이 아뢰기를,  “시가(市價)가 2두 5승이니, 지금 1두 5승을 늘려서 4두가 되게 하면 어찌 백성에게 이익이 없겠습니까?”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시중(市中) 사람에게는 비록 1, 2승의 이익을 더한다 하더라도 또한 모두가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달선(李達善)은 말하기를,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한 것은 나라를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에게 이익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또 1두를 더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今年民間穀貴，綿布一匹直米二斗五升，常平則加一斗，然市中縣布不準尺數，官納則必準之，加以往來官府，簸去糠粃，視市價不過多四五升，民無利焉。請又加一斗。”特進官權健啓曰：“市價二斗五升，今增一斗五升，令爲四斗，豈不利於民乎？”知事李克增曰：“市人雖加一、二升之利，亦皆爲之矣。”侍讀官李達善曰：“設常平倉，非爲利國，欲利於民，又加一斗可也。”不聽。</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15일  (을묘)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어세겸(魚世謙)이 병[疾]이 있어서 기력(氣力)이 파리하고 약해졌으니, 청컨대 내의(內醫)를 보내어 치료(治療)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세겸의 병은 반드시 소식(素食)하는 데서 생긴 것이니, 의약(醫藥)이 아니</p>	<p>○承政院啓曰：“魚世謙有疾，氣力羸弱，請遣醫治療。”傳曰：“世謙之疾，必生於素飧，似非醫藥可療，有病食肉，禮文所載，今世謙年老遭喪，遂有此疾，當勸肉饌，然遣醫診視，然後處</p>

	<p>더라도 치료될 것 같다. 병이 있어 고기를 먹는 것은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바인데, 지금 어세겸이 연로(年老)한데다 상(喪)을 만나서 드디어 이 병이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육찬(肉饌)을 권할 것이나, 내의를 보내어 진찰[診視]한 연후에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之。”</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16일 (병진) 5번째기사</p>	<p>전(前)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종직(金宗直)에게 쌀[米] 40석(碩)과 콩[豆] 30석을 내려 주었다.</p>	<p>○賜前知中樞府事金宗直米四十碩、豆三十碩。</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17일 (정사) 3번째기사</p>	<p>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천안 군수(天安郡守) 김훈(金薰)이 산대군(山臺軍) 1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민간(民間)이 빈핍(貧乏)24402 하여 군인(軍人)이 양식을 갖추 수 없으므로 전지를 파는 자가 있기까지 하는데, 그 영역 관리(領役官吏)가 조금도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하지 아니하며, 역사가 너무 무거워서 군인들이 매우 괴로와 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전에 중국 사신 기순(祈順)이 매우 급하게 왔으나 한 가지 일도 관비(辦備)하는 데 미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으니, 청컨대 공역(工役)을 헤아려 군인을 방환(放還)하여서 소식(蘇息)함을 얻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경(卿)이 만약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빨리 영역 관리(領役官吏)를 거두고 그 공역(工役)을 헤아려서 속히 군인을 놓아 보내라.” 하였다.</p>	<p>○右承旨權景禧啓曰：“天安郡守金薰領山臺軍一千名而來，語臣曰：‘民間貧乏，軍人無以備糧，至有賣田者，其領役官吏，不少憐恤，役之太重，軍人甚苦之。’昔祈天使之來甚急，然無有一事不及辦者，請量工役，放還軍人，使得蘇息。”傳曰：“善，卿若不言，予焉得聞？亟收領役官吏，量其功役，速放軍人。”</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19일</p>	<p>북정 도원수(北征都元帥) 허종(許琮)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북정(北征) 때에 얻은 바가 비록 적더라도 군사들을 온전히 하여 돌아왔으</p>	<p>○北征都元帥許琮來復命。上御宣政殿，引見曰：“北征時所獲雖少，全師而還，予甚喜焉。”琮對曰：“彼地道</p>

(기미) 4번째기사

니, 내가 몹시 기뻐한다.”  
하니, 허종(許琮)이 대답하기를,  
“저들의 지역은 도로(道路)가 험조(險阻)하고 초목(草木)이 울창하며, 또 물을 건너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반은 얼음이고 반은 물이어서 보병(步兵)이 갈 수 없으므로, 누기(累騎)24418) 하여 건너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사가 멀리 가지를 못하고 하루에 겨우 30리를 가서 저들의 땅에 들어갔는데, <떠난 지> 8일이 되어서야 울지현(鬱地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김장손(金長孫)이 먼저 가서 이 현(峴)을 넘어 적(賊) 6, 70인을 만나 싸웠는데, 적이 우리의 대군(大軍)을 바라보고는 돌아서서 곧 흩어져 도주하였습니다. 신이 행군(行軍)하여 적소(賊巢)24419) 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서 야영[下營]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에 달려서 들어간즉 적이 이미 다 도망했으므로, 신이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어 가옥[室廬]을 분탕(焚蕩)하고, 하루 이틀 머무르며 적의 형세를 살피려 하다가 양식(糧食)이 다하여 부득이 회군(回軍)하였는데, 이는 신의 죄입니다. 신이 사졸인(士卒人)으로 하여금 15일치의 양식과 20일치의 미식(糜食)을 싸가지고 가도록 하였었는데, 군사가 영(營)을 따르지 않고 거개가 양식을 가볍게 해서 갔으므로, 이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많았습니다. 군사를 돌이켜 10리 쯤에 이르러니 적이 혹은 산 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아군(我軍)의 뒤에서 나오기도 하였는데, 여러 장수들이 속히 가도록 청하였지만, 신은 불가하다고 말하기를, ‘만약 속행(速行)하면 적이 반드시 우리를 겁낸다고 여길 것이니, 서서히 가는 것만 못하다.’ 하고서 중용(從容)함을 보이게 하고는, 15리쯤을 물러 나와서 야영하였는데, 적들이 감히 와서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속(阿速)이 적 가운데로부터 도망해 돌아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적이 관군(官軍)을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저들이 모두 군사란 말인가? 어찌 이와 같이 많은가?」 하였는데, 그 가운데 장년(壯年)의 사람이 사력(死力)을 내어 돌진(突進)해 분격(奮擊)하도록 청하니, 늙은

路險阻，草樹茂密，且多有涉水處，半水半水，步兵不能行，累騎而渡，由是師不得遠行，一日僅行三十里，入彼土至八日到鬱地峴，翌日金長孫先行踰是峴，遇賊六七十人而戰，賊望見我大軍，旋即散走，臣行軍距賊巢二十里許下營，翌朝馳入，則賊已盡逃，臣分遣諸將，焚蕩室廬，欲留一、二日，以觀賊勢，糧盡不得已回軍，此則臣之罪也。臣令士卒人裹十五日糧，及二十日糜食，軍不從令，率多輕糧而行，以此糧盡者多，還師至十里許，賊或見於山上，或出我軍後，諸將請速行，臣不可曰：‘若速行，則賊必以我爲怯，不若徐徐而行，以示從容。’退十五里許下營，賊不敢來犯。阿速自賊中逃還，語臣曰：‘賊見官軍驚曰：「彼皆兵耶？何如此之多？」其中壯者，請出死力突進奮擊，老者止之曰：「曼耶嘗數侵犯朝鮮，今其家先被焚，何其神耶？」使我呼朝鮮軍曰：「曼耶家已見焚，其他可釋。」又明日行軍，賊徒百餘，將截我軍後，臣意賊必先據鬱地邀我，令李季全、黃衡、嚴貴孫、陸閑爲殿。賊與陸閑軍戰，我軍雖有被創者，皆不

이가 이를 제지하여 말하기를, 「만야(曼耶)가 일찍이 조선(朝鮮)을 자주 침범하였는데 지금 그 집이 먼저 분탕을 당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귀신과 같은가?」 하고는, 저를 시켜 조선군(朝鮮軍)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만야(曼耶)의 집이 이미 분탕을 당하였으니, 그밖의 다른 것은 풀어 줄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명일(明日) 행군(行軍)에는 적도(賊徒) 백여 명이 장차 아군(我軍)의 뒤를 차단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적이 반드시 먼저 울지(鬱地)에 웅거하여 우리를 요격(邀擊)할 것이라 여기고 이계동(李季全)·황형(黃衡)·엄귀손(嚴貴孫)·육한(陸閑)으로 하여금 후군(後軍)이 되게 하였더니, 적이 육한의 군사와 더불어 싸웠는데, 우리 군사는 비록 상처를 입은 자가 있기는 했어도 죽는데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올랑합(兀郎哈)이 와서 말하기를, ‘싸울 때에 적 가운데 화살을 맞고 죽은 자가 30여 인이고, 다친 자가 40여 인이며, 그 가운데는 추우두형(樞于頭兄)의 아들이 주장(主將)이 되어서 왔는데, 화살을 맞고 즉사[卽斃]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군(我軍)은 유엽전(柳葉箭)으로 적(賊) 하나를 쏘아 맞혔는데, 투구가 뚫리고 두개골이 관통당해 죽으니, 이로 말미암아 적의 기세가 꺾이고 풀이 죽었습니다. 군사가 돌아옴에 사졸(士卒)로서 죽은 자는 불과 10여 인이었고, 한 사람도 뒤에 처진 자가 없었습니다. 강상(江上)에 이르러니, 날씨가 몹시 추워서 사졸(士卒)이 갈 수가 없었으므로, 신이 도사(都事) 유빈(柳濱)으로 하여금 가서 호위해 오도록 하였는데, 동사(凍死)한 자가 11인이었습니다. ”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만(數萬)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멀리 오랭캐의 소굴[虜穴]에 들어갔다가 죽은 자가 여기에 그쳤으니, 비록 옛날의 현장(賢將)이라 하더라도 어찌 더 <잘> 하였겠는가?”

하니,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至死，但一人中箭，因墜馬遂死。其後(兀郎哈) [兀良哈] 來言，戰時賊中箭死者三十餘人，傷者四十餘人，中樞于頭兄子爲主將而來，中箭卽斃，又我軍以柳葉箭射中一賊，穿兜鍪貫顱而死。由是賊勢摧沮。軍還，士卒死者止過十餘人，無一人在後者。比至江上，日候寒甚，士卒未能行，臣令都事柳濱往護而來，寒凍死者十一人。” 上曰：“領數萬衆，遠入虜穴，其死者止此，雖古賢將，何以加之?” 琮曰：“諸將皆言，此行不得成功，由金長孫使虜先覺而然也，臣意此從往野人爭功所致，非獨長孫之罪也。及大軍還入我地，在後未還者五百餘人，猶未盡知也。” 右承旨權景禧啓曰：“臣見諸道推刷啓本，稱逃亡物故雖多，然隨後來見者亦多，是必守令不仔細推現也。” 上曰：“初聞士卒還入我境，死者甚多，今聞所言，可喜也。” 琮曰：“人言死亡者甚多，以臣所覩，其數不多，臣何敢欺罔乎?” 上曰：“士卒病死者，雖元帥亦無如之何。” 琮曰：“塞上寒甚，軍士疲勞者，若更野宿，則人馬死者必多，故臣令曰：‘朝廷不使軍卒入宿闊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번 길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김장손(金長孫)이 오랑캐[虜]들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이다.’고 하였으니, 신의 뜻으로는 이번에 종정(從征)한 야인(野人)이 공(功)을 다룬 소치(所致)이며 김장손의 죄만은 아닙니다. 대군(大軍)이 도로 우리 땅에 들어옴에 미쳐 뒤에 처져 돌아오지 않는 자가 5백여 인이었는데 아직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신이 여러 도(道)의 추쇄 계본(推刷啓本)을 보니, 도망(逃亡)이라 일컫고 물고(物故)라 일컫는 것이 비록 많았으나, 뒤따라 와서 나타나는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수령(守令)이 자세히 추현(推現)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들으니, 사졸(士卒)이 돌아와서 우리 경계에 들어올 때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말한 바를 들으니, 기쁘다.”

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이 사망(死亡)한 자가 매우 많다고 하였는데, 신이 본 바로는 그 수(數)가 많지 않았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기망(欺罔)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졸(士卒)로서 병사(病死)한 자는 아무리 원수(元帥)라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변경[塞上]에 추위가 심한데, 군사(軍士)로서 피로(疲勞)한 자가 만약 다시 야숙(野宿)을 할 것 같으면, 사람과 말이 죽는 것이 반드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영(令)을 내리기를, ‘조정(朝廷)에서 군졸(軍卒)로 하여금 여염(閭閻)에 들어가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침해[侵損]를 염려해서이다. 만약

閭者, 慮侵損也, 如不侵損, 雖入宿何害?’ 以此死者不多。”



	<p>침해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록 &lt;여염에&gt; 들어가 잔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는데, 이 때문에 죽은 자가 많지 않았습시다.” 하였다.</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24일 (갑자)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졸(卒)한 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에게 부의(賻儀)로 쌀·콩[米豆] 아울러 80석(碩)과 종이 1백 50권(卷), 정포(正布) 40필(匹), 백저포(白苧布) 6필, 백면포(白緜布) 6필, 석회(石灰) 40석, 납촉(蠟燭)24435) 8자루[柄], 유둔(油菴) 2부(部)를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賜卒定陽君淳賻米、豆并八十碩、紙一百五十卷、正布四十匹、白苧布六匹、白緜布六匹、石灰四十碩、蠟燭八柄、油菴二部。</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24일 (갑자) 4번째기사</p>	<p>임금이 어세겸(魚世謙)의 병(病)이 심함을 듣고는, 주서(注書) 유현(柳軒)을 보내어 어육(魚肉)을 내려 주어 먹기를 권하게 하였다.</p>	<p>○上聞魚世謙病劇，遣注書柳軒賜魚肉勸食。</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24일 (갑자) 5번째기사</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운수군(雲水君) 효성(孝誠)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정양군(定陽君)이 졸(卒)하였다 하여 아침·점심을 모두 소膳(素膳)24436) 으로 드시는데, 대비전(大妃殿)에서도 또한 그러하십니다. 청컨대 다시 육膳(肉膳)을 드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가 졸(卒)한 것을 비로소 들었는데, 어떻게 차마 고기를 먹겠는가?” 하였다.</p>	<p>○司饗院提調雲水君孝誠來啓曰：“今以定陽君之卒，朝、晝皆進素膳，大妃殿亦然，請復膳。” 傳曰：“始聞其卒，何忍食(肉) [肉] ?”</p>
<p>성종 264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4월 25일 (을축) 3번째기사</p>	<p>군자감(軍資監)의 모자라는 쌀이 2백 80석(碩)이었으므로, 장차 &lt;군자감의&gt; 관리(官吏)와 고자(庫子) 등에게 나누어 징수하기로 하였는데, 서리(書吏)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다른 창고의 남은 쌀이 2천여 석인데 모자라는 수는 단지 2백여 석이니, 청컨대 남은 쌀로써 숫자를 채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특명(特命)으로 면해 주게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軍資監欠米二百八十碩，將分徵官吏與庫子等，書吏等上言曰：“他庫剩米二千餘碩，而欠數只二百餘碩，請以剩米充數。” 上特命蠲之。 戶曹啓曰：“庫子輩潛竊，以至於此，今而不徵，後必効此，希望上恩，請徵之。” 上</p>

	<p>“고자(庫子)의 무리들이 몰래 도둑질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징수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이것을 본받아 상은(上恩)을 희망(希望)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징수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상평창(常平倉)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지금 또 징수하는 것이 가하겠는가?”</p> <p>하였다.</p>	<p>曰：“既開常平倉以濟民，而今又徵之可乎？”</p>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4일  (계유) 1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제신(金悌臣)이 와서 아뢰기를,  “근일(近日)에 비가 와서 곡식의 싹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옛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새 곡식은 아직 결실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먹고 살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컨대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쌀 4, 5천 섬과 종두(種豆) 3천 7백 섬으로 진급(賑給)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癸酉/京畿觀察使金悌臣來啓曰：“近日下雨，禾苗向茂，然舊穀既沒，新穀未登，民甚艱食，請以軍資倉陳米四、五千碩、種豆三千七百碩賑給。”從之。</p>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7일  (병자)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정석견(鄭錫堅)이 아뢰기를,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가 기생과 간통한 일은 발각이 되어 이미 그 죄를 다스렸고, 그 수종(隨從)한 노복(奴僕)과 반인(伴人)24452) 도 모두 정속(定屬)시켰는데, 임광재는 광망(狂妄)스러운 행동을 하였으므로, 진실로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만, 그 종과 반인(伴人)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특진관(特進官) 권건(權健)이 대답하기를,  “종이 주인 따라 다닌 것을 책망하여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마도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광재가 방자하게 놀아난 것은 오직 이 무리들이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그</p>	<p>○丙子/御經筵。講訖，執義鄭錫堅啓曰：“豐川尉任光載，奸妓事覺，既治其罪，其隨從奴僕及伴人，亦皆定屬，光載狂妄，固當治罪，其奴伴可恕。”上問左右，特進官權健對曰：“責奴從主，置之於法，恐不合宜。”上曰：“光載縱恣，專由此輩所導，故罪之耳。然執義言亦是，當稟大妃殿放之。”司諫崔灌啓曰：“北征將帥，失其措置，使我軍死亡者多，此固當罪，而今反論賞可乎？”錫堅曰：“道路迂直，程途遠近，固當審察，多賚其糧可也，而計不出此，使士卒飢困，諸將亦</p>

	<p>래서 죄를 준 것이다. 그러나 집의(執義)의 말도 옳으니, 마땅히 대비전(大妃殿)에 아뢰고서 석방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 사간(司諫) 최관(崔灌)이 아뢰기를,  “북정(北征)한 장수(將帥)가 조치를 잘못하여 우리 군사로 하여금 사망(死亡)한 자가 많게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죄를 주어야 마땅한데, 지금 도리어 논상(論賞)을 하니 옳겠습니까?”</p> <p>하고, 정석건(鄭錫堅)은 말하기를,  “도로(道路)의 굵고 곧은 것과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서 식량을 많이 싸가지고 가게 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그러한 계획을 하지 못하여 사졸(士卒)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였고, 제장(諸將)들도 추위에 얼고 굶주린 자가 있었습니다. 군사가 돌아올 때 비록 한둘의 참획(斬獲)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功)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찌 서리와 이슬을 무릅쓴 것을 가지고 공이라고 하여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원수(都元帥)가 말하기를, ‘적(賊)의 지역에 들어갔을 적에는 사상(死傷)한 자가 없었는데, 우리 땅에 와서 병사(病死)한 자가 더러 있습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찌 장수의 죄(罪)인가? 강무(講武)24453 할 때에 군사(軍士)들도 스스로 먼저 계산하게 하였는데, 약속대로 양식 준비를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번에 북정(北征)한 장수가 어찌 일일이 군사의 양식을 점검(點檢)할 수 있었겠는가?”</p> <p>하였다. 최관이 말하기를,  “양식이 부족했던 것은 사졸(士卒)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장수가 명령을 내렸다면 사졸이 어찌 따르지 아니하였겠습니까?”</p> <p>하고, 정석건은 말하기를,  “군사가 몇 달을 버틴 것이 아니니,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을</p>	<p>或有凍餒者。師還，縱有一、二斬獲，不可謂之功也。豈可以蒙犯霜露爲功而賞之乎？”上曰：“都元帥言，入賊境無有死傷，至我境或有病死者，此豈將帥之罪乎？講武時軍士，亦先自忖度，不如約資糧，今北征將帥，豈能一點檢軍士糗糧乎？”灌曰：“糧之不足，非卒之過也，將若令之，卒豈有不從者乎？”錫堅曰：“師非累月持久，可使不乏其糧也。”上曰：“軍士之過也，論功當先將。”灌曰：“臣意當先治其罪。”上曰：“不可以軍士多死爲罪，雖在家，豈無病死者乎？今耀示國威，全師而還，虜皆震懾，不可謂無功也。”灌曰：“若以往來之勞爲功，則軍卒當居先，如從事官等，曾無疲困之勞，不可依一等論功也。不得已論功，則只可賞捍後軍而已。”上曰：“已令收議，當觀而處之。”錫堅曰：“邊處寧欲帶行興利人福重，必有意焉。大抵帶軍官，欲以備不虞，當擇驍勇人也，而福重商販爲業，不事弓矢，處寧借曰不知，以福重爲伺候帶行已久，豈不知其所業乎？必因權勢，或行賄賂，皆所當問，不可以時推斷也。福重乃</p>
--	---	--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의 잘못이었다. 그러니 논공(論功)은 마땅히 장수에게 먼저 해야 한다.”  
 하니, 최관은 말하기를,  
 “신(臣)은 마땅히 그 죄부터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가 많이 죽은 것을 가지고 죄줄 수는 없다. 비록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병들어 죽는 자가 없겠는가? 지금 국위(國威)를 선양하고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오자 오랑캐가 모두 두려워하였으니,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자, 최관이 말하기를,  
 “만약 왕래(往來)한 노고를 가지고 공(功)으로 여긴다면 군졸(軍卒)에게 마땅히 상을 먼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종사관(從事官) 등은 일찍이 피곤(疲困)한 노고가 없었으니 1등에 의해 논공(論功)할 수 없으며, 논공한다면 후미(後尾)에서 <적을> 막은 것만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수의(收議)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보아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정석견(鄭錫堅)이 말하기를,  
 “변처녕(邊處寧)이 장사꾼인 조복중(曹福重)을 대동하여 가고자 한 것은 반드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군관(軍官)을 대동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기 위함이니, 마땅히 용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복중은 장사로 업(業)을 삼았고 궁시(弓矢)에는 종사한 일이 없습니다. 변처녕이 가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복중에게 사후(伺候)를 삼아 대동하고 다닌 지가 오래였는데, 어찌 그의 업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반드시 권세(權勢)가 있는 자를 통하여 뇌물을 주기도 하였을 것이니, 마땅히 추

曹典言親姪，本富商大賈，以納布爲業，國人所知，福重又言，曹典言使我納布，典言久在大內，豈有納布之理？若福重所言是，則典言爲有罪，所言詐則福重之罪亦大。上國人嘗書示我國人曰：‘汝國使臣，每行皆帶商賈人，多行譎詐。’此亦可恥之甚也。今以福重之故，囚五十餘人，久而不決，可乎？十五人言福重興利，則福重之事，大段已露，不可掩也。”權健曰：“臣聞福重以興販爲業，納布於濟用監。”上曰：“近令考納布文籍，一年或有一、二匹錄焉，不可直指福重爲興利也。”錫堅曰：“雖納一、二匹，非市人而何？且難明者獄辭，曩者李譚之事，都城人至今稱冤。臣意謂，如此蔓延不已，則恐終以福重爲非興利人而棄之矣。”上曰：“禁府豈如是乎？”

문해야지 시추(時推)로 논단(論斷)할 수는 없습니다. 조복중은 조전언(曹典言) 24454) 의 친조카인데, 본래 부상 대고(富商大賈)로서 면포(綿布) 바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은 나라 사람이 아는 바입니다. 조복중은 또 말하기를, ‘조전언이 저로 하여금 면포를 바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조전언은 대내(大內)에 오래 있었는데, 어찌 면포를 바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조복중의 말이 사실이면 조전언이 죄가 있고, 그 말이 거짓이면 조복중의 죄도 큼니다. 중국 사람이 일찍이 글로써 우리 나라 사람에게 보여 주기를, ‘너희 나라 사신(使臣)은 올 때마다 장사꾼을 데리고 와서 간사한 짓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번에 조복중의 일로 인하여 50여 명이나 구속시켜 놓고 오래도록 판결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일인지요? 15명이나 조복중을 가리켜 장사꾼이라고 하였으니, 조복중의 일은 대체가 이미 드러나서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권건(權健)은 말하기를,  
“신(臣)은 들으니, 조복중은 장사로 업을 삼아 제용감(濟用監)에 면포를 바쳤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자에 면포 바친 문적(文籍)을 상고하게 하였으나, 1년에 혹 1, 2필(匹)이 기록되었으므로, 조복중을 곧바로 가리켜 흥리(興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정석건이 말하기를,  
“비록 한두 필을 바쳤더라도 장사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규명하기 어려운 것은 옥사(獄辭)입니다. 지난번 이화(李譱)의 일에 대해서는 도성(都城) 사람들이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만연(蔓延)되어 그치지 아니하면 아마도 마침내 조복중을 장사꾼이 아니라고 하여 버려두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p>“의금부(義禁府)에서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하였다.</p>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8일 (정축)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우리 군사가 오랑캐 지역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죽은 자가 많았는데, 회군(回軍)할 때에 적(賊)이 우리를 추격해 오므로, 할 수 없이 대응하여 겨우 네 수급(首級)을 참획(斬獲)하였으나, 소득(所得)이 소실(所失)을 메꿀 수가 없으니, 원수(元帥)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이번에 도리어 논공(論功)을 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말하기를,  “척후(斥候)를 멀리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道路)의 원근(遠近)을 알지 못해 군졸(軍卒)로 하여금 양식 준비를 적게 하도록 하여 굶어죽도록 하였으니, 그 손실(損失)이 큼니다.”  하고, 대사간(大司諫) 윤민(尹愨)은 아뢰기를,  “살아서 우리 땅으로 돌아온 자는 대개가 호수(戶首) 24457) 이고, 그 대동하고 간 보인(保人)들은 사상(死傷)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오랑캐의 땅에서 사상한 자가 많이 있었다면 도원수(都元帥)가 어찌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므로, 김승경이 말하기를,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망(死亡)한 수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논공(論功)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공과(功過)를 서로 의존(依準)한다고 하였으니, 비록 약간의 참획(斬獲)한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상한 자가 많으면 어찌 공에 대한 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극증(李克增)은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大司憲金升卿啓曰：“我軍深入彼土，糧餉不給，餓死者多有之，回軍之時，賊來追我，不得已應之，僅獲四級，所得不補所失，元帥可治罪也。今反論功，甚未便。”知事李克增曰：“不遠設斥候，未知道路遠近，而使軍卒少資糧以致飢餓，其失大也。”大司諫尹愨曰：“生還我土者，率皆戶首，而其帶行保人，死傷甚多。”上曰：“若於彼地多有死傷，都元帥豈諱不言乎？”升卿曰：“如不得已，的知死亡之數，然後論功未晚，古云功過相準，雖少有斬獲之功，若死傷者多，則豈可賞功乎？”克增曰：“己亥年西征回軍之時，照名點軍，故土馬物故得以詳知，今則纔至我土，旋即罷陣，至今未知物故之數，以此故也。”升卿曰：“斥候之行，與大軍之行不同，斥候若十日而返，大軍當持二十日糧可也。此責在元帥。”上曰：“元帥令資十五日糧，士卒不如令，致有飢困，予意大軍深入前所未到之地，以振國威，而無一人戰死，虜有畏威效順者，此可</p>

	<p>“기해년(24458) 에는 서정(西征)하였다가 회군(回軍)할 적에 이름을 대조 하며 군사를 점호하였으므로, 군사와 말이 죽은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땅에 이르자마자 즉시 군사를 해산시켰으니, 지금까지 죽은 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p> <p>하고, 김승경은 말하기를,</p> <p>“척후병(斥候兵)이 가는 것은 대군(大軍)이 가는 것과 다릅니다. 척후병이 만약 10일 만에 돌아왔다면 대군은 마땅히 20일 분의 양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이는 그 책임이 원수(元帥)에게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원수는 15일 양식을 준비하게 하였으나 사졸(士卒)들이 명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가 굶주리는 고생을 한 것이다. 나는 대군이 과거에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곳에 들어가 국위(國威)를 선양했는데, 한 사람도 전사(戰死)한 자가 없었으며, 오랑캐는 그 위엄에 두려워하여 귀순(歸順)한 자가 있으니, 그것은 논공(論功)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p> <p>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p> <p>“옛날에 논공(論功)할 적에는 오로지 머리를 벤 것으로 따졌었는데, 이번에는 참획한 공은 없고 다만 그들의 집만 불태웠을 뿐이니, 이번에 상을 주는 것은 고생하며 험지에 갔다 온 것만을 논(論)할 뿐입니다.”</p> <p>하자, 김승경은 말하기를,</p> <p>“작상(爵賞)은 임금의 대병(大柄)인데, 공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장차 참작해서 조치하겠다.”</p> <p>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p> <p>“제용감(濟用監)에 면포(綿布)를 바친 문안(文案)에 조치안(曹致安)이란 이름</p>	<p>論功者。”領事尹弼商曰：“古之論功，專以首馘，今無斬獲之功，但焚蕩其室廬耳。今所賞只論其勤苦跋涉耳。”</p> <p>升卿曰：“爵賞人君之大柄，不可濫及無功。”上曰：“予將斟酌處之。”升卿曰：“濟用監納布案有曹致安名，乃福重之初名也。赴京宰相不得帶興利之人，買賣作弊，已有禁章，處寧犯之，而奸詐之情亦露，若不於禁府推鞠，則當致府庭，面問而定罪也。”上顧問左右。弼商、克增對曰：“詐不以實，罪固重矣。不可不治也。”上曰：“不可致宰相於訟庭，其以時推照律。”</p> <p>升卿曰：“王子君邸宅，皆私獻之家，不問新舊，一皆撤去而新構，其材瓦若有可用，何必用新？”上曰：“舊家材瓦，已令仍用，間閣之數，亦依《大典》爲之。”</p> <p>【史臣曰：“處寧爲慶尙節度使，與福重同謀防納，又潛授營中雜物，輸其家。”】</p>
--	---	--

	<p>이 있는데, 곧 조복중(曹福重)의 초명(初名)이었습니다. 부경(赴京)하는 재상(宰相)이 장사꾼을 대동하고 가서 매매(買賣)하여 폐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금해진 법이 있는데, 변처녕(邊處寧)은 이를 범하였고 간사한 정상(情狀)도 드러났으니, 만약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推鞠)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부정(府庭)으로 불러다가 면대해 질문해서 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였다. 윤필상(尹弼商)과 이극중(李克增)이 대답하기를,</p> <p>“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속였으므로, 죄가 진실로 중하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재상(宰相)을 송정(訟庭)으로 불러낼 수는 없으니, 시추 조율(時推照律)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p> <p>“왕자군(王子君)의 저택(邸宅)은 모두 사사로이 바친 집으로 신구(新舊)를 막론하고 모두 철거(撤去)하고 새로 짓는데, 그 목재와 기와가 쓸 만한 것은 굳이 새 것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헌 집의 목재와 기와는 이미 그대로 쓰게 하였고, 집의 칸수도 《대전(大典)》에 의하도록 하였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변처녕(邊處寧)이 경상도 절도사(慶尙道節度使)가 되었을 적에 조복중(曹福重)과 공모(共謀)하여 방납(防納)하였고, 또 영중(營中)의 잡물(雜物)을 몰래 주어 그 집으로 가져가게 하였었다.” 하였다.</p>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p>	<p>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성준(成俊)이 치계(馳啓)하기를, “니마거 울적합(尼麻車兀狄哈)의 소로(所老)가 내관(來款)하였으므로, 우후(虞</p>	<p>○永安北道節度使成俊馳啓曰: “尼麻車兀狄哈所老來款, 使虞候金繼宗饋以</p>



<p>(弘治) 5년) 5월 13일 (임오) 2번째기사</p>	<p>候) 김계종(金繼宗)으로 하여금 주식(酒食)을 대접하게 하고 이어 요구하는 어염(魚鹽)과 포석(布席)을 주고, 또 니마거(尼麻車)를 선유(宣諭)하는 서계(書契)를 부쳐 보냈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소로가 귀순(歸順)하고 또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변장(邊將)으로서 마땅히 말하기를, ‘네가 성심(誠心)으로 귀순한다면 요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다만 후하게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번에 성준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이는 변장이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p> <p>하고, 드디어 성준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만약 본래부터 귀순하였던 자가 변(變)을 보고해 왔다면 한결같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옳겠지만, 나라에서 그들에게 죄를 묻은 뒤에 소로(所老)가 우리 군사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내관(來款)한 것이니, 그들에게 물품을 주어 우리가 선(善)을 가상하게 여기는 뜻을 가볍게 보여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에 그의 요구에 따라 어염(魚鹽)과 포석(布席)을 주게 된 연유를 속히 치계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酒食，仍與所求魚鹽布席，又付宣諭尼麻車書契送之。” 上曰：“所老歸順，且有所求，邊將當曰：‘爾誠效順，可得所求。’只厚饋而送可也。今俊慮不及此，遽從其請，有違邊將待夷之道矣。” 遂下書俊曰：“若素所歸順者報變，一從其求可也，國家問罪之後，所老畏我兵威，乃爾來款，不宜有所贈遺，輕示我嘉善之意也。今從其求請，給以魚鹽布席之由，可速馳啓。”</p>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14일 (계미) 2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前)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오순(吳純)이 군인(軍人) 1천 2백 34명을 내보내어 쌀과 포백(布帛)을 거두어 들인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하여 충군(充軍)시키는 데에 해당합니다.”</p> <p>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희(沈澮)는 의논하기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義禁府啓：“前平安道節度使吳純放軍人一千二百三十四名，收斂米布罪，律該決杖一百，告身盡行追奪充軍。” 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 沈澮議：“依律施行。” 盧思愼議：“純罪雖重，曾爲大臣，決杖充軍，恐辱名器。” 尹壕議：“本道放軍徵斂，自古而然，然不可不懲，依啓本施行。” 鄭文焯議：</p>

	<p>“오순의 죄가 비록 중(重)하기는 하지만 일찍이 대신(大臣)을 지냈으니, 결장(決杖)하여 충군(充軍)하는 것은 아마도 명기(名器)에 욕(辱)이 될 듯합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본도(本道)에서 군인을 내보내어 거두어 들인 것은 옛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p> <p>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p> <p>“동제(冬除)라 하여 물품을 거두며 군인을 내보낸 것은 비록 본도의 전례(前例)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한 때에 예전대로 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됩니다. 다만 오순은 공신(功臣)의 아들이로서 지위(地位)가 2품(二品)까지 이르렀으니, 성상(聖上)께서 결정하여 시행하소서.”</p> <p>하고, 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p> <p>“방어가 가장 긴요한 때를 당하여 군인을 많이 내보내어 쌀과 포백을 부당하게 거두었으니, 죄가 진실로 적지 않습니다. 그 율(律)을 적용하여도 오히려 죄가 남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순이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의 여러 절도사(節度使)들도 다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인데, 만약 오순에게만 죄를 준다면 앞서의 사람과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유(私有)로 삼지 아니하였고, 오순의 재기(才器) 또한 심상(尋常)하지 않은데다가 대부(大夫)의 반열에 있으며, 공신(功臣)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대부에게는 형벌이 더해지지 않았으며, 또 의능(議能)24462) · 의공(議功)24463) 의 법이 있으니,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 결정하소서.”</p> <p>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p> <p>“동제(冬除)라고 하며 군인을 내보냈다는 것은 전에 들어보지 못하였다. 절도사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군대를 정돈하여 적(賊)을 견제하지는 않고서 군인을 내보내어 물품을 거두어 들였으니, 위임(委任)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p>	<p>“稱冬除收物放軍，雖有本道前例，然防禦最緊時，仍舊爲之，固爲有罪。但純以功臣之子，位至二品，上裁施行。”洪貴達議：“政當防禦最緊之時，多放軍人，橫斂米布，罪實不貲，按以此律，猶有餘辜，但此非吳純創爲之，其來已久，前此各等節度使，皆當受此罪，若但罪純，則與前人罪同罰異，且無入己之私。純之才器，又非尋常，且從大夫之後功臣之子，古者刑不上大夫，又有議能議功之典，伏惟上裁。”</p> <p>傳曰：“冬除防軍，前此未聞，節度使當擾攘之日，不整軍制賊，而放兵徵斂，委任之意安在？然既從大夫之後，亦有弓馬之才，可只奪告身，外方付處，使之悔過自新。”遂付處純于連山縣。</p> <p>【史臣曰：“吳純少有將才，不學無術，性又貪墨。然赴防軍士，稱冬除放遣徵米布，平安道例事，非純創爲之也。”】</p>
--	--	--

	<p>그러나 이미 대부의 반열에 있고 궁마(弓馬)의 재주도 있고 하니, 다만 고신(告身)만 추탈(追奪)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24464 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와지게 해야 하겠다.”</p> <p>하고, 드디어 연산현(連山縣)에 부처하게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오순(吳純)은 약간의 장재(將材)가 있으나 불학 무식(不學無識)하고 탐욕스러운 자이다. 그러나 부방(赴防)한 군사가 동제(冬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며 쌀과 포백을 거둔 것은 평안도에서는 예사로 있는 일이지 오순이 처음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p>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22일 (신묘) 1번째기사</p>	<p>궁내(宮內)의 사낭(紗囊) 1백 32개를 내어다가 후추[胡椒]를 담아가지고 종친(宗親) 1품(品)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중추부(中樞府)·의빈부(儀賓府)·한성부(漢城府)·육조(六曹)의 당상(堂上)과 사헌부(司憲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나누어 주었다.</p>	<p>○辛卯/內出紗囊一百三十二，盛胡椒，分賜宗親一品領敦寧以上、議政府、忠勳府、中樞府、儀賓府、漢城府、六曹堂上、司憲府、承政院、弘文館、藝文館。</p>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22일 (신묘) 2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이(閔頤)가 와서 아뢰기를, “이번에 한보(韓堡)·윤탄(尹坦)·윤은로(尹殷老)를 선위사(宣慰使)로 삼으셨는데, 모두 중망(衆望)에 어울리지 않으며, 한보는 더욱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평양(平壤)은 곧 기자(箕子)의 고도(故都)인데, 술잔을 나누는 사이에 사신(使臣)이 만약 고사(古事)를 묻게 되면 결코 한 말도 조치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국체(國體)에 관계된 것이므로, 개차(改差)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 하였다. 심회(沈滄)는 의논하기를, “선왕조(先王朝)에서는 선위사를 보낼 적에 사람을 가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문신(文臣)을 가려서 보내도록 이미 법이 만들어졌으니, 사헌부에서 아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한보·윤탄·윤은로가 어찌 이 직임을 감당하지 못</p>	<p>○司憲府持平閔頤來啓曰：“今韓堡、尹坦、尹殷老爲宣慰使，皆不協衆望，而韓堡尤庸愚，平壤乃箕子故都，杯酒間，使臣若問古事，決不能措一辭，是關國體，不可不改。”上曰：“其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沈滄議：“先王朝宣慰使，不擇人遣之，今揀遣文臣，已立法，憲府所啓是矣。然堡、坦、殷老，豈不堪此任乎？”李克培議：“坦、殷老曾經承旨、六曹堂上，已諳事體，宣慰之任，足以能之。”盧思慎議：“宣慰使，非館伴之例，當在上裁。”許琮議：“堡、坦、殷老，立朝</p>

	<p>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윤탄과 윤은로는 일찍이 승지(承旨)와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을 지냈으므로 이미 사체를 알고 있으니, 선위사의 직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선위사는 관반(館伴)24483)의 예(例)와는 다르니, 마땅히 성상께서 재량(裁量)하기에 달렸습니다.”</p> <p>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한보·윤탄·윤은로는 조정에 벼슬한 것이 이미 오래였으니, 예법을 행함에 있어 어찌 어긋남이 있겠습니까? 다만 말하는 사이에 만약 고사(古事)를 묻게 되면 과연 사헌부에서 아뢴 것처럼 군색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개차(改差)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선위사는 다만 술대접만 할 뿐이므로, 그 행동과 말에 있어 실수만 없으면 되는 것이니, 한보 등이 비록 학문(學問)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위사의 직임 정도는 못할 것도 없습니다.”</p> <p>하고, 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  “이보다 앞서 선위사는 잠시 예를 행했을 뿐이고 문답(問答)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보도 또한 일찍이 선위사를 지낸 적이 있으니, 어찌 불가(不可)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술잔을 나누는 사이에 문답(問答)을 하는 것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p> <p>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한보 등이 비록 문신(文臣)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정에 있는 지가 오래였으니, 선위사의 직임이야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는가?”</p> <p>하였다.</p>	<p>已久，於行禮豈有差爽？但言語之間，若問古事，果如憲府之啓，未免於窘，改差爲便。”李鐵堅議：“宣慰使，但行酒(禮)〔禮〕，其於動靜言語，無差失而已。韓堡等雖無學問，如宣慰之任，不爲不足。”洪貴達議：“前此宣慰使，暫時行禮，無問答之事，韓堡亦曾行宣慰使，何不可之有？然盃酒問答間，未可保其必無也。”傳曰：“韓堡等，雖非文臣，侍朝已久，宣慰之任，豈不能堪？”</p>
--	---	---

<p>성종 265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28일 (정유) 4번째기사</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니, 양사(兩使)가 중문(中門) 밖에까지 영접을 나와서 말하기를, “공관(公館) 중에서는 우리들이 주인이고 국왕(國王)은 손님이니, 청컨대 국왕께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중국 조정(朝廷)을 공경하고 대인(大人)을 공경함인데, 어찌 관사(館舍)를 논하겠오?” 하고, 서로 사양하며 들어갔다. 양사(兩使)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혹심하게 더운 때에 저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니, 매우 감사하고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가 곧 그러한 것인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오늘 현세자(賢世子)를 보니, 국왕의 복경(福慶)이 무궁함을 알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남산(南山)에 대(臺)가 있고 북산(北山)에 내(萊)가 있도다. 즐거울사 저 군자(君子)여 방가(邦家)의 기틀이네.’(24493) 라고 하였는데, 지금 두 대인(大人)을 보니, 기쁨을 금할 수가 없오.” 하니, 정사도 그 시를 외고 또 말하기를, “현왕(賢王)의 말씀을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성천자(聖天子)께서 재위(在位)하시고 법도(法度)가 매우 준엄(峻嚴)하므로, 조신(朝臣)들이 조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왕께서 보내 주신 인정물(人情物)을 하나라도 감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p>	<p>○上幸太平館， 兩使出迎中門外曰：“公館中， 我輩爲主， 國王爲客， 請國王先入。” 上曰：“我來， 敬朝廷， 敬大人也， 何館舍之論？” 相讓而入， 兩使就上前曰：“如此酷熱， 爲我勞動， 多謝多謝。” 上曰：“禮則然， 何謝之有？” 正使曰：“今日見賢世子， 知國王福慶之遠。” 上曰：“《詩》云：‘南山有臺， 北山有萊， 樂只君子， 邦家之基。’ 今見兩大人， 其喜庸有極乎？” 正使亦誦其詩， 且曰：“賢王之言， 吾何以當之？ 聖天子在位， 法度甚峻， 朝臣小心畏慎， 故賢王所遣人情物件， 一不敢受。” 上曰：“寡人區區之誠， 大人皆却之， 在主人敬客之情， 能無愧乎？” 正使曰：“已領賢王盛意。” 上曰：“戊申年董大人宣諭聖旨云， 國王若留請詔書， 可從其言， 以此請留， 今兩大人何以處之？” 正使曰：“留詔非例事， 董大人之來， 亦無聖旨， 董大人見賢王， 請留甚切， 故從之。 如董大人與我， 可以留詔， 他人必不敢擅留也。 諸王府、各路布政司、安南等處， 皆不留詔， 復命之日， 一一回奏， 王若至誠請之， 留之何難？” 上曰：“此乃小邦萬</p>
--	---	--

	<p>“과인(寡人)의 하찮은 성의였는데, 대신께서 모두 거절하시니, 주인이 손을 공경하는 정의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이미 현왕의 성의(盛意)는 받은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신년(24494)에 동대인(董大人)이 성지(聖旨)를 선유(宣諭)하며 이르기를, ‘국왕(國王)이 만약 조서(詔書)를 두고 가기를 희망하면 그 말을 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고 가기를 청했었는데, 이번에 두 대신께선 어떻게 조치하겠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조서를 두고 가는 것은 관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대인이 왔을 적에도 성지(聖旨)는 없었습니다. 동대인은 현왕께서 두고 가기를 매우 간절하게 청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들어준 것입니다. 동대인과 저라면 조서를 두고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반드시 감히 마음대로 두고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왕부(王府)와 각처의 포정사(布政司)나 안남(安南) 등지에도 모두 조서를 두고 가지 않고 복명(復命)하는 날 하나하나 회주(回奏)합니다. 그러나 왕께서 만약 지성으로 청하신다면 두고 가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곧 소방(小邦)의 만세(萬世)의 보화(寶貨)인데, 어찌 지성으로 청하지 않겠오?”</p> <p>하였다. 정사(正使)가 뒤의 대청(大廳)으로 추창해 들어가서 조서(詔書)를 가져다가 안상(案上)에 올려놓으니, 임금이 조서를 받들어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에게 주어 승문원(承文院)으로 보내게 하였다. 음악(音樂)이 들어오니, 정사가 말하기를,  “성천자(聖天子)께서 동궁(東宮)을 세우고 천하(天下)에 포고(布告)하며 우리</p>	<p>世之寶，何不至誠請之？”正使趨入後大廳，捧詔書置于案上，上奉詔書，授領議政尹弼商等，送于承文院。樂入，正使云：“聖天子建東宮，布告天下，以我等爲從一品之職，擎頒詔勅，所願不辱帝命耳。朝廷不用女樂，請去之。”遂用男樂，及宴上行酒未幾，正使就上前欲行回杯，上辭以禮未完，正使曰：“《詩》云：‘既醉以酒，既飽以德。’又云：‘厭厭夜飲，不醉無歸。’今日酒既醉，夜又深，非特我輩困倦，賢王亦勞動，所以欲行謝杯。”上從之，及副使行酒訖，正使就上前曰：“《詩》云：‘三爵不識，矧敢多！’又今日我兩人所飲不止三爵，請罷宴。”上曰：“此詩乃戒酒也，大人以德將之，固無酒失，請俟禮完。”上又曰：“兩大人回程甚忙，欲更進一杯。”正使曰：“我有旨酒，嘉賓式燕以敖？我兩人既醉飽，已領賢王盛意，請罷宴。”上曰：“心乎愛矣，遐不謂矣，中心藏之，何日忘之。”兩大人道德，寡人何日忘之？請更進一盃。”正使欣然再誦其詩曰：“賢王之心，暗合古人，我兩人不敢當。《詩》云：‘汎汎楊舟，</p>
--	---	--

를 종1품(從一品)의 직(職)으로 조칙(詔勅)을 반사(頒賜)하게 하였으니, 소원은 제명(帝命)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여악(女樂)을 쓰지 않으니, 청컨대 내보내 주소서.”

하므로, 드디어 남악(男樂)을 썼다. 연회(宴會)에 이르러 임금이 술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정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회배(回杯)하고자 하므로, 임금이 아직 예(禮)가 끝나지 않았다고 사양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이미 술에 취하였고, 또다시 덕(德)에 배불렀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조용히 마시는 밤술이여,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술이 이미 취했고 밤이 또 깊었으니, 비단 우리들만 피곤할 뿐 아니라 현왕(賢王)께서도 피로하실 것이므로, 하직하는 술잔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부사(副使)가 술을 다 돌리고 나니, 정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석 잔 술을 마시고도 정신을 못차리는데, 더구나 많이 마실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이 마신 것은 석 잔뿐이 아니니, 과연(罷宴)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 시는 술을 경계시키기 위함인데, 대인(大人)은 덕(德)으로 주도(酒道)를 지키므로, 진실로 술로 실수함이 없었으니, 청컨대 예가 끝나기를 기다려 주시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두 대인께서 돌아가야 할 길이 매우 바쁘니, 다시 한 잔을 드리고 싶소.”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맛있는 술이 있어 훌륭한 손님이 잔치하며 즐기네.’라고 하였는데, 우리 두 사람이 이미 취하고 배불리 먹었으며, 이미 현왕의 성의(盛意)를 받

載沈載浮。’ 賢王 ‘中心藏之’之言，當服膺勿失。 館伴盧宰相， 謹慎詳密， 曲當條理， 知賢王能知人善任。” 上辭別， 正使曰：“賢哉！ 國王。” 送至中門外階下， 見御輿在大門外， 厲聲曰促進輿， 固請乘輿。 兩使將入門， 正使微語副使曰：“賢哉！ 國王， 賢哉！ 國王。” 上謂盧公弼曰：“天使性躁急， 卿能周旋其間， 一無誤事， 予甚嘉悅。” 仍賜衣一領。

	<p>왔으니, 과연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좋아하는데, 어찌 말하지 않으리오. 마음속에 새겨 두었는데, 언제나 잊으랴!’ 하였는데 두 대인의 도덕(道德)을 과인(寡人)이 언젠들 잊을 수 있겠오? 청컨대 다시 한 잔을 드리겠오.”      하니, 정사가 기뻐하며 그 시를 두 번이나 외고 말하기를,      “현왕(賢王)의 마음은 은연중 고인(古人)과 부합하여 우리 두 사람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넘실거리는 저 양주(楊舟)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네.’ 하였는데, 현왕께서, ‘마음에 새겨 둔다’고 하신 말씀은 마땅히 가슴에 새겨 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관반(館伴) 노재상(盧宰相)은 신중하고 치밀하여 조리에 알맞게 행동하니, 현왕께서 사람을 알아보고 옳게 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별(辭別)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국왕(國王)이시여.”      하며, 중문(中門) 밖의 뜰 아래까지 전송하면서 어여(御輿)24495)가 대문(大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말하기를,      “빨리 수레를 대령하라.”      하고, 수레에 오르기를 간곡하게 청하였다. 양사(兩使)가 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사가 부사에게 던지시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국왕이시여, 훌륭하십니다 군왕이시여!”      하였다. 임금이 노공필(盧公弼)에게 말하기를,      “중국 사신의 성품이 아주 조급한데, 경(卿)이 그 사이에서 주선(周旋)하여 한 가지도 그르친 일이 없었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고, 이어 옷 한 벌을 하사(下賜)하였다.</p>	
성종 265권, 23년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를 보내어 양사(兩使)에게 문안하였다. 정경	○戊戌/遣都承旨鄭敬祖, 問安于兩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5월 29일  
(무술) 1번째기사

조가 돌아오고자 하니, 양사가 관반(館伴)과 정경조를 불러 말하기를,  
 “사명(使命)은 예(禮)를 중하게 여기고 빈주(賓主)는 경(敬)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어제 연회(宴會) 때에 반찬을 내오고 술을 돌리는 자가 국왕(國王)에게는 반드시 꿇어 엎드리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손님을 공경하는 뜻이 마땅히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제도(帝都)에서 동(東)으로 오는데, 왕후(王侯)나 도독(都督)들이 부복(俯伏)하지 않는 자가 없었거늘, 지금 그대 나라는 어째서 그렇게 심히 공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알성(謁聖)하고 왕부(王府)에 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돌아온 뒤에 국왕께서도 반드시 와서 볼 것이니, 만약 군신(群臣)으로 하여금 꿇어앉았다가 일어나며 부복(俯伏)하게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나가서 영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나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양사가 드디어 문묘(文廟)에 갔는데, 너무 서둘러 갔으므로 묘문(廟門)을 미처 열지 않았고 또 안내자도 없었다. 양사가 얼마 동안 가마를 멈추고 있다가 예관(禮官)과 통사(通事)를 불렀으나 역시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양사가 크게 노여워하였다. 조금 후에 통사가 오자 선성(先聖)에 배알(拜謁)하고 명륜당(明倫堂)에 앉았다. 예조(禮曹)와 성균관 당상(成均館堂上)이 아직 행례(行禮)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양사가 서둘러 일어나서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렀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 밖에 나아가 맞이하니,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갈 길이 바빠서 즉시 고별(告別)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한 번 이별한 뒤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청컨대 한 잔을 드리고 싶소.”  
 하니,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使。敬祖將還，兩使招館伴及敬祖曰：“使命以禮爲重，賓主以敬爲主，而昨日之宴，進饌行酒者，於國王則必跪伏，於我輩不然，敬賓之意，當如是耶？吾等自帝都東來，王侯都督，莫不俯伏，今爾國何不敬之甚耶？吾今欲詣成均謁聖，仍詣王府。我還後國王亦必來見，若令群臣跪起俯伏，則吾當出接，不然不相見也。”兩使遂詣文廟，行急廟門未及開，又無僮介，兩使住轎良久。召禮官及通事，亦無應者，兩使大怒，俄而通事至，謁先聖，坐明倫堂。禮曹及成均堂上行禮未畢，兩使遽起，至昌德宮。上出迎于仁政門外，正使曰：“行色忙甚，卽欲告別。”上曰：“一別之後，更會無(朔) [期]，請進一杯。”正使曰：“可。”又曰：“副使座甚卑，移近我座可也。我若不白，誰復言之？”上曰：“大人教我以禮，多謝多謝，古人云：‘人誰無過？過而能改，斯爲善矣。’”正使曰：“國王眞賢王，但左右輔弼之臣，不體國王之意，不敬朝廷。”上曰：“我苟賢矣，何至於此？”正使曰：“賢王每事謙讓，眞賢矣哉！”就座行茶禮，及宴，正使執盞

<p>“부사(副使)의 자리가 매우 낮으니, 제 자리 근처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아뢰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말하겠습니까?”</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p> <p>“대인(大人)이 나에게 예(禮)를 가르쳐 주시니 매우 감사하고 매우 감사합니다. 옛 사람의 말이, ‘사람은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었더라도 고치기만 하면 그것이 선(善)이다.’고 하였오.”</p> <p>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p> <p>“국왕께서는 참으로 현왕(賢王)이신데, 다만 좌우(左右)에서 보필하는 신하들이 국왕의 뜻을 본받지 않고 중국 조정(朝廷)을 공경하지 않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참으로 훌륭하다면 어찌 그러함이 있겠오?”</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p> <p>“현왕(賢王)께서 매사(每事)를 겸양(謙讓)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p> <p>하였다. 자리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고 잔치가 시작되자, 정사가 술잔을 들고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p> <p>“왕의 나라는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중국 조정과 다름이 없으나, 다만 어음(語音)이 같지 아니하여 우리 두 사람이 뜻을 다 전달할 수 없으니, 한스럽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우리 나라 사람은 성품이 본래 노둔(魯鈍)하여 비록 중국의 어음을 배우기는 하지만, 두 대인(大人)이 말한 것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과인(寡人) 역시 뜻을 다할 수 없음은 진실로 대인이 말한 것과 같소.”</p> <p>하였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p> <p>“일찍이 국왕께서 독서(讀書)를 좋아하고 예의(禮義)에 밝으며 중국 조정을 공경하고 현덕(賢德)이 있다고 들은 것이 오래였는데, 이번에 직접 목도(目覩)</p>	<p>就上前曰：“王國禮樂文物，與朝廷無異，但語音不同，我兩人不能盡意，可恨。”上曰：“東人性本魯鈍，雖學華音，兩大人所言，安能盡傳，寡人亦未盡意，誠如大人所言。”正使曰：“嘗聞，國王好讀書、明禮義、敬朝廷、有賢德，久矣。即今日觀，凡所施爲，悉愜所聞。”上曰：“敬朝廷則寡人盡心焉爾矣，所謂好讀書、明禮義、有賢德等語，特大人過聽。”正使曰：“是亦賢王之言。”兩使出進善門，上猶立仁政門階上，兩使顧見遙揖，上亦應之。正使曰：“賢哉，賢哉！”上即幸太平館，欲行餞宴，正使語館伴盧公弼曰：“若他人奉使來，何止受其饋遺，必干請倍萬，朝廷以我等廉介，特遣於貴國，貴國以吾等廉介，并載謝表可也。前此董大人、劉大人，奉使安南，并載其事於謝表，朝廷嘉之，吾之所囑，苟無其例，固不可也，既有此例，故言之耳。”既而曰：“并載謝表，勢若難焉，則別爲書以奏可也。”公弼以啓，上意不可，命公弼毋答其言。兩使具行服將出，上令鄭敬祖請留，兩使已出，上見兩使於館門外。兩使曰：</p>
--	--

	<p>하니, 모든 시위(施爲)가 모두 들은 것과 부합합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중국 조정을 공경하는 것은 과인이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독서를 좋아하고 예의에 밝고 현덕이 있다는 등의 말은 다만 대인께서 잘못 들은 것이지요.”</p> <p>하니, 정사가 말하기를,</p> <p>“그것도 현왕다운 말씀입니다.”</p> <p>하였다. 양사(兩使)가 진선문(進善門)까지 나갔는데도 임금은 그 때까지 인정문(仁政門)의 뜰 위에 서 있었다. 양사가 돌아보고 멀리서 읍(揖)을 하니, 임금도 응답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p> <p>“훌륭하다. 훌륭하다.”</p> <p>하였다. 임금이 즉시 태평관(太平館)에 행차하여 전송연(餞送宴)을 베풀고자 하였다. 정사가 관반(館伴) 노공필(盧公弼)에게 말하기를,</p> <p>“만약 다른 사람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왔다면 어찌 그 주는 선물을 받는 정도로 끝나겠는가? 반드시 만배(萬倍)나 요구했을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는 우리들이 청렴하다고 하여 특별히 귀국(貴國)에 보낸 것이니, 귀국에서는 우리들의 청렴함을 사표(謝表)에 아울러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동 대인(董大人)과 유 대인(劉大人)이 안남(安南)에 사명을 받들고 갔을 적에 그러한 사실을 사표에 아울러 기록하였으므로, 중국 조정에서 아름답게 여겼었다.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한 전례(前例)가 없었다면 참으로 불가(不可)한 것이지만, 이미 그러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말하는 것이다.”</p> <p>하고,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p> <p>“사은표에 아울러 기록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따로 글을 만들어 아뢰어도 좋을 것이다.”</p> <p>하였다. 노공필이 그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옳지 않게 여겨서 노공필에게 명</p>	<p>“我兩人行色忽忽，天亦炎熱，請告別於此。”上曰：“欲進別杯，請少住。”</p> <p>兩使曰：“行甚匆忙，留一日則稽一日之程，即欲告別。”上曰：“若行忙未得成禮，請兩大人少留於此，我先至慕華館，欲進餞杯。”兩使曰：“已知國王誠意，何必遠送？”上曰：“大人既知寡人誠意，請少留，令我先行，得盡敬朝廷、敬大人之意。”正使顧副使曰：“賢王此言誠是，當依請。”上先幸慕華館，兩使尋至，行宴禮。正使曰：“從此一別，天長地久，正是永別。”上曰：“天長地久有時盡，此恨綿綿無絕期。”今者一別，後會難卜，寡人之情，倍於大人。”正使含笑而對曰：“漢皇重色思傾國，御宇多年求不得。”此古人譏色荒之詩也，賢王并與此詩而知之，其真好學矣。”及進花，正使曰：“我兩人心忙，以行服在宴席，心頗未安。”正使執盞，就上前曰：“聖天子在位，滿朝公卿大夫皆老成人，今觀國王，大概相似，國王賢德，說不能盡，但左右輔弼之臣，只敬國王，不敬使臣耳。我等使事已竣，不可久留，此處民風美俗，國王賢德，當播于朝</p>
--	---	--

하여 그 말에 대답하지 말게 하였다. 양사가 길 떠날 복장을 갖추고 나가려고 하니, 임금이 정경조(鄭敬祖)로 하여금 머물기를 청하였는데, 양사가 이미 나갔다. 임금이 양사(兩使)를 관문(關門) 밖에서 만나 보니, 양사가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갈 길이 바쁘고 날씨도 덥고 하니, 청컨대 여기서 고별(告別)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별주를 드리고자 하니, 청컨대 조금 머무시오.”

하니, 양사가 말하기를,  
 “갈 길이 매우 바쁘니, 하루를 머물면 하룻길이 지체될 것이므로, 즉시 고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갈 길이 바빠서 예(禮)를 차릴 수가 없으면, 청컨대 두 대인은 여기서 잠시만 머무시오.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먼저 가서 전별주(餞別酒)를 드리고자 하오.”

하였다. 양사가 말하기를,  
 “이미 국왕(國王)의 성의를 알았는데 어찌 반드시 멀리까지 전송을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이미 과인(寡人)의 성의를 알았으면, 청컨대 조금만 머무시고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중국 조정(朝廷)을 공경하고 대인을 공경하는 뜻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오.”

하니, 정사가 부사(副使)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현왕(賢王)의 그 말은 진실로 옳으니, 마땅히 청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모화관에 먼저 거둥하니, 양사가 곧 이르렀다. 연례(宴禮)를 베풀자, 정사가 말하기를,

廷。” 上曰：“敝邦僻陋，有何美俗？寡人不敏，有何賢德？” 正使欣然，答曰：“採風俗歌謠，獻于天子，使臣之職也。況民風美俗，國王賢德，人所共聞，猶爲謙讓，益見王賢德。” 又曰：“崔溥安在？我在南方時，溥與四十餘人漂流到海岸，我乃奏達朝廷，付盤纏脚力，送還本國，又東八站鳳凰山設堡，亦我所奏，從此朝貢來往者，保無他虞，王知之乎？” 上曰：“多謝。” 正使曰：“請留詔書節目，我欲歸奏朝廷，可即書來。” 天使立待之，上曰：“少住，願奉一杯。” 正使曰：“賢王所謂‘中心藏之，何日忘之’之言，可當百杯，我兩人藏諸胸中而去，何必飲酒然後知賢王誠意哉？” 竟不飲。

“여기서 한 번 이별하면 하늘처럼 끝이 없고 땅처럼 오래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영별(永別)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처럼 끝이 없고 땅처럼 오래 가는 것도 어느덧가는 다함이 있겠지만, 이 한은 계속되어 끊어질 시기가 없으니, 이번에 한 번 이별하면 다음에 만날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과인의 심정은 대인보다 배나 한스럽소.”

하니, 정사가 웃음을 머금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한(漢)나라 황제(皇帝)가 여색(女色)을 소중히 여겨 경국색(傾國色)을 생각하였으나, 임금 된 지 여러 해에 구해도 얻지 못하였네.’라고 한 것은 옛사람이 여색에 빠진 것을 비평한 시였는데, 현왕께서 그 시까지 아울러 알고 있으니, 참으로 학문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였다. 꽃을 바치기에 이르자,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이 바빠서 여행 복장으로 연석(宴席)에 있으니, 마음이 매우 미안합니다.”

하고, 정사가 술잔을 가지고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성천자(聖天子)께서 재위(在位)하여 계시고 온 조정(朝廷)의 공경(公卿)과 대부(大夫)가 모두 노련한 사람인데, 이번에 국왕의 나라를 보니, 대개가 비슷하였습니다. 국왕의 어지신 덕은 말로 다할 수 없겠으나, 다만 좌우(左右)의 보필하는 신하가 다만 국왕만 공경하고 사신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명(使命)을 받은 일이 이미 끝났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의 민풍(民風)과 미속(美俗), 그리고 국왕의 어지신 덕은 마땅히 중국 조정에 전파 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궁벽한 곳인데, 무슨 아름다운 풍속이 있겠으며, 과인이 민첩하지 못한데, 무슨 어진 덕이 있겠오.”

하니, 정사가 기뻐하며 대답하기를,  
“풍속(風俗)과 가요(歌謠)를 채집하여 천자(天子)에게 바치는 것은 사신(使臣)의 직분입니다. 더구나 민풍(民風)과 미속(美俗), 그리고 국왕의 어진 덕은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는 것인데도 오히려 겸양(謙讓)을 하시니, 더욱 왕의 어진 덕이 돋보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최부(崔溥)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남방(南方)에 있을 적에 최부가 40여 명와 함께 표류(漂流)하여 해안(海岸)에 이른 것을 내가 중국 조정에 아뢰어서 반전(盤纏)24496) 과 각력(脚力)을 주어 본국(本國)으로 송환(送還)하게 하였습니다. 또 동팔참(東八站) 봉황산(鳳凰山)에 보루(堡壘)를 설치한 것도 내가 아뢴 것인데, 그로부터 조공(朝貢)하러 왕래(往來)하는 자가 다른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하므로, 임금의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  
“조서(詔書)를 두고 가기를 청하는 절목(節目)에 대해 내가 돌아가서 중국 조정에 아뢰고자 하니 곧 좀 써주십시오.”

하고, 중국 사신이 서서 기다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금만 머무르시오. 한 잔을 드리고자 하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현왕(賢王)께서 말씀하신, ‘마음속에 새겨 두었는데, 어느때나 잊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1백 배(杯)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가슴에 간직하고 가는데, 어찌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현왕의 성의를 알 수 있었습니까?”

하고, 끝내 마시지 아니하였다.

<p>성종 266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6월 1일 (경자) 4번째기사</p>	<p>돈녕부 정(敦寧府正) 이창신(李昌臣)을 불러 전교(傳敎)하기를, “그대가 요즈음 매우 분주하게 수고가 많았다. 중국 사신은 성품이 조금하여 접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대는 그 사이에서 말을 전하며 실수함이 없었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주찬(酒饌)을 내리니, 그대는 그 뜻을 알라.” 하였다.</p>	<p>○召敦寧府正李昌臣，傳曰：“爾近日 奔走甚勞，天使性躁，接待爲難，爾於 其間，傳語不失辭，予用嘉悅，賜酒饌， 爾其知之。”</p>
<p>성종 266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6월 4일 (계묘) 2번째기사</p>	<p>양 대비전(兩大妃殿)에서 2품(二品) 이상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 문관(藝文館)·통례원(通禮院)·사역원(司譯院)의 관원(官員)에게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후추[胡椒]와 선자(扇子)를 차등 있게 내려 주었 으며, 이어서 입직(入直)한 위장(衛將)·부장(部將)·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아울러 잔치에 참석하게 하였다.</p>	<p>○兩大妃殿賜宴二品以上及承政院、 弘文館、藝文館、通禮院、司譯院官 員于明政殿庭，賜胡椒、扇子有差，仍 使入直衛、部將及兵曹、都摠府、宣 傳官竝參宴。</p>
<p>성종 266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6월 7일 (병오) 1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이제 비도 흠족하게 내렸고 양맥(兩麥)24506) 이 풍년들려고 하니, 주금(酒 禁)을 과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丙午/傳曰：“今雨澤既洽，兩麥將登， 其罷酒禁。”</p>
<p>성종 266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6월 7일 (병오) 4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니,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 윤필상(尹弼商)· 임원준(任元濬)·이극증(李克增)·김자정(金自貞)이 입시(入侍)하였다. 임사홍(任 士洪) 등 13인(人)이 동(東)·서(西)로 나누어 짝이 되어 중국말로 서로 문답 (問答)하기를 마치니, 임금이 임사홍(任士洪)과 이창신(李昌臣)으로 하여금 서 로 한참 동안 말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 등이 비록 중국음을 이해하기는 하였으나, 입이 익숙하지는 못하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옛날 이변(李邊)이 40여 차례나 중국에 갔었으므로, 중국말에 익숙할 수 있 었습니다. 이무리들도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나가니, 빈청(賓廳)에 술을 내려 주고 승지(承旨) 등으로 하여금 마주 대하고 대접하게 하였다.</p>	<p>○上御宣政殿。司譯院提調尹弼商、 任元濬、李克增、金自貞入侍，任士洪 等十三人分東西爲耦，以漢語相問答， 訖，上令士洪及李昌臣相語良久，上 曰：“士洪等雖解漢音，口不快。”弼 商曰：“昔李邊四十餘次赴京，得慣漢 語，此輩須使一年一赴京可也。”弼商 等出，賜酒于賓廳，使承旨等對饋。</p>
<p>성종 266권, 23년</p>	<p>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서 보낸 자문(咨文)에 이르기를,</p>	<p>○遼東都指揮使司移咨云：“弘治五年</p>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6월 9일  
(무신) 3번째기사

“ 홍치(弘治) 5년(1492) 3월 25일에 작은 배 두 척이 바다에서 서남(西南)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언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한 배에는 여섯 사람에게 검은 개 두 마리, 한 배에는 다섯 사람에게 흰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중국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이, ‘우리는 조선국(朝鮮國)의 의주(義州) 사람으로, 동행(同行)한 배가 5척이며, 본주(本州)의 비문(批文)을 받들고 조선 국왕(朝鮮國王)에게 바치려고 연해(沿海)에서 사냥하면서 조개[蜆子]잡이를 해 왔습니다. 집을 떠난 지 5개월인데, 3척의 배와 서로 행방을 잃어버리고서, 그것을 찾아 나섰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건(案件)을 가지고 성화(成化) 23년(1487)의 금주위 친호(金州衛千戶) 하충(夏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대조해 보니, 거기에 일컫기를, ‘바다의 섬에서 고려(高麗)의 배 두 척을 만났는데, 배를 부리는 사람은 10명이었으며, 각각 항아리와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충 등이 협공하여 사로잡으니, 그들은 조선국(朝鮮國)의 의주(義州) 사람으로서 국왕(國王)에게 봉진(奉進)하려고 조개잡이를 나선 것인데, 이미 본원(本院)의 순무(巡撫) 유 우부 도어사(劉右副都御史) 등에게는 정문(呈文)을 보냈다고 하므로, 요동 도사(遼東都司)에게 통보하고, 이어 조선국과의 금약(禁約)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개잡이를 하는 것은 군인(軍人)이라도 국경(國境)을 넘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기되었던 변환(邊患)이 제거된 이후에 이번의 보고인 전향의 사건은 친호(千戶) 하충(夏聰)이 상사(上司)에 보고한 것과 내용이 서로 같았습니다. 흠차 진수 요동 어마감(欽差鎮守遼東御馬監)의 위 태감(韋太監)과 총병관 도독(總兵官都督) 이 첨사(李僉使)가 의논하기를, ‘정문(呈文)에서는 비록 조선국(朝鮮國)의 조개잡이 배라고 하였으나, 다만 말한 것이 거짓일 수도 있으니, 다 믿기는 어려우므로, 마땅히 금약(禁約)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겠다.’ 하고, 그것을 본사(本司)에 알려 왔으므로, 해당 관리에게 의논한 내용의 일

三月二十五日，見小船二隻，在海往西南行，離岸不遠，一船有六人黑狗二，一船有五人白狗一，有一人解漢語，是朝鮮國義州人。同行船五隻，奉本州批文，沿海打圍窰取蜆子，進奉朝鮮國王，離家五箇月，與三船相失，仍此追尋到此。得此案照，成化二十三年，據金州衛千戶夏聰呈，稱在海洋島，遇見高麗船二隻，使船人十名各有缸鍋狗隻，夏聰等夾攻捉獲，稱係朝鮮國義州人，尋窰蜆子進奉。已經備呈本院巡撫右副都御史劉等處，轉行遼東都司，仍行朝鮮國禁約，前項窰取蜆子軍人，亦不許越境過海，引惹邊患去後。今報前因，亦與千戶夏聰呈報上司，情因相同，欽差鎮守遼東御馬監太監韋，摠兵官都督僉使李議得，所呈雖稱是朝鮮國打圍船隻，但恐所言譎詐，難以盡信，合行隄備禁約，爲此仰本司，當該官吏照依會議內事理，即便轉行都指揮耿賢，嚴令各該地方，用心操守防範，及督沿邊哨守官軍，晝夜仔細瞭望，遇有船隻出沒，星飛傳報本司，仍行朝鮮國查照禁約施行，具由回報。”



	<p>에 따라 즉시 시행하게 하는 한편, 도지휘(都指揮) 경현(耿賢)이 각처의 해당 지방에 엄령(嚴令)을 내려 마음을 써서 지키고 방어하게 하였으며, 또다시 연변(沿邊)을 초수(哨守)하는 관군(官軍)을 독려(督勵)하여 밤낮으로 자세히 살펴보아서 출몰(出沒)하는 선척(船隻)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본사(本司)에 보고하고, 이어 조선국의 금약을 참조하여 시행하게 하였으니, 사유를 갖추어 회보(回報)하십시오.”</p> <p>하였다.</p>	
<p>성종 266권, 23년 (1492 입자 / 명 홍치(弘治) 5년) 6월 10일 (기유) 3번째기사</p>	<p>의주 목사(義州牧使) 원중거(元仲矩)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번에 온 요동 도사(遼東都司)의 자문(咨文) 가운데, ‘홍치(弘治) 5년 3월 25일에 금주(金州) 동남(東南)쪽 해양(海洋) 안에 작은 배 두 척과 사람 11명 가운데서 한 사람은 능숙한 중국말로, ‘우리는 조선국(朝鮮國) 의주(義州)사람으로서 동행(同行)한 배는 5척이었으며, 본주(本州)의 비문(批文)을 받들고 바다 연안에서 진상(進上)할 조개잡이를 했는데, 집을 떠난 지는 5개월이 되었으며, 동반(同伴)한 세 척의 배를 잃고서 그 때문에 각 해도(海島)로 찾아 나섰습니다.’ 하였다고 한다. 본주에서 어떤 사람의 배 5척이 국경(國境)을 넘어 바다로 간 것과 행장(行狀)24514 을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여 치계(馳啓)하라.”</p> <p>하였다. 승지(承旨) 허침(許琛)이 아뢰기를,  “전에도 요동(遼東)에서 횡행(橫行)하는 자가 있어, 요동에서 자문(咨文)을 보냈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의심하였었는데, 그 후에 들으니, 곧 황해도(黃海道) 풍천(豐川)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의주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청컨대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에 하서(下書)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下書義州牧使元仲矩曰：“今到遼東都司咨文內，弘治五年三月二十五日，金州東南海洋內有小船二隻，共人十一名中有一人通曉漢語，稱言我是朝鮮國義州人，同行船五隻奉本州批文，沿海打圍取蜆子進上，離家五箇月，失同伴船三隻，因此各海島尋蹤云云。本州某某人等船五隻，越境下海及行狀成給與否，備細相考馳啓。”承旨許琛啓曰：“前者亦有橫行于遼東者，遼東移咨，而國家亦疑之，其後聞之，乃黃海道豐川人也。今亦未可的指爲義州人也，請下書黃海、平安兩道。”從之。</p>
<p>성종 266권, 23년 (1492 입자 / 명 홍치(弘治) 5년) 6월 16일</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졸(卒)한 조지경(曹智敬)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10석(碩), 유밀(油蜜) 각 5두(斗), 진말(眞末) 10두, 관곽(棺槨) 각 1개, 유둔(油菴) 2사(事)를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賜卒曹智敬賻米、豆并十碩、油蜜各五斗、眞末十斗、棺槨各一、油菴二事。</p>

<p>(을묘) 3번째기사</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조지경은 의술(醫術)로 여러 조정에 벼슬하여 지위가 2품(二品)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 98세였다.” 하였다.</p>	<p>【史臣曰：“智敬以醫術歷仕累朝，位至二品而卒，年九十八。”】</p>
<p>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1일 (기사) 1번째기사</p>	<p>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토산품(土產品)을 가지고 삼포(三浦)24554) 에 올 때 장사꾼과의 무역(貿易)을 허락하면, 왜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싸움이라도 하게 되어 그로 인해 사이가 나쁘게 될까 염려하였으므로,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근래(近來)에 왜인이 가지고 오는 동(銅)과 납(鐵)이 전보다 배가 넘어서 값으로 지급하는 포화(布貨)를 잇대기가 어려우니, 사무역(私貿易)을 하게 하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포에만은 불가(不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왜선(倭船)이 삼포에 이르면 배로써 동(銅)과 납(鐵)을 화원(花園)으로 실어오게 하여 사무역(私貿易)을 하도록 해서 상례(常例)로 삼게 하면 왜인과의 거리가 멀게 되므로 아마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되고 공무역(公貿易)의 폐단도 없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왜인이 화원에 머무는 것이나 화원에 머무는 것이 비용은 마찬가지로 됩니다. 만약 얼음이 얼 때는 배로 운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오는 자는 적으며 판매하는 물건도 많지가 않고, 또 농한기(農閑期)가 되었으니, 비록 백성으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더라도 편찮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삼포에서 사무역을 한 것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왜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만호(萬戶)나 수령(守令)이 마땅히 검찰(檢察)할 것입니다. 왜인으로 하여금 화원에 와서 장사하게 하는 것은 단연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朔己巳/議政府右贊成鄭文炯來啓曰：“倭人賣土產到三浦，許商賈販易，則與倭爭利，或至毆鬪，慮因此構釁，自祖宗朝禁之。但近來倭人所賣銅鐵，倍多於前，支價布貨難繼，莫如私貿易之便，然於三浦則不可，臣意倭船到三浦，船輸銅鐵於花園，許令私貿易以爲常，則與倭隔遠，庶不構釁，而公貿易之弊可除矣。如曰：‘倭人到花園，留連費廩爲不可。’則留浦與留花園，爲費一也。若曰：‘合冰時不得船運。’則冬節來者鮮少，販賣之物不多，又當農隙，雖使民轉輸可也。”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沈澮議：“三浦私貿易，匪今而始，設若與倭爭利，至於相鬪，萬戶、守令，亦當檢察，令倭人到花園販易，斷不可行。”李克培議：“倭船到花園和賣，弊將多端，斷不可行。三浦私貿易，臣於前議已盡，更留聖慮。”盧思慎議：“倭人自遠而來，寄寓他境，雖有不如意，豈至輕爲鬪爭？其於花園可保其無鬪乎？徒勞民力輪轉而已，無益於事。”尹壕議：</p>

“왜선이 화원에 이르러 매매를 하게 되면 폐단이 많아질 것이므로, 단연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삼포에서 사무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이 앞서 의논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 성상(聖上)께서 다시 유념(留念)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왜인(倭人)들이 멀리서 와 가지고 남의 나라에 붙여 있는데, 비록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경솔하게 싸우기야 하겠으며, 화원이라고 하여 싸우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백성에게 운반하는 괴로움만 끼칠 뿐이고 일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동(銅)과 납(鐵)을 화원에서 무역하게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인으로 하여금 화원에 와서 판매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오는 왜인마다 오래 머물고자 하는데, 만약 화원에서 사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로써 일을 오래 끌 것이니, 나라의 비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원은 내지(內地)인데, 그들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여 허실(虛實)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공무역(公貿易)을 이미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아직 삼포에서 사무역(私貿易)을 하게 하여 금령(禁令)을 엄하게 하면 아마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폐단이 생기면 고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

“정문형(鄭文炯)이 아뢴 것이 시행할 만하기는 합니다. 다만 화원으로 실어 오는 것과 왜인을 화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마도 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시행하도록 윤허(允許)하신다면 그 폐단을 없게 할 절목(節目)을 다시 의논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銅鐵貿易於花園似可，然令倭人到花園販賣，實爲未便。”許琮議：“倭人來者，每欲久留，若於花園私賣，則托以未畢貿易，遷延日月，國費必不貲，且花園內地，而使彼人久處，知其虛實，甚不可也。公貿易既不可繼，姑令三浦私貿易，而嚴其禁令，庶或無弊，弊生則改之何難？”洪貴達議：“文炯所啓，似可施行，但花園輪轉及倭留花園，恐不能無弊，若許施行，其無弊節目，更議爲之。”傳曰：“今觀群議，皆曰將有弊也。前此戶曹亦以私貿易爲不可，贊成所啓，姑勿施行。”

	“이번에 여러 의논을 보건대, 모두가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호조(戶曹)에서도 사무역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으니, 찬성(贊成)이 아된 것은 아직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2일 (경오) 1번째기사	병조 당상(兵曹堂上)·도총부(都摠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에 술을 하사(下賜)하고, 명하여 희우(喜雨)에 대한 율시(律詩)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庚午/賜酒于兵曹堂上、都摠府、承政院、弘文館，命製喜雨律詩以進。
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5일 (계유) 2번째기사	전교하기를, “후원(後苑)에 논을 만들 만한 땅이 있으니, 내가 금년에 일구어 두었다가 내년엔 벼를 심고자 한다. 선공감(繕工監)의 관리(官吏)로 하여금 1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後苑有可爲水田之地，予欲今年耕治，明年種穀，其令繕工監官吏，領軍一百，監董其役。”
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8일 (병자) 3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예조 서리(禮曹書吏) 이맹손(李孟孫)·김정(金晶)이 호조·예조의 관문(關文)을 위조하고 관인(官印)을 도용하여 종친(宗親)의 제사에 부의(賻儀)로 주는, 미멸(米憵)·유밀(油蜜) 등 잡물(雜物)을 받은 죄는 율이 참대시(斬待時)24558)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禮曹書吏李孟孫、金晶，僞造戶曹、禮曹關，盜用印，受宗親賻祭米憵油蜜雜物罪，律該斬待時。”從之。
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9일 (정축)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교(傳教)하기를, “양 대비전(兩大妃殿)과 본궁(本宮)에 중미(中米) 각 30섬과 조미(造米) 각 70섬을 수송하고, 내수사(內需司)에 중미 1백 섬과 조미 4백 섬을 수송토록 하라.” 하였다.	○傳于戶曹曰：“兩大妃殿，本宮輸送中米各三十碩、造米各七十碩；內需司輸送中米一百碩、造米四百碩。”
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칙(李則)이 치계(馳啓)하기를, “도내(道內)가 한건(旱乾)하여 곡식이 말라 죽습니다. 청컨대 향축(香祝)을 내	○平安道觀察使李則馳啓：“道內旱乾，禾穀焦枯，請降香祝禱雨。”回諭曰：

<p>(弘治) 5년 7월 11일 (기묘) 2번째기사</p>	<p>려 주셔서 비를 빌게 하소서.” 하니, 회유(回諭)하기를, “이번에 경(卿)의 계본(啓本)을 보니, 내가 매우 걱정이 된다. 지금 비록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말라 죽은 곡식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할 것이다. 구황(救荒)할 모든 일을 경은 미리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今觀卿啓，予甚軫慮，今雖下雨，禾之已焦者，必不復蘇，救荒諸事，卿可預備。”</p>
<p>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14일 (임오) 3번째기사</p>	<p>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친히 석전(釋奠)을 행한 이튿날에는 대성전(大聖殿) 뜰에서 선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팔도(八道)의 유생(儒生)이 모두 서울에 모여들기 때문에 대성전의 뜰에서는 아마도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컨대 세 곳으로 나누어 시책(試策)하도록 하여, 합격한 자 몇 사람을 뽑고, 《사서(四書)》에서 희망에 따라 이서(二書)를 선택하고, 이경(二經)에서 일경(一經)을 선택해서 강독(講讀)하게 해서, 조(粗)·통(通) 이상을 뽑아 전시(殿試)에 응시하게 하소서. 그리고 석전하는 날 백관(百官)과 유생(儒生)을 대접하려면 그 수가 무려 3, 4천 명은 될 것이니,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적(錄籍)되지 아니한 유생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뽑는 절목(節目)에 대해서는 경(卿)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옛날에 수만 명의 중들에게 밥을 먹인 일도 있는데, 어찌 유생을 대접하는 것만이 그렇게 어렵겠는가?” 하였다.</p>	<p>○廣川君李克增來啓曰：“臣聞親行釋奠，翌日取士于殿庭，今八道儒生皆集京師，殿庭殆不能容，請分三所試策，取中格者幾人，四書抽一書自願，二經抽一經講，取粗通以上許赴殿試。釋奠日將饗百官儒生，其數無慮三、四千人，供之爲難，其儒生不錄籍者，勿許參何如？”傳曰：“取人節目，卿言良是，古有飯僧數萬者，今何獨難於饗儒生乎？”</p>
<p>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17일 (을유)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승조(鄭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에 회환미(回換米)가 2천 6백 72섬이고, 잡곡(雜穀)이 1만 7천 6백 28섬이며, 영안도(永安道)에 잡곡이 3천 8백 28섬인데, 이보다 앞서 양계(兩界)에 각각 면포(綿布) 1천 필을 보내어 곡식을 무역해서 군수(軍需)에 제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내 준 일은 없으니, 지금 1천 5백 필을 특별</p>	<p>○戶曹判書鄭崇祖來啓曰：“平安道回換米二千六百七十二碩、雜穀一萬七千六百二十八碩；永安道雜穀三千八百二十八碩，前此兩界各送絁布一千匹，貿穀以供軍需，然且不給，今特送一千</p>

히 보내고 조관(朝官)을 파견해서 시세를 살펴보고 값을 감하여 곡식을 무역하게 하고 잡곡과 환미를 면제시켜 보상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澹)·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양계(兩界)에서 사사로이 회환(回換)하는 자는 면포(綿布)를 많이 가져오는데, 수령(守令)에게 청탁하여 강제로 백성에게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는데, 그 폐단이 백성에게 미칠 뿐만이 아니고, 관가(官家)의 무역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잡곡(皮雜穀)은 급할 때에 소용이 없으니, 앞으로는 청컨대 사사로이 하는 회환은 금하고 쌀로 무역하게 하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이극균(李克均)·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

“양계(兩界)에서 곡식을 무역하는 것은 오로지 군수(軍需)를 위한 것인데, 피곡(皮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간(民間)에 흩어 주고 쌀로 거두어 들여야 쓸 수가 있습니다. 공사(公私)의 무역은 모두 피곡은 제외시키고 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심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양계(兩界)에서 용병(用兵)하므로 해마다 면포(綿布)를 수송하여 곡식을 무역하게 하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양도(兩道)에 곡식을 바치게 하여 경창(京倉)과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의 쌀을 받아들였는데, 부상(富商)과 대고(大賈)들이 기회를 타고 이익을 노리면서, 다투어가며 잡곡을 사다가 관(官)에 바치고 거실(居室)24569)의 이름을 빌려서 경창미(京倉米)를 받으므로, 그 이익이 몇 갑절이나 되며, 거실들도 앉아서 그 뇌물을 취하니, 공가(公家)를 축내어서 사가(私家)를 살찌우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었다. 그래서 심회 등의 의논이 그 문제에 언급(言及)된 것이다.” 하였다.

五百匹，遣朝官觀其時直，減價買穀，除雜穀換米以補之。” 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 沈澹、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議：“兩界私回換者，多賚綿布，或請托守令，抑買於民，因此米價騰貴，非徒弊及於民，官家貿易不行，且皮雜穀，緩急無用。今後請禁私回換而以米貿易。” 鄭文炯、李克均、洪貴達議：“兩界買穀，專爲軍需，若皮穀則必散給民間，歛之以米，然後可用公私貿易，竝除皮穀，以米納之可也。” 從沈澹等議。

【史臣曰：“先是，兩界用兵，每年輸綿布買穀，又令人納粟，兩道受京倉及京畿、忠淸道米，富商大賈，乘時射利，爭買雜穀納官，而冒巨室之名，請受京倉米，其利倍蓰，巨室亦坐取其賂，瘠公肥私，莫甚於此，故澹等議及之。”】

<p>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19일 (정해) 5번째기사</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를, “제도(諸道)에서 봉진(封進)하는 마른 은구어(銀口魚)가 날짜가 오래 되어 맛이 변해서 어선(御膳)에 적합치가 않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생선을 얼음 통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서 봉진하게 하여 사용원(司饗院)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금에 절이거나 건어(乾魚)를 만들게 하면 맛이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니, 청컨대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두 도(道)에 유시(諭示)하여 번갈아가면서 두세 차례 봉진(封進)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은구어(銀口魚)를 어살로 잡은 것 중에서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골라, 얼음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서 두세 차례 별도로 보내게 하라.”</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유자광(柳子光)은 대대로 남원(南原)에 살면서 전택(田宅)을 많이 두고 백정(白丁)을 많이 점유하고서 관리들이 감히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부사(府使) 정회(鄭淮)가 차츰 그것을 억제하였었다. 일찍이 요역(徭役) 문제로 그의 얼속(孽屬)을 매때린 적이 있는데, 유자광이 불평을 품고 이에 개성부(開城府)에 성(城)을 수축(修築)하며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아뢰면서 남원성(南原城)의 감축(監築)한 인원까지 모두 벌을 받게 하였는데, 정회는 겨우 모면했었다. 이제 또 은구어를 별도로 바치게 하여 정회가 마침내 탄핵을 받았는데, 모두 유자광이 몰래 꾸민 음모이다.” 하였다.</p>	<p>○司饗院提調柳子光來啓曰：“諸道封進乾銀口魚，日久味變，不合御膳，請自今生魚，或盛冰角，或下小鹽封進，司饗院受之，或爲食醢，或爲乾魚，則味必美矣。此非難得之物，請諭慶尙、全羅兩道，更使二、三次封進。”從之。仍下書慶尙、全羅觀察使曰：“銀口魚結箭所獲，擇其鮮好者，或照冰，或小鹽，別進二、三次。”</p> <p>【史臣曰：“子光，世居南原，廣置田宅，多占白丁，吏不敢入門，府使鄭淮稍裁抑之，嘗因徭役，撻其孽屬，子光積不平，乃啓開城府城修築未完，以及南原城監築，人員悉蒙黜罰，淮僅免。今又別進生銀口魚，淮竟被劾，皆子光陰中之謀也。”】</p>
<p>성종 267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7월 23일 (신묘) 2번째기사</p>	<p>절도사(節度使) 조극치(曹克治)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건주(建州)의 야인(野人)이 만포(滿浦)의 물가에서 어렵(漁獵)을 하는 것이 비록 처음에는 침략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틈을 노릴 수 있는 기회만 보게 되면 가만히 노략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후망(候望)을 다시금 더</p>	<p>○下諭節度使曹克治曰：“建州野人漁獵滿浦水上，雖初無入寇之心，如見可乘之勢，則或有竊發之理，更愼候望以備不虞。”</p>

	<p>신중히 하여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268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8월 3일 (신축) 2번째기사</p>	<p>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 남흔(南忻)이 갑자기 졸하니, 특별히 쌀과 콩 20석(碩)과 정포(正布) 15필(匹), 종이 60권(卷), 유석(油席) 3장 및 관곽(棺槨)을 하사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남흔은 부귀한 집 자제로 방랑하며 몸을 단속하지 않았다. 일찍이 처증조(妻曾祖)인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시녀를 간통한 &lt;죄에&gt; 걸려들어 외방에 징배되었는데, 후에 그 여자가 궁중에 뽑혀 들어가 숙의(淑儀)가 되자 그가 승지에 제배됨에 미쳐 물의가 분분했으나 대간 중에 논박하는 이가 없었다. 이때 권경우(權景祐)가 사간(司諫)이 되어 남흔과 이웃에 살았는데, 정석견(鄭錫堅)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찌 권경우도 사적(私的)으로 주식(酒食)을 대접받은 것 때문에 공의(公義)를 폐할 줄 헤아리거나 했으랴?’ 하니, 권경우가 웃으면서 책망을 들었다.” 하였다.</p>	<p>○承政院右承旨南忻暴卒。 特賜米、豆并二十碩、正布十五匹、紙六十卷、油席三及棺槨。</p> <p>【史臣曰：“忻本綺紈子弟，放浪不檢，嘗坐奸妻曾祖孝寧大君侍兒配外，後其女選入爲淑儀，及拜承旨，物議紛然，臺諫無駁之者。 時權景祐爲司諫，與忻比隣，鄭錫堅謂人曰：‘豈料景祐，亦以酒食之私廢公義乎?’ 景祐聞之，笑而受責。”】</p>
<p>성종 268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8월 7일 (을사) 1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칙(李則)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는 비가 제때에 오지 않아서 곡식이 잘 여물지 못했으니, 벽단진(碧團鎭)의 성 쌓는 일은,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도원수(都元帥)를 불러 물어보라.” 하니, 이극균(李克均)이 와서 아뢰기를, “벽단(碧團)의 구성(舊城)은 신이 쌓은 것입니다. 지금도 비록 견고하기는 하나, 성중(城中)에 우물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성중의 백성들이 강에 나가 얼음을 떠다가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성을 옮겨 쌓는 역(役)은 40일에 불과하니,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가서 편부를 살피고 난 뒤 아뢰겠습니다.” 하였다.</p>	<p>○乙巳/平安道觀察使李則馳啓：“本道雨澤愆期，禾穀不稔，碧團鎭築城，請姑停之。” 傳曰：“其召都元帥問之。” 李克均來啓曰：“碧團舊城，臣所築也，今雖堅固，城中無井，故冬月城中民出取江水，以資朝夕，誠可慮也。 移築之役不過四十日，民不至甚勞，臣當往審便否以啓。”</p>
<p>성종 268권, 23년</p>	<p>술과 포도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에 내려</p>	<p>○賜酒及葡萄于承政院、弘文館、兵</p>



<p>(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8월 12일 (경술) 2번째기사</p>	<p>주고, 이어 문관(文官)에게 명하여 사주(賜酒)·사포도(賜葡萄)에 대하여 근체시(近體詩)로 지어서 바치게 하였다.</p>	<p>曹、都摠府，仍命文官，製賜酒賜葡萄近體詩以進。</p>
<p>성종 268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8월 21일 (기미) 2번째기사</p>	<p>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친히 문선왕(文宣王) 24631)에게 향례(享禮)를 드리고 하연대(下輦臺)에 나아가 백관(百官)과 유생(儒生)을 크게 대접했는데, 모두 어사화(御賜花)를 꽃앓고, 악공(樂工)은 새로 악장(樂章)으로 노래하여 유식(侑食)24632)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에게 명하여 유생(儒生)에게 말하게 하기를, “오늘의 일은 연락(宴樂)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道)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니, 각각 취하도록 마시라.” 하였다. 연회(宴會)에 참여한 유생이 모두 3천여 명이었고, 구경하는 사람은 교문(橋門)을 메웠는데, 이는 동방(東方)의 일대 성사(盛事)였다.</p>	<p>○上幸成均館，親享文宣王，御下輦臺，大饗，百官儒生皆插賜花，工歌新樂章以侑之。命都承旨鄭敬祖語儒生曰：“今日之事，非爲宴樂也，乃所以崇儒重道也，其各醉飲。”與宴儒生摠三千餘人，觀聽之人，填溢橋門，吾東方一盛事也。</p>
<p>성종 268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8월 21일 (기미) 3번째기사</p>	<p>새로 지은 등가 악장(登歌樂章)은 이러했다. 제일작(第一爵) 《문교곡(文教曲)》 【《여민락조(與民樂調)》.】 위대하여라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여! 문치(文治)와 교화(教化)의 종주(宗主)였네. 훌륭하여라, 우리 임금이지여!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숭상하네. 만고의 모범과 본보기가 되었으니, 일백 제왕(帝王)의 으뜸이시네. 이에 성대한 인사(禮祀)24633) 를 거행하니, 모두 옛법을 따라 시행하고. 곧 좋은 날을 가려서, 제사를 성대하게 치루었네. 아름다운 제물과 맑은 술로, 우리 임금 그 성의를 바치니,</p>	<p>○新撰登歌樂章。第一爵《文教曲》。【《與民樂》調。】大哉！宣聖，文教之宗。烝哉！我后，是欽是崇。儀形萬古，宗師百主。爰舉明禮，率由舊章。載涓吉辰，祀事維明。嘉牲清醑，王薦厥誠。廟廷孔碩，尊俎既盈。威儀卒度，福祿來并。禮成樂備，人和神懌。樂成臣工，于泮之側。方壇如削，陸級而登。萬目咸覩，堯雲之升。鍾鼓喤喤，歌管噉噉。式燕以敖，載色載笑。群工醉止，和樂且融。青青衿佩，亦觀其同。於昭斯文，振茲大東。登我至治，億載彌隆。第二爵</p>

	<p>조정의 대신들 많이 모였고, 술과 제물이 풍성하도다. 품위 있는 그 의식 예의에 맞아, 온갖 복록이 함께 이르고. 예의가 이루어지고 음악이 갖춰지니, 사람들은 화락하고 귀신들도 기뻐하니. 우리의 만조 백관들, 반궁(泮宮)24634) 곁에서 즐기니. 깎은 듯이 방정한 계단에, 층계를 밟고 오르네.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요임금의 상서 구름이 피어 오르는 듯. 중고(鐘鼓)소리 우렁차고, 관현(管絃)과 노래 소리 울려 퍼지네. 많은 사람 잔치를 즐기니, 온화한 얼굴에 웃음을 지어보고, 모든 신하들 흠뻑 취하니,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데. 학자들의 청금(靑衿)과 패옥(佩玉)들은, 가지런히 그 모습 장관을 이루었네. 빛나는 유학(儒學)의 교화, 우리 나라에 떨치니, 우리의 지극한 다스림은, 억만년의 으뜸이어라. 제이작(第二爵) 《선화곡(宣化曲)》</p>	<p>《宣化曲》。【《步虛子》調。】 宣 尼神化萬方同，無地不尊崇海東。開 國千年，益振文風。住翠華泮宮中， 精禋式奠蘋蘩。饗學生饋臣工，橋門 觀聽駢闐，競祝吾君彌億載啓群蒙。 第三爵《在伴曲》。【《鳳凰吟》 調。】海東文獻邦，泮水覺堂奉素王。 禮樂百年人易化，詩書千載道彌昌。 洋洋弦誦春秋教，濟濟衣冠上下庠。 依仁據德共升堂，釋采精禋薦苾芳。 鹿萍嘉宴會明良，金聲玉振儼鏗鏘。 休有光橋門，鼓篋盡趨踰。德與乾坤 合，恩隨百露滂。英才涵教育，庶士 共權康。奎壁麗空瑞彩彰，運逢千一 協休祥。藹藹文風暢四方，夔、龍接 武佐虞、唐。鳧鷖既醉迭稱觴，爭歌 《雅》、《頌》上篇章。聖算長罔陵， 齊壽永無強。第四爵《河清曲》。 【《滿殿春》調。】何清千載運，積德 百年期。鳳曆瑤圖恢舊業，龍旗繡黻 禮先師。峩峩髦士奉璋日，濟濟靑 (衿)[衿]采藻時。煥赫文章軼漢、 唐，擬看鳴鳳下朝陽。圓橋門縉紳， 冠帶闐如雲。聖德存神化，斯文振古 風。弦歌千古地，魚水一堂同。恩深</p>
--	--	---

	<p>선니(宣尼)의 신성한 교화 어디든 다 같아,      존중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 더욱 존송하네.      나라 세운 지 천년에 문화가 더욱 떨쳐,      반궁 가운데 취화(翠華)24635) 가 머물렀네.      정성스런 제사에 빈번(蘋蘩)24636) 을 드리고,      학생들과 백관을 모두 다 대접하네.      교문(橋門)24637) 의 구경꾼이 거리를 메우니,      우리 임금이 억만년토록 어리석은 자를 계도하길 원하네.      제삼작(第三爵) 《재반곡(在伴曲)》                   【《봉황음조(鳳凰吟調)》.】      문헌을 숭상하는 이 나라에,      반수(泮水)의 횡당(黌堂)에서 소왕(素王)을 받드오니.      백년이나 예악(禮樂) 닦아 사람 쉽게 감화되며,      천년토록 시서(詩書) 읽어 도덕 더욱 창성한데,      울려 퍼지는 글 읽은 소리 봄가을의 가르침이요.      의관(衣冠) 갖춘 많은 선비 학당(學堂)에 가득하네.      인덕(人德)을 갖추옵고 모두들 당(堂)에 올라,      석채(釋采)의 정성스런 제사에 향기로운 제물 올렸네.      녹평(鹿萍)24638) 의 아름다운 잔치에 명량(明良)이 모였고,      종소리 옥소리가 화락하게 울리네.      아름다운 광경이 교문(橋門)에 빛나,      북을 쳐 책상자 열게 하니24639) , 모두들 달려가네.      덕화는 하늘 땅과 어울리고,      은혜는 봄비와 이슬처럼 흡족하여라.      영재(英才)들은 교육에 무르젓었고,      서사(庶士)는 기쁨을 함께 누리네.</p>	<p>湛露沾濡處，教洽菁莪樂育中。 鼉鼓      逢逢白日長，從容色笑樂無強。 命維      新共，祝吾王萬萬春。 第五爵《闡文      曲》。【《隆化》調。】明明我王，丕      闡文風。 翠華戾止，于頓之宮。 既奠      素王，以讌廷紳。 橋門億萬，衿佩莘      莘。 既醉既飽，頌聲洋洋。 於萬斯      年，第祿以康。 第六爵《景運曲》。      【《翰林歌》調。】景運方開治道隆，      陶甄一世驅仁風。 已撫舜琴南薰殿，      更稱殷禮素王宮。 泮水天光近，橋門      日色紅。 嬖周王在鎬，邁漢帝臨雍。      儒林千載一奇逢，日吉辰良屬仲秋，芹      宮清曉祀事修，沖融仙樂奏韶濩，燦爛      卿雲凝冕旒，講殿儀文盛。 琴壇雨露      稠，師生齊鼓舞。 耄艾協歌謳，儒林      千載頌鴻休。 第七爵《配天曲》。      【《五倫歌》調。】維我后履大東，克      配彼天，歛五福錫庶民，建其有極，勅      我五典，式敘彝倫，化行俗美，至治蟬      興，景幾何如，壽域春臺，一世民物。      【再唱。】熙熙皞皞，景幾何如，天縱      聖日就學，緝熙光明。 尊先師重斯道，      稽古彌文，釋奠素王，以洽百禮。 既      多受祉，崇教隆化，景幾何如，橋門觀</p>
--	--	---

	<p>         규벽(奎璧)24640) 의 서기(瑞氣) 하늘까지 뻗치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운을 만나 상서를 곁들였네.          성대한 문풍(文風)이 사방에 미치니,          기(夔)와 용(龍)이 이어서 우(虞)와 당(唐)을 보좌하듯.          부예(鳧鷖)24641) 들 이미 취해 술잔을 주고 받으며,          《아송(雅頌)》을 노래하며 악장(樂章)을 올리네.          성상(聖上)의 수복(壽福)이 강릉(岡陵)처럼 길어서.          무궁토록 오래 사소서.          제사작(第四爵) 《하청곡(河淸曲)》 【《만전춘조(滿殿春調)》.】          황하(黃河)가 맑아지는 천년의 운세,          덕을 쌓음은 백년을 기약하네.          봉력(鳳曆)·요도(瑤圖)는 옛 기업을 넓혔고,          용기(龍旗)·수불(繡黻)로 선사(先師)에게 예배하네.          늙름한 모사(髦士)들 규장(圭璋)을 받드는 날이고,          엄숙한 청금(靑衿)들 빈조(蘋藻)를 켤 때이네.          빛나는 문장은 한(漢)·당(唐)을 앞지르니,          봉황(鳳凰)이 조양(朝陽)에 와서 우는 것(24642) 을 보는 듯하여라.          교문(橋門)에 둘러선 진신(縉紳)들의,          관대(冠帶)가 구름처럼 많이 모였네.          성덕(聖德)은 신화(神化)를 있게 하고,          사문(斯文)은 고풍(古風)을 떨치네.          천고(千古)에 현가(弦歌)하는 곳에,          어수(魚水)가 한 당(堂)에 함께 했네.          담로(湛露)의 깊은 은혜 흠뻑 젖은 곳이고,          청아(菁莪)24643) 의 흡족한 가르침 교육된 곳이네.       </p>	<p>         聽， 蓋億萬計。【再唱。】臨雍盛舉，          景幾何如， 思樂泮宮， 采芹我后。 戾          止住翠， 華御帳殿。 冉冉需雲， 簪纓          百僚， 衿佩諸生， 濟濟跄跄， 同宴以飲，          景幾何如， 以酒以德， 既醉既飽。【再          唱。】載賡《周雅》， 景幾何如。 第          八爵《臨雍曲》。【《納氏歌》          調。】展也！吾夫子， 巍乎！百世師。          尊崇嚴廟貌， 肅肅大牢祠。 臨雍新禮          樂， 在泮舊威儀。 聖德超三代， 儒風          振一時。 衣冠周百辟， 衿佩魯諸生。          共被需雲澤， 欣欣歌《鹿鳴》。 第九          爵《明后曲》。【《天春曲》調。】          宣明后撫大東， 敷文教聖化隆。 于胥          樂兮， 大平治化軼虞、唐。 戾泮水享          素王， 皇多士肅跄跄。 于胥樂兮， 大          平治化軼虞、唐。 載色笑育英才， 菁          菁莪拔草萊。 于胥樂兮， 大平治化軼          虞、唐。 既醉酒又飽德， 何以報錫汝          極， 于胥樂兮， 大平治化軼虞、唐。       </p>
--	--	---

울리는 타고(鼙鼓)24644) 소리에 하루해도 길어지는 듯,  
 화기 찬 웃음 소리 즐거움 한이 없어라.  
 새로와라 그 천명(天命)이여,  
 모두가 우리 임금 만만세(萬萬歲)를 축원하네.  
 제오작(第五爵) 《천문곡(闡文曲)》                   【《용화조(隆化調)》.】  
 현명하신 우리 임금,  
 문풍(文風)을 크게 천양(闡揚)하였네.  
 취화(翠華)가 와서.  
 반궁(泮宮)에 이르렀네.  
 이미 소왕(素王)에게 석전(釋奠)을 드리고,  
 조정 백관과 선비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네.  
 교문(橋門)에 모여든 억만 군중들,  
 청금(靑衿)의 패옥(佩玉)이 많기도 하여라.  
 술에 취하고 덕화에 배부르니,  
 칭송하는 소리가 흘러 넘치네.  
 아! 억만년토록,  
 복록과 태평을 누리리.  
 제육작(第六爵) 《경운곡(景運曲)》                   【《한림가조(翰林歌調)》.】  
 큰 운수 바야흐로 열리어 치도(治道)가 융성해지니,  
 한 세상 도건(陶甄)하며 인풍(仁風)으로 몰고 가네.  
 이미 남熏전(南薰殿)에서 순임금의 거문고를 탔고,  
 또다시 소왕궁(素王宮)에서 은(殷)나라 예를 행했네.  
 반수(泮水)에는 하늘빛이 가깝고,  
 교문(橋門)에는 햇살이 붉어라.  
 호경(鎬京)에 있는 주왕(周王)과 짝할 만하고,

용(雍)에 임한 한제(漢帝)보다 훌륭하여라(24645) .  
 유림(儒林)들 천년에 한 번 기이(奇異)하게 만났는데,  
 좋은 날 좋은 때, 중추의 절기로다.  
 맑은 새벽 근궁(芹宮)에서 제사를 지내니,  
 화락한 신선 음악 소(紹)·호(濩)를 연주하네.  
 찬란하고 상서로운 구름 면류관(冕旒冠)에 서렸고,  
 유림들 천년토록 큰 경사를 칭송하네.  
 강전(講殿)에는 의문이 성대하고,  
 금단에는 우로(雨露)가 흠뻑 젖었도다.  
 스승과 제자가 다같이 춤추고,  
 늙은이와 젊은이 함께 노래하네.  
 제칠작(第七爵) 《배천곡(配天曲)》                      【《오륜가조(五倫歌調)》.】  
 우리 임금의 나라에 임하시어,  
 그 덕이 하늘과 짝하였네.  
 오복(五福)을 거두어 백성에게 주시고,  
 황극(皇極)을 세우셨네.  
 우리의 오전(五典)을 신칙하여,  
 이륜(彝倫)을 펴셨네.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와,  
 지극한 다스림이 성대하게 일어났네.  
 그 경광(景光)이 어떠한가?  
 수역(壽域)24646) 의 춘대(春臺)24647) 에,  
 한 세대의 아름다운 민물(民物)이네. 【재창(再唱)함.】  
 화락하고 절도가 있음이여!  
 그 경광이 어떠한가?

하늘이 내신 성주(聖主)께서 날마다 태학(太學)에 나가,  
 빛나는 학문이 더 높아졌네.  
 선사(先師)를 높이고, 사도(斯道)를 존중함은,  
 옛사람에 비하여 더욱 빛나네.  
 소왕(素王)에게 석전(釋奠)을 드리며,  
 백예(百禮)를 흠족하게 하였네.  
 이미 많은 복록을 받으시고,  
 교화(教化)를 숭상하고 높였네.  
 그 경광이 어떠한가?  
 교문(橋門)에 구경꾼이,  
 억만으로 헤아릴 정도네. 【재창함.】  
 용(雍)에 임한 성대한 일,  
 그 경광이 어떠한가?  
 즐거울사, 반궁(泮宮)에 근채(芹菜)를 캐러,  
 우리 임금 이르렀네.  
 취화(翠華)를 멈추고 장전(帳殿)에 거둥하시니,  
 수운(需雲)24648 이 피어 오르네.  
 잠영(簪纓)의 백료(百僚)요,  
 청금(靑衿)·패옥(佩玉)의 제생(諸生)이네.  
 위의(威儀) 갖춘 많은 선비들,  
 잔치에 모여서 먹고 마시네.  
 그 경광이 어떠한가?  
 술과 덕화에,  
 취하고 배불렀네. 【재창함.】  
 화답하는 노래 주(周)나라 《아송(雅頌)》이네.

	<p>그 경광이 어떠한가?  제팔작(第八爵) 《임옹곡(臨甕曲)》                   【《납씨가조(納氏歌調)》.】  참으로 우리 부자(父子)는,  우뚝하게 백세(百世)의 스승이시네.  높이 떠받드는 엄숙한 사당에,  엄숙하게 드리는 대뢰(大牢)의 제사이네.  옹(雍)에 임하니 예악(禮樂)이 새롭고,  반궁(泮宮)에 있으니 위 의(威儀)가 옛스러워라.  성덕(聖德)은 삼대(三代)를 초월했고,  유풍(儒風)은 일시(一時)에 떨쳤네.  의관(衣冠)은 주(周)나라의 백백(百辟)이고,  금패(衿佩)는 노(魯)나라의 제생(諸生).  다함께 수운(需雲)의 은택을 입어,  기뻐하며 《녹명(鹿鳴)》을 노래하네.  제구작(第九爵) 《명후곡(明后曲)》                   【《천권곡조(天眷曲調)》.】  현명하신 우리 임금 이 나라 다스리시어,  문교(文教)를 베푸시니 성화(聖化)가 융성하네.  모두가 즐거워함이며,  태평스런 정치 교화 우(虞)·당(唐)을 앞질렀네.  반수(泮水)에 이르러 소왕(素王)에게 제사드리니,  그 많은 선비들 위의를 갖추었네.  모두가 즐거워함이며,  태평스런 정치 교화 우·당을 앞질렀네.  웃음띤 그 얼굴 영재(英才)를 길러내니,  많은 인재(人才)들이 초래(草萊)24649) 에서 뽑혔도다.</p>	
--	---	--



	<p>모두가 즐거워함이며, 태평스런 정치 교화 우·당을 앞질렀네. 이미 술에 취하고 또다시 덕에 배불렀는데, 어떻게 보답하랴 내려 주신 그 은혜. 모두가 즐거워함이며, 태평스런 정치 교화 우·당을 앞질렀네.</p>	
<p>성종 268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8월 22일 (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진하(進賀)하였다. 그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도덕(道德)은 선성(先聖)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므로 역대(歷代)에서 다 같이 존중(尊重)하였고, 예악(禮樂)은 명시(明時)를 기다리므로 성대한 의식이 모두 거행되었으며, 보고 들음이 미치는 곳에 다같이 춤을 추듯 합니다. 삼가 보건대, 정사(政事)에 임해 잘 다스려보려고 하는 임금은 모두 학문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것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노(魯)나라에는 반궁(泮宮)에 간 칭송(稱頌)이 있었고, 한(漢)나라에는 임옹(臨雍)한 의식(儀式)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다가 미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혹은 술만 돌리고 큰 잔치는 베풀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성대한 예(禮)라고 일컬으며 창성(昌盛)한 시기로 배속시켰던 것입니다. 삼가 &lt;우리 임금께서는&gt; 정일(精一)·집중(執中)을 하시고 시종(始終) 학문에 뜻을 두시어 친히 제사를 받들어 올리며 향기로운 서직(黍稷)을 바치었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 즐기게 하니, 모두가 우로(雨露)의 은택(恩澤)에 젖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즐길 음악을 만들었고 위와 아래가 태평 시대를 경하(慶賀)하며, 북을 쳐 책상자를 열고 배불리 취한 자가 3천 명이나 되었고 교문(橋門)에 둘러서서 구경하는 자가 억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오도(吾道)의 다행이고 사문(斯文)의 영광인 것입니다. 신 등은 모두가 용렬한 자격으로 성대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論)과 악(樂)은 주(周)나라 《아송(雅頌)》</p>	<p>○庚申/上御仁政殿。 議政府率百官進賀。 其箋曰：“道德莫踰於先聖，歷代共尊，禮樂有待於明時，緝儀畢舉，(瞻) [瞻] 聆所暨，蹈舞惟均。 竊觀臨政願治之君，率皆右文興化爲重，魯有在泮之頌，漢著臨雍之儀，然飲酒而不違明禮，或執爵而未及大餉，備稱殷禮，允屬昌期。 恭惟精一執中，終始典學，我將我享，丕薦黍稷之馨；以燕以敖，共霑雨露之澤。 君臣作相悅之樂，上下慶交泰之辰，鼓篋醉飽者三千，環橋聽觀者億萬，吾道之幸，斯文之光。 臣等俱以庸資，獲觀盛事，於論於樂，聽載賡於《周雅》； 曰壽曰康，祝恒伸於《箕疇》。”</p>

	<p>의 노래로 화답하고, 수복(壽福)과 강녕(康寧)은 늘 기자(箕子)의 《구주(九疇)》로 빗니다.” 하였다.</p>	
<p>성종 268권, 23년 (1492 입자 / 명 홍치 (弘治) 5년) 8월 30일 (무진) 4번째기사</p>	<p>대간(臺諫)이 박원종(朴元宗)의 문제를 논계(論啓)하고자 하여 면대(面對)하기를 계청(啓淸)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아울러 앞서 의논한 재상(宰相)을 불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대체로 공론(公論)이 폐(廢)해지면 언로(言路)가 막히는 것입니다. 대간(臺諫)이 20여 일이나 대궐 뜰에 서서 여러 번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상상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간언(諫言)을 따르시는 미덕(美德)을 허물어뜨렸으니, 청컨대 공론(公論)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체로 사람을 씬에 있어서는, 군자(君子)는 진출(進出)시키고 소인(小人)은 물리치는 것뿐이다. 경(卿) 등이 박원종(朴元宗)은 소인(小人)이어서 장차 나라 일을 그르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안위(安危)에 관계된 것이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으나, 다만 젊고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척하고 쓰지 않는다면 이는 진실로 사람을 쓰는 도리가 아니다. 경(卿) 등은 다른 곳에 쓰다가 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쓰자고 하였으나, 나의 생각으로서는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아무리 어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위해 기꺼이 말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 내가 고집하는 것도 아니며 간언(諫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전에도 무인(武人)으로서 승지(承旨)가 된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찌 박원종만 불가(不可)하겠는가?” 하였다. 우참찬(右參贊)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공론(公論)이 있는 것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臺諫欲論朴元宗請面對，上御宣政殿引見，并召前議宰相入侍。大司憲金悌臣啓曰：“大抵公論廢則言路塞，臺諫二十餘日立庭，累瀆天聽而上不聽，有虧從諫之美，請從公論。”上曰：“大抵用人，進君子、退小人而已。卿等以元宗爲小人，將誤國事，則是安危所係，不可不聽。但以年少不更事，擯而不用，固非用人之道。卿等請用之他處，見賢然後用之，予意用之他處，雖有賢能，誰肯爲我言之？以此不聽。予非固執也，亦非拒諫也，前此武人爲承旨者非一，何獨元宗爲不可乎？”右參贊洪貴達啓曰：“公論所在，不可不聽也。”左尹尹孝孫啓曰：“國家難斷之事，必採廷議，今政府、臺諫、侍從，皆以爲不可而不聽，博採之意安在？萬世之後，恐有非議之者。”司諫鄭光世曰：“非以元宗爲小人也，爵有次第而一朝驟陞，甚不可也。”上曰：“元宗以副正爲承旨，非驟陞也。”光世曰：“未敍東班，初入爲承旨，祖</p>

하고, 좌윤(左尹) 윤효손(尹孝孫)은 아뢰기를,  
 “나라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일은 반드시 조정(朝廷)의 의논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정부(議政府)·대간(臺諫)·시종(侍從)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널리 채택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세(萬世) 이후에 아마도 비난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사간(司諫) 정광세(鄭光世)는 말하기를,  
 “박원종을 소인(小人)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위(爵位)에는 차례가 있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승진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원종은 부정(副正)으로서 승지(承旨)가 되었으니, 갑자기 승진한 것이 아니다.”

하므로, 정광세가 말하기를,  
 “동반직(東班職)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승지가 된 것은 조종조(祖宗朝)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고, 장령(掌令) 양희지(楊熙止)와 헌납(獻納) 권주(權柱)는 말하기를,  
 “옛말에, 임금의 명(命)을 출납(出納)함에 있어 합당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박원종은 일의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제신(金悌臣)은 말하기를,  
 “어진이를 가려서 쓰더라도 오히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는 것인데, 더구나 어질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하고, 정광세는 말하기를,  
 “관직을 위해서 사람을 고르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관직을 고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원종을 승지로 삼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신(大臣)들을 부르게 하신 것은 정론(正論)을 듣고자 함인데, 모두 말하지 않고 있으니, 사대(賜對)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宗朝所無也。” 掌令楊熙止、獻納權柱曰：“古云出納惟允，元宗未更事，何可當也?” 悌臣曰：“擇賢而用之，猶懼失職，況不賢乎?” 光世曰：“爲官擇人，不爲人擇官。今以元宗爲承旨甚不可，且今日命召大臣，欲聞正論而皆不言，賜對之意安在?” 廣陵府院君李克培啓曰：“臣前議已盡，上當斟酌耳。” 熙止曰：“所謂斟酌，是窺上意而言之也。前議既以爲不可，而今日曰斟酌，大臣之義，果如此乎? 且臣等未能回天，是失職也。如不遞元宗，請遞臣等。” 不聽。臺諫出，又啓曰：“面對時臣等云，宰相一無所啓，殊無賜對之意，克培乃啓曰：‘在上斟酌。’克培當初議時，斷然以元宗爲不可，今爲逢迎如此，請推之。” 傳曰：“廣陵非逢迎宰相也，前議已盡，故言之如此耳。” 臺諫啓曰：“克培當據前議，更陳不可，而但曰斟酌，非逢迎而何?” 傳曰：“卿等以予爲拒諫，然卿等面折廷諍，予甚嘉焉。但不可以此罪大臣。” 仍賜酒。克培啓曰：“面對時臺諫爭相論啓，故臣不暇言，適有言端，臣以爲在上斟酌。 臺諫以臣爲逢迎，

	<p>하고, 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는 아뢰기를,  “신(臣)은 앞서 의논에서 이에 다 말씀드렸으니, 성상(聖上)께서 반드시 참작하실 뿐입니다.”</p> <p>하니, 양희지가 말하기를,  “이른바 참작이라는 말은 성상의 뜻을 엿보고서 말한 것입니다. 앞서 의논에서는 이미 불가하다고 해놓고서 이번에는 참작하시라고 하였으니, 대신의 의논이 과연 이와 같습니까? 그리고 신(臣) 등이 성상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박원종을 체임(遞任)시키지 않으시려면 신 등을 체임시키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대간(臺諫)이 나와서 또다시 아뢰기를,  “면대(面對)했을 때에 신 등이 말하기를, ‘재상(宰相)들은 한 사람도 아뢰는 자가 없으니, 이는 사대(賜對)한 뜻이 전연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극배는 아뢰기를, ‘성상께서 참작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극배가 당초의 의논은 단연코 박원종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성상의 비위만 그렇게 맞추고 있으니, 청컨대 추국(推鞠)하소서.”</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은 비위나 맞추는 재상이 아니다. 앞서 의논에서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p> <p>하므로,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이극배는 마땅히 앞서 의논에 의거하여 다시 불가하다고 아뢰었어야 할 것이데, 다만 ‘참작하소서.’라고 하였으니,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은 나를 가리켜 간언(諫言)을 거부한다고 하나, 경 등이 면절 정쟁(面</p>	<p>不敢安然就飲，請避。”不許。臺諫啓曰：“大臣當獻可、替否，引君當道，而克培曰：‘在殿下斟酌。’殿下豈不知順旨之爲非乎？今命勿推，不勝缺望。”上曰：“已於面對不允，今雖論啓，決不可聽。廣陵非畏爾等，亦非順予旨也。言語間偶如此耳。”</p>
--	--	---

	<p>折廷諍)하는 것을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그 문제로 인하여 대신을 죄줄 수는 없다.”</p> <p>하고, 이어 술을 하사(下賜)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면대할 때에 대간이 서로 다투어 논계(論啓)하므로, 신(臣)은 미처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말할 기회가 있으므로 신은 성상께서 참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대간이 신을 가리켜 비위를 맞춘다고 하니, 아무렇지 않게 나아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피험하게 해주소서.”</p> <p>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대신은 마땅히 옳은 것은 바치고 옳지 않음은 버려서 임금을 인도하여 도(道)에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극배는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참작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어찌 뜻만 따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겠습니까? 이번에 추국하지 말라고 하시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면대했을 때에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비록 논계하더라도 결코 들어 줄 수가 없다. 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은 그대들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나의 뜻을 순종한 것도 아니다. 말하는 사이에 우연히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p> <p>하였다.</p>	
<p>성종 269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9월 9일 (정축) 1번째기사</p>	<p>성균관 학록(成均館學錄) 황성창(黃誠昌)이 회간 대왕(懷簡大王) 24675)의 수찰(手札)을 올리면서 말하기를,  “신의 조부(祖父) 황수신(黃守身)이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로 있을 때에 하사한 것인데, 신이 감히 사사로이 간직할 수 없어서 감히 올립니다.”</p> <p>하니, 명하여 술을 먹이게 하고, 인하여 활 한 장(張)을 내려 주었다.</p>	<p>○丁丑/成均館學錄黃誠昌進懷簡大王手札曰：“臣祖父守身爲慶尙道監司時所賜也。 臣不敢私藏敢進。” 命饋酒，仍賜弓一張。</p>
<p>성종 269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p>	<p>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鍊院)에다 내려 주고, 또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관원에게 보제원(普濟院)에다 연회를 내려 주었다. 도승지(都承旨)</p>	<p>○賜耆英宴于訓鍊院，又賜宴弘文館、藝文館員于普濟院，遣都承旨鄭敬祖齎</p>

<p>(弘治) 5년 9월 9일 (정축) 2번째기사</p>	<p>정경조(鄭敬祖)를 보내어 선은(宣醞)24676) 을 가지고 기영연(耆英宴)에 가게 하였으며, 주서(注書) 송천희(宋千喜)에게는 선은(宣醞)을 가지고 보제원(普濟院)에 가도록 하였다.</p>	<p>宣醞往耆英宴; 注書宋千喜齋宣醞往普濟院。</p>
<p>성종 269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9월 11일 (기묘) 1번째기사</p>	<p>영웅 대군(永膺大君)의 부인 송씨(宋氏)에게 쌀 30석(碩), 콩 15석, 면포(綿布) 1백 필, 정포(正布) 2백 필을 내려 주었다.</p>	<p>○己卯/賜永膺大君夫人宋氏米三十碩、豆十五碩、綿布一百匹、正布二百匹。</p>
<p>성종 269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9월 13일 (신사) 2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세걸(崔世傑)이 와서 아뢰기를, “이적(李績)은 본래 벼슬을 얻기를 근심하고 벼슬 얻어서는 잃을 것을 근심하는 사람인데, 정랑(正郎)을 제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진시켜 첨정(僉正)으로 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성준(成準)에게는 이미 미두(米豆)를 내려 주셨는데 또 벼슬을 올렸으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극배(李克培)에게 명하여 남원성(南原城)의 터를 가서 살펴보게 하셨는데 내지(內地)의 축성(築城)은 급한 것이 아니며, 비록 쌓아야 마땅하다 하더라도 관찰사(觀察使)가 할 수 있는 것이니, 대신(大臣)을 보내어 사명(使命)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司諫院正言崔世傑來啓曰：“李績本患得、患失之人，除正郎，未久陞爲僉正，可乎？成準旣賜米豆又陞職，無乃濫歟？今命李克培往審南原城基，內地築城非所急，雖當築，觀察使可以爲之，不須遣大臣以煩使命。” 不聽。</p>
<p>성종 269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9월 14일 (임오) 1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가 와서 아뢰기를, “새로 탄생한 대군(大君)이 성준(成準)의 집에 피우(避寓)하여 병이 우연히 나았는데, 성준이 무슨 관계한 것이 있기에 거듭 은사(恩賜)를 받는 것입니까? 만약 공양(供養)한 공이라고 하면 미두(米豆) 20석으로 족히 보상이 될 것이니, 작록(爵祿)은 결단코 함부로 베풀 수 없습니다. 또 양로연(養老宴)에 정현조(鄭顯祖)가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곡연(曲宴)에도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이 거늘 하물며 예연(禮宴)이겠습니까?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壬午/司憲府掌令楊熙止來啓曰：“新生大君避寓成準家，疾病偶愈，準何與焉而疊受恩賜耶？若以供養，則米豆二十碩足以償之，爵祿決不可妄施也。且養老宴，鄭顯祖起舞，雖曲宴猶且不可，況禮宴乎？請鞫之。” 不聽。</p>
<p>성종 269권, 23년</p>	<p>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 명하여 동교(東郊)에서 관가(觀稼)24692) 하</p>	<p>○丁亥/命議政府、六曹觀稼于東郊。</p>

<p>(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9월 19일 (정해) 1번째기사</p>	<p>게 하고 우승지(右承旨) 조위(曹偉)를 보내어 선은(宣醞)을 내려 주었다.</p>	<p>遣右承旨曹偉賜宣醞。</p>
<p>성종 269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9월 24일 (임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 《대전(大典)》 24708) 에 이르기를, ‘왕자군(王子君)의 집은 30부(負), 공주(公主)는 25부(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선공 제조(繕工提調)로 하여금 다른 재상(宰相)과 함께 그 한계를 살펴 정하게 하소서. 간각(間閣) 수는 비록 《대전》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높고 크기가 선정전(宣政殿)과 다름이 없다면, 여기 사는 이가 어찌 마음에 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높고 큼이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다만 기지(基地)는 선공 제조(繕工提調)와 해조 당상(該曹堂上)으로 하여금 같이 살펴서 하계를 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언(正言) 최세걸(崔世傑)이 아뢰기를,  “도첩(度牒)24709) 이 없는 중과 대처승(帶妻僧)을 추쇄(推刷)하라는 명령이 엄하지 아니 함이 아니나, 다만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받들어 행하기를 삼가지 아니하니, 비록 법이 있다고는 하나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거듭 밝혀서 검거(檢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아뢴 바와 같다. 국가에서 도승(度僧)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역(役)을 피하여 중이 되는 자가 아직 많다. 그러나 만약 추쇄(推刷)하게 하면 혹 소요(騷擾)를 일으킬까 염려스럽고 중도 우리 백성이므로 침학(侵虐)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다만 대처승(帶妻僧)은 사람들이 잡아서 고발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壬辰/御經筵。講訖，大司憲李世佐啓曰：“《大典》云：‘王子君家三十負，公主二十五負。’請令繕工提調，同他宰相，審定其限，間閣數雖依《大典》，然其高大，與宣政殿無異，居此者豈安於心？”上曰：“其高大，豈至此？但基地，可令繕工提調，該曹堂上，同審定限。”正言崔世傑啓曰：“無度牒僧、帶妻僧推刷之令，非不嚴也，但監司、守令，不謹奉行，雖有法，何益？請申明檢舉。”上曰：“果如所啓，國家不許度僧，而逃役爲僧者尚多，然若令推刷，則慮或騷擾，僧亦吾民，不宜侵虐。但帶妻僧，許人捕告何如？”領事尹弼商對曰：“曾有令，今但申明而已。”世傑又啓曰：“正印寺僧，殖穀治農，與常民無異，因而男女出入混雜，有違僧道，請一切禁之。”上曰：“其來尙矣，一朝廢之亦難。”特進官鄭文燭啓曰：“義州牧使，命以文臣差之，前此文臣守此州者，曹淑沂而已。本州防禦最緊，請擇差武臣。”</p>

<p>하자,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영(令)이 있었으니, 이제 다만 거듭 밝힐 뿐입니다.”  하였다. 최세걸이 또 아뢰기를,  “정인사(正印寺) 중은 곡식을 늘리고 농사를 짓는 것이 보통 백성과 다름이 없고, 인하여 남녀의 출입이 혼잡하여 승도(僧道)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일체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므로 하루아침에 폐하기는 또한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의주 목사(義州牧使)를 문신(文臣)으로 차임(差任)하기를 명하였으나, 이에 앞서 문신으로 이 고을을 지키는 자는 조숙기(曹淑沂)뿐입니다. 본 고을은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니, 청컨대 무신(武臣)을 골라 차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원중거(元仲耜)를 어질다고 하여 골라서 보냈더니 본 고을이 피폐(疲弊)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서 이미 바꾸게 하였다. 이제 장정(張珽)을 관관(判官)으로 삼았으니, 목사(牧使)는 마땅히 문신을 써야 할 것이다. 목사는 민사(民事)를 다스리고 관관은 변무(邊務)를 다스리는 것이 또한 옳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의주(義州)는 경계가 중국과 연하여서 사무가 많고 번거로와, 잘 다스리면 부성(富盛)할 수 있으나 잘못 다스리면 잔폐(殘弊)하기 쉽습니다. 원중거는 사변(事變)을 알지 못하는 우혹(愚惑)한 사람입니다. 대저 무사(武士)는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한갓 말을 달리는 것만 알 뿐인데, 탐독(貪黷)을 더하여 마침내 폄출(貶黜)되고 고을도 따라서 쇠잔해졌습니다. 다만 문신으로 목사를 감당할 만한 자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p>	<p>上曰：“曩以元仲耜爲賢，擇而遣之，有言其本州疲弊者，已令遞之。今以張珽爲判官，牧使當用文臣，牧使治民事，判官治邊務，不亦可乎？”弼商曰：“義州境連上國，事務浩繁，善治則可以富盛，不善治之，易以殘敝。仲耜不知事變，愚惑人也。大抵武士，不善治民，徒知馳馬，加之以貪黷，卒見貶黜，邑隨以殘。但文臣堪爲牧使者，未易得也。”上曰：“文臣有武才者，固未易得，可擇善於治民者遣之。”特進官朴槿啓曰：“今市裏所用惡米，或雜油滓，或以細沙，犯者論以笞五十，法輕易犯，須設重法治之，請論以杖七十。”世佐曰：“漢城府禁非不嚴，但禁亂書吏與市人，相爲表裏，巧僞日長，其業惡米者，皆得免罪。如此者，請痛繩以法。”上曰：“業賣者免罪，買食者受罪，可乎？其禁惡米及禁亂吏泛濫者治罪節目，商議以啓。”</p>
--	---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문신으로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진실로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골라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박건(朴健)이 아뢰기를,  “지금 저자[市裏]에서 사용하는 앵미(惡米)24710) 혹은 잡유(雜由)의 찌꺼기나 혹은 가는 모래를 섞었는데, 범한 자는 태(笞) 50대로 논죄하므로 법이 거벼워서 범하기가 쉬우니, 모름지기 중한 법을 마련하여 이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장(杖) 70대로 논죄하소서.”  하자, 이세좌가 말하기를,  “한성부(漢城府)에서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다만 금란 서리(禁亂書吏)가 저자 사람과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되어 교묘하게 속임이 날마다 커져서, 앵미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모두 죄를 면하니, 이같은 자를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팔기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죄를 면하고 사서 먹는 자는 죄를 받는다면 옳겠는가? 앵미를 금하는 것과 금란리(禁亂吏)로서 범람(泛濫)한 자에게 죄를 다스리는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여 아뢰라.”  하였다.</p>	
<p>성종 269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9월 27일  (을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양희지(楊熙止)가 아뢰기를,  “왕자군(王子君)의 집의 간각(間閣)이 높고 넓어서 제도에 지나치고, 재목의 운반과 돌을 다듬는 공역(功役)이 지극히 번거로운데, 하물며 지금 1, 2년 사이에 3, 4집을 지으니 민력(民力)이 몹시 피곤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의 심정은 편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므로 삼왕(三王)은 그 힘을 아끼고 다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p>	<p>○御經筵。講訖，掌令楊熙止啓曰：“王子君家舍間閣，高廣過制，運材鍊石，功役至煩，況今一、二年間造成三、四家，民力甚困。古人云人情莫不欲逸，三王節其力而不盡。”上曰：“高下廣狹，當更審處之。”熙止又啓曰：“永安道軍需不敷，穩城尤甚。如</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높고 낮음과 넓고 좁음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양희지가 또 아뢰기를,  “영안도(永安道)는 군수(軍需)가 넉넉지 못함에 온성(穩城)이 더욱 심하며, 부령(富寧)·회령(會寧)·종성(鍾城) 등 고을은 좁쌀[粟米]이 비록 1만여 석이 있더라도 모두 묵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특진관(特進官) 권건(權健)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이미 면포(綿布) 2천 5백 필을 본도(本道)에 보내어 곡식으로 바꾸게 하였으니, 군량(軍糧)은 부족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양희지가 말하기를,  “경원(慶源) 등 고을의 금년 전세(田稅)를 온성(穩城)에 수송해 들여서 군사의 식량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양희지가 아뢰기를,  “야인(野人)은 오직 활쏘고 사냥하는 것만 알고 농사짓는 것을 일삼지 아니하는데, 듣건대 근년 이래로 자못 농경(農耕)을 직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사 기구는 모두 우리 나라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반드시 성밑[城底]에 사는 자가 판 것입니다. 청컨대 엄하게 금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어찌 갑자기 금할 수 있겠는가? 수령(守令)이 만약 어질면 저절로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양희지가 말하기를,  “내수사 서제(內需司書題)가 함흥(咸興)에 가서 성황(城隍)에 기도(祈禱)하면서 의장(儀仗)을 성대히 베풀고, 앞뒤에 고취(鼓吹)하면서 일꾼기를 성황신(城</p>	<p>富寧、會寧、鍾城等邑粟米，雖有萬餘石，皆陳腐不可食，誠非細故也。”  特進官權健啓曰：“去年已送綿布二千五百匹于本道，令換穀，軍糧恐不乏也。”  熙止曰：“慶源等邑今年田稅，乞輸入穩城，以備兵食。”  上曰：“令戶曹議啓。”  熙止曰：“野人惟知射獵，本不事耕稼，聞近年以來頗業耕農，其農器皆出於我國，此必居城底者賣之也。請嚴禁。”  上曰：“豈可猝禁，守令若賢，則自無此弊。”  熙止曰：“內需司書題往咸興，祈禱城隍，盛陳儀仗，前後鼓吹，稱城隍神爲太祖，以咸興爲興王之地故也。然安有此理？”  上曰：“予不知也，然非自今始。”  檢討守南世周曰：“如其非道，斯速已矣，何論古今？”  上曰：“予當問之。”  獻納權柱啓曰：“慶尙道民俗，崇信巫覡，至親沒，必設淫祀曰，若不如此，是薄於其親，及臨葬，作樂娛神，終夜飲酒，無知之民，不足道也，有識者亦或不免，成風已久，恬不知怪，請痛禁。”  上曰：“已有禁章，其更諭觀察使，申明禁之。”  柱又啓曰：“置京在所別監，爲正風俗也。間有庸人，憑營私產，</p>
--	--	--

	<p>皇神)이 태조(太祖)가 되었다고 하는데, 함흥은 왕이 일어난 땅이 되기 때문 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이럴 이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p> <p>하였다. 검토관(檢討官) 남세주(南世周)가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정도(正道)가 아니면 빨리 그만두어야 할 것인데, 어찌 고금(古 今)을 논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물어보겠다.”</p> <p>하였다. 헌납(獻納) 권주(權柱)가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민속(民俗)은 무당을 숭상해 믿어서 부모가 죽으면 반드시 음사(淫祀)를 마련하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 부모에 게 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장례에 임하여 풍악을 잡히고 신(神)을 즐 겁게 한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니, 무지한 백성은 죽히 말할 것이 없 지만 유식한 자도 흑면하지 못합니다. 풍속을 이룬 지 이미 오래 되어 예사로 괴이함을 알지 못하니, 청컨대 엄금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금하는 법[禁章]이 있으니, 다시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거 듭 법을 밝혀서 이를 금하게 하겠다.”</p> <p>하였다. 권주가 또 아뢰기를, “경재소(京在所)24715)의 별감(別監)을 둔 것은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 데, 간혹 못난 사람이 있어서 &lt;그것을&gt; 빙자해 사사로이 재산을 경영하므로 백성이 그 괴로움을 받으니, 이 풍습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자,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으니, 특진관(特進官) 김승경(金升卿)이 대답 하기를,</p>	<p>民受其苦，此風不可不革。”上問左右。特進官金升卿對曰：“權柱言是也，非徒別監爲然，宰相於八鄉之外，又假稱本鄉，欲參公事者，專爲此耳。臣爲大司憲，欲窮推罪之，適遞未果。”熙止曰：“請以此戒諭中外。”上曰：“可。”</p>
--	--	--

	<p>“권주(權柱)의 말이 옳습니다. 한갓 별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재상(宰相)이 팔향(八鄕) 외에 또 거짓으로 본향(本鄕)이라고 일컬으면서 공사(公事)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를 위한 것입니다. 신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이를 끝까지 추핵(推劾)하여 치죄(治罪)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갈려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p> <p>하였다. 양희지가 말하기를,  “청컨대 이를 중외(中外)에 계유(戒諭)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0월 10  일(정미)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임광재의 집에 쌀과 콩 아울러 40석을 하사하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 賜任光載米、豆并四十碩。</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0월 13  일(경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천점(泉帖)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고, 주서(注書) 손주(孫澍)를 보내어 종묘(宗廟)에 천금(薦禽)하였다.</p>	<p>○庚戌/上觀獵于泉帖， 遣注書孫澍薦禽于宗廟。</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0월 14  일(신해) 2번째기사</p>	<p>임금이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 전교(傳敎)하기를,  “좌·우상(左右廂)이 짐승을 많이 잡았으니 종묘(宗廟)에다 바치고, 양전(兩殿)에도 올려 모두 빠뜨림이 없도록 하라.”</p> <p>하고, 홍문관원(弘文館員)으로 하여금 선운(宣醞)24756) 을 가지고 가서 대장(大將)에게 내려 주도록 하였다.</p>	<p>○上還行宮。 傳曰：“左右廂多獲禽，薦宗廟，進兩殿，皆無闕焉。” 令弘文館員賚宣醞賜大將。</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0월 16</p>	<p>좌·우상(左右廂)에게 병사를 점검[點兵]하고 진(陣)을 파하도록 하였다. 어가(御駕)가 차대방동(次大方洞)에 돌아오니, 세자(世子)가 와서 맞이하였다. 종재(宗宰)를 불러서 술을 하사하고, 신시(申時)에 궁으로 돌아왔다.</p>	<p>○癸丑/命左右廂點兵罷陣， 駕還次大方洞， 世子來迎， 召宗宰賜酒， 申時還宮。</p>

<p>일(계축) 1번째기사</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0월 18 일(을묘) 3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자점(崔自霽)이 와서 아뢰기를, “승지 권경희(權景禧)·신수근(愼守勤)·김심(金諶)이 외방의 관원 홍석보(洪碩輔)·김영수(金永銖)를 협방에 불러다 놓고 사사로이 술을 마셨는데, 지금 신수근 등은 이미 논박당하여 파직되었으니, 홍석보도 아울러 치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司諫院正言崔自霽來啓曰：“承旨權景禧、愼守勤、金諶招引外員洪碩輔、金永銖於夾房，私與飲酒，今守勤等已論罷，碩輔等請并治罪。”不聽。</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0월 19 일(병진) 2번째기사</p>	<p>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받은 전지(傳旨) 안에 ‘시정(市井)의 무리로 앵미[惡米]를 만든 자는 이미 금단(禁斷)하도록 하였으나, 잘 규찰하여 적발하지 못하고, 아전이 간계를 쓰므로 원래 조작하여 이익을 노린 자는 요행히 모면된다고 한다. 뿔나무를 팔아 &lt;이익을&gt; 얻는 자와 같은 것도 도리어 그 죄를 받으니, 이는 입법(立法)한 본의가 아니다. 규찰(糾察)을 잘하여 그 근본을 근절시키는 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앵미[惡米]를 흥판(興販)하는 자는 이익을 중하게 여기고 형벌을 가볍게 여기므로 방자하게 농간과 허위를 행하고 돌아가며 서로 본받으니, 날로 자심(滋甚)해져서 가벼운 법으로는 금단(禁斷)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불응위사리중지율(不應爲事理重之律)24763)로 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앵미[惡米]를 만든 자는 남이 관(官)에 고발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논상(論賞)해야 할 것이며, 본부(本府)에서도 또한 적발하여 추핵(推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흥판하는 자들은 대개가 모두 여자들로서 거짓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므로 비록 의원을 시켜서 진단을 시켜본다 하더라도 몇 달 안에는 그 진위(眞僞)를 분별하기 곤란합니다. 극한(極寒) 극열(極熱)한 때의 예에 의하여 징속(徵贖)하고 상점 주인[肆主]과 가까운 이웃[切隣]을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고, 만약 서리(書吏)로서 알면서도 체포하여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의 수교(受教)에 의하여 치죄하며, 아울러 헌부(憲府)에게도 명하여 규핵(糾覈)하게 하소서.”</p>	<p>○漢城府啓：“今承傳內，市井之徒，造爲惡米者，已令禁斷，然不善糾舉，吏緣爲奸，其元造射利者幸免，如賣薪而得者，反受其罪，此非立法本意，其申糾察，務絕根本。臣等謂，惡米興販者，以利重罰輕，恣爲奸僞，轉相倣效，日益滋甚，不可用輕典禁斷，宜以不應爲事理重罪之，其造惡米者，聽人告官論賞，本府亦摘發推覈。其中興販者，率皆女人，詐稱孕胎，雖使醫診視，數月之內難辨眞僞，依極寒極熱時例徵贖，并肆主切隣，全家徙邊，若書吏知而不捕告者，依前受教治罪，并令憲府糾覈。”從之。</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입자 / 명 홍치 (弘治) 5년) 10월 21 일(무오) 1번째기사</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조문숙(趙文淑)이 아뢰기를,  “재물을 쓰는 것은 국가(國家)에 있어서 큰 일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절약하여서 쓰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것을 해석한 자가 이르기를, ‘사치스럽게 쓰면 재물을 손상시키고, 재물을 손상시키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는 데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요사이 승전 첩자(承傳帖字)24764) 는 제용감(濟用監)24765) 과 사膳食(司膳寺)24766) 의 포목과 돈을 취(取)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아 사치스럽게 쓰는 것이 재물을 손상시키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염치가 땅에 떨어져 경상도 절도사(慶尙道節度使) 한숙후(韓叔厚)는 장물죄로써 국문을 당하였으며, 신이 형조의 추안(推案)을 보니 처(妻)로 지아비를 죽인 자가 반이나 되었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검소함을 숭상하며 백성을 구휼하며 재물쓰는 것을 절약하고 염치를 장려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이는 모두 내가 부덕(不德)한 소치이다.”  하였다. 조문숙이 또 아뢰기를,  “세자는 마땅히 학문에 근면하여 나아가 덕업을 닦아야 할 것인데, 요사이 강(講)을 폐한 날이 많으니, 심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요사이 세자가 면창(面瘡)을 앓아 강(講)을 멈추었다.”  하였다. 헌납(獻納) 이수무(李秀茂)가 아뢰기를,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신(使臣)의 자제들과 통사(通事)들이 사물(私物)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모두 호송군(護送軍)으로 하여금 운반하게 한다 하니, 청컨대 이러한 폐단을 엄히 제거하게 하소서.”</p>	<p>○戊午/御經筵。講訖，執義趙文淑啓曰：“財用之於國家大矣。孔子曰：‘節用而愛人。’釋之者曰：‘侈用則傷財，傷財必至於害民。’近以承傳帖字取濟用監、司膳寺布貨，費用彌廣，侈用傷財，不可不戒。且今風俗不美，廉恥道喪，慶尙道節度使韓叔厚，以犯贓見(鞠) [鞠]，臣見刑曹推案，妻殺夫者居半，請殿下崇儉恤民，節財用、勵廉恥。”上曰：“然，是皆予不德之致也。”文淑又啓曰：“世子當勤學問，以進德修業，而廢講之日多，甚非細故。”上曰：“然，近日世子患面瘡停講耳。”獻納李秀茂啓曰：“赴京使臣子弟及通事，多賫私物，皆使護送軍輸之，請痛祛此弊。”上問左右，領事尹弼商對曰：“臣赴京時，令軍卒被甲先驅，何暇載私物乎？”上曰：“令書狀官糾察可也。”秀茂曰：“書狀官不能獨糾，請令質正官兼御史同糾察，使之畏忌。”上曰：“雖如是，徒有弊而已。”秀茂曰：“護送軍有品布及人參，此輩衣服尙不完，何暇備此物乎？皆是富商大賈所寄耳。請令館軍陳告。”上問</p>
---	---	---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신이 북경에 갈 때는 군졸(軍卒)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앞에서 달리게 하였는데, 어느 겨울에 사물(私物)을 실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장관(書狀官)24767) 으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이수무(李秀茂)가 말하기를,  “서장관이 혼자 규찰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질정관(質正官)24768) 으로 하여금 어사(御史)를 겸하게 하여 같이 규찰(糾察)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다만 폐단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이수무가 아뢰기를,  “호송군(護送軍)에게는 품포(品布)24769) 와 인삼(人蔘)이 있으므로 이들은 의복(衣服)마저 오히려 완비(完備)하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이런 물건을 준비하였겠습니까? 이는 모두 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이 기탁(寄託)한 바이니, 청컨대 관군(館軍)으로 하여금 진고(陳告)24770)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知事) 홍귀달(洪貴達)이 대답하기를,  “만약 진고(陳告)를 듣게 된다면 대체(大體)에 손상됨이 있을까 합니다.”  하였다. 이수무가 말하기를,  “농상(農桑)은 국가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이며, 민호 식상(民戶植桑)의 법(法)이 《대전(大典)》에 명백하게 실려 있는데도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이 머뭇거리고 거행하지 아니하여 그 칠사 계본(七事啓本)24771) 을 문구로만 보아 법은 있어도 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左右。知事洪貴達對曰：“若聽陳告，恐傷大體。”秀茂曰：“農商，國家所重，民戶植桑之法，明載《大典》，而監司、守令，頓不舉行，其七事啓本，徒爲文具，有法不行，甚不可。”上曰：“果如所言，其下書監司，曉諭民間勸之。”貴達啓曰：“弘文館員，當允於其職，臺諫當待以殊禮，而今守令有缺，竝令注擬，意謂未便。”上曰：“平安道諸邑，中朝使臣所經，而近來殘敝，守令須得其人，侍從、臺諫皆朝廷之選，故特一差遣耳。”弼商曰：“有人望者爲守令，則一道內或有貪污剝民者，亦知自戢矣。”貴達曰：“貪污剝民者，今豈有之？殘敝之邑，雖侍從之臣往莅之，何能善治乎？且楊熙止有武才，宜典邊郡，今授价川，臣未知人器當否也。但此人須用於防禦、治民兩繁處可也。”文瑒曰：“人主之失，大臣之過，臺諫無不言之，言人過失，孰不惡之？人言臺諫爲平安道守令遞兒，如是則臺諫之氣，何以得伸乎？”上曰：“然則自今臺諫及弘文館員，非特旨，毋得外敍。”貴達曰：“曹淑沂、楊熙止，皆有大將之才，今皆年</p>
--	--	---

	<p>“과연 말한 바와 같다. 그것을 감사(監司)에게 하서(下書)하여 백성을 효유하여 권장하게 하라.”</p> <p>하였다.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p> <p>“홍문관원(弘文館員)은 그 직분에 오래 있음이 마땅하고, 대간(臺諫)은 특별한 예의로써 대우함이 마땅한데, 지금 수령(守令) 중에 결원이 있으면 아울러 주의(注擬)24772) 하니 생각하기에 미편(未便)한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평안도(平安道)의 모든 고을은 중국 조정의 사신(使臣)이 지나는 곳인데, 요사이 대단히 피폐하였으므로, 수령(守令)은 모름지기 마땅한 사람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종(侍從)과 대간(臺諫)은 조정에서 뽑은 사람이므로 한때 차출하여 파견하는 것뿐이다.”</p> <p>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p> <p>“인망(人望)이 있는 자를 수령으로 삼으면 한 도(道) 안에 혹 탐오(貪汚)하여 박민(剝民)하는 자도 스스로 그칠 줄을 알 것입니다.”</p> <p>하자, 홍귀달은 말하기를,</p> <p>“탐오하여 박민(剝民)하는 자가 지금 어찌 있겠습니까? 그리고 잔폐(殘弊)한 고을에 비록 시종(侍從)의 신하가 가서 다스린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잘 다스린다 하겠습니까? 또한 양희지(楊熙止)는 무재(武才)가 있어 변경의 고을을 맡기기에 마땅한데 지금 개천(价川)에 체수하니, 신은 인기(人器)가 적당한가의 여부는 알지 못하나, 다만 사람은 방어(防禦)와 치민(治民)이 둘 다 긴요한 곳에 쓰면 좋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조문숙(趙文淑)이 말하기를,</p> <p>“임금의 실책과 대신의 과실을 대간(臺諫)이 말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간은 평안도 수령의 체아직(遞兒職)24773) 이다.’라고 하니, 이</p>	<p>老，臣爲國惜之。” 上曰：“熙止可於邊邑差遣。”</p>
--	--	---------------------------------



	<p>와 같다면 대간의 기세가 어찌 신장(伸張)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간과 홍문관원은 특별한 뜻이 아니라면 외직에 서임(敍任)하지 말라.”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조숙기(曹淑沂)와 양희지(楊熙止)는 모두 대장의 재목인데 지금 모두 연로(年老)하니, 신이 나라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희지는 변경의 고을에 차견(差遣)함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0월 21일(무오) 2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유인호(柳仁濠)가 와서 아뢰기를,  “경상도 수군 절도사(慶尙道水軍節度使) 한숙후(韓叔厚)는 영내(營內)의 면포(綿布) 일곱 필을 그 아들에게 주었고, 또 녹비(鹿皮)·건어(乾魚)를 그 매제[妹婿] 김경광(金景光)에게 주었다가 일이 탄로나서 국문을 받았습니다. 신 등은 수영(水營)에 아마 불법한 일이 많이 있을 듯하니, 행대(行臺)24774) 를 보내어 적발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司憲府掌令柳仁濠來啓曰：“慶尙道水軍節度使韓叔厚，以營中綿布七匹與其子，又以鹿皮、乾魚遺其妹婿金景光，事露見(鞫) [鞫]，臣等恐水營多有不法事，請遣行臺撻發。”從之。</p>
<p>성종 270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0월 22일(기미) 1번째기사</p>	<p>명(命)하여 종재(宗宰) 2품 이상과 홍문관(弘文館)·승정원(承政院) 및 강무(講武)에 호종(扈從)한 제장(諸將), 선전관(宣傳官)·내승(內乘)24777) 등을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먹이도록 하였다.</p>	<p>○己未/命饋宗宰二品以上、弘文館、承政院及講武扈從諸將、宣傳官、內乘等于明政殿庭。</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1일(무진) 2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자점(崔自霽)이 와서 아뢰기를,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윤호(尹壕)·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 이극균(李克均)·와서 제조(瓦署提調) 한치례(韓致禮)·귀후서 제조(歸厚署提調) 구수영(具壽永)은 임명을 받은 지가 오래 되었고, 이철견(李鐵堅)은 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와 사복시 제조가 된 지 또한 오래 되어서, 본사(本</p>	<p>○司諫院正言崔自霽來啓曰：“司僕提調尹壕、奉常提調李克均、瓦署提調韓致禮、歸厚署提調具壽永，受任歲久，李鐵堅爲義禁府判事，司僕寺擬調亦久，本司奴婢，出入其第，有同家奴，</p>

	<p>司)의 노비(奴婢)가 그 집에 출입하기를 한집안 종과 같이 하면서 불의(不義)를 많이 행하니, 체직(遞職)시키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장차 임명한 연월(年月)의 오래고 가까움을 상고하여 처리하겠다.”</p> <p>하고는,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구수영(具壽永)은 귀후서 제조가 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개차(改差)하는 것이 가하다. 사복시 제조와 봉상시 제조는 이미 서로 바꾸기를 명하였고, 봉상시는 직책이 제향(祭享)을 맡았으므로 정승(政丞)으로 제조(提調)를 삼고자 한다. 사복시와 같은 곳은 마정(馬政)이 비록 중할지라도 어찌 반드시 정승을 제조로 삼아야 하겠는가?”</p> <p>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p> <p>“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은 논한다. 윤호(尹壕)는 옮겨서 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가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어떤 한 공리(貢吏)가 제포(祭脯)를 바친 것이 몹시 나뻐으므로 시원(寺員)24791) 이 추문(推問)하니, 곧 흥판(興販)24792) 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산 것이었다. 포(脯)를 판 자와 아울러 잡아서 장차 죄를 받게 되었는데 윤호가 시원(寺員)에게 청탁하여 용서하게 하니, 시원이 이를 분하게 여겨서 이르기를, ‘반드시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p>	<p>多行不義，請遞之。” 上曰：“將考年月久近處之。” 仍傳于承政院曰：“具壽永爲歸厚署提調已久，可改差。 司僕提調、奉常提調，已命相換，奉常職掌祭享，欲以政丞爲提調，若司僕，馬政雖重，何必以政丞爲之也？” 承旨等啓曰：“上敎允當。”</p> <p>【史臣曰：“壕移爲奉常寺提調，未幾有一貢吏納祭脯甚惡，寺員推問之，乃買於業興販人也，并捕爲販者，將抵罪，壕囑寺員以賈，寺員憤之，以謂必受賂也。”】</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일 (기사) 3번째기사</p>	<p>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하남군(河南君) 정승조(鄭崇祖)·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조양(李朝陽)을 대장(大將)으로 삼아 광릉(光陵)에서 사나운 짐승을 구축(驅逐)24796) 하게 하였다. 또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좌승지(左承旨) 조위(曹偉)·우승지(右承旨) 김응기(金應箕)를 나누어 보내어 이를 감독하게 하고, 인하여 선온(宣醞)24797) 을 내려 주었다.</p>	<p>○以武靈君柳子光、(河南君) [河南君] 鄭崇祖、同知中樞府事李朝陽爲大將，驅逐光陵惡獸，又分遣都承旨鄭敬祖、左承旨曹偉、右承旨金應箕監之，仍賜宣醞。</p>
<p>성종 271권, 23년</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이수무(李秀茂)</p>	<p>○御經筵。 講訖， 獻納李秀茂啓曰：</p>

<p>(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1월 7일 (갑술) 2번째기사</p>	<p>가 아뢰기를,  “국가(國家)에서 법(法)을 세운 것이 지극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바는 준행(遵行)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저화(楮貨)를 통용하도록 일찍이 법을 세웠는데 받들어 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좌승지(左承旨) 조위(曹偉)가 대답하기를,  “근래에 제사(諸司)에서 속(贖)24811) 을 징수하는 데에 저화(楮貨)를 거두지 아니하고, 포물(布物)을 거두기 때문에, 속을 징수하는 데는 저화를 쓰고 약값[藥價]은 저화와 포물을 참작해 쓰도록 하는 일을 이미 호조(戶曹)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유자광(柳子光)이 말하기를,  “외방(外方)에서는 저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수령(守令)이 백성에게 징속(徵贖)하는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어서, 천방(川防)24812) 의 함정(陷穽)처럼 무시로 적발하여 모두 포물(布物)을 거두니,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화를 쓰는 것은 이미 세워둔 법이 있으니, 관리가 다만 마땅히 받들어 행할 뿐이다.”  하였다. 유자광이 또 아뢰기를,  “지금 수령(守令)이 환상(還上)24813) 과 공물(貢物)의 수량을 갑절로 늘려 거두어 자기의 소용으로 하기를 꾀합니다. 신은 어사(御史)를 골라서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낼 것을 청하는데, 혹은 역관(驛館)이나 혹은 촌사(村舍)에서 백성의 신소(伸訴)24814) 를 들어주게 하여 만약 수령이 불법(不法)한 일이 있거든 수금(囚禁)하여 계달하게 하면, 반드시 자기의 사사로움을 함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p>	<p>“國家立法非不至也， 所患在不遵行耳。 楮貨通用， 曾立法而不奉行， 甚不可。” 上問左右。 左承旨曹偉對曰：“比來， 諸司徵贖不收楮貨而收布物， 故徵贖用楮貨， 藥價參用楮化、布物事， 已令戶曹立法矣。” 特進官柳子光曰：“外方不知楮貨爲何物， 守令徵贖於民， 無所不至， 如川防陷穽， 無時發擿， 皆徵布物， 百姓何以聊生？” 上曰：“楮貨之用， 既有成法， 官吏但當奉行耳。” 子光又啓曰：“今之守令， 還上、貢物， 倍數徵斂， 規爲己用。 臣請擇御史， 分遣諸道， 或於驛館， 或於村舍， 聽民伸訴， 若有守令不法事， 囚禁以啓， 則必不得恣行己私。” 上曰：“御史得其人則可， 苟非其人， 反有弊也。” 秀茂又啓曰：“守令科斂於民， 無所不至， 臣聞慶尙、全羅道所進銀口魚， 既役民防川而取之， 又督納於民， 民之受害， 何可勝言？ 請遣御史糾擿。” 子光曰：“貢物如香簞等物， 雖一升之微， 皆徵取於民， 若人吏防納者， 一升取米， 多至十餘碩， 小民既困於公債， 又困於徭役、徵斂， 由是民之有實者無幾。 殿下豈知民之受弊， 至</p>
---	--	--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어사를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가하거니와, 만약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수무가 또 아뢰기를,  
 “수령이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 신이 들으니, 경상도·전라도에서 올리는 은구어(銀口魚)는 이미 백성을 사역(使役)시켜 내를 막아 잡는데 게다가 백성에게 바치기를 독촉한다 합니다. 그러니 백성이 해(害)를 받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어사를 보내 규찰 적발하게 하소서.”  
 하고, 유자광은 말하기를,  
 “공물(貢物)의 향심(香藷)24815) 등과 같은 물건은 비록 한 되의 적은 것이라도 모두 백성에게 거두어 취(取)하고, 만약 인리(人吏)가 방납(防納)24816) 하는 경우는 <향심> 한 되에 쌀을 거두는 것이 많게는 10여 석(碩)에 이릅니다. 소민(小民)이 이미 공채(公債)24817) 에 곤궁하고 또 요역(徭役)과 징렴(徵斂)에 곤궁하여, 이로 말미암아 백성으로 실속이 있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이 폐단을 받음이 이처럼 지극한 데 이르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유희인(兪好仁)이 일찍이 거창 현감(居昌縣監)이 되어 하고(下考)24818) 에 있었으나, 이 사람이 어찌 범람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뒤에 의성 현령(義城縣令)이 되어서는 잘 다스린다고 일컬어졌습니다. 배계후(裴季厚)는 남원 판관(南原判官)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렸으며 또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도 도리어 하고에 있었습니다. 신이 들건대 한 조관(朝官)이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배계후가 들어주지 아니하자, 그 사람이 깊이 원망을 품더니 얼마 되지 않아 폄출(貶黜)되어 곧 단기(單騎)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까지 민간에서는 배계후가 추호도 침범하지 아니했다고 일컫는다 합니다. 신이 또 들건대 구치곤(丘致岷)이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어 잘 다스린 이름이 있었

於此極乎? 兪好仁曾爲居昌縣監居下考, 斯人豈有汎濫之事乎? 後爲義城縣令時, 稱善治。 裴季厚爲南原判官, 善於治民, 又以清廉聞, 反居下考, 臣聞一朝官有所求索, 季厚不聽, 其人深銜之, 未幾見貶, 卽以單騎還家, 至今民間稱季厚秋毫不犯。 臣又聞丘致岷爲忠州有治聲, 所宜褒賞, 而其遞也授行職。” 領事沈滄啓曰: “臣亦知其爲人, 當加褒賞。” 上曰: “實有可賞之功則當賞耳。” 偉曰: “民間所用紙與綿布等物, 皆麤短不中用。 國家雖立法禁之 其奸愈甚。” 上曰: “綿布、紙、楮貨等事, 可申明舊法。”  
 【史臣曰: “季厚嘗爲慶州判官, 貪黷無厭, 民甚疾怨, 後再爲邑宰, 貪酷猶舊, 而子光以好惡毀譽人, 行胸臆。 南原, 子光之鄉, 必季厚德於己, 故有是啓。”】

	<p>으니 마땅히 포상(褒賞)할 것인데, 그 바뀔 때에 행직(行職)24819) 을 주었습니다.”</p> <p>하였다. 영사(領事) 심회(沈滄)가 아뢰기를,  “신도 그 사람됨을 압니다. 포상을 가하여야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참으로 포상할 만한 공(功)이 있으면 마땅히 포상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조위(曹偉)가 말하기를,  “민간에서 쓰는 종(宗)이와 면포(綿布)는 모두 거칠고 짧아서 쓰기에 맞지 아니한데, 국가에서 아무리 법(法)을 세워 금(禁)해도 그 간사(奸)함이 더욱 심합니다.”</p> <p>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면포(綿布)·종(宗)·저화(楮貨) 등의 일은 옛법(舊法)을 거듭 밝히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은 논한다. 배계후(裴季厚)는 일찍이 경주(慶州) 판관(判官)이 되어 재물을 탐(貪)하기를 싫어함이 없어서 백성(百姓)들이 몹시 미워하여 원망(怨恨)하였고, 뒤에 두 번 수령(守令)이 되어 탐혹(貪酷)함이 예전( 예전)과 같았는데, 유자광(柳子光)이 추호도 범(犯)하지 아니하였다고 아뢰었으니, 그 속(속)이고 간사(奸)함이 심하다. 유자광(柳子光)은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함으로써 남(남)을 헐뜯고 기리기를 좋아하여 마음대로 행(行)하였다. 남원(南原)은 유자광(柳子光)의 고향(故鄉)이므로 반드시 배계후(裴季厚)가 자기에게 덕(德)되게 했기 때문에 이(이)처럼 아(아)된 것이다.</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11일(무인) 7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우승지(右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 산성(山城)은 평상시에는 비록 소용(小用)이 없는 것 같으나, 만약 사변(事變)이 있다면 피란(避難)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忠淸道) 보은현(報恩縣)에 산성(山城)이 있어 이름을 ‘삼년성(三年城)’이라고 하는데, 신라(新羅)와 백제(百濟)가 이로써 경계(境界)를 삼(三)았고, 전설(傳)에 3년 동안 성(城)을 쌓( 쌓)았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것이라고</p>	<p>○御晝講。講訖，右承旨曹偉啓曰：“諸邑山城，在平時雖若無所用，脫有事變，可以避亂。忠淸道報恩縣有山城，名曰三年城，新羅、百濟以此爲域，諺傳三年築城，故以爲名，城去縣五里，中寬外險且完固。又慶尙道咸</p>

	<p>합니다. 현(縣)에서 거리가 5리(里)인데, 가운데는 넓고 밖은 험하며 또 완전하고 튼튼합니다. 또 경상도(慶尙道) 함양(咸陽)에 산성이 있는데 완전하고 견고하여 지킬 만하며, 황석산(黃石山) 꼭대기에도 성이 있는데 본군(本郡)의 곡식 70석(碩)을 성중(城中)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산이 몹시 높아서 비록 적변(賊變)이 있을지라도 늙은이와 어린이는 반드시 기어 오르지 못하며, 또 곡식 70석이 급할 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가까운 성으로 옮겨 두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적당한가의 여부를 축성사(築城使)에게 물어보라.”</p> <p>하였다.</p>	<p>陽有山城，完固可守。 黃石山頭亦有城，本郡穀七十碩，藏在城中，然山甚高峻，縱有賊變，老幼必不能攀緣而上，且穀七十碩，何補於緩急，請移置近城。” 上曰：“其問便否于築城使。”</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15일(임오)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술을 베풀어 놓고서 정벌(征伐)에 종사한 야인(野人) 시랑합(時郎哈) 등 14인(人)을 먹이고 물건을 내려 주었는데, 차등이 있게 하였다.</p>	<p>○壬午/御宣政殿，置酒饋從征野人時郎哈等十四人，賜物有差。</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15일(임오) 2번째기사</p>	<p>명하여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을 불러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한 것은 미리 인재(人材)를 양성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행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배우기를 권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는데도 너희들이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지 아니함은 무엇 때문인가?”</p> <p>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신 등이 어찌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하여 선비를 기르는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일에 교관(敎官)이 마침 출사(出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모였다가 곧 도로 파하였을 뿐입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命召四學儒生，饋于仁政殿庭，仍傳曰：“國家設學，欲預養人材，以治國安民也。 汝等何不知幼學壯行之義乎？予於勸學之方無所不至，而汝等不勤於學何歟？” 僉對曰：“臣等豈不知國家設學養士之義乎？ 前日敎官適不仕，故既會而旋罷耳。” 傳曰：“勤於學問，當以致君澤民爲心。”</p>

	<p>“학문에 부지런하여 마땅히 임금에게 몸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을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1월 17 일(갑신) 9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달선(李達善)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창원(昌原)에 도착하여 공사 공례 문서(公私供饋文書) 53장(張)을 얻어서 돌아오다가 양재역(良才驛)에 이르러 상고하니, 6장을 잃었습니다. 신이 삼가 지키지 못하여 남이 훔친 바가 되었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보낸 뜻이 아니다. 사간원(司諫院)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p>	<p>○司憲府持平李達善來復命， 仍啓曰：“臣到昌原， 得公私供饋文書五十三丈， 還到良才驛考之， 則失六張， 臣不能謹守， 爲人所偷， 請待罪。” 傳曰：“非予爲遣之意， 其令司諫院鞫之。”</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1월 18 일(을유) 6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과 입직(入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홍문관(弘文館)에 술을 내려 주고, 각각 감자(柑子)를 제목으로 한 율시(律詩)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p>	<p>○賜酒于承政院、入直兵曹、都摠府、弘文館， 命各製柑子律詩以進。</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1월 21 일(무자) 4번째기사</p>	<p>명하여 영돈녕(永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불러서 빈청(賓廳)에 모으고 양대비전(兩大妃殿)24893)의 언문(諺文) 한 장을 내려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번역하여 이를 보이게 하고는, 인하여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우리들은 부귀(富貴)를 편히 누리면서 국가의 공사(公事)에 참여하지 못하나, 다만 &lt;백성이&gt; 중[僧]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크게 엄중하여, 중이 모두 도망해 흩어지고 조종(祖宗)의 원당(願堂)24894)을 수호할 수 없어 도적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선왕(先王)의 뜻을 잘 이어받드는 것이 바로 제왕(帝王)의 아름다운 덕인데, 별다른 큰 폐단도 없으면서 선왕의 원하는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릇 새로운 법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기한을 세워서 알지 못함이</p>	<p>○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臺諫、弘文館， 會賓廳， 下兩大妃殿諺文一紙， 令承旨翻譯示之， 仍收議。 其書曰：“我等安享富貴， 於國家公事無預， 但禁僧之法太重， 僧皆逃散， 祖宗願堂， 無以守護， 盜賊可畏， 故不得無言。 夫善繼善述， 乃帝王美德， 別無巨弊而壞先王願意可乎？ 凡行新法， 必立限使無不知後行之。 佛法之行， 非始於今日， 漢、唐以後， 儒釋並行， 度僧之法， 又載《大典》， 而一朝遽革，</p>

없게 한 뒤에 행할 것입니다. 불법(佛法)을 행한 것은 오늘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니 한(漢)·당(唐) 이후로 유교와 불교가 아울러 행하였고 도승(度僧)24895)의 법이 또 《대전(大典)》에 실렸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혁하니 비록 법에 의하여 머리를 깎은 자일지라도 또한 으레 도첩(度牒)24896) 없이 역(役)을 피하는 자로 여겨 당차(當差)24897) 하고, 사주(寺主)·사승(師僧)·유나(維那)24898)에게 아울러 역(役)을 정하니,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역대 제왕(帝王)이 어찌 불교를 배척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만 이제까지 근절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인심의 요동을 증히 여겨 각각 그 삶을 편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비록 작을지라도 병혁(兵革)24899)이 견고하고 날카로와서 족히 천하의 군사를 대적할 만한데, 이제 쥐와 개 같은 좀도둑의 작은 무리를 위해서 조종(祖宗)의 구원(久遠)한 법을 무너뜨림이 옳겠습니까? 양계(兩界)연변(沿邊)의 땅에도 중이 된 자가 있는데, 야인(野人)이 만약 우리 나라에 군정(軍丁)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는 저들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어찌 깊이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듣건대 중국[中原]에는 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의 집에도 모두 불당(佛堂)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교를 숭상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오랑캐를 막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같이 작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법을 바꾸는 것이 옳겠습니까? 《대전(大典)》에 ‘중이 되어 석 달이 지나도록 도첩(度牒)을 받지 못한 자는 절린(切隣)24900)까지 아울러 죄를 준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경중(京中)의 금란(禁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이 있어서 고찰(考察)하는데도 오히려 법을 어기고 소요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역자(驛子)·원주(院主)·이정(里正)으로 하여금 모두 잡아서 고하게 하면 이 무리들이 어찌 법에 의하여 하겠습니까? 도첩이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그 가진 물

雖依法削髮者，亦例以無度牒避役者，而當差寺主、師僧、維那，竝定役，是罔民也。歷代帝王，豈不欲排斥釋教，而至于今不絕乎？此必重人心擾動，使之各安其生耳。我國雖褊小，兵革犀利，足以敵天下之兵，而今爲鼠竊狗偷之小醜，壞祖宗久遠之法可乎？兩界沿邊地亦有爲僧者，野人若聞我國軍丁不足，禁人爲僧，則是示弱於彼也。大臣豈不深思處之？然我等意以爲未便也。且聞中原非但有寺社，人家皆有佛堂，其尊尙佛教如此，猶得防胡，今我國畏如此小醜而變法可乎？《大典》爲僧過三朔，不受度牒者，竝罪切隣，此法非不足也。京中禁亂，有堂上、郎廳考察，尙且違法騷擾，況令驛子、院主、里正，皆得捕告此輩，豈依法爲之乎？勿論度牒有無，恟奪其所資物色，竝及衣服，老僧，專賴子弟乞糧供饋，而今若此，必皆飢餓而死，豈不感傷和氣乎？人君代天理物，使昆蟲草木無不各得其生，今使僧人困苦含怨，於政體何如？我國之地，山川爲半，深山之中有僧人焉，故盜賊不得依焉，若無僧徒，則山谷空虛，盜賊盤據，則將



건을 겁탈하고 아울러 의복에도 미칠 것이니, 늙은 중은 오로지 제자에 의지하여 양식을 빌어서 공궤(供饋)하는데, 이제 만약 이같이 하면 반드시 모두 굶주려서 죽을 것입니다. 어찌 화기(和氣)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서 곤충(昆蟲)과 초목(草木)으로 하여금 각각 그 삶을 얻게 하는데, 승인(僧人)으로 하여금 곤궁하여 원망을 품게 하면 정치의 체모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나라 땅은 산과 내가 반(半)이 되는데 깊은 산중에는 중이 있기 때문에 도적이 의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중의 무리가 없어 산골짜기가 비게 되어 도적이 근거를 잡으면 장차 중으로 하여금 절에 살게 하는 법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국내(國內)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비록 큰 손님[大賓]은 없다고 하더라도 왜인(倭人)·야인(野人)의 내왕이 낙역부절(絡繹不絕)24901 하니, 승도(僧徒)를 잡아 묶은 것이 도로에 가득하면 저 사람들의 보고 듣는 데에 어찌 요란(撓亂)함이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딱하고 민망스러울 만한데 위에서 오히려 알지 못하니, 이른바, ‘임금의 대문은 천리보다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軍士)와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는 모두 나이가 60으로써 제군(除軍)하는데, 중은 비록 도첩(度牒)이 없을지라도 나이가 60이 찬 자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노소(老少)를 물론하고 역(役)을 정하고 군(軍)에 채우면 심히 소란스러울 것이고, 수록재(水陸齋)24902 를 설비하는 절의 집물(什物)이 반드시 도적의 소유가 될 것이니, 비록 차비승(差備僧)이 있을지라도 어디서 이를 얻겠습니까?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평상시 전교에 이르시기를, ‘난신(亂臣)에 연좌된 사람은 자기가 범한 바가 아닌데 천역(賤役)에 분주하여 곤궁하고 억울하니, 이는 반드시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할 것이다. 대왕(大王)·왕후(王后)의 연파자(連派者)24903 는 모두 방면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들의 망령된 말이 아닙니다. 영의정(領議政) 노정승(盧政丞) 24904 도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일체 《대전(大典)》에 의하여 각각 그

更立使僧居寺之法矣。國內安靜，斯爲美事，雖無大賓，倭、野人之來，絡繹不絕，其係縲僧徒者，滿於道路，則其於彼人瞻視，豈無擾亂乎？如此事可爲痛悶，而上猶未之知，所謂君門邈於千里者也。軍士及諸司奴婢，皆以六十除軍，僧人雖無度牒，年滿六十者將何用哉？勿論老少，定役充軍，甚爲擾亂。設水陸寺社什物，必爲賊有，雖差備僧於何得之乎？世祖大王平時傳教云：‘如亂臣緣坐人，非自己所犯，而奔走賤役困窮鬱抑，是必感和氣，其於大王王后連派者，皆放宥之。’此非予等妄語，領議政盧政丞亦豈不聞之乎？一從《大典》，使之各安其業，違法者依《大典》施行，使衆心安靜，守護寺社如先王先后水陸施食之時，使之精具供辦幸甚。”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鄭文炯議：“母后傳教，至於如此，勉奉慈旨何如？”沈滄、柳輕議：“伏見大妃傳教，出於至情，辭甚激切，然聞唐高祖沙汰天下僧尼、道士，我太宗革寺社奴婢，至今傳誦，事光簡策。臣今觀憲府所啓立法節目，此乃聖上參酌古今而爲之，眞朝鮮萬世

직업에 안정하도록 하며, 법을 어기는 자는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여 못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절을 수호(守護)하여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수륙재 시식(施食) 때에 정결하게 음식을 갖추어 공판(供辦)하도록 한 것과 같이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모후(母后)의 전교가 이와 같으시니, 자지(慈旨)24905) 를 힘써 받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회(沈澹)·유지(柳輕)는 의논하기를,

“앞드려 대비(大妃)의 전교를 보건대 지극하신 뜻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이 매우 격절(激切)합니다. 그러나 듣건대 당(唐)나라 고조(高祖)는 천하의 승니(僧尼)와 도사(道士)를 도태(淘汰)시켰고, 우리 태종(太宗)께서는 절의 노비를 혁파하였으므로 이제까지 전하여 칭송하고 일이 간책(簡策)에 빛납니다. 신이 이제 사헌부(司憲府)에서 계달한 입법 절목(立法節目)을 보건대 이는 상상께서 고금을 참작하여 하신 것이니, 참으로 조선 만세의 복입니다. 대비의 전교는 단지 법을 세운 것이 가혹하고 각박하여 민간이 소요(騷擾)할 것을 두려워하신 것인데, 신 등도 관리로서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간혹 있을까 합니다. 청컨대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로 하여금 검거(檢舉)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고, 안호(安瑚)·이상(李瑋)은 의논하기를,

“불교의 말이 옳지 못함은 전하께서 이미 밝게 아시는 바이니 수의(收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지(慈旨)로써 군신(群臣)에게 하문(下問)하시니 결망(缺望)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요즈음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한데 지금 만약 단서를 열어 금하지 말도록 허락하면, 백성들이 장차 함께 승도(僧徒)가 되어 군액(軍額)이 날마다 부족할 것입니다.

福也。太妃之教，只以立法苛刻，恐民間騷擾也。臣等亦意，官吏因緣作弊者間或有之，請令諸道觀察使檢舉抵罪。”安瑚、李瑋議：“佛說之非，殿下已灼知之，不必收議也，而今以慈旨，下問群臣，不勝缺望。近日禁僧之法，可謂至矣。今若開端，許令勿禁，則民將胥爲僧徒，軍額日以不敷，況此法國家議定，頒布中外，群臣百姓，無不周知，人人皆以爲吾道一大幸也。今又紛更，則非徒士庶失望，有妨朝廷事體。”安琛、兪好仁、姜謙、權瑠、南世周、權五福、金勘、李穎、李寬議：“禁僧之法，實是軍國大計、吾道大幸，大妃雖有命殿下，當以大義從容諫止，不宜以宮闈內言，廣示朝廷，大妃亦不當沮朝廷政事。且僧徒艱苦之狀，臣等在外廷，尙未及聞，而先達於宮闈嚴邃之地，深爲未便。”李世佐、申經、閔壽福議：“臣等前日祇承傳教，謹以妄意條列上達，其時議諸大臣施行，若年滿僧人，雖犯罪亦無差役之理，法立未幾，從而紛更之可乎？”傳曰：“大臣之議，予已悉矣，但其在下者議云：‘大妃不當與國

	<p>더욱이 이 법은 국가에서 의논해 정하였고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여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두루 알지 못하는 이가 없어, 사람들이 모두 오도(吾道)24906) 의 한 큰 다행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또 어지럽게 고치면 사서인(士庶人)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조정(朝廷)의 사체(事體)에 해로움이 있을까 합니다.”</p> <p>하고, 안침(安琛)·유호인(兪好仁)·강겸(姜謙)·권유(權瑠)·남세주(南世周)·권오복(權五福)·김감(金勘)·이과(李顥)·이관(李寬)은 의논하기를,</p> <p>“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은 진실로 군국(軍國)의 큰 계책이며 오도(吾道)의 큰 다행입니다. 대비께서 비록 명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전하께서는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조용히 간하여 그만두게 하여야지 궁위(宮闈)24907) 의 내언(內言)을 조정(朝廷)에 널리 보이는 것은 마땅치 못하며, 대비께서도 조정의 정사를 저지(沮止)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또 승도(僧徒)의 간고(艱苦)한 상황은 신 등이 외정(外廷)에 있으면서도 아직 미처 듣지 못하였는데, 궁중의 엄하고 깊숙한 곳에 먼저 전달되었으니, 심히 미편(未便)합니다.”</p> <p>하고, 이세좌(李世佐)·신경(申經)·민수복(閔壽福)은 의논하기를,</p> <p>“신 등이 전일에 전교를 공경히 받들어서 삼가 망령된 뜻으로써 조목을 나열하여 상달(上達)하자 그 때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나이가 찬 중이라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차역(差役)할 이치가 없으며, 법을 세운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는데 곧 따라서 어지럽게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대신의 의논은 내가 이미 잘 알았으나, 다만 그 밑에 있는 자의 의논에 이르기를, ‘대비는 국정(國政)에 참여할 수 없고 궁위(宮闈)의 말을 조정에 보일 수 없으며 전하도 간하여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두 대비께서 일찍이 중을 금하는 법을 물으시기에 내가 모두 자세히 아뢰었으니,</p>	<p>政，宮闈之言不宜示於朝廷也，殿下亦當諫止也。’ 兩大妃嘗問禁僧之法，予悉陳啓，非不諫止也。 今兩殿書示如此，予意以爲，改法輕而忤旨重，故欲改前法，其更議以啓。” 弼商、克培、思愼、尹壕、文燭議：“今立法如此，實是國家之福，臣意亦以爲快，然不可有一毫忤慈旨，故酌輕重議啓，欲上勉從之耳。” 沈澹、柳輕議：“臣等伏聞上教，亦知母后之教，不可不從，然反覆思之，聖主參酌古今，美法纔下，而不數月間改之，不可。 請依前議，其苛急節目，量宜減損何如？” 世佐、安瑚、申經、壽福、李瑋議：“昔孟懿子問孝，子曰：‘無違。’ 釋之者曰：‘無違，謂不悖於理，不可以從親之令爲孝也。’ 如其非道，豈可以忤旨爲辭而輕變朝廷之大法乎？” 安琛等議：“禁僧之法，國家大計，而殿下以忤慈旨爲辭，大臣又從而承順，不勝缺望。 夫事親者，不徒以苟循無違爲孝，要當導以善道，納親於無過之地，是爲大孝，苟從大妃一時之旨，而卒至於僧徒日盛、軍額日減、吾道日削、國勢日弱，則大妃其獨不憂乎？ 勿以慈旨爲辭，勿爲異議</p>
--	---	--

간하여 그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제 두 대비전(大妃殿)의 글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생각하건대 법을 고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 대비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의 법을 고치려고 한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이제 이같은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국가의 복이며 신의 생각에도 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일호(一毫)라도 자지(慈旨)를 어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중(輕重)을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니, 성상께서 힘써 따르시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하고, 심희(沈澮)·유지(柳攄)는 의논하기를,

“신 등이 엿드려 상교(上敎)를 듣고서 모후(母后)의 전교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 생각하건대 성주(聖主)께서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아름다운 법을 겨우 내렸는데, 몇 달이 되지 아니한 사이에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전의 의논에 의하여 그 까다롭고 급한 절목(節目)은 적당하게 헤아려서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세좌(李世佐)·안호(安瑠)·신경(申經)·민수복(閔壽福)·이상(李瑄)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맹의자(孟懿子) 24908) 가 효(孝)의 방법을 물으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만일 도(道)가 아니면 어찌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써 구실을 삼아서 조정의 큰 법을 가볍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침(安琛) 등은 의논하기를,

所設,決斷無疑。” 上曰: “當以此議進啓兩殿。”

【史臣曰: “弼商等平生讀許多書, 而及是議, 反出沈澮之下, 時論恨之。文炯初欲取憲府禁僧條觀之, 弼商厲聲謂曰: ‘且可議之, 何必看取文案?’ 遂闕手附會弼商議。”】

	<p>“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은 국가의 큰 계책인데 전하께서 자지(慈旨)를 거스리는 것으로 구실을 삼으시고 대신이 또 따라서 받들어 순종하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이를 섬기는 이는 한갓 구차히 따르고 어김이 없는 것만으로 효도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마땅히 착한 도리로 인도하여 아버이를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큰 효도인 것입니다. 만약 대비의 일시적인 뜻을 따랐다가 마침내 승도(僧徒)가 날마다 성(盛)하고 군액(軍額)이 날마다 줄어지며, 오도(吾道)가 날마다 쇠하고 국세(國勢)가 날마다 약해지는 데 이르면, 대비께서도 홀로 근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대비의 뜻으로써 구실을 삼지 말고 다른 의논에 의해 그르치지도 말며 쾌하게 결단하여 의심하지 마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 의논을 가지고 두 대비전(大妃殿)에 아뢰겠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은 논한다. 윤필상(尹弼商) 등은 평생(平生)에 많은 글을 읽었으나, 이 의논에 미처서는 도리어 심회(沈滄)의 아래에 있었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한(恨)스러워하였다. 정문형(鄭文炯)이 처음에 사헌부(司憲府)의 금승조(禁僧條)를 취하여 보려고 하자, 윤필상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옳은 의논이라면 어찌 문안(文案)을 취하여 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니, 드디어 손을 놓고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3일(경인) 6번째기사</p>	<p>명하여 종친(宗親) 1품, 의빈(儀賓), 영돈녕(永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입직(入直)한 제장(諸將), 승정원(承政院),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관원을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p>	<p>○命饋宗親一品、儀賓、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入直諸將、承政院、弘文館、藝文館員于明政殿庭。</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5</p>	<p>명하여 대비의 언간(諺簡)을 대간(臺諫)과 홍문관(弘文館)에 보이게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비록 법을 세운 지 오래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주 고치는 것을 옳지 못하</p>	<p>○命示大妃殿諺簡于臺諫及弘文館。其文曰：“雖以立法未久而紛更爲不可，然良法則久存可矣，不然則人心搖動，</p>

일(임진) 3번째기사

다고 하나, 좋은 법은 오래 두는 것이 가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인심이 요동(搖動)하여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으니, 어찌 오래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승도(僧徒)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先王)의 원당(願堂)을 수호할 사람이 없고 또 인심이 요동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아뢰는 것뿐이며, 또 정사에 간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처자(妻子)를 가진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데 중은 아침 죽과 저녁밥으로 어렵고 괴로움이 심하거니와, 여러 고을 수령(守令)이 백성을 침학(侵虐)하지 아니하고 편히 살게 하면 누가 중이 되기를 즐기겠습니까? 대저 법을 세우는 데에 그 근본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서 그 끝을 다스리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임금의 정치는 인심을 안정하도록 하기를 요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경(申經)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상(李瑄)이 아뢰기를,

“이제 자지(慈旨)를 보니, 이르기를, ‘수령(守令)이 백성을 침학(侵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하여 중이 된다’고 하였는데, 신 등은 과연 침학하는 자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병(正兵)으로 번(番)에 오르는 자는 토목(土木)의 부역(赴役)이 몹시 괴롭고, 수군(水軍)의 입번(立番)도 괴로워서 중들의 편히 앉아서 먹는 것만 같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軍役)을 피하여 중이 되는 자가 많은 것이지, 수령(守令)의 침학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사면(四面)으로 적의 침범을 받으니 군액(軍額)을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법을 세운 지 오래 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파(罷)하면 군사로서 역(役)을 피하여 중이 되는 자를 금할 수 없을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비록 옳으나, 자지(慈旨)에, ‘이 법은 민심을 소동하게 한다.’고 하시며 그 말 뜻의 간절하고 지극함이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감히 다시

民不得安居，豈可久行乎？我非欲庇僧徒，先王願堂，無人守護，又恐人心搖動，故啓之耳。且非欲干與政事也，人皆欲飲酒食肉，有妻子之樂，而僧人則朝粥夕飯，艱苦甚矣。諸邑守令，不侵虐百姓，使之安接，則誰肯爲僧乎？大抵立法，不正其本，而治其末可乎？人君政治，要使人心安靜，故敢啓之耳。” 司憲府持平申經、司諫院正言李瑄啓曰：“今見慈旨云，守令侵虐百姓，故民避爲僧，臣等未知果有侵虐者也。然正兵番上者，土木赴役甚苦，水軍立番亦苦，不如僧徒安坐而食，故避軍役爲僧者多，非因守令侵虐也。我國四面受敵，軍額不可不敷，今立法未久而遽罷之，軍士避役爲僧者，不可勝禁矣。” 傳曰：“爾等之言雖是，然慈旨以爲此法使民心騷動，其辭意懇至如此，予何敢更啓？只行《大典》之法，禁絕無度牒僧人可也。”

	<p>아되겠는가? 다만 《대전(大典)》의 법을 행하여 도첩(度牒)이 없는 중만 금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6일(계사) 4번째기사</p>	<p>명하여 서연관(書筵官)에게 강당(講堂) 앞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는데, 대간(臺諫)과 일찍이 시독(侍讀)한 자도 참여하였다. 세자(世子)로 하여금 술잔을 잡아서 주게 하고 물품을 내려 주었는데, 차등이 있게 하였다.</p>	<p>○命饋書筵官于講堂前庭，臺諫及曾侍讀者亦與焉。令世子執杯錫之，賜物有差。</p>
<p>성종 271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7일(갑오) 3번째기사</p>	<p>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권구(權俱) 등이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조종(祖宗)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강상(綱常)을 붙들어 세우고 정도(正道)를 유지(維持)하였으므로 모두 ‘예의지국(禮義之國)’이라고 일컬었는데, 홀로 도승(度僧)의 법은 예전대로 따르고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단(異端)을 믿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여 이를 물리쳐서 중외(中外)에 명하여 도첩(度牒)이 없는 자를 찾아내어 하나하나 역(役)을 정하게 하였으나, 그 근본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군역(軍役)을 피하기를 피하는 자가 모두 머리를 깎고 도망하여 승도(僧徒)는 날마다 많아지고 군액(軍額)은 날마다 줄어 지니, 일국의 백성을 모아서 세면 편氓(編氓)24960)의 수(數)가 반드시 승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 신하가 헌의(獻議)하자 전하께서 그대로 따라서 특별히 머리 깎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니, 일국의 신민(臣民)이 기뻐서 뛰지 아니하는 이가 없습니다.  생각하기를, 이와 같으면 승도의 해(害)가 옛날보다 차츰 줄어지고 군국(軍國)의 큰 일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대비(大妃)의 명령으로 인하여 또 금하지 말게 하시니,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영출(令出)은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 돌이키고자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아니하여 또 저지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정사를 행하는 체모가 되겠습니까?  신 등이 엿드려 살피건대 대비의 전교에 이르기를, ‘중은 술을 마시거나 고기</p>	<p>○司諫院司諫權俱等上疏曰：  國家自祖宗以來，扶植綱常，維持正道，天下皆稱禮義之邦，獨度僧之法因循不祛，殿下不信異端，辭而闕之，命中外，刷其無度牒者一一役，然未能絕其根本，故民之謀避軍役者，皆剃髮而逃之，僧徒日繁，軍額日耗，聚一國之民而數之，則偏氓之數，必不及於僧徒矣。 廷臣獻議，殿下從之，特下剃髮之禁，一國臣民，莫不喜躍，以爲如此，則僧徒之害稍減於昔日，而軍國大事亦爲有利矣。 今因大妃之命，又令勿禁，《書》曰：“令出唯行，不唯反。”立法未久，又沮不行，豈爲政之體乎？ 臣等伏審，大妃之教曰：“僧人不飲酒食肉，無妻子之樂，誰樂爲僧？” 僧之不食酒肉而無妻子者，百中之一、二，遊手遊食以逃租賦，未見僧之飢而死也，是以人爭趨之，有國家者，不可</p>

를 먹지 아니하며 처자의 즐거움이 없으니, 누가 중이 되기를 즐기겠느냐?’고 하였는데, 중으로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처자가 없는 자는 백 명 가운데 한둘이고 놀고 먹으면서 조부(租賦)24961) 를 도피하므로, 중이 굶주려서 죽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나아가게 되니,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엄하게 배척하여 없애기를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승도의 일을 외간(外間)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궁중 깊은 곳에 먼저 상달되었으니, 이는 중이 반드시 인연으로 부탁하여 계달하게 한 것입니다. 밖의 말이 안에 들어가고 안의 말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니, 내외(內外)의 분별을 엄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이 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 승도들이 반드시 사사로이 서로 이르기, ‘국가에서 비록 법을 세워 금할지라도 대비가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하여, 조화(造化)의 힘을 천단(擅斷)하고 국가의 정사를 가볍게 여길 것이니, 통탄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일찍이 문덕 황후(文德皇后)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하니, 황후가 사양하기를, ‘「암탉이 새벽을 맡으면 집이 망한다.」’고 하는데, 첩(妾)이 어찌 감히 정사를 참여해 듣겠습니까?’라고 하며, 굳이 물었으나 마침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조정의 큰 의논은 모후(母后)가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한결같이 모후의 전교에 따르시면 여후(女后)가 정사를 천단하는 단서가 이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후세 자손이 반드시 이로써 말을 빙자할 것이니, 〈자손에게〉 물려주는 계책에 좋지 못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맹의자(孟懿子)가 효(孝)를 공자(孔子)에게 물으니, 공자(孔子)가 대답하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선유(先儒)가 해석하기를, ‘「어김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고, 증자(曾子)는 말하기를, ‘아버지에도 다투는 아들이 있으면 불의(不義)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불의를 당하면 다투어야 할 것이니, 아버지의 명령에 따

不痛排而務去之也。 且僧徒之事，外間不知，而先達於宮闈深邃之地，是僧人必因緣付托，使之啓達也。 外言入內，內言出內，非所以嚴內外之分也。 今使此法不行， 則僧徒必私相謂曰：“國家雖立法禁之，而大妃在焉，吾何畏哉?” 擅造化之力，輕國家之政，可勝痛哉? 唐太宗嘗與文德皇后議政事，后辭曰：“牝鷄之晨，惟家之索，妾安敢預聞政事?” 固問之，終不對。 以此觀之，朝廷大議，非母后所得以議也。 殿下一從母后之教，女后專政之端，自此而始，後世子孫，必以此藉口，貽謀不臧，莫大於是。 昔孟懿子問孝於孔子，孔子曰：“無違。” 先儒釋之曰：“無違，謂不悖於理。” 曾子曰：“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故當不義則爭之，從父之令，又焉得爲孝乎?” 殿下不能從容諫止，而反以宮闈之言，廣示臣僚，無乃不可乎? 新創佛宇，則大妃之教也，不以大義止之，而一依母后之命，恐非人君之大孝也。 然則殿下雖不好佛，安知其眞不好也? 且殿下承慈旨，難於違忤，下示群臣，欲以觀群議之如何，若大臣皆曰不可，則殿下豈能



	<p>르는 것이 또 어찌 효(孝)가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조용히 간하여 그치게 하지 못하시고 도리어 궁위(宮闈)의 말을 신하들에게 널리 보이시니, 옳지 못함이 없겠습니까? 새로이 절을 짓는 것은 대비의 하교(下敎)인데 대의(大義)로써 막지 아니하고 일체 모후(母后)의 명에 의하시니, 아마도 임금의 대효(大孝)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하실지라도 참으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자지(慈旨)를 받고 여기기가 어려워서 여러 신하들에게 내려 보여서 여러 의논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하셨는데, 만약 대신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면 전하께서 어찌 능히 독단(獨斷)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두세 대신이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취(取)하고 뜻을 맞추어서 따랐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습니까? 그러면, ‘힘써 자지(慈旨)를 따르라.’고 한 것은 이른바,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후(母后)가 정사에 간여하고 대신이 아첨해 따르면, 신은 두려워하건대 나라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까 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신 등의 말을 오활(迂闊)하다고 마시고 얼굴로 아첨하는 죄를 빨리 다스려서 이루어진 법을 폐하지 마소서.”</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진실로 옳다. 그러나 이로써 대비께 아뢰면 자전(慈殿)의 뜻을 상하게 할까 두렵다.”</p> <p>하였다.</p>	<p>獨斷乎? 今之二、三大臣, 阿諛取容, 逢迎而從, 是豈大臣之道? 然則勉從慈旨云者, 所謂一言喪邦者也, 母后預政, 大臣面從, 臣恐國事將日非也。伏願殿下, 勿以臣等之言爲迂, 亟治面諛之罪, 毋廢成法。</p> <p>傳曰: “所啓誠是, 然以此而啓于大妃, 恐傷慈志也。”</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2월 1일 (정유) 2번째기사</p>	<p>현릉 참봉(顯陵參奉) 원승조(元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오늘 새벽 초하루 제사에 제찬(祭饌) 24987) 을 이미 올렸는데, 수호군(守護軍)이 말에 밟혀서 죽자 건원릉(健元陵) 24988) 과 현릉(顯陵) 24989) 의 집사(執事)가 모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제사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顯陵參奉元崇祖來啓曰: “今晨朔祭已奠饌, 而守護軍爲馬蹠死, 健、顯兩陵執事皆見之, 故未敢行祭。” 傳曰: “祭饌已設, 不可不行。” 承政院啓曰: “請以闕內入直人員差獻官、執事、奉香祝, 以行之。” 傳曰: “可。”</p>

	<p>“제찬을 이미 진설(陳設)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한 인원(人員)으로써 헌관(獻官)과 집사를 정하여 향축(香祝)을 받들고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6일          (임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술을 가져다 놓게 하고 종정(從征)한 야인(野人) 살합련(撒哈連) 등 14명에게 술을 대접하도록 하고, 물건을 차등이 있게 내려 주었다.</p>	<p>○壬寅/上御宣政殿，置酒饋從征野人撒哈連等十四人，賜物有差。</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10일(병오)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요즈음 삼공(三公)이 비방(誹謗)을 당하여 직무에 나아가지 아니하니, 조정의 사체(事體)에 어떠하겠는가? 좌·우 승지(左右承旨)가 각각 선은(宣醞)25125)을 가지고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의 집에 가서 위로하고 효유(曉諭)하여 권면해서 일을 보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近日三公被謗，皆不就職，其於朝廷事體何如？左、右承旨各賚宣醞，往領議政、左議政第慰諭之，勸令視事。”</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15일(신해) 4번째기사</p>	<p>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 관원을 불러 승정원(承政院)에 모아서 술을 내려주고 각각 ‘옥당영월(玉堂詠月)’이란 &lt;글제목으로&gt; 율시(律詩)를 짓도록 명하였다.</p>	<p>○召弘文館、藝文館會承政院，賜酒，命各賦‘玉堂詠月’律詩。</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22일(무오) 1번째기사</p>	<p>봉선사(奉先寺) 중이 상언(上言)하기를,          “본사(本寺) 위전세(位田稅)의 미두(米豆)는 선왕(先王)·선후(先后)를 위하여 수록재(水陸齋)를 마련하는 데 수요(需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거두어 들인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호조(戶曹)에서 스스로 거두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군자창(軍資倉) 곡식으로 주니, 이것을 써서 공</p>	<p>○戊午/奉先寺僧上言曰：“本寺位田稅米豆，爲先王先后設水陸所需也。本寺收納，其來已久。今戶曹不許自收，而給軍資倉穀，用此供辦，恐不精潔。請依舊自收。”事下戶曹，判書鄭崇祖</p>

	<p>관(供辦)25143) 하면 아마도 정결하지 못할 듯합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스스로 거두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일을 호조(戶曹)에 내리니, 판서(判書) 정승조(鄭崇祖) 등이 와서 아뢰기를,</p> <p>“모든 전세(田稅)를 경창(京倉)에 수납(收納)하게 한 것은 민폐(民弊)를 덜고자 함이니, 절의 전세도 스스로 거두기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륙재(水陸齋) 신어(神御)에 쓰이는 것은 소격서(昭格署)에서 받게 하고, 그 나머지는 군자금(軍資監)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곳에 있는 관원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여 그 절의 중으로 하여금 가서 받아 가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상언(上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等來啓曰：“諸田稅，令京倉收納者，欲除民弊，寺田稅不可許自收也。但水陸神御所用，受於昭格署，其餘受於軍資監爲便。不然則令所在官收納，使其寺僧往受何如？”傳曰：“依上言施行。”</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2월 24일(경신) 4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신경(申經)이 와서 아뢰기를,</p> <p>“본부(本府)에서 들건대 ‘고(故) 창평 현령(昌平縣令) 이세무(李世武)가 죽어 광산(光山) 지방에 장사지냈는데, 도적이 그 무덤을 파서 팔다리 몸통을 자르고 그 양근(陽根)을 베어서 입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창평 경주인(京主人)25144)에게 들으니, 말하기를, ‘이세무의 아들이 이 말로 인하여 관(官)에 소송하여 허망(虛妄)한 사실임을 변명한다.’고 하는데, 이 일은 풍속에 관계되니 핵실(覈實)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가하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은 논한다. 이세무(李世武)는 성질이 잔혹(殘酷)하여 백성을 착취하</p>	<p>○司憲府掌令申經來啓曰：“本府聞故昌平縣令李世武死，葬光山地面，賊發其塚，斬斷肢體，割陽根納之口中，及聞昌平京主人，則乃言世武之子，因此言訟于官以辨虛妄，此事關於風俗，不可不覈。請遣朝官鞫之。”傳曰：“可。”</p> <p>【史臣曰：“世武性殘酷，掊克於民，盛飾廚傳，有一行客抵宿(材) [村] 家，見其主翁盡拔葱種食之，又多與其客，客怪而問之，答曰：‘初欲取種，今宰苛虐，何暇計後事耶?’”】</p>

	<p>여 주전(廚傳)25145) 을 성하게 꾸몄는데, 어떤 나그네[行客]가 마을 집에 들어 자면서, 그 주인 영감이 파 모종[葱種]을 모두 뽑아다가 먹고, 또 그 나그네에게 많이 주는 것을 보고는, 나그네가 괴이하게 여겨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종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지금 수령(守令)이 가혹하고 사나우니 어느 겨를에 뒷일을 계획하겠느냐?’고 했다.</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25 일(신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술을 차려 놓게 하고, 종정(從征)25146) 한 야인(野人) 낭도낭합(浪都浪哈) 등 12명을 먹이고 물건을 차등이 있게 내려 주었다.</p>	<p>○辛酉/上御宣政殿置酒，饋從征野人浪都浪哈等二十一人，賜物有差。</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25 일(신유) 2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이 상소하기를,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경(敬)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밖을 방정[方]하게 하여, 경(敬)과 의(義)를 세우면 덕(德)이 외롭지 아니하다.’고 하였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임금이 경(敬)을 바탕으로 삼으니, 덕(德)을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경(敬)이라는 것은 곧 바로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하나를 주(主)로 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시어 경연(經筵)에 부지런히 나아가셔서 날마다 대신(大臣)·명유(名儒)와 더불어 고금(古今)을 상각(商榷)하고 치도(治道)를 강명(講明)하시니, 공경하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은 비록 옛 제왕(帝王)이라도 어찌 이에 더하겠습니까? 다만 한가로우신 여가에 혹시 관사(觀射)25147) 하실 때가 있는데 활을 쏘는 데는 반드시 짝[耦]이 있고 짝은 다투는 바가 있으니, 전하와 더불어 짝하여 다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환시(宦寺)25148) 와 소인(小人)을 친할 때가 항상 많고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접할 때가 항상 적어서,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시어 성(聖)스럽고 공경하심이 조금 훼손(虧損)되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거경(居敬)25149) 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소서. 제왕(帝王)의 학문은 사서인[韋布]과 같지 아니하며 그 요지(要旨)는 성의(誠</p>	<p>○司憲府大司憲李世佐等上疏曰： 《易》曰：‘敬以直內，義以方外，敬義立而德不孤’， 《書》曰：‘王敬作所，不可不敬德’，所謂敬者，便是收斂身心，主一無適也。殿下勵精圖治，勤於經筵，日與宏輔碩儒，商榷古今，講明治道，嚴恭寅畏之心，雖古帝王，何以加此？但於燕閑之暇，或有觀射之時，射必有耦，耦有所爭，與殿下耦而爭者誰也？由此而親宦寺小人之時常多，接賢士大夫之時常少，細行不矜，聖敬少虧，伏願殿下，敦居敬之心。帝王之學，與韋布不同，其要在於誠意、正心、修身、齊家以爲出治之本，固不可留神詞藻治書生之末技，況於書畫哉？殿下天縱之才，發於翰墨，不待覃思研精，而筆之於書，自有驚鸞回鳳</p>

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로써 정치를 하는 근본으로 삼는 데 있으니, 진실로 사조(詞藻)25150) 에 정신을 기울여 서생(書生)의 말기(末技)를 다스릴 수 없는데, 더구나 서화(書畫)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재주가 한묵(翰墨)25151) 에 나타나서 생각하고 연구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 글씨를 쓰셔도 저절로 난새[鸞]를 놀라게 하고 봉황[鳳]을 되돌아 오게 하는 세(勢)가 있으시니, 이른바 조화(造化)와 더불어 그 신묘(神妙)함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간(外間)에서 자못 어찰(御札)을 얻어서 장식(裝飾)하여 병풍이나 족자를 만드니, 명철한 임금은 한 번 웃거나 한 번 쩡그리는 것도 아끼는데 더구나 손수 쓰신 필적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재예(才藝)의 많으심을 비밀히 하소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덕(德)이 있는 이에게 명하거던 오복(五服)25152) 으로 다섯 가지를 나타내며, 하늘이 죄 있는 이를 다스리거던 오형(五刑)25153) 으로 다섯 가지를 써서 정사를 힘쓰고 힘쓰소서.’라고 하여, 상(賞)을 하늘이 명한다고 하고 형(刑)을 하늘이 다스린다[討]고 하였으니, 진실로 형(刑)과 상(賞)은 임금의 대병(大柄)25154) 이므로 임금이 사사로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상주어서 천만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벌하여서 천만 사람이 두려워진 연후에야 비로소 참람(僭濫)하지 아니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전하께서는 상경(賞慶)과 형위(刑威)를 베푸시매 그 공죄(功罪)의 있고 없음을 보셨습니다. 다만 근년 이래로 작록(爵祿)의 명이 혹시 참망(僭妄)함에 이르고, 형벌의 시행이 혹시 지나치거나 차질이 생기는 실수가 있으니, 이는 훌륭한 정치에 한 가지 흠(欠)이 되는 일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상벌(賞罰)의 법을 공정하게 하소서.

전(傳)에 이르기를, ‘임금의 문(門)은 아홉 겹[九重]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깊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팎의 말[言]은 마땅히 그 출입을 삼가야 할 것인데, 요즈음 듣건대 초방(椒房)25155) 의 친족이 멀고 가까운 사이가 없이

之勢，所謂與造化同其神妙者矣。但外間頗得御札，裝爲屏簇，明主愛一嘖一笑，況手跡乎？伏願殿下，秘才藝之多。《書》曰：‘天命有德，五服五章哉，天討有罪，五刑五用哉，政事懋哉懋哉。’賞曰天命，刑曰天討，誠以刑賞人君之大柄，而亦非人君之所得私也。賞一人而千萬人勸，罰一人而千萬人懼，然後始可謂之不僭不濫矣。殿下賞慶刑威，視其功罪之有無。但頃年以來，爵祿之命，或至於僭妄，刑罰之施，或失於過差，此聖治之一欠事也。伏願殿下，公賞罰之典。傳曰：‘君門九重’，言其邃也。內外之言，當謹其出入。近聞椒房之親，無間遠近，例問起居，有同家人之禮，問安婢子，往來屑屑，出入無禁，甚至分歲之日，宗宰之妻，爛其盈闕，留連經宿，內外混雜，深恐閭閻俚野之言，因之以入，寅緣女謁之弊從之而起。伏願殿下，嚴宮禁之尊。堯敦九族之親，周歌宗子維城。敦陸九族，乃帝王之美德。但祖宗故事，親疎之分，官爵之等，截然有限，不以私意隆殺。近來宗親知讀半行書，能射百步外者，則希望恩賜

예사로 기거(起居)를 물으면서 집안 사람의 예(禮)와 같음이 있고, 문안 비자(問安婢子)의 왕래가 잦은데 출입을 금함이 없으며, 심지어 분세(分歲)25156) 하는 날에는 종재(宗宰)25157)의 아내가 어지럽게 대궐에 가득하게 머물러 묵으면서 안팎이 혼잡하니, 깊이 두려워하던 여염(閭閻)의 상스러운[俚野] 말이 이로 인해 들어가며 여알(女謁)을 인연하는 폐단이 따라서 일어날 듯합니다. 삼가 원하던 전하께서는 궁금(宮禁)의 높음을 엄하게 하소서.

요(堯)임금은 구족(九族)의 친함을 돈독히 하였고, 주(周)나라는 ‘종자(宗子)25158)는 성과 같다[宗子維城]’고 노래하였으니, 구족을 돈목(敦睦)하게 함은 곧 제왕(帝王)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하지만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가 친소(親疎)의 분별과 관작(官爵)의 등급이 끊은 듯이 한계가 있어서, 사사로운 뜻으로써 올리거나 낮추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근래에 종친(宗親)으로 반 줄[半行]의 글을 읽을 줄 알고 백보(百步) 밖에 활을 쏠 만한 자는 은사(恩賜)를 바라므로, 금옥(金玉)의 장(章)이 분수에 넘치게 얻는 자가 종종 있으며, 반인(伴人)25159)의 많음과 녹봉(祿俸)의 후함은 그 품질(品秩)에 따르니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삼가 원하던 전하께서는 종족(宗族)의 품(品)을 정하소서.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천지가 절(節)25160) 하여 사시(四時)가 이루어지고 성인(聖人)이 제도(制度)를 조절하여 재물을 손상(損傷)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害)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대저 하늘이 낸 재물은 단지 이 수(數)가 있으므로 제도로써 조절하지 아니하면 사치하고 방자하여 반드시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옛 제왕은 차라리 자기의 재물을 없앨지언정 차마 백성의 힘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조정의 경비(經費)가 예전에 비해 많으며 줄일 만한 일을 일으키고 그만둘 만한 역사(役事)를 거행하므로, 감시(監寺)의 재물과 창고(倉庫)의 저장(貯藏)이 날마다 줄어지니, 폐단을 장차 구(救)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던 재용(財用)의 낭비를

金玉之章，踰分得之者比比有之，伴人之多，祿俸之厚，隨其品秩，弊甚不貲。伏願殿下，定宗族之品。《易》曰：‘天地節而四時成，聖人節而制度，不傷財不害民。’蓋天之生財，只有此數，非節以制度則侈肆，侈肆必傷財害民，故古之帝王，寧亡己之財，不忍傷民之力。近來朝廷經費，比舊浩繁，興可省之事，舉可已之役，監寺之貨，倉庫之儲，日就減耗，弊將莫救。伏願殿下，節財用之費。《書》曰：‘久勞于外，爰暨小人。’帝王子孫，長於民間，自古有之。但今王子、王女，避寓閭閻，所主之家，媚事左右，務勝華侈，營費百端，隱暗之際，禁令不行，誠可動念。伏願殿下，禁避寓之濫。文王之囿方七十里，芻蕘者往焉，雉兔者往焉，與民同之。齊宣之囿方四十里，殺其糜鹿者如殺人之罪。孟子以謂爲狝於國中。今城底十里之地，禁刈柴草，掌山之官，監責太過，巡視之際，非但驅迫農民，抑且軍士之馬，芻束不給，大國之郊，不宜樵牧之禁，國門之外，豈合狐兔之窟？伏願殿下，寬山澤之禁。”《書》曰：‘朝夕納誨，

	<p>절약하소서.</p> <p>《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오랫동안 시골에서 백성들과 생활하면서 농사일의 어려움을 체험하였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자손이 민간에서 자란 것이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자(王子)·왕녀(王女)가 여염(閭閻)에 피우(避寓)25161) 하면, 주관하는 집에서 좌우 사람에게 아양을 떨며 섬기고 더 화려하며 사치하도록 힘써서 여러 가지로 비용을 써서 은밀한 사이에 금령(禁令)이 행해지지 아니하니, 진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피우(避寓)의 지나침을 금하소서.</p> <p>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동산[囿]은 방(方)이 70리(里)였는데 풀 베는 자도 가고 썩이나 토끼 잡는 자도 가도록 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하였으나, 제(齊)나라 선왕(宣王)의 동산은 방(方)이 40리였는데 그 곳의 사슴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인 죄와 같게 하였으므로 맹자가 이르기를,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성저 십리(城底十里)25162)의 땅에 시초(柴草)25163)를 베는 것을 금하니 산을 관장(管掌)하는 관원의 감책(監責)이 너무 지나쳐서 순시하는 즈음에 농민을 구박(驅迫)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군사의 말[馬]의 추속(芻束)25164)도 주지 아니하니, 큰 나라의 교(郊)25165)에 초목(樵牧)을 금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그리고 국문(國門) 밖을 여우와 토끼의 소굴이 되게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산택(山澤)에 금지하는 것을 너그러이 하소서.</p> <p>《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아침저녁으로 가르침을 바쳐서 나의 덕(德)을 도우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좌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좌우의 신하는 아침저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힘써 마음을 열어 임금에게 고하여 임금의 덕을 돕고 기르니 그 임무가 중합니다. 지금의 특진관(特進官)은 경연(經筵)의 고문(顧問)25166)에 대비하는 자입니다. 혹시 배우지 아니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쉬여서 책을 잡고 나아가면 그 얼굴빛이 부끄러워</p>	<p>以輔台德’, 又曰: ‘左右惟其人.’ 左右之臣, 朝夕與居, 密勿啓沃, 輔養君德, 其任重矣。 今特進之官, 備顧問於經筵者也, 或雜以不學無知之人執冊而進, 其色赳赳, 殿下雖欲聞善言行善政得乎? 伏願殿下, 重左右之選。</p> <p>《詩》曰: ‘江漢湯湯, 武夫洸洸, 經營四方, 告成于王.’ 舟師之用尙矣。</p> <p>我國三面濱海, 隣於島夷, 高麗之季, 禍患極矣。 我太祖懲前朝之事, 設水軍以備之, 亂少弭矣。 至于今, 南民按堵, 誰之力歟? 近來, 國家凡有興作, 例發當領之軍, 贏糧往來, 殆無休暇, 傾家破產, 流亡甚多。 儻有邊警之急, 其何以禦之哉? 自古寧泰之世, 人情狃安, 及其患至, 雖有智者, 無能爲矣。 固宜不見是圖, 況比年以來, 海寇屢犯, 邊境之備, 其可少疎乎? 伏願殿下, 休水軍之力。 《易》曰: ‘王公設險以守其國’, 城郭溝池, 以爲固設險之大端也。 然《春秋》書築郿於大無麥禾之上, 譏不視歲之豐凶, 輕用民力於所不必爲也。 國家築城於諸道要害之處, 備禦之道, 固不得不爾也。 但平安一道, 年穀不登, 民尙艱食, 義</p>
--	---	--

붙어지는데, 전하께서 비록 착한 말을 듣고 착한 정사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얻어지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좌우 시종(左右侍從)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소서.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강한(江漢)이 상상(湯湯)25167) 하고 무부(武夫)는 광광(洸洸)25168) 하도다. 사방(四方)을 경영하여 왕에게 성공을 고한다.’ 하였으니, 주사(舟師)를 쓴 것은 오래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에 접하여 섬 오랑캐[島夷]25169) 와 이웃하였으므로 고려(高麗) 말엽에 화환(禍患)이 지극하였었는데, 우리 태조(太祖)께서 전조(前朝)25170) 의 일에 징계하사 수군(水軍)을 설치하여 대비하시자 난(亂)이 조금 그쳤습니다. 이제까지 남쪽 지방 백성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근래에 국가에서 무릇 흥작(興作)25171) 이 있으면 당령(當領)의 군사(25172) 를 으레 징발하여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게 하여 거의 쉴 겨를이 없으니, 집이 기울어지고 재산이 없어져서 유망(流亡)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혹시라도 변경(邊警)의 긴급함이 있으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예로부터 편안하고 화평한 세상에서는 인정(人情)이 편한한 데에 길들여져서 환란이 이름에 미치면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능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서 이를 도모해야 할 터인데, 더구나 근년 이래로 해구(海寇)가 여러 번 침범하니 변경(邊境)의 방비를 어찌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수군(水軍)의 힘을 쉬게 하소서.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왕공(王公)이 요해처를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킨다.’고 하였으니, 성곽(城郭)과 구지(溝池)를 견고하게 여기는 것은 요해처를 설치하는 대단(大端)인 것입니다. 그러나 《춘추(春秋)》에 미(鄆)의 성(城)을 보리와 벼가 큰 흉년이 든 해에 쌓은 것을 기록하였으니, 시절의 풍년과 흉년을 비교하지 아니하고서 백성의 노력을 필요하지 아니한 곳에 가볍게 쓴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도(諸道)의 요해처(要害處)에 성을 쌓는 것은

州之城，何急急於明春，以困飢饉之民乎？伏願殿下，重民力之用。臣聞木從繩則正，后從諫則聖。殿下求言如渴，從諫如流，誠千載一盛際也。然‘愼終如始，’伊尹告于太甲；‘寢不克終，’魏徵疏其十漸。自古，人君善始者多，善終者少。伏願殿下，體天之健，至誠不息，愼終如始，以保我朝鮮億萬年無疆之休。

命召司憲府，傳曰：“燕(間) [閒] 之暇，或有射侯之時，射必有耦，耦有所爭之言’誠是。予固常射者也，然不可以獨射，不得已與內官耦射，亦非好爭也。予嘗夜夜觀書，予所爲者，書與射兩事而已，一無鷹犬宴遊之好，有時或射，所以養氣也。帝王之射，雖無所用，亦非戲事也。疏云：‘外間頗得御札及畫裝爲屏簇’，予豈固爲書畫以與人乎？予本不能畫，往往或畫或書，但賜領敦寧耳。卿等見之何處乎？所謂‘爵祿之僭刑罰之濫’，何事耶？其有可罪而不罪者乎？可赦而罪之者乎？族親問安，自祖宗朝有之。深處九重而不許親戚問安，豈合於情禮？宗宰之妻，分歲入內，亦祖宗朝故事。



진실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안도(平安道) 한 도(道)는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아 백성이 오히려 먹기가 어려운데, 의주(義州)의 성을 어찌하여 명년 봄에 굶주린 백성을 동원하여 급하게 쌓으려고 하십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백성의 노력을 쓰는 것을 중하게 여기소서. 신이 듣건대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바로잡아지고, 임금은 간(諫)하는 말을 따르면 훌륭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구언(求言)하시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고 간하는 말에 따르시기를 물 흐르듯 하시니, 진실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라.’고 한 것은 이윤(伊尹) 25173) 이 태갑(太甲) 25174) 에게 고한 것이고, ‘점점 나중엔 가서 잘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위징(魏徵) 25175) 이 십점(十漸)25176) 을 상소(上疏)한 글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처음은 잘하는 자는 많아도 끝을 잘하는 자는 적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강건(強健)함을 체득하여 지극한 정성이 쉬지 아니하시고 끝을 삼가시기를 처음과 같이 하시어, 우리 조선 억만년 무궁한 아름다움을 보존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을 불러 전교하기를,  
 “한가로운 여가에 더러 활 쏘는 때가 있는데 활을 쏘는 데는 반드시 짝이 있고 짝은 다투는 바가 있다.’고 한 말은 진실로 옳다. 나는 진실로 항상 활을 쏘는 자이다. 그러나 홀로 쏠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 내관(內官)과 더불어 짝지어 쏘는데, 또한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항상 밤마다 책을 보는데, 내가 하는 바는 글과 활 쏘는 것 두 가지 일뿐이고 일체 사냥[鷹犬]이나 잔치놀이를 좋아함은 없으며, 때로 간혹 활 쏘는 것은 기운을 기르는 바이다. 제왕(帝王)이 활 쏘는 것은 비록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희롱하는 일은 아니다. 상소에 이르기를, ‘외간(外間)에서 자못 어찰(御札)과 그림을 얻어서 꾸며서 병풍과 족자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내가 어찌 진실로 서화(書畫)를 만들어 남을 주었겠는가? 나는 본래 그림에 능하지 못하고, 가끔 흑시

大司憲曾經侍臣，豈不知之？所言若是，可謂隨所在而心異矣。宗親加資，是特恩，非定法也。予豈常常爲之乎？予之用財，亦有不得已耳。然所，言誠是，予當處之也。所謂王子、王女避寓閭閻之弊，予何以知之？今因所啓乃得聞之。有諸司供億，何有此弊？予將問其故。以曾經六曹、漢城府二品以上者，無問武臣，皆令爲特進官者，欲廣接宰相也，若論思則自有經筵官。築城乃國家大計，非卿等所宜言也。”李世佐等啓曰：“殿下必以臣等進疏爲尋常，然臣等反復思度欲啓之者久矣。適今以歲時，不御經筵，無由親啓，恐往復之間，不能盡意，請面對。”傳曰：“疏已盡復，何面對乎？臺諫入云則入，出云則出，是豈人君之體？”世佐等曰：“面對非自臣等始也。自古若有所懷而欲啓之，則皆請面對，故臣等啓請耳。”

仍書啓曰：侍射之際，恐或嚴敬小衰，緣此遂生褻慢之心。御筆書畫，臣等見之於慎承善、尹殷老、尹汝霖家。古人云：“一向好着，以累聖德。”爵賞之僭，如朴元宗、尹坦、成準、宋欽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하여 단지 영돈녕(領敦寧)에게만 주었을 뿐이다. 경 등이 어디에서 보았는가? 이른바 ‘작록(爵祿)의 참람함과 형벌의 지나침’은 어떤 일인가? 그 죄줄 만한 것이 있는데 죄주지 않은 것인가? 용서할 만한데 그를 죄준 것인가? 족친간(族親間)의 문안(問安)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있었다. 구중(九重) 깊은 곳에 있으면서 친척의 문안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찌 인정과 예(禮)에 합당하겠는가? 종재(宗宰)의 아내가 분세(分歲)에 대내(大內)에 들어가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이다. 대사헌(大司憲)은 일찍이 시신(侍臣)을 지냈는데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는가?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이른바 있는 곳에 따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종친(宗親)의 가자(加資)는 바로 특별한 은사(恩賜)이고 정한 법은 아니다. 내가 어찌 언제나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재물을 쓰는 것은 역시 부득이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한 바가 진실로 옳으니, 내가 마땅히 조치하겠다. 이른바 ‘왕자(王子)·왕녀(王女)가 여염(閭閻)에 피우(避寓)하는 폐단을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이제 아된 바로 인하여 얻어 들었다. 제사(諸司)의 공역(供億)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폐단이 있겠는가? 내가 장차 그 까닭을 묻겠다. 일찍이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 2품 이상을 지낸 자는 무신(武臣)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특진관(特進官)을 삼게 한 것은 재상(宰相)을 널리 접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논사(論思)와 같은 것은 스스로 경연관(經筵官)이 있다. 축성(築城)은 곧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이니 경(卿) 등이 마땅히 의논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세좌(李世佐)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반드시 신 등의 상소를 예사로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신 등은 되풀이해 생각하며 아뢰고자 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마침 지금 설이 되어 경연(經筵)에 나아가지 아니하심으로 친히 아뢴 수 없으니, 왕복하는 사이에 뜻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 면대(面對)25177)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是也。 刑罰之差，如任光載事干，被罪過重，尹殷老防納，輕論其罪，申從洽、金漬、鄭眉壽，不許刑推是也。 戚里問安，命婦入內，雖不可頓廢，其中踈屬，得以私通大內，其婦女亦得出入宮中，恐有女謁之漸。 祖宗朝宗親有限品，故終身鮮有陞換者，深意存焉。 近來陞授頗多，無限品之意。 王子女避寓之家，華侈糜費，不得一一指摘，大概如此。 城底十里，禁刈柴草，近年立法，十里內私刈柴草者，漢城府四山監役官及所在官，盡行呵禁，民甚苦之。 設特進官，雖是廣延宰相之意，如韓堡、尹甫、卞宗仁、李秉正、吳純、尹末孫、尹殷老、金伯謙，亦與其選，此等人不宜在顧問論思之地。 當領水軍調發役使，雖出於不得已，當間年更休，以寬其力。 義州邑城改築，當視歲之豐凶，以紓民力。

傳曰：“人君豈可恒處房中乎？予所以射者，予亦欲行氣耳。 其褻慢之弊，予當知而處之矣。 書畫嘗以賜領敦寧，必因是而出也。 然予非好着，偶爲之耳。 朴元宗，武臣中有才者也，如卿言元宗終不用耶？尹坦曾經右尹，其時

“상소에 이미 다 말하였는데 다시 어찌 면대하겠는가? 대간(臺諫)이 들어가라고 하여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여 나온다면 이것이 어찌 임금의 체통이겠는가?”

하였다. 이세좌 등이 아뢰기를,  
“면대(面對)는 신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옛부터 만약 소회(所懷)가 있어서 아뢰고자 하면 모두 면대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신 등이 아뢰어 청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인하여 서계(書啓)하기를,  
“시사(侍射)25178) 하는 즈음에 혹시 엄숙하고 공경함이 조금 쇠하여 이를 인연해서 드디어 설만(褻慢)한 마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어필(御筆)의 서화(書畫)는 신 등이 신승선(愼承善)·윤은로(尹殷老)·윤여림(尹汝霖)의 집에서 보았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언제나 한결같이 지나치게 좋아하면 성덕(聖德)에 누(累)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작상(爵賞)의 참람함은 박원종(朴元宗)·윤탄(尹坦)·성준(成準)·송흠(宋欽) 같은 경우이며, 형벌이 잘못된 것은 임광재(任光載)의 일에 관련되어 죄를 입은 것이 과중함과, 윤은로의 방납(防納)25179)에 대해 그 죄를 가볍게 논한 것과, 신종흠(申從洽)·김지(金漬)·정미수(鄭眉壽)에게 형추(刑推)를 허락하지 않은 일들의 경우입니다. 척리(戚里)의 문안(問安)과 명부(命婦)가 대내(大內)에 들어가는 것을 비록 갑작스럽게 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소속(疎屬)25180)이 대내에 사사로이 통하고, 그 부녀(婦女)도 궁중에 출입(出入)할 수 있게 되면, 여알(女謁)의 조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종조로부터 중친은 한품(限品)25181)이 있기 때문에, 종신토록 품계를 올리거나 바꾼 것이 적은 것은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올려주는 것이 자못 많아서 한품의 뜻이 없었습니다. 왕자·왕녀의 피우하는 집이 화려하고 사치하여 허비가 많은 것은 하나하나 지적할 수 없으나, 대개는 이와 같습니다. 성저 십리(城底十里)에 시초(柴草)

豈無獨斷之事? 成準陞職, 以吾兒避寓其家病得愈, 故予喜之命陞耳。 卿等答我何耶? 宋欽、雖陞中樞, 前此醫官, 豈無爲此職者乎? 任光載不畏大妃, 敢行淫恣, 當被重罪而乃從輕典, 卿等言之, 是右光載也。 尹殷老, 定罪已久, 不可追論。 申從洽等, 皆未論決。 況眉壽乃文宗外孫, 豈當刑推? 女謁必由親者得行。 宗親在世祖朝或授東班職, 然此則恐因任事犯罪, 故今不踵行。 近年或因觀射, 或因講書有陞階者, 不可膠固論也。 其禁柴事, 予嘗小獵于城西, 見其地無草木, 故命禁之耳。 帝王雖以山林無禁爲道, 然若卿等言, 則禁山之法可廢乎? 特進官例應在選者, 不可更加區別也。 水軍有事則役之, 無事則休之, 何必限年? 築城, 國家大事, 尤不宜論也。” 世佐等更啓曰: “臣等願殿下愼刑賞, 有此論啓, 安敢右光載乎?”

를 베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근년에 법을 세웠는데, 10리 안에서 시초를 사사로이 베는 것을 한성부(漢城府)의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과 관할 관청(官廳)에서 모두 금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그리고 특진관(特進官)을 설치한 것이 비록 재상을 널리 맞아 보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한보(韓堡)·윤보(尹甫)·변종인(卞宗仁)·이병정(李秉正)·오순(吳純)·윤말손(尹末孫)·윤은로(尹殷老)·김백겸(金伯謙) 같은 이도 그 선정(選定)에 참여하였으니, 이들 같은 사람은 고문(顧問)과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당령 수군(當領水軍)을 조발(調發)하여 사역(使役)하는 것이 비록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마땅히 한 해 간격으로 바꾸어 쉬게 하여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주 읍성(義州邑城)의 개축(改築)은 마땅히 시절의 풍년·흉년을 보아서 백성의 힘을 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임금이 어찌 항상 방 안에만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활을 쏘는 까닭은 나도 또한 기운을 써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설만(褻慢)한 폐단은 내가 마땅히 알아서 처리하겠다. 글씨와 그림을 일찍이 영돈녕(領敦寧)에게 내려 주었는데, 반드시 이를 인하여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하였을 뿐이다. 박원종(朴元宗)은 무신(武臣) 가운데 재능이 있는 자인데, 경(卿)의 말과 같으면 박원종을 끝내 쓰지 않아야 할 것인가? 윤탄(尹坦)은 일찍이 우윤(右尹)을 지냈는데, 그 때에 어찌 독단(獨斷)한 일이 없었겠는가? 성준(成準)의 승직(陞職)은 내 아이가 그 집에 피우(避寓)하여 병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여 승직하도록 명하였을 뿐인데, 경 등이 나를 나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송흠(宋欽)은 비록 중추(中樞)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의관(醫官)이 이 벼슬을 한 자가 어찌 없었겠는가? 임광재(任光載)는 대비(大妃)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서 감히 음탕하고 방자함을 행하였으니, 마땅히 중죄를 받아야 할 터나 가벼운 법에 따랐는데 경 등이 이를 말

	<p>하니, 이는 임광재를 두둔하는 것이다. 윤은로(尹殷老)는 죄를 정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추론(追論)할 수 없고, 신종흡(申從洽) 등은 모두 아직 논결(論決)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정미수(鄭眉壽)는 문종(文宗)의 외손(外孫)인데 어찌하여 형추(刑推)를 당해야 하겠는가? 소속(疎屬)의 부녀가 비록 궁중에 출입한다 하더라도 어찌 청알(請謁)을 위한 것이겠는가? 여알(女謁)은 반드시 친한 자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친에게 세조조(世祖朝)에는 간혹 동반(東班) 벼슬을 주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일을 말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하여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근년에 혹은 관사(觀射)로 인하여, 혹은 강서(講書)로 인하여 품계가 오른 자가 있으나, 이를 융통성 없게 논할 수는 없다. 시초(柴草)를 금하는 일은 내가 일찍이 성 서쪽에서 사냥하였는데, 그 땅에 풀과 나무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금하도록 명한 것이다. 제왕(帝王)이 비록 산림(山林)을 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도(道)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경 등의 말과 같으면 금산법(禁山法)을 폐해야 옳겠는가? 특진관(特進官)은 으레 선정하는 데 따라야 하며 다시 더 구별할 수 없다. 수군(水軍)은 일이 있으면 사역(使役)하고 일이 없으면 쉬게 하는 것인데 어찌 해[年]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축성(築城)은 국가의 대사(大事)이니, 더욱 논할 수 없다.”</p> <p>하였다. 이세좌(李世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은 전하께서 형상(刑賞)25182) 을 신중하게 하시기를 원하여 이와 같이 논계(論啓)를 하였습니다. 어찌 감히 임광재(任光載)를 두둔하겠습니까?”</p> <p>하였다.</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2월 26일(임술) 1번째기사</p>	<p>두 대비전(大妃殿)에 진연(進宴)하고, 인하여 종재(宗宰)를 명정전(明政殿)의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p>	<p>○壬戌/進宴于兩大妃殿， 仍命饋宗宰于明政殿庭。</p>
<p>성종 272권, 23년</p>	<p>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손순효(孫舜孝)가 글[狀]을 올려 사직(辭職)하기를,</p>	<p>○判中樞府事孫舜孝上狀辭職曰：</p>

<p>(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27일(계해) 2번째기사</p>	<p>“신은 쇠한 나이에 풍질(風疾)을 얻어서 추위를 당하면 병이 발작합니다. 신이 좌빈객(左賓客) 직무를 겸하였는데 눈앞이 어른거려 글을 볼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잘하지 못하면 그만두라.’고 하였으니, 신이 이미 분주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공을 세워 성은(聖恩)에 보답하지 못하고, 또 경적(經籍)을 고열(考閱)하여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지 못하면서 한갓 창고의 곡식만 도둑질하니, 애초의 마음에 자못 부끄럽습니다. 원하건대 물러가서 남은 여생을 마치도록 하소서.”</p> <p>하였는데, 비답(批答)을 내려서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臣衰年得風疾，觸寒則發作。 臣職兼左賓客，眼見昏花，不能看書。 古人云：“不能則止。” 臣既不能奔走事功，以酬聖恩，又不能考閱經籍，輔導東宮，徒竊倉粟，殊愧初心。 願乞骸骨，以終餘齡。</p> <p>賜批答不允。</p>
<p>성종 272권, 23년 (1492 임자 / 명 홍치 (弘治) 5년) 12월 30일(병인) 1번째기사</p>	<p>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홍한(洪瀚)이 경상도(慶尙道)에서 와서 복명(復命)하고 인하여 아뢰기를,</p> <p>“고성(固城) 서남면(西南面) 바닷가에 있는 백성은 해산물[海錯]로써 생리(生利)를 삼고 그 땅에 모여 사는데 왜적(倭賊)이 매양 와서 침략합니다. 청컨대 바닷가에 있는 땅은 단지 사람이 경작하는 것만 허락하고 모여서 살지 못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좋다.”</p>	<p>○丙寅/承文院校理洪瀚，自慶尙道來復命，仍啓曰：“固城西南面濱海處民，以海錯爲利，聚居其地，倭賊每來侵掠。請濱海之地，只許人佃作，勿令聚居。” 傳曰：“可，議于領敦寧以上。”</p>
<p>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1일 (정묘) 3번째기사</p>	<p>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회례연(會禮宴)25190) 을 행하였는데, 왜인(倭人) 아가마다라 사야문(阿可馬多羅沙也文) 등 13인과 야인(野人) 낭도랑개(浪都浪介) 등 62인이 들어와서 참여하였다. 왜인·야인에게 전교하기를,</p> <p>“오늘은 바로 정조(正朝)25191) 이므로 내가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니, 너희 무리도 실컷 마시고 먹도록 하라.”</p> <p>하니, 모두 대답하기를,</p> <p>“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커서 감히 실컷 마시고 먹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는데,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御仁政殿行會禮宴，倭人阿可馬多羅沙也文等十三人，野人浪都浪介等六十二人入參。 傳于倭、野人曰：“今日乃正朝，予饗群臣，爾輩亦可醉飽。” 皆對曰：“上恩至大，敢不醉飽。” 賜物有差。</p>
<p>성종 273권, 24년</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p>	<p>○司憲府持平閔壽福來啓曰：“金嗣源</p>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7일  
(계유) 2번째기사

“김사원(金嗣源)은 상피(相避)가 있는데도 교묘한 말로 계달(啓達)하여 올려서  
 서용되었고, 유진(柳軫)은 광망(狂妄)하고 학문이 없는데도 외람되게 한성부  
 관관(漢城府判官)에 제수되었습니다. 정내필(鄭來弼)은 비록 이미 개정(改正)  
 되기는 하였으나, 9품으로서 6품직에 뛰어올려 제수되었으니, 사정(私情)을  
 둔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리를 국문하고, 김  
 사원·유진은 아울러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또 평안도(平安道)는 지난해  
 흉년이 들어 이제 바야흐로 진휼(賑恤)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의주성(義州城)을 쌓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사원은 예(例)대로 올려 서용함이 마땅하고, 정내필은 사람들이 쓸 만하다  
 고 말하였는데, 이조와 병조에서 무슨 사정(私情)이 있었겠는가? 한성부(漢城  
 府)는 과연 번극(煩劇)한 곳이므로 유진은 바꾸어 임명함이 마땅하다. 성(城)  
 을 쌓는 것은 국가(國家)의 대사(大事)인데, 큰 공(功)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  
 단을 생각지 않는 것이니, 쌓아도 무방(無妨)하다.”  
 하였다. 민수복이 말하기를,  
 “무릇 백성은 가을·겨울에 비록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봄이 되  
 면 반드시 모두 곡식을 사들일 것을 고(告)합니다. 평안도(平安道)는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서 가을이 되어도 식량이 모자랄 터인데, 하물며 봄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큰 역사(役事)를 일으키게 되면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청컨대 의주(義州)의 성(城) 쌓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소서.  
 또 반우창(潘佑昌) 등은 교수(教授)를 인연하여 일찍이 나가서 참상(參上)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바로 매진(媒進)하려는 계책입니다. 청컨대 반드시 개정  
 (改正)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반우창 등의 일은 이미 전례가 있고 또 자급(資級)이 서로 어지간하니 말할

有相避，而巧辭啓達陞敍；柳軫狂妄不  
 學，而濫授漢城判官；鄭來弼雖已改  
 正，然以九品超授六品職，其用情明  
 矣。請鞫吏、兵曹官吏。嗣源、柳  
 軫，請竝改正。且平安道去年凶歉，  
 今方賑恤不暇，而又動大衆築義州城，  
 恐不可也。”傳曰：“嗣源例當陞敍，  
 來弼人言可用，吏、兵曹有何情乎？漢  
 城府果煩劇之地，軫當換差。築城，  
 國家大事，成大功者，不計小弊，築之  
 無妨。”壽福曰：“凡民秋冬雖有儲穀，  
 至春則必皆告糴。平安道去年凶荒，  
 當秋亦乏食，況春乎？動大衆、興大  
 役，民將何以爲生？請停義州築城。  
 且潘佑昌等欲因教授經出爲參上，乃媒  
 進之計也。請須改正。”傳曰：“佑昌  
 等事既有例，又資級相當，不須言也。  
 築城事，予豈不恤百姓而爲之？其議于  
 大臣。”李克培、李鐵堅議：“義州邑  
 城狹窄，人居稠密，其退築不得已也。  
 今年以農事不實停之，則明年農事又未  
 可知，恐無畢築之期，逐年漸築爲便。  
 且當番步兵，當領水軍，皆除防戍赴此  
 役，則不是病民。”盧思慎、韓致亨、  
 鄭文燦、朴元宗議：“本道失農，方事

필요가 없다. 성을 쌓는 일은 내가 어찌 백성을 근심하지 않고서 하겠는가?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극배(李克培)·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의주(義州)의 읍성(邑城)은 협소한데 사는 사람들은 조밀하여 <성을> 물려서 쌓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금년에 농사(農事)가 충실하지 않다 하여 정지하게 되면 내년의 농사를 또 알 수 없으므로 다 쌓을 기한이 없을 듯하니, 해마다 점차 쌓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또 당번 보병(當番步兵)과 당령 수군(當領水軍)25215) 을 모두 방수(防戍)에서 제외시키고 이 역사에 나아가게 한다면, 백성을 병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본도(本道)가 실농(失農)하여 이제 구황(救荒)을 일삼고 있는데, 성을 쌓는 것이 비록 중하다 하나 백성을 부릴 때가 아니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허중(許琮)은 의논하기를,  
 “읍성(邑城)을 물려서 쌓는 것도 큰 역사(役事)이기는 하나, 또한 읍(邑)과의 거리가 10여 리의 땅이어서 쌓을 만한 돌이 없어 몇 년 사이에는 다 쌓기 어려운 형세이니, 우선 읍성(邑城)을 정지하고 먼저 장성(長戍)을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지(柳攄)·정승조(鄭崇祖)·홍귀달(洪貴達)·박건(朴健)·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성(城)을 쌓는 것은 국가(國家)의 대계(大計)이니, 작은 폐단을 가지고 정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본도(本道)는 지난해에 실농(失農)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바야흐로 구황(救荒)을 일삼고 있는데, 설사 금년에 풍년이 든다고 해도 백성들이 반드시 목은 빔을 모두 갚을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양식을

救荒, 築城雖重, 役民非時, 姑停爲便.” 許琮議: “邑城退築, 亦大段役事, 且距邑十餘里之地, 無可築之石, 數年之間, 勢難畢築, 姑停邑城, 先築長城何如?” 柳攄、鄭崇祖、洪貴達、朴健、尹孝孫議: “築城國家大計, 不可以小弊而止。 但本道因去年失農, 今方事救荒, 假使今年豐稔, 民必未能盡償宿債, 何以贏糧赴役? 但使留鎮軍士拾石燔燧, 以備他日之用爲可。” 宋瑛、金自貞、金升卿、申從濩、韓健、金友臣議: “《春秋》書築城重民力也, 今年失農而義州等處尤甚, 加以年年防禦, 民生困敝, 不可時屈舉贏, 若本無城子, 則不計豐歉, 當急急造築, 舊城雖狹, 猶且完固, 足以容民, 倘有不(吳) [虞], 庶可入保。 若曰以當領水軍、留防正兵役使, 均是贏糧, 無損於民, 則是大不然。 土木之役, 其苦甚重, 贏糧必倍於留防, 當領之時, 姑停爲便。” 曹偉、金應箕、韓斯文、鄭誠謹、黃事孝、尹淑議: “義州, 我國初面關防, 遼東人往還之地, 邑城卑隘, 且無譙門樓櫓之固, 上國瞻視, 甚爲埋沒, 不可不築。 長城之築,



지고서 역사에 나아가겠습니까? 다만 유진 군사(留鎮軍士)로 하여금 돌을 주워 벽돌을 구워서 훗날의 쓰임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송영(宋瑛)·김자정(金自貞)·김승경(金升卿)·신종호(申從濩)·한건(韓健)·김우신(金友臣)은 의논하기를,

“《춘추(春秋)》에서 성을 쌓았다고 쓴 것은 민력(民力)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금년에 실농(失農)하였는데 의주(義州) 등지는 더욱 심합니다. 게다가 해마다 방어(防禦)로써 백성들의 생활이 괴로우니, 시굴거영(時屈舉羸)25216)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래 성자(城子)가 없었다면 풍년이든 흉년이든 헤아리지 않고 마땅히 급급하게 만들어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옛성이 비록 협소하기는 하나 그래도 완전하고 견고하여 족히 백성들을 수용할 수 있어서, 혹시 뜻밖의 재난이 있으면 거의 입보(入保)25217)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령 수군(當領水軍)과 유방 정병(留防正兵)으로써 역사시키고 모두 양식을 지고 가게 한다면 백성에게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크게 옳지 않습니다. 토목(土木)의 역사는 그 고통이 매우 중하여 지고 가는 양식이 반드시 유방(留防)·당령(當領)일 때보다 배가 될 것이니, 우선 정지함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조위(曹偉)·김응기(金應箕)·한사문(韓斯文)·정성근(鄭誠謹)·황사효(黃事孝)·윤숙(尹倣)은 의논하기를,

“의주(義州)는 우리 나라 초면(初面)의 관방(關防)이고 요동(遼東)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곳인데, 읍성(邑城)이 낮고 협소하며 또 초문(譙門)25218)과 망루[樓櫓]의 견고함이 없어 중국에서 바라보이는 곳이 심하게 매몰(埋沒)되어 있으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성(長城)의 축조는 국가에서 그것을 위하여 계획한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도(本道) 백성의 힘이 넉넉하지 않아서 크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 두 역사는 모두 늦출 수 없으나, 또한 한때에 아울러 시행

國家爲之規(畫) [畫] 十有餘年，而至今未就者，緣本道民力不裕，不能大舉故也。 臣等意以爲，此兩役皆不可緩也，而亦不可一時並舉也。 今年本道凶荒，朝廷方遣官賑濟，而又不可驅之於版築之役，姑停此役，遣重臣審定長城基址及城邑形勢， 待秋並抄烟戶軍，先築邑城爲便。” 傳曰：“此乃國家大事，非如韓昭侯之時屈舉羸也。 且歲之豐歉，未可預料，今年不築，明年又不築，則何時而可築也?” 盧思慎等啓曰：“去年失農，今方救荒，百姓安能羸糧供役乎?” 許琮曰：“遼東新設湯站以逼我境， 故欲築長城， 以防逃民。 臣請待豐稔，先築長城。” 傳曰：“予當斟酌處之。”

	<p>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본도가 흉년이 들어 조정(朝廷)에서 바야흐로 관리들 보내어 진휼(賑恤)해서 구제하고 있는데, 또 판축(版築)25219) 의 역사에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 역사를 정지하고 중신(重臣)을 보내어 장성(長城)의 터와 읍성(邑城)의 형세(形勢)를 살펴 정하고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연호군(煙戶軍)25220) 을 아를러 뽑아서 먼저 읍성을 쌓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는 바로 국가(國家)의 대사(大事)이니, 한(韓)나라 소후(昭侯)가 시국거영(時屈舉羸)한 것과는 같지 않다. 또 그해에 풍년들고 흉년드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 금년에 쌓지 않고 내년에도 또 쌓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나 쌓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노사신(盧思愼) 등이 아뢰기를,</p> <p>“지난해에 실농(失農)하여 이제 바야흐로 구황(救荒)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찌 양식을 지고서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허중(許琮)이 말하기를,</p> <p>“요동(遼東)에서 새로 탕참(湯站)을 설치하여 우리 변경에 가까이 닦쳤기 때문에 장성(長城)을 쌓아서 도망하는 백성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먼저 장성을 쌓도록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월 9일 (을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야인(野人) 이마구(李麻具) 등 17인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p> <p>“너희들이 북정(北征)25235) 때 충성을 다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p>	<p>○乙亥/上御宣政殿, 引見野人李麻具等十七人, 教曰: “爾等於北征時有勤王之勞, 故特饋之。” 仍賜物有差。</p>

	하고, 이어서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9일 (을해) 4번째기사	내관(內官) 김처선(金處善)에게 명하여 선은(宣醞)25242) 과 음식물을 싸가지고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손순효(孫舜孝)의 집에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인하여 어찰(御札)을 내리기를, “경(卿)은 매번 충서(忠恕)로써 나를 권고하고, 나는 매번 정직(正直)으로써 경을 대우하는데, 근래 원행(駕行)25243) 에 보이지 않은 지 날짜가 이미 오래 되었다. 반드시 병이 났을 것으로 추측되어 생각이 가득해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뜻을 보인다. 또한 노쇠함을 위로하는 것이니, 경은 한껏 즐기도록 하라.” 하였다.	○命內官金處善賚宣醞食物，往賜判中樞府事孫舜孝第，仍賜御札曰：“卿每以忠恕勸我，我每以正直待卿，近日不見駕行，爲日已久，想必有疾，載念于懷，特遣人示意，且慰老，卿其一歡。”
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13일 (기묘) 1번째기사	임금이 심회(沈滄)가 졸(卒)하였다 하여 소선(素膳)25268) 을 들었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와 승지(承旨) 등이 육선(肉膳)을 드시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己卯/上以沈滄卒，進素膳。司饗院提調、承旨等請進肉膳，不許。
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13일 (기묘)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滄)에게 부의(賻儀)로 미두(米豆) 아울러 1백 석(碩), 종이[紙] 1백 권(卷), 백정포(白正布) 20필(匹), 백면포(白綿布) 20필, 정포(正布) 50필, 석회(石灰) 50석(碩), 청밀(淸蜜) 1석, 황랍(黃蠟) 30근(斤)을 내려 주었다.	○傳旨戶曹，賜靑松府院君沈滄賻米、豆并一百碩、紙一百卷、白正布二十四、白綿布二十四、正布五十四、石灰五十碩、淸蜜一碩、黃蠟三十斤。
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16일 (임오) 1번째기사	임금이 중관(中官)25271) 을 보내어 독서당(讀書堂)에 술을 내려 주니,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김감(金勘)이 전문(箋文)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였다.	○壬午/上遣中官賜酒讀書堂。弘文館副修撰金勘上箋謝恩。
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16일 (임오) 3번째기사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사직(辭職)하는 전문(箋文)을 올려 아뢰기를, “능하지 못한 자는 그만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켜서 은퇴함이 마땅한데,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황공하여 감히 지위를 도둑질하고 벼슬	○領議政尹弼商上箋辭職曰：不能者止，宜安分以退藏，居寵若驚，敢竊位而冒處，用敷危衽，丐辭煩機。伏念臣鉛槧譎材，斗筲賤品，早因緣於

을 무릅쓰고 있으니, 위험한 옷자락을 펼치고 사직(辭職)하기를 빌면서 만기(萬機)를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문필(鉛槧)의 천박한 재주와 작은 기량[斗筭]의 미천한 성품으로, 일찍이 과거(科擧)에 급제한 것을 인연으로 반열(班列)에 나란히 서는 요행을 얻었습니다. 세조[光廟]께서 양육해 주신 사사로움을 외람되게 입었으므로, 인하여 능(陵)을 지키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삼년상을 마치려 하였는데, 분수에 넘치게도 성상(聖上)께서 사주(使喉)하시는 명령을 듣고 마침내 오랑캐를 정벌하여 그 무리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는 진실로 직분(職分)의 당연히 할 바이고, 또한 성공할 일만을 생각하며 하명(下命)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황각(黃閣)25272) 에 오른 지 이미 20년이 되어 흰 머리의 늙은이가 칠순(七旬)을 굽어보는데 부귀와 권세가 성한 것을 경계하지 않았더니, 특별한 총애가 이미 지극함에 어렵게 처하여 있다가 위해(危害)와 욕(辱)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비방이 교대로 들끓기에 이르러 그릇된 사람[非人]이라고 지목하고 간사한 귀신이라고 지칭하였으니, 이미 얼굴에 부끄러움만 있고 도리어 형체와 목소리는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자취를 숨기고 몸을 감추어서 달게 도깨비와 더불어 유희함이 마땅한데, 장차 어찌 머리를 들고 입을 열어 재상의 지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연달아 머무르겠습니까? 번거롭게 세 번이나 성청(聖聽)을 더럽히면서 누차 아뢰었으나, 한 마디 말도 수궁 받지 못하였습니다. 낮고 좁은 신의 집에 내상(內相)을 보내어 궁내(宮內)의 은혜롭고 향기로운 술을 내려 주셨으니, 다만 신의 죄만 더하여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으며, 물의(物議)를 다시 초래하여 비방하는 말만 더 쌓였습니다. 참으로 스스로를 용납할 곳이 없어 단지 하늘에 부르짖으며 호소할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간절함을 살피시고 신의 지극한 뜻을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허가하시는 말씀을 내리셔서 한가한 곳에 거처하도록 하여 주신다면, 남은 몸에 원기를 길러서 성상의 덕(德)에 의지하여 쓰러지지 않겠으며, 남은

科第，得僥倖於班聯，濫被光廟卵翼之私，仍守陵泣血終制；猥蒙聖上指喉之命，遂征虜獲醜言旋，是固職分之當爲，亦惟成算焉叨奉。黃閣立登者已廿載，白髮老醜之俯七旬，不戒盛滿，難居巨寵利之既極，以致殆辱，隨至衆謗毀之交(膽) [騰]，目以非人，指曰奸鬼，既得有覩乎面，反爲無形與聲，固當匿迹藏身，甘與魍魅而遊戲，將何舉頭開口，久居鼎鼐而留連？累陳三瀆之煩，未蒙一言之肯，遣內相湫隘敝廬，賜宮壺雨露香醞，祇益臣罪而不知死所。更招物議而愈積毀言，諒無地而自容，但叫天而呼訴。伏望察臣危懇，矜臣至情，特降允(愈) [愈] 之音，俾處閑散之地，則殘骸養氣，仗聖德而不僵，餘喘偷生，祝皇齡之曷既。命承旨黃事孝資賜宣醞，又賜批答曰：“毗倚之誠，初無間於終始；進退之義，既敦諭乎再三，何不諒其予衷，徒堅守其高志？卿之勳伐，銘旗常而有餘；卿之行能，書竹帛而不足。早膺世廟之簡拔，遂作寡人之輔臣，相得之歡，如魚之有水；共濟之理，若梅之和羹，雖謗議之橫生，惟誠信之益堅國耳公耳。

	<p>목숨을 구차하게 살면서 성상의 수명을 끝까지 누리시도록 축수(祝壽)하겠습니다.”</p> <p>하니, 승지(承旨) 황사효(黃事孝)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또 비답(批答)을 내려 이르기를,</p> <p>“의지하는 정성은 애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틈이 없었으며, 나아오고 물러가는 의리에 대해서는 이미 두번 세번 돈독하게 유지하였는데, 어찌 내 마음은 믿지 않고 다만 그 높은 뜻만을 굳게 지키는가? 경(卿)이 정벌한 공훈은 기(旗)에 새겨도 남음이 있으며, 경의 능한 행동은 책[竹帛]에 써도 부족하다. 일찍이 세조(世祖)께서 선발하심에 따랐고 드디어 과인(寡人)의 보필하는 신하가 되었으니, 서로 마음이 맞는 기쁨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고, 힘을 합하여 같이 도모하는 이치는 염매(鹽梅)로 국에 간을 맞춘 것과 같다. 비록 비방하는 의논이 뜻밖에 생겼다 하더라도 오직 성심이 더욱 굳어질 뿐이니, 나라와 조정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라에 몸을 바친 충성을 알고 있으며, 그대를 생각함은 그대의 공적 때문인데 어찌 제거하려는 투서의 괴이함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전에 이미 진심을 털어놓고 말하였는데, 이제 어찌 서찰이 다시 왔는가?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황공하다고 하였으니, 경이 비록 사피(辭避)하려는 마음은 간절하겠으나, 현명한 자를 임명함에는 이간질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바야흐로 노성(老成)한 자에게 의지할 것이니, 그 관직에 안주하도록 힘쓰라.”</p> <p>하고, 인하여 와서 청하는 것을 단절시켰다.</p>	<p>人咸知許國之忠，念茲在茲，豈容有投杼之訝？前旣腎腸之披露，今何箋牘之復來？居寵若驚，卿雖切於辭避；任賢勿貳，予方仰於老成。勉安厥官，仍斷來請。”</p>
<p>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월 18일 (갑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p> <p>“실농(失農)하였다 하여 의주(義州)에 성(城) 쌓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lt;국가의&gt; 대사(大事)이므로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번 봄에 돌을 주웠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甲申/御經筵。講訖，領事李克均啓曰：“以失農停義州築城，此大事不可停。今春拾石，待秋築之何如？”上曰：“可。”特進官鄭佶啓曰：“臣於去年奉使上國，經由此地，饑饉甚矣，赴</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정괄(鄭恬)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중국에 사신(使臣)이 되어 가면서 이 땅을 경유하였었는데, 기근(饑饉)이 심하였습니다. 부방(赴防)은 단지 아침저녁의 양식만 싸가지고 가면 되지만, 만약 돌을 줌에 한다면 그 비용은 만배나 더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오는 가을에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를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금년에 정지하고 내년에도 그러하게 되면 마침내 쌓게 될 기약이 없으니, 이번 봄에 돌을 주었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p> <p>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자정(金自貞)이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읍성(邑城)은 완전하고 견고하며 또한 그다지 협소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 물려서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비록 성을 쌓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돌을 줌에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벽돌로 성을 쌓는데, 전날 의주에서 구운 벽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니, 이번에도 더 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지사(知事) 이극중(李克墾)이 아뢰기를, “신이 의주 토양의 성질을 보건대 요동(遼東)과 다름이 없었으니, 벽돌을 굽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날씨가 구름이 끼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미쳐서 창문의 틈을 엮어 막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국가가 한가한 때를 당하여 작은 폐단</p>	<p>防則只齋朝夕之糧，若令拾石，則其費倍萬矣。”上曰：“天道不可預料，來秋豐歉安可必也？今年停之，明年亦然，則終無畢築之期，今春拾石，待秋而築，不亦可乎？”特進官金自貞啓曰：“義州城邑完固，亦不甚狹，足以容民，不須退築。”上曰：“今雖不能築城，令拾石可矣。”恬又啓曰：“中原則以磚築城，前日義州所燔磚，不知幾何，今亦加燔何如？”知事李克墾啓曰：“臣觀義州土性與遼東無異，燔磚可矣。”克培啓曰：“古云：‘迨天之未陰雨，綢繆牖戶。’今當國家閑暇，不可以小弊停築城也。”上曰：“每年必曰：‘今不可築。’則終無畢築之期矣。”</p>
--	--	---

	<p>을 가지고 성쌓는 것을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해마다 ‘지금은 쌓을 수 없다.’고 한다면 끝내 쌓게 될 기약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20일  (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야인(野人)의 중추(中樞) 나송개(羅松介)  등 21인을 인견(引見)하였다.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정벌에 따라가 공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다.”  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丙戌/上御宣政殿引見野人中樞羅松介等二十一人，敎曰：“汝等從征有功，故特饋之。”仍賜物有差。</p>
<p>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21일  (정해)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읍성(邑城)을 물려서 쌓는 일은 이미 정지하도록 명하셨는데  돌이켜서 당번 군사(當番軍士)로 하여금 돌을 줍게 하셨습니다. 신 등은 생각  하건대 평안도(平安道)는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바야흐로 구황(救荒)  하고 있어 백성들을 역사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당번 군사로 하여금 돌을 줍  게 한다고는 하나, 양식을 싸가지고 가는 고생은 평상시의 배가 될 것이니,  우선 올벼[早穀]가 자라서 익기를 기다려 역사를 시작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성을 쌓는 것은 마땅히 점차로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돌을 줍게 한  것이니, 축성 체찰사(築城體察使)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丁亥/承政院啓曰：“義州邑城退築，業已命停，而旋令當番軍士拾石。臣等以謂，平安道去年凶歉，今方救荒，不可役民，雖曰以當番軍士拾石，其裹糧之苦倍常，姑待早穀成熟，始役何如？”傳曰：“大抵築城當漸次爲之，故先令拾石，其議于築城體察使。”</p>
<p>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23일  (기축) 2번째기사</p>	<p>축성 체찰사(築城體察使)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가까운 땅에는 돌이 없고, 주우면서 쌓는다면 공역(功役)이 쉽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돌을 줍도록 하자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러나 올해 기근이 들었는데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니, 올벼가 자  라서 익기를 기다려 역사를 시작함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築城體察使李克培啓曰：“義州近地無石，且拾且築，功未易就，故請先拾石，然年饑役民不可，待早穀成熟始役爲便。”傳曰：“可也。”</p>

	“가하다.” 하였다.	
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25일 (신묘) 4번째기사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집에 거등하여, 이엄(李琰) 25284) 의 처(妻) 송씨(宋氏)에게 쌀 80석(碩), 베[布] 4백 필(匹)을 내려 주었다. 민수복(閔壽福)이 또 아뢰기를, “이엄(李琰)의 처 대방 부인(帶方夫人)에게 쌀과 베를 많이 내려 주셨는데, 신은 무슨 일로 인하여 이에 이르도록 지나치게 상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쌀과 베를 내려 준 것이 어찌 연유한 바가 없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幸永膺大君第， 賜琰妻宋氏米八十碩、布四百匹。 閔壽福又啓曰：“琰妻帶方夫人多賜米布， 臣未知因何事而濫賞至此也。” 傳曰：“米布之賜， 豈無所由？ 其勿復言。”
성종 273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1월 27일 (계사)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과 홍문관(弘文館)에 술을 내려 주었다. 어서(御書)로, ‘봄날에 증점(曾點) 25286) 을 생각하노라 [春日憶曾點]’라는 율시(律詩)를 쓰고, 지어서 바치도록 명하였다.	○賜酒于承政院、弘文館。 御書春日憶曾點， 律詩命製以進。
성종 27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2월 22일 (정사) 1번째기사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야인(野人) 이응거(伊應巨) 등 10인(人)을 인견(引見)하고 하교(下敎)하기를, “너희들이 북정(北征)25343) 때에 공로(功勞)가 있어서 특별히 대접하는 것이다.” 하고는,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下賜)하였다.	○丁巳/上御宣政殿， 引見野人伊應巨等十人， 敎曰：“爾等於北征時有勞效， 特饋之。” 仍賜物有差。
성종 274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2월 28일 (계해) 3번째기사	봉상시(奉常寺)에서 아뢰기를, “선농제(先農祭)의 찬구(饌具)를 이미 설치하였고, 희생(犧牲)도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구처(區處)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물었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물(奠物)은 무람없게 쓸 수가 없습니다. 희생은 양전(兩殿)25353) 에 드리고, 쌀과 음식은 단직(壇直)에게 주고 포(脯)·해(醢) 등의 물품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구처하게 하소서.”	○奉常寺啓：“先農祭饌具已設， 犧牲亦宰， 何以區處？” 上問政院， 政院啓曰：“奠物不可用於褻處， 犧牲獻兩殿， 米食與壇直脯醢等物， 令戶曹區處。” 傳曰：“可。”



	<p>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3월 5일 (경오) 2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승조(鄭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군자감(軍資監)의 미곡(米穀)을 오랫동안 묵혀서 쌓아두고 있으므로 뜰에 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고 끝내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청컨대 녹봉을 받는 집에서 빈 섬[空石]을 수집해다가 그것을 개량시키고, 거기에 담아서 먼저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사(朝士)의 집에서 빈 섬을 수집하는 것은 자못 사체(事體)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戶曹判書鄭崇祖來啓曰：“軍資監米穀，陳陳相因，落庭者頗多，終至無用，請收空石於受祿之家，改量入盛，爲先支用。”傳曰：“朝士家收空石，頗失事體。”不聽。</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3월 5일 (경오)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이 차자(筵子)를 올려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친히 선농제(先農祭)를 지내시고 몸소 적전(籍田)을 경작(耕作)하시는 것은 종묘(宗廟)에 효도하고, 농사[稼穡]에 힘을 다하여 만민(萬民)에게 부지런함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가(車駕)가 돌아올 적에 강구가(康衢歌)25370) 를 부르며 함치 대밭(含齒戴髮)한 자들은 즐겨 구경하면서 감탄하였습니다. 다만 예의(禮義)는 천하(天下)의 큰 덕[大防]이며 부인(婦人)은 규문(閨門)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므로, 부모(傅母)25371) 가 없으면 밤에도 당(堂)에서 내려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단속하더라도 풍우장(風雨章)25372) 의 계명(鷄鳴) 같은 풍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臣) 등이 듣기로는 지난달 27일에 사족(士族)의 부녀(婦女)가 다투어 창경궁(昌慶宮) 근방에서 구경하는 막차(幕次)를 만들고, 구복(口腹)을 채우는 찬품(饌品)을 장만하였으며, 가마 타고 말탄 자들이 길에 줄을 지었었는데, 폭우(暴雨)를 만나 몸을 용납할 곳이 없게 되자, 그 복종(僕從)까지 잃고서 한밤중에 남</p>	<p>○司憲府大司憲李世佐等上筵子曰：“殿下親祀先農，躬耕籍田，致孝乎宗廟，盡力乎稼穡，以示勸於萬民，車駕載旋，康衢獻謠，含齒戴髮者，欣觀咨嗟。但禮義天下之大防，婦人有閨門之修，傅母不在，宵不下堂，以此防民，猶有風雨雞鳴之刺。臣等竊聞，前月二十七日，士族婦女，於昌慶宮近傍，競結觀光之幕，營備口腹之饌，乘轎騎馬者相望於道，寤於暴雨，容身無地，失其僕從，昏夜叩人之門戶，哀乞投寓，蹂藉無別，至有顛仆折傷者，曾謂我朝鮮禮義之邦而有此等風歟？且觀禁苑之內，緣墻設圍，結架垂簾，殆非</p>

	<p>의 집 문(門)을 두드리며 하룻밤을 묵어가기를 애걸(哀乞)하면서 무분별하게 밟고 밟히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넘어져서 상처를 입는 자까지 생겼다 하니, 예의(禮義)의 나라인 우리 조선에 일찍이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까? 또 보건대 금원(禁苑) 안에다가 담장을 끼고 울[圍]을 치고 시렁[架]을 매고서 밭을 드리워 놓았었는데, 이는 전혀 내외(內外)를 근엄(謹嚴)하게 하는 도리가 못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외인(外人)의 잘못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구경하는 부녀(婦女)들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세조(世祖) 때에 구경하는 남녀들이 길 옆에 운집(雲集)하였어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임금의 큰 도량이다. 금원(禁苑) 안에 울[圍]을 설치한 것은 아이들이 보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p>	<p>嚴謹內外之道也。 又何以禁外人之爲非乎? 既往不諫, 來者可追, 伏願命禁游觀婦人。  傳曰: “世祖朝觀光男女, 雲集路傍, 猶不禁之, 是人君大度也。 苑內設圍, 兒輩欲見之耳。”</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0일 (을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제사지내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제사를 마치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지난달에 마침 비가 내려서 행사(行事)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별과 달이 명랑(明朗)하여 행사(行事)할 때에 일에 차질이 없었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은지(恩旨)를 내리고자 하니, 환궁(還宮)한 뒤에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고, 드디어 적전(籍田)에 나아가 친경(親耕)하되 다섯 차례 갈고 중지하고서 관경대(觀耕臺)에 환어(還御)하니, 세자(世子)가 따라서 갈고, 대신(大臣) 윤필상(尹弼商) 등도 따라서 갈았으며, 서인(庶人)들이 다 갈기를 끝마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어가(御駕)가 흥인문(興仁門) 안에 이르기를, 성균 생원(成均生員) 유근(劉瑾) 등이 가요(歌謠)를 바쳤는데, 그 문(文)에 이르기를,  “성신(聖神)이 천년(千年)의 운(運)을 만났으니 나라를 교화시키는 시일이 바야흐로 길어지네. 예악(禮樂)은 반드시 백년(百年)이 되어야 일어나는 것인데,</p>	<p>○乙亥/上詣先農壇, 行祭如儀。 祭畢傳于承政院曰: “前月會天雨雨, 未克行事, 今則星月明郎, 行祀之時, 事無差失, 予甚喜之, 欲降恩旨, 還宮後啓之可也。” 遂詣籍田親耕, 五推而止, 還御觀耕臺。 世子從耕, 大臣尹弼商等亦從耕, 庶人終畝如儀。 駕至興仁門內, 成均館生員劉瑾等獻歌謠。 其文曰: “聖神應千齡之運, 化國之日方長; 禮樂必百年而興, 籍田之儀乃舉。 乾坤交泰, 朝野騰權。 恭惟主上殿下, 四乳養民, 重瞳燭物。 功成理定, 式</p>

적전(籍田)의 의식이 거행(舉行)되었네. 건곤(乾坤)이 서로 태평을 이루고, 조야(朝野)가 기뻐하며 뛰네. 삼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사유(四乳)25373) 로 백성을 기르고, 중동(重瞳)25374) 으로 사물을 관찰하네. 공(功)이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안정되어 오늘까지 태평을 누리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옷입고 밥먹고 하여 감히 상제(上帝)의 명(命)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네. 음식을 검소하게 드시면서 환(鰥)·과(寡)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몸소 농사일을 하시어 어려움을 체험하시네. 이에 모춘(暮春)의 화창한 때를 당하여, 특별히 풍년을 비는 성대한 의식을 강구하셨네. 동교(東郊)에 이르러 몸소 제사지내시고, 남묘(南畝)에 나아가 친히 밭을 갈았네. 서직(黍稷)을 심어 백성에게 부지런함을 보여주었고, 자성(棗盛)25375) 을 이바지하여 종묘(宗廟)에 효성(孝誠)을 바치었네. 군신(群臣)들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배하(拜賀)하고, 사민(四民)은 이마에 손을 얹고 바라보네. 일륜(日輪)25376) 을 황도(黃道)25377) 로 돌아오게 했고, 여망(興望)을 취화(翠華)25378) 에 속하게 했네.

신(臣) 등은 모두 광간(狂簡)의 무리로서, 청아(菁莪)25379) 의 가르침을 받았습시다. 기쁨에 넘치는 즐거운 얼굴로 다 함께 거마(車馬)의 소리25380) 를 들었고, 넓고 큰 덕화를 무어라 이름할 수 없어 모두가 천일(天日)의 나타남 우러러봅니다. 흥겨운 춤[舞蹈]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가요(歌謠)를 바칩니다.”

하고, 사(詞)에 이르기를,  
 “풍요로운 저 동토(東土)에  
 그 흙 기름지네.  
 농사철 다가오니  
 흙이 풀리었네.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신공(臣工)들아,

克至于今日休；宵衣旰食，不敢寧于上帝命。非飲食而惠鰥寡，躬稼穡而服艱難。茲當暮春之良辰，特講祈年之禱禮。戾東郊而躬祀，緣南畝而親耕。播黍稷示勤於黎氓，供粢盛致孝乎宗廟。群臣首至地而拜賀，四民手加額而欣瞻。迴日輪於黃道，屬輿望於翠華。臣等俱以狂簡之徒，獲蒙菁莪之教，欣欣然有喜色；共聞車馬之音，蕩蕩乎無能名。咸仰天日之表，不勝蹈舞，敢獻歌謠。” 詞曰：“樂彼東郊，厥壤衍沃；農祥晨正，土膏動脈。王曰臣工，時事將作，載涓吉亥，有事王籍。春官祇栗，先事戒勅，廬幕星羅，青壇嶽立。王乃夙駕，淳濯齊宮，公卿駿奔，執事益恭。仙仗環衛，旗常婀娜，宵升于壇，奠璧獻粢。鍾鼓更戛，簫管融洽，登降拜俯，玉佩錚鎗。神保煥赫，飯沃羶薌，洋洋如在，產祥降福。王乃躬耕，葱犢縹軛，冕以從事，乃耕一境。五推而舍，觀耕御幕，班三以多，百畝告訖。出自宮闈，種獻種陸，魚鱗繡錯，乃播乃植。都人士女，垂髻戴白，觀望如牆，鰲忭雀躍。金輿載回，羲御未戾，甲

	<p>농사일이 시작된다' 하니,        좋은 날 해일(亥日)을 가려,        유사(有事)가 임금이 적전(籍田) 갈 준비를 하였네.        춘관(春官)이 신중히 거행하며,        일에 앞서 모든 것을 단속했네.        여막(廬幕)은 별처럼 펼쳐졌고,        청단(靑壇)은 산처럼 둘러섰네.        임금님 일찍 거둥하시어,        재궁(齋宮)에서 재계하셨네.        공경(公卿)들은 분주하게 주선하고,        집사(執事)들은 더욱 공경하네.        선장(仙杖)이 둘러서서 호위하네.        그 깃발 아름답네.        새벽같이 단(壇)에 오르시어,        폐백[璧]과 술잔 올렸네.        종고(鍾鼓)소리 울리고,        소관(簫管)소리 화락해라.        단에 오르내리면서 절하고 엎드리니,        패옥(佩玉)소리 쟁쟁하네.        신명의 보호 뚜렷이 나타나는 듯,        제물(祭物)은 향기롭네.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상서(祥瑞)주고 복(福)내리네.        임금님 몸소 밭갈 적에,        거세(去勢)한 소에 멩에 씌웠네.</p>	<p>騎如雲，擁衛前後。魚龍雜沓，鸕鷀        左右，萬歲如雷，曰我父母。丞哉我        王，教民稼穡，三農勸耕，昏勞自勸。        休徵時至，曰雨曰暘，溥彼田原，擢穎        揚芒。禾稼油油，滋若雲煙，多黍多        稌，穰穰有年。含飽鼓腹，皞皞康莊，        粢盛既潔，酒醴其香。神格鬼享，俾        熾而昌，(不)[不]顯我王，德冠千        古。無怠永久，惠我東土，天錫我王，        黃耇眉壽。眉壽萬千，永荷天佑。”        耆老曹壽命等獻歌謠。其文曰：“伏聞        千畝之制，三推之義，所以重社稷而勸        少民，奉粢盛而敦大孝。周德下替，        禮既廢於百年；漢道中興，詔始行於三        世。有嚴熙事，復觀昌辰。恭惟主上        殿下，聖繼伸傳，功成治定，以夏禹勤        儉之德，知成王稼穡之艱，不敢般于遊        田，顧惟力于溝洫。惠澤隨雨露而溥，        萬物育焉；菽粟如水火之多，百室盈        止。尚軫惰農之自安，謂宜務本而身        率。以殷仲春，載涓吉日，輾金輪於        黃道，移翠華於青郊。潔爾牛羊，既        昭格於先嗇；以我耒耜，聿躬履於甫        田。於！赫縟儀之成，誕膺嘉祥之        至。有穉有穡，寡婦利其遺禾；如茨</p>
--	---	---

	<p>면류관 쓰고 종사하여,          밭을 한 번 가셨네.          다섯 차례 밀고서 멈추어,          어막(御幕)에서 밭갈기를 구경하셨네.          세 반(班)으로 나누고 여럿이 나아가,          백묘(百畝)를 모두 끝마쳤네.          대궐[宮闈]에서 나와서,          울며 늦벼 다 심었네.          어린진(魚鱗陣)25381) 을 친 듯 수(繡)를 놓은 듯,          파종(播種)하고 심으셨네.          도인(都人)과 사녀(士女),          젊은이와 늙은이들,          담장처럼 둘러서서 구경하며,          손뼉치고 밭구르며 기뻐하네.          어가(御駕)가 돌아오는데          해는 아직 기울지 아니하고,          구름 같은 호위군사          앞뒤에서 옹위(擁衛)하네.          어룡(魚龍)이 어울려 있고,          원로(鵷鷺)25382) 가 좌우에 늘어섰네.          우리 같은 만세 소리,          백성의 부모라 부르짖네.          훌륭한 우리 임금,          백성에게 농사[稼穡]를 가르치시니,          삼농(三農)25383) 이라 부지런히 농사지어,</p>	<p>如梁，曾孫樂其多稼。嗟！吾民之福，伊我后之功。載當法駕之旋，益慰都人之望。輦路登呼山之祝，康衢動擊壤之歌。瑞日輝輝，祥風習習。臣等桑榆晚景，蒲柳殘姿，屬聖人五百歲之興，偃僂而瞻天表；值仙桃三(年千)(千年)之實，蹈舞而獻歌謠。衆口齊聲，五章均賦。其一。玉殿風傳漏，金莖露洗空。雲移仙仗出璇宮，夜月正朦朧。華屋霏春霧，霓旌拂曉風。明明文后卽田功，萬姓樂時雍。其二。淡月青壇迥，蒼雲翠幄張。於論鍾鼓奏惶惶，明德又馨香。旨酒清而潔，皇靈樂且康。吾君精意感農祥，祈穀致豐穰。其三。初日寅賓後，東郊俶載時。紺轅親御禮三推，玉佩響參差。奔走臣工在，趨蹌保介隨。蒼生感位亦何爲，爭誦大田詩。其四。瑞日明丹闕，卿雲爛紫宸。萬人歌舞迓金輪，綺陌動香塵。車衛三千士，龍旗十二辰。太平文物更彬彬，佳氣滿城春。其五。四境開耕稼，三時協雨風。農人有慶獲年豐，叩腹帝何功。化國韶光麗，春臺氣象融。養得餘年壽域中，億載仰重瞳。”</p>
--	--	--

	<p> 밤낮없이 노력하네.  아름다운 조짐이 때맞추어 이르니,  제때에 비가 오고 제때에 별이 나네.  기름진 저 들판이여!  새싹이 돌아나네.  벼는 무럭무럭,  구름처럼 무성하네.  많은 기장 많은 벼들  풍성한 풍년되면,  함포 고복(含飽鼓腹)하며,  태평세월 한껏 누리리.  자성(棗盛)이 정결하고  주례(酒醴)25384) 향기로우니,  신(神)이 이르고 귀(鬼)가 흠향하여  번창하게 해주네.  홀륭하신 우리 임금,  덕(德)이 천고(千古)에 으뜸이네.  끊임없이 영구하게  이 나라에 은혜를 끼치소서.  하늘이 우리 임금님께 복을 내려  만수무강케 하시니,  만수무강하시면서  영원히 하늘의 도움 받으소서.”  하고, 기로(耆老) 조수명(曹壽命) 등이 가요(歌謠)를 바쳤는데, 그 문(文)에 이  르기를, </p>	<p> 女妓寶千金等獻歌謠。 其文曰：“伏以東郊有事日，馭驅六龍以照臨，下民爭權嵩呼，環四境以蹈舞，山川動色，草木增輝。 恭惟主上殿下，剛健對時，中和育物。 艱食庶食，思夏禹之儉勤；康功田功，體周文之徽懿。 念厚生要修乎土穀，而奉先莫切乎粢盛。 維暮之春，卜日斯吉，肅青壇而三獻，庶幾貽我來牟。 勞玉趾於五推，于以教民稼穡，旬徒競勸以終畝，上帝明賜以有年。 聳熙事之觀瞻，值韶華之浩蕩。 瑞日臨丹闕，車駕載旋祥。 風吹翠華，士女咸覩。 簪紵填街而喜色，笙歌動地而權聲。 濟濟青衿，其口皆能誦德；皤皤皓首，厥心正欲貢年。 妾等遯離蓬島，來隸梨園，入夢楚臺，雖慙十二峯之暮雨；馳誠漢殿，願獻三千歲之仙桃。”  詞曰：“霏紵催花條風，蘇柳東郊正值青陽。 塵清黃道寶輦輾，春光袞冕躬耕耒耜，教我民畢力農桑，斯民福大平日月，醉飽樂時康，熙熙皆帝力，喧喧萬口疆，歌誦唐、虞緬，華山轟轟、漢水汪汪，中有蓬萊窓闕，繫一人萬壽無疆，蓮花臺雲輶霜珮，拜獻滿庭芳。” </p>
--	---	---

“삼가 듣건대 천묘(千畝)의 제도와 삼퇴(三推)의 의의(意義)는 사직(社稷)을 중하게 여기고 소민(少民)을 권장하며, 자성(棗盛)을 받들어 큰 효(孝)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周)나라 덕(德)이 차츰 쇠하자 예(禮)는 이미 백년(百年) 간이나 폐지되었고, 한(漢)나라 도(道)가 중흥(中興)하자 조령(詔令)이 비로소 삼세(三世)에 시행되어 엄숙하게 빛나는 일로 또다시 번창하는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성자(聖子)·신손(神孫)으로서 공업(功業)이 이룩되었고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하(夏)나라 우(禹)임금처럼 근검(勤儉)한 덕으로 주(周)나라 성왕(成王)처럼 농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놀이와 사냥을 즐기지 않고 오직 농사일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은혜와 덕택이 우로(雨露)처럼 널리 퍼지니, 만물(萬物)이 잘 자라고 콩과 곡식이 수화(水火)처럼 많아 집집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게으른 백성이 농사에 태만할까 염려하여 마땅히 근본에 힘써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앞장서시어 화창한 중춘(仲春)에 길일(吉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륜(金輪)을 황도(黃道)에 굴리시고 취화(翠華)를 청교(靑郊)에 옮기셨습니다. 정결한 소와 염소로 선농(先農)에 정성껏 제사하고, 따비와 쟁기로 보전(甫田)25385) 을 몸소 밟으셨습니다. 빛나고 성대한 의식이 이루어지니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렀습니다. 늦벼와 벼단이 있으니, 과부(寡婦)들이 남겨진 이삭에서 이(利)를 취하고, 지붕처럼 다리처럼 쌓인 곡식, 증손(曾孫)은 많은 곡식을 흐뭇해 합니다. 아! 우리 백성의 복이여, 이는 우리 임금님의 공이십니다. 법가(法駕)가 돌아가매 더욱 도인(都人)의 희망을 위로해 주십니다. 연로(輦路)에는 호산(呼山)25386) 의 축가(祝歌)가 울려 퍼지고 강구(康衢)에는 격양가(擊壤歌)가 진동합니다. 서일(瑞日)은 휘황하게 빛나고 상풍(祥風)은 훈훈하게 불어옵니다. 신(臣) 등은 상유(桑榆)25387) 의 늙은 나이로 포류(蒲柳)25388) 처럼 쇠약한 자질입니다. 5백년 만에 나는 성인(聖人)의 시대를 만나 굽은 몸[偃僂]으로 임금을 우러러보며, 3천 년 만에 익는

선도(仙桃)의 열매를 보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여러 사람과 다 소리를 같이하며 함께 5장(五章)을 읊습니다.  
 ‘옥전(玉殿)의 바람은 누각(漏閣)소리 전하고,  
 금경(金莖)25389)의 이슬은 허공을 씻었네.  
 구름이 가는 듯 선장(仙杖)이 선궁(璇宮)25390)에서 나오니,  
 밤하늘의 달빛이 몽롱(朦朧)하여라.  
 화옥(華屋)에는 봄 안개 자욱하고  
 예정(霓旌)25391)은 새벽 바람에 필력이네.  
 현명하신 문후(文后)께서 전공(田功)에 나아가시니,  
 만백성이 화락함을 즐기네.’  
 ‘맑은 달빛은 청단(靑壇)에 아득하고,  
 흰 구름은 취옥(翠幄)에 자욱하네.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종고(鍾鼓)소리,  
 명덕(明德)이 더욱 향기롭네.  
 지주(旨酒)가 맑고 정결하니,  
 황령(皇靈)25392)이 즐겁고 편하게 여기네.  
 우리 임금 정성이 농사의 상서를 감동시켜,  
 농사가 잘되도록 기원하여 풍년이 들게 했네.’  
 ‘봄날 뜨는 해를 공손히 인도하여  
 동쪽 들에 처음 씨뿌릴 때,  
 붉은 수레에 친경례(親耕禮)를 행하고,  
 삼퇴(三推)를 거행하니 패옥(佩玉)소리 울리네.  
 신공(臣工)들 분주하게 주선하고  
 보개(保介)25393)들 추창하며 따르네.  
 창생(蒼生)들 감동하여 어떻게 하는가?



다투어 대전(大田) 25394) 의 시를 노래하네.  
 서일(瑞日)은 단궐(丹闕)에 밝아오고,  
 경운(卿雲)25395) 은 자신(紫宸)25396) 에 찬란해라.  
 만백성 가무(歌舞)하며 금륜(金輪)을 맞이하니,  
 아름다운 밭두둑에 향진(香塵)이 일어나네.  
 수레는 삼천 군사가 호위하고  
 용기(龍旗)엔 십이신(十二辰)25397) 이 수놓였네.  
 태평스런 문물(文物)이 다시금 더 빛나니  
 아름다운 기운이 봄 성(城)에 가득해라.’  
 ‘사경(四境)에서 농사일을 시작하니,  
 삼시(三時)25398) 에 비바람 순조로와라.  
 농민들의 경사는 풍년이 드는 것,  
 배불리 먹고 삶이 누구의 덕인지 모를 지경이네.  
 나라를 감화시키니 밝은 빛 화려하고,  
 춘대(春臺)에 기상이 화창해라.  
 여생(餘生)을 수양하여 덕화(德化)를 입은 이 나라에,  
 억만년을 두고 중동(重瞳)을 추앙하리.”  
 하고, 여기(女妓) 보천금(寶千金) 등이 가요(歌謠)를 바쳤는데, 그 문(文)에 이  
 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동교(東郊)에 일이 있는 날에, 육룡(六龍)25399) 을 타고서  
 조림(照臨)하시니, 백성들은 다투어 환호(歡呼)하고, 사방에서 춤추며 노래하  
 네. 산천(山川)도 표정을 움직이는 듯, 초목(草木)이 빛을 더하네. 삼가 생각  
 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강건(剛健)한 도(道)로써 계절을 대하시고,  
 중화(中和)의 덕(德)으로 만물을 기르시네. 간식(艱食)·서식(庶食)25400) 은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부지런함을 생각하고, 강공(康功)·전공(田

功)25401) 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업적을 본받았네. 백성을 잘살게 하려면 농사를 잘되게 해야 하고, 선조(先祖)를 봉사(奉祀)함에 있어서는 자성(稔盛)보다 더 절실함은 없네. 모춘(暮春)에 좋은 날을 받아 엄숙한 청단(靑壇)에서 삼헌례(三獻禮)를 행하니 우리에게 양식이 돌아오겠고, 옥지(玉趾)를 옮기어 오퇴례(五推禮)를 행하니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침이네. 전도(甸徒)25402) 들 부지런히 밭갈이를 끝내니, 상제(上帝)는 풍년을 내려 주네. 성대한 행사(行事)를 흥겹게 구경하고, 요순(堯舜)의 덕화를 만나게 했네. 서일(瑞日)은 붉은 대궐에 임하고, 거가(車駕)는 서려 있는 상서를 신고 오네. 바람에 펼쳐이는 취화(翠華)를 사녀(士女)들이 모두가 바라보네. 잠불(簪紒)25403) 은 거리를 매우며 희색(喜色)이 가득하고, 생가(笙歌)는 땅을 움직이며 환성(歡聲)이 퍼지네. 씩씩한 젊은 선비들 입으로 덕화를 노래하고, 머리가 흰 늙은이들 마음으로 풍년을 희망하네. 첩(妾) 등은 멀리 봉래도(蓬萊島)25404) 를 떠나, 이원(梨園)25405) 에 예속되었습니다. 초왕(楚王)의 양대몽(陽臺夢)에 들어가려는 것은 비록 12봉(峰)의 모우(暮雨)에 부끄러운 일 25406) 이긴 하나, 한(漢)나라 궁전(宮殿)에 정성(精誠)을 바쳐 삼천세(三千歲)의 선도(仙桃)25407) 를 올리는 양 하고자 합니다.”

하고, 사(詞)에 이르기를,  
“촉촉한 가랑비 꽃가지의 바람을 재촉하니,  
동쪽 들의 버들이 봄빛을 띠게 됐네.  
황도(黃道)에 먼지가 맑게 걷히니,  
보연(寶輦)에 봄빛이 도네.  
곤룡포·면류관 차림으로 몸소 따비 잡고 밭갈이하여,  
우리 백성들 농상(農桑)에 힘쓰게 했네.  
백성들 태평세월 누리며,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좋은 시절 즐기네.

	<p>화락함을 누림은 모두 임금 덕인지라, 만백성 입모아 그 덕을 기리네. 아득한 요(堯)·순(舜)시대 노래하니, 화산(華山)은 우뚝 솟고 한수(漢水)는 넘실넘실 그 중에 봉래산(蓬萊山) 궁궐 있어, 어느 한 분이 만수무강하시네. 연화대(蓮花臺)에 구름 같은 수레와 서릿발 같은 패옥(珮玉)으로, 뜰 가득히 방음(芳吟)을 절해 올립니다.” 하였다.</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3월 10일 (을해) 2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가 진하(陳賀)를 마치고, 백관(百官)이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전문에 이르기를, “몸가짐 공경하여 무위(無爲)의 정치를 하며 천지(天地)의 화육(化育)을 도왔고, 풍년을 기도하기를 매우 일찍 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네. 성대한 의식을 마치고 나니, 환성이 들끓고 있네. 삼가 생각하건대 공(功)은 재성보상(財成輔相)25408)에 참여했고, 덕(德)은 천지(天地)를 미륵(彌綸)하는 데 부합하네. 우리 백성을 먹고 살게 하려고 선농제(先農祭)를 올렸고, 제때에 백곡(百穀)을 파종하려고 밭갈이의 의식을 강구했네. 만백성이 의지하게 됨이 한 분의 경사에 힘입었네. 삼가 생각하건대 신(臣) 등은 모두가 용렬한 자질로서 훌륭한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周)나라 때처럼 풍년들어 기장과 벼가 가득 쌓인 것을 칭송하며, 《기주(箕疇》 25409)의 오복(五福)처럼 수복(壽福)과 강녕(康寧)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였다. 이어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기를, “임금은 말하노라. 내가 듣기로는 임금이 직접 천묘(千畝)를 경작하여 농사일에 부지런함을 자성(棗盛)을 이바지하여 종묘(宗廟)에 효성(孝誠)을 바치고자</p>	<p>○上御仁政殿，王世子陳賀訖，百官上箋陳賀如儀。箋曰：“恭己無爲，贊天地之化育；祈年孔夙，示稼穡之艱難。盛禮考成，歡聲競沸。恭惟功參輔相，德合彌綸。粒我蒸民，克載先農之祀；播時百穀，聿講終畝之儀。茲萬姓之攸依，賴一人之有慶。伏念臣等，俱以庸質，獲際昌辰，佇頌周年之屢豐；多黍多稌，竊祝箕疇之五福，曰壽曰康。”仍頒敎，王若曰：“蓋聞王者，躬籍千畝，服勤稼穡，非惟供粢盛，致孝于宗廟，所以躬率以儉，勸民務本之意也。予以寡昧，叨守丕緒，思所以奉宗廟、厚民生，而未得其道，歷稽古昔聖帝明王之臻至治者，莫不以民生爲重，予竊有志於斯，頃於乙未、戊申兩</p>

할 뿐만 아니고, 몸소 근검(勤儉)함을 솔선(率先)하여 백성에게 근본을 힘쓰는 뜻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덕이 적고 우매(愚昧)한 자로서 분에 넘치게 큰 기업을 이어받아 종묘를 받들고 백성을 편히 살게 해줄 것을 생각하였으나 그 도(道)를 얻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옛날의 성제(聖帝)와 명왕(明王)이 지치(至治)를 이룩한 것을 고찰해 보니 백성의 생활을 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나는 그러한 점에 뜻을 두어 지난 을미년(25410)과 무신년(25411) 두 해에 일찍이 몸소 적전(籍田)을 경작하는 예(禮)를 거행하였다. 그러니 내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이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농사가 혹 풍년이 들지 못하여 백성이 아직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 깊이 그 까닭을 생각해 보건대 실로 내가 몸소 솔선함이 지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농사가 자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금년 3월 길일(吉日)인 해일(亥日)에 또다시 옛 법을 써서 세자(世子)와 종친(宗親)·재상(宰相)과 문(文)·무(武)의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목욕 재계하고 신농(神農)·후직(后稷)에게 제사를 지내었으며, 또 몸소 남묘(南畝)에 나아가 오퇴(五推)·칠퇴(七推)·구퇴(九推)의 의식을 거행하고,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해 밭갈이를 마치게 하였으니, 사방의 만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서 모두가 분발해서 농사일을 서둘러서 각각 살아갈 수 있는 생업(生業)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어찌 관대(寬大)한 은택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달 초10일 새벽[昧爽] 이전부터 모반(謀反) 대역(大逆)이나 모반(謀叛), 그리고 자손이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모살(謀殺)하거나 구매(毆罵)한 것과 처(妻)·첩(妾)이 남편을 모살하고, 노비(奴婢)가 주인을 모살하고, 고의로 살인(殺人)하기를 모의하고, 고독(蠱毒)25412)·염매(魘魅)25413) 한 행위와 강도(強盜) 및 국가(國家)의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과 장오(贓汚)와, 그리고 고의로 남의 집과 무덤에 불을 지른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미 밭갈이 되었거나 아직 밭갈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이

年，嘗舉躬籍之禮，予所以敬天、勤民者非不至矣，而歲或不稔，民尚艱食，深惟其故，實由予躬率之未至，農自不啓耳。肆於今年三月吉亥，又用舊典，率世子、宗宰、文武百官，齋戒沐浴，祇祀神農、后稷，而又躬緣南畝，行五推、七推、九推之禮，以至庶人，畢力終畝，將使四方萬姓之聞者，莫不具起，敏於耕稼，各遂生生之業，其不在茲歟！屬茲縛禮之成，蓋布寬大之澤？自今月初十日昧爽以前，除謀叛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魘魅盜及關係國家綱常贓汚，故燒人家墓外，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咸宥除之。敢以有旨前事相告言者，以其罪罪之。於戲！既重穀而務農，將受來牟之賜；宜滌瑕而棄咎，廣布雷雨之恩。”

	<p>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간에 모두 용서해 준다. 감히 유지(宥旨)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그 자에게 적용시킬 것이다. 아! 이미 곡식을 중하게 여겨서 농사에 힘썼으니 앞으로 내모(來牟)25414)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마땅히 흠을 씻고 허물을 버려야 할 것이므로 뇌우(雷雨)의 은혜를 널리 퍼는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3월 10일 (을해) 4번째기사</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구선(久禪)을 특사(特使)로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해에 향정신(響庭新右衛門尉) 직선(職宣)이 전사(專使)로 갔을 적에 보내 주신 황금(黃金)·주홍(朱紅) 값은 삼가 수령하였습니다. 해마다 그 값에 변동이 없이 저희들의 요구에 응하여 상방(尙方)에 있는 면포(綿布)를 주시니 그 뜻도 오히려 매우 감사하였는데, 또 다시 중국길(宗國吉)이 돌아올 때에 신해년(25415)의 관례대로 쌀과 콩을 아울러 2백 섬을 받았으니, 기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함은 신(臣)이 요즈음 큰 배를 만들고자 하여 섬[島] 전역에 명을 내려 쓸 만한 재목을 구하게 하였으나 저희 대마도(對馬島)는 작은 섬이어서 쓸 만한 재목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증조부(曾祖父) 이후로 털끝만한 것이라도 성은(聖恩)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고, 신은 특별히 깊은 은혜를 받아 왔는데, 이번에 또 이 일을 아뢰게 되니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국(貴國)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온갖 일을 성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변방 관리에게 명하시어 철(鐵)과 목판(木版)을 내려 주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본도(本島)의 공장(工匠)에게 명하여 포구(浦口)에 가서 배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철은 본래 저희 섬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니, 못[釘]과 대패[鉋]로 보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비록 귀국의 비용이 많이 들까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전사(專使)를 지냈던 삼호 병고조(森戶兵庫助) 구선(久宣)으로 하여금 이번 보명(報命)을 받</p>	<p>○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久禪，來獻土宜。其書契曰：“去歲響庭新右衛門尉職宣爲專使，所送黃金、朱紅之價，謹拜領。每歲不貳其價應求，而綿布尙方之所有已賜之，其意猶重，且又宗國吉回時，辛亥年例米太并二百碩受訖，歡忭之至也。就中，臣比頃欲營大船，而命島中令覓良材，吾對馬以爲小島，未覓得良材，臣之曾祖以來，纖毫靡不聖恩，臣特蒙深恩，今又啓此事者，以慙以懼。雖然，非貴國之助者，百事難成矣。伏庶幾命邊吏賜鐵并板若爾者，命本島之工匠，令往于浦，以令營船。鐵本以非本島之產，爲釘鉋望焉。愈雖恐貴國之費用，爲專使遣森戶兵庫助久宣，今承報命，重遣使者，蒙鐵板之恩賜。久宣口實陳者，伏望啓達。進上練二匹、大刀二把、馬二匹黑毛，照領萬幸。”</p>

	<p>들게 하고, 다시 사자(使者)에 임명하여 철과 목관의 은사(恩賜)를 받게 하였습니다. 구선이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니, 삼가 계달(啓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練) 2필(匹), 대도(大刀) 2과(把), 검은 말[馬] 2필을 진상(進上)하니, 받아주시면 만행(萬幸)이겠습니다.” 하였다.</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1일 (병자) 3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노주연(勞酒宴)을 행하였는데, 종친(宗親)·재상(宰相)과 여러 집사(執事), 그리고 기로(耆老)와 수우인(隨牛人)·종경인(從耕人)·평치인(平治人)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p>	<p>○上御仁政殿行勞酒宴，宗宰及諸執事暨耆老、隨牛人、從耕人、平治人等皆與焉。</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3일 (무인) 3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김극괴(金克愧)는 중자(衆子)로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 놓고 그의 아버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구실로 친가(親家)의 베풀어 곡식을 마음대로 쓰고, 또 다시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奴婢)의 공포(貢布)를 거두었으며, 그 어미의 문권(文卷)을 위조(僞造)하였으니, 탐욕(貪慾)스럽고 방종(放縱)한 죄는 비록 사유(赦宥)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농제(先農祭) 때 예조(禮曹)의 계제사 낭청(稽制司郎廳)이 의주(儀註) 등의 일을 맡았으니, 비록 상(賞)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겠지만, 그밖의 낭청들이 무슨 공로(功勞)가 있었다고 모두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전악(典樂) 박곤(朴畚)은 첩(妾)의 소생으로서 지위가 4품(四品)에 이르렀고 이미 한직(限職)이 지났는데, 이번에 또다시 따로 감역관(監役官)을 더해 주었으며, 조척(曹倜)은 통사랑(通仕郎)이었고, 남손(南孫)은 전에 부사용(副司勇)이었는데, 모두 사맹(司孟)으로 올려 제수하였으니, 이는 모두 외람됩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극괴가 문서(文書)를 위조한 것은 속히 밝히도록 하라. 조척과 남손은 개정함이 좋겠다. 박곤과 예조 낭청에게 특별히 자금(資給)을 더해 준 일은 들어줄 수 없다.”</p>	<p>○司諫院正言崔連孫來啓曰：“金克愧，以衆子，別置室以祭其父，依憑祭祀，擅用親家布穀，又收未分奴婢之貢，僞造其母文券，貪縱之罪，雖經赦不可不治。且先農祭時，禮曹稽制司郎廳掌儀註等事，雖賞之可也。其餘郎廳，有何功勞而亦皆與焉？典樂朴畚，以妾產位至四品，已過限職，今又別加，監役官曹倜以通仕郎，南孫以前副司勇，并陞授司孟，此皆猥濫，請改正。” 傳曰：“克愧僞造文書，其亟辨之，倜、孫改正可也。朴畚與禮曹郎廳別加資事，不聽。” 連孫再三論啓，不聽。</p>

	<p>하였다. 최연손 등이 두세 번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이 아뢰기를,</p> <p>“신은 본래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회의(會議)로 인하여 선온(宣醞)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주서의 일은 처음에는 까마득히 잊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주서가 백사를 출납한다는 말은 신이 사실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내가 말하지 아니한 말을 잘못 전하기도 하고 잘못 듣기도 한 것은 모두 옳지 못한 일이다. 그 날 참여하여 들은 사관(史官)에게 물어서 아뢰라.”</p> <p>하니, 검열(檢閱) 이진(李堧)이 와서 아뢰기를,</p> <p>“한사문(韓斯文)이 성상(聖上)의 하교(下敎)를 신견(辛鍵)에게 전하기를, ‘승정원은 즉 각사(各司)의 공사(公事)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주서가 하는 일도 많다.’ 하니, 신견이 아뢰기를, ‘승지는 공사를 출납하지만 주서는 승전(承傳)을 기록할 뿐입니다.’하였는데, 신이 들은 것은 그것뿐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러면 출납이란 말은 신견에게서 나온 것이니, 추국(推鞠)토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16일 (신사) 7번째기사</p>		<p>○承旨韓斯文啓曰：“臣本不能飲，昨日因議得飲宣醞而醉，注書事初則頓忘，追想以啓，然注書出納百事之語，臣實不言。”傳于承政院曰：“予所不言之語，或誤傳或誤聽，俱不可。問於其日參聽史官以啓。”檢閱李堧來啓曰：“韓斯文傳上教于辛鍵曰：‘政院乃各司公事所萃之地，而注書所爲事亦多。’鍵啓曰：‘承旨則出納公事，而注書則只書承傳而已。’臣之所聞止此耳。”傳曰：“然則出納之言，出於辛鍵，其鞫之。”</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21일 (병술) 6번째기사</p>	<p>명하여 종친(宗親)·재상(宰相) 1품(品)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선공감(繕工監), 그리고 제조(提調)와 제장(諸將), 또는 선농제(先農祭) 때의 집사(執事)였던 예조 낭청(禮曹郎廳)을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대접하게 하였다.</p>	<p>○命饋宗宰一品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繕工監提調、諸將、先農祭執事、禮曹郎廳于明政殿庭。</p>
<p>성종 275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3월 22일 (정해) 2번째기사</p>	<p>중궁(中宮)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노주연(勞酒宴)을 행하였는데, 세자빈(世子嬪)과 내외(內外)의 명부(命婦)가 입시(入侍)하였다.</p>	<p>○中宮御宣政殿，行勞酒宴。世子嬪及內，外命婦入侍。</p>
<p>성종 275권, 24년</p>	<p>사간원 정원(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p>	<p>○司諫院正言崔連孫來啓曰：“辛鍵啓</p>

<p>(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3월 24일 (기축) 2번째기사</p>	<p>“신견(辛鍵)이 기읍 영(畿邑令)과 주서(注書)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이 술이 취해 그 말을 잊어 버리고 반 이상을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승지(承旨)의 직무(職務)는 후설(喉舌)을 담당하는 것인데,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한사문은 사사로이 마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잊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니, 굳이 국문할 필요가 없다.”</p> <p>하므로, 최연손(崔連孫)이 아뢰기를,  “한사문이 비록 선온(宣醞)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어찌 무절제하게 취하도록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신견(辛鍵)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신견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국문토록 하라.”</p> <p>하였다.</p>	<p>畿邑令、注書加資未便事，而承旨韓斯文醉酒，忘失其言，過半不啓，承旨職掌喉舌而飲酒沈醉可乎？請鞫之。”</p> <p>傳曰：“斯文非私飲也，雖忘之，亦非有情也，不須鞫之。”連孫啓曰：“斯文雖飲宣醞，何至於縱飲沈醉？若非醉而鍵所云如此，則鍵爲不可，請鞫治罪。”傳曰：“鞫之。”</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2일 (병신) 1번째기사</p>	<p>상참(常參)25452) 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승지(左承旨) 김응기(金應箕)가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영월(寧越)의 수인(囚人)인 사비(私婢) 신정금(辛丁今)이 그 아버지 신정부(辛丁夫)의 말을 듣고 독약(毒藥)을 음식에 섞어 그 지아비 임천(林泉)을 모살(謀殺)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25453) 에 해당되며, 정금(丁今)의 오라비인 신영충(辛永忠)이 아버지의 말을 좇아 임천을 타살(打殺)한 죄는 율이 교형(絞刑)에 해당됩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정금(丁今)이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곧 말하기를, ‘아내로서 지아비를</p>	<p>○丙申/受常參，視事。左承旨金應箕將刑曹啓本啓：“寧越囚私婢丁今，聽其父辛丁夫言，置毒謀殺其夫林泉罪，律該斬不待時。丁今甥永忠，從父言打殺林泉罪，律該絞。”上問左右。廣陵府院君李克培對曰：“丁今初聞父命，乃曰：‘妻而殺夫，何面目見人乎？’乃棄毒藥，父強之而後毒之，則是迫於父命，非其情也。況林泉非因毒而死，終爲永忠所殺，則可減死矣。”吏曹判</p>



죽이고 무슨 면목(面目)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하며 곧 독약을 버렸다  
 가, 아버지가 강요(強要)한 뒤에 독약을 넣었으니,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꺾박  
 받아 한 것이요, 그 정(情)이 아닙니다. 더구나 임천은 독약 때문에 죽은 것  
 이 아니고, 결국은 신영충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減  
 死)함이 옳겠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귀달(洪貴達)은 아뢰기를,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아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임천  
 이 다행히 죽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그의 뜻은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울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정부는 옥중에서 병으로 죽었다.】

장령(掌令) 박시행(朴始行)이 유생(儒生)들을 장신(杖訊)함이 미편(未  
 便)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홍귀달이 아뢰기를,  
 “천례(賤隸)의 무리라면 곤장을 참을 수 있지마는, 양반(兩班)의 자제(子弟)에  
 게 만약 형벌을 가하여 물으면, 어찌 무복(誣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감히 공주(公主)의 묘(墓)에 방화(放火)하였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하는데 무  
 슌 짓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불이 표석(表石) 아래에서 약하게 타올랐습니다. 만약 일부러 방화를 하였다  
 면 마땅히 다 탔을 것이니, 어찌 여기에서 그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이 일어나자 곧 켜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박시행이 아뢰기를,  
 “유생(儒生)에게 어긋난 단서(端緒)가 없고, 또 증좌(證左)도 없으니, 형신(刑

書洪貴達啓曰：“雖有父命，夫可殺乎？  
 林泉幸不死耳，其意欲殺之也。”上  
 曰：“依律處之。”【丁夫病死獄中。】  
 掌令朴始行啓杖訊儒生未便事，不聽。  
 貴達啓曰：“賤隸輩則可忍杖矣，兩班  
 子弟，若加刑問，則豈得不誣服？”上  
 曰：“敢於公主墓放火，是可忍也，孰  
 不可忍也？”都承旨曹偉啓曰：“火微  
 起於表石下，若故爲放火，則當盡燒  
 矣，何止於此？”上曰：“火起而旋即撲  
 滅耳。”始行啓曰：“儒生無違端，又  
 無證左，不可刑訊。”應箕曰：“儒生，  
 日暮時與僧鬪於沙峴，其距墓甚遠，徒  
 步者勢不得還至墓地也。”上曰：“雖  
 不知某人所爲，然窮鞫則自然得情  
 矣。”應箕曰：“其日適寒食，必祭其  
 墓，無乃香爐餘燼延蕪歟？”上曰：“事  
 體非輕，并鞫墓傍居人。”

	<p>訊)할 수가 없습니다.”</p> <p>하고, 김응기(金應箕)는 말하기를,  “유생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중과 사현(沙峴)에서 싸웠는데, 그 묘(墓)와 거리가 매우 멀어서, 걸어간 자로서는 형세가 묘지(墓地)에 다시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어떤 사람의 소행인지 알지 못한다 하나, 끝까지 국문(鞫問)하면, 자연히 실정(實情)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김응기가 말하기를,  “그 날이 마침 한식(寒食)이었으니, 반드시 그 묘에 제사를 지냈을 것인데, 곧 향로(香爐)에 남은 불씨가 번져서 탄 것이 아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체(事體)가 가볍지 않으니, 묘 곁에 사는 사람을 아울러 국문하라.”</p> <p>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2일  (병신) 3번째기사</p>	<p>도총관(都總管) 임광재(任光載)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정성근(鄭誠謹)이 아뢴 바 사후(伺候)25454) 를 더 거느리는 일은 추고(推考)하라는 전지(傳旨)에 언급(言及)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후(伺候)의 수(數)는 정병(正兵)이 45명이고, 보충대(補充隊)가 24명인데, 병조(兵曹)에서 위장소(衛將所)25455) 에 정하여 보내면, 위장소에서 본부(本府)로 이송(移送)한 뒤에 당상(堂上)이 각각 4명씩, 낭청(郎廳)이 각각 3명씩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니, 진실로 더 거느릴 이치가 없습니다. 비록 혹 1, 2인이 있어서 위장(衛將)에게 더 거느릴 것을 청한다 하더라도 조정(朝廷)에서 도총부(都總府)의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옳게 여기겠습니까? 청컨대 전지(傳旨)에 함께 기록하여 변명(辨明)케 하소서.”</p> <p>하였는데, 이철건(李鐵堅) 또한 아뢰기를,</p>	<p>○都總管任光載等來啓曰：“鄭誠謹所啓伺候加率事，於推考傳旨不及焉。伺候之數，正兵四十五，補充隊二十四，兵曹定送于衛將所，衛將所移送本府，然後堂上各四、郎廳各三帶行，固無加率之理，雖或有一、二人請於衛將加率者，朝廷以謂都總府皆如是可乎？請竝錄傳旨辨明。” 李鐵堅亦啓曰：“光載於本府會坐處，乃曰：‘納丘史價物者或有之。’此言必有所指，臣與具壽永固問之，光載不答，必因僚中有是</p>

<p>“임광재(任光載)가 본부(本府)의 회좌(會坐)25456) 한 곳에서 말하기를, ‘구사가물(丘史價物)25457) 을 받아들이는 자가 더러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구수영(具壽永)과 굳이 물었으나, 임광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반드시 동료(同僚)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하문(下問)하셔서 여러 사람의 의심을 풀게 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사후를 더 거느리는 일도 함께 국문하는 것이 옳다. 구사를 대립(代立)한 일 또한 임광재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p> <p>하였다. 임광재가 서계(書啓)하기를,</p> <p>“도총관(都總管) 등이 정성근(鄭誠謹)이 아된 바를 듣고 본부(本府)에 모여서 피혐(避嫌)25458) 의 여부(與否)를 의논하던 때에 신이 말하기를, ‘값을 받고 구사(丘史)를 놓아주는 것인데, 어찌 그러한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했더니, 동료(同僚)가 이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여겨 하문하시도록 계청(啓請)하였는데, 신이 감히 숨기겠습니까? 동료 가운데 값을 거두어들이고 구사(丘史)를 놓아주었다는 것을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전(年前)에 신이 한치례(韓致禮)를 대신하여 내섬시 제조(內贍寺提調)가 되었을 때에 한치례가 구사를 신에게 넘겨 주었는데, 그 가운데 귀산(貴山)·중동(仲同)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혹은 늦게 오기도 하고 혹은 수일(數日) 동안 오지 않기도 하므로, 신이 노(怒)하여 태형(答刑)에 처하려고 하였더니, 귀산이 말하기를, ‘저는 정 승지(鄭承旨)의 종이고 중동(仲同)은 정 승지의 비부(婢夫)이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정 승지의 유모(乳母)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승지 집안의 노복(奴僕)이 어찌하여 내섬시의 선상(選上)25459) 이 되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주인이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에 배임(拜任)되면서부터 종들이 각각 선상 가물(選上價物)25460) 을 취</p>	<p>事而言之也。請須下問，以釋群疑。”</p> <p>傳曰：“伺候加率，并鞫之可也。丘史代立事，亦問光載。”光載書啓曰：都總管等聞誠謹所啓，會本府議避嫌與否時，臣語曰：“取直而放丘史，豈無其人乎？”同僚以此爲有所指，啓請下問，臣敢諱之？同僚中收價放丘史者，則臣未聞矣。但年前臣代韓致禮爲內(贍)〔贍〕寺提調，致禮傳丘史於臣，其中貴山、貴同及名不知一人，或晚來，或數日不來，臣怒將答之，貴山曰：“我，鄭承旨奴也，仲同，鄭承旨婢夫也，名不知人，鄭承旨乳母子也。”臣曰：“承旨家奴僕，何以爲內贍選上也？”對曰：“主自拜內贍副正，奴等各取選上價物，納於主宅而隨行，會宅內多事，遲晚如此耳。”又後連三日不來，將欲徵闕，誠謹使人請曰：“近因家中多事，奴輩闕進，幸寬罪。”仍以政院丘史三人代之，其一名曰莫同，其二忘其名。臣答曰：“何不早報？”卽還送。翌日臣詣闕庭，遣別監謝誠謹曰：“吾初不知公之奴僕也，公必以我爲量窄也。”別監回報承旨之謝，今若問誠謹，其敢諱乎？</p>
---	---

하여 주인택에 바치고 수행(隨行)했었는데, 마침 집안에 일이 많아서 이와 같이 지만(遲晚)하게 되었습니다.’하였습니다. 또 그 뒤로 3일 동안 연이어 오지 않으므로, 장차 빠진 것을 징계하고자 했더니 정성근이 사람을 시켜 칭하여 말하기를, ‘근일에 집안에 일이 많은 탓으로 종들이 꺾진(闕進)하게 되었으니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곧 정원(政院)의 구사(丘史) 3인으로써 대신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름이 막동(莫同)이라 했고, 두 사람은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일찍 알리지 않았는가?’ 하고 곧 되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에 신이 꺾정(闕庭)에 나아가서 별감(別監)을 보내어 정성근에게 사례하여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공(公)의 노복인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공은 반드시 나를 도량이 좁다고 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별감이 승지의 사례를 회보(回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정성근에게 물으시면 그가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근이 보낸 사람의 성명(姓名)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임광재에게 물어 보고, 또 임광재가 말한 것을 정성근에게 물어서 질정(質正)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광재가 아뢰기를,

“신이 정성근과 일찍이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은근(慇懃)히 접대(接待)하지 못했고, 또한 흘겨볼 만한 혼단도 없었는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찌다가 동료들과 담소(談笑)한 것으로 인하여 성청(聖廳)을 번거롭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황공(惶恐)하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성근이 사람을 보냈을 때에 신이 그 성명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귀산(貴山)은 정성근의 행랑(行廊)에 살고 있고, 중동(仲同)은 그 집결에 살고 있으며, 막동(莫同)은 나이 14, 5세가 될 만했는데, 스스로 정원(政院)의 일수(日守)25461)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섬시(內贍寺)의 종 모지리(毛知里)가 귀산 등을 데리고 왔으니, 만약 모지리에게 물어보면 귀산(貴山)을 찾을 수

傳曰：“誠謹使人，其姓名誰歟？其更問于光載，且光載所言，問于誠謹質之。”光載啓曰：“臣與誠謹未嘗同盃酒接慇懃，亦無睚眦之釁，有何心哉？幸因同僚談笑，至煩聖聽，惶恐死罪。誠謹使人時，臣不問其姓名，故不知之。但貴山居誠謹行廊，仲同居其家傍，莫同年可十四五，自云政院日守也。其初內贍寺奴毛知里領貴山等而來，若問毛知里尋得貴山，詰其所爲，則無所逃矣。臣雖庸劣，豈可以無根之言上達乎？言人之過失，非臣本意也，迫於鐵堅等，上瀆天聽。”誠謹亦啓曰：“光載爲內贍寺提調，臣卽遞副正，郎廳之丘史，何由換使乎？家婢夫無名仲同者，臣乳母年老無子，此實辨之不難。但貴山者臣奴也，屢在逃橫行，臣尋迹捕來，亦不肯供役，何得代臣副正時選上乎？前年十一月有別監來傳光載之言曰：‘丘史有罪，欲罪之，今因公使人，始知公奴，吾甚愧焉。’臣答曰：‘吾頓無使人事，今承伴諭，不勝驚惶。’答之如此而已，其他皆非臣所謂也。臣與光載，素無交分，朝士與駙馬，品類夙異，臣何因使人口報

있을 것이며, 그가 한 바를 힐문(詰問)하면 피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용렬(庸劣)하다 하더라도 어찌 근거가 없는 말을 가지고 상달(上達)하겠습니까? 남의 과실(過失)을 말한 것은 신의 본의(本意)가 아니었는데, 이철건(李鐵堅) 등에게 핍박당하여 위로 천청(天聽)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였다. 정성근 또한 아뢰기를,

“임광재(任光載)가 내섬시 제조(內贍寺提調)가 되고, 신이 곧 부정(副正)으로 바뀌었는데, 낭청(郎廳)의 구사를 어찌 바꾸어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신의 집 비부(婢夫)로서 이름을 중동(仲同)이라는 자는 없고 신의 유모는 나이 늙고 자식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분간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산(貴山)이라는 자는 신의 종입니다마는, 여러 번 도망을 쳐서 횡행(橫行)했기 때문에, 신이 자취를 찾아 잡아오곤 했으며, 또 공역(供役)을 즐겨하지 않는 데, 어떻게 신이 부정(副正)이던 때에 선상(選上)을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년 11월에 별감이 임광재의 말을 와서 전하기를, ‘구사가 죄가 있으므로 죄 주고자 했는데, 지금 공이 보낸 사람으로 인하여 공의 중임을 알았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도무지 사람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유시(諭示)를 받들게 되니, 경황(驚惶)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답한 것은 이와 같은 것뿐이었고, 그밖에 다른 것은 모두 신이 말한 바가 아닙니다. 신이 임광재와 본래 교분(交分)이 없었고, 조사(朝士)와 부마(駙馬)는 품류(品類)가 멀고 다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어 구보(口報)하였겠습니까? 신이 이튿날 귀산을 붙잡아 물어보고 비로소 선상을 대립(代立)한 일을 알았으며, 곧 곤장 30대를 때렸습니다. 신이 서사(筮仕)25462) 한 이래로 종[奴子]으로서 선상을 대신하여 수행(隨行)한 자가 더러 있었습시다마는, 그 역가(役價)를 거두어서 제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신에게는 진실로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제것으로 받아들인 일이 있었다면, 친한 벗과 동료들이 모두 마땅히 알 것인데, 신이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겠습

乎? 臣於(翼) [翌] 日, 拘執貴山問之, 始知代立選上事, 乃杖三十。 臣自筮仕以來, 奴子代選上隨行者則或有之矣, 收其價入己, 臣實無之。 若少有入己事, 則親朋同僚, 皆當知之矣, 臣何敢欺天乎? 今光載啓達如此, 不勝痛悶。”

	<p>니까? 지금 임광재의 계달(啓達)이 이와 같으니, 통민(痛悶)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4일 (무술) 6번째기사</p>	<p>임광재(任光載)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들으니,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 ‘임광재가 아뢰는 것은 신이 한 바가 아닙니다. 한치례(韓致禮)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한치례에게 물었더니, 한치례가 아뢰기를, ‘구사(丘史)는 신이 임광재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본사(本司)에서 스스로 보냈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도 한치례가 감히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전일에 정성근이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이 되었을 때에 한치례는 제조(提調)가 되었고, 정성근이 시책(試策)25472) 을 맡아 제조의 작폐(作弊)를 물었는데, 모두 내섬시의 일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한치례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라고 했으니, 한치례는 반드시 이 때문에 인혐(引嫌)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신은 정성근과 본래에 수혐(讎嫌)이 없었는데, 도총관(都總管) 등이 모여서 피혐(避嫌)을 의논할 때에 좌중(坐中)에서 모두 말하기를, ‘정성근이 아뢰는 바는 반드시 가리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 발언(發言)한 사람을 엄호(掩護)하고자 하여 다만 여자신(呂自新)의 말에 의거한다고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 부총관(副總管)이 말하기를, ‘정성근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흘겨볼 만한 원한도 반드시 갚는다. 일찍이 한 수령(守令)의 청렴(清廉)하지 못한 일을 아뢰었는데, 그 수령이 듣고 말하기를, 「정성근은 나에게 혐의가 있었다.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요전상(澆奠床)25473) 을 청하였으나 마침 일이 많아서 따르지 못했는데, 그 절간(折簡)25474) 이 아직 내협사(篋筭)25475) 속에 있다」라고 했다’ 하니, 좌중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던가? 지금이나 후에 정성근이 남의 음사(陰私)를 밝혀 내는 것은 자기의 사특(邪慝)함을 덮고 임금에게 간진(干進)을 요청하려는 것임을</p>	<p>○任光載來啓曰： “臣聞鄭誠謹啓云：‘光載之啓，非臣所爲，問於致禮則可知。’及問致禮，致禮啓曰：‘丘史非臣送於光載，乃本司自送耳。’其實不然而致禮敢如是啓者，前日誠謹爲內贍副正時，致禮爲提調，誠謹掌試策，問提調作弊，皆內贍事也，人皆云：‘此指致禮而言。’致禮必以此引嫌，不以實對也。臣與誠謹，素無讎嫌，都總管等會議避嫌時，坐中皆曰：‘誠謹所啓，必有所指者，而欲掩護其發言之人，只據呂自新言也。’又一副總管言：‘誠謹非正人，睚眦之怨必報。曾啓一守令不廉事，其守令聞之曰：「誠謹於我有嫌，曾使人乞澆奠床，適多事不從，其折簡猶在我篋筭中。」’坐中嘆曰：‘有是哉！今而後乃知誠謹發人之陰私，掩己之邪慝，要君干進也。’此言談笑間偶然聽之，不記先發者，若問諸都總管，則孰曰不聽乎？且己酉年講武時，成俊爲支應使，謂臣曰：‘諸邑進供酒，味雖醇美，而酒房宦者非得厚賂，則不</p>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담소(談笑)하는 사이에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끄집어낸 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여러 도총관에게 물으면 누가 듣지 아니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기유년(25476)의 강무(講武)25477) 때에 성준(成俊)이 지응사(支應使)가 되어 신에게 이르기를, ‘여러 고을에서 진공(進供)하는 술은 맛이 비록 순미(醇美)하다 하더라도 주방(酒房)의 환관(宦官)들의 많은 뇌물을 얻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해주(海州)의 술을 맛보니, 시고 싱거워서 마실 수가 없으므로, 마음속으로 반드시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전이 보고하기를, 「이미 받아들였으니, 어찌 술책이 없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외직 내사(外直內詐)25478) 한 것으로서, 권모(權謀)를 헤아릴 수 없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성준의 말을 가지고 좌중에 말했더니, 모두 말하기를, ‘저 사람의 하는 바가 이와 같은데, 남의 부실(不實)한 일을 속여서 배척함이 옳겠는가?’라고 하면서 혹은 웃기도 하고, 혹은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또 희롱하여 말하기를, ‘역가(役價)를 받아들이고 구사(丘史)를 놓아준 일이 총부(摠府)나 정원(政院) 가운데에서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동료(同僚)들이 스스로 의혹(疑惑)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계달(啓達)하였고, 또 신에게 하문(下問)하시니, 신이 알고 있는 정성근의 일을 아뢰는 것입니다. 전일(前日)에 신에게 정성근이 보낸 사람의 성명(姓名)을 물으셨을 때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마는, 신이 이번에 구사에게서 들었는데 말하기를, ‘송현(松峴)에 살고 있고, 그 이름이 막동(莫同)입니다.’ 하였으니, 잡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은 본래 남의 과실(過失)을 말하지 아니했으므로, 지금 남의 과실을 말한 것이 경솔하게 생각되나, 성상께서 하문(下問)하시는 것을 숨기는 죄가 무겁기 때문에, 감히 직계(直啓)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사(丘史)를 진실로 한치레가 임광재의 집에 보냈는지, 본사(本司)에서 추송

納焉。 吾嘗海州，酒酸薄不可飲，意必生事，吏報曰：「已得納，豈無術歟？」此眞所謂外直內詐，權謀不測者也。」臣以俊言語坐中，皆曰：「彼所爲如是，而誣斥人不實之事可乎？」或笑或嘆，臣又戲言曰：「納價放丘史事，摠府、政院中必有之矣。」同僚自生疑惑，因此啓達，下問於臣，臣以所知誠謹事啓之。 前日問臣以誠謹所使人姓名，對以不知，臣今聞於丘史曰：「居松峴，其名莫同，執之無難。」臣素不言人過失，今意謂言人之過失輕，諱上之問，其罪重，故敢以直啓。” 傳曰：“丘使實致禮送于光載家歟？ 本司推送歟？ 其更召問致禮。 且誠謹睚眦之怨必報，請澆奠床不得作嫌等語，發言者誰歟？ 召問諸摠管。” 致禮啓曰：“臣遞提調後帶率丘史，卽送于交代任光載之家，然其名則未知。” 傳曰：“今所言與前所啓何異乎？” 致禮啓曰：“光載謂臣錄丘史名以送，臣無此事，故前啓如此耳。” 都摠管李鐵堅、具壽永，副摠管曹幹、朴安性、李朝陽來啓曰：“都摠管會坐時，坐中一人言：「鄭誠謹請澆奠床於一邑守不得，後以其邑守爲

(推送)하였는지 그것을 다시 한차례를 불러서 물어 보도록 하라. 또 정성근이 눈을 흘길 정도의 원한도 반드시 갖고, 요전상을 청했다가 얻지 못했다고 하여 혐의를 가졌다고 한 이야기를 발언한 자가 누구인지 여러 총관을 불러서 물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 한차례가 아뢰기를,  
 “신이 제조(提調)에서 체임(遞任)된 뒤에 구사를 거느리고 곧 임광재의 집으로 교대(交代)시켜 보냈습니다마는, 그 이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말한 바가 그 전에 말한 것과 어찌하여 다른가?”

하였다. 한차례가 아뢰기를,  
 “임광재는 신이 구사(丘史)의 이름을 기록하여 보냈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신은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에도 이와 같이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도총관(都總管) 이철건(李鐵堅)·구수영(具壽永)과 부총관(副總管) 조간(曹幹)·박안성(朴安性)·이조양(李朝陽)이 와서 아뢰기를,  
 “도총관이 회좌(會坐)했을 때에 좌중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정성근이 요전상(燒奠床)을 한 고을 수령에게 청했다가 얻지 못하니, 그 뒤에 그 수령의 청렴(清廉)하지 못하다고 계달(啓達)하여 중상(中傷)하였는데, 어찌 정대(正大)하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말을 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총관 정문형(鄭文炯)·노공필(盧公弼)과 부총관 신주(辛鑄)가 아뢰기를,  
 “신 등은 그날 마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을 먼저 발언한 자가 총관들이었다고 하는데, 모두 숨기는 것이 옳겠는

不廉啓達中傷之，豈爲正大乎？’然臣等未記言者爲誰。” 都總管鄭文炯、盧公弼，副總管辛鑄啓曰：“臣等其日適不參會，故未聞此言。” 傳曰：“此事先發言者，總管等皆諱之，可乎？明當更問。”



	<p>가? 내일 마땅히 다시 물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5일 (기해) 2번째기사</p>	<p>도총관(都總管) 등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임광재(任光載)가 정성근(鄭誠謹)과 본래 수혐(讎嫌)이 없었다고 했는데, 요전상(澆奠床)의 일을 들은 바가 없는데도 말했겠는가? 비록 날이 오래 되어 잊었다고 말하였으나, 언단(言端)이 나왔으면 기억할 만도 한데, 어찌하여 숨기는 것인가? 또 정성근이 신 술을 받아들였다는 일을 지금 성준(成俊)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 내가 정성근을 본래 정대(正大)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 이와 같다고 하면 안과 밖으로 행동이 다르니, 어찌 정대한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이철건(李鐵堅)·구수영(具壽永)이 아뢰기를, “정성근의 일을 발언(發言)한 사람은 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박안성(朴安性)은 아뢰기를, “지난 3월 16일에 신이 조간(曹幹)과 함께 입직(入直)했는데, 조간이 신에게 말하기를, ‘정성근이 경차관(敬差官)25479) 이던 때에, 제상(祭床)을 요구했다가 얻지 못했다고 하여, 수령(守令)에게 원한을 품고 중상(中傷)했으니, 이는 정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빈청(賓廳)25480) 에 모였는데, 조간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일의 모임에서 풍천위(豐天尉)25481) 가, 정성근의 일은 도리어 억누르고자 한다.’고 말하므로, 제가 구수영(具壽永)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무슨 일인가?’라고 물으니, 구수영이 말하기를, ‘이것은 요전상(澆奠床)과 선상(選上)을 대립(代立)한 등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들은 바와 같다면 서계(書啓)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광재(任光載)가 아뢰기를,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조간(曹幹)이, 신이 정성근(鄭誠謹)의 일을 말하</p>	<p>○傳于都總管等曰：“光載與誠謹本無讎嫌，澆奠床等事，豈無所聞而言之歟？雖曰日久而忘，言端豈出則可以記憶，何諱之？且誠謹納酸酒事，今問於成俊矣。予意以謂誠謹本正大之人，然若如此，則內外異行，豈正人乎？”李鐵堅、具壽永啓曰：“誠謹事發言之人，臣未記憶。”朴安性啓曰：“去三月十六日，臣與曹幹同入直，幹謂臣曰：‘誠謹敬差官時，求祭床不得，恨守令，中傷之，此非正大之人。’云爾。昨日賓廳聚會，幹謂臣曰：‘前日聚會，豐川尉云：『誠謹事，欲反壓之。』’吾引具壽永之袖，問何事乎？壽永曰：『此欲言澆奠及選上代立等事也。』’臣答曰：‘如所聞，書啓可也。’”任光載啓曰：“朴安性啓，曹幹謂臣言誠謹事，欲反壓之，此非臣之言也。臣之坐與幹隔遠，其間坐者多，臣若發此言，則他人不聞而幹獨聞之乎？若問於都總管等，則臣之言不言著矣。臣於誠謹，本無嫌隙，反壓之心，豈芥於胸中乎？無此心則不發此言明矣。無乃</p>

면서, ‘도리어 억누르고자 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신이 앉았던 자리가 조간(曹幹)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앉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신이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조간만 혼자 들었겠습니까? 만약 도총관들에게 물으시면, 신이 말하였는지 말하지 아니하였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신이 정성근에게 본래부터 혐극(嫌隙)25482) 이 없었는데 도리어 억누르려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곧 조간이 들은 바가 있다고 한 것은 말이 균색해져서 망령되게 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조간에게 묻도록 하였는데, 조간이 아뢰기를,  
“지난 3월 28일에 도총관들이 피혐(避嫌)한 뒤에 빈청에서 회좌(會坐)하였는데, 임광재가 말하기를, ‘정성근을 내가 도리어 억누르고자 한다.’ 하므로, 신이 구수영의 옷을 끌어당기며,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물었더니, 구수영이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말한 바 요전상을 요구했다가 얻지 못하여 혐의를 만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것만을 들었을 뿐인데, 16일에 박안성과 입직(入直)했을 때에는 일찍이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고, 어제 이 말의 근거에 대하여 하문(下問)하였을 때에 박안성이 이 일을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방외(方外)25483) 에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구수영·신주도 또한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신이 진실로 박안성과 함께 입직을 했을 때에 말한 것이라면, 임광재가 어찌하여 여럿이 모인 날에 부총관 가운데서 먼저 이러한 말을 하였겠으며, 입직이 바뀐 날에 말하였다면 여자신(呂自新)만 어찌 혼자 듣지 못했겠습니까? 신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간이 아된 바 임광재가 도리어 억누르겠다고 한 말을 여러 총관(總管)도

幹有所聞，語窘而妄啓乎?” 命問于曹幹，幹 [幹] 啓曰：“去三月二十八日，都總管等避嫌後會坐賓廳，光載言：‘誠謹，我欲反壓之。’ 臣引具壽永之衣，問此何事乎? 壽永答曰：‘此前所言求澆奠床不得作嫌事也。’ 臣聞此而已。 十六日，與朴安性同入直時，未嘗出諸口，昨日右言根下問時，安性言：‘此事吾非聞於聚會處，似聞於方外，然未記知。 具壽永、辛鑄亦共聞之。’ 臣實與安性同入直言之，則光載何以言聚會日副總管中，先發此言乎? 遞直日言之，則呂自新何獨不聞乎? 臣之不言明矣。” 傳曰：“幹所啓光載反壓之言，諸總管等亦聞之乎?” 鐵堅、文炯、辛鑄、安性、朝陽啓曰：“光載反壓之言，皆未聞也。” (永壽) [壽永] 啓曰：“幹所啓光載反壓之語，臣實不言於幹，幹亦不曾引臣之衣。” 安性啓曰：“去二月二十五日以後，移病在家，三月十六日，與幹連三日入直，同月二十八日，賓廳聚會，今四月初四日聚會將啓時，澆奠言端，忘其所聞。 幹曰：‘前會具壽永答我問曰：「必澆奠等事也。」’ 臣聞之，因記前所聞以

	<p>들었는가?”</p> <p>하나, 이철견(李鐵堅)·정문형(鄭文炯)·신주(辛鑄)·박안성(朴安性)·이조양(李朝陽)은 아뢰기를,</p> <p>“임광재가 도리어 억누르겠다고 한 말을 모두 듣지 못했습니다.”</p> <p>하고, 구수영은 아뢰기를,</p> <p>“조간이 아뢰 바 임광재가 도리어 억누르겠다고 한 말을 신은 진실로 조간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조간도 일찍이 신의 옷을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p> <p>하였다. 박안성이 아뢰기를,</p> <p>“지난 2월 25일 이후에는 이병(移病)25484) 하여 집에 있었고, 3월 16일에는 조간과 3일 동안 연이어 입직(入直)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빈칭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초4일에 모두 모여서 장차 아뢰고자 할 때에 요전상(澆奠床)의 언단(言端)을 들은 바를 잊었는데, 조간이 말하기를, ‘전에 모였을 때 구수영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기를, 「반드시 요전상 등에 대한 일일 것이다」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들은 것은 전에 들은 바를 기억했다가 아뢰는 것이요, 28일 이전의 모임에는 신이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살펴보건대 28일의 모임에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도리어 억누르겠다는 말을 여러 총관이 모두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조간은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 박안성이 아뢰 선상(選上)의 일을 조간은 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박안성은 또한 어찌하여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가? 소매를 끌어당겼다고 조간은 분명히 말했는데, 구수영은 어찌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대신(大臣)들은 마땅히 들은 대로 직계(直啓)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모두 숨기는가?”</p> <p>하였다. 조간이 또 아뢰기를,</p> <p>“신이 입직했을 때에 정병(正兵)의 퇴립(退立)에 대한 일을 여자신(呂自新)·박</p>	<p>啓。二十八日以前之會，則臣病不參焉。 觀此言則非二十八日聚會所聞。” 傳曰：“反壓之言，諸摠管皆不聞，幹何處聞之乎？ 安性所啓選上事，幹云不言，安性亦何以聞此言乎？ 引袖之言，幹明言之，而壽永何以云不知乎？ 大臣等，宜以所聞直啓，今何皆諱耶？” 幹又啓曰：“臣入直時，正兵退立事，與自新、安性同坐開說，若竝說澆奠事，則自新豈不聞之乎？ 臣與安性獨言，則光載等豈皆曰一會時聞之乎？ 昨日安性曰：‘澆奠事，似聞於他處。’ 則臣之不言亦明矣。 麻叱波知【奏樂者，彼此相對互奏一曲， 諺云麻叱波知。 誠謹軌光載，光載又軌誠謹，如麻叱波知然。】之言，似聞於光載，而光載曰不言， 同僚皆未聞之， 且臣坐處隔遠， 臣疑其誤聽。” 永壽啓曰：“昨日曹幹問臣曰：‘今日命召何事耶？’ 臣答曰：‘以光載所啓， 欲問誠謹請澆奠床也。’ 此外更無所言。 幹若引臣衣問之， 而臣有他言， 則舉臣連坐， 辛鑄亦豈不聞乎？” 辛鑄啓曰：“曹幹與壽永引衣相問答之言， 臣未之聞。” 傳于承政院曰：“誠謹所啓不廉守令之名， 考日記而</p>
--	---	--

안성(朴安性)과 함께 앉아서 말했는데, 만약 요전상에 대한 일도 함께 이야기했다면 여자신이 어찌 듣지 아니했겠습니까? 신이 박안성과 홀로 말했다면, 임광재 등 모두가 어떻게 한결같이 모였을 때에 들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제 박안성이 말하기를, ‘요전상에 대한 일은 다른 곳에서 들은 듯합니다.’ 하였으니, 신이 말하지 아니한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마질파지(麻叱波知) 【풍악을 연주하는 자가 피차 서로 한 곡씩 연주하는 것을 속담에 ‘마질파지’라고 하는데, 정성근은 임광재를 끌어당기고 임광재는 정성근을 또 끌어당기는 것이 마질파지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일렀다.】 라는 말도 임광재에게서 들은 듯 하는데, 임광재는 말하지 아니했다고 하고, 동료들도 모두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었으니, 신이 잘못 들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구수영이 아뢰기를,  
“어저께 조간이 신에게 묻기를, ‘오늘 정상께서 무슨 일로 명소(命召)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임광재가 아뢴 것 때문에, 정성근의 요전상을 청한 일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일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밖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조간이 만약 신의 옷을 끌어당기며 묻고, 신도 다른 말을 했다고 하면, 신과 나란히 앉았던 신주(辛鑄) 또한 어찌 듣지 못했겠습니까?”

하였는데, 신주(辛鑄)가 아뢰기를,  
“조간(曹幹)과 구수영(具壽永)이 옷을 끌어당기며 서로 묻고 대답했다는 말을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정성근이 아뢴 바 청렴(清廉)하지 못하다는 수령(守令)의 이름을 일기(日記)에서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啓。” 承旨等啓曰：“未有考也。” 傳于曹幹曰：“何以虛事言於安性，而下問時乃以疑誤啓之乎？” 傳于光載曰：“卿言守令云：‘誠謹請簡在篋中。’此言猶記，獨忘其名何耶？更以實啓。” 幹啓曰：“去三月二十八日，會賓廳談話間，光載之言以麻叱波知誤聽，昨日乘醉說與安性，且誠謹澆奠事，同僚會坐處聞知，而疑聞壽永妄量發說，死罪萬萬。” 光載書啓曰：

臣若實知守令之名，畏誠謹諱啓，則前日安敢書啓誠謹過惡？ 前日成俊所言及貴山、貴同、莫同等事，皆從所知，歷歷啓之，豈獨諱守令之名乎？ 鐵堅、壽永等亦曰：“此言出於坐中，但不知先發者。” 臣若有情，則其時何不用意聽之？ 況臣之同僚，以臣戲言爲實避嫌，則臣獨立而彼皆爲一心也。 若的知先發者，臣何畏避而諱於上前乎？ 今日曹幹以臣不言事，言於同僚，以至上達，彼我之心，有異可見。 曹幹、安性等啓辭相推不定，無乃有意乎？ 臣若詳知前日啓書，何不竝錄？ 臣迫於事勢，揚人之惡，甚至於此，愧汗沾背，多言至此，尤憎惶恐。 且臣意，考前

	<p>“상고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조간에게 전교하기를,</p> <p>“어찌하여 허사(虛事)를 가지고 박안성에게 말하고, 하문(下問)할 때에는 의심스럽다고 그릇되게 아뢰었는가?”</p> <p>하고, 임광재에게 전교하기를,</p> <p>“경(卿)이 수령(守令)에 대해 말하면서 정성근의 편지가 아직도 상자[篋] 속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아직도 기억하면서, 오로지 그 이름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진실하게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 조간이 아뢰기를,</p> <p>“지난 3월 28일에 빈청(賓廳)에 모여서 담화(談話)하는 사이에 임광재의 말을 ‘마질파지(麻叱波知)’라고 잘못 듣고, 어제 술이 취하여 박안성과 말하였습니다. 또 정성근의 요전상에 대한 일을 동료들이 회좌(會坐)했던 자리에서 들어 알고 의심했다가, 구수영에게 듣고 망령되게 헤아려 발설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p> <p>하였다. 임광재가 서계(書啓)하기를,</p> <p>“신이 만약 진실로 수령(守令)의 이름을 알고서도 정성근을 두려워하여 아뢰기를 꺼려한다면, 전일에는 어찌하여 감히 정성근의 과악(過惡)을 서계했습니까? 전일에 성준(成俊)이 언급(言及)한 바 귀산(貴山)·귀동(貴同)·막동(莫同) 등의 일도 모두 아는 대로 역력히 아뢰었는데 어찌 오로지 수령의 이름만 숨기겠습니까? 이철건과 구수영 등 또한 말하기를, ‘이 말은 좌중에서 나왔으나 다만 먼저 발설(發說)한 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신이 만약 정실(情實)이 있었다면, 그 때에 어찌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물며 신의 동료들이 신의 희언(戲言) 때문에 실지로 피혐(避嫌)하였으니, 신은 혼자서 있는 셈이 되고, 저들은 모두 한마음이 된 것인데, 만약 먼저 발설한 자를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신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여 피하며 성상의 앞에서</p>	<p>三、四年史草日記，若有誠謹言守令之事，則必是其人也。</p> <p>傳曰：“幹雖飲酒，安可言坐上所不言之言乎？終當覈之。光載云：‘誠謹請澆奠不得，乃以不廉傾守令，摠管等非不知其名，而今不直言可乎？’光載更書啓曰：</p> <p>下問事，非臣所發，實出於同僚談笑中，臣之情實，具於前啓，別無他辭。鐵堅、壽永、朝陽、曹幹、安性書啓曰：</p> <p>初不舉姓名，只稱守令，故未知其名。</p>
--	---	---

	<p>숨기겠습니까? 오늘 조간(曹幹)이 신이 말하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동료에게 말하고, 상달(上達)하기에 이르렀으니, 그와 저의 마음이 다름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간과 박안성 등이 아뢰는 말이 서로 미루면서 일정하지 않으니, 곧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만약 전일에 아뢰는 글을 자세히 알았다면, 어찌 신이 사세(事勢)에 꺾박받음을 함께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심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부끄러워 땀이 등을 적시고, 많은 말이 이에 이르니 더욱 황공(惶恐)할 뿐입니다. 또 신이 생각한 건대, 전의 3, 4년의 사초(史草)와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만약 정성근이 말한 수령의 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일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조간이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어찌 좌상(坐上)에서 말하지 아니한 말을 말했겠는가? 끝내 핵실(覈實)함이 마땅할 것이다. 임광재가 말하기를, ‘정성근이 요전상을 청했다가 얻지 못하고, 곧 청렴(淸廉)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령과 다투었다.’고 했는데, 총관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 옳겠는가?”</p> <p>하였다. 임광재가 다시 서계하기를,</p> <p>“하문하신 일은 신이 발설(發說)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동료들이 담소(談笑)하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신의 정실(情實)은 전에 갖추 아뢰었으므로, 특별히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p> <p>하고, 이철건·구수영·이조양·조간·박안성은 아뢰기를,</p> <p>“처음부터 성명(姓名)을 거론(擧論)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령이라고만 일컬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p> <p>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p>	<p>도승지(都承旨)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全)이 상(喪)을 당하여 여묘살이[廬墓]25489)</p>	<p>○都承旨曹偉啓曰：“同知事李瓊全遭喪廬墓，服闋未幾中風，左臂不仁，鄉</p>

<p>(弘治) 6년) 4월 6일 (경자) 2번째기사</p>	<p>하였는데, 복(服)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중풍(中風)으로 왼쪽 팔이 마비되었으나, 향촌(鄉村)에서 약이(藥餌)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청컨대 적당한 약을 내려 주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촌향(村巷)25490) 에서는 의원(醫員) 또한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村得藥餌甚難， 請賜中藥。” 傳曰： “村巷醫亦難得， 令醫賚藥往救。”</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7일 (신축) 1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 전교(傳敎)하기를, “정성근(鄭誠謹)이 요전상(澆奠床)을 청한 일을 여러 총관(摠管)들이 언근(言根)을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 지금까지 모두 숨기는데, 이것으로써 재상(宰相)에게 형벌을 가(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성근(鄭誠謹)도 변명(辨明)하고자 할 것이니 정성근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辛丑/傳于司憲府曰：“鄭誠謹請澆奠床事， 諸摠管等非不知言根， 而今皆諱之， 不可以此加刑於宰相矣。 誠謹亦必欲辨明， 其問於誠謹以啓。”</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17일 (신해) 1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이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기유년(25524)의 강무(講武) 때 신(臣)이 지응사(支應使)가 되었었는데, 해주 목사(海州牧使) 정성근(鄭誠謹)이 가지고 온 술의 맛이 매우 싱거워서 진상(進上)하기에 알맞지 않았으나, 신이 바빠 사옹원(司饗院)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처 점검(點檢)하여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신이 돌아와서 물어보니 이미 주방(酒房)에 받아들였다고 하므로, 신이 반드시 술을 관장하는 자에게 뇌물을 주고 바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하여 희언(戲言)하기를, ‘일찍이 정성근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진실로 정직한 것이 아니고, 곧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했습니다. 정성근은 나이 젊은 후진(後進)으로 신이 평소에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하였지만, 단지 홍문관(弘文館)에 있을 때에 매우 정직하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술을 바친 일로 인하여 희언(戲言)하였을 뿐이고, 그가 겉으로는 정직하나 안으로는 간사하여 권모(權謀)를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신이 입 밖에 낸 바가 없습니다.”</p>	<p>○辛亥/永安道觀察使成俊馳啓曰：“去己酉年講武時， 臣爲支應使， 海州牧使鄭誠謹所賚酒味甚薄， 不宜進上， 而臣忙入司饗院， 故未及點退， 臣還來問之， 則已納酒房矣。 臣意謂， 必賂典酒者納之也， 因戲曰：‘曾聞誠謹直人， 非眞直也， 乃能人也。’ 誠謹年少後進， 臣素不識其爲人， 但聞在弘文館時， 言多切直， 故因納酒事戲言之耳。 其外直內詐， 權謀不測之言， 不出臣口。” 傳曰：“觀俊所啓， 必有其言。”</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성준의 아뢰는 바를 보니, 반드시 그러한 말이 있었다.”  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25일  (기미) 5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정성근(鄭誠謹)이 자기집 종으로 하여금 내섬시(內贍寺)의 선상(選上)을 대립(代立)시키고 이어서 가물(價物)을 취했는데, 하문(下問)하셨을 때에 정직하게 아뢰지 아니했고, 또 노공필(盧公弼)이 도총부(都摠府)의 정병(正兵)을 퇴립(退立)시키고 역가(役價)를 받아들이고 놓아 보낸 일을 한사문(韓斯文)에게서 자세히 듣고서도 숨기고 정직하게 아뢰지 아니하였으며, 총관(摠管)과 여러 장수들이 사후(伺候)를 청탁하고 액수(額數) 외의 정병을 지나치게 거느리며 혹은 가물(價勿)을 받은 것을 정성근이 또한 반드시 자세히 알았을 것인데도, 지적(指的)하여 계달(啓達)하지 아니한 죄는, 율(律)이 ‘대제상서사불이실률(對制上書詐不以實律)’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단지 직첩(職牒)만 거두고 외방 부처(外方付處)하도록 하였다.  사신(使臣)이 논평하기를, “정성근은 진주인(晉州人)으로서, 정척(鄭陟)의 아들인데, 사람됨이 조수(操守)25551) 가 있고, 반드시 거동(舉動)함에 있어서 예법(禮法)으로써 하였다. 부모(父母)가 한때에 모두 죽으니, 3년 동안 여묘살이하였다. 장인[婦翁]이 일찍이 병들었는데, 묘(墓)에서 장인의 집이 잇대어 있어 그 처(妻)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돌아왔으며, 아침저녁으로 찬(饌)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손수 불을 때어 밥을 짓곤 하였다. 3년상(三年喪)을 마치고서도 매양 삭망(朔望)25552) 이 되면 반드시 몸소 묘소(墓所)에서 제사지냈는데, 비록 관직(官職)에 있을 때에도 이병(移病)25553) 하고 갔다. 오랫동안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말이 간절하고 정직하였으나 성품이 좁고 몹시 급하여 너그러운 도량(度量)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p>	<p>○司憲府啓: “鄭誠謹, 令自家奴代立內贍寺選上, 而仍取價物, 下問時不直啓, 又盧公弼都摠府退立正兵納價放送事, 詳聞於韓斯文而諱不直啓, 摠管及諸將等, 稱伺候濫率數外正兵, 或受價物者, 誠謹亦必詳知矣, 而不指的啓達罪, 律該對制上書詐不以實者, 杖一百、徒三年、告身盡行追奪。” 命只收職牒, 外方付處。  【史臣曰: “誠謹晉州人陟之子也。 爲人有操守, 必欲動以禮法, 父母一時俱沒, 居墓三年, 婦翁嘗有病, 自墓直抵婦翁第, 視其妻在傍, 不與言而還, 朝夕奠饌, 必手自炊爨, 服闋每遇朔望, 必親祭於墓所。 雖在官, 亦移病而往, 久居經幄, 言多切直, 然性褊迫急促, 無寬弘之量, 見人過失, 雖小必欲言之。 嘗奉使對馬島, 島人皆惡其量窄, 自弘文館直提學, 特爲海州牧使, 不妄賦於民, 凡事務遵法令, 爲政不寬和, 雖有小過, 不寬貸, 吏民皆憚之。 坐濫刑見罷, 久不得絃, 鬱鬱不樂, 爲京</p>



과실(過失)을 보면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말하고자 하였다. 일찍이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서 대마도(對馬島)에 갔었는데, 도인(島人)들이 그의 도량이 좁은 것을 미워하였다.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부터 특별히 해주 목사(海州牧使)가 되어서는 망령되게 부렴(賦斂)하지 않고 모든 사무(事務)에 법령(法令)을 지켰으나, 정사(政事)를 다스릴 때에는 관대하고 온화하게 하지 않고 비록 작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아니하니, 이민(吏民)이 모두 꺼려하였으며, 남형(濫刑)의 죄를 받아 파직(罷職)된 후 오랫동안 서용(敍用)되지 못하니, 마음이 울적하고 즐겁지 아니하였다. 경기 재상 경차관(京畿災傷敬差官)이 되어 감히 가혹하고 각박하게 다스려 취모 먹자(吹毛覓疵)25554) 하니, 수령(守令)으로서 파직된 자가 많았으며, 온 도에서 원통함을 일컬어 진소(陳訴)하였다. 뒤에 봉상시 정(奉常寺正)이 되었는데, 모든 제향(祭享)에 관계된 일을 힘써 정결(精潔)하게 하고자 하여, 아랫사람을 모질게 꾸짖었다. 승지(承旨)가 되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보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발(摘發)하여 핵론(劾論)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였다. 혹 이르기를, ‘정성근의 부모(父母) 묘(墓) 가까운 곳에 자못 너그러운 양인(良人)이 살았는데, 정성근에게 간알(干謁)25555) 하지 아니하니, 정성근이 홍문관원(弘文館員)이 되어 그 사람을 관(館)의 조례(皂隸)로 삼았다가, 그 사람이 애걸하여 면(免)하게 되었으나, 이로부터 정성근이 부리기를 가인(家人)과 같이 하였다.’ 하였다. 나라의 법(法)에 나이가 많은 처녀(處女)로서 집이 가난하여 혼례(婚禮)를 치르지 못한 자는 관에서 자장(資粧)을 준다고 하였는데, 정성근의 종매(從妹)로서 나이가 많은데도 시집가지 못한 자가 있어 관청에 청하여 자장을 얻어내어 시집가게 하였으므로, 그 집에서 노비(奴婢)를 주어 사례하였다. 정성근이 욕심이 많은 것이 이와 같았는데, 남의 과실을 말하기 좋아하니, 사람들이 정직함을 팔아먹는다고 일컬었다. 병조 참판(兵曹參判) 신종호(申從濩)가 일찍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

畿災傷敬差官，敢爲苛刻，吹毛覓疵，守令坐罷者多，舉道稱冤陳訴，後爲奉常寺正，凡干祭享等事，務爲精潔，苛責僚下，及爲承旨，見人過失，雖小必摘發請劾，人多怨之。或云：‘誠謹父母墳近隣有良人居，頗饒不干謁於誠謹，誠謹爲弘文館員，以其人爲館皂隸，其人哀乞得免，自是誠謹役使之如家人。’國法年壯處女，家貧無以爲禮者，官給資粧，誠謹從妹有年壯不嫁者，爲請於官，得資粧嫁之，其家贈奴婢以謝。誠謹多欲類此，而喜言人過失，人謂賣直。兵曹參判申從濩嘗戲之曰：‘人謂君爲艾璞。’誠謹怒，從濩曰：‘此非余言，乃人言也。’誠謹默然，誠謹屢有請於從濩，而其折簡必曰：‘同封簡內事曲盡，別書所囑之事以附之。’從濩謂郎廳曰：‘此人好言事，若言人以折簡干請事，可以此示之。’令題簡背曰：‘艾承旨請也。’”】

	<p>대를 애박(艾璞)이라고 일컫는다.’고 하니, 정성근이 노하므로, 신중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곧 다른 사람들의 말이다.’ 하니, 정성근이 잠자코 있었다. 정성근이 여러 번 신중호에게 칭찬 것이 있었는데, 그 절간(折簡)25556) 에 반드시 이르기를, ‘동봉(同封)한 서간(書簡) 안에 일을 상세하게 말하였다.’ 하고, 따로 부탁하는 일을 첨가하여 부치니, 신중호가 낭청(郎廳)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언사(言事)를 좋아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절간(折簡)으로써 칭탁한 일을 말하면, 이것을 보여 줄 만하다.’ 하고, 서간의 뒤에 ‘애 승지(艾承旨)의 청이다.’라고 썼다.” 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27일 (신유)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이 차자(筴子)를 올리기를, “임광재(任光載)의 말은 입계(入啓)한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동료(同僚)들이 들은 것도 묻기를 청하였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며, 평소에 듣고 숙의(熟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명백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이미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문(下問)할 때에 이르러 모두 들은 사람과 들은 곳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치가 어긋나고 말이 궁해지자, 조간(曹幹)에게 돌려냈는데, 조간 또한 불복(不服)하자, 마음속에 교묘한 속임수를 감추고 몰래 보복(報復)할 마음을 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드러난 일인데, 어찌 추단(推斷)하기가 매우 쉽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눈만 흘려도 장차 반드시 보복할 것이니,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추국(推鞠)하도록 명하시어 조정(朝廷)의 기강(紀綱)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평(持平) 홍한(洪瀚)이 아뢰기를, “술맛과 요전상(澆奠床) 등의 일을 어찌 임광재(任光載) 혼자 들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총관(摠管) 등이 서로 의논하여 말한 것으로서, 간혹(奸譎)함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옛부터 조정의 기강이 능이(陵夷)해진 것은 오로지 대신</p>	<p>○司憲府大司憲李世佐等上筴子曰： 光載之言，不自於入啓之日，同僚之聽，非始於請問之時，聞之素而議之熟矣。然不得明言其事，固已譎矣，及其下問也，皆若不知，其所聞之人所言之地，理屈辭窮，歸之於曹幹，而幹亦不服，其中藏巧詐，陰懷報復明矣。豈非事之甚著而推之甚易歟？此而不治，其弊將睚眦必報，有不可勝言者矣。伏望亟命推鞠，以正朝綱。不聽。持平洪瀚啓曰：“酒味澆奠等事，光載豈盡獨聞乎？此必摠管等相議而言之，奸譎已著矣。自古朝廷紀綱之陵夷，專由大臣犯罪而人主恩貸之也。殿下守祖宗法度，若不治摠管罪，則臣恐朝廷紀綱不振也。”傳曰：“若欲究竟此事，不得不用刑也，爾等雖請</p>

	<p>(大臣)이 죄를 범(犯)하였으나 인주(人主)가 특별히 용서함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조종(祖宗)의 법도(法度)를 지키시며 만약 총관의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신(臣)은 조정의 기강이 떨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만약 이 일을 끝까지 밝히고자 한다면, 형벌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비록 형신(刑訊)하기를 청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따르겠는가?”</p> <p>하였다. 흥한이 말하기를,  “비록 형신(刑訊)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죄가 클 것 같으면, 더러 귀양보내거나 내치거나 하였으니, 성상(聖上)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刑訊，予豈從之？” 瀚曰：“雖不得刑訊，若其罪大，則或竄或黜，在上裁如何耳。” 不聽。</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4월 28일  (임술) 2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계남(李季男)이 치계(馳啓)하기를,  “웅천(熊川)에 사는 공약명(孔若明) 등 24명이 굴조개[石花]와 생미역을 먹고 서로 잇달아 폭사(暴死)했는데, 이는 반드시 독(毒)을 만난 것입니다. 신(臣)이 연해(沿海)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일절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도록 했습니다.”</p> <p>하니, 정원(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어찌 굴조개와 생미역이 사람을 죽였겠는가? 이는 반드시 복[河豚]을 먹은 것이다. 만약 이로써 해물의 채취를 금한다면 연해(沿海)의 백성들이 자생(資生)할 곳을 잃게 될 것이다. 감사(監司)로 하여금 치사(致死)한 까닭을 자세히 물어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였는데, 우승지(右承旨) 한사문(韓斯文)이 아뢰기를,  “굴조개는 여름철이 되면 매우 충실(忠實)해지나, 복[河豚]이 알을 낳기 때문</p>	<p>○慶尙道觀察使李季男馳啓曰：“熊川居孔若明等二十四人，啗石花、生薑，相繼暴死，此必遇毒也。 臣令沿海守令，一禁採海物者。” 傳于政院曰：“豈石花、生薑殺人乎？ 此必食河豚也。 若以此禁採海物，則沿海之民，失其所資矣。 令監司詳問致死之由何如？” 右承旨韓斯文啓曰：“石花至夏節甚實，然河豚遺子，故人不得食，今之死者，意食此耳。 沿海之民，所賴以生者海物，不可禁採。” 傳曰：“其下書監司，使之詳問致死之由，勿禁採海</p>

	<p>에 먹을 수가 없는데, 지금 죽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해(沿海)에 사는 백성들이 자생(資生)을 의뢰하는 것이 해물(海物)이니, 채취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 “감사(監司)에게 하서(下書)하여 치사(致死)한 까닭을 자세히 물어보게 하고, 해물의 채취를 금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物。”</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28일 (임술) 3번째기사</p>	<p>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조문숙(趙文淑)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우서(虞書)》에서는, 인주(人主)와 대신(大臣)으로써 일체(一體)를 삼았고, 《춘추(春秋)》에서는 천왕(天王)과 재상(宰相)이 한 마음을 삼았으니, 임금의 신하에게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대하여 미혹되지 아니하며, 바른 도리로 섬기어, 그 뜻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되어서는 바라는 바를 알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그 뜻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의 대부(大夫)는 건책(譴責)을 당하게 되면, 백관(白冠)에 갓끈을 졸라매고, 반수(盤水)에 칼을 얹어 궤문(闕門)에 나아가 스스로 죄(罪)를 청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고, 대부가 된 자는 염치(廉恥)와 예의(禮義)로써 그 자신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금의 녹(祿)을 먹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고 이(利)를 앞세우고 의(義)를 뒤로 하며, 사사로움을 도모하여 공도(公道)를 폐(廢)하고, 남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은 싫어하여, 동료들끼리 험뜯고 서로 잘 지내지 아니하면서 더러운 곳으로 나아가며, 임금이 들은 바가 있어서 물으면 바른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른바 말을 들을까 하여 대하나 말을 외대고 취한 듯이 한다고 하니, 이것은 곧 절행(節行)으로써 윗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무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총관(總管)들은 혹은 자신이 재상이기도 하고 혹은 총애를 받은 척</p>	<p>○司憲府執義趙文淑等上疏曰： 竊惟《虞書》，以人主、大臣爲一體； 《春秋》以天王宰相爲一心，君不疑於臣，而臣不惑於君，直道而事之，不匿厥旨，故爲上所望而知也，爲下可述而志也。古之大夫，當譴責，則白冠盤水，盤水加劍，造乎闕而自請罪。此無他，爲大夫者，不可不以廉恥禮義飭其躬也。如或食君之祿而忘君之恩，先利而後義，植私而廢公，悅人讚己，惡人毀己，朋友以讚，不胥以穀，而征以中垢。君欲有所聞而問焉，則不以直對，所謂聽言則對諛言如醉，斯乃不以節行報其上，非人類也。今總管等，或身爲宰相，或寵居戚屬，雖謂之柱石肺腑之臣可也。一有官職不修之諂，則闕門不出，果有罪也，甘伏而不辭，果無罪也，足以曝白於聰明之下矣。</p>

속(戚屬)이기도 하니, 주석(柱石)과 폐부(肺腑)의 신하라고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라도 관직(官職)에서 다스리지 못했다는 허물이 있으면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과연 죄가 있다면 부복하는 것을 달게 여겨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죽히 총명(聰明) 아래에서 폭백(曝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원망하는 것만을 도모하여 오늘 정성근(鄭誠謹)의 한 가지 허물을 찾아내고 내일 또 정성근의 허물을 찾아내어 그 말을 꾸며대어 달려가 전하(殿下)께 고(告)하는데, 그 말의 근거를 물으면, 서로 숨기고 명백하게 하지 아니하니, 일찍이 대신이라 이르고서 이러한 행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인신(人臣)의 죄는 기망(欺罔)보다 큰 것이 없는데 기망한 실상은 오직 이철건(李鐵堅) 등이 떠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미 대신으로 자처(自處)하지 아니하니 전하께서 어찌 대신으로 대우하겠습니까? 추국(推鞠)으로 철저히 힐문하여 끝까지 살피는 것이 옳을 것인데, 버려두고 묻지 아니한다면 교만하고 방자스러움이 더욱 심하여 죄가 구(救)하지 못할 때까지 이를 것이며, 또한 대신의 도리도 온전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이 정상(情狀)을 전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반드시 불을 보듯이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간사함을 알고서도 용서하신다면 악한 짓을 하는 자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잔에 부은 술과 제기에 담은 고기를 사양하고 나쁜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백성은 오히려 나의 차례를 범하게 될 것이고, 임석(衽席)의 위에서 사양하고 아래에 앉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오히려 귀한 이를 범하게 될 것이며, 조정(朝廷)의 지위를 사양하고 친한 데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오히려 임금을 범할 것인데, 지금 이 대신들이 조정에서 화목하지 못하여 다투어 먼저 고알(告訐)한다면 이치와 형세로 보아 하민(下民)들도 서로 비방(誹謗)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上下)에서 예양(禮讓)의 기풍이 없고, 조야

此之不爲，惟怨是圖，今日覓誠謹一疵，明日覓誠謹一疵，詭其辭，奔告于殿下，問其言根也，則相匿不白，曾謂大臣而有是行哉？人臣之罪，莫大於欺罔，欺罔之實，惟鐵堅等當之。彼既不以大臣自處，殿下安可以大臣遇之？推鞠窮詰，以謹罔極可也。乃置而不問，則祇益驕恣，罪至不可救耳，亦非全安大臣之道也。彼之情狀，殿下知而不問乎，不知而不問乎？殿下必明若觀火矣。如知其奸而赦之，則爲惡者何所懲艾？觴酒豆肉，讓而食惡，民猶犯齒；衽席之上，讓而坐下，民猶犯貴；朝廷之位，讓而就賤，民猶犯君，今此大臣，不和於朝，爭先告訐，則下民之轉相誹謗，理勢必至，上下無禮讓之風，朝野起爭鬪之心，則國非國而大可畏者至矣。伏願(丞) [亟] 下推問之命，益勵廉恥之道，爲大於其細，圖難於其易，國家幸甚。御書：“近觀都摠管等所爲，果失大體，然深探其意，不過欲發明而已。誠謹之疵，實出於光載窘迫之口，非憎誠謹而欲將陰事以執怨也。誠謹所啓，旣爲不實，則摠管之過，亦可怨也。且

(朝野)에서 쟁투(爭鬪)할 마음을 일으킨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되어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빨리 추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더욱 엄치의 도(道)를 권려하신다면 작은 일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쉬운 일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나라가 몹시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근자에 도총관(都總管)들의 소위(所爲)를 보니, 과연 대체(大體)를 잃었다.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살펴보면 발명(發明)하고자 한 데에 지나지 아니할 따름이다. 정성근의 허물이 실지로 임광재(任光載)의 군박(窘迫)한 입에서 나왔지만, 정성근을 미워하여 드러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원한을 갚고자 한 것이 아니다. 정성근의 아뢰 바가 이미 부실(不實)하다고 하면 총관의 허물 또한 용서할 만하다. 또 인군(人君)이 대신에게 묻는 일이 있는데도 직대(直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옳겠는가? 그러나 만약 오래 되어 잊었다고 한다면 그 정직하지 못한 바를 어떻게 허물로 삼겠는가? 이제 비록 추국한다고 하더라도 일은 이에 지나지 아니하니, 가령 전과 같이 형신하며 국문하겠는가?”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평(持平) 홍한(洪瀚)이 아뢰기를,

“어서에 ‘군박한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총관들은 유사(有司)가 급박(急迫)하게 추문하고 힐책한다고 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정성근의 일을 천천히 의논하고자 하여 아뢰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정성근의 말을 발명하고자 한 것이라면, 다만 그 구사(丘史)의 일만을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맛과 요전상(澆奠床)의 사실이 없었던 일을 가지고 배척하였으니, 그것은 원한을 갚고자 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문(下問)하실 때를 당해서도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기망한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성근이 총관의 일을 말하자, 총관들이 보복하려고 모의하여 숨겨진 일들을 주워 모아 곧바로 정원(政院)에 나아가 아뢰었던 것이니, 오래 되어 잊은 것이 아

人君有問於大臣，而不以直對，其可乎？然若久而忘之，則其所不直，亦何咎乎？今雖推之，事不過此，假使如前用拷鞫之乎？不聽。”持平洪瀚啓曰：“御書以爲出乎窘迫之口，總管等非因有司急迫推詰而言之，乃徐議誠謹之事以啓之耳。若欲發明誠謹之言，則只白其丘史事耳，乃以酒味澆奠無實事斥之，其欲報怨明矣。自於垂問時，不以直對，其爲欺罔亦明矣。誠謹言總管之事，總管等謀欲報復，摺撫陰事，卽詣政院而啓之，非久而忘之之事也。誣詐之狀，如此著現，斷不可不刑訊。”不聽。

	<p>닌 것입니다. 무사(誣詐)한 정상이 이와 같이 확연히 드러났으니, 결단코 형벌로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28일      (임술) 4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憲府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筵子)를 올리기를,      “정성근(鄭誠謹)이 도총관(都總管) 등이 군졸(軍卒)에게 폐해를 끼친 것을 듣고 바른 대로 계달(啓達)하기를 청한 것은 공도(公道)인데, 성상께서 다시 물었을 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했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임광재(任光載) 등은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여 정성근이 근수(根隨)25568)를 대립(代立)시킨 것과 요전상(澆奠床)을 구청(求請)한 등의 일들을 적발하여 아뢰었는데, 성상(聖上)께서 수령(守令)을 몰래 중상한 일을 정녕(丁寧)하게 하유(下諭)하시어 그 실정을 알아내고자 하셨다면 어찌 중도에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정성근이 실지로 이를 범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임광재 등은 스스로 대신(大臣)이 되어 소인(小人)이 고알(告訐)하는 술책을 써서 보복의 계책을 자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근거없는 말로써, 천총(天摠)을 속여 계달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재차 물으시자, 모두 말하기를,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듣지도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속여서 계달한 것을 사죄하지 아니하고 무함(誣陷)한 죄를 모면(謀免)하고자 하니, 대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릇 임금의 앞에서 비방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인물(人物)의 진퇴(進退)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헌부(憲府)에 명하여 추국(推鞠)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臣) 등이 명단(明斷)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앞드려 전교(傳敎)를 보니, 재상(宰相)은 형신(刑訊)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상(聖上)께서 대신을 공경하심이 지극하시지만, 재상은 처음부터 남의 허물과 죄악(罪惡)을 계달하였으나, 끝까지 서로 숨기면서 바른 대로 계달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군상(君上)을 공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임광재 등은 한결같</p>	<p>○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上筵子曰：      鄭誠謹聞都總管等貽弊軍卒，直請啓達，公道也，而上之更問也，不以實對，信有罪矣。光載等惡其害己，擿發誠謹根隨代立，澆奠求請等事以啓，上以陰中守令之事，丁寧下諭，欲求得其實，則豈可中止？設使誠謹實有是犯，光載等，身爲大臣，不可用小人告訐之術，以肆報復之計也。況以不根之言，冒達天聰乎？及其再問，皆曰不言不聞，略不以冒達爲謝，謀免誣陷之罪，大臣之義安在？凡君前毀譽，實關人物進退，故命憲推鞠，臣等竚俟明斷，伏觀傳敎，宰相不可刑訊，聖上曰敬大臣則至矣，宰相初以人之過惡啓達，而終相諱不直達，是不敬君上也。光載等，一則報復，一則誣陷，一則不敬君上，雖不用刑杖，三罪已著，而專釋不治，非徒臣等憤激，抑亦朝廷所缺望，伏望勿惜貴近，斷以公道，明治光載等之罪，不勝幸甚。      不聽。</p>

	<p>이 보복하고, 한결같이 무함하고, 한결같이 군상을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형장(刑杖)을 쓰지 아니하면 한갓 신 등이 분격(憤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에서 결망(缺望)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고귀(高貴)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여 애석하게 여기지 마시고 공도(公道)로써 결단하여 임광재 등의 죄를 밝게 다스리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276권,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 (弘治) 6년) 4월 29일 (계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관가(觀稼)25569) 하였다. 어가(御駕)가 제천정(濟川亭)에 이르러, 승지(承旨) 등에게 전교(傳敎)하기를,</p> <p>“지금 농사(農事)를 보니, 어떠한가?”</p> <p>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p> <p>“혹 미처 과종(播種)하지 못한 곳이 있으나, 망종(芒種)25570) 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족히 심려(深慮)할 것이 못됩니다.”</p> <p>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이 아뢰기를,</p> <p>“들으니, 경기(京畿)에는 비가 흠족하지만,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의 두 도에 가뭄의 징후가 있다고 하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지금 본 곳도 또한 매우 잘 자라지 아니하였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도에 모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내가 매우 염려스럽다.”</p> <p>하고, 이어 농민(農民)에게 술을 먹이도록 명령하였다.</p>	<p>○癸亥/上幸東郊觀稼， 駕至濟川亭， 傳于承旨等曰：“今觀農事何如？” 兪啓曰：“或有未及播種處， 然芒種未至， 不足深慮。” 右議政許琮啓曰：“聞京畿則雨足， 慶尙、全羅兩道有旱徵， 此可慮也。” 傳曰：“今所觀處， 亦不甚長茂， 慶尙、全羅兩道， 皆不雨， 予甚慮之。” 仍命饋農民酒。</p>